





문서등록번호  
11-1352000-002453-14

[www.mohw.go.kr](http://www.mohw.go.kr)

20  
23

# 아동분야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 가정입양 지원
- 가정위탁 보호
- 소년소녀가정 지원
- 결연사업 운영
- 아동복지시설 운영
- 아동복지교사 지원



**1권**

- 주요 변경사항 ..... i
-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 1
- Ⅱ. 가정입양 지원 ..... 25
- Ⅲ. 가정위탁 보호 ..... 65
- 〈부록〉 보호대상아동의 맞춤형 가정보호서비스를 위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 지침 ... 133
- Ⅳ. 소년소녀가정 지원 ..... 175
- Ⅴ. 결연사업 운영 ..... 183
- Ⅵ. 아동복지시설 운영 ..... 189
- Ⅶ. 아동복지교사 지원 ..... 279
- 〈부록〉 보호아동 면접교섭지원 매뉴얼 ..... 309
- 서식 모음 ..... 341

**2권**

- 주요 변경사항 ..... i
- Ⅰ. 보호아동 자립지원 ..... 1
- Ⅱ. 디딤씨앗통장(CDA) ..... 45
- Ⅲ.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87
- Ⅳ. 자립수당 ..... 103
- 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 131
- Ⅵ.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151
- Ⅶ.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 225
- 서식 모음 ..... 243





# 주요 변경사항





##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 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 사항은 본문 확인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I.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9~11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추가</li> <li>●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주체별 역할 추가</li> <li>● 아동보호 추진체계(예시) 추가</li> </ul>	
		원가정보호 → 사례관리계획 수립 →	아동보호전문기관 → 원가정보호 → 사례관리계획수립 →	표로보면 피해아동보호 계획수립이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업무로 인식되기에, 사례관리의 주체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명시
	14	- (우대)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 관리 가능하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우대)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 관리 가능하도록 입양기관, 미혼부모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입양기관, 미혼부모기관 등 우대사항 예시 추가
	22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집행기준 개선</li> <li>※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집행기준 개정 안내 및 집행 활성화 요청"(22.10.6., 아동복지정책과-3651) 참고</li> </ul>	
II. 가정입양 지원	60	<p>&lt;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 조사&gt;</p> <p>② 양친이 될 자에 대한 범죄경력 및 아동 학대사례 판단이력 조회</p> <p>- 조사기관(지자체 또는 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자의 범죄경력(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 조회를 경찰 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함</p> <p>- 또한, 입양기관은 지자체에 의뢰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 학대사례 판단이력을 확인해야 함</p>	<p>&lt;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 조사&gt;</p> <p>② 양친이 될 자에 대한 범죄경력 및 아동 학대사례 판단이력 조회</p> <p>- 조사기관(지자체 또는 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자의 범죄경력(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 조회를 경찰 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함</p> <p>- 또한, 입양기관은 지자체에 의뢰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력을 확인해야 함</p>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II. 가정입양 지원	69	<p>다. 보호 연장 가능 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조치 중인 18세 이상 아동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보호기간을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li> <li>※ 아래의 사유에 한해 교차적용 가능</li> <li>- 시행령 제22조제1호에 의해 연장 보호 중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교차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li>- 시행령 제22조제4호에 의해 연장 보호 중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교차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li>- 각 연장사유에 의해 연장보호 중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교차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ul>	<p>다. 보호 연장 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 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li> <li>※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li> </ul>											
	69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법조문</th> <th>법조문</th> <th>적용 안내</th> </tr> </thead> <tbody> <tr> <td>보호 기간 연장</td> <td>【법 제16조의3 제1항】</td> <td>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22.6.22.) 이후,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사유 없이 25세 미만 까지 지원</li> <li>※ 보호기간 연장 중 대상자가 보호 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 절차 따름</li> <li>※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 기간</li> <li>-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 기간 연장(출·퇴근으로 '생활비' 등 비용 발생시)</li> </ul> </td> </tr> <tr> <td>보호 기간 추가 연장 (만 25세 이후)</td> <td>【법 제16조의3 제3항 제1호】</td> <td>「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li> <li>※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기간에 포함), 2년 단순휴학</li> <li>- 단, 단순휴학은 연속 사용만 가능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li> <li>-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청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li> <li>-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li> <li>- 단,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동안 보호기간 연장</li> <li>- 단,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보호기간 연장</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보호 기간 연장	【법 제16조의3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22.6.22.) 이후,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사유 없이 25세 미만 까지 지원</li> <li>※ 보호기간 연장 중 대상자가 보호 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 절차 따름</li> <li>※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 기간</li> <li>-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 기간 연장(출·퇴근으로 '생활비' 등 비용 발생시)</li> </ul>	보호 기간 추가 연장 (만 25세 이후)	【법 제16조의3 제3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li> <li>※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기간에 포함), 2년 단순휴학</li> <li>- 단, 단순휴학은 연속 사용만 가능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li> <li>-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청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li> <li>-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li> <li>- 단,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동안 보호기간 연장</li> <li>- 단,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보호기간 연장</li> </ul>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보호 기간 연장	【법 제16조의3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22.6.22.) 이후,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사유 없이 25세 미만 까지 지원</li> <li>※ 보호기간 연장 중 대상자가 보호 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 절차 따름</li> <li>※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 기간</li> <li>-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 기간 연장(출·퇴근으로 '생활비' 등 비용 발생시)</li> </ul>											
보호 기간 추가 연장 (만 25세 이후)	【법 제16조의3 제3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li> <li>※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기간에 포함), 2년 단순휴학</li> <li>- 단, 단순휴학은 연속 사용만 가능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li> <li>-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청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li> <li>-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li> <li>- 단,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동안 보호기간 연장</li> <li>- 단,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보호기간 연장</li> </ul>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p>【법 제16조의3 제3항 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p>		<p>•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 ※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종료</p>	
			<p>【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p>		<p>• 26세 미만까지 지원 ※ 장애·질병 등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p>	
			<p>【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p>		<p>•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경우 • 26세 미만까지 지원</p>	
			<p>【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p>		<p>• 26세 미만까지 지원</p>	
Ⅲ. 가정위탁 보호	73	(1)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1)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p>-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p>	<p>-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제출) *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서' 등</p>			
	<p>-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시·군·구청장은 위탁가정의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 3년, 반드시 특수상병기록을 포함) 등 증빙자료 요청 및 검토 * 위탁가정의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보건복지부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 및 검토</p>	<p>-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시·군·구청장은 위탁가정의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 3년, 반드시 특수상병기록을 포함) 등 증빙자료 요청 및 검토 * 위탁가정의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보건복지부에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 및 검토</p>				
	74	<p>※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단, 형제·자매가 함께 전문위탁가정에 배치되어야 할 경우, 위탁부모의</p>	<p>※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위탁부모의 역량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p>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Ⅲ. 가정위탁 보호		역량, 헌신, 위탁가정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 (위탁아동 및 양육 중인 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를 포함하여 위탁가정 내 아동이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위탁아동 및 양육 중인 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를 포함하여 위탁가정 내 아동이 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75	●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 등 집합교육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 가능	●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 등 집합교육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교육 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 가능	
	77	●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 중 아동과 친인척 관계인 자는 아동의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등을 제출 * 아동의 위탁보호자가 변경되는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될 가정은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등 제출	●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 중 아동과 친인척 관계인 자는 아동의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 * 아동의 위탁가정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될 가정은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등 제출하여 사전·대면 심의 진행 * 동일 가정내 주양육자 변경은 변경될 주양육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조회 후 3년 경과 시 재조회 필요) 등 서류 취합, 부모교육 필수 이수, 사례회의 통해 결정	
	79	● 18세 이후 가정위탁이 종결되는 형제·자매를 보호자로 위탁가정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육을 지원해 줄 주변지원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책정 * 18세 이후 종결될 자가 민법상 성년이 아니더라도 위탁부모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	● 18세 이후 가정위탁이 종결되는 형제·자매를 보호자로 위탁가정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육을 지원해 줄 주변지원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책정 * 18세 이후 종결될 자가 민법상 성년이 아니더라도 위탁부모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양육자 변경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84	〈신설〉	● 아동 보호조치 결정(변경) 통지사항에 따라 당사자 간 가정위탁보호 서약 진행 * 최초 서약은 4자(친권자(보호자), 위탁부모,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대면 서면 서약 원칙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Ⅲ. 가정위탁 보호	85	〈신설〉	※ 유기아동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발급 받아 의료·생계급여, 양육수당,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87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의 원가족 간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면접교섭 이행결과를 지자체(시·군·구)에 보고 〈신설〉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의 원가족 간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면접교섭 이행결과를 지자체(시·군·구)에 보고 * 단, 위탁아동이 동일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내 여러 차례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경우(예: 월 3회 이상)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여러 이행건의 결과를 한 건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음	
	87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 〈신설〉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권제한·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를 요청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안내하여 법률 지원 연계	
	91	바.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	바.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 (본문 참고)	
94	●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시·군·구 소관 - 위탁아동은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로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급여 지급 - 수급자 책정 전에 위탁가정으로 전입하여 위탁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때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책정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3항에 의해 가정위탁아동은 부양의무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처리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시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영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시·군·구 소관 - 위탁아동은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로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급여 지급 - 수급자 책정 전에 위탁가정으로 전입하여 위탁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때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책정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3항에 의해 가정위탁아동은 부양의무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처리 * 일시위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제 거주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Ⅲ. 가정위탁 보호		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위탁아동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로 급여관리상황 모니터링 제외	지인 보호가정의 소재지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접수																		
	100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 아동도 지원 대상	〈삭제〉																		
	101	라. 아동용품구입비 ● 지급방법 : 양육보조금 지급 개시 시 위탁부모 계좌로 최초 1회 지급	라. 아동용품구입비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개시 시 위탁 부모 계좌로 최초 1회 지급																		
	10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되면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급여 신청일을 급여 개시일로 보아 지원 * 급여관리 점검 제외 대상 :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거나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로 급여의 착취·유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되면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급여 신청일을 급여 개시일로 보아 지원																		
	102	● 보험료 : 1인당 연 68,500원 이내	● 보험료 : 1인당 연 68,500원 내외																		
	102, 128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단,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103	● 가구당 지원한도액(2022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보호대상아동 수에 따른 가구당 지원한도</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1명</th> <th>2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일반 주택</td> <td>수도권</td> <td>12,000만원</td> <td>13,500만원</td> <td rowspan="3">●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한다.</td> </tr> <tr> <td>광역시</td> <td>8,000만원</td> <td>10,000만원</td> </tr> <tr> <td>그 밖의 지역</td> <td>6,000만원</td> <td>8,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보호대상아동 수에 따른 가구당 지원한도		비 고	1명	2명	일반 주택	수도권	12,000만원	13,500만원	●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광역시	8,000만원	10,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8,500만원
	구 분	보호대상아동 수에 따른 가구당 지원한도		비 고																	
1명		2명																			
일반 주택	수도권	12,000만원	13,500만원	●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광역시	8,000만원	10,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8,500만원																		
104	자. 자립정착금 ● 지원금액 : 아동 800만원 이상 지급 (지방이양)	자. 자립정착금 ● 지원금액 : 아동 1,000만원 이상 지급 (지방이양)	자립정착금 권고기준 상향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Ⅲ. 가정위탁 보호	104	차. 자립수당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이체) 원칙	차. 자립수당 ● 지원금액 :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이체) 원칙	자립수당 인상
	104	카. 대학진학자금 ● 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카. 대학진학자금 ● 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 제3항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 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지원 권고	
	106	- 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 센터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 배치 * 상담원은 위탁아동 400명 초과시 200명당 상담원 1인 추가 배치해야 하고, 「아동복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 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 (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배치는 '18.3.23부터 적용)	- 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 배치 * 상담원은 위탁아동 400명 초과시 1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인 추가 배치해야 하고, 「아동복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 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배치는 '18.3.23부터 적용)	
	108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자격기준(표)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자격기준(표)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3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9	<신설>	팀장 자격기준 추가(본문 참고)	
	118	● 보험료 : 1인당 68,500원 이내	● 보험료 : 1인당 68,500원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와 협의)	
	129	5. 치료기관 선정 ※ 치료기관 선정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치료기관에 상담사의 범죄경력을 요청 하여, 확인 권고	5. 치료기관 선정	
	130	- 치료기관 상담사 자격 확인 위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1부	- 치료기관 상담사 자격 확인 위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137	□(배치기준) 보호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되어야 할 경우 보호가정 역량과 환경 고려하여 판단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	□(배치기준) 보호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보호가정 역량과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형제·자매 등의 경우 함께 배치 원칙)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137	● 동일 가정 내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되는 경우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원(아동 1인당 100만원씩)	● 동일 가정 내 위탁아동이 1명 이상 배치되는 경우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원(아동 1인당 100만원씩)	
	140	□(배치기준)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되어야 할 경우 위탁가정 역량과 환경 고려하여 판단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	□(배치기준)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보호가정 역량과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형제·자매 등의 경우 함께 배치 원칙)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부록-보호대상 아동의 맞춤형 가정보호 서비스를 위한 전문 아동보호비 지원사업	142	만 18세 보호종료 시까지	보호종료 시까지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147	●(보장원) 지자체에서 아동 연계·배치 시 활용 가능하도록 전국 단위의 「전문위탁가정 Pool」 운영·관리하여 전국에 정보 공유	●(보장원) 지자체에서 아동 연계·배치 시 활용 가능하도록 전국 단위의 「전문위탁가정 Pool」 운영·관리하여 전국에 정보 공유 -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일선에 「전문위탁가정 Pool」을 사전에 공유	
	147	●(자격심) 전문위탁가정 기준(붙임 1)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정위탁 보호 결정 * 동일 가정 내 위탁유형 변경(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은 사례결정위원회 사후·대면심의 등 절차 간소화 가능	●(자격심) 전문위탁가정 기준(붙임 1)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정위탁 보호 결정 * 동일 가정 내 위탁유형 변경(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은 사례결정위원회 사후·서면심의 등 절차 간소화 가능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148	- '일시보호의뢰서'를 작성하여 가정 위탁지원센터에 일시위탁을 의뢰하고,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자(보호가정 소재지)에게 공유	- '일시보호의뢰서'를 작성하여 가정 위탁지원센터에 일시위탁을 의뢰하고,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자(보호가정 소재지)에게 공유  * 필요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전문 위탁가정 Pool」을 활용해 위기가동 보호 가정에 위탁 후, 일시보호의뢰서를 작성 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사후 송부 가능	
	148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 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라 아동을 보호가정에 인도하기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지자체에서 지정한 임시 보호시설(일시보호시설, 양육 시설, 보건소 등)로 이동,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보호가정으로 인도(양성인 경우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삭제〉	
	155	● (지급금액) 보호가정 책정 시 최초 1회 100만원  ※ 1개 보호가정에는 책정 시 최초 1회만 지원(위기가동 1인당 지급액이 아니며, 보호가정별 1회만 지원)	● (지급금액) 보호가정 책정 시 최초 1회 100만원  ※ 이후 위기가동 연계 시마다 위기가동 1인당 50만원 지원	
	158	- 주거급여 월10~19만원	- 주거급여 월10~19만원  (단, 위기가동 가정보호, 일시위탁은 주거급여 대상 제외)	
	159	- 제출시기 : 매월말 기준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22년 상반기까지는 월별로, 하반기 부터는 분기별로 제출	- 제출시기 : 분기말 기준 작성, 1월, 4월, 7월, 10월 10일까지 제출	
	159	● («전문위탁가정 Pool」 운영)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전문위탁가정 정보를 취합하여 전국에 공유(매주)	● («전문위탁가정 Pool」 공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등 일선에 전국 전문위탁가정 Pool 공유(매주)	
	164	● (맞벌이 여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에 대하여 1:1 상시돌봄이 가능하여야 함	● (맞벌이 여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에 대한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165	6. 장애인활동지원사(구; 장애인활동보조 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위탁가정 신청 가능한지?	6. 전문가가정위탁 아동 주소지와 위탁가정 주소지가 다른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전문위탁가정 신청 가능하나,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문아동 보호비 미지원</li> <li>- 장애아동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복지법」 제5조에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전문아동 보호비)에는 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권한이 있는 아동 발생 소재지 시군구에서 사례 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하여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및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통보</li> <li>* 일시보호(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등)의 경우, 아동 주소지는 전입하지 않으며, 중장기보호의 경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보호조치 결정 후 위탁가정 주소지로 전입처리</li> <li>** 가정위탁 보호와 관련한 재정지원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li> </ul>	
	167	붙임3: 전문가정위탁 대상아동 현황	<삭제>	
	168, 169	붙임4: 2022년 전문위탁가정 양성교육 계획(보장원 주관)	<삭제>	
VI. 학대피해 아동 보호 시설 및 위원회 설치운영	185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정보시스템	
VII. 아동복지 시설 운영	194	나. 입소 절차(「아동복지법시행령」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경찰(실종아동찾기센터 182번)에 지체 없이 신고 등 조치</li> </ul>	나. 입소 절차(「아동복지법시행령」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 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실종아동찾기센터 182번)에 지체 없이 신고 등 조치</li> </ul>	내용 명확화
	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아동 권리보장원의 장에게 각각 제출</li> </ul>	<삭제>	관련없는 내용으로 삭제 (※ 아동학대대응 과-3591('22.5.2)호 참조)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VI. 아동복지 시설 운영		※ 아동권리보장원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6층 실종아동전문센터 (전화) 02)6383-0200 (모사전송) 02)6283-0698 (웹 사이트) www.ncrc.or.kr (전자우편) ncrc@ncrc.or.kr		
	250	●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및 보건복지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가정위탁(아동통합정보시스템(서식3의1호) 동의서 준용)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정보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동의서(서식3의1호)을 준용) 하여 확인 및 검토	●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및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대응과에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아동통합정보시스템(서식3의1호) 동의서 준용)하여 확인 및 검토	
	277	<p><b>〈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의무 등(법 제6조제1항)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li> <li>● 신상카드 작성·제출(법 제6조제2항, 제3항)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신상카드를 보내야 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li> <li>●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법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li> </ul>	<p><b>〈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의무 등(법 제6조제1항)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함(※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li> <li>● 신상카드 작성·제출(법 제6조제3항) 보호 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신상카드를 제출하여야 함 (※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li> <li>●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법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li> </ul>	법령내용 명확화
203~205	다. 아동 교육 (2)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 시설의 장은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다. 아동 교육 (2)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 시설의 장은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아동 복지법개정 ('22.6.21)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VI. 아동복지 시설 운영	<b>&lt;참고 1 아동에 대한 6대 의무교육&gt;</b>							
		<b>구분</b>	<b>성폭력 예방 교육</b>	<b>아동학대 예방 교육</b>	<b>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b>	<b>감염병 및 악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교육</b>	<b>재난대비 안전 교육</b>	<b>교통안전 교육</b>
	<b>실시 주기 (총 시간)</b>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b>초등 학교 취학 전</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 몸의 소중함</li> <li>내 몸의 정확한 명칭</li> <li>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li> <li>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li> <li>성폭력의 개념 및 성폭력의 주제에 대한 교육</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li> <li>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li> <li>자기감정 표현하기 및 도움 요청하기</li> <li>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li> <li>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li> <li>유괴법에 대한 개념</li> <li>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li> <li>예방접종의 이해</li> <li>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li> <li>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li> <li>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 보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의 원인과 예방법</li> <li>뜨거운 물건 이해하기</li> <li>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li> <li>화재 시 대처법</li> <li>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li> <li>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li> <li>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li> <li>안전한 도로 횡단법</li> <li>안전한 통학 버스 이용법</li> <li>버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li> <li>날씨와 보행 안전</li> <li>어른과 손잡고 걷기</li> </ol>	
	<b>교육 내용</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의 개념</li> <li>성폭력의 위험 상황</li> <li>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li> <li>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 및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li> <li>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li> <li>학대 위험 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아동학대 신고 요령</li> <li>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li> <li>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li> <li>유괴법에 대한 개념</li> <li>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li> <li>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li> <li>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li> <li>예방접종의 이해</li> <li>약물·화학제품의 필요성과 위험성 이해하기</li> <li>중독·오용·남용의 개념 알기</li> <li>중독사고의 대처법과 예방법</li> <li>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li> <li>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li> <li>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의 원인과 예방법</li> <li>화재 시 대처법</li> <li>화재 신고 요령</li> <li>화상 대처법</li> <li>소화기 사용법</li> <li>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한 통학로 알기</li> <li>상황에 따른 안전한 보행법</li> <li>버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li> <li>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법</li> <li>교통법규 이해하기</li> </ol>	
	<b>초등 학교</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의 개념</li> <li>성폭력의 위험 상황</li> <li>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li> <li>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 및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li> <li>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li> <li>학대 위험 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아동학대 신고 요령</li> <li>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li> <li>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li> <li>유괴법에 대한 개념</li> <li>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li> <li>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li> <li>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li> <li>예방접종의 이해</li> <li>약물·화학제품의 필요성과 위험성 이해하기</li> <li>중독·오용·남용의 개념 알기</li> <li>중독사고의 대처법과 예방법</li> <li>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li> <li>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li> <li>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의 원인과 예방법</li> <li>화재 시 대처법</li> <li>화재 신고 요령</li> <li>화상 대처법</li> <li>소화기 사용법</li> <li>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한 통학로 알기</li> <li>상황에 따른 안전한 보행법</li> <li>버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li> <li>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법</li> <li>교통법규 이해하기</li> </ol>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구분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악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주·고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폭력의 개념</li> <li>2. 성폭력 위험 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li> <li>3. 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li> <li>4.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 및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li> <li>2. 아동학대 및 행위자 개념</li> <li>3. 학대 위험 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아동학대 신고 요령</li> <li>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li> <li>5.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li> <li>6.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인전락 및 위험상황 알기</li> <li>2.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li> <li>3.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li> <li>4. 가출예방 관련 교육</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li> <li>2. 예방접종의 이해</li> <li>3. 항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li> <li>4.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li> <li>5. 항정신성 의약품의 피해와 법적 처벌 규정</li> <li>6.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li> <li>7.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li> <li>8. 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li> <li>2. 화재 시 대처법</li> <li>3. 소방기구 사용법</li> <li>4.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발생 시 행동방법</li> <li>5. 재난안내시스템 활용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li> <li>2. 이륜차와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li> <li>3. 인간 능력의 한계와 위험 예측</li> <li>4. 교통법규와 사회적 책임</li> <li>5. 교통사고와 방지대책</li> </ol>	
		교육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li> <li>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li> <li>3. 시청각 교육</li> <li>4. 사례 분석</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li> <li>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li> <li>3. 시청각 교육</li> <li>4. 사례 분석</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li> <li>2. 시청각 교육</li> <li>3. 사례 분석</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li> <li>2. 시청각 교육</li> <li>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li> <li>4. 사례 분석</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li> <li>2. 시청각 교육</li> <li>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li> <li>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li> </ol>		
VI-2. 보호 아동의 입·퇴소 및 지원 등	1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우선 보호하되, 지체없이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우선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으나, 지체없이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고, (영제15조 제2항)</li> </ul>			시행령 문구에 맞게 조정	
	1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 아동이 학교를 이탈한 경우 이를 지자체로 연계하는 것으로 공동생활 가정 운영자가 대상 청소년 발생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 아동이 학교를 이탈한 경우 이를 지자체로 연계하는 것으로 아동복지 시설 운영자가 대상 청소년 발생 시</li> </ul>			내용에 맞게 문구 조정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VI-2. 보호 아동의 입·퇴소 및 지원 등		지자체(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로 해당 내용을 통보	지자체(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로 해당 내용을 통보	
	196	바.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1) 퇴 소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 신청서 제출	바.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1) 퇴 소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하였거나(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한 경우),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 신청서 제출	법 제16조의3 개정사항 반영,  상세내용 본문 참조
	197	(2) 보호기간 연장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 중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아동의 연장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기간 연장 신청(「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2) 보호기간 연장 및 추가 연장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 중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아동의 연장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기간 연장 신청(「아동복지법」 제16조의 3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 ●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아동복지법」 제16조의 3 제3항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 추가 연장 가능(법 제16조 제3항, 시행령 제22조) ※ 추가 연장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사유는 「2022 아동보호서비스업무 매뉴얼」 96쪽, 99쪽 참조	법 제16조의3 개정사항 반영,  상세내용 본문 참조
	200	가. 아동 인권 보호  <신설>	가. 아동 인권 보호  ☞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보호매뉴얼」 및 관련 동영상교육 등 속지(아동권리과-3511, 2022.7.28., -3599(2022.8.2.))	2022년 공문으로 안내한 사항을 사업안내에 추가
	203	●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참고1 참조)	●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6(2022.6.21. 개정)의 교육기준에 따라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참고1 참조)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상세내용 본문 참조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213~ 214	<신설>	<p>자.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일반 생계급여(개별급여) 지급(아동권리과 -6785(2022.12.29.)호)</p> <p>(1)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 지급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연장 기간 별도 거주 시 자립생활 경험이 가능하도록 '23년 1월부터 생계급여를 아동 본인 계좌로 개별 급여(일반 생계급여)로 지급</li> <li>* 일반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적용(시설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li> <li>** 일반 생계급여 지급액은 최대 약 62만원 ('23년)이나, 소득·재산에 따라 지급액 상이</li> <li>● (대상) 아동양육시설 보호연장아동에 한해 적용</li> <li>* 현재 별도 거주 중인 보호연장아동도 '23.1월부터 일반 생계급여 전환 가능(소급적용 불가)</li> </ul> <p>(이하 본문 참고)</p>	'23.1월 적용 제도 개선사항, 공문으로 안내한 사항을 사업안내에 추가
VI-3. 시설의 운영	217	<p>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식품위생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사고 및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인 이상인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집단급식소 설치를 반드시 신고</li> <li>※ 집단급식소 미신고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제101조)</li> <li>* 「식품위생법」 제2조, 제51조, 제52조, 제88조, 제94조, 제10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법」 제52조</li> </ul> <p>라. 급식소 설치 등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소 미등록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제29조)</li> </ul>	<p>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식품위생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사고 및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인 이상인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집단급식소 설치를 반드시 신고</li> <li>※ 집단급식소 미신고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제101조)</li> <li>* 「식품위생법」 제2조, 제51조, 제52조, 제88조, 제94조, 제10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법」 제52조</li> </ul> <p>라. 급식소 설치 등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소 미등록 :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제29조)</li> </ul>	문구 명확하게 정정
	219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시설을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동일한 부지 또는 건물에 법 제52조</li> </ul>	시행규칙 개정(신설) 사항 반영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VI-3. 시설의 운영			제1항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 중 폐업된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 참조) (개정 2022. 6. 22.)															
	226	바. 시설 안전 관리 <신설>	바. 시설 안전 관리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안내														
VI-5. 인건비 및 운영비	251	1. 아동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나. 운영비 지원 ● 시설보호아동 보호단가 - 부가급여(관리운영비) 권고기준 ● 기본운영비 : 월 63만원/개소 ● 아동 개인별 지원액 (단위 : 원, 인/월)	1. 아동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나. 운영비 지원 ● 시설보호아동 보호단가 - 부가급여(관리운영비) 권고 기준 ● 기본운영비 : 월 65만3천원/개소 ● 아동 개인별 지원액 (단위 : 원, 인/월)	세부내용 본문참조														
		<table border="1"> <thead> <tr> <th>아동양육 시설</th> <th>아동보호 치료시설</th> <th>자립지원 시설</th> <th>아동일시 보호 시설</th> </tr> </thead> <tbody> <tr> <td>137,480</td> <td>217,460</td> <td>89,360</td> <td>217,460</td> </tr> </tbody> </table>	아동양육 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일시 보호 시설	137,480	217,460	89,360	217,460	<table border="1"> <thead> <tr> <th>아동양육 시설</th> <th>아동보호 치료시설</th> <th>아동일시 보호시설</th> <th>자립지원 시설</th> </tr> </thead> <tbody> <tr> <td>142,560</td> <td>225,500</td> <td>225,500</td> <td>92,660</td> </tr> </tbody> </table>	아동양육 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자립지원 시설	142,560	225,500
	아동양육 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일시 보호 시설														
137,480	217,460	89,360	217,460															
아동양육 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자립지원 시설															
142,560	225,500	225,500	92,660															
253	3) 지원 일시정지 및 제외 등의 시설 ● 심각한 아동학대 등으로 조사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하여 일시정지 가능	(3) 지원 일시정지 및 제외 등의 시설 ● 심각한 아동학대로 인해 경찰조사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하여 일시정지 가능. 단, 지자체는 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권 부여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주고, 해당 시설의 보호아동과 종사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판단과 조치 필요	지원 정지시 신중한 판단 추가															
254	●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시설은 신규 시설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 실적을 재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개인적 사정 등으로 휴지한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에 준하여 지원여부 판단 - 아동학대로 인한 사업정지 시설에 대해서는 재개 후 최소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평가	●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시설은 신규시설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 실적을 재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삭제>  - 아동학대로 인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재개 후 최소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	중복문구 삭제,  사업정지를 사업정지 이상으로 문맥에 맞게 정정.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VI-5. 인건비 및 운영비	255	다. 인건비 (1) 지원단가 : 31,127천원(인. 연간)	다. 인건비 (1) 지원단가 : 32,125천원(인. 연간)	세부내용 본문참조
	256	라. 운영비 ● 지원단가 : 351천원(개소. 월)	라. 운영비 ● 지원단가 : 470천원(개소. 월)	세부내용 본문참조
VI-7. 시설관리 등 행정 처분 및 과태료)	272	다. 행정처분 ● 유의사항 -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받을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분 적용 (신설)	다. 행정처분 ● 유의사항 -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받을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분 적용 - 행정처분 시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호아동과 종사자의 피해가 없도록 법적 판단 내용을 고려하여 실행	행정처분시 법적 판단 고려
	272	[별표 16] <개정 2022. 6. 21.>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신설)	[별표 16] <개정 2022. 6. 21.>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별표16 개정사항 반영
	274	마. 과태료 부과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별표17 참조  [별표 17] <개정 2022. 6. 21.> 과태료의 부과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신설)	마. 과태료 부과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별표17 참조  [별표 17] <개정 2022. 6. 21.> 과태료의 부과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시행령 별표17 개정사항 반영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VI-7. 시설관리 등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VII. 아동복지 교사 지원	282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돌봄기관,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가정 등	
	283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과정	* 필수 및 선택교육 과정	
	2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돌봄시설)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다음의 지역아동센터 및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등</li> <li>●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및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li> <li>●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li> </ul>	
	28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li> <li>2)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본운영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li> <li>3) 「아동복지법」 및 사업지침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li> <li>4)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신고정원이 10명 이상이고 이용아동(현원)*이 10명 이상인 시설, 그 외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교사 교육지원 필요 아동이 5명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다만, 농산어촌 등 지역적 특성 또는 아동 특성상 특별한 지원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정기돌봄 아동 수로 산정</li> <li>5)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li> </ol>	
	289	⑤ 지원대상이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을 원할 경우	⑤ 지원대상이 업무태만 등 타당한 사유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을 원할 경우	
290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특성상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문화, 장애아동 이용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경우 1개소 배치 가능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특성상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문화, 장애아동 이용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경우 또는 당초 지원대상의 지원 중단 등 시·군·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Ⅶ. 아동복지 교사 지원			구청장이 불가피하게 다른 지원 대상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소 배치 가능	
	291	(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294	- 시·군·구청장이 지역특성상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문화, 장애아동만을 전담하는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기본 분야(주25시간) 교사까지 1개소 배치 가능	- 시·군·구청장이 지역특성상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문화, 장애아동만을 전담하는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또는 당초 지원대상의 지원 중단 등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하게 다른 지원 대상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분야(주25시간) 교사까지 1개소 배치 가능	
	297	- (근무지) 드림스타트 또는 시·군·구청	- (근무지)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포함)	
	298	- 만 19세 이상으로 근무시작일 기준 실업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 만 19세 이상인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298	①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서식7) <신설>	①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서식7) * 근무시작일 기준 실업자인 경우, 실직 기간 작성 필수	
	300	실직상태 • 근무시작일 기준 실직상태	<삭제>	
	300~ 301	세부심사 <신설>	세부심사 실직상태 • 실직상태 확인하여 해당 시 우대	
	303	다. 우대사항 <신설>	다. 우대사항 ● (실업자 우대사항) 근무시작일 기준 실업자 * 해당 시 참여 신청서(서식7) 최근 실직 기간 작성 필수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근무유형	기본급	보험가입	퇴직금	
Ⅶ. 아동복지 교사 지원	305		전일 근무교사	기본 분야	1,260,000원	사회보험 전체	지급 (기본급)
			전일 근무교사	특화 분야	2,011,000원	사회보험 전체	지급 (기본급)
			단시간 근무교사	기본 분야	658,000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지급
부록-보호아동 면접교섭 지원 매뉴얼	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아동복지법 제4조)</li> <li>● 그러나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율은 저조한 실정이며, 가정외 보호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아동의 '원가정 보호' 권리가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li> <li>● 보호아동 대부분이 원가정(가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교류가 없어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원가정 복귀 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li> <li>● 또한, 보호아동 면접교섭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아동보호체계별·지역별 면접교섭 서비스 격차가 존재함</li> <li>● 이에, 분리보호된 아동과 가족 간 면접교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령에 규정하는 등 원가족 간 면접교섭 지원 강화를 통해 조속하고 안정적 원가정 복귀 및 적응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아동복지법 제4조)</li> <li>● 그러나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율 저조로 가정외 보호기간이 장기화되어 아동의 '원가정 보호' 권리 저해 및 원가정(가족)이 존재함에도 정기적인 교류가 없어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원가정 복귀 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li> <li>● 이에, 원가족 간 면접교섭 지원 강화를 통해 조속하고 안정적 원가정 복귀 및 적응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li> </ul>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과 원가정(가족) 간 행동 및 심리 상태를 면밀히 관찰 및 평가하여 이후 면접교섭 계획에 반영</li> <li>※ 비대면 면접의 경우 '비대면 면접교섭 월지(결과보고서)'[서식 3의 1호]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과 원가정(가족) 간 행동 및 심리 상태를 면밀히 관찰 및 평가하여 이후 면접교섭 계획에 반영</li> <li>※ 비대면 면접의 경우 '비대면 면접교섭 월지(결과보고서)'[서식 3의 1호] 작성</li> </ul>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부록-보호아동 면접교섭 지원 매뉴얼			※ 단, 위탁아동이 동일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 여러 차례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경우(예: 월 3회 이상)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여러 이행건의 결과를 한 건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음																																																																																																																																																																																																																																															
	326	다. 각 시·도에서는 매월말 기준으로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우리 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분기별로 제출 - 제출시기 : 매월말 기준 작성,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다. 각 시·도에서는 분기별 실적을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우리 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 3월, 6월, 9월,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326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rowspan="3">보호유형</th> <th colspan="3">아동현황</th> <th colspan="2">면접교섭 자원계획</th> <th colspan="2">면접교섭 서비스 제공계획</th> <th colspan="5">면접교섭 실시여부</th> </tr> <tr> <th rowspan="2">전체 아동 수</th> <th rowspan="2">면접 대상 아동 수</th> <th rowspan="2">면접 미대상 아동 수</th> <th rowspan="2">수립</th> <th rowspan="2">미수립</th> <th rowspan="2">수립</th> <th rowspan="2">미수립</th> <th rowspan="2">미실시</th> <th rowspan="2">비대면</th> <th colspan="5">대면</th> </tr> <tr> <th>1회</th> <th>2회</th> <th>3회</th> <th>4회</th> <th>5회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기 보호</td> <td rowspan="3">시설</td> <td>아동양육시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공동생활가정</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소계</td> <td>가정위탁</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7">시도명</td> <td rowspan="3">신규 보호</td> <td>아동양육시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공동생활가정</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소계</td> <td>가정위탁</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보호유형	아동현황			면접교섭 자원계획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계획		면접교섭 실시여부					전체 아동 수	면접 대상 아동 수	면접 미대상 아동 수	수립	미수립	수립	미수립	미실시	비대면	대면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기 보호	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소계	가정위탁																		소계																		시도명	신규 보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소계	가정위탁																		소계																		계																		
구분	보호유형	아동현황					면접교섭 자원계획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계획		면접교섭 실시여부																																																																																																																																																																																																																																							
		전체 아동 수	면접 대상 아동 수	면접 미대상 아동 수			수립	미수립	수립	미수립	미실시	비대면	대면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기 보호	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소계	가정위탁																																																																																																																																																																																																																																																
		소계																																																																																																																																																																																																																																																
시도명	신규 보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소계	가정위탁																																																																																																																																																																																																																																																
		소계																																																																																																																																																																																																																																																
	계																																																																																																																																																																																																																																																	
	서식 모음 - Ⅶ. 아동복지 교사 지원	413, 420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 시설용)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치료 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용)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자세한 내용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참고)

1. 아동보호서비스 기본원칙	3
2.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6
3. 아동보호서비스 수행인력·기관별 역할분담방안	9
4.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12
5.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13
6.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및 지원	14





## 1. 아동보호서비스 기본원칙

### 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 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조치 결정 등 아동보호 전 과정에 걸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조제3항)
- 아동보호는 ‘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선 보호 후 행정 처리’ 원칙에 따라 보호(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호 원칙)

- ◆ 보호자가 특정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으로 배치를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의 요구는 아동 배치 시 최대한 고려하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 아동의 보호는 최대한 아동의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의 배치 요구를 수용하되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보호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호조치 결정

### 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 아동의 경우 대부분 원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 아동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으므로 원가정 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은 취약 아동(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가족 해체를 예방하여야 함
  - ※ 보호자가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설 입소나 입양기관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우선 원가정에서 보호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서비스 연계·지원 등)
- 아동을 가족의 보호로부터 분리할 때는 가능하다면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기간에 한해야 하며, 분리 결정은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
  -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 시에도 해당 아동이 최대한 조속히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

#### 아동의 ‘원가정 보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아동복지법 개정, '16.3.22. / '18.3.23.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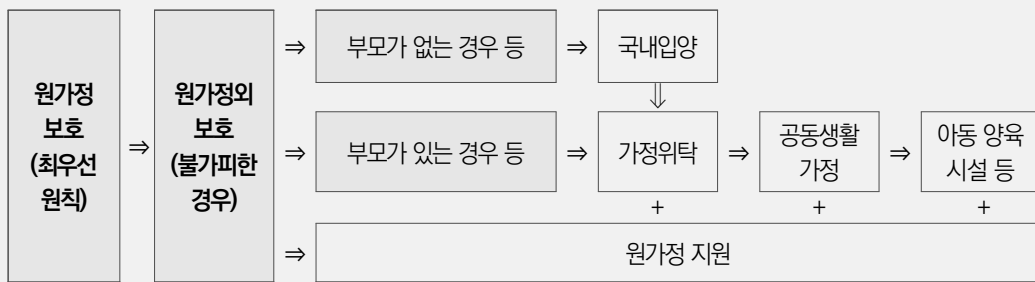
### 다.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 아동을 불가피하게 분리 보호하는 경우, 아동의 개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하는 순서로 대안양육 유형을 결정하여야 함  
※ (UN대인양육지침 21조) 시설 양육의 활용은 그 환경이 아동 개인에게 특히 적절하고, 필요하며, 건설적이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 즉, 분리보호 형태 결정 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형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 참고 원가정 보호 원칙과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다음 순으로 조치 고려

☞ 국내 입양(부모가 없는 경우 등) → 가정위탁 → 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조치 실시



### 라.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가 상담,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보호자와 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

### 마. 예방적 접근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취약 아동(가구)의 경우 빈곤, 질병, 이혼 등 복합적 욕구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순 신청에 의한 급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 및 가구에 대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 또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아동학대 정보,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자료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발굴·예방 체계를 활성화함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 바.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 보호자 등의 신청 또는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가구)을 발견한 경우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통합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보호자가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방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여러 번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등에게 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간·장소 등을 최대한 반영
- 또한, 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경우 가족과의 접촉 및 재결합 가능성을 촉진하고 아동의 생활에 대한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아동이 살아온 가정에서 최대한 가까운 환경에서 보호

####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의 4대 기본원칙

#####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국가(196개국)가 비준한 인권협약

-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 만장일치 채택('89.11.20.)
- 우리나라는 '91.11.20. 비준
- (2조: 비차별)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함
- (3조: 아동 이익 최우선)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6조: 생존·발달권)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함
- (12조: 아동 의견 존중)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함

## 2.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 가. 개요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①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 원가정 복귀 → ④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입양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실시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원가정을 통한 보호가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에 의한 보호를 추진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 ※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형 보호 실시
  -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아동이 원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복지 급여 및 서비스 등을 최대한 연계·지원하도록 함
  - 원가정에서 보호가 적합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실시하되, 원가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아동이 조속히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서비스 제공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상황점검을 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15조의3)

### 나.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 (1) 원가정 보호(복귀)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 주요 내용 :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연계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 하에 드림 스타트에 우선적으로 연계
- 만 13세 이상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는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의뢰하되 미배치 시·군·구는 드림스타트에 연계

## (2)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 주요 내용 : 「민법」 제777조제1호(8촌 이내의 혈족) 및 제2호(4촌 이내의 인척)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친족의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드림스타트에 연계(만 13세 이상은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
  - 다만, 아동을 보호할 친족의 가정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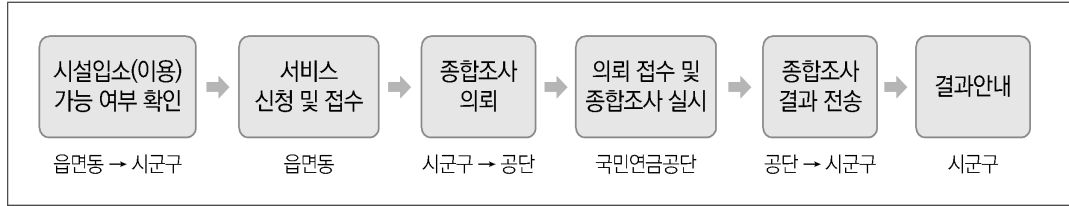
## (3) 가정위탁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 주요 내용 :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 중 피해아동,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 경계선 지능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 등으로써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4)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4호
- 주요 내용 :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 복지급여 연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및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이 어렵거나 위탁가정의 부족 등 가정위탁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고려
    - ※ 장애인 등록 아동의 경우 장애인 부서로 의뢰하여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되기 전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임시보호 가능

**참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절차**



※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참고

**(5)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5호
- 주요 내용 :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킴

**(6) 입양**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입양특례법
- 주요 내용 : 보호대상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친생부모가 입양을 결정하기 전,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으로 양육 및 정부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친생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입양 외 다른 양육 대안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자발적인 입양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입양의뢰 된 아동은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됨

### 3. 아동보호서비스 수행인력·기관별 역할분담방안

#### 가.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 (1) 시·도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 (추진배경) 국가 아동보호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보급하고,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 기술 지원 및 종사 인력에 대한 슈퍼비전을 수행할 인프라 필요
- (추진목표) 시·도가 관내 아동보호체계의 총괄 역할 수행, 시·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시·도에서 해결하는 상향식 아동보호체계 구축
- (기능 및 역할) 지자체별 환경에 적합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 지역 간 아동보호서비스 격차 해소 지원
  - (정책)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을 시·도 단위 정책으로 수립 및 지원, 정책 기획 및 개발  
※시·군·구 아동보호체계(아동학대대응 포함) 구축·운영 총괄,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사업 등
  - (평가) 시·군·구 아동보호체계 내실화 및 성취도 제고를 위해 시·군·구 평가지원  
※시·군·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실적 관리 등
  - (사업지원) 시·군·구별 환경 분석 및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아동보호팀 기능·역할 수립 지원, 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파악,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친권제한·후견인 선임·채무상속 등 법률적 이슈 대응 지원, 자문 제공,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시·군·구간 사례 조정 등
  - (교육)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아동보호 전문인력 (아동보호 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 기타 유관기관 등) 종사자 교육  
※아동보호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자체 맞춤형 교육, 슈퍼비전 자문단 운영 등
  - (연계)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다양한 시설·자원의 현황조사 및 발굴, 지역사회 아동보호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여건에 맞춘 민·관 협력사례 발굴  
※일시보호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가정 외 보호자원 관리·감독, 문제행동·ADHD·고난도 아동 등 보호 가능한 관내 인프라 풀(pool) 관리, 광역단위 법원·경찰청·교육청·전담의료기관 등 협업체계 관리 등
  - (연구·통계) 지역사회 아동보호 관련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데이터 생성,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아동보호 사업을 개발·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타) 위의 내용 이외 지역사회 아동보호사업 수행·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 (2) 시·군·구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 (목적) 시·군·구는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관내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초기상담, 일시보호,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 유기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 궁극적으로는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 또는 보호기관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성장·발달토록 하는 데 기여
- (구성) 아동보호전담요원, 보호대상아동 담당공무원(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입양, 자립 등) 및 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 연계해서 업무 수행하도록 통합적인 조직 구성
  - 다만, 지자체별 인력규모를 고려하여 ①아동학대대응팀(학대조사)- 아동보호팀(아동보호서비스 및 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또는 ②아동보호팀(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서비스)- 아동 지원팀(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등 두 개 이상의 팀으로 아동보호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
  - \* 두 개 이상의 팀으로 분리하는 경우에도,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은 과에 속하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수적
  - \*\* 아동학대대응팀, 아동보호팀, 아동지원팀 등 아동보호전담조직의 이름은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사용

## 나.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주체별 역할

### (1) 시·군·구 아동보호팀

- 아동보호팀장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이 서로 협력하여 아동을 중심으로 유기적·통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 또는 사업수행인력 간 해석이 다른 부분, 기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중재하고 슈퍼비전을 제공함
-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은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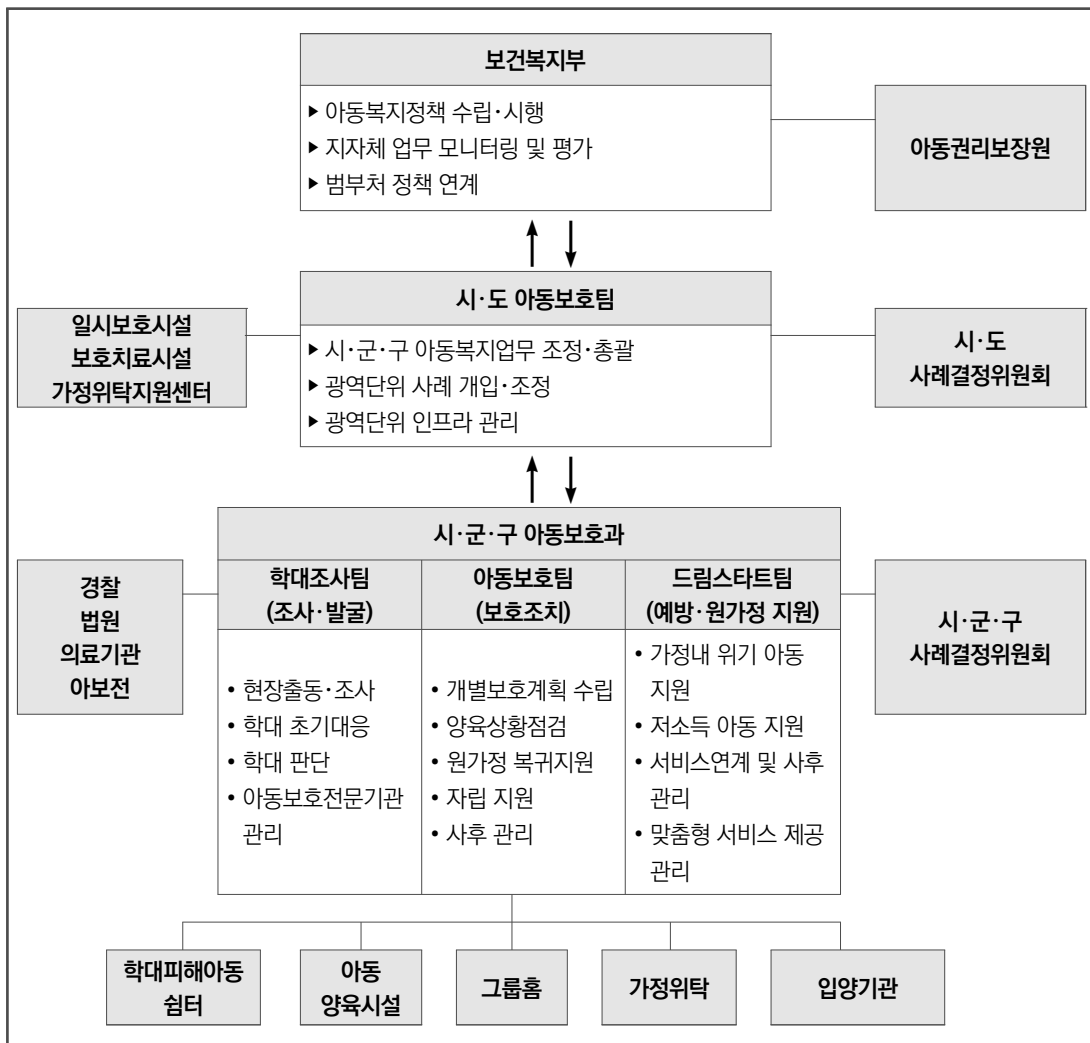
### (2)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자

- 읍·면·동에서 보호자의 의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경우, 초기 상담( **서식 1** : 접수상담지)을 수행하고,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 아동복지시설이 직접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읍·면·동 또는 시·군·구 아동보호팀을 통해 초기상담 및 지원받도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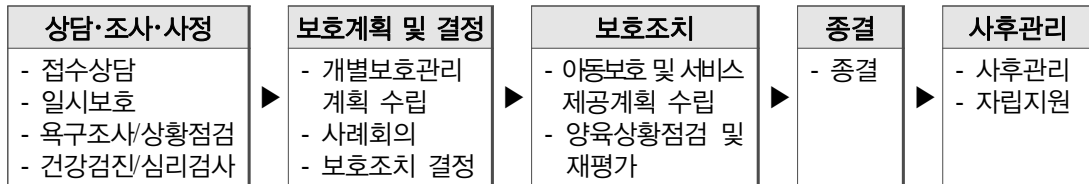


- 초기상담 결과 아동의 분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팀으로 연계
  -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의 분리보호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정방문 하는 경우, 기존 상담자가 방문 동행하는 등 협조하며, 불필요한 추가상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인적사항 등 상담결과를 포함하여 의뢰함
- 초기상담 결과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으나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연계
- 초기상담 결과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으나 해당 가구에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고난도 사례라고 판단한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연계

다. 아동보호 추진체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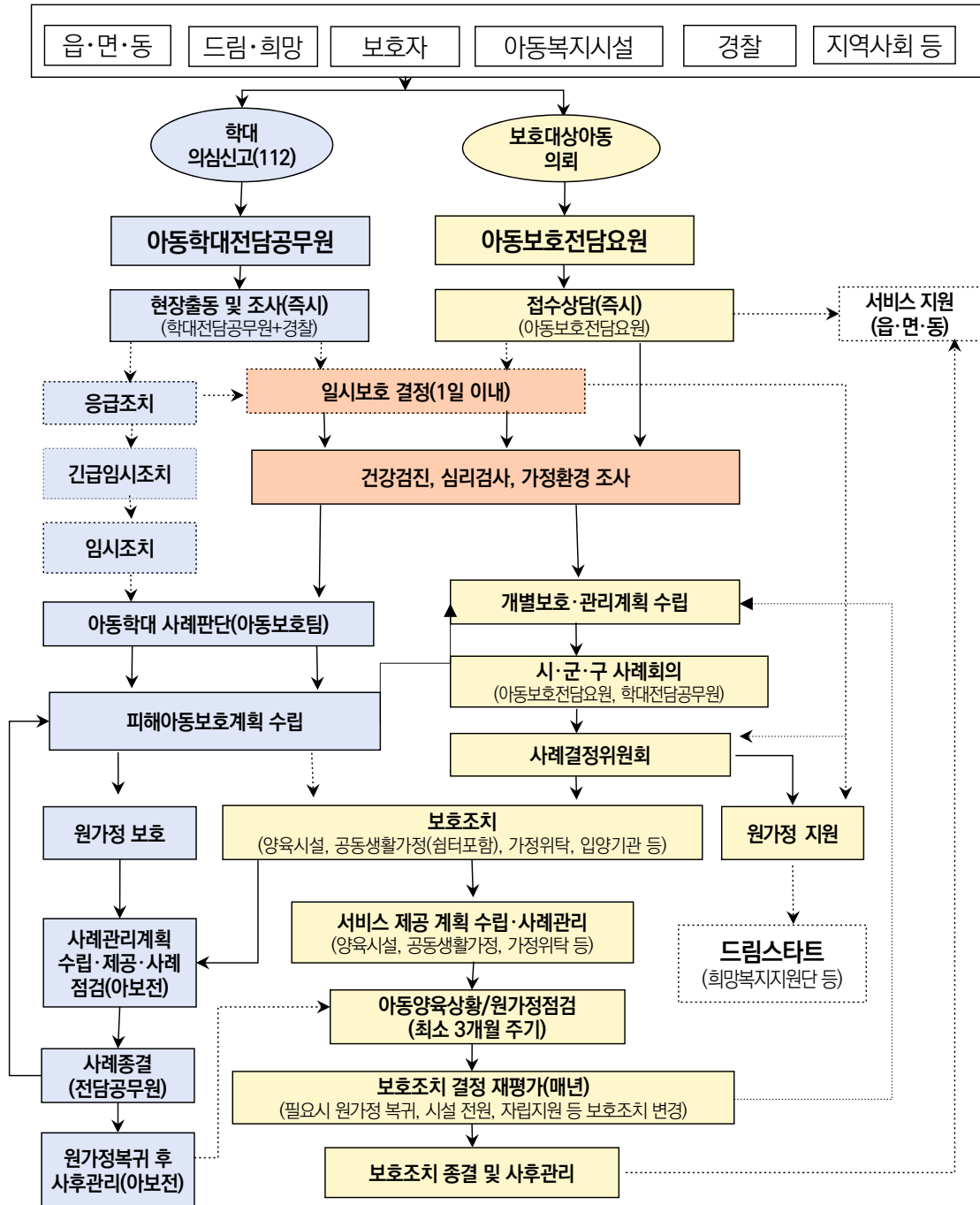


## 4.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 1단계 : 상담, 조사, 사정
  - (접수상담) 기초정보 파악 및 상담 결과에 따른 대상자 접수, 서비스 연계
  - (일시보호) 접수상담 과정에서 긴급하게 아동을 분리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동을 즉시 일시보호시설 또는 일시위탁가정 등에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보호
  - (욕구조사 등) 아동과 가정의 문제 및 욕구를 파악, 보호서비스 제공 및 방향 등 사정
- 2단계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여부)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조사·상담·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조치 유형 및 보호기간, 사례관리 등 계획을 수립
  - (보호결정) 사례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 3단계 : 보호조치
  - (서비스계획 수립 및 제공) 아동이 분리보호 시 원가정의 보호기관(가정위탁, 공동생활 가정, 양육시설, 입양 등)과 협업하여 아동에 대한 서비스계획을 수립 및 제공
  - (양육상황 점검) 아동의 분리보호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황, 원가정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조치 및 서비스 계획 변경 필요성 검토
- 4단계 : 보호조치 종결
  - 양육상황 점검결과 보호조치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종결
- 5단계 : 사후관리
  - 보호종료 후 아동의 가정 방문 및 서비스기관(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청소년복지기관 등) 연계 등 해당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지도·관리 제공

## 5.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 6.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및 지원

### 가. 채용

#### (1) 채용 원칙 :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 시 채용절차 지체 없이 시행

-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퇴직, 임신, 출산 등의 사유 발생 시 시·군·구는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등 공백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음
  - 임신·출산을 앞둔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 권고

#### (2) 채용 기준

##### ● 자격 및 경력 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기본) 타 사례관리인력과 유사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및 일정기간 사회복지 업무 경력자로 설정
  - (우대)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가능하도록 입양기관, 미혼부모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조건 관련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우선 준수하여 채용

(3) 채용 형태 :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이 원칙임**

채용 관련 참고사항
<p>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7.7.20) -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 연차별 정규직 전환 추진</p> <p>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퇴사후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경우 포함)의 인건비는 조직관리 기준의 기준인건비(총액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편성·운영 가능(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1898(2017.5.26.))</p> <p>③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등 적용(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99(2012.12.13.)) ※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사업에 포함</p>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35시간 미만**의 근로형태 **채용 불가**
-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 사례관리의 연속성(보호대상아동과의 친밀감·신뢰감 형성)을 위해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하며, 계약 만료 시 장기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함

(4) 채용 절차

-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및 근로자간의 계약관계로서, 지자체는 복지부 예산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나. 업무수행 및 권한 부여

(1) 업무수행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상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 외 타 업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주의  
\* 행정보조 등 기타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여 보호대상아동 상담·조사,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양육상황점검,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고유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 보호대상아동 담당공무원(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입양, 자립 등) 및 학대전담공무원과 연계해서 업무 수행하도록 조직 구성 및 전담요원 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아동보호팀을 설치하여 학대조사,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아동보호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함

- 다만, 지자체별 인력 규모를 고려하여 ①아동학대대응팀(학대조사)- 아동보호팀(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또는 ②아동보호팀(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서비스)- 아동지원팀(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등 두 개 이상의 팀으로 아동보호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

〈 지자체 아동보호팀 신설안 (한 팀으로 구성하는 경우) 〉

아동복지과		
아동친화정책팀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 종합계획</li> <li>· 아동 놀권리(놀이터 등)</li> <li>· 아동참여권 확대 사업</li> <li>· 지역아동센터</li> <li>· 다함께돌봄</li> <li>·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li> <li>· 아동수당</li> <li>· 아동급식</li> <li>· 아동안전관리 등</li> </ul>	<p>&lt;아동학대전담공무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조사 및 초기 대응</li> <li>· 경찰, 법원, 병원 등 협업</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상황 확인</li> </ul> <hr/> <p>&lt;아동보호전담요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외 보호 필요 아동</li> <li>· 초기상담, 아동사정, 가정환경조사</li> <li>· 원가정 복귀 지원</li> <li>· 개별보호계획수립 및 사례회의</li> <li>· 보호아동 양육상황점검</li> </ul> <hr/> <p>&lt;요보호아동 담당공무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그룹홈 지원·점검</li> <li>· 디딤씨앗통장, 자립지원사업 운영</li> </ul>	<p>&lt;공무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림스타트 사업 계획 수립</li> <li>· 지역자원 발굴·연계</li> <li>· 프로그램 구성·진행</li> <li>· 홍보, 센터 운영 지원</li> <li>· 인력관리 및 예산, 회계관리</li> </ul> <hr/> <p>&lt;사례관리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내 지원 필요 아동</li> <li>· 저소득 아동 가정 방문</li> <li>· 서비스연계 및 사후관리</li> <li>· 맞춤형 서비스 제공관리</li> </ul>
6-7명(공 5-6, 아동복지교사 1)	7-9명(공 5-6 + 전담요원 2-3)	6-7명(공 1-2 + 사례관리사 4-5)

(2) 업무 권한

● 신분증 발급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관련 기관 방문 시 업무 수행을 위한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시·군·구청장이 신분증 발급하고, 크기 및 형태 등은 공무원증과 동일

- 각종 권한 부여

-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포털(새올행정) 및 전자결재 사용 권한, 공공기관용 외부 메일 계정 (시·도 및 시·군·구), 행복e음 ID 부여
- \* 행복e음 권한 부여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세부지침 참고

## 다. 복무

### (1) 복무 원칙

-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준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소속 지자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 (2) 준수사항

- 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함
- ②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 이탈 금지
- ③ 근무 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됨.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④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 ⑤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종사자로부터 증여 금지
- ⑥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 겸직 금지

### (3) 근무 조건

- 주 5일 근무이며, 상근 1일 8시간(09:00~18:00)
- \* 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일 7시간 근무

### (4) 출장

-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내·관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장 명령 및 이에 따른 경비 지급

## (5) 휴가

-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보장
- 그 외에 휴가, 휴일, 초과근무 등 근로시간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및 「근로기준법」을 따름
- 다만,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휴가 부여 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근 및 휴일근로), 제57조(보상 휴가제))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가능

## (6) 정년

-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

## 라. 교육

-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시·도/시·군·구 아동보호팀장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중
  - 아동보호전담요원 기본교육(1차): 신규채용 인력 및 기 채용 인력 중 미이수자 대상 아동 보호체계 개편 취지, 업무 프로세스 등 기초역량 강화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기본교육(2차): 기본교육(1차) 수료자 대상 현장 실무능력 강화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보수교육: 기본교육(2차) 수료자 대상 고난도 현장 사례 등 전문성 강화 지원
  - 아동보호팀장 과정: 시·도/시·군·구 아동보호팀장 대상 아동보호팀 운영, 연계협력 등 현장 실무 교육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아동보호팀장은 1년에 최소 1회 이상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함

## 마. 보수

- 원칙 : 사업예산 규모(단가)를 최소기준으로 하여 보수를 결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추가지급 권장
- 연봉책정은 신규임용 대상자의 경력, 임용 전 보수 수준,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p.198)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법령(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최소 2년을 갖춘 전문인력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 공무원직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채용을 권고함
- 시·도의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지원 총괄, 교육, 지역 매뉴얼 관리 등 역할**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채용을 권고함
- 불가피하게 인건비 집행차액이 발생한 경우, 국비지원기준 한도 내에서 특수직무수당, 명절수당 등 보전수당 또는 기타 가능한 형태로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인건비 보전하여 국비지원기준(보조사업 교부조건) 반드시 준수
- 퇴직급여 :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 바. 예산 운영

### (1) 예산운영 기본 원칙

- **지원 방식** : 지자체 경상보조(서울 50%, 지방80%)
- **예산 편성 및 집행은 관련 법령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 집행·정산 및 정보공시 등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 **사업예산의 집행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의 목적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 \*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당초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업무를 부여 시 **사업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 (2)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 **인건비** : 기본급(사회보험본인부담금 포함), 시간외수당,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으로 구성
  - **기본급** : 단일급 지급('22년 기준, 약 월 212.6만원)
  - **시간외 수당** : 월 10시간 이내 지급하며, 지급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비로 적극 편성

❖ 시간외 수당 관련 유의사항

- 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및 근로기준법 내 근로시간 규정 및 연장근로제한에 관한 규정 준수
- ② 지자체는 시간외 근무대장을 관리하여 수당 지급 조치
- ③ 사전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급범위를 알 수 있도록 안내
- ④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준용 가능  
(단, 지자체의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될 경우, 초과분은 지자체 부담)

-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시간외 수당 관련 유의사항

- 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및 근로기준법 내 근로시간 규정 및 연장근로제한에 관한 규정 준수
- ② 지자체는 시간외 근무대장을 관리하여 수당 지급 조치
- ③ 사전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급범위를 알 수 있도록 안내
- ④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준용 가능  
(단, 지자체의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될 경우, 초과분은 지자체 부담)

**퇴직금 관련 사항**

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제8조, 제13조~제23조)

구분	개념
퇴직금 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금 산정방법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일 기준 최근 3월간의 임금/최근 3월간의 일수 재직일수 = 입사일(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사일까지 기간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운용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 - (확정기여형)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확정급여형)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급여수준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② 퇴직금의 지급기준 및 관리

- (지급대상자)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아동보호전담요원
- (지급시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적합하도록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 종료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 가능
- (퇴직금 적립) 무기계약 등 계약종료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적합하도록 지자체 실정에 맞게 준용하되 지자체에 별도의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적립 가능  
 -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로 제정한 규정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인 경우 따로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 (중간정산)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나, 다음의 사유(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어 지급받은 경우, 중간 정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참고하고 운용

③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법 보칙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개별 법령 준수  
 ※ 주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부담 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지급 불가

● 사업비

- 편성 기준 : 전담요원 인력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비 편성

- 단, 전담요원 미배치 지역도 아동의 의료비 및 서비스 연계비 등 서비스 운영비 명목으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집행 기준

항 목	세부 내역		예산비율
기본 운영비	①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요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li> <li>■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심의 수당</li> </ul>	0% ~ 70%
	② 여비 및 교육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요원 업무수행과 교육 이수에 필요한 여비(출장비 등), 교육비</li> <li>※ 전담요원 업무수행 위한 출장비는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집행</li> </ul>	
	③ 기타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신용품 등 전담요원의 안전 및 소진 예방 관련 소요 비용</li> <li>※ 워크숍 개최, 소진 예방 교육 강사료 등 집행 가능</li> <li>■ 전담요원 질병·상해보험 의무가입비</li> <li>※ 단, 지자체에서 단체보험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li> <li>■ 아동 및 보호자의 대면상담에 필요한 식대·다과비</li> <li>※ 상담자의 식대·다과비 포함</li> <li>■ 아동보호업무 전용 공용폰 및 전자기기 이동통신 요금</li> <li>※ 공용폰 1대당 월 3만원 이내 지출, 단말기 구입비와 통신 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1대당 월 5만원 이내 지출 (전담요원 1인당 1대 한도)</li> <li>■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용차량 운영 경비</li> <li>※ 사적 목적의 운행 및 경비 지원 금지</li> </ul>	
서비스 제공비	①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아동의 장애 진단 진료비, 정신과 심리진단 및 심리치료비 등 건강검진·심리검사 비용 및 의료비</li> <li>※ 학대피해(의심)아동을 포함하여 보호조치 결정 전 보호중 사후관리 대상 아동에게 집행 가능</li> <li>※ 신규발생 아동 및 기존 사례관리 아동 모두 종합심리검사 실시 가능</li> </ul>	30% ~ 100%
	② 서비스 연계·제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아동과 원가정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 연계 또는 제공</li> <li>※ 보호중(면접교섭 등), 보호종료 후 등 현재 보호절차와 무관하게 집행 가능</li> <li>※ 부모교육, 가족방문, 가족활동프로그램 비용 지원 등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부록 II.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참고</li> </ul>	
	③ 기타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 서비스 연계·제공비 외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기타 지원비 (생활 지원, 교육훈련비, 그밖에 보호대상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해 필요한 항목)</li> <li>※ 지원연계를 위한 기관방문, 양육상황점검차 가정방문 시 필요한 물품 구매비 포함</li> </ul>	

## - 사업비 집행 시 참고사항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대한 타 사례관리사업 및 아동복지사업 등 타 공공·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 및 원가정 지원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례회의 및 내부 결재 절차 거쳐 사업비 집행하되, 지원대상자가 타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지원받는 항목과 중복 여부 확인
- 원칙적으로 사업비는 관련 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생필품 등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1인당 지원 상한액은 없으나, 사업비가 모든 아동에게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유의
- 아동보호서비스(학대 포함) 관련 아동·보호자 대면상담, 사례회의, 간담회, 교육 등 추진 시 식대 및 다과비 1인 2만원 이내 집행 가능
- 상담·조사·점검·사후관리 등의 목적으로 아동·보호자 가정 방문 시,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1회 10만원 이내 집행 가능

## - 사업비 지출 불가항목

- 시설유지 관리비 및 사무용품 구매비 (책상 등 사무기기)
- 지자체 공무원의 사례회의, 간담회 등 참석 수당
-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급여

## ● 그 외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적극 편성  
(예시: 아동 및 보호자의 상담에 필요한 식대·다과비의 경우 ‘사무관리비’로 편성 등)



# II

## 가정입양 지원

1. 사업 개요	27
2. 입양의 요건	28
3. 입양절차	31
4. 입양가정 지원	36
5.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4





## 1. 사업 개요

### 가. 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나. 사업추진 경위

-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 수립
- 1961년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인직무에관한법률」,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 1976년 「입양특례법」(법률 제2977호) 제정
- 1995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전부개정, 법률 제4913호)
- 1999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5670호)
- 2000년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인직무에관한법률」(법명변경, 법률 제6148호)
- 2000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6151호)
- 2004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7183호)
- 2005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7448호)
- 2007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8435호)
- 2011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전부개정, 법률 제11007호)  
「입양특례법」으로 제명 변경
- 2015년 「입양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13322호)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그 방법 등을 정함
- 2020년 「입양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17788호)  
입양기관 변경신고 수리 규정 신설

## 다. 근거

- 입양특례법('17.9.19.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17.5.29.개정)·시행규칙('17.10.13.개정)

## 라. 기본방향

-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입양·가정위탁 등 가정보호 지원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입양 등)조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조필요
-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을 차선택으로 추진
- 입양가정 및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비밀입양위주 입양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2. 입양의 요건

### 가. 양자될 자격(법 제9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사람
-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한 사람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사람
-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장 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나. 양친될 자격(법 제10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것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
  -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 가능(시행규칙 제4조)

**다. 입양동의 및 철회(법 제12조, 제13조, 시행규칙 제10조)**

-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
  - 13세 이상인 아동을 양자로 할 경우는 양자될 사람의 동의도 필요
  - ※ 다만,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된 경우는 보호의뢰 시의 동의로 같음
- 입양동의
  - (입양숙려제)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숙려기간 동안에는 친생부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절차) 입양을 원하는 친생부모(미성년자인 경우 법정후견인도 포함)는 주소지 시·군·구에 입양동의서(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

- (구비서류)

- 친생부모 :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증빙서류
- 후견인 :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증빙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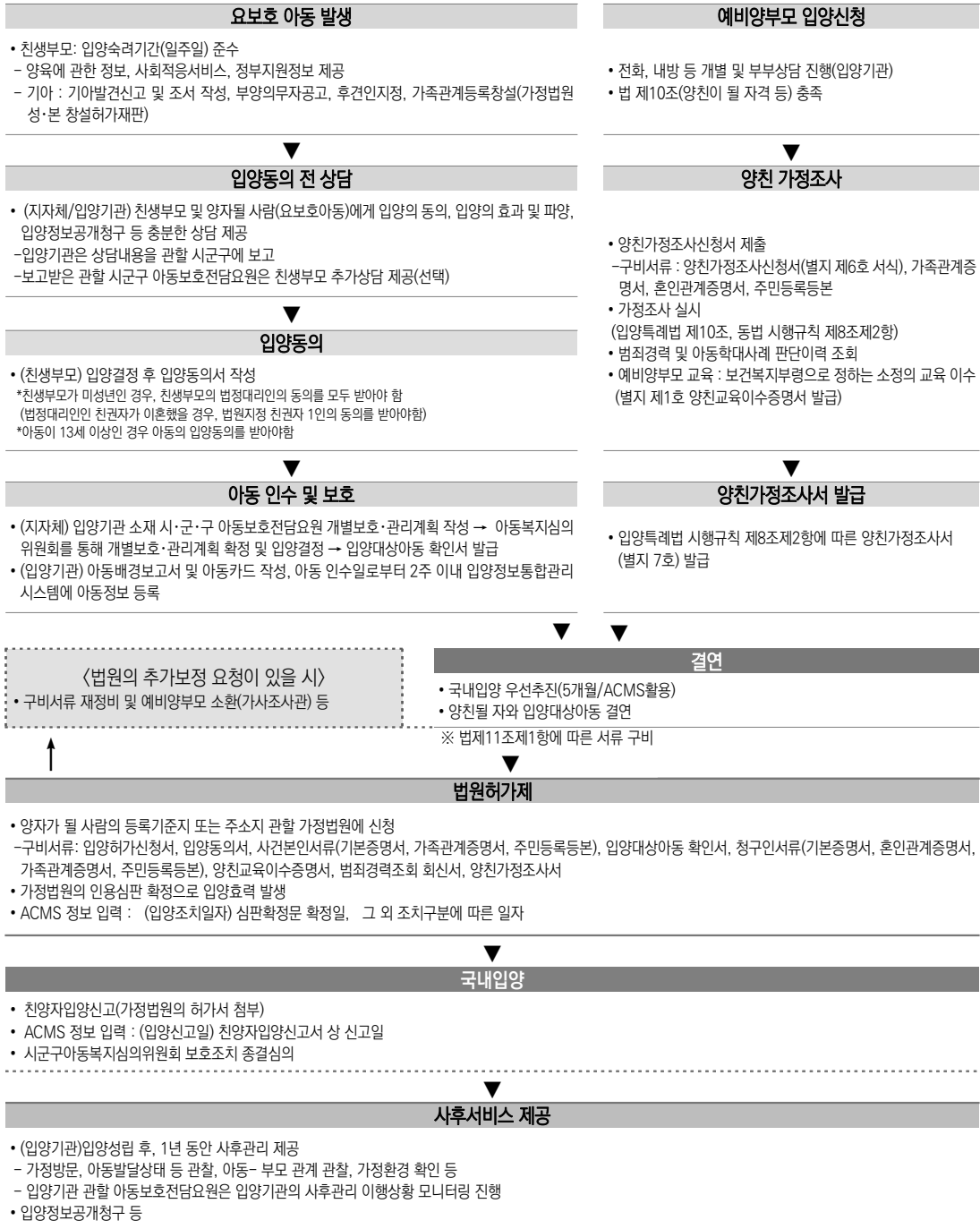
● 입양동의 철회

- (절차) 입양동의를 철회하기 원하는 친생부모(미성년자인 경우 친생부모 혹은 법정후견인)는  
입양기관에 입양동의철회서(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 제출

- (구비서류)

- 친생부모 : 친생부모를 증명하는 서류, 입양동의 철회서(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
- 후견인 :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입양동의 철회서(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

### 3. 입양절차



## 가. 국내입양

- 입양대상아동의 입양준비에 관한 법적 절차(아동복지법 제15조, 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 **(입양동의 전 친생부모상담)** 친생부모(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을 의뢰한 친생부모에게 원가정양육 지원과 입양에 대한 상담 제공(대면 필수)
    - ※ 친생부모(아동)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실 거주지 또는 친생부모가 상담을 원하는 타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담 및 조사 진행(단, 아동의 보호조치결정은 주소지에서 담당)
  - **(후견인 직무)** 입양기관의 장은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입양될 아동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부터 입양완료일까지 후견인 직무를 행함(법 제22조)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 선임 신청(아동복지법 제19조)
    -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고아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고, 국가 또는 지자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후견인 지정(보호 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보호시설장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의뢰, 의뢰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간 확인 공고
    - ※ 기아인 경우, 기아발견신고 및 기아발견조사 작성(입양기관, 지자체) 후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 허가재판 청구 → 아동의 가족관계등록 창설(법 제23조)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입양대상아동 확인서는 양자가 될 자격(입양특례법 제9조)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 확인·발급(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5호 서식])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 및 친생부모의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51개 항목) 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3조)
    - ※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출생 일시 및 장소, 성별, 장애 또는 질환의 유무와 종류 등 24개 항목
    - ※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입양사유와 입양동의 및 입양정보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등 9개 항목
    - ※ 양자 또는 양친될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주소 및 연락처 등 13개 항목
    - ※ 양친 또는 양친될 사람의 입양희망아동에 대한 성별, 연령, 건강이상, 특이사항 등 5개 항목

- 양친될 사람의 입양준비에 관한 법적 절차(법 제10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 **(양친가정조사신청서 제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조사기관(양친될 사람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입양기관의 장)에 양친가정조사 신청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6호 서식])제출
    - ※ 국외입양의 경우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된 입양기관이 국내 입양기관에 입양알선을 의뢰한 것으로 같음
  - **(가정조사 및 양친 가정조사서 발급)** 조사기관은 ‘양친가정조사서’에 따라 가정조사를 실시하고 입양적격 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 발급(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 ※ 양친가정조사는 직장·이웃·가정 등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해야 함
    - ※ 국외입양의 경우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외국 입양기관이 행한 가정조사서로 양친가정조사서 같음
  - **(범죄경력 확인 요청)** 조사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지 제2호 서식])에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 **(교육 및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 가정법원 허가(법 제11조, 시행규칙 제9조)
  - (입양허가 신청서 제출)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입양허가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입양동의서, 입양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시행규칙 제9조)
- 친양자 입양 신고(법 제15조)
  - (입양의 효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법 제14조)
  - (친양자 입양신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함

● **입양아동 등의 인도 및 보고(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2조)**

- 법원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소유물품을 양친될 사람에게 인도하고,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아동 인도 결과 보고
- ※ 양부모에게 입양아동의 기록 및 소유물품 인계 시 의료적 필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친부모의 동의 없이 친부모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사후관리 제공(법 제 25조)**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 사후관리 내용: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나.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

● **일반절차는 국내입양절차와 동일**

- 국내에서 입양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함(법 제18조)
- **(구비서류)** 입양허가신청서, 입양동의서, 입양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양친가정조사서,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본국의 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12조)

**다.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외국에서 입양하는 경우)**

●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함(법 제19조)**

● **외국인으로부터 입양 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해외 이주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제출서류) 해외이주허가신청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별지 제11호 서식]), 입양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입양대상 아동확인서, 양친가정조사서, 입양동의서,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본국의 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13조)
- ※ 양친가정조사서는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이 작성한 양친 가정조사서에 관한 서류로 같음



- 미아인 경우 또는 친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아의 경우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됨(시행규칙 제15조)
-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 취득 시 입양기관의 장은 국적취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아동 권리보장원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보고(입양특례법 제1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통지
- 사후관리 제공(법 제 25조)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 사후관리 내용: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 사후서비스 제공(법 제 25조)
  -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국적회복지원,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상담 등의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4. 입양가정 지원

지급신청 (양친 → 시·군·구청)	지급결정·통지 (시·군·구청 → 양친)	지급 (시·군·구청)	지급종료 (시·군·구청)
<b>&lt;구비서류&gt;</b> ①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② 입양사실 확인서 ③ 통장사본  ※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의 경우 ④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⑤ 본인부담금 증빙 자료(의료비의 경우)	<b>&lt;지급결정&gt;</b> 지급신청을 받은 날 부터 <b>15일 이내</b> 지급 여부 등 결정 (특별한 사유 있을시 30일 이내)  <b>&lt;통지&gt;</b> 양육보조금 등 결정 통지서 통지(발급)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준용	<b>&lt;지급방법&gt;</b>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	<b>&lt;지급종료일&gt;</b> •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 <b>만 18세가 될                      때까지</b> (중지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지급)  • 입양아동 양육 수당 : <b>만 18세가 될                      때까지</b> (중지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지급)

**[참고] 양육보조금 등 입양가정 지원 업무처리 프로세스**

### 가. 입양축하금 지급

#### (1)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 지급방법

- 매달 20일,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급(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3) 지급절차

- 입양부모가 아래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함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 ※ 통장사본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함
  -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지가 상이할 경우, 아동이 거주하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신청자(입양부모) 계좌로 지급함

## 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법 제35조 등)

### (1)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 ※ 지급제외 및 중단 사유
    - 「민법」에 따른 입양\*, 「입양특례법」 제18조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동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을 한 가정은 지급대상이 아님
    - \*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아동이 이후 「민법」에 의해 다른 가정에 재입양 된 경우는 지급대상
    - 입양아동이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함
    - 입양아동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함
    - 입양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 중 하나의 적용을 받을 경우 지급대상이 아님
    - \* 보호조치되는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 당월까지 지급, 15일 이전인 경우 전월까지 지급 보호조치가 해제되어 입양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하는 월부터 지급 재개
    - 입양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및 교정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 입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함

### (2) 지급내용 : 월 20만원/인

### (3) 지급방법 및 절차

- **(양육수당 신청)**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지 제15호 서식]) 1부, 입양사실 확인서(서식 1호) 1부, 통장사본 1부
  - ※ 「입양사실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용도(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를 명시하여 발급해야 함
- **(결정 및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 입양아동의 양육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 연장 가능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준용
- **(지급 개시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
  -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지급
  - ※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
- **(지급 중지일)** 만 18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 21년 지급 중지된 아동은 별도의 추가 신청서류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 급여 생성되나,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대상 확인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지급해야 함을 유의

#### 지급대상 선정 시 추가 검토사항

- \* '04년 8월 11일에 태어난 A양의 양친(B구에 거주)이 '12.9.1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한 경우
  - B구청 담당공무원 : 서류검토 및 사실 확인하여 '12년 9월 5일에 지급대상자임을 결정
  - '12년 9월 6일에 A양의 양친에게 통지
  - A양의 양육수당 지급 개시일 : '12. 9.20
  - A양의 양육수당 지급 중지일 : '22. 8월까지 지급
- \* 2003년 1월 10일에 태어난 A군의 양친(B구에 거주)의 경우,
  - 2019년 1월까지 수당 지급받고 그해 2월 이후 수급 중지, 20년 만 17세 미만으로 연령 확대에 따라 2020년 1월에 수당을 지급받고 그해 2월 이후 수급 중지, 21년 만 18세 미만으로 연령 확대에 따라 2021년 1월에 수당을 지급받고 그해 2월 이후 수급 중지
  - B구청 담당공무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2021년 1월 자동급여 생성되며, 지급대상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지급 처리(단, 지급 중지를 수기 입력 등을 통해 제외 처리한 경우는 자동급여 생성되지 않음)

- (수급계좌변경) 입양부모 및 입양아동 본인 계좌에 한하여 수급계좌 변경 가능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급여계좌 변경신청서(서식 9호) 1부, 통장사본 1부

#### (4) 행정사항

- 지자체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내용을 지자체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것
- 관계공무원은 입양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에 따라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보장에 각별히 유의할 것
-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구거주지에서 신거주지 지자체에 통보하여 수급권자가 다시 신청하지 않도록 할 것
- 국내입양을 한 양친과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지가 상이할 경우 아동이 거주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양친 계좌로 지급할 것

### 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법 제35조 등)

#### (1)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지급 가능
  - ※ 지급 제외 및 중단 사유(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일)
    - 「민법」에 따른 입양\*, 「입양특례법」 제18조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동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을 한 가정은 지급대상이 아님
      - \*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아동이 이후 「민법」에 의해 다른 가정에 재입양 된 경우는 지급대상
    - 장애아동이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함
    - 장애아동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함
    - 장애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 중 하나의 적용을 받을 경우 지급대상이 아님
      - \* 보호조치되는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 당월까지 지급, 15일 이전인 경우 전월까지 지급 보호조치가 해제되어 입양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하는 월부터 지급 재개
    - 장애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및 교정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 입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함

● 장애아동의 유형(시행령 제7조)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원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2) 지급내용

● 양육보조금(월/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27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 그 외 지원대상 **551천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 1급 ~ 3급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이 4급 ~ 6급인 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2]에 따른 비급여대상 제외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보조기구 :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2) 준용

(3) 지급방법 및 절차

● (양육보조금 등 신청) 장애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 1부, 입양사실 확인서(서식 1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 ※ 의료비의 경우는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달 또는 분기별로 신청
- ※ 당해연도 발생 의료비는 당해연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진료시기 및 부득이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발생의료비 중 진료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의료비는 포함(당해연도 한도 내)
- ※ 「입양사실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용도(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를 명시하여 발급해야 함

- **(조 사)** 관계공무원은 장애아동의 양육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아동(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및 입양 후 질환이 발생한 아동)에 대하여는 장애·질환이 지속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함. 다만, 미리 알리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결정 및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 입양아동의 양육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 연장 가능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준용
- **(지급 개시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
  - ※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
- **(지급 중지일) 만 18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 **(수급계좌변경)** 입양부모 및 입양아동 본인 계좌에 한하여 수급계좌 변경 가능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급여계좌 변경신청서(서식 9호) 1부, 통장사본 1부

#### (4) 행정사항

- 신청받은 관계공무원은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여부 및 장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것
  - ※ 가정방문조사 시 양부모가 입양사실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비밀보장에** 각별히 유의할 것
-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구거주지에서 신거주지 지자체에 통보하여 수급권자가 다시 신청하지 않도록 할 것

- 장애인등록이 된 장애아의 경우 1회 신청으로 계속 지원 가능
  - 다만,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각 시·도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실적」(서식 2호)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할 것
- 국·공립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은 입양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소·보육할 것(보육사업안내 참조)

## 라. 입양비용 지원 (법 제32조 등)

### (1)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특례법」 제18조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동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국외 입양을 한 가정은 지원대상 아님

### (2) 지원내용

- ㉠ 입양알선비용 지원(법 제32조, 시행령 제6조)
  - **(지원내용)**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 ※ 각 시·군·구는 입양전문기관의 입양대상아동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생계급여 지급(시행령 제12조)
  -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 지급 기관(예시) : 서울거주 입양부모가 홀트 부산지부에서 입양 시 서울시에서 지급  
부산거주 입양부모가 대한 서울본사에서 입양 시 부산시에서 지급
- ㉡ 입양철회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2주 미만	2주 이상 ~ 4주 미만	4주 이상 ~ 6주 미만	6주 이상 ~ 8주 미만	8주 이상~
지원액	15만원	30만원	45만원	60만원	73만원

- (지원방법) 입양동의 철회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 청구
  -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철회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 지급 기관(예시) : 서울거주 친생부모가 홀트 부산지부에서 진행 중인 입양에 대해 철회 시 부산시에서 지급  
부산거주 친생부모가 대한 서울본사에서 진행 중인 입양에 대해 철회 시 서울시에서 지급

(3) 행정사항

- 입양기관(지부)이 속한 지역의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은 관할지역의 입양기관에서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와 입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할 경우 입양비용을 입양기관에 지급할 것

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법 제13조 및 제33조)

- (1)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2) 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 단 가
①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1주)	• <b>500,000원</b>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 <b>350,000원</b> - 아동 생필품비 포함
②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b>400,000원</b> -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③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b>1주</b>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b>최대 700,000원</b> •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산후지원인력 :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 가정 내 보호 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미혼·이혼 한부모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정부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 이용기간 : 1주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이용 시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 영수증 사후 제출(출산 후 30일 이내 미제출시 정부 지원금 환수)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개인 산후지원인력의 경우 영수증 또는 자격증 사본으로 갈음
- 지원금 : 50만원/1인당

[재가 입양숙려 지원]

- 미혼·이혼 한부모 자택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아동 생필품비를 포함한 보조금 정액 지원
- 지원금 : 35만원/1인당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입양숙려 모자지원 사업 시행일('13.4.8.) 이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1인당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20개소), 공동생활지원형(39개소)
- 시설의 기존 인력 활용 또는 신규 인력 채용 등 시설 상황에 적합하게 운영. 다만, 입양 숙려기간 중에 있는 미혼모 2인당 최소 1명의 산후지원인력이 배정되어 있을 것
- 지원금 : 40만원/1인당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 산후조리업 신고(모자보건법 제15조)를 한 산후조리원 중 미혼·이혼 한부모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
- 이용기간 : 1주일  
※ 미혼·이혼 한부모 본인부담 하에 추가 이용
- 제공 서비스 내용 : ㉠ 1인 가족실 이용(아동 및 산모 용품 일체 무료 제공), ㉡ 철저한 신생아 위생관리 서비스, ㉢ 산전·산후 전문관리프로그램 무료 이용, ㉣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소아과 전문의 정기 회진 및 건강관리 체크, ㉤ 편의시설 자유 이용  
※ 상기 서비스 내용은 산후조리원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금 : 7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1인당

- 숙려기간 중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직접 양육 지원내용 또는 입양결정 시 입양절차 등 적극 홍보

(3) 지원절차

● 신청

- (신청권자) 미혼·이혼 한부모 본인, 가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등)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의 경우, 입소한 시설 관계인이 대리 신청
- (신청장소) 미혼·이혼 한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예시: 아동청소년과)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의 경우, 시설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  
※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 (제출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서식 5호)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 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통장사본, ㉤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접수 및 조사

- (접수)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신청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지원내용을 상세히 안내

- (조사) 출산여부 및 혼인여부 조사
  - 출산(예정) 여부 확인 : 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등 증빙서류로 확인
  - 혼인 여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결정 및 통지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신청접수 즉시 신청서 및 혼인·출산 여부 등 확인내역을 토대로 대상자 선정 여부 판정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서식 6호)하고 신청한 서비스별 이용방법 안내
- 지급
  - (지급주체) 미혼·이혼 한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예시: 아동청소년과)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의 경우, 시설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
  - (지급액 및 방법) 미혼·이혼 한부모가 신청한 서비스별 지급액 계좌입금

구 분	지급액	지급방법
① 가정 내 보호지원	• 500,000원	-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 본인 명의 입금 계좌로 계좌입금 - 출산(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후지원인력 가정 방문서비스 이용영수증 수령, 실제 이용 여부 확인
	• 350,000원	-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 본인 명의 입금 계좌로 계좌입금
② 미혼모자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0,000원	- 출산(예정)일 이후 7일 이내, 신청자가 입소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장) 명의 입금계좌로 계좌입금
③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이 완료된 경우,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지급요청(서식 7호)에 따라 7일 이내, 산후조리원 명의 입금 계좌로 이용료 계좌입금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 “1일 이용금액(1주 이용금액7일)×이용일수”로 지급 ex) A산후조리원 이용금액(70만원), 4일 이용 했을 경우, 지급액은 40만원 B산후조리원 이용금액(50만원), 5일 이용했을 경우, 지급액은 357,150원

#### (4) 행정사항

##### ① 지자체 세부조치사항

###### ● 홍보

- 각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자 신청 홍보 실시
  - 수요자를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급여 신청 안내 및 서비스 이용 안내
  - 지자체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특히, 지역 내 병·의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을 통한 서비스 신청 안내 강화

###### ● 예산집행

- (집행부서)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예시: 아동청소년과)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의 경우, 시설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
- (예산집행)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신청서 접수 시, 신청조건 확인 후 즉시 결정 통지하고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산후조리원 이용신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완료 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액을 지급 할 것
- (정산보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집행내역 별도 관리할 것
  - 각 시·도는 매월 각 시·군·구로부터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지원현황(서식 8호)」을 익월 15일까지 반드시 보고할 것

###### ● 상담 및 모니터링

- 숙려기간 중 반드시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산모에게 직접 양육시 지원내용, 시설 보호 등 대안양육방안 또는 입양결정 시 입양의 효과 및 입양절차 등을 적극 안내 할 것
- 숙려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후, 아동에 대한 조치현황(입양결정, 양육결정,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로 보호의뢰 등)을 모니터링 후 보고(서식 8호)할 것

##### ② 산후조리원 세부조치사항

###### [ 이용안내 ]

① 미혼·이혼 한부모 산후조리원 이용접수 → ② 산후조리원 이용 → ③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신청(해당지자체) → ④ 산후조리원에 이용료 사후 지급

- 미혼·이혼 한부모가 산후조리원 이용 접수 시, 「산후지원 서비스 결정 통지서(서식 6호)」 확인 후 일반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신청(서식 7호) 시, 산후지원 서비스 결정 통지서(서식 6호) 사본도 함께 제출
- 일반 신청자와 모든 지원혜택은 동일하게 제공할 것
- 미혼·이혼 한부모가 산후조리원 이용 시, 신생아 감염방지와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할 기울이고, 미혼·이혼 한부모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  
※ 미혼·이혼 한부모 본인이 원하지 않은 정보가 일반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며, 세심한 관심과 보호 필요
- 미혼·이혼 한부모의 산후조리원 이용이 완료된 경우, 산후지원 서비스 결정 통지서 발급 기관(해당 지자체)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신청서(서식 7호)」 제출  
※ 해당 지자체와 협의 하에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 바.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 (1)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 (2)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 생일이 도래하는 날 또는 졸업하는 날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까지 지원  
※ 지급 제외 및 중단 사유는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일
- (3) 지원내용 : 1종 의료급여
- (4) 지원절차 : 입양아동의 부모가 시·군·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서식 1호)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서식 4호) 제출  
※ 담당자는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 희망자에게 두 가지 적용방식에 대해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입양증빙서류는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하며, 전·출입시 시·군·구 간에 서류 이송할 필요는 없음  
※ 입양아동 본인에 한해 의료급여 실시(그 가족은 제외)  
※ '입양사실 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용도(국내입양가정 지원신청용)를 명시하여 발급해야 함
- (5) 급여개시일 : 입양 후 30일 이내 신청시는 입양일로 소급하되 그 이후 신청시는 결정일 부터 개시

(6) 적용방식

● 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 양부모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

- 사전지원방식 : 입양아동을 건강보험증에 기재하되, 수급권자임을 표시하여 의료 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08. 2. 1일부터 시행)
- 사후지원방식 : 입양아동을 건강보험과 함께 통합관리하고, 의료이용시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사후 환급('08. 3. 1일부터 시행)

※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증 발급<sup>1)</sup>

구 분	사후지원방식	사전지원방식
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기 여부	미표기	주민등록 앞에 (A)표기
병원원등 자격확인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진료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비용청구, 지급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재정 우선 부담)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 기금)
사후 비용정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기관부담금 내부 정산 (건강보험 종별가산률 적용)	비용정산 미발생
	입양아동 부모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의료급여)	

1) 양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의료급여증으로 발급할 수 있음

## (7) 업무처리절차

- 의료급여 자격등록 및 증명서 발급
  -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의료급여 적용신청 (사후 지원 또는 사전지원 방식 선택)
  - 시·군·구에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입양아동 및 가구주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전송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건강보험증 발급(사후지원 방식은 수급권자 미표기, 사전지원 방식은 수급권자 표기)
- 본인부담금 환급절차(사후지원 방식 선택자에 한함)
  - 건강보험공단은 매분기 익월(4월, 7월, 10월, 1월) 말까지 정산대장 자료를 발취하여 그 다음 달(5월, 8월, 11월, 2월) 말까지 시·군·구와 상호정산하고, 본인부담금 환급 내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환급하고, 그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재
  - ※ 환급받은 본인부담금의 세부내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확인가능
- 각 시·군·구에서는 해당 소재 의료기관에 입양아동의 건강보험증 기재방식 및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입양아동이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
- 양부모가 입양사실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업무처리 시 비밀보장에 각별히 유의할 것



<참 고>

## 입양아동 수급권자 의료급여 적용방식

### 1. 사후지원 방식

#### ① 자격등록 및 증명서 발급

-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의료급여 적용신청
- 시·군·구에서 입양아동 및 가구주 정보 등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전송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건강보험증 발급(수급권자임을 표기하지 않음)

#### ②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 건강보험증 제시
-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부
-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청구, 건강보험에서 비용지급

#### ③ 사후 비용정산

- 일정 주기마다(분기별)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아동의 진료내역 발체
- 시·군·구에서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비용지급

### 2. 사전지원방식

#### ① 자격등록 및 증명서 발급

-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의료급여 적용신청
- 시·군·구에서 입양아동 및 가구주 정보 등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전송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건강보험증 발급(수급권자임을 표기)

#### ②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 건강보험증 제시
-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로 청구, 의료급여에서 비용지급

#### ③ 사후 비용정산 : 미발생

<참 고>

### <참고> 건강보험증 기재 예시

1. 사전지원방식(\*08. 2. 1일부터 시행)

가입자(세대주) <b>홍급여씨는 의료급여 적용대상자임</b> (관리번호) 1234567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증번호 3-0013319091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	급여개시 유효일
사 업 장	기호	1-0000181	홍길동	680101- 1234567	2008. 02.01
	명칭	보건복지부	홍건강	050102- 3123456	2008. 02.01
소속지사 : 과천시사 ☎ : 02-504-2207-8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홍급여	(A)070102- 4123456	2008. 02.01
121-749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Homepage : www.nhic.or.kr			발행일자 :		

2. 사후지원방식(\*08. 3. 1일부터 시행)

홍급여씨는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이나 별도 표기 없음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 680101- 1234567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	급여개시 유효일
증번호 3-0013319091			홍길동	680101- 1234567	2008. 02.01
사 업 장	기호	1-0000181	홍건강	050102- 3123456	2008. 02.01
	명칭	보건복지부	홍급여	070102- 4123456	2008. 03.01
소속지사 : 과천시사 ☎ : 02-504-2207-8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발행일자 :		
121-749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Homepage : www.nhic.or.kr					

[ 입양 관련 Q&A ]

질 의 (Q)	답 변 (A)
Q1.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이 등록된 장애 유형에만 지원되는 지 여부	A1. 당해 아동의 장애와 직접 관련 없는 진료 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도 가능
Q2. 장애등록된 입양아동의 언어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대상인지 여부	A2. 입양아동의 언어·심리·정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됨
Q3. ADHD를 가진 입양아동의 경우, 장애 아동입양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A3. ADHD의 경우 선천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입양아동 심리치료비(월 20만원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Q4. 장애입양아동의 의료비 지원 항목으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	A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을 준용, 의료비 지원에 보조기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단,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금액이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를 넘을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지원
Q5. 입양가정의 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지가 상이할 경우 지급방법 및 절차	A5. 입양가정의 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지가 상이할 경우 아동이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양부모 계좌로 지급
Q6.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계속 지원여부	A6. 입양아동이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함

## 5.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함

- 입양절차 중 지자체의 책임

〈 입양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 〉

- ① 친생부모(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을 의뢰한 친생부모에게 원가정양육 지원과 입양에 대한 상담 제공(대면 필수)

※ 친생부모(아동)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지 또는 타 시·군·구에 입양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상담 진행하고 주소지에 협조 요청(다만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은 주소지에서 담당)

※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양기관을 먼저 방문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인수받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지체없이 친생부모에게 연락하여 상담 제공

가. 원가정 양육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우선 진행

- 경제적 지원, 양육지원, 아동 일시보호 등 친생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원가정 보호 가능성 또는 추후 원가정 복귀 가능성 파악(임신 중일 경우, 임신·출산, 출생신고 등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안내)

- 원가정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협력하여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예시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 친생부모가 미혼모·부인 경우 : 미혼모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혼모자 시설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연계

☞ 원가정양육을 위한 추가상담 필요시 여성가족부의 미혼모 상담체계 연계(가족상담전화,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등)

☞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독자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친생부모의 경우, 친생부모와 아동을 모자시설에 의뢰하여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 전국 미혼모자시설 현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참조

☞ 자녀양육 관련정책 및 서비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및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나. 입양절차, 입양의 동의 및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입양기관 안내 등 입양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제공

- 입양 동의 후에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친생부모에게 안내

다. 친생부모 상담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정리한 욕구조사표, 아동상황 점검표 및 친부모 상황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서식5)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 친생부모가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친생부모 상담 확인서(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8)를 친필로 작성·서명하도록 하며,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시 제출

[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 내용 ]

분류	내용
친생부모 양육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li> <li>•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 초기위기지원, 양육지원정책, 교육정책, 주거정책, 취업·창업정책, 생계정책, 상담·치료정책</li> </ul>
입양절차에 관한 안내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국외입양 과정 및 단계별 친생부모의 준비사항 안내</li> <li>• 입양 관련 질의응답 및 상담제공</li> <li>• 입양/양육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li> <li>• 자녀를 입양 보낸 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한 설명</li> </ul>
입양동의를 요건 및 입양동의를 철회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동의를 중요성 강조</li> <li>• 입양을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강조</li> <li>• 입양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 설명</li> <li>• 입양에 동의한 후에도 법원의 입양허가 전에는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강조</li> </ul>
입양의 효과 및 파양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li> <li>• 입양아동은 입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함</li> <li>• 입양아동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됨</li> </ul> </li> <li>• 입양의 효력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함</li> <li>•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입양신고하여야 함</li> </ul> </li> <li>• 입양의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생부모가 가정법원에 청구함</li> <li>• 친생부모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음</li> <li>•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li> </ul> </li> <li>• 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친, 양자, 검사는 가정법원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친이 아동을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li> <li>-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li> </ul> </li> <li>•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등록부 변동사항에 대한 안내(입양, 파양시 등) 포함</li> </ul> </li> </ul> </li> </ul>

분류	내용
<p>입양정보 공개청구 및 친생부모의 동의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정보공개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인은 입양정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li> <li>▸ 입양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은 그 사실을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에게 알리고, 친생부모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개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li> </ul> </li> <li>• 공개 청구대상 입양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li> <li>▸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입양일·입양사유 및 거주지역 (시·군·구 단위)</li> <li>▸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출생일시 및 출생 장소</li> <li>▸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li> <li>▸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양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생부모가 자신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생부모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는 공개할 수 없음</li> <li>-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 공개 가능</li> </ul> </li> <li>※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li> </ul> </li> </ul> </li> </ul>

〈 보호자의 입양 동의 및 아동 일시보호 〉

- ① 원가정 양육 관련 상담 이후 친생부모가 입양을 원할 경우, 친생부모는 친생부모 (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면하여 친생부모 상담기록지(입양 실무매뉴얼 참고서식 7), 입양동의서, 친생부모상담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인도
  - ※ 만약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대면이 어려운 경우, 상담을 받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의 대면을 통해 입양동의서 작성 및 아동 인도
  - ※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친생부모 상담확인서(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8)를 친필로 작성·서명하도록 하며, 입양동의서와 함께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시 제출
  
- ② 입양동의서를 작성한 친생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어 긴급하게 보호를 요청한 경우, 친생부모(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 아동을 일시보호하여야 하며, 입양기관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양육시설 등에 아동의 일시보호 의뢰
  - 이 때, 입양기관에 우선 보호조치 의뢰 후 어려운 경우 일시보호시설 또는 아동양육시설 등에 의뢰
  - 입양기관에 보호조치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친생부모는 입양기관(사무소 포함) 종사자와 만나 아동을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하고,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에게 입양 확정 판결 전까지 아동 면접 가능하며, 가정법원 절차 진행 중에 친생부모에 관한 보정명령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친생부모는 추후 아동의 입양진행 결과(입양이 확정되거나 입양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 등)를 문의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해 추가 상담 진행
  - ※ 만약 주소지가 아닌 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담을 실시하여 입양동의서를 받고 아동 인수를 할 경우, 해당 시·군·구(관내 입양기관 또는 일시보호시설·양육시설 등)에서 일시보호 조치

- 입양기관에 보호되는 아동의 경우 입양기관은 위탁가정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생계·의료급여,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등 수급 신청하고, 위탁가정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수급권 책정 및 지급

〈아동 보호조치 결정〉

- ①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친생부모 상담 내용 및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

- 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카드, 개별보호·관리계획(초안) 작성하고 시·군·구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보호유형 및 개별보호·관리계획 논의  
- 아동카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서식 7,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27]

\* 시·군·구 사례회의시, 입양기관 종사자가 참석하여 향후 입양절차 진행절차 등을 논의할 수 있음

-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입양) 및 개별보호·관리계획 결정

\* 시·군·구에서 아동 보호조치 심의를 의뢰한 후 1주 이내에 개최하여 보호조치 결정 완료

- ②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보호조치(입양) 결정 후 아동의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을 입양기관 또는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

- ③ 아동 주소지 시·군·구의 보호조치 결정 후 입양기관으로 전입신고 가능

\* 시·군·구는 아동 보호 의뢰한 기관에 입양대상아동확인서 발급, 아동 관련 서류(아동카드, 아동의 출생 당시의 의료 기록지, 아동의 기본증명서, 친생부모 정보가 기록된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생부모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육구조사표,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입양동의서, 아동상황점검표 등 공유

\* 입양대상아동은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 우선 원칙(아동이 일시보호시설에 있을 경우 입양기관으로 보호조치 변경)

- 이 때, 아동을 입양기관이 아닌 타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할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양육시설에 공유하는 제반 서류(입양대상아동확인서, 아동 및 친생부모 관련 서류 등) 일체를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본부)에 전자문서로 송부하고, 아동 권리보장원(아동보호본부)은 해당 아동의 정보를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에 등록하여 입양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양기관이 아닌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제4호의 조치 병행 결정 필요

- ④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는 양자가 될 자격(입양특례법 제9조)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발급권자 :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 확인·발급
- 발급절차 : 입양대상아동확인서는 아동주소지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보호조치(입양) 결정 후 발급

-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또는 아동양육시설에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대상 아동확인서 발급
-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내용에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결과(부양의무자 출현 여부) 포함

< 양육상황 점검 >

- ① 지자체는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입양특례법 제38조) 등을 통해 입양대상아동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② 입양기관의 아동의 인수 시부터 입양 완료 시까지 아동 보호 방법·장소, 아동 거주지 변경, 양육자 변경, 아동 신상의 변화(질병, 사망 등) 등 아동의 상황변동사항 발생 보고\*를 받은 입양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즉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 보호조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13]
- ③ 그 외에도 입양기관 관할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입양절차 완료 전까지 입양 기관과 협조하여 입양기관이 아동에 대해 작성한 아동양육상황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받아 양육상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입양대상아동이 입양기관이 아닌 양육시설(아동보호시설 등)에서 보호중인 경우, 아동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보호중인 아동에 대해 아동양육상황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
- ④ 입양 대상 아동이 위탁가정 보호 등으로 입양기관이 소재한 시·군·구가 아닌 타 시·군·구에서 보호되고 있는 경우, 입양기관 관할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아동이 거주 하고 있는 시·군·구에 해당 아동 양육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의뢰받은 시·군·구는 직접 또는 읍·면·동, 아동위원 등을 통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아동양육 현황 확인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뢰한 시·군·구에 문서로 통보  
※ 통보 내용 : 방문 일시, 장소, 방문자, 위탁가정 보호자 및 아동 면담 여부·내용, 아동 양육 현황, 조치 필요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
- ⑤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친생부모 등과 재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호조치 변경: 입양절차 진행 중단, 아동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원가정 복귀 또는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을 포함

<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대응 >

- ①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를 인지하였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고(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입양대상아동 학대 사례개입 및 보고절차(아래 참고)에 따라 대면 상담, 보고, 조사 협조,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사례 회의를 추진하여야 함



▷ 참고: 입양기관 보호중인 입양대상아동 학대 사례개입 및 보고절차

- (신고) 아동학대 인지 시 즉시 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고 후 아동학대행위자 대면상담
  - 신고 후 즉시 아동학대발생보고서 작성[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30]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학대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아동학대발생보고서 작성
  
- (보고) 아동학대 신고 후 또는 사례 확인 후 24시간 이내에 아동학대발생보고서를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보고
  - ※ 긴급사례나 중대사건(아동학대처벌법 적용사례)인 경우, 휴무일 관계없이 즉시 사건 공유
  
- (조사 협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 협조 요청 시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 (분리조치)
  -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분리보호조치하는 경우
    - : 학대 피해로 인해 피해아동의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분리보호 실시(※ 분리조치되는 경우 아동을 보호하던 위탁가정 또는 양육시설의 장은 입양기관에 통보)
  -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분리보호조치 결정이 없는 경우
    - : 입양기관이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즉시 아동 분리(위탁가정 변경 혹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연계)
  
- (모니터링) 아동학대 신고부터 종결까지 진행과정, 특이사항 등 관련사항 점검
  - 월 1회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보고[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30]
  
- (통합사례회의) 입양대상아동이 아동학대 사례판단 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이 진행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입양기관-아동보호전담요원 간 월 1회 통합 사례회의 실시
  - ※ 모니터링 및 통합사례관리 결과는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와 즉시 공유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30]

<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 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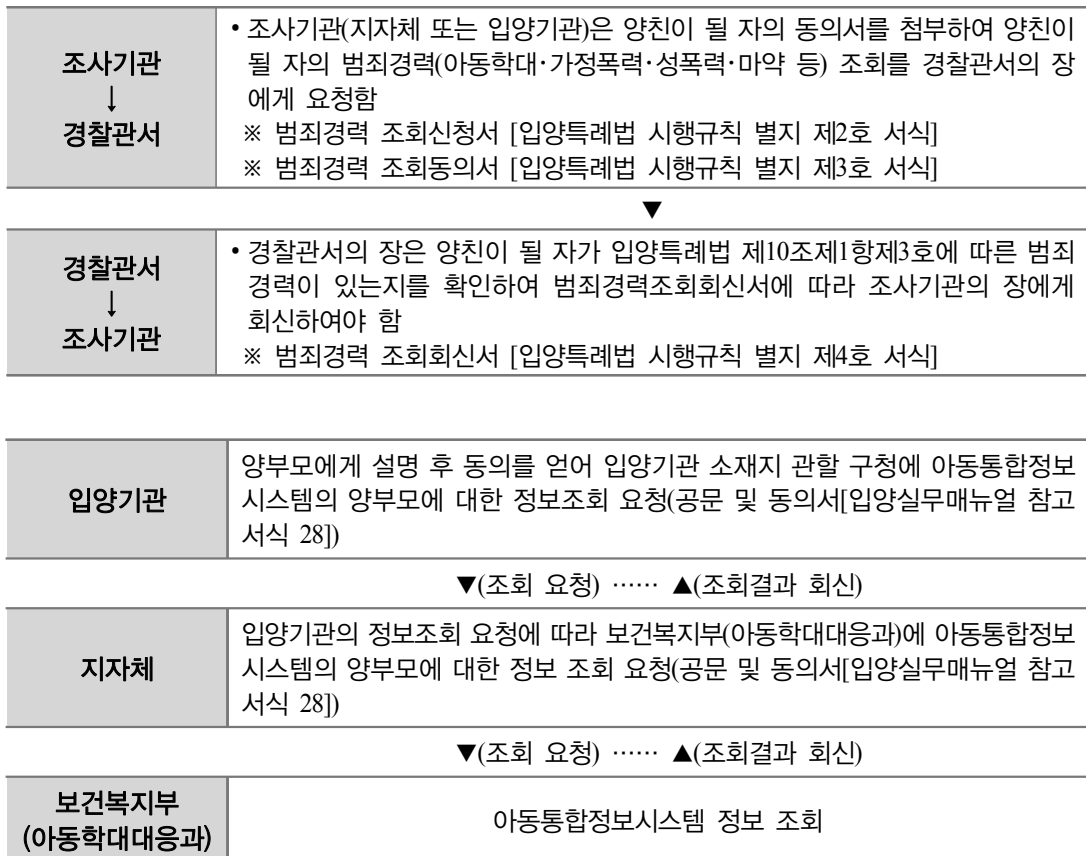
① 양친자격 조사 기관

- 양친이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② 양친이 될 자에 대한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사례 판단이력 조회

- 조사기관(지자체 또는 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자의 동의를 첩부하여 양친이 될 자의 범죄경력(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함
- 또한, 입양기관은 지자체에 의뢰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사례 판단 이력을 확인해야 함

**[그림] 예비입양부모의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사례 판단이력 조회 절차**



※ 일부 법원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범죄 외에 수사 및 실효형이 포함된 범죄이력을 요구할 수 있음

<입양 후 사후관리>

- ① 아동의 소재지 관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기관이 제출한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통해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입양가정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의심) 상황을 보고받은 경우 입양기관과 동행하여 해당 입양가정에 대한 가정방문 또는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거나 학대(의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 (참 고)

- (입양기관)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되, 1년간은 의무적으로 이행
  - 총 6회의 사후관리 중 최소한 3번의 가정방문(필수), 가정방문 이외에는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대면 상담, 사후관리 진행 후 10일 이내에 사후관리 보고서 작성
  - (지자체 사후관리 협조) 입양기관은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양가정이 희망하는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동행하여 해당 입양가정에 대한 가정방문 또는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의 종전 주소지(입양기관 주소지) 시·군·구로부터 사례이관을 받고, 이관을 받은 사례에 ‘사후서비스 제공확인서’를 추가 입력함
    - 또한, 입양기관은 입양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후 또는 사례 확인 후 24시간 내 아동학대상황보고서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동행하여 해당 입양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
- ※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20]
- ※ 아동학대(의심) 상황 보고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30]

▷ 참고: 입양아동 학대 사례개입 및 보고절차

- (신고) 아동학대 인지 시 즉시 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고 후 가정방문  
 - 신고 후 즉시 아동학대발생보고서 작성[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30]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사실을 확인 한 경우에도 아동학대발생보고서 작성
- (보고) 아동학대 신고 후 또는 사례 확인 후 24시간 내 아동학대발생보고서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보고  
 ※ 긴급사례나 중대사건(아동학대처벌법 적용사례)인 경우, 휴무일 관계없이 즉시 사건 공유
- (조사 협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 협조 요청 시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 (모니터링) 아동학대 신고부터 종결까지 진행과정, 특이사항 등 관련사항 점검  
 - 월 1회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보고[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30]
- (통합사례회의) 입양아동이 아동학대 사례판단 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이 진행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입양기관-아동보호전담요원 간 월 1회 통합사례회의 실시  
 ※ 모니터링 및 통합사례관리 결과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즉시 공유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30]
- (사례종결) 입양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한 사례 중 학대재발 위험 사유 감소 및 일정기간 피해아동의 안전한 상태가 지속 유지되어 더 이상 사례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례 종결 평가회의를 거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사례종결 여부 결정  
 ※ 입양기관은 사후관리기간 1년을 초과하더라도 사례 종결시까지 모니터링하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와 공유

-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진증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하여야 함  
(입양특례법 제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①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 ②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③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 ④ 입양아동 및 가족 지원
  - ⑤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⑥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⑦ 입양상담 관련 전문가의 교육 지원
  - ⑧ 입양아동의 장애 발생 시 상담 및 그 장애관련 정보 제공
-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 입양기관 운영지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지원대상) 국내 입양기관
  - (지원내용) 상담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 상담원 1명 배치
    - ※ 예산 범위내에서 정액으로 지원(지원단가는 아동복지생활시설 생활복지사 지원액을 고려하여 결정)
  - (입양기관 지도·감독 등) 국내 입양기관의 허가, 변경, 종사자 관리 및 분기별 지도점검 (월별로 입양실적 보고받을 것)
-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민원발생 사례 ]

- “입양아동 의료본인부담금 환급금 환수 명단(34명) 내역”을 해당 소재지 전체 입양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입양아동 정보를 노출
- 예산부족으로 인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양육보조금 지급 일시 중단 안내 공문” 우편발송으로 인해 입양아동에게 입양사실 노출

-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 날(5.11.) 및 입양주간(5.11.~17.)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여야 함
- 가정법원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파양청구심판 확정 내용에 대한 세부 파양 현황(입양허가일자, 아동 성별, 파양사유, 파양확정판결일자, 파양 후 조치현황, 특이사항)을 매월(익월 10일까지) 단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 ※ 입양업무 담당부서는 가족관계업무 담당부서 협조를 구해 관련 정보 파악 필요
- 입양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언론·유선 TV 자막방송·반상화·캠페인·홍보물제작 배포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입양기관 현황 ]

(2022년 1월 현재)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02-331-7033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20-5	051-468-4576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2층	053-756-0183	
	충청사무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29	042-586-1983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간석동) 홀트인천복지센터 3층	032-424-0145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64(화정동) 홀트광주복지센터 1층	062-227-8877	
대한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	02-552-7420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0번길 62	051-621-7003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보상로 906	053-756-1392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4	062-222-9349	
동방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02-334-0862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 81, 304호	051-469-5586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25, 4층	053-755-1077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8-7	032-502-2226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8, 2층	042-526-3129	
	경기지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길 70	031-442-7750	
성가정입양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242	02-764-4741	
광주영아일시보호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6	062-222-1095	시도
꽃동네 천사의 집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12-47	043-879-0290	허가기관
제주국내입양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근내길 42	064-758-0845	허가기관

\*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는 국내입양, 국외입양 업무를 모두 수행하며, 나머지 입양기관은 국내 입양업무만 수행(한국사회봉사회, 자비아동입양위탁소, 한빛국내입양상담소 - 입양알선 업무 중단)



## 가정위탁 보호

1. 정 의	67
2. 목 적	67
3. 근 거	67
4. 연 혁	68
5. 가정위탁 대상 아동	68
6. 가정위탁 유형	72
7. 가정위탁 선정 및 관리	73
8. 기관별 역할	93
9. 지원 내용	100
10. 후원자 및 결연기관 지정	105
11.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105
12. 행정 사항	113





## 1. 정 의

-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 2. 목 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우선되어야 함

## 3. 근 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제3항,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의2(부양 능력 등)제3항,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및 이 법 시행령 제5조의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 4. 연혁

- 1990년 : 가정위탁사업 시범실시
- 2000년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2000년~2002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범운영(강원도)
- 2003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확대(16개 시·도, 총 17개소)
- 2004. 7월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 2005. 7월 : 「아동복지법」 개정(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 규정)
- 2006. 1월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2010. 1월 :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2012. 8월 : 「아동복지법」 개정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가정 위탁보호 아동 자립지원 근거 규정)
- 2016. 3월 : 「아동복지법」 개정(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
- 2020. 1월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2019.7월 출범)으로 업무 이관
- 2020. 2월 : 양육보조금 지원기준 연령별 차등화 및 금액 인상(월 20만원 이상→연령별 월 30~50만원 이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기준(신규 책정 시 1회 100만원) 신설, 전문 아동보호비 지원기준 확대(월 40만원 이상→월 100만원 이상)
- 2020. 12월 : 「아동복지법」 개정(시행령에서 가정위탁보호 유형 규정, '21.6.30.시행)
- 2021. 6월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개정(부모교육 우선 이수 법정요건화, '21.6.30.시행)
- 2022. 6월 : 「아동복지법」개정(보호대상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 전까지 보호 연장 가능)

## 5. 가정위탁 대상 아동

가.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나.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다. 보호 연장 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보호기간 연장	【법 제16조의3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22.6.22.) 이후,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사유 없이 25세 미만까지 지원</li> <li>※ 보호기간 연장 중 대상자가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절차 따름</li> <li>※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사회복지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출·퇴근으로 ‘생활비’ 등 비용 발생시)</li> </ul> </li> </ul>
보호기간 추가연장 (만 25세 이후)	【법 제16조의3 제3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li> <li>※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기간에 포함), 2년 단순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단순휴학은 연속 사용만 가능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li> <li>-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청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li> <li>- 단, 사회복지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li> <li>- 단,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 동안 보호기간 연장</li> <li>- 단,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보호기간 연장</li> </ul> </li> </ul>
	【법 제16조의3 제3항 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li> <li>※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종료</li> </ul>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세 미만까지 지원</li> <li>※ 장애·질병 등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li> </ul>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경우</li> <li>• 26세 미만까지 지원</li> </ul>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세 미만까지 지원</li> </ul>

## 라. 보호연장가능아동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
- 소년소녀가정에게는 위탁가정을 발굴하여 소년소녀가정을 가정 위탁보호로 전환 필요
  - \* 소년소녀가정의 위탁가정 선정 시, 신청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할 것
- 소년소녀가정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전환된 경우, 소년소녀가정에 지원되었던 결연, 학자금 대여, 대학특례입학, 장학금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 ※ 참고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입소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 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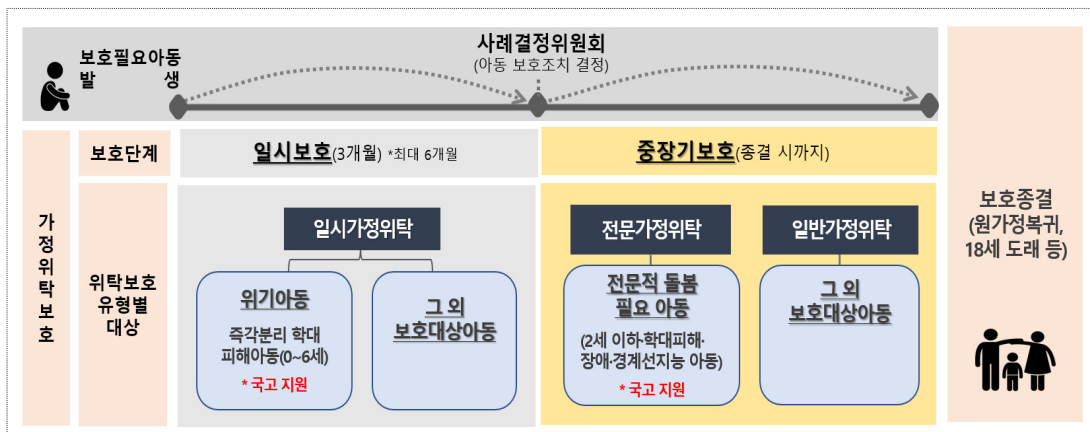
## 6. 가정위탁 유형

※ 가정위탁 유형 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1.6.30. 시행규칙 시행 당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가정위탁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전문가정위탁 기준을, 대리양육·일반가정위탁·친인척가정위탁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일반가정위탁 기준을, 일시가정위탁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일시가정위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일반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 '21.6.30. 이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결정된 자는 일반 가정위탁으로 간주
- 전문가정위탁보호 :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등
- 일시가정위탁보호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즉각분리 제도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미취학) 일시가정 위탁보호

### 〈 가정위탁 유형 〉



## 7. 가정위탁 선정 및 관리

### 가. 위탁가정 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등)

#### (1)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 가 , 1 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제출)
    - \*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서' 등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의 본당과 부속 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 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 시·군·구청장은 위탁가정의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 3년, 반드시 특수상병기록을 포함) 등 증빙자료 요청 및 검토
    - \* 위탁가정의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보건복지부에 아동통합정보 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 및 검토

#### ※ 참고 : 위탁가정 선정 시 추가 검토사항

- 위탁아동을 친자녀처럼 양육하기에 필요한 성품·경험·지식을 갖춘 자를 위탁부모로 선정
  -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하되, 시장·군수·구청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위탁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양육 경험이 없는 자도 선정 가능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위탁아동과 동거할 것(위탁부모의 주소지에서 동거할 것)
- 위탁아동을 건강하게 부양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재산이 있을 것
  -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위탁아동 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는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위탁가정으로 적합하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드림스타트 등 지역사회복지기관 또는 이웃주민의 추천 등
- 위탁부모가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위탁가정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탁부모가 될 자격이 있을 것

## (2) 전문가정위탁(추가 선정 기준)

- (1)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2)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상기 (2)의 가정위탁보호자의 경험은 친인척 외 가정위탁보호자의 경험을 말함
  - ※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위탁부모의 역량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 (위탁아동 및 양육 중인 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를 포함하여 위탁가정 내 아동이 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문가정위탁부모 추천·연계 시 심리검사를 진행하여 검사결과 참고 가능

## (3) 일시가정위탁

- (1)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일시위탁부모 선정 결과 통보일이 일시가정위탁 의뢰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서류 검토와 범죄 및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일시위탁부모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 긴급한 보호필요 사례에 대한 일시가정위탁 우선 보호
  -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미조회 기간에 한해 조회



## 나. 위탁가정 교육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1) 일반 / 일시가정위탁

-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위탁부모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기본 **5시간 이상**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필요
  - ※ 선 책정 후 양성교육 이수토록 하는 편의적 가정위탁보호 책정 금지
-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부모(1명 이상)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필요
  -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을 교육
  - ※ 보수교육 미이수 시 「아동복지법」제15조의3에 따라 위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양육상황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반위탁가정 등 적절한 보호조치로 변경
-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 등 집합교육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 가능
-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위탁부모에게 부모교육 이수 의무 및 절차를 안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가정 교육 운영 관리(인원모집, 장소제공 협조 등)

### (2) 전문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위탁부모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필요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최소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
- 전문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전문가정위탁 보수교육 이수 필요
  - ※ 보수교육 미이수 시 「아동복지법」제15조의3에 따라 위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양육상황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다른 전문(일반)위탁가정 등 적절한 보호조치로 변경
-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함

## 다.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 책정 절차

### (1) 일반가정위탁(친인척)

\* 기준(~'21.6.29.)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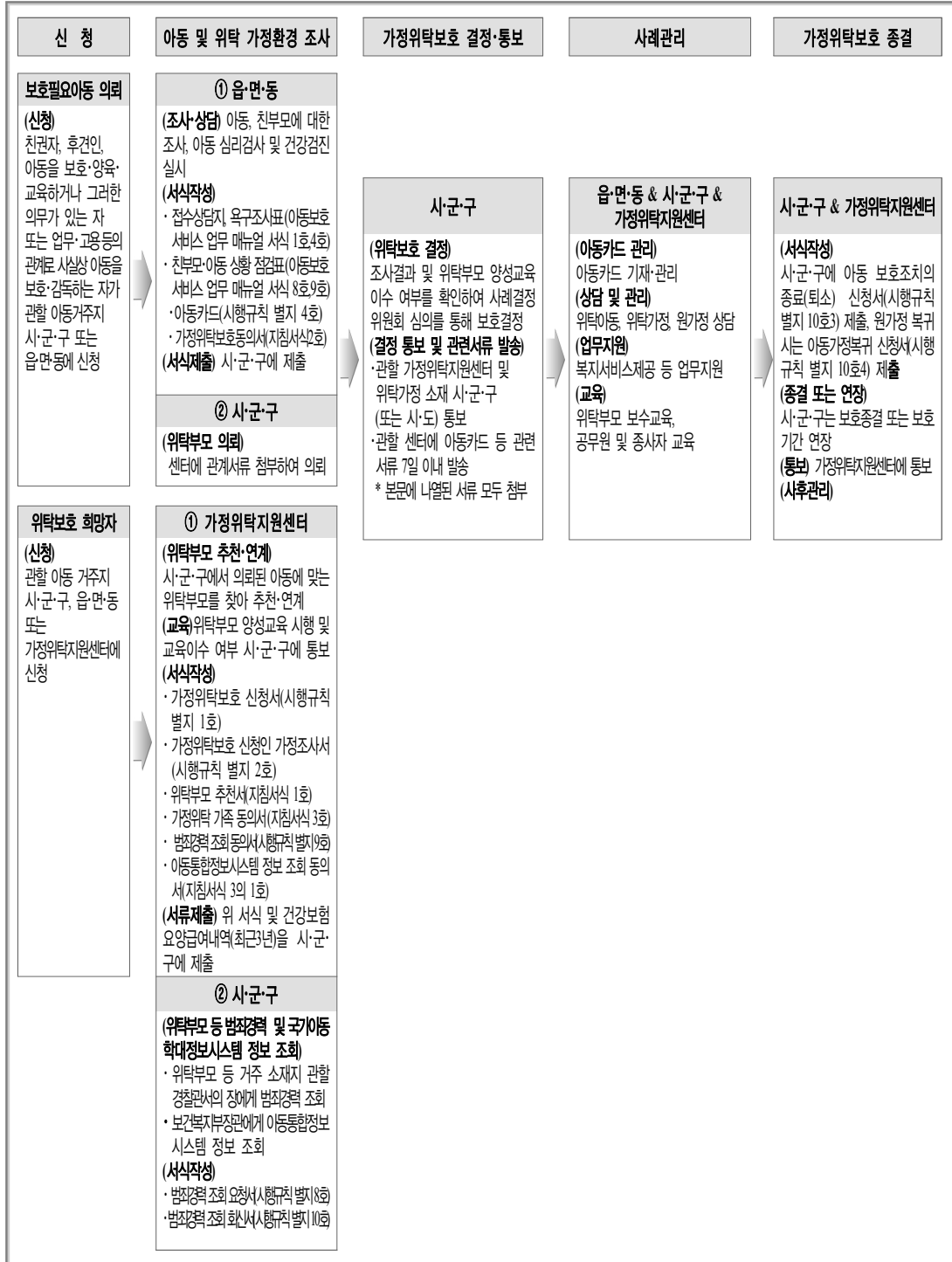
신 청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가정위탁보호 종결
<p><b>보호필요아동 의뢰</b></p> <p>(신청)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관할 아동거주지 사·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p>	<p><b>① 읍·면·동</b></p> <p>(조사·상담) 아동, 친부모와 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조사 아동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 실시 (서식작성) ·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아동보호 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4호) ·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 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호9호)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를 작성 ·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서식2호)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서식 3호)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 (서류제출) 위 서식 및 건강보험요양 급여내역 최근3년을 사·군·구에 제출 (교육)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의무 안내</p>	<p><b>사·군·구</b></p> <p>(위탁보호 결정) 조사결과 및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결정 통보 및 관련서류 발송)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 관할 센터에 관련서류 7일 이내 발송 * 본문에 나열된 서류 모두 첨부</p>	<p><b>읍·면·동 &amp; 사·군·구 &amp; 가정위탁지원센터</b></p> <p>(아동카드 관리) 아동카드 기재·관리 (상담 및 관리) 위탁아동, 위탁가정, 원가정 상담 (업무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업무지원 (교육) 위탁부모 보수교육,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p>	<p><b>사·군·구 &amp; 가정위탁지원센터</b></p> <p>(서식작성) 사·군·구에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최소)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0호3) 제출, 원가정 복귀 시는 아동가정복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0호4) 제출 (종결 또는 연장) 사·군·구는 보호종결 또는 보호기간 연장 (통보)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사후관리)</p>
<p><b>위탁보호 희망자</b></p> <p>(신청) 관할 아동거주지 사·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p>	<p><b>② 사·군·구</b></p> <p>(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 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 위탁부모 등 거주 소재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 아동통합 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서식작성) ·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 · 범죄경력 조회 화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 (교육)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의무 안내</p> <p><b>③ 가정위탁지원센터</b></p> <p>(교육)위탁부모 양성교육 시행 및 교육이수 여부 사·군·구에 통보</p>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 상담 실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 사정결과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욕구조사 및 친부모·아동 상황점검,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심리검사 실시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접수상담지), 4호(욕구조사표), 8·9호(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 작성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보호팀 내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보호조치 유형 및 기간, 서비스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별보호·관리계획 작성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1호(개별보호·관리계획서) 작성
-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 중 아동과 친인척 관계인 자는 아동의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
  - \* 아동의 위탁가정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될 가정은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등 제출하여 사전·대면 심의 진행
  - \* 동일 가정내 주양육자 변경은 변경될 주양육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조회 후 3년 경과 시 재조회 필요) 등 서류 취합, 부모교육 필수 이수, 사례회의 통해 결정
  - \*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 시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을 받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고 아래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 친부모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호)
  - 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9호)
  -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 범죄경력조회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 서식 2호)
  - 가정위탁가족동의서(지침 서식 3호)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 서식 3의 1호)
  - \* 아동의 위탁보호자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될 가정의 가정조사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변경될 위탁가정의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실시

- \* 가정위탁보호를 위해서 아동의 친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다만, 친권자의 사망·소재불명으로 가정위탁 보호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재불명조사복명서(지침서식 2의 1호)로 대체
-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함. 단, 아동학대 범죄를 범했거나 공범인 보호자의 의견은 듣지 아니함(「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
- **시·군·구**는 위탁 부모에 대한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판단 정보 조회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0조(범죄의 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근거하여 실시
  - \* 위탁가정에서 동거중인 18세 이상의 구성원은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판단 정보 조회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시행규칙 별지 8호)하고 이 때 당사자의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를 첨부
  -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회신(시행규칙 별지 10호)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당사자의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를 첨부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받은 아동학대판단정보 등을 확인 및 검토 실시
- **시·군·구**는 읍·면·동, 가정위탁지원센터, 경찰관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
  -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9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 서식 2호),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 서식 3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요청 결과 통보서
  - \* 가정위탁보호 결정 전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보호·관리계획 확정
-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 결정 후 위탁가정(신청인)과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별지 1,2,4호 서류 및 아래 관계서류를 7일 이내에 센터로 발송
  -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 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
- 친부모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호)
- 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9호)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사항 및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개별보호·관리계획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1호)
  - \* 가정위탁 책임공문 누락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해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한 공문처리 가능
  - \* 위탁가정 또는 위탁아동 전출/전입 시에는 전출 시·군·구에서 **7일** 이내에 전입 시·군·구 및 전입/전출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및 관련서류(시행규칙 별지 1,2,4호 등) 발송
  - \* 전입 시·군·구에서는 보험사가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담보 내용에 대한 안내자료를 위탁가정에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확인(※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 안내 자료가 위탁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협조 요청 가능)
  - \*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에 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상세히 기록
  - \* 아울러,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위탁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관련 정보(학대 판정 유형, 판정일, 사례 관리기관, 보호조치 결정 등)를 상세히 기록
  - \* 학대피해아동인 경우 접수상담지,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욕구조사표, 친부모상황점검표 생략, 개별보호·관리 계획서는 피해아동보호계획서로 같음
- **위탁아동 소재 시·군·구와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가 다른 경우**
  - **위탁아동 소재 시·군·구는** 보호 결정된 사항을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 통보**(관련 서류 첨부)하여 양육보조금, 기초생활수급, 상해보험 지원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위탁아동은 전입절차**를 진행
    - \* 관련서류 : 책임공문,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아동카드 등
  -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변경) 사항 통보’(지침서식 5호)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시행규칙 별지 1,2,4호, 지침 서식 2~3호)와 함께 **7일 이내에 관할 가정위탁 지원센터로 발송**
    - \*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소재지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다른 경우 위탁가정 조사 및 연계 등에 있어 가정위탁지원센터 간 상호 협조
- 18세 이후 가정위탁이 종결되는 형제·자매를 보호자로 위탁가정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육을 지원해 줄 주변지원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책정
  - \* 18세 이후 종결된 자가 민법상 성년이 아니더라도 위탁부모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양육자 변경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 \* 18세 이후 연장보호가 결정된 아동의 경우 위탁부모로 책정할 수 없음
  - \*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의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제3항에 의해 가정위탁아동은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처리

(2) 일반(친인척 외) / 전문가정위탁 절차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 상담 실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 사정결과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욕구조사 및 친부모·아동 상황점검,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심리검사 실시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접수상담지), 4호(욕구조사표), 8·9호(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 작성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보호팀 내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보호조치 유형 및 기간, 서비스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별보호·관리계획서 작성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1호(개별보호·관리계획서) 작성
- **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보호대상아동과 가정을 조사 후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친부모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호), 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9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 서식 2호)를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위탁아동 거주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과 관계된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가정(일반, 전문) 연계 의뢰
    - \* 가정위탁보호를 위해서 아동의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친권자의 사망·소재불명으로 가정위탁보호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재불명조사복명서(지침서식 2의 1호)로 대체
    -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함. 단, 아동학대 범죄를 범했거나 공범인 보호자의 의견은 듣지 아니함.('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
  - 보호대상아동이 2세 이하(36개월 미만),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인 경우 전문가정위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우선 검토
    - \* 경계선지능아동은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
    - \* 2세 이하 아동의 경우 3세(36개월) 도래 시 일반가정위탁 등으로 전환
    - \* 위 경우 외에도 시·군·구청장이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정위탁 책정 가능
    - \*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은 1명 배치 우선 고려, 보호가정 역량과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형제·자매 등은 함께 배치 원칙)  
(위탁아동 및 양육 중인 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를 포함하여 위탁가정 내 아동이 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위탁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등을 제출
  - \*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동 신청서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하여 센터가 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조사 등 위탁부모 사정절차를 진행
  - \*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 시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제출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 의뢰된 아동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선정하고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 위탁부모 추천서(지침 서식 1호)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 서식 3호)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 서식 3의 1호)
  - 범죄경력조회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 **시·군·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요청한 일반/전문위탁부모(예비/일시 위탁부모 포함)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판단 정보 조회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0조(범죄의 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근거하여 실시
  - \* 위탁가정에서 동거중인 18세 이상의 구성원은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판단 정보 조회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 요청(시행규칙 별지 8호)하고 이 때 당사자의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를 첨부
  -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회신(시행규칙 별지 10호)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당사자의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를 첨부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받은 아동학대판단정보 등을 확인 및 검토 실시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이 필요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
  - 요청받은 지자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아동복지법」 제15조제10항)
  - 신원확인 등의 조치 사항(「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



- 위탁아동, 아동의 친부모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 수급자여부의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여부 확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또는 제8호)
- 시·군·구는 결격사유 조회 실시, 가정환경조사·양성교육 이수·자격증(전문위탁가정 해당) 등 기타 관계 서류확인하여 위탁가정에 대한 자격 최종 인정하고 선정결과를 해당 센터에 통보
  - \* 기존 위탁부모의 경우 과거 위탁부모 선정 결과 통보일이 1년 이내인 경우 범죄 및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내역은 1년간 유효
- 시·군·구는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읍·면·동, 가정위탁지원센터, 경찰관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
  -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9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 위탁부모 추천서(지침 서식 1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 서식 2호),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 서식 3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요청 결과 통보서
  - \* 가정위탁보호 결정 전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보호·관리계획 확정
-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 결정 후 위탁가정(신청인)과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별지 1,2,4호, 지침 서식 2,3호 및 아래 관계서류를 7일 이내에 센터로 발송
  -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 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
  - 친부모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호)
  - 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9호)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사항 및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개별보호·관리계획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1호)
  - \* 가정위탁 책임공문 누락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해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한 공문처리 가능
  - \* 위탁가정 또는 위탁아동 전출/전입 시에는 전출 시·군·구에서 7일 이내에 전입 시·군·구 및 전입/전출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및 관련서류 발송
  - \* 전입 시·군·구에서는 보험사가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담보 내용에 대한 안내자료를 위탁가정에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확인(※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 안내 자료가 위탁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 가능)
  - \*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에 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상세히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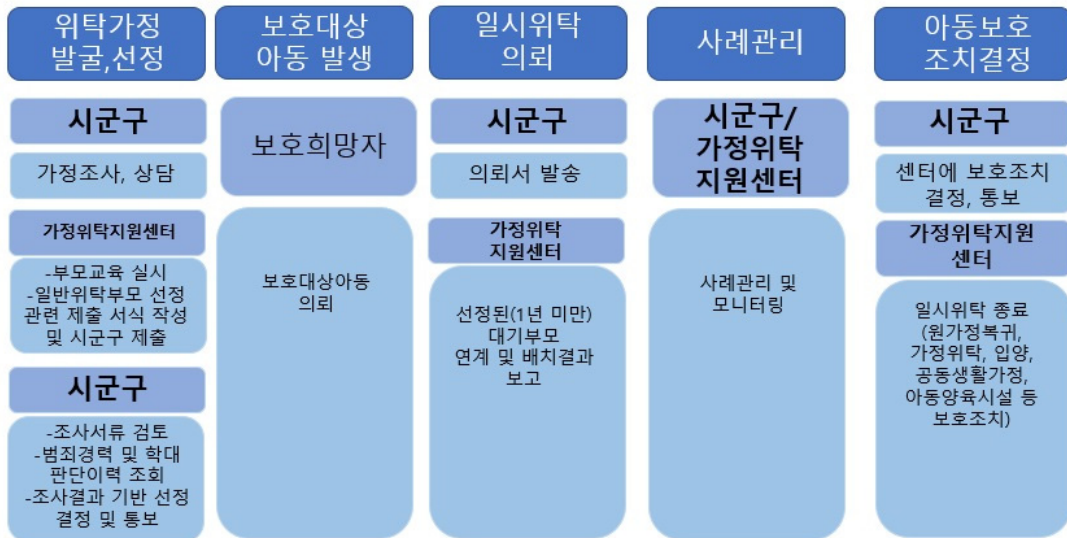
- \* 아울러,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위탁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관련 정보(학대 판정 유형, 판정일, 사례 관리기관, 보호조치 결정 등)를 상세히 기록
  - \*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 결정 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보호 신청자 가정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 학대피해아동인 경우 접수상담지,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욕구조사표, 친부모상황점검표 생략, 개별보호·관리 계획서는 피해아동보호계획서로 같음
- 아동 보호조치 결정(변경) 통지사항에 따라 당사자 간 가정위탁보호 서약 진행
    - \* 최초 서약은 4자(친권자(보호자), 위탁부모,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대면 서면 서약 원칙
  - 위탁아동 소재 시·군·구와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가 다른 경우
    - 위탁아동 소재 시·군·구는 보호 결정된 사항을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 통보**(관련 서류 첨부)하여 양육보조금, 기초생활수급, 상해보험 지원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위탁아동은 전입절차**를 진행
      - \* 관련서류 : 책정공문,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아동카드 등
    -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변경) 사항 통보(지침서식 5호)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시행규칙 별지 1,2,4호, 지침 서식 2,3호)와 함께 **7일 이내에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발송
      - \*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소재지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다른 경우 위탁가정 조사 및 연계 등에 있어 가정위탁지원센터 간 상호 협조

### (3) 일시가정위탁 절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시가정위탁 조치 가능
-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담요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일시 보호 의뢰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송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일시위탁부모 선정 결과 통보일이 일시가정위탁보호 의뢰일로부터 1년 이내인 위탁가정에 보호대상아동 배치 및 시·군·구에 보고
  - \* 일시가정위탁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 일시위탁부모 선정 절차: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를 희망하는 대상자의 부모교육실시 및 일반위탁부모 선정 관련 제출 서식 작성 및 시·군·구 제출 → 시·군·구는 요청한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판단 정보 조회 실시 → 시·군·구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 결정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 \*\*\* 시·군·구는 일시위탁가정을 사전에 발굴 및 선정하여 일시 보호 필요 아동 발생 시 즉각 연계

-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담요원)**는 일시가정위탁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욕구조사 및 친부모·아동 상황 조사,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심리검사 실시(「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접수상담지), 4호(욕구조사표), 8·9호(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 작성
-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보호팀 내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보호조치 유형 및 기간, 서비스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별보호·관리계획(학대피해아동인 경우 피해아동보호계획) 작성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1호(개별보호·관리계획서) 작성
- **시·군·구**는 일반가정위탁 절차에 준하여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가정 복귀 또는 가정위탁보호 등 보호조치 결정(일시 가정위탁 종료)
  - ※ 유기아동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발급 받아 의료·생계급여, 양육수당,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일시가정위탁 절차]**



## 라. 위탁가정 사례관리(지사체(시·도/시·군·구/읍·면·동)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 위탁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카드 작성·비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아동발생 소재지 시·군·구는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위탁부모,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 1부는 시·군·구에 비치하여 관계공무원이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례관리 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지급상황을 기록
- 위탁가정 방문 등을 통한 양육상황 점검(「아동복지법」 제15조의3,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서 확인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계획 수립 후 시·군·구 보고 및 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읍·면·동,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보호조치 후 1개월 이내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또는 유선으로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 실시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5호 '양육상황 점검표' 작성
    -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육상황 점검을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3)
  - 양육상황 점검 시, 위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 정도, 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제공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위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 등의 사항을 포함
    - \* 학업 등 타당한 사유 없이 위탁아동의 실거주지가 위탁가정의 주소지와 불일치하거나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점검
  - 시·군·구는 양육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 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계획을 재수립
- 위탁부모 보수교육 이수 안내, 위탁가정 및 원가정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안내
  - 위탁부모(1명 이상)는 보수교육을 매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아동복지법」제15조의3에 따라 위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양육상황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반(전문)위탁가정 등 적절한 보호조치로 변경
    - \* 시·도(시·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부모 양성·보수 교육의 분기별 시행계획 및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가정 지원 서비스 연계, 원가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홍보물을 위탁가정에 배포하여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 안내
- 위탁아동과 원가족 간 지속적·정기적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 지사체(시·군·구)는 위탁아동의 면접교섭 지원 계획을 수립 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면접교섭 이행결과에 대하여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아동복지법 제15조의5, 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 및 제11조의6)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의 원가족 간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면접교섭 이행결과\*를 지자체(시·군·구)에 보고
  - \* 단, 위탁아동이 동일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 여러 차례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경우(예: 월 3회 이상)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여러 이행건의 결과를 한 건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음
- 시·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상호 간에 아동학대 사례 관련 내용(신고 및 조사내용, 아동학대 판정내용, 학대 후유증)를 통보하여야 하며, 협조를 통해 사례관리 및 보호조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친권제한·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아동복지법」 제18조 및 제19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위탁아동의 친부모가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으로 사실상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친권상실·제한 신고 청구 요청, 지자체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여부 결정 및 서면 통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권제한·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를 요청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안내하여 법률 지원 연계
    - \* 친권상실 등 청구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시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
- 위탁아동이 학업을 이유로 주소지 변경없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주말에 왕래하는 경우 또는 주소지 변경으로 전입/전출된 경우에도 가정위탁보호 유지
  -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등 행정조치는 위탁가정의 주소지에서 처리
  - 관련 시·군·구 간, 가정위탁지원센터 간 협조를 통해 위탁아동과 위탁가정 사례관리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및 발급내역 관리(「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읍·면·동 및 시·군·구청장은 위탁아동이나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가정위탁보호확인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내역(지침서식 18호)을 기록·관리
  - 발급내역을 통해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이 제공받고 있는 혜택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정위탁보호 종결 시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부정수혜 예방
    - \* 관련기관(부서)에는 지자체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부서, 공공요금 할인기관(한국에너지공단) 등 포함
- 시·군·구는 가정위탁아동의 안전한 양육을 위하여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안전교육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자 할 때 인원모집, 장소제공 등 협조

### 친권제한·상실 신고의 청구

####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친권 제한 또는 상실 신고 청구 요청(「아동복지법」 제18조)

- (청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자에게 친권남용, 아동학대 및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
- (청구요청)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
- (서면통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요청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시행규칙 별지 11호)으로 통보
- (이의제기) 서면통보 결과에 이의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의 제한 또는 상실의 신고 청구 가능

#### 친권행사의 제한 / 친권상실의 신고 청구



####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친권제한·상실 신고 청구 심의(「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다음 사항의 심의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안건)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종료(퇴소)조치, 친권행사 제한 및 친권상실 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대상아동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위원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지방교육청·노동관서의 아동관련 업무 3년 이상 담당 공무원, 변호사·의사로서 아동분야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아동분야 담당 사람,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학 분야를 전공하여 아동분야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 그 밖에 아동분야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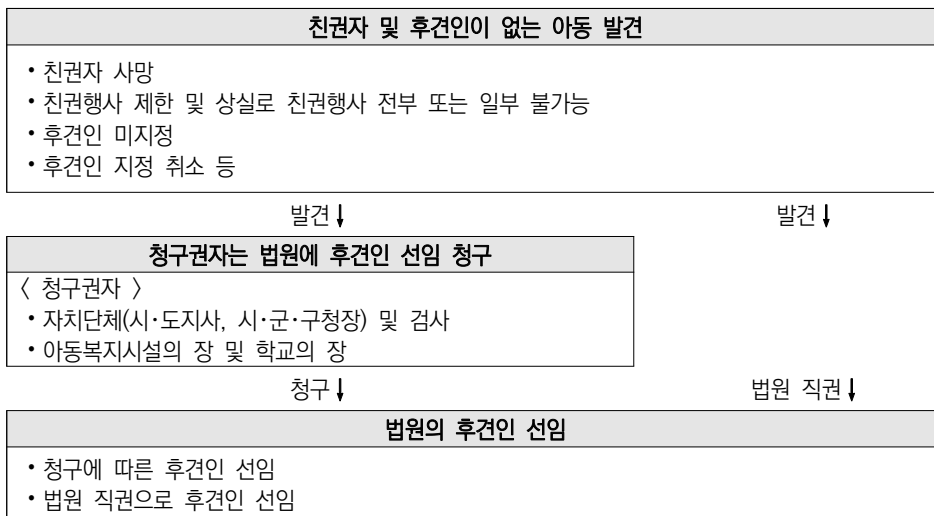
☞ 가정위탁 관련 전문가(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가 위원으로 필수 참여하도록 조치

**미성년후견인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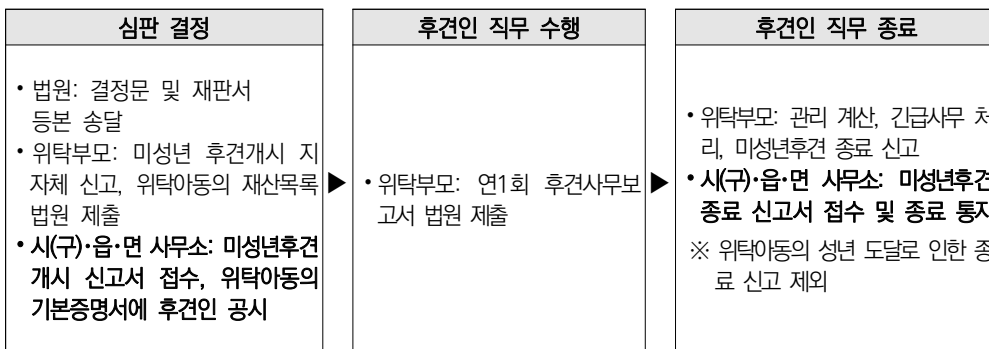
□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민법」 제928조, 제932조, 「아동복지법」 제19조, 제20조)

- (후견선임 심판청구) 위탁아동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청구
  - \* 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또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이 청구
  - \* 아동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친권상실/제한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병합하여 청구 가능
- (임시 후견인) 법원은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아동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으로 하여금 임시후견인으로 선임 가능

[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절차 ]



□ 미성년후견인 선임 이후 절차



## 마. 가정위탁보호 종결

### (1) 원가정 복귀

- 보호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아동을 양육(원가정 복귀)하려는 경우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아동가정복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 양육계획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22)를 제출(「아동복지법」제16조제2항)
- 아동 가정복귀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의 의견 청취 후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가정 복귀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17)를 활용하여 부모의 문제(경제적·건강 문제 등)가 해결되었는지 확인
  - 원가정 복귀 시 사례관리 담당자(시·군·구 및 읍·면·동,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원가정에 대한 충분한 점검 및 준비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귀가에 대한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후 귀가 적합성 파악
    - \* 복귀 전, 위탁아동, 원가정, 위탁가정, 사례관리 담당자 간 만남 필요
  - 시·군·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부모와 아동 간의 지속적인 만남 여부 등을 담은 ‘가정 복귀 의견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9)를 요청
    -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 복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제출
    -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원가정 복귀 아동으로부터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동의서(지침서식 5의1호) 확보
  - 단, 아동학대로 인해 위탁보호 중인 아동을 귀가 조치할 경우,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가정환경조사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61)를 제출받아 보호조치 종결 여부 판단
    - \* 학대피해아동인 경우 원가정복귀 점검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한 가정환경조사서로 같음.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의 귀가조치 여부 결정

### (2) 보호종료(18세 도래, 보호조치 변경)

-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시·군·구청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
  -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으로부터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동의서(지침서식 5의1호) 확보
  - \* 학대피해아동이 아닌 아동의 보호연장의 경우 서면심의 등 절차 간소화 가능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가정위탁보호 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아동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를 제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



- 형제·자매가 한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다가, 형제·자매 중 1인이 18세 이상 등의 사유로 가정 위탁보호가 종료되더라도 동생(나머지 형제·자매)은 계속해서 가정위탁보호 유지
  - \* 가정위탁보호아동은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의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제3항에 의해 가정위탁아동은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처리
- 아동 단독 전출 등으로 주소지가 이전된 경우 이를 알게 된 즉시 전출 시·군·구에서는 전입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아동의 보호상태 확인 후 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여부를 결정

### (3) 유의사항

- 시·군·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이 종결된 경우 그 사실을 가정위탁보호자, 가정 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
  - \* 가정위탁 보호종료 공문 누락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해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한 공문처리 가능
-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 시·군·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내역’(지침서식 18호)을 확인하여 위탁가정이 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혜택의 부정수혜방지를 위해 가정위탁보호종료 사실을 관련기관(부서)에 통보
  - \* 관련기관(부서)에는 지자체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부서, 공공요금 할인기관(한국에너지공단) 등 포함

### 바.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아동 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 연장 가능
- 보호기간 연장:【법 제16조의3 제1항】
- 보호기간 추가연장:【법 제16조의3 제3항 제1호】【법 제16조의3 제3항 제2호】【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보호기간 연장	【법 제16조의3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22.6.22.) 이후,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사유 없이 25세 미만까지 지원 ※ 보호기간 연장 중 대상자가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절차 따름 ※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 기간 - 단, 사회복지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출·퇴근으로 ‘생활비’ 등 비용 발생시)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보호기간 추가연장 (만 25세 이후)	【법 제16조의3 제3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li> <li>※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기간에 포함), 2년 단순휴학</li> <li>- 단, 단순휴학은 연속 사용만 가능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li> <li>-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청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li> <li>-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li> <li>- 단,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 동안 보호기간 연장</li> <li>- 단,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보호기간 연장</li> </ul>
	【법 제16조의3 제3항 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li> <li>※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종료</li> </ul>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세 미만까지 지원</li> <li>※ 장애·질병 등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li> </ul>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경우</li> <li>• 26세 미만까지 지원</li> </ul>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세 미만까지 지원</li> </ul>

● 보호기간 연장 절차

-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는 18세 도달(고등학교 졸업) 시 위탁아동에게 보호기간 연장 신청절차, 보호 일시중지사유 발생·소멸 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 의무를 안내(1월 중)
- \* 시·군·구(또는 읍·면·동)는 원활한 안내를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중인 자(위탁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이 보호조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지침 서식4호)를 제출,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연장 기간에 보호 일시중지 사유 발생 또는 소멸 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함을 안내
- \* 가정위탁 보호연장 공문 누락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해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한 공문처리 가능
- 연장 보호기간 동안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지원 등 재정 지원 지속
- 이후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읍·면·동에서 사례관리 실시

## 8. 기관별 역할

### 가. 시·도

-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 「아동복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도에서는 지역면적 및 인구수에 따른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 조치 시행
-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신분증 발급
- 가정위탁아동 지원 예산 확보·지원
- 가정위탁보호사업 지도 관리
- 가정위탁 관련 통계 관리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에 대한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안내와 가정위탁제도 홍보 및 위탁가정 발굴에 대한 지원

### 나. 시·군·구

가정위탁 절차		시·군·구 역할
보호대상아동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아동 아동 발생 시 상담·지도 후 우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li> </ul>
가정위탁 보호신청	<b>일반</b> (친인척 외), <b>전문</b> , <b>일시위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에서 제출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부모 연계를 의뢰</li> </ul>
	<b>위탁부모 자격심의 및 선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부모 자격심의를 통한 위탁가정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는 결격사유 조회 실시, 가정환경조사, 양성교육 이수, 자격증(전문위탁 가정 해당) 등 기타 관계서류 확인하여 위탁가정에 대한 자격 최종 확인하고 선정결과를 해당 센터에 통보</li> </ul> </li> <li>• 위탁부모에 대한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부모 거주 소재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li> <li>*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li> <li>* 일반·전문·일시 위탁부모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작성 가능</li> </ul> </li> </ul> </li> </ul>

가정위탁 절차		시·군·구 역할
가정위탁 보호결정	일반위탁 (친인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구는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가정위탁보호 결정</li> <li>* 읍·면·동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9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서식 2호),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서식 3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3년, 신청자 제출)</li> <li>* 관할 경찰관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li> <li>* 보건복지부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요청 결과 통보서</li> <li>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즉시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결과를 통보하고 시행규칙 별지 1,2,4호 서류 및 관련서류는 7일 이내에 발송</li> </ul>
	일반(친인척 외), 전문, 일시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구는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가정위탁보호 결정</li> <li>* 읍·면·동 :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9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서식 2호)</li> <li>* 센터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위탁부모 추천서(지침서식 1호),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서식 3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서식 3의 1), 범죄경력 조회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3년, 신청자 제출)</li> <li>* 관할 경찰관서 :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li> <li>* 보건복지부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요청 결과 통보서</li> <li>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즉시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결과를 통보하고 시행규칙 별지 1,2,4호, 지침서식 2,3호 서류 및 관련서류는 7일 이내에 발송</li> </ul>
	수급자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시·군·구 소관</li> <li>- 위탁아동은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로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급여 지급</li> <li>- 수급자 책정 전에 위탁가정으로 전입하여 위탁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때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책정가능</li>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3항에 의해 가정위탁아동은 부양의무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처리</li> <li>* 일시위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제 거주지인 보호가정의 소재지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접수</li> </ul>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카드를 작성·비치</li> <li>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청장은 위탁가정 방문 및 아동양육상황 등을 파악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조</li> <li>위탁가정 방문 등을 통한 양육상황 점검(책정 후 1개월 이내, 분기별 1회 이상)</li> <li>위탁부모 보수교육 이수 안내, 위탁가정 및 원가정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안내</li> <li>- 상해보험 지원, 전세주택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위탁가정 지원 서비스 연계, 원가정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홍보물 배포</li> </ul>	

가정위탁 절차	시·군·구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상호 간에 아동학대 사례 관련 내용(신고 및 조사내용, 아동학대 판정내용, 학대 후유증)를 통보하여야 하며, 협조를 통해 보호조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수행</li> <li>•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위탁아동의 친부모가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으로 사실상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친권상실·제한 신고 청구 요청, 지자체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여부 결정 및 서면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li> </ul> </li> <li>• 시·군·구청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보호자(친인척)가 고령인 경우 보호자가 더 이상 아동을 양육·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위탁아동의 후속 보호조치(일반위탁(친인척 외), 그룹홈 등)를 마련</li> <li>• 시·군·구청장은 위탁가정의 보호자 및 위탁아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정위탁 보호확인서(시행규칙 별지서식 10호의2)를 발급하고 발급내역을 기록·관리(지침 서식 18호)</li> </ul>
가정위탁보호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정 복귀) 보호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아동 가정복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0호의4)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의 아동가정복귀신청서(시행규칙 별지10호의4)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의 의견 청취 후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가정 복귀 점검표’(아동보호 서비스업무매뉴얼 서식7)를 활용하여 부모의 문제(경제적·건강 문제 등) 해결여부 확인</li> <li>- 시·군·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부모와 아동 간의 지속적인 만남 여부 등을 담은 ‘가정 복귀 의견서’(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서식9)를 요청</li> <li>-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자가 위탁아동의 원가정 복귀할 의사를 밝힐 경우 ‘양육 계획서’(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서식22)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li> <li>-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가정환경조사서’(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서식61)를 제출받아 아동의 보호조치 종결 여부 판단</li> <li>- 시·군·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 귀가조치 여부 결정</li> </ul> </li> <li>• (보호연령 초과)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시·군·구청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li> <li>• (보호연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가능</li> </ul>

시·군·구와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 협조사항

□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가정위탁보호 결정

- (관련서류 송부)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9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 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서식 2호), 개별보호·관리계획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1호)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송부

\* 학대피해아동인 경우 접수상담지,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욕구조사표, 친부모상황점검표 생략, 개별보호·관리계획서는 피해아동보호계획서로 같음

- 시·군·구청장은 위탁부모에게 부모교육 이수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에 협조해야함을 안내하고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부모교육 및 사례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시·군·구청장은 일반위탁부모(친인척 외)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를 위탁가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작성 가능

□ 가정위탁보호 변경통보

- (변경)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정, 해지 결과 및 주소지 이전 사항 등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을 가정위탁보호(변경)사항 통보(지침서식 5호)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및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발송

- 위탁가정 또는 위탁아동 전출/전입 시에는 전출 시·군·구에서 7일 이내에 전입 시·군·구 및 전입/전출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및 관련서류 발송

□ 가정위탁보호 변경 관련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 사전·대면 심의: 위탁가정 변경(가정위탁 → 가정위탁)
- 사후·서면 심의 가능: 동일가정의 위탁유형 변경(일반 → 전문가정위탁)

\* 위탁가정 내 주 양육자 변경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위탁부모 자격요건 확인 후 시군구 사례회의 통해 결정

□ 가정위탁보호 관리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읍·면·동,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보호초치 후 1개월 이내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또는 유선으로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 실시

- 시·군·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하여 위탁가정의 보호자 및 위탁아동이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행규칙 별지서식 10호의2)를 발급

※ 읍·면·동에서도 가정위탁보호확인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0호의2) 발급 가능

- 아동의 보호자로 부터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0호의4)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해당 센터장의 의견청취 후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가정 복귀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서식17)를 활용하여 부모의 문제(경제적·건강 문제 등)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 귀가조치 여부 결정(「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5)

□ 정보 공유

- 시·군·구청장은 가정위탁 보호결정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중 원가정의 연락 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원가정의 정보(현거주지, 연락처 등) 요청 시 협조(※ 단,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위탁아동 현황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제공

- 가정위탁보호 책정 시 사전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아동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강화(부적합사례 방지)

□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 홍보 및 가정위탁가정 발굴 적극 지원

다. 읍·면·동

가정위탁 절차		읍·면·동 역할
보호대상아동 발생		• 대상아동 상담 및 아동 가정조사
가정위탁 보호신청	일반위탁 (친인척)	•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 - 가정위탁아동 및 부모에 대한 조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시 가능 • 조사 실시 후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9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서식 2호), 가정위탁가족동의서(지침서식 3호), 범죄경력 조회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3년, 신청자 제출) • 시·군·구에 가정위탁보호 신청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청
	일반 (친인척 외), 전문, 일시위탁	•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 - 가정위탁아동 및 부모에 대한 조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시 가능 • 조사 실시 후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9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서식 2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3년, 신청자 제출) • 시·군·구에 가정위탁보호 신청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청
가정위탁보호 결정		•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사례관리		•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업무 지원(위탁가정, 위탁아동, 원가정 상담) • 가정위탁보호 중 아동의 친부모가 주민등록 말소 되어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보호 연장 및 위탁가정 변경 신청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부모(의무)교육 이수 안내와 모집 및 CDA 계좌신청, 보건복지부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및 서비스 연계하며 위탁가정 관리 업무 협조 • 아동의 군입대 등으로 위탁보호 일시중지 사유 발생 시 수급비 및 양육보조금 시·군·구에 지원 중지 요청 • 읍·면·동은 위탁가정의 보호자 및 위탁아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0호의2)를 발급하고 발급내역을 기록·관리(지침서식 18호)

라.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법」 제49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0조)

-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관리
-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 관할 구역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후원 장려 및 연계

**마.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48조제6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0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의 운영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기업·단체 등의 후원 장려 및 연계



[ 가정위탁보호 절차(구체적 내용은 본문 참고) ]

구분	읍·면·동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 보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시 접수 상담</li> <li>- 가정위탁보호의 신청·접수·상담</li> <li>- 기초생활수급 신청</li> <li>- 디딤씨앗통장 가입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시 접수 상담</li> <li>- 가정위탁보호의 신청·접수·상담</li> <li>- 위탁가정 범죄경력조회</li> <li>-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li> <li>-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가정 연계 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위탁 아동 상담</li> <li>- 위탁부모 발굴 및 양성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 시·군·구 통보</li> </ul>
가정위탁 보호결정	<p>&lt; 일반(친인척 외)/전문위탁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상담지, 육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li> </ul> <p>&lt; 일반위탁(친인척)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상담지, 육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위탁 보호 결정 (사례결정위원회)</li> <li>-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책정 통보, 관련서류 발송</li> <li>- 기초생활수급 책정</li> </ul>	<p>&lt; 일반(친인척 외)/전문위탁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가정을 상담하여 적합한 가정 연계 후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 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위탁부모 추천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li> </ul>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관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업무 지원</li> <li>· 위탁보호 연장 및 위탁가정 변경 신청</li> <li>· 부모교육 이수 안내</li> <li>· 연장보호 일시중지 시 재정지원 중단 요청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li> <li>· 위탁아동, 위탁가정, 원가정 상담, 방문, 적응·양육상황 점검 등</li> <li>· 후속 보호조치 마련</li> <li>· 심리치료 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관리 등 업무지원</li> <li>· 위탁아동, 위탁가정, 원가정 사례관리</li> <li>· 위탁부모 보수교육</li> <li>· 위탁가정 지원서비스 연계, 원가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홍보물 배포 등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 안내</li> </ul>
가정위탁 보호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연장 승인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 종결</li> <li>· 귀가조치(원가정 복귀 등)</li> <li>· 가정위탁 종결(해지),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li> <li>- 보호연장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치 사정</li> <li>- 아동 보호조치의 종결(퇴소) 신청서 제출 (원가정 복귀 시에는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제출)</li> <li>- 사후 관리</li> </ul>

## 9. 지원 내용

### 가. 양육보조금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지방이양) 권고

연령	지원액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 40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 학업 등 이유로 주소지 분리된 경우 포함
  - 위탁아동 발생 소재 시·군·구와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가정위탁보호 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 시·군·구에서 수행
  - \* 위탁아동은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로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 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의 교정시설 입소, 해외 출입국(90일 이상 체류 시)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유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 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 이 경우 과잉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양육보조금 지급 중지 처리 시 중지사유 필수 입력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재개설 포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지급 가능

## 나. 전문아동보호비

- 지원대상 : 전문위탁부모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하며, 종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은 결정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문아동보호비 100%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50% 지급
  - 위탁보호 종료일이 포함된 달은 종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문아동보호비 50%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100% 지급
- 지급계좌 및 지급일 : 전문위탁부모 계좌로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다. 일시위탁보호비

- 지원대상 : 일시위탁부모
- 지원내용 : 일 3만원 이상 지급(지방이양) 권고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일시가정위탁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일시위탁부모 계좌로 지급
  -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국비 지원)를 지급하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 라. 아동용품구입비

- 지원대상 : 신규 책정 위탁가정
- 지원내용 :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권고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개시 시 위탁부모 계좌로 최초 1회 지급
- 사용용도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 결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제3항에 의해 가정위탁아동은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동시에 책정
- 위탁아동 발생 소재 시·군·구와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가정위탁보호 결정에 따른 최초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 시·군·구에서 수행

- \* 단, 일시위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제 거주지인 보호가정의 소재지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되면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급여 신청일을 급여 개시일로 보아 지원
-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개인단위로 실시
  - \*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의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해외 출입국(90일 이상 체류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준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특례 : 금융재산 회신 이전이라도 공적자료만으로 대상자 책정 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금융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후 조치
- 친부모 사망 후 위탁아동의 상속된 재산(사망보험금 등의 동산, 부동산)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 처분이 곤란한 미성년 아동에 대한 재산 특례 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제외 검토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예산부족 등으로 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부족예산은 추경 등으로 확보 조치

## 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 붙임1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업무처리 안내' 참고하여 위탁 책정 시 안내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 일시위탁보호, 연장보호아동 포함
- 보험료 : 1인당 연 68,500원 내외

## 사. 심리검사·치료비

※ 붙임2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업무처리 안내' 참고

- 지원내역 : 위탁아동(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일시보호아동, 연장보호아동 포함)의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 지원금액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심한 아동의 위탁부모에 대해서도 양육상담비 월 20만원 이내 지원
  -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아. 위탁가정 전세주택(국토교통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참고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 (군복무기간 제외)인 무주택자 아동
  -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의 청년 전세·매입임대주택 지원 참고
- 지원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 대상가정을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 전세주택 지원 대상 추천
  - \* 지원대상 전세주택이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관리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함.
- 지원기간 : 계약기간 만료 또는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 지원기한 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 가능
-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가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무상 지원
  - \* 지원대상자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하여 적용
  -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난 경우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
- 가구당 지원한도액(2022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구 분		보호대상아동 수에 따른 가구당 지원한도		비 고
		1명	2명	
일반 주택	수도권	12,000만원	13,500만원	• 전세보증금이 지원 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광역시	8,000만원	10,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8,500만원	

\* 보호대상아동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씩 대출한도 상향

### 자. 자립정착금(「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21.12.21. 공포, 6.22. 시행)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지방이양)
- 지원절차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로 계좌로 입금
  -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이내 반드시 지급
  -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 단, 보호종료 후 아동 본인의 주거 공간 마련 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장 또는 가정위탁부모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동의를 받아 조기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종료일 30일 전부터 아동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자립정착금 지급 시 금융교육 이수 여부 등 고려해 분할 지급(권고)
  - ※ 사후관리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자립정착금 분야(14~15쪽) 참조

### 차.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21.12.21. 공포, 6.22. 시행)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 예시)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①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 만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 지원금액 :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이체) 원칙
- 지급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지급 가능

### 카. 대학진학자금

- 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 ※ 「평생교육법」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지원 권고

## 10. 후원자 및 결연기관 지정

### 가. 후원자 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아동 관련 전문가,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을 후원자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
- 지정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방법 : 지역 사회 내 근거리에서 아동을 보살필 수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를 후원자로 지정

### 나. 결연기관과 협조 강화

- 결연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 후원자와의 만남행사 등 후원프로그램 활성화
- 시·군·구청에서는 가정위탁보호 결정·해지 시 결연기관에 명단을 통보하여 결연후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11.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 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방이양사업)

- 목적
  - 시·도 및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업무를 지원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 지원 대상
  - 각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22년 12월 현재 18개소, 각 시·도 1개소, 경기 및 전남 2개소)
- 인력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배치

- 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 배치
- \* 상담원은 위탁아동 400명 초과시 1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인 추가 배치해야 하고, 「아동복지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 마다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배치는 '18.3.23부터 적용)
- 인건비 지원 :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예산 확보 및 지원 필요
- \* 임상심리치료인력 급여는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에 과장급 직위를 적용 가능
-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수당 기준에 따라 수당 지급 가능
- \*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호봉획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을 준용하나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경우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행(2016.9.23.)전에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100% 경력으로 환산 (유사 경력 80%로 적용하지 않음)
- \*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기준)종사자에 준하여 종사자 수당 지급 권고

● 운영비 지원

- 시·도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자체사업 운영시 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가능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아동복지법」 제48조)

-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
-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 가능
  -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 부담 가능

[ 전국 위탁아동 담당 규모별 시·군·구 개수 분포 ]

'20.11월말 기준

개별 시·군·구 담당아동수	50명 이하	51명-100명	101명-150명	151명 이상
시·군·구 개수	181개 지역	58개 지역	10개 지역	1개 지역

- 한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위탁아동수가 100명이 넘는 시·군·구가 11개에 달하고 있으며, 도의 경우 관할 면적이 넓어 1개 센터가 관리하기에 무리가 있어 가정위탁지원센터(또는 분소) 추가 설치 필요



## 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관리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7조 관련), 별표 1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제47조 관련) 참고

### ● 설치기준

- 사무실 : 가정위탁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 구비
-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하며, 녹취기, 무인카메라, 일방경(一方鏡) 등의 장비 구비
- 심리검사·치료실(가정위탁지원센터만 해당) :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놀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와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구비
- 교육실 : 66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 구비
- 그 외 16.5제곱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 구비

### ● 직원배치기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
- ※ 다만, 관할지역의 위탁아동 수가 4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 마다 상담원 1명을 추가로 배치, 15세 이상의 아동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 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추가 배치
- ※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위탁아동 수와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상담원 수 조절 가능

### ● 운영기준

- 관리규정
  - 센터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정·시행. 다만,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이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르되,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
- 장부 등의 비치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 센터(법인)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 센터 운영일지
  - 센터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금전·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친부모에 대한 조사·상담 기록과 관련 서류(자립지원계획 등)
  - 가정위탁보호조치 아동 및 귀가 아동의 명단 및 관련 서류(사후관리계획 등)
- 운영원칙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탁아동 및 원가족(原家族)의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때에는 가정 보존과 가족 기능의 회복, 아동의 이익에 우선을 두어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정위탁 시 아동에 대한 계획 및 아동 배치 후 아동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평가 실시
  - 친부모와 아동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개별 아동계획 수립
  - 친부모와 아동의 재결합을 돕기 위하여 친부모와 정기적인 접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기록
  - 시·도(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의뢰가정 및 위탁 가정은 상호 협력

#### 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관련 사항

\*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유형	자격기준
가정위탁 지원 센터의 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3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유형	자격기준
	<p>다.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의 진료 경력자</p> <p>마.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사.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 센터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교육과정”에 대한 75시간의 교육과정 이수 필요</p> <p>※ 가정위탁지원센터 센터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하는 가정위탁보호 실무과정 및 상담원 교육에 필수적 참여(센터는 소요예산 확보하여 지원)</p> <p>※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교육과정 교과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의 이해(아동복지의 기본가치 이해, 아동복지법의 이해,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li> <li>- 아동복지실천기술론(아동상담심리학의 이해, 아동복지 실천기술론)</li> <li>-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가정위탁 관련 법률의 이해)</li> <li>- 위탁아동과 부모(위탁아동양육프로그램, 위탁부모 및 친부모교육, 가족보존서비스의 이론과 실제)</li> <li>- 가정위탁사업과 상담(아동심리평가의 이해와 실제, 위탁부모 유형별 특성과 상담, 가정위탁상담 및 사례관리)</li> <li>- 가정위탁과 지역자원연계(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방안, 지역자원 연계사례)</li> </ul>
<p>팀장</p>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1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다.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상담원</p>	<p>•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다만, 대학에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 면제 가능</p> <p>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p>

유형	자격기준
	<p>나.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복지심리학과 포함)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p> <p>※ 상담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교육과정”에 대한 75시간의 교육과정 이수 필요</p> <p>※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하는 가정위탁보호 실무과정 및 상담원 교육에 필수적 참여(센터는 소요예산 확보하여 지원)</p> <p>※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교육과정 교과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의 이해(아동복지의 기본가치 이해, 아동복지법의 이해,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li> <li>- 아동복지실천기술론(아동상담심리학의 이해, 아동복지 실천기술론)</li> <li>-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가정위탁 관련 법률의 이해)</li> <li>- 위탁아동과 부모(위탁아동양육프로그램, 위탁부모 및 친부모교육, 가족보존서비스의 이론과 실제)</li> <li>- 가정위탁사업과 상담(아동심리평가의 이해와 실제, 위탁부모 유형별 특성과 상담, 가정위탁상담 및 사례관리)</li> <li>- 가정위탁과 지역자원연계(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방안, 지역자원 연계사례)</li> </ul>
<p><b>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b></p>	<p>•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p>
<p><b>자립지원 전담요원</b></p>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p> <p>다.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라.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을 포함)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교육과정”에 대한 75시간의 교육과정 이수 필요</p> <p>※ 자립지원전담요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하는 가정위탁보호 실무과정 및 상담원 교육에 필수적 참여(센터는 소요예산 확보하여 지원)</p> <p>※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교육과정 교과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의 이해(아동복지의 기본가치 이해, 아동복지법의 이해,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li> <li>- 아동복지실천기술론(아동상담심리학의 이해, 아동복지 실천기술론)</li> <li>-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가정위탁 관련 법률의 이해)</li> <li>- 위탁아동과 부모(위탁아동양육프로그램, 위탁부모 및 친부모교육, 가족보존서비스의 이론과 실제)</li> <li>- 가정위탁사업과 상담(아동심리평가의 이해와 실제, 위탁부모 유형별 특성과 상담, 가정위탁상담 및 사례관리)</li> <li>- 가정위탁과 지역자원연계(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방안, 지역자원 연계사례)</li> </ul>

● 종사자 역할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 위탁아동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 위탁부모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 친부모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 심리 치료 기관 연계 및 관리
-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심리치료지원현황 및 성과관리 등
- 심리치료 관련 사례관리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요건 기준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중 임상심리 치료 전문인력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자립지원전담요원

- 만 15세 이상 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및 평가
-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위탁아동 자립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 전산시스템(DB)의 자립관련 자료 입력 및 현황관리
-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후원체계 마련
- 자립영역 단계별 위탁부모 교육
- 자립아동 사후관리
-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신청 지원

**라.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신분증 관련 사항**

- 각 시·도지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 제1201호)의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하여 가정위탁 지원센터 직원신분증 발급

※ 기재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함

● 기재사항 제시

- 앞쪽의 기관명 :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 뒤쪽
  - 소 속 :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 발급기관장 명의 : ○○시·도지사

## 마.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 설치대상 : 가정위탁지원센터
- 설치주체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된 사항임
- 업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 구성 : 위원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장(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
- 위촉방법 :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준용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시행규칙 제24조 3항)
  - 위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 중에서 임명·위촉
- 위원의 임기 : 3년(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행정사항
  -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군·구 및 시·도에 보고
  -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및 이 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참조

## 12. 행정 사항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익월 15일까지 해당월의 가정위탁보호 실적 및 사례현황 자료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에 등록
  - \* 시·군·구(읍면동)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 책정·종료·연장 공문 누락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해 문서 24([open.gdoc.go.kr](http://open.gdoc.go.kr))를 통한 공문처리 가능
  - ※ 시·군·구는 위탁아동에게 변경사항 발생 시(가정위탁책정, 종결, 위탁가정 또는 위탁아동 전출/전입 등) 해당내용을 7일 이내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해당월 실적에 누락되지 않도록 등록
  - ※ 기타 관련사항은 「가정위탁지원센터 통합업무매뉴얼」 참조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실적(지침서식 7호)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 시·군·구는 관할 지역 내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 시·도지사는 가정위탁보호 현황(지침서식 6호) 및 지원내역(양육보조금, 아동용품구입비, 생계비,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대학진학자금,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등의 지원인원수, 자금원별 지원금액, 지급내역)을 반기별로 익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

가정위탁 상담문의 1577-1406

기관명	주 소	연 락 처	홈페이지	운영법인
아동권리보장원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E타워 6층	전화: 02)6454-8500	www.ncrc.or.kr	-
서울 가정위탁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 빌딩 3층	전화: 02)325-9080 팩스: 02)325-2664	www.seoul-f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 가정위탁 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57, 동원빌딩 3층	전화: 051)758-8801 팩스: 051)752-8810	www.busan.sc.or.kr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대구 가정위탁 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91, 1층	전화: 053)656-2510 팩스: 053)626-2510	dgfc.sc.or.kr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인천 가정위탁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4번길 4 추인타워 8층	전화: 032)866-1226 팩스: 032)504-1226	www.icf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 가정위탁 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5번길 1, 3층	전화: 062)351-1206 팩스: 062)261-2141	www.gjw.or.kr/foste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 가정위탁 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4호	전화: 042)242-5240 팩스: 042)242-5280	www.djfoster.or.kr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울산 가정위탁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16 안강빌딩 4층	전화: 052)286-1548 팩스: 052)286-4675	ulsan.goodneighbors.kr	굿네이버스
경기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14번길 9 서린프라자 7층	전화: 031)234-3980 팩스: 031)234-2353	www.gg-f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 북부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78 4층	전화: 031)821-9117 팩스: 031)840-2828	www.kgfoster.or.kr	대한사회복지회
강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79번길 27, 2층	전화: 033)255-1406 팩스: 033)257-1407	www.fostercare-gangwon.or.kr	YMCA
충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6, 404호	전화: 043)250-1226 팩스: 043)238-7757	cbfc.sc.or.kr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충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 10길 8 희망빌딩 4층	전화: 041)577-1226 팩스: 070)8891-1226	www.fosterservice.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2 청목빌딩 6층	전화: 063)288-7770 팩스: 063)288-7780	jbfc.sc.or.kr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전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28	전화: 061)279-1225 팩스: 061)245-1524	www.jnfoster.org	공생복지재단
전남 동부 가정위탁 지원센터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전화: 061)744-1964 팩스: 061)744-1969	www.jnefoster.org/jnbd	순천성신원
경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북 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10-4 1층	전화: 054)705-3600 팩스: 054)705-3500	www.gbfooster.or.kr	(사)한국아동 복지협회
경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봉곡동) 한마음타워 5층	전화: 055)237-1226 팩스: 055)716-0080	www.knf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 가정위탁 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2, 3층	전화: 064)747-3273 팩스: 064)747-3272	www.jeu-foster.or.kr	(사)제주 상담센터



**붙임 1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업무처리 안내**

**I. 개 요**

**1. 목 적**

- 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위탁부모가 무제한의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아동의 상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2.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59조(비용의 보조)

**3. 대 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일시위탁아동

**Ⅱ. 상해보험의 내용**

**< 상해보험의 주요 담보원칙 >**

- 위탁아동의 상해·질병관련 위험 담보
- 위탁아동의 배상책임 담보(위탁부모의 민/형사상 책임 최소화)
- 유괴, 납치 등 외부적인 위험 제거

**1. 보험의 내용**

- 위탁아동 후유장해
- 부양자 후유장해(위탁(부)모 1인)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 치아 치료비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위로금
- 얼굴성형
- 일상생활배상책임
- 정신과질환진단금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 2. 보험담보의 주요내용

### ● 후유장해 보험금

- 일상생활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입 금액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 ● 입원 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입원의료실비(비급여 포함)를 보상한도액내에서 90% 지급(기왕증 담보와 한의원,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의 비급여 대상 의료비 포함)

### ● 통원 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에 통원을 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통원의료 실비를 보상한도액내에서 지급(기왕증 담보는 포함하며, 치과병원 또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비급여 대상 의료비는 제외)

※ 통원 공제 금액 : 회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 암진단급여금 : 책임개시일 이후 처음으로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 전액을 보상(면책일 없음 '0일')
- 기타진단급여금(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책임개시일 이후 처음으로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20% 보상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에 대해 정해진 1일당 입원비를 보상 (최고 180일까지)

● **치아 치료비**

-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과치료중 외래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법적본인 부담금 제외, 약제비 제외)의료비를 연간 정액제로 보상  
※ 외모개선 목적의 교정치료,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심미치료 및 예방치료는 보상불가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당 위로금을 지급(90일 한도)

● **강력범죄 위로금**

- 살인, 상해, 폭행, 강간, 강도, 폭력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정금액 지급

● **얼굴 성형**

- 피보험자가 얼굴표면에 1cm 이상의 상처 또는 얼굴피부의 변형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성형수술을 필요로 한 때에 의료실비 및 성형수술실비 지급

● **일상생활 배상책임**

-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  
※ 각 시·도에서는 가정위탁아동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담보내용을 조정·확대 가능

● **정신과질환 진단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지급

● **골절발생위로금**

-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골절발생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 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폭력피해위로금**

-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에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폭력피해위로금으로 지급

※ 형법 제25장의 상해와 폭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

● **식중독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는 경우는 제외

**III. 업무처리요령**

**1.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 **2022. 3. 1 ~ 2023. 2월 말(28일 또는 29일)**

- 보험내용 :

위탁아동(연장보호아동 및 일시위탁아동 포함) 후유장해, 부양자 후유장해(위탁(부)모 1인),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치아 치료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위로금, 얼굴성형, 일상생활배상책임, 정신과 질환,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 보험료 : 1인당 68,500원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와 협의)

- 보험개시일 : **2022. 3. 1부터**

## 2. 보험사 선정

### (가) 보험사 선정기준

- 선정원칙 : 1인당 약 68,500원 내외의 보험료로 최고의 위험 보장
- 선정방법
  - 보험사 선정에 참여한 보험사중 아래에 제시한 <기준 담보사항과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68,500원 금액 내외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 중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 보험사 선정 및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보험가입자료로 총 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1인당 보험료가 평균 68,500원을 초과하여 유찰이 예상될 때에는 입찰 공고 전에<별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담보 조정 순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담보 사항을 조정하여 공고 가능
- 보험계약은 “단체보험”으로 체결(보험료 산출은 피보험자 개인별 보험료로 산출)
  - ※ 시도는 입찰 공고시 입찰 보험사가 동일한 자료로 보험료 산출을 할 수 있도록 위탁아동(비실명)의 성별 및 연령구성을 공개
- 참가자격
  -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보험사로 제한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제외
  - ※ 보험사 선정 공고 시 <지침서식 제8호 서식>에 따라 가정위탁아동, 위탁가정의 부양자 1인의 인적사항 제공

[ 기준 담보사항과 보험가입금액 ]

기준담보사항	보험가입금액	비고
위탁아동 후유장해	100,000천원	* 자세한 담보내용은 <보험담보의 주요내용 참고>
부양자(1인) 후유장해	100,000천원	
입원의료비	30,000천원	
통원의료비	외래 20만원, 처방 조제 10만원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30,000천원	
치아 치료비	200천원/연/1년한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50천원/일/180일한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200천원/일	
강력범죄위로금	5,000천원	
얼굴성형	2,000천원	10만원 초과금액에 한함
일상생활배상책임(2만원공제)	100,000천원	
정신과 질환 진단금	500천원	
골절발생위로금	150천원	
폭력피해위로금	300천원	
식중독위로금	200천원	

※ 담보 사항의 공제금액은 실손 의료비 표준 약관을 준용

(나) 제안 요구 조건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동일조건에서 보장
- 위탁부모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포기
- 피보험자 평균 연령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제시
-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 준수
- 계약 체결 후 보험사는 시·도 및 시·군·구 관련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위탁부모 등을 대상으로 보험안내 설명회 개최 및 보험가입 및 보험담보내용에 대한 피보험자별 개별안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 안내 자료가 위탁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협조 요청 가능)

### 3. 보험계약의 처리

#### (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 보험계약자 : 시·도지사(광역지방자치단체장)
- 피보험자 :
  - ① 가정위탁아동(각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 아동 및 일시위탁아동 포함
  - ② 부양자 후유장애 담보 가입 부양자(위탁부(모) 1인)
- 보험수익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
  - 단, 계약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서면으로 인정하는 경우, 위탁 부모도 수익자로 인정 가능
  - \* 보험사고발생시 의료비보험금 등 모든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 ※ 단, 부양자 후유장애 담보의 경우 부양자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 가능

#### (나) 보험계약 체결

-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 중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보험사를 최종 선정하여 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후 시·도 및 시·군·구 관련 공무원은 보험 약관,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 등 관련정보를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발송
- 피보험자 평균연령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담보(특약)를 추가하여 보장 내용을 다양화하여 불용액 발생 방지
-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타용도 사용 불가(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 입찰 선정 보험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접수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 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 증빙자료 등) 제출

#### [ 업무처리 흐름도 ]



(다)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 계약은 “단체보험”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보험개시일(2023. 3. 1)로부터 1년
- 변동인원에 대한 보험료 차액 발생 시 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 ※ 계약 후 발생하는 변동인원(추가 및 탈퇴)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침서식 9호>에 따라 매월 1회 보험사에 통보
- 보험기간 중 추가 등록된 가정위탁아동(위탁부모 포함)의 보험기간은 원 보험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보험료는 잔여기간의 일할 계산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대한 보험효력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 결정된 시기부터 발생
-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2회 분납

(라) 보험 해지

- 보험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은 자동으로 소멸
- 보험 기간 중 보험 해지
  - 계약자의 사유로 보험 해지 사유 발생 시 단기 요율 적용
  - 보험사의 사유로 보험 해지 사유 발생 시 일할 요율 적용

4.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가) 보험금 청구 : 보험약관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나) 보험금 청구절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청구서 작성(보험사 제공서식 사용)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신청인이 시·도 또는 시·군·구에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관련서류 제출 가능하며, 타 시도에서 접수 시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로 우편 또는 팩스로 이송 가능

※ 보험금 청구 양식(보험사 소정양식)

- 청구의 취지와 사고(질병)발생의 근거 및 청구 금액 등을 기재  
(계약내용, 청구사유, 피보험자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



● 보험지급 사유별 첨부 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진료병원, 경찰서 등
후유장해 보험금	•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등	진료병원
입원/통원 의료비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필요시 첨부) • 진료비 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병원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 조직검사지	진료병원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입퇴원 확인서	진료병원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사건사실 확인서	경찰서
강력범죄 위로금	• 사건사실 확인서	경찰서
얼굴성형	• 진료비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병원
일상생활배상책임	• 사고확인 공문 • 손해배상금 및 그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치아치료비	•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필요시 첨부) • 진료비 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병원
정신과질환 진단금	• 진단서	진료병원
골절발생위로금	• 진단서	진료병원
폭력피해위로금	• 진단서 • 사고증명서(경찰신고서류 또는 조사기록 등)	진료병원 경찰서, 검찰청
식중독위로금	• 진단서	진료병원

※ 보험사 필요 시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보험금청구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가능

-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속한 손해 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결정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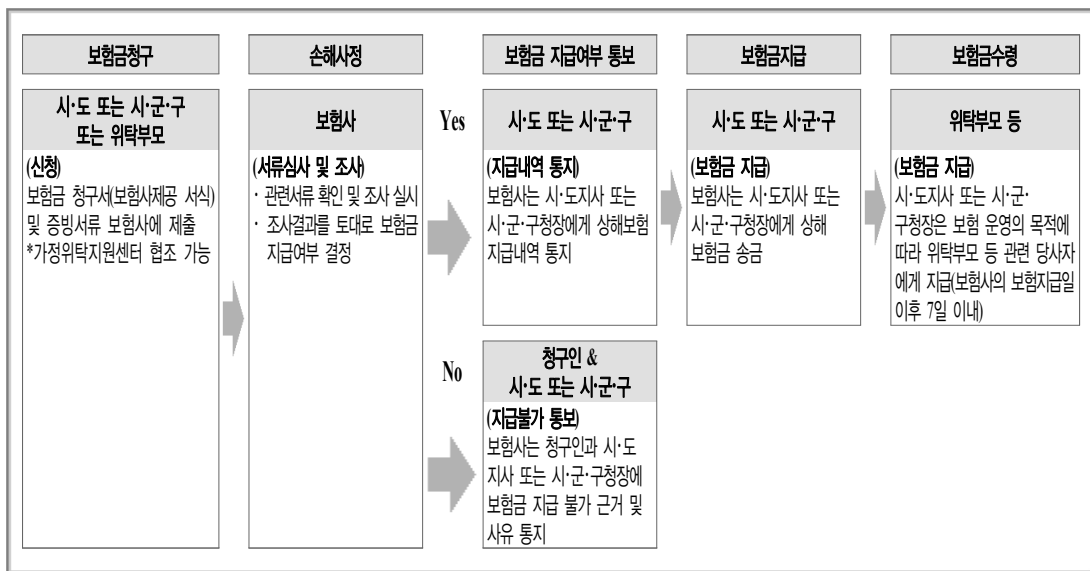
※ 지급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입금

- 보험금은 보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상법 제662조)

(다) 보험금의 지급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발생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정위탁 담당부서)에게 상해보험 지급내역을 통지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불가시 청구인 및 시·도지사(가정위탁담당부서)에게 보험금 지급 불가 근거 및 사유를 통지
- 보험사는 보험기간중의 가정위탁아동의 증감, 사고유형 및 보험금 지급내역,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 등을 매월 30일까지 ‘위탁아동상해보험금 지급내역’ 서식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시·도지사(가정위탁담당부서)에게 통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 운영의 목적에 따라 위탁부모 등 관련 당사자에게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일 이후 7일 이내에 지급 (계좌이체 원칙)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금 지급외의 타 용도로는 사용 불가

[ 보험금 지급 처리절차 ]



5. 사후관리

- 시·군·구청장은 위탁아동 보호조치시 상해보험 가입에 대하여 위탁가정에 안내
-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침서식 10호>에 따라 보험 사고와 관련한 위탁아동의 사고유형 및 보험금 지급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집계하고 관리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가정위탁아동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침서식 9호>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아동의 변경 사항(신규 및 종결)을 대하여 매월 1회 시·도지사 및 보험사에 통보
- 보험계약체결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며, 보험 담보내용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실시  
※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 안내 자료를 피보험자(위탁부모)에게 송부

#### IV. 행정사항

##### 1. 계약체결 보고

- 시·도지사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지침서식 11호>에 따라 보험 계약체결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 2. 보험금지급현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침서식 12호>에 따라 상·하반기 보험금 지급현황을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시·도지사는 매 반기 익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변동인원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부 위임 가능

**참 고**

**[별첨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담보 조정 순서]**

-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 암치료비(3천만원 → 2천만원)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부양자 1인 후유장해
- 보험담보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폭력 피해위로금·식중독위로금 → 얼굴성형 → 부양자 1인 후유장해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 위탁아동이 보험담보사항에 대해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담보사항을 조정·삭제 불가
  - ※ 보험의 간접비용 성격이 크면서 보험료 비중이 높은 보험담보사항부터 조정

**[보험계약시 유의 사항]**

1. 보험료 총액 : 가입아동수 × 68,500원 내외
  - ※ 추가 아동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와 협의(예산 추가 배정 어려움)
2. 보험료 납입 : 일시납(부득이한 경우 2회 분납)
3. 계약기간(보험기간) : 보험개시일('23. 3. 1)로부터 1년
  - ※ 각 시·도에서는 보험사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보험이 조기에 개시될 수 있도록 협조

**[보험사 선정 등 추진일정]**

- 보험가입자료 파악 및 보험사 선정공고 : '23. 1. 21까지
  - ※ 공고기간 : 10일~5일
  - ※ 1차 공고에서 유찰되는 경우 재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므로, 공고(의뢰)를 빠른 시일 내 실시
- 보험사 선정 : '23. 1. 28까지(지자체 여건에 따라 연기 가능)
- 계약체결 : '23. 2. 28까지
- 보장 개시 : '23. 3. 1~

**붙임 2**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업무처리 안내

**I. 개요**

- (목적)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에 필요한 국내입양·가정위탁아동의 심리정서 검사·치료비 지원
- (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59조(비용 보조)
- (대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복지사업안내」상의 국내입양·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 단,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도 포함

**II. 심리치료지원사업 내용**

**1. 사업 기간 및 내역**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가격 및 제공기간
  -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심리검사비 : 회당 20만원 이내(1회)
    - \*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위탁 책정전 사전심리검사가 누락된 위탁아동의 경우 심리검사 실시 및 비용 지원
    - \* 추가 심리검사 필요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이 추가 지원에 대해 결정
    -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회수는 월4회 이상 1회당 50분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용 가능
    - \*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심한 위탁아동의 위탁부모에 대해서도 양육 상담비용 지원

- 교통비 : 월 2만원 이내, 단 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할 경우 월 4만원 이내(아동 및 아동보호자 교통비 포함)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시·도는 시·군·구 예산배분 현황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공유하고 지원 필요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

## 2.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 선정
  - ※ 시·도에서 치료비 대상자 선정이 예산집행상의 문제로 곤란한 경우는 시·군·구에 위임 선정도 가능. 단,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련 실적을 보건복지부로 보고
  - ※ 시·도에서는 사업기간 중 치료 포기자를 대비하여 예비 인원 확보
  - ※ 위탁부모 상담 중 아동의 심리정서상의 문제나 행동문제로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의사 및 전문 상담소의 치료 필요 소견을 받은 아동을 우선 고려
  - ※ 심리치료 욕구를 가진 아동 발견하여 시·도에서 추천할 경우 초기 상담 및 주의뢰문제 등을 각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전달하여 아동의 사례관리 차질 방지
  - ※ 시·도에서는 예산 집행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공유하고 관할 시·군·구간 예산을 적정하게 조정

## 3. 치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

- (가정위탁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가정위탁지원센터
  - 시·군·구청장이 결정 통보한 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침서식 13호>의거 시·도지사에게 추천
  - ※ 관할 시·도의 심리치료비지원 예산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공유하고 연간 지원 계획 관리
  - ※ 시·도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가정 및 시·군·구 담당자 대상 심리치료지원사업 홍보 활성화

● (입양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 포함)

- 국내입양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침서식 13호>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추천
- ※ 대상자 접수에서 아동의 치료에 대한 동의서, 원하는 치료기관 기재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4.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

<b>대상</b>	• 가정위탁보호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b>위탁사항</b>	• 시·군·구청장이 결정 통보한 가정위탁아동
<b>선정기준</b>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한 아동

● 입양아동

<b>연령</b>	• 만2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
<b>입양사항</b>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
<b>치료아동 선정기준</b>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한 아동 ※ 의사소견서 또는 전문상담소에서 소견서를 받은 아동에 한함

5. 치료기관 선정

가.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사례관리 인력을 활용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에게 적합한 **치료기관을 선정**하고, 치료기관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시·도 담당자에게 제출**(치료기관 선정 및 상담사 자격 증명자료 등)
- 지역 내 소아 정신과 등 의료기관이 아닌 상담 센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양질의 치료·상담 실시를 위해 다음의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하여 선정
  - ※ 치료기관의 접근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치료사의 직접 방문을 통한 심리치료 가능
  - ※ 치료기관 선정시 상담사 요건기준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중 임상심리 치료 전문인력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치료기관 제출서류)** 선정된 치료기관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취합된 서류를 시·도에 제출
  - 치료대상 아동 관련 서류 : 아동 심리검사보고서(지침서식 15호), 총괄사례보고서(지침서식 16호)
    - ※ 총괄사례보고서는 치료기관의 서식으로 대체 가능하며 치료 종결한 아동에 한함
    - ※ 입양아동의 부모는 아동심리검사보고서를 진단서 혹은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음
    - ※ 치료기관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월보고 수행
  - 치료기관 상담사 자격 확인 위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 치료기관 진료비 지급 위한 서류 : 입금될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세금계산서(제출불가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유서 제출) 각 1부

#### 나. 입양아동의 경우

- 시·도지사로부터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입양아동의 부모**는 아동에게 적합한 **치료기관을 선정**하고, 치료기관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시·도 담당자에게 제출
  - 입양부모의 치료기관 선정 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선정한 치료기관 이용 가능하며, 이 때 시·도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출한 기존 서류로 같음. 추가 서류는 입양 부모가 제출
- 치료기관의 선정 및 상담사 요건기준은 가정위탁아동과 동일
- **(치료기관 제출서류)** 선정된 치료기관은 입양부모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입양부모는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취합된 서류를 시·도에 제출
  - 제출서류 종류는 가정위탁아동과 동일

#### 6. 진료비 청구 및 지급

- 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 치료기관은 ‘아동 심리치료비 청구서(지침서식 14호)’를 첨부하여 매월 20일까지 해당 지역 시·군·구로 진료비를 청구
  - 시·군·구에서는 당해연도말 사업종료 시점인 12월은 당월 15일까지 사업완료



- 진료비 지급 : 시·군·구 담당자
  - 진료비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매월 25일에 진료비 지급(전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료비)
  - 당해년도 12월은 당월 15일까지 사업완료 및 당월 25일까지 진료비 지급
- 교통비 지급 : 시·군·구 담당자
  - 심리치료지원사업과 관련한 교통비는 월 2만원 이내에서 지급
  - 단 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할 경우 월 4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 ※ 심리치료지원사업 교통비 청구서(지침서식 17호)를 작성하여 별도로 청구(교통비 영수증 첨부)하며,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교통비청구서로 갈음할 수 있음(지침서식 17호)

※ 단, 시·도 또는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아동에 한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진료비 및 교통비 청구·지급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7. 사후관리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에 한해 치료대상 아동, 치료기관에 대한 진료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시·도담당자에게 보고
- 시·도담당자는 치료대상 아동이 중도에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 지역가정위탁지원 센터와 협의하여 예비 후보자(위탁아동) 중에서 진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정

### Ⅲ. 행정사항

#### 1.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현황 보고

- 시·도지사는 치료비 지원대상자 현황을 아래서식에 의거 **2021.2.10.**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제출

시·도명	전체 치료 기관의 수 (개소)	치료비 지원 대상자 수(명)	예비 치료비 지원 대상자 수(명)	비 고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 진료비 지급 현황 제출

- 시·도지사는 치료비 지원사업 종료 후 진료비 지급현황을 익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제출

시·도명	치료아동수(명)	진료비 지급액(천원)	비 고



부 록

보호대상아동의 맞춤형 가정보호서비스를 위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 지침**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전문가정위탁사업 -



## 목 차

<b>I. 사업개요</b> .....	<b>137</b>
1.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137
2. 전문가정위탁사업 .....	140
<b>II.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b> .....	<b>143</b>
<b>III. 위탁가정 관리</b> .....	<b>145</b>
<b>IV.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절차</b> .....	<b>148</b>
1. 위기아동 가정보호(일시보호) .....	148
2. 전문위탁가정 보호(중장기보호) .....	150
<b>V. 재정지원</b> .....	<b>155</b>
1.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	155
2. 전문위탁가정 사업 .....	156
<b>VI. 행정사항</b> .....	<b>159</b>
<b>[참고]</b>	
1. 위기아동 보호가정 사업 관련 FAQ .....	160
2. 전문위탁가정 사업 관련 FAQ .....	163
<b>[붙임]</b>	
1. 전문위탁가정 기준 .....	166
2. 전문가정위탁 대상아동의 특성 .....	168
3. 위탁가정 선정결과 통보서 .....	169
4. 아동용품구입비 결과보고서 및 구매용품 관리양식 .....	170
5. 시도별 전문가정위탁 아동 현황 보고(양식) .....	172
6.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	173



## I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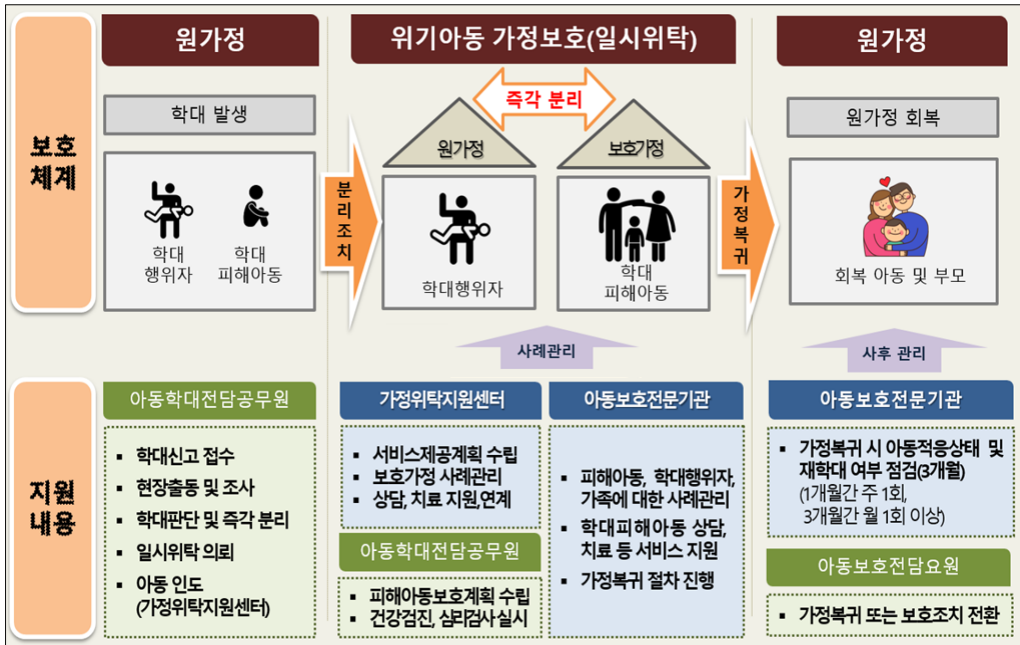
### 1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21.3.~)

- (정의)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일시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근거)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21.1.19.)」,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 (사업대상) 원가정에서 분리된 6세미만(미취학) 학대피해아동
  - \* 즉각분리(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및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제3호) 아동 모두 포함
- (지원대상) 전문위탁가정 자격을 갖추고 사업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가정
  - \* (자격요건) 전문위탁부모와 동일하게 가정위탁 양육경험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청소년 상담사 등 자격 소지
- (배치기준) 보호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보호가정 역량과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형제·자매 등의 경우 함께 배치 원칙)
  -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 (지원금액) 전문위탁가정에 아동 1인당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및 아동용품구입비(1회 100만원) 등 지원
  - \*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
  - 동일 가정 내 보호아동이 1명 이상 배치되는 경우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원(아동 1인당 100만원씩)
- (지원기간) 일시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원가정 복귀 또는 보호조치 등)
  - 일시보호 기간 : 3개월(최대 6개월\*)
    - \* 일시보호기간 연장 필요 시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결정
- (추진절차) 보호가정 모집·양성(보장원, 센터) → 보호가정 자격심의·선정결과 통보(지자체) →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의뢰(지자체) → 보호가정 연계 및 배치결과 보고(센터) → 사례관리(지자체, 센터)

□ (주체)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 총괄 (예산 확보)	사업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보호가정 자격심의, 아동 일시보호 의뢰, 재정지원	보호가정 양성 및 가정환경조사, 부모-아동 연계,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학대피해아동 치료 지원, 원가정 사례관리, 아동 가정복귀 절차 진행

〈 위기아동 가정보호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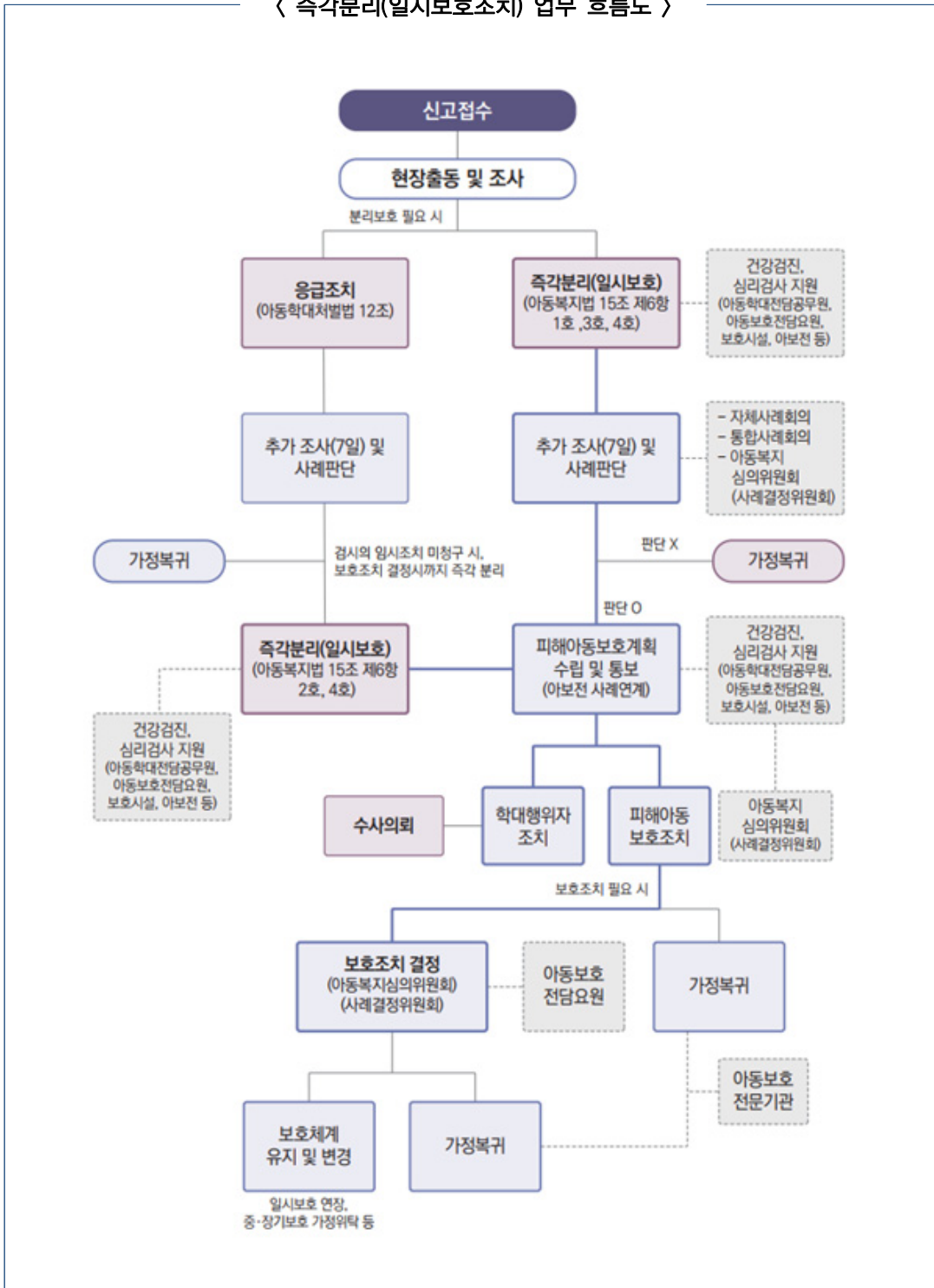


〈 응급조치와 즉각분리 비교 〉

응급조치	구분	즉각분리(일시보호)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 6항
경찰, 전담공무원	주체	전담공무원
아동학대범죄현장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등 응급조치 요건 충족 시	요건	응급조치에 이르지 않는 사안으로 재학대 우려, 면밀한 조사 필요 등 즉각분리 요건 충족 시
72시간 * 임시조치가 청구된 경우 법원 결정시까지 * 72시간 산정 시 공휴일, 토요일 제외	기간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고	응급조치는 하지 않았으나 즉각분리가 필요한 경우



〈 즉각분리(일시보호조치) 업무 흐름도 〉



## 2 전문가정위탁사업(`22.1.~)

- (정의)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 (사업대상)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 2세 이하(36개월 미만), 장애, 경계선지능(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 아동이 **2가지 이상의 전문위탁 대상특성**(2세 이하이면서 학대피해아동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
- (지원대상) **전문위탁가정 자격을 갖추고 사업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위탁가정**
  - **전문위탁가정 자격요건:** 일반위탁가정 기준 이외에 ①교육 20시간을 이수하고, ②가정위탁보호자 경험(비혈연)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심리관련 전공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배치기준)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보호가정 역량과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형제·자매 등의 경우 함께 배치 원칙)
  -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
- (지원금액) 전문위탁가정에 배치된 전문가정위탁 사업대상 아동 1인당 전문아동보호비 월 100만원\* 지원(양육보조금 별도 지원)
  - \*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
  - 전문위탁가정에 **전문가정위탁 사업대상이 아닌 아동이 배치된 경우 전문아동보호비는 지원되지 않으나 양육보조금은 지원 필요**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원가정 복귀 또는 연령도래 등)
  - (2세 이하) 35개월까지 지원
  -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종료 또는 원가정 복귀 시까지 지원
  -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문적인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유형 변경 가능(일반가정위탁으로 전환)
  - ※ 전문적 보호 필요성에 대해 주기적(예시 : 3년 또는 5년)으로 재평가 및 결정(평가도구·체계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후 결정)

- (추진절차) 전문위탁가정 모집·양성(보장원, 센터) → 전문위탁가정 자격심의·선정결과 통보(지자체) → 전문위탁 대상아동에 적합한 위탁가정 추천(센터) → 전문위탁가정 책정(지자체) → 사례관리(지자체, 센터)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 총괄 (예산 확보)	사업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위탁가정 자격심의, 아동보호조치, 양육상황 점검, 재정 지원	위탁가정 양성 및 가정환경조사, 부모-아동 연계,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 가정위탁보호 유형 〉



〈 위기가동 가정보호사업과 전문가정위탁사업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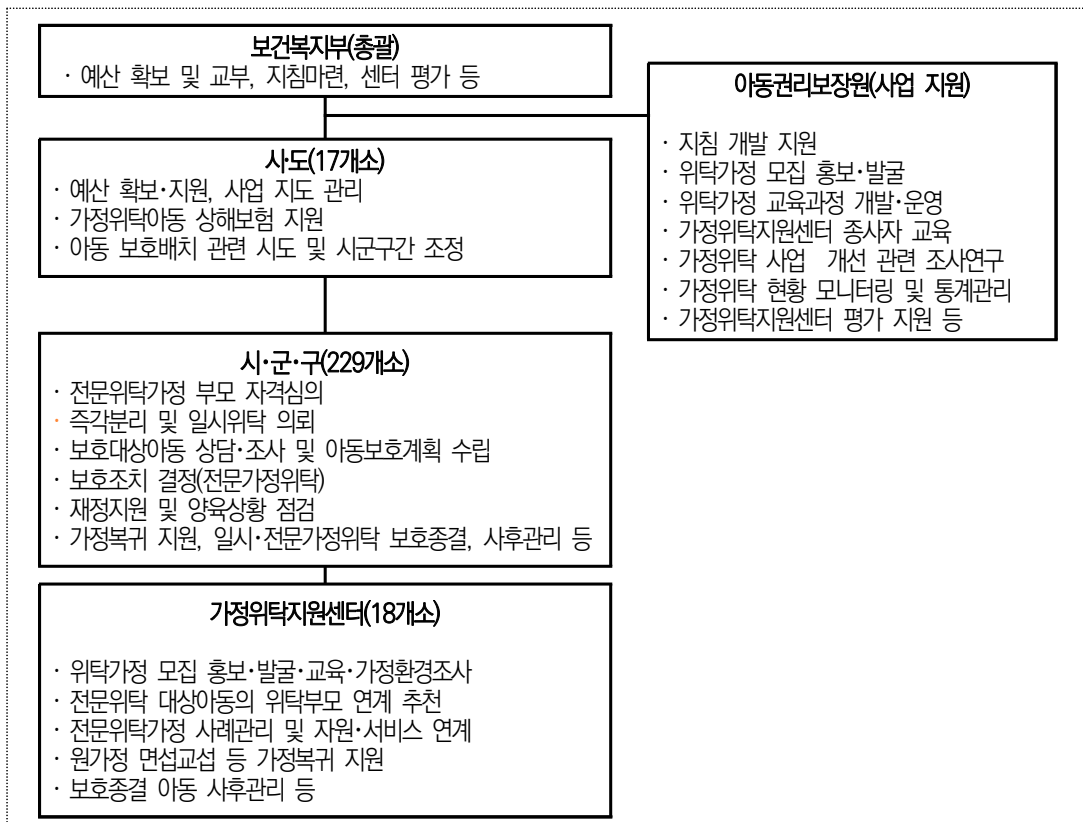
구분	위기가동 가정보호	전문가정위탁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15조제6항 (일시위탁 근거조항)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 (가정위탁 보호조치 근거조항)
보호형태	일시보호	장기보호
보호기간	3개월 일시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이후 장기보호로 전환	보호종료 시까지 (원가정 복귀 또는 연령도래 등) * 2세 이하 아동 36개월 도래 시 일반가정위탁으로 전환
대상아동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 6세 미만(미취학)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위탁가정요건	전문위탁부모 자격	
배치기준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위탁가정 역량과 환경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 형제·자매 등의 경우 함께 배치 원칙)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위탁아동 1명 이상 배치 시 지원기준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원 (아동 1인당 100만원씩)	-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원 (아동 1인당 100만원씩, 양육보조금 별도 지원) * 일반위탁아동 : 양육보조금 지원
재정지원	(공통)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국비), 상해보험료(국비), 심리검사·치료비(국비), 기초생활보장급여, 가정양육(영아)수당(만 7세 미만), 아동수당(만 8세 미만) 등	
	아동용품구입비(1회, 100만원, 국비)	양육보조금(30~50만원, 지방비) 아동용품구입비(1회, 100만원, 지방비)
보호절차	시군구(아동발생 소재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위탁가정 소재지)에 아동보호 의뢰	시군구(아동발생 소재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보호조치 결정

## II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 □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보건복지부) 예산 확보 및 교부, 지침마련, 센터 평가 등 **사업 총괄**
- (아동권리보장원) 위탁부모 교육과정 개발·보급, 지침 개발 지원, 종사자 교육 및 연구, 현황 모니터링·통계관리 등 **사업 지원**
- (시도) 예산확보 및 지원, 사업 지도관리, 아동 보호배치 지역 간 조정
- (시군구) 위탁부모 자격심의, 아동상담 및 보호조치(사례결정위원회), 양육상황 점검 및 가정복귀, 재정지원 등 **사업운영 및 관리감독**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발굴·교육, 가정환경조사, 아동 위탁가정 연계·배치, 위탁 아동 사례관리 등 **사업 운영**

### 〈전문가정위탁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절차

〈 업무 수행절차 〉				
절차	위탁가정 관리	가정위탁아동 보호·종결		
	① 위탁가정 양성·자격심의	② 보호대상아동 연계(의뢰)·보호결정	③ 전문위탁가정 사례관리	④ 전문가정위탁 보호종결
내용	·모집·홍보 ·자격확인 및 가정환경조사 ·양성교육(20시간) ·범죄경력 조회 ·전문위탁가정 자격심의 및 결정	⇒ ·전문가정위탁 대상아동 상담·조사 ·전문위탁가정 연계·배치 ·전문위탁 보호 결정(사례결정위원회)	⇒ ·아동적응상태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지원 ·재정 지원 ·원가정 복귀 지원	⇒ ·위탁·보호종결 ·종결아동 사후관리
주체	복지부, 보장원 지자체, 센터	지자체, 센터	지자체, 센터	지자체, 센터

① 위탁가정 양성·자격심의

- 전문가정위탁 사업 홍보를 통한 **위탁부모 모집**, 위탁부모 신청자 대상 **자격심의\*** 및 **최종 자격인정**

\* 자격확인 및 가정환경조사, 양성교육(20시간),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판단이력 등 결격사유 조회 등

② 보호대상아동 연계(의뢰)·보호결정

- **보호대상아동 상담·조사**, 적합한 **위탁부모 추천 및 연계·배치**
- **보호대상아동의 일시위탁보호 또는 전문위탁보호 결정**

③ 전문위탁가정 사례관리

- 아동의 위탁가정 적응상태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지원, 원가정 복귀 지원, 재정지원 등

④ 보호종결

- 중장기 보호조치 또는 원가정 복귀, 연령도래 등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종결 및 사후관리**

### III 위탁가정 관리

- 위탁가정 모집·홍보(보장원·지자체·가정위탁지원센터)
  - (보장원) TV, 옥외광고 등 전국 단위 홍보 실시 및 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21.12.21~)
  - (지자체/센터) 지역사회 단위 홍보\* 실시, 가정위탁 전국 대표번호(1577-1406)에서 상담 제공 및 홈페이지·전화·우편 신청·접수
    - \* TV, 라디오, 전광판, 홈페이지, 소식지, SNS, 지역별 홍보매체 등 활용
- 자격확인 및 가정환경조사(가정위탁지원센터)
  - (자격요건 확인) 전문위탁가정 기준(나이, 직업, 소득, 가족관계 및 복지·교육·의료·상담 자격증 등) 충족여부 확인
  - (가정환경조사) 신청인 가정의 양육환경 적합성 확인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 가정조사서'(별지 제2호) 활용

※ '일반위탁부모'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 확인하여 '전문위탁부모' 전환  
 - 기 확보되어 있는 일반위탁부모 대상으로 전문위탁부모 자격기준 충족여부 및 참여의사 등을 확인하여 전문위탁가정(위기아동 보호가정) 전환 추진  
 \* 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 시 기 확보되어 있는 '위기아동 보호가정' 인력풀 활용

- 양성교육(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

◇ 전문위탁가정 최소 1인\*은 20시간 이상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그 배우자도 최소 5시간 교육 이수 권고  
 \* 자격증 기준 충족 :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정위탁보호자(비혈연) 경험 3년 이상 요건 충족 : 주 양육자 1인

◇ 신규 위탁부모는 가정위탁보호제도 및 위탁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센터주관 일반위탁부모 양성교육 5시간 추가 실시 권고

※ 전문가정위탁 보수교육 : 아동분야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전문가정위탁 양성교육 이수자 대상 매년 5시간의 보수교육 실시

- (센터)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전문강사 및 부모양성교육 표준교재\* 활용·교육  
\* '20년 보정원에서 개발한 교재 가정위탁지원센터(18개소)에 각 20부씩 배포('21.11.)
- (보장원) 전문위탁가정 양성교육(20시간) 운영 지원
- 자격심의(가정위탁지원센터·지자체)
  - (센터) 자격심의 관련 서류(범죄경력·아동학대판단이력 조회 동의서 등)를 지자체에 제출  
(①~⑧)하여 자격심의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자체 제출 서류]**

- ①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 ②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 ③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 서식 3호)
- ④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 서식 3의 1호)\*
- ⑤ 범죄경력조회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 ⑥ 전문가정위탁 양성교육 이수증
- ⑦ 전문가정위탁 관련 소지 자격증 사본 또는 일반위탁부모 활동기간 확인서류
- ⑧ 기타 서류(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위탁가정에서 동거중인 18세 이상의 구성원은 ③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④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필수

- (지자체) 「아동분야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결격사유**(범죄경력, 아동학대 판단이력) **조회 실시**, 자격증·가정환경조사·전문교육 이수 등 **기타 관계서류(①~⑧) 확인하여 자격 최종 인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가정위탁 담당공무원)에서 자격 검토하여 선정여부 결정 및 즉시 통보
- ‘전문위탁부모’ 선정결과를 해당 센터에 통보(붙임5 서식)하여 각 센터에서 위탁가정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
- \* 기존 위탁부모의 경우 과거 위탁부모 선정 결과 통보일이 1년 이내인 경우 범죄 및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내역은 1년간 유효(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미실시한 경우 반드시 실시)

**[전문위탁가정 자격심의 관련 지자체의 확인 서류]**

- ①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 ②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 ③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 서식 3호)
- ④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 ⑤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
- ⑥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요청 결과 통보서
- ⑦ 전문가정위탁 양성교육 이수증
- ⑧ 전문가정위탁 관련 소지 자격증 사본 또는 일반위탁부모 활동기간 확인서류



- 전문위탁가정 인력풀 등록·관리(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
  - (센터) 지자체에서 자격심의를 통해 선정한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정보를 인력풀에 등록하여 관리
    - 전국 단위 인력풀 관리를 위해 전문위탁가정 선정현황(위기아동 보호가정 포함)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매주)
      - \* 전문위탁가정 인력풀 조사양식은 ‘붙임’ 파일(엑셀) 별첨
    - 위기아동 보호가정(일시보호) 현황(정·현원)은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라 추가로 ‘보호아동 현황 웹’에 입력(매일 18시 마감)
  - (보장원) 지자체에서 아동 연계·배치 시 활용 가능하도록 전국 단위의 「전문위탁가정 Pool」 운영·관리하여 전국에 정보 공유
    -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일선에 「전문위탁가정 Pool」을 사전에 공유

**[ \*전문가정위탁사업 대상 아동\*의 위탁유형 전환 ]**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 현재 ‘전문가정위탁사업’ 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일반위탁가정을 우선적으로 전문가정가정으로 전환
  - \* 2세 이하, 학대피해, 장애, 경계선지능아동
- (대상) 비혈연 위탁가정. 다만, 친인척(대리양육)위탁가정인 경우라도 ①가정위탁경험(비혈연) 3년 이상이거나, ②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 책정 가능
- (교육) 전문가정위탁교육(20시간) 필수 이수. 기 이수한 경우 추가 이수 불필요
- (자격심의) 전문위탁가정 기준(붙임 1)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
  - \* 동일 가정 내 위탁유형 변경(일반가정위탁→전문가정위탁)은 사례결정위원회 사후·서면심의 등 절차 간소화 가능

## IV

##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절차

## 1] 위기아동 가정보호(일시보호)

## 1-1) 위기아동 일시보호 의뢰

- 학대피해아동 조사 및 일시보호 의뢰(지자체)
  - 시·군·구(아동 발생 소재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각분리 요건에 해당되는 6세 미만 (미취학) 학대피해(의심) 아동을 분리조치하고,
    - 조사기간동안 아동이 보호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일시 보호 의뢰
    - \* 야간·휴일에 보호가정 연계가 지연되는 경우 보호가정 연계 시까지 쉼터 등 일시보호시설에서 일시보호 함
    - ‘일시보호의뢰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일시위탁을 의뢰하고,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자(보호가정 소재지)에게 공유
    - \* 필요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전문위탁가정 Pool」을 활용해 위기아동 보호가정에 위탁 후, 일시보호의뢰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사후 송부 가능

## 1-2) 위기아동 보호가정 연계·배치(일시위탁보호)

- 위기아동 보호가정 연계·배치(지자체·가정위탁지원센터)
  - (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문위탁가정 Pool」내에서 의뢰아동에게 적합한 보호가정을 선별하여 연계·배치
    - 아동의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대기 중인 보호가정 중 적합한 보호가정에 연계
    - \* 아동의 주소지 근거리 지역 순(해당 시군구 → 인접 시군구 → 해당 시·도 → 인접 시·도 → 전국)으로 검토
    - 아동을 보호가정에 인도 후, 배치결과를 시·군·구(아동발생 소재지, 보호가정 소재지)에 보고
      - ※ 위기아동의 신속한 연계를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중 최소 1명은 상시 유선 연락체계 유지
    - 일시보호기간(보호가정 인도 전후) 동안 아동의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실시
    - \* 아동에 대한 정확한 건강상태 확인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실시. 특히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영유아, 장애아동의 경우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따른 신체 증상 발생 또는 면역력이 취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음에 따라 가급적 빠른 건강상태 확인 필요)

- 학대피해(의심) 아동을 보호가정으로 인도하고, 보호자를 통해 확인한 아동에 대한 정보·특이사항을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보호가정에 공유
- \* 일시보호의 경우에는 아동 주소지를 전입신고하지 않음(추후 중장기 보호조치 결정 후 위탁가정 또는 보호시설 주소지로 전입신고 처리)
-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라 즉각분리 후 7일 이내 추가조사(가정환경 조사 포함)를 실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해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유

### 1-3) 위기아동 보호가정 사례관리

- 위기아동 보호가정 사례관리(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 배치 3일 이내 보호가정 방문 점검, 이후 주 1회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사례관리 수행
  -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에 협조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및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에 따라 업무 협조

### 1-4) 위기아동 가정보호 종결

◇ 위기아동의 일시보호(3개월) 목적 달성 시(원가정 복귀, 장기 보호조치 등)까지 보호하고,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시보호 연장(3개월 이내) 또는 장기보호 전환(전문·일반가정위탁, 입양 등), 가정복귀 등 조치 결정

\* 부득이하게 즉각분리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반드시 지자체(아동발생 소재) 사례결정위원회 안건을 상정·하여 일시보호 연장(3개월 이내) 또는 장기보호 전환(전문가정위탁 등), 가정복귀 등 조치 결정

- 원가정 복귀(지자체·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지 않아 가정복귀하는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개별상담 실시(필요시 심리치료 지원 등 관계회복 지원)
  - 아동학대 판단 사례이나 중·장기적 분리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가정복귀가 결정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실시
  -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복귀 후 3개월 간(1주일 이내 가정방문, 1개월 간 주 1회, 3개월간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등의 방법으로 아동의 적응상태 및 재학대 여부 등을 확인

- (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가정에 보호중인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절차에 협조
  - ※ 일시보호 기간동안 위기사동에 대한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을 보호가정에서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원가정 복귀 시 친부모가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자 변경 필요성을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전에 공유)
- **중장기 보호조치(지자체)**
  - 현재 보호중인 위기사동의 중장기보호 시 **위기사동 보호가정(일시)**에서 **전문위탁가정으로 전환하여 동일 가정에서 지속 보호**하도록 유도
    - ※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3호 가정위탁보호(중장기보호) 결정 필요

## 2 전문가정위탁 보호(중장기보호)

### 2-1) 아동 상담·조사 및 가정위탁보호 의뢰

- **보호대상아동 상담·조사 및 가정위탁보호 의뢰(지자체)**
  - (지자체) 시·군·구(아동 발생 소재지)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조사를 통해 **전문가정위탁사업 대상아동이 전문가정에서 중장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연계 의뢰
    - \* 전문가정가정으로 연계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서 수립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전문가정위탁 조치 의뢰

#### 〈 전문가정위탁 대상아동 여부 확인방법 〉

- 2세 이하(36개월 미만):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內 출생일 정보 확인
- **학대피해아동**: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공유해준 ‘피해아동보호계획서’ 內 아동학대사례판단 정보 확인
  -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해 확인(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등)
-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1이상 84이하
- **장애아동**: 장애인 등록증(또는 주치의 진단서\*)
  - \* 장애 판단이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대체서류 확인

[참고: 정보확인 관련 근거법령(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21조(신원확인 등의 조치) ① 보장원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제10항에 따라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조치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의 확인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여부의 확인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보장원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및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위탁가정 추천**(가정위탁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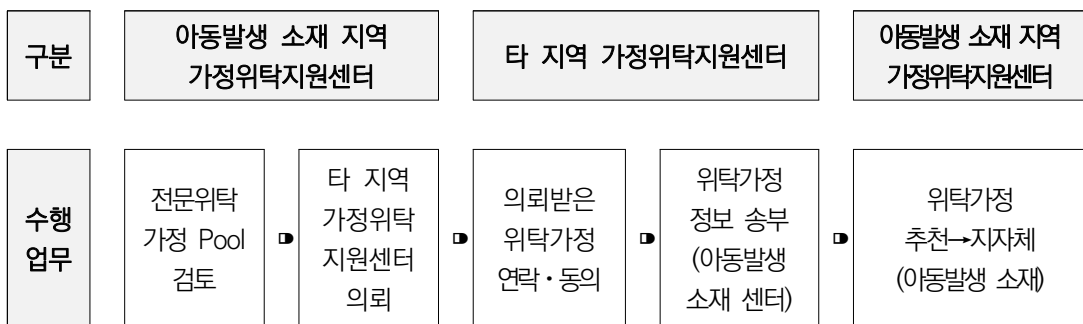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는 「**전문위탁가정 Pool**」내에서 의뢰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을 선별**하여 지자체(아동 발생 소재지)에 **추천\***

\* 위탁부모 추천서(지침서식 1호) 활용

○ 지자체에서 위탁가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 → 인접 시·도 → 전국 순으로 검토하여 아동의 3배수로 추천

\* 보호대상 아동의 주소지(시군구) 근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위탁가정 우선 검토

〈 위탁가정 추천절차 〉



## 2-2) 전문가정위탁 보호결정

### ◇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원칙

- 가정위탁 → 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

### ◇ 가정위탁은 전국 단위의 보호를 원칙으로 함

- 아동 소재 시·군·구 내 위탁가정이 없는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타 지역 위탁가정을 추천받아 보호 실시

### □ 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지자체)

○ 시·군·구(아동 발생 소재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추천 위탁가정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전문가정위탁) 결정

\* (근거법령)「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결과 적합한 위탁가정이 없는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재추천 요청

- 기존 일반가정위탁보호(비혈연) 중인 아동 중 전문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전환 추진

※ 아동이 두 가지 이상의 전문위탁 대상특성에 해당(2세 이하이면서 학대피해아동)되거나, 중증도 이상의 장애가 있거나, 최근 학대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전환 고려

- 아동 상담 시 또는 개별보호관리계획서 수립 시 아동의 보호자에게 ‘가정위탁보호동의서’ 확보

\*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대행위자의 경우 제외

○ 시·군·구(아동 발생 소재지)는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가정위탁보호 결정 통보(①~⑪ 서류 첨부)

※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④·⑥·⑦·⑨·⑩ 서류 생략, ⑪은 피해아동보호계획서로 같음

※ 동일 시군구 내 아동 보호 시에는 가정위탁 담당부서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

### [전문가정위탁 결정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 서류]

- ①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 ②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 ③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 ④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 서식 2호)
- ⑤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 서식 3호)
- ⑥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 ⑦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 ⑧ 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
- ⑨ 친부모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호)
- ⑩ 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9호)
- ⑪ 개별보호·관리계획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1호)

□ 아동의 위탁가정 인도·배치(지자체)

- 시·군·구(아동 발생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전문위탁보호 결정된 아동을 위탁가정에 인도
  - \* 아동 인도 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위탁부모와 협의를 통해 협력하여 진행
  - 아동 배치 후 아동의 주소지를 위탁가정 주소지로 전입. 단,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학대 피해아동 주소지 열람제한 사전 조치 등 유의
  - \* 전입신고서(전 세대주 도장 날인본)와 보호결정(변경) 통지서 등 증빙서류 준비

### 2-3) 전문위탁가정 사례관리

□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사례관리(지자체·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자체) 전문가정위탁 보호조치 후 1개월 이내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등 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또는 유선으로 위탁가정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 실시하여 아동의 적응상태·변화 정도,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점검
  -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 변경
  - 학업 등 타당한 사유 없이 위탁아동의 실거주지가 위탁가정의 주소지와 불일치하거나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서 확인한 아동의 개별보호·관리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계획 수립 후 시·군·구 보고
  - 서비스계획에 맞춰 위탁가정(아동), 원가정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아동 적응상태 모니터링 사례관리 실시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및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례관리 진행

〈참고〉 ‘전문가정위탁 사례자문위원회(아동권리보장원)’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효과적 사례관리를 위해 보장원 내 ‘전문가정위탁 사례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중으로(\*20~), 지역의 난이도 높은 전문가정위탁 사례에 대한 전문적 자문 필요 시 활용

## 2-4) 전문가정위탁보호 종결 및 사후관리

◇ 위탁아동의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원가정 복귀, 18세 연령도래, 보호조치 변경 등)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종결 여부 결정**

- \* 아동의 원가정 복귀, 연령도달로 인한 보호종결은 사전 대면심의 원칙 (보호연장의 경우 사후·서면심의 등 절차 간소화 가능)

□ **원가정 복귀**(지자체·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자체) 아동의 보호자 등으로부터 **가정복귀 신청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를 제출받고,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의 의견 청취 후 **원가정을 방문하여 문제 해결여부 등 양육 준비상황 확인**

\* 가정복귀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7) 활용

\*\*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절차에 따라 원가정 복귀

- 원가정복귀 후 1주일 이내 가정방문, 1개월 이내 2회 이상 아동 적응상태 점검, 6개월 이후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가정위탁지원센터) 원가정 복귀 준비 아동에 대한 원가족과의 면접교섭 내용 등을 포함한 ‘가정복귀 의견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9)’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 최소 6개월동안 아동보호전담요원과 협력하여 사후관리 실시

□ **18세 연령도래 종료**(지자체·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자체)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시·군·구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

- 최초 2년간 연 2회, 이후 연 1회 정기적 유선상담을 통해 사후관리 실시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주소지 소재 지자체에 ‘아동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 제출

\* 보호종료아동으로부터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동의서(지침서식 5의1호) 확보

-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하여 5년 이내 사후관리 실시



## V

## 재정지원

### 1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일시보호)

- 전문아동보호비
  - (지원대상) 위기아동(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된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 ※ 보호가정 내 위기아동 1명 배치를 우선 고려하나, 보호가정 역량에 따라 추가 배치 가능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3개월 원칙이나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최장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지급주체) 보호가정 소재지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
  - (지급방법) 매월 20일 보호가정 계좌로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 지급일(20일)까지 1주를 초과하여 지속 보호할 지가 불확실한 경우 우선 지급 보류 후 해당 월 말일에 추가 지급 가능
    - (지급금액) 보호주수 X 주 25만원
    - (지급기준) 당월 보호결정일이 속한 주(보호중인 경우는 전월의 20일이 속한 주)부터 당월 20일이 속한 주의 전주까지 보호 주수를 산정
    - (보호 주수) 각 주에 3일(보호결정일, 종료일 포함) 이상 보호 시 1주로 반영
      - ※ 다만, 7일 이내에 보호결정 및 보호종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보호주수 및 보호일수와 무관하게 1주로 반영하여 25만원 지급
      - ※ 위기아동 보호가정(일시보호) 대상 전문아동보호비(국비·지방비 매칭 지원)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 보호비(지방비 100%) 중복 지원 불가
- 아동용품구입비(국비)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위기아동)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급금액) 보호가정 책정 시 최초 1회 100만원
    - ※ 이후 위기아동 연계 시마다 위기아동 1인당 50만원 지원

- (지급주체) 보호가정 소재지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
- (지급방법) 보호결정일로부터 3일 내 보호가정 계좌로 지급(토·공휴일이 속한 경우 그 익일까지 지급)
- (사용용도) 위기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 \* 아기침대, 침구, 옷장, 의류, 카시트, 유모차 등
- (지급관리) 보호가정은 보호종료 시 시·군·구에 결과보고서 제출,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은 보호가정별 구매용품 내역 관리
  - 보호가정은 활동기간동안 구매용품 지속 활용, 필요시(활동종료 등) 가정위탁지원센터로 구매용품 인도 가능\*
  -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인도받은 아동용품을 보관·관리

※ 시·군·구 간 아동 일시보호 의뢰 및 보호가정 배치 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의 전문아동보호비 및 아동용품구입비 지급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2 전문가정위탁사업(중장기보호)

- 전문아동보호비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 (만 2세 이하) 35개월까지 지원
      - ※ 36개월부터는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반가정위탁보호로 전환(일반가정위탁보호 전환 시 양육보조금 등 지방비 지원 유지 필요)
    -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종료 또는 원가정 복귀 시까지 지원
      - ※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결과 전문적인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유형 변경 가능(일반가정위탁으로 전환)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가정위탁 담당)에서 전문위탁부모 계좌로 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종결일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지급
  - 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은 결정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문아동보호비 100%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50% 지급
  - 위탁보호 종료일이 포함된 달은 종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문아동보호비 50%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100% 지급
- (지급일)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시·도 또는 시·군·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전문가정위탁사업의 전문아동보호비 지급업무를 처리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양육보조금(지방비)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지원 권고

연령	지원액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 40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지원기간) 가정위탁보호 종결 시까지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일)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 자세한 내용은 아동분야 사업안내 <1> 지침 참고

□ 아동용품구입비(지방비)

- (지원대상) 신규 책정 위탁가정
- (지급금액)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권고
- (지급방법) 양육보조금 지급 개시 시 위탁부모 계좌로 최초 1회 지급
- (사용용도)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 ※ 자세한 내용은 아동분야 사업안내 <1> 지침 참고

### 〈 가정위탁보호 아동 재정지원 절차 및 방법 〉

구분	지원대상 (①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②전문가정위탁 사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시군구: 위탁가정 소재지)	신청서류
전문아동 보호비	①, ②	월 100만원	시·군·구(가정위탁 담당자): 보호기간에 따라 매월 20일 위탁가정(보호가정) 계좌로 지급	-
양육보조금	②	- 만7세 미만(~83개월): 월30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월40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 월50만원 이상	시·군·구(가정위탁 담당): 매월 20일 아동 또는 위탁가정 계좌로 지급	-
아동용품 구입비 (국비)	① *전문가정위탁 아동은 자비로 지원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1권 참고)	최초 1회 100만원 (보호가정 당 1회)	시·군·구(가정위탁 담당): 보호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보호가정 계좌로 지급	- *(참고) 보호가정은 보호종료 시 시·군·구에 결과 보고서 제출 필요
상해보험 가입	①, ②	연 6만8천5백원	시·군·구(가정위탁 담당): 보호결정 시 상해 보험 가입 처리	-
심리검사· 치료비	①, ②	- 검사비 20만원(1회) - 치료비 월 20만원 이내(12개월)	- 가정위탁지원센터: 검사료 지원대상 추천 - 시·도 또는 시·군·구(가정위탁 담당자): 지 원대상자 선정 - 치료기관: 진료비 청구시 지급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①, ②	- 생계급여 월 55만원 - 주거급여 월10~19만원 (단, 위기아동 가정보호, 일시위탁은 주거 급여 대상 제외) - 의료·교육은 개인별 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 근거)	시·군·구(가정위탁 담당):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 가능	- *(참고) 수급권자 가구원 및 친척 등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등 구비서류 필요
아동수당	①, ② (만 8세(95개월) 미만 해당아동)	월 10만원	- 시·군·구(가정위탁 담당): 아동수당 담당자 에게 보호자 변경 조치 요청 - 시·군·구(아동수당 담당): 보호자 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 보호가정에 안내·변경 처리	·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 보호자 변경사유 발생 확인 서류 (*가정위탁 담당자가 제출)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①, ② (만 7세(86개월) 미만 해당아동)	- 만 0세(~11개월): 월 20만원 - 만 1세(12~23개월): 월 15만원 - 만 2~6세(24~86개월): 월 10만원 ※ 영아수당(0~23개월*): 월 30만원 * 22.1.1. 출생아부터 적용(중복 지급 불가)	- 시·군·구(가정위탁 담당) 또는 가정위탁지원 센터: 보호가정에 보호자 변경 신청 안내 - 위탁가정(보호가정):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보호자 변경 신청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 부모에 한함)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0~24개월)	①, ② (만 2세(24개월) 미만 해당아동)		- 위탁가정(보호가정)이 관할 보건소(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VI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 위탁부모 선정, 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 등
  - (위탁부모 선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요청한 위탁부모 신청인의 **결격사유**(범죄경력, 아동학대 판단이력) 존재여부를 조속히 확인하여 **가급적 2주 이내에 자격인정 및 선정결과 통보**
  - (전문가정위탁보호 현황 관리) 전문가정위탁사업 대상 아동에 대해 전문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하고, 그 현황을 보건복지부로 보고
    - 제출시기 : 분기말 기준 작성, 1월, 4월, 7월, 10월 10일까지 제출
    - 작성양식 : [붙임7] 참고
- (아동권리보장원) 위탁부모 교육 및 인력풀 운영
  - (교육) 전문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500명 이상) 운영
    - \* 교육일정 등은 [붙임4] 2022년 전문가정위탁 가정 양성교육 계획 참고
  - (「전문위탁가정 Pool」운영)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일선에 전국 전문위탁가정 Pool 공유(매주)
- (가정위탁지원센터) 상시 연계체계 운영, 전문가정위탁 가정 Pool 등록, 위탁가정 추천 등
  - (상시 연계체계 운영) 각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특성에 맞게 야간 및 주말 유선당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센터장(관장) 및 지자체는 센터 종사자가 야간 및 주말에 출근하게 될 경우 탄력적 근무 시간 운영, 대체휴무 등을 활용해서 종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 지자체는 필요시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전문위탁가정 Pool」등록) 지자체에서 자격심의를 통해 선정한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매주)
    - \* 전문가정위탁 가정 인력풀 조사양식은 ‘붙임’ 파일(엑셀) 별첨
  - (위탁가정 추천 협조) 타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가정 추천 요청 시, 등록된 인력풀 대상 연락 및 동의 확보하여 정보 제공(발생 시)
  - (교육) 전문강사 활용하여 전문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20시간) 실시
- (공통사항) 가정위탁사업 홍보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활용,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공무원 퇴직자 교육, 자격단체 보수교육, 종교단체 모임, 입양부모 등) 등을 통해 신규 위탁가정 발굴·모집

**참고 1** 위기아동 보호가정 사업 관련 FAQ

**[재정지원 관련]**

**1. 전문아동보호비 보호주수 산정 및 지급방법은?**

-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위기아동 일시보호 기간에 대하여 매월 20일 보호가정 계좌로 ‘보호주수 X 주 25만원’을 계산하여 전문아동보호비 지급
- 보호 결정일이 속한 달에는 보호 결정일이 속한 주부터 당월 20일이 속한 주의 전주까지 보호 주수를 산정
  - 지속 보호 중인 달에는 전월의 20일이 속한 주부터 당월 20일이 속한 주의 전주까지 보호 주수를 산정
  - ※ 지급일(20일)까지 7일을 초과하여 지속 보호할 지가 불확실한 경우 우선 지급 보류 후 해당 월 말일에 추가 지급 가능
- 보호 주수 산정 시 각 주에 3일(보호결정일, 종료일 포함) 이상 보호한 경우 1주로 반영하여 ‘보호주수 X 주 25만원’ 지급
  - 다만, 7일 이내에 보호결정 및 보호종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보호주수 및 보호일수와 무관하게 1주치 25만원 지급

**(사례 1) 보호기간이 '23.3.8.(화)~5.9.(월) 인 경우**

- **(3월 지급분)** 보호 결정일이 속한 주인 4월 2주는 보호 결정일을 포함한 보호일수가 5일(화~토) 이므로 보호주수에 반영, 따라서 4월 2주부터 20일이 속한 주(4월 4주)의 전주인 4월 3주까지 보호주수 계산(총 2주)
  - ☞ 2주 X 25만원 = 50만원(3.18.지급)
- **(4월 지급분)** 전월의 20일이 속한 3월 4주부터 당월 20일이 속한 주(4월 4주)의 전주인 4월 3주까지 보호주수 계산(총 4주)
  - ☞ 4주 X 25만원 = 100만원(4.20.지급)
- **(5월 지급분)** 보호 종료일이 속한 주인 5월 2주는 보호 종료일을 포함한 보호일수가 2일(일,월)이므로 보호주수에 미반영, 따라서 전월의 20일이 속한 4월 4주부터 5월 1주까지 보호주수 계산(총 3주)
  - ☞ 3주 X 25만원 = 75만원(5.20.지급)

(사례 2) 보호기간이 '23.3.14.(월)~3.16.(수) 인 경우

- (3월 지급분) 보호 결정일 및 종료일이 속한 주인 3월 3주에 보호일수가 총 3일이나, '7일 이내 보호결정 및 보호종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로서 1주치 25만원 지급
  - ☞ 1주 X 25만원 = 25만원(3.20.지급)

(사례 3) 보호기간이 '23.3.10.(목)~3.16.(수) 인 경우

- (3월 지급분) 보호 결정일이 속한 주인 3월 2주의 보호일수는 3일(목,금,토) 및 종료일이 속한 주인 3월 3주의 보호일수는 4일(일,월,화,수)로 보호주수에 모두 반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총 보호일수가 7일로 '7일 이내 보호결정 및 보호종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1주치 25만원 지급
  - ☞ 1주 X 25만원 = 25만원(3.20.지급)

(사례 4) 보호기간이 '23.3.17.(목)~3.23.(수) 인 경우

- (3월 지급분) 3월분 지급일인 3.20일까지 7일을 초과하여 지속 보호할 지가 불확실한 경우 3월분 지급 보류 후 말일인 3.30.에 추가 지급 가능, 총 보호일수가 7일로 1주치 25만원 지급
  - ☞ 1주 X 25만원 = 25만원(3.30.지급)

2. 보호가정 내 위기아동 2명 보호 시 전문아동보호비 지급 방법은?

- 보호가정 내 위기아동 1명 배치를 우선 고려하나, 위탁가정 역량과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하므로,
  - 보호결정일 및 종료일이 동일한 경우 위기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급
    - \* 위기아동 1인당 전문아동보호비 지급금액 X 2명
  - 보호결정일 및 종료일이 다른 경우 위기아동별로 전문아동보호비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 \* 위기아동 A, B 각각에 대한 전문아동보호비 당월 지급금액 계산하여 지급

### 3. 위기아동 가정보호 시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 보호가정 소재지\*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부터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가정 일시보호 의뢰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위기아동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필요**

\* 학대피해아동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호가정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제 거주지인 보호가정의 소재지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접수

\*\*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도 신청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 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긴급복지지원 가능

- 학대피해아동이 부양의무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여 **보호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가정위탁과 동일하게 학대피해아동을 “별도가구”로 보장**

### 4. 위기아동 가정보호(일시보호) 후 가정위탁으로 장기 보호조치 전환 시 재정 지원은?

○ 일시보호 중인 위기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전문가정위탁으로 장기 보호조치**하는 경우

- 위기아동 보호가정에 대한 **전문아동보호비(국비 보조)**는 일시보호 종료일까지 보호주수 산정하여 지급

- 장기 보호조치로 가정위탁 책정된 아동에 대하여 **책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30~50만원(권고) 양육보조금(지방비 100%)** 지급

- **전문가정위탁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책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100만원의 전문아동 보호비(국고)**를 전문위탁부모에게 지급



**참고 2** 전문가정위탁 사업 관련 FAQ

**[자격심의 관련]**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예비 위탁가정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요청 시, 시·군·구의 조치 사항은?**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요청 시,
  - 시·군·구는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판단이력을 조회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자격 최종 인정 사실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 \* 기존 위탁부모의 경우 과거 위탁부모 선정 결과 통보일이 아동 연계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범죄 및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내역은 1년간 유효
  - \*\*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미실시한 경우 반드시 이행 필요

**[재정지원 관련]**

**2. 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형제자매 2명 이상 보호 시 전문아동보호비 지급 방법은?**

- 위탁가정 내 전문가정위탁아동 1명 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나, 동일 위탁가정 내 다른 아동 배치 시 아동이 전문가정위탁 대상 아동인 경우 전문아동보호비 지급
  - \* 형제자매 모두 전문위탁 대상 아동인 경우 아동수에 비례하여 각각 100만원 지급
  - \*\* 전문위탁가정에 전문가정위탁 사업대상이 아닌 아동이 배치된 경우 전문아동보호비는 지원되지 않으나 양육보조금은 지원 필요

**3. 위기아동 가정보호(일시보호) 후 동일 가정 내 가정위탁으로 장기 보호조치 전환 시 재정 지원은?**

- 일시보호 중인 위기아동에 대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가정위탁으로 장기 보호조치하는 경우
  - 위기아동 보호가정에 대한 전문아동보호비(국비 보조)는 일시보호 종료일까지 보호주수 산정하여 지급

- 전문가정위탁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책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100만원의 전문아동 보호비(국비 보조)를 전문위탁부모에게 지급
  - \* 전문가정위탁 대상 아동으로 책정되어 보호중인 아동 수에 비례
- 장기 보호조치로 가정위탁 책정된 아동에 대하여 책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30~50만원 (권고) 양육보조금(지방비 100%) 지급
  - \* 양육보조금 지급은 '2022 가정위탁 사업 운영지침' 참고

### [위탁가정 자격요건]

#### 4. 위탁가정의 기본 자격요건(연령, 자녀 수, 혼인여부, 맞벌이 여부 등)은?

- (연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위탁가정의 기준)에 따라, 위탁부모(부부 모두)의 나이가 25세 이상, 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함
  - \* 보호대상아동의 위탁가정 연계 시점에 위탁부모 연령차이 고려
- (양육아동 수) 위탁가정 내 자녀 수(18세 미만 친자녀 및 위탁아동)는 3명 이하여야 하고, 위탁가정 내 전문위탁아동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함
  - \* 단, 형제·자매 아동이 함께 동일한 위탁가정에 배치가 필요한 경우, 보호가정의 역량, 헌신, 위탁가정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
  - 향후 배치될 아동을 고려, 현재 자녀 수(18세 미만 친자녀 및 위탁아동) 2명 이하인 가정이 지원 가능
- (혼인 여부) 위탁가정 선정 시 혼인이 필수 조건은 아님. 다만, 위탁가정 연계 시 자녀 양육경험을 고려함
- (맞벌이 여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에 대한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 5. 보육시설 종사자(시설장, 종사자)도 위탁가정 신청 가능한지?

- 보육시설 종사자도 위탁가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보육시설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기 직장(보육시설) 내에서 근무시간에 보육시설 아동들과 위탁아동을 함께 돌보는 것은 부적절

**6. 전문가정위탁 아동 주소지와 위탁가정 주소지가 다른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권한이 있는 아동 발생 소재지 시군구에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하여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 일시보호(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등)의 경우, 아동 주소지는 전입하지 않으며, 중장기보호의 경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보호조치 결정 후 위탁가정 주소지로 전입처리

\*\* 가정위탁 보호와 관련한 재정지원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

**붙임 1 전문위탁가정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나.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다. 가정위탁보호자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라.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마. 가정위탁보호자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는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 1) 가정위탁보호자의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마)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1) 또는 2)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출 것
- 사.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했을 것
-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바목 1)의 가정위탁보호자의 경험은 친인척 외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을 말함

※ 참고 : 위탁가정 선정 시 추가 검토사항

- 위탁아동을 친자녀처럼 양육하기에 필요한 성품·경험·지식을 갖춘 자를 위탁부모로 선정
  -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하되, 시장·군수·구청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위탁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양육 경험이 없는 자도 선정 가능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위탁아동과 동거할 것(위탁부모의 주소지에서 동거할 것)
- 위탁아동을 건강하게 부양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재산이 있을 것
  -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위탁아동 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는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드림스타트 등 지역사회복지기관 또는 이웃주민의 추천 등
- 위탁부모가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위탁가정의 선정 기준)에 따라 위탁부모가 될 자격이 있을 것

**붙임 2 전문가정위탁 대상아동의 특성**

\* 참고: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및 2세 이하 영아의 특성 등

**① 학대피해아동**

○ 학대피해아동은 학대유형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sup>2)</sup>.

학대유형	심리적/행동적 특성
신체학대	공격적, 충동성, 위축, 정서불안, 강박, 우울, 자아기능 손실, 병적 대인관계, 원시적 방어기제, 자아개념의 손상, 낮은 자아존중감
정서학대	위축, 좌절, 정서적 부적응, 반사회적 행동, 심한 애착, 우울, 수동적, 강박, 낮은 자아존중감, 부적절한 대인관계형성, 불안
성학대	공포와 불안, 우울, 분노, 낮은 자아존중감 등 정서적 부적응, 퇴행행동
방임	낮은 자아존중감, 불안, 위축, 낮은 사회적 상호작용, 부정적 자기상, 자기 표현력 부족, 방어적, 열등감, 비관적 태도

○ 아동학대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아동이 가진 내적 신념을 무너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피해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해 무능하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간주하려고 하게 됨<sup>3)</sup>.

**② 경계선지능아동**

○ 경계선지능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TR)'에 의하면 'IQ 71~84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발달장애군'으로 정의하며, 미국의 의학사전 및 관련 사전에서는 경계선지능아동을 '적응행동에 가벼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IQ 71~84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음<sup>4)</sup>.

○ 경계선지능아동은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으로 소외됨<sup>5)</sup>.

○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동은 취업과 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자립에 실패하여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비행이나 범죄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sup>6)</sup>.

**③ 영아**

○ 영아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이 3세에 이르렀을 때, 회피적·불안적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아동들보다 애착 관련적 정보에 대해 더 우수한 주의집중 능력과 기억 능력 등을 지니고 있음<sup>7)</sup>.

○ 초기 2년 간의 안정적 애착의 발달이 다른 성인이나 또래 아동들과의 높은 사회성, 부모와의 높은 순응성 및 효과적인 감정 조절 능력이 있음<sup>8)</sup>.

2) 「한국판 실버그림검사에 나타난 피해대 아동의 특성」, p2, 2007, 백현순·조현태  
 3) 「피해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p226, 2006, 정익중  
 4)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보고서」, p11, 201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5) 「경계선 지적 기능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 연구」(박숙자, 2016)의 내용을 「경계선 지능 청소년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김고은·김혜리, 2018)에서 인용함.  
 6) 「집단놀이치료가 경계선 지능 사설아동의 사회기술증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최윤미, 2016)의 내용을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보고서」(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7)에서 인용함.  
 7) 「애착과 애착의 발달」, p22, 2001,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8) 「애착과 정신병리」, p41, 2004, 안동현

**붙임 3 위탁가정 선정결과 통보서**

(서식)

**위탁가정(보호가정) 선정결과 통보서**

시·도(시·군·구) : \_\_\_\_\_

위탁가정	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자격 (해당사항 모두 체크)	<input type="checkbox"/> 가. 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input type="checkbox"/>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input type="checkbox"/>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라.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input type="checkbox"/> 마.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input type="checkbox"/> 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input type="checkbox"/> 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input type="checkbox"/> 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위탁가정 선정일	년	월	일

위 가정은「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3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에 적합한 위탁가정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붙임 4 아동용품구입비 결과보고서 및 구매용품 관리 양식

아동용품구입비 사용 결과보고서			
□ 위기가동 정보			
성 명		생년월일	
보호기간	'21.4.8. ~ 5.16.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 보호가정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소속센터		연 락 처	
작성일자		지원금액	1,000,000원
구입 목록	물품 목록		금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1,000,000
사진	구입물건, 영수증, 구입물건을 사용하는 모습 등 ※ 아동 얼굴 비공개		





**붙임 5 시도별 전문가정위탁 아동 현황 보고(양식)**

① 기존 가정위탁아동 전환 현황(일반가정위탁→전문가정위탁 전환) (단위 : 명)

시도명	기존 위탁현황	전환대상아동수*			전환 아동수 (B)	미전환아동수			
		계 (A=B+C)	친인척 (대리양육 포함)	친인척 외		소계 (C)	절차 진행중 (교육포함)	자격미충족	기타
	만 2세 이하								
	학대피해								
	경계선지능								
	장애								
	학대피해/2세 이하								
	학대피해/경계선지능								
	학대피해/장애								
	학대피해/경계선지능/장애								
	기타								
	계								

\* 시도별 '전환대상아동수'는 [붙임 3] 참조

② '22년 신규 전문가정위탁아동 현황

※ 기존 가정위탁아동의 전환 건(일반가정위탁→전문가정위탁) 제외

(단위 : 명)

시도명	계	만 2세 이하	학대 피해	경계선 지능	장애	중복				기타
						학대피해/ 2세이하	학대피해/ 경계선지능	학대피해/ 장애	학대피해/ 경계선지능/ 장애	

**붙임 6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 (대표전화) 1577-1406(아이사랑양육)

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3층	02-325-9080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57 동원빌딩 3층	051-758-8801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5번길 1, 3층	062-351-1206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91 1층	053-656-2510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94번길 4 8층	032-866-1226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16 안강빌딩 4층	052-286-1548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804호	042-242-5240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379번길 27 2층	033-255-1406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78 4층	031-821-9117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4번길 9 7층	031-234-3980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 5층	055-237-1226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10-4, 1층	053-813-3953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28	061-279-1225
전남동부가정위탁지원센터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44-1964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2 6층	063-288-7770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0길 8 4층	041-577-1226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6 404호	043-250-1226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2 3층	064-747-3273



# IV

## 소년소녀가정 지원

1. 추진 방향	177
2. 연 혁	177
3. 지원 대상	178
4. 지원 내용	178
5. 정서적 후원	180
6. 행정 사항	181



## 1. 추진 방향

-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금지하고 기존의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추진  
※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UN등에서도 폐지 권고

### 소년소녀가정 추가 지정 금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추가지정을 금지하며,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하도록 권고함
-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향후 폐지 예정으로 추가 지정을 금지함

\* 소년소녀가정 아동 감소 추이 : ('17) 59명 → ('18) 33명 → ('19) 17명 → ('20년) 6명

- 단,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2. 연 혁

- 1984. 3. 13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 수립
- 1985. 6. 11부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실시
- 1996.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소년소녀가정제도 폐지 권고
- 1999. 15세 미만의 아동단독세대의 소년소녀가정 지정 제한
- 2000. 가정위탁제도 실시 이후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 전환 시작
- 2000. 9 지원대상의 명칭을 소년소녀가정(youth family)으로 변경

### 3. 지원 대상

기존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업설명으로, 2013년부터는 추가지정 금지하며, 단,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일반가정위탁(친인척)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으로 선정
-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금지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입소 등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 다만, 15세 이상인 형제, 자매가 1인 이상 포함된 세대로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 지원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4. 지원 내용

- 생계·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원 이상/인·월(지방이양) 권고
  - 부가급여액은 소년소녀가정 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중지가 결정된 달까지 지급 원칙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소년소녀가정지원 중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또는 중지결정일)의 다음달부터 중지
  -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가급여 등 필요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참고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인 무주택자 아동
- 지원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을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 전세주택 지원 대상 추천
  - \* 지원대상 전세주택이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공임대주택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관리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한다.
- 지원기간 : 계약기간 만료 또는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 지원기한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 가능
-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가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무상 지원
  - \* 지원대상자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하여 적용
  -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난 경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
- 가구당 지원한도액(2022년 주택도시시기금운용계획)

구 분		보호대상아동 수에 따른 가구당 지원한도		비 고
		1명	2명	
일반 주택	수도권	12,000만원	13,500만원	• 전세보증금이 지원 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 보증금으로 한다.
	광역시	8,000만원	10,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8,500만원	

\* 보호대상아동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씩 대출한도 상향

## 5. 정서적 후원

### 가. 후원자 지정

-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아동 관련 전문가, 공무원, 대학생 멘토 등을 후원자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
- 지정방법
  - 지역사회 내 근거리에서 아동을 보살필 수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소년소녀가정 중 후원자가 없는 경우 선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규로 책정한 경우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후원자로 지정

### 나. 결연기관(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조체계 강화

- 시·군·구청장은 소년소녀가정 책정 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관련자료 통보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복지원 발생 방지
  - 소년소녀가정 협동캠프, 생활수기 공모 등 정서적 지원강화
  - 후원자와의 만남행사 등 후원프로그램의 활성화

## 6. 행정 사항

-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을 금지
  - 지정된 세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견인, 결연기관 담당자, 담당 공무원 등이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형제·자매 중 1인이 만 18세에 도달된 경우, 동생(나머지 형제·자매)이 지속적으로 보호유지 될 수 있도록 조치
  - 동생(나머지 형제·자매)을 가정위탁 보호조치 또는 그 형제·자매를 보호자로 동생(나머지 형제·자매)을 친·인척가정위탁으로 책정
  - 이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는 동생에 대해서는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비 및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 후원자 지정현황(서식 1호)은 반기 익월 15일까지 보고

###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절차〉

- ① 상담 :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소년소녀가정 상담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친인척 외) 가능성 검토
- ② 신청 : 위탁보호하려는 자가 아동거주지 시·군·구청에 신청(아동보호신청서(서식 1호) 제출)
- ③ 조사·결정
  - 시·군·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보호자 및 대상 소년소녀가정 조사(아동보호 신청자 가정조사서 작성)
  - 일반 가정위탁의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위탁가정 연계
  - 시·군·구는 조사결과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결정
    -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양육보조금, 상해보험, 전세자금 등 가정위탁아동지원 실시
- ④ 사례관리 : 시·군·구(읍·면·동),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에 대한 사후 지도·관리 실시
  - ※ 형제·자매 세대로 이루어진 소년소녀가정세대의 경우 형제·자매중 한명이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형은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해제하고 동생은 가정위탁 전환 유도





# 결연사업 운영

1. 목 적	185
2. 연 혁	185
3. 사업 개요	185
4. 사업 수행	186
5. 행정 사항	187



## 1. 목 적

-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 아동, 소년소녀가정 등의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하여,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

## 2. 연 혁

- 1976. 09. 10. “불우아동 건전육성대책” 수립
- 1977년 정부주도로 사회인사와 시설보호아동과의 결연사업 실시
- 1981. 10. 01부터 민간주도로 전환
  -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현, 어린이재단)에 위탁 실시
- 1992. 03. 09. 불우이웃 결연사업으로 대상 확대
- 2005. 지방 이양

## 3. 사업 개요

- 운영기관 :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구, 한국복지재단)
- 지원대상
  - 시설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타 빈곤세대 등

## 4. 사업 수행

### ● 후원금

- 결연후원자가 결연대상자에게 제공한 후원금이며, 후원금은 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증감 가능(금융기관 지로, 자동이체, 계좌이체, 카드결재로 불입)

### ● 후원금 송금

- ‘어린이재단’은 접수된 후원금을 월말에 취합해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결연대상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
- 결연대상자가 시설보호 아동인 경우 해당 시설에 아동별 후원금 내역과 함께 일괄 송금할 수 있으나, 해당 시설에서는 다음달 12일 이전까지 ‘어린이재단’을 입금자 명의로 하여 아동 개인계좌로 입금. 후원금 송금 이체증을 보관하여 어린이재단으로 이체증을 발송
- 가정위탁세대 아동이 범정보호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아동명의로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호자(가정위탁 보호자)에게 후원금을 지급

### ● 후원금 관리

- 결연기관은 결연아동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반기당 회 이상 실시하여 후원금 접수 및 사용여부를 확인
- 담당자는 자원봉사자, 관할 아동담당공무원 및 후견인 등과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방문 실시
  - ※ 가능한 한 유선으로 결연아동 및 세대에 대한 후원금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후원금 사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을 최소화 할 것

### ● 대상별 후원금 관리방법

- 가정위탁아동
  - 대리양육, 친·인척 보호자와 일반 위탁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아동에 대한 후원금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시설아동
  - 시설아동간의 후원금 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한 아동에게 편중 결연이 되지 않도록 조치



- 시설아동의 경우 범정보호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계좌개설이 어려울 경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공고)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실시
- 시설의 장은 결연아동의 후원금을 아동의 교육비 등 직접비로 사용하도록 함. 자립 지원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이에 대해 아동에게 적립현황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시설퇴소 시 통장을 본인에게 이관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후원금을 아동이 혼자서 무분별하게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결연기관 담당자, 아동담당 공무원 및 후견인이 수시로 방문하여 확인
  - ※ 후원금 관리에 있어 아동의 후원금 통장을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아동, 후견인 등에게 보관이유 및 적립현황을 정기적으로 알릴 것

## 5. 행정 사항

- 지자체는 원활한 후원금 지원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정세대로 채택된 명단을 각 해당 어린이재단 지역본부에 제공
- 결연사업 실적은 연 2회 해당 지자체에 보고



# VI

## 아동복지시설 운영

VI-1. 아동복지시설 정의 등	191
VI-2. 보호아동의 입·퇴소 및 지원 등	193
VI-3. 시설의 운영	216
VI-4. 종사자 관리	236
VI-5. 인건비 및 운영비	247
VI-6. 기능보강 지원	258
VI-7. 시설관리 등(행정처분 및 과태료)	268
VI-8. 미신고시설 관리	275



## VI-1

## 아동복지시설 정의 등

## 1. 정 의(「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 2. 목 적

- 보호대상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조치하기 전 일시보호하거나 가정 복귀, 입양, 가정위탁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 및 양육
-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 지원

## 3. 근 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1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제59조(비용 보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급여의 기준 등), 제7조(급여의 종류),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 4.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9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 추가('04.1월)
-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VI-2

## 보호아동의 입·퇴소 및 지원 등

## 1. 입·퇴소 등 관리(「아동복지법」 제15조)

## 가. 입소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해당 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특히, 아동에게 문제 행동이 있어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의 시설 입소를 의뢰하면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입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 요보호아동 발생 시 '1.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의 보호조치 방법, 보호조치 시 고려사항, 업무처리 흐름도 참조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 처분)
  -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

● 자립지원시설

- 지원 대상 : 보호종료 아동 중 취업(우선), 취업 준비 중, 24세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이용 아동 생계비 지원 대상 파악 및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설장은 이용 아동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수급 지원이 되도록 적극 안내(지원)
  - 지역 내 퇴소 아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 확대 유도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시까지의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해 공임대주택 지원 노력

**나. 입소 절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

※ 아동보호서비스 원칙 및 기준·절차 등 세부사항은 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 '1.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및 당해연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참조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보호 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실종아동찾기센터 182번)에 지체 없이 신고 등 조치
  - 지자체의 장(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에 대해서는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 신고 체계로 제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경우(「아동복지법」 제15조)
  -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일시위탁(베이비 박스 영아 등을 다른 시설에 임시 보호조치 불가 원칙)을 통해 보호할 수 있으며,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 검진, 심리 검사 및 가정 환경에 대한 조사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 대상 아동의 신상 카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아동카드)를 작성하고,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 받아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 의뢰
  -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다만, 보호조치는 입양, 가정위탁 등 가정적 형태의 보호를 우선으로 추진
- 아동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아동 급여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수급자 수만큼 생계비 지급 중지
-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우선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으나, 지체없이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고, (영 제15조 제2항)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에서 보호하게 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조치 결정
  - ※ 주의 : 아동복지법령에 위반하여 시설에서 아동을 직접 입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시설이 없는 시·군·구에서 발생한 아동의 차질 없는 입소를 위해 시·도지사가 배치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각 시·군·구에 지침을 시달하여 추진 (다만, 시·도가 직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 배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제외)
- 장애인 등록 아동의 경우 장애인 부서로 의뢰하여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되기 전까지는 임시 보호 가능

#### 다. 타 지역 입소 의뢰에 대한 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아동 보호 양육 의뢰(전출·입 등)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수용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보호아동의 발생 시 아동의 최상의 보호를 위해 아동의 환경, 건강 상태 등을 진단하고 아동의 상태, 욕구 등을 고려하여 시설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담 시설 설치 및 직후 보호조치 (\* 예시 : 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
  - ※ 전담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 및 일시위탁하여 아동에 대한 환경, 건강 상태 등을 진단 한 후 보호조치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연간 정원 기준으로 지원 가능함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방 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시설 부족, 타 지역 아동 등을 이유로 아동 보호 양육 의뢰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의뢰(전출·입 등)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운영
- ※ 특히, 시·군·구는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자라도록 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기본 이념으로 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2조의 취지를 감안 타 지역 아동이라는 이유로 관내 시설 입소를 제한 및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 방지 조치

## 라. 이탈 아동 보호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8세 이전에 정상적인 보호 종료(원가정 복귀, 타시설 전원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을 이탈하여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의 현황을 정기적(최소 연 2회 이상)으로 파악
- 필요시 지역 내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의 이익을 위한 최상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 아동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 아동이 학교를 이탈한 경우 이를 지자체로 연계하는 것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자가 대상 청소년 발생 시 지자체(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해당 내용을 통보

## 마. 보호 중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시장·군수·구청장)

-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 변경 조치 실시
- \* 보호대상아동의 적응 상태, 변화 정도 / 보호·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제공 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9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 자립 생활 운영 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 그 밖에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보호조치 변경은 원가정 복귀,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시설 순으로 조치 엄수(수시 점검 예정)

## 바.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 (1) 퇴 소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하였거나(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한 경우),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 신청서 제출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퇴소조치 등) 참조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호기간 연장 및 추가 연장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 중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아동의 연장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기간 연장 신청 (「아동복지법」 제16조의 3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
-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아동복지법」 제16조의 3 제3항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 추가 연장 가능 (법 제16조 제3항, 시행령 제22조)

※ 추가 연장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사유는 「2022 아동보호서비스업무 매뉴얼」 96쪽, 99쪽 참조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개정('21.12.21 공포, '22.6.22 시행) >

### (3) 시설별 보호 기간 및 연장 기간(「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아동일시보호시설 : 3개월 이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 양육상황 점검을 실시하여 6개월 이내 반드시 가정복귀·가정위탁·입양·다른 시설 전원 등 조치 실시
- 자립지원시설
  - 24세 이하까지 이용 가능
  - 입소 후 보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 시 연장 가능
    -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하는 날까지 보호 가능
  - 자립지원시설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연장 승인 신청(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시설장이 보호기간 연장 사유 및 향후 자립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보호기간 연장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도 무방)

### 사. 가정복귀 조치 및 사후관리

※ 가정복귀 조치 및 사후관리 관련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는 당해연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참조

#### (1) 가정복귀 조치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복귀를 신청(시설에서 아동 직접 귀가는 불가)
- 가정복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당해 시설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대상아동의 복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복귀 조치 여부 결정
  - 관련 기관과의 사례회의, 종결심사서, 가정복귀점검표, 아동 가정복귀 의견서(학대아동의 경우 가정복귀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를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종결 여부를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당해연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참고)
  -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 반드시 원가정 복귀 요건 충족 여부 및 사례결정위원회 대면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 종료여부 결정
  - 다만, 보호자의 성품·행실이 불량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우려,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 물질의 중독 또는 감염병 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복귀를 시키지 않음
    - ※ 양육상황점검표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확인(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참고)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보호조치한 학대피해아동을 귀가시키고자 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절차를 진행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학대의 재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귀가 조치
-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가정 복귀 절차 진행 시 보호자 및 아동에 대해 가정 복귀 절차(양육환경점검, 가정 복귀 프로그램 등)를 진행하고, 관할 시·군·구에 가정환경조사서를 제출, 제출한 가정환경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가정 복귀 여부 판단

## (2) 사후관리(당해연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참고)

-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귀가한 아동의 집에 방문토록 하고, 당해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도 관리(「아동복지법」 제16조의2, '20.12.29 개정, '21.6.30시행)
- 특히, 시·군·구에서는 보호조치의 종료(연령 초과 전 종료되어 원가정 복귀)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경우 총 1년간 4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험 요인 발견 시 사후관리 기간 연장
- 원가정 복귀 후 1주일 이내 유선 및 가정 방문 실시, 1개월 이내 2회 이상 모니터링(1회 가정 방문 필수), 6개월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 아동이 원가정 복귀 전에 작성했던 양육계획서, 친부모·아동상황점검표 활용(당해연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참조)
- ※ 아동 거주지 시·군·구에서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아동과 관련된 사항을 신거주지 시·군·구로 이첩하여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 2. 아동 배치

### 가. 아동생활시설(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보호치료시설)

- 성별 분리하여 숙소 배정함. 다만 초등학교 미만 남매의 경우 같은 숙소 배치 가능하나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경우 남녀 분리

### 나. 공동생활가정

- 남녀 분리형(성별 분리 보호함. 다만 초등학교 미만 남매의 경우 지자체 장의 결정으로 같은 그룹홈에 배치 가능하나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경우 남녀 분리)
  - ※ 남녀 혼합 시설의 경우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 전까지 연장 가능. 이미 초등학교 이상인 경우에 조속히 분리 보호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분리 연장이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그룹홈 시설장이 분리 연장을 건의 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연장 가능

## 3. 아동 인권 보호 및 교육

### 가. 아동 인권 보호

- ☞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보호매뉴얼」 및 관련 동영상교육 등 숙지 (아동권리과 -3511, 2022.7.28., -3599(2022.8.2.))

#### (1) 학습권 보호

-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입소 아동은 학교 전학 또는 통학이 어려운 경우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시설장은 입소 아동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 연계, 위탁교육 등 아동에 대한 학습 연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2) 진정권 보장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보호 아동에 대한 진정권을 보장하고,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
  - 시설의 장은 아동을 최초로 보호하는 때에는 시설 보호 아동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

-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 거주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
- 아동이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
  - 시설의 장은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
  - 시설의 장은 시설 아동이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합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지원
  -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 아동이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
- 시설 종사자 등은 위원회 명의로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 거주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 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의 경우 열람 금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설은 시설 내 아동 인권 관련 위반 사례가 없도록 적극 조치

## 나. 아동학대 및 성범죄 신고

### (1) 아동학대 신고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지자체 긴급전화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범죄신고전화 국번없이 112)
  - \* '14.9.29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폐지하고,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제63조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 노출 금지
- 종사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자문 요청
-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67조제4항)

## 다. 아동 교육

### (1) 아동 인권 교육

- 아동시설은 아동이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침해 받아 온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인권교육 실시를 통한 아동의 인권 의식 강화를 비롯해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 아동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동시설 내에 인권 보호 및 실현에 대한 제도 구비
- 아동 인권교육은 아동이 자신의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아동 스스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아동 본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게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권리 교육은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
- 종사자는 아동의 인권 보호자로서 인권과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아동의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인권교육을 직접 실행하므로 인권 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하고, 교육을 통해 아동시설 내에서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체벌, 성학대 등 인권 침해 상황 예방 노력
- 아동의 일반적 권리, 권리 보장 및 실현을 위한 노력, 권리 침해 시 호소 경로 장치 등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해서 문서화해야 하며, 아동 인권 규정은 아동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문서로 전달하여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고, 아동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호소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지 통보  
※ 「2022년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적극 활용



(2)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6(2022.6.21. 개정)의 교육기준에 따라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참고1 참조)
  - ※ 아동 대상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시 흡연 예방 교육 함께 실시
  -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설 보호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아동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 생략 가능(재학(재원)증명서로 증빙)
- 시설장은 입소 아동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시설 내 영양사로 하여금 아동 대상 영양 및 식습관 교육을 실시토록 하되, 아동 대상 식단 및 음식의 맛 및 영양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실시하여 만족도 제고에 노력
- 시설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와 적극 연계하여 아동 교육 실시
- 시설의 장은 교육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학대아동, 경계선아동, ADHD 아동, 트라우마 아동, 스트레스 장애 아동, 영유아, 장애아동 등 다양한 취약 계층 아동 연령별 특성 및 심리적 이해 교육 확대 추진에 노력
  - \* ADHD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참고 1 아동에 대한 6대 의무교육〉

구분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 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초등 학교 취학 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 몸의 소중한</li> <li>2. 내 몸의 정확한 명칭</li> <li>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li> <li>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li> <li>5. 성폭력의 개념 및 성폭력의 주체에 대한 교육</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li> <li>2. 아동학대 및 학대행위자 개념</li> <li>3. 자기감정 표현 하기 및 도움 요청하기</li> <li>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li> <li>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li> <li>3. 유괴범에 대한 개념</li> <li>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li> <li>2. 예방접종의 이해</li> <li>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li> <li>4.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li> <li>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 보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li> <li>2. 뜨거운 물건 이해 하기</li> <li>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li> <li>4. 화재 시 대처법</li> <li>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li> <li>6.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li> <li>7.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li> <li>2. 안전한 도로 횡단법</li> <li>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li> <li>4. 바퀴 달린 달것의 안전한 이용법</li> <li>5. 날씨와 보행안전</li> <li>6. 어른과 손잡고 걷기</li> </ol>
	초등 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폭력의 개념</li> <li>2. 성폭력의 위험 상황</li> <li>3.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li> <li>4.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 및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li> <li>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li> <li>3. 학대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아동학대 신고 요령</li> <li>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li> <li>5.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li> <li>2. 유괴범에 대한 개념</li> <li>3.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li> <li>4.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li> <li>5.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li> <li>2. 예방접종의 이해</li> <li>3. 약물·화학제품의 필요성과 위험성 이해하기</li> <li>4. 중독·오용·남용의 개념 알기</li> <li>5. 중독사고의 대처 법과 예방법</li> <li>6.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li> <li>7.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li> <li>8. 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li> <li>2. 화재 시 대처법</li> <li>3. 화재 신고 요령</li> <li>4. 화상 대처법</li> <li>5. 소화기 사용법</li> <li>6.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한 통학로 알기</li> <li>2. 상황에 따른 안전한 보행법</li> <li>3. 바퀴 달린 달것의 안전한 이용법</li> <li>4.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법</li> <li>5. 교통법규 이해하기</li> </ol>

구분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중·고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폭력의 개념</li> <li>2. 성폭력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li> <li>3. 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li> <li>4.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 및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li> <li>2. 아동학대 및 아동 학대행위자 개념</li> <li>3. 학대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아동학대 신고 요령</li> <li>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li> <li>5.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li> <li>6.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인전락 및 위험 상황 알기</li> <li>2.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li> <li>3.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li> <li>4. 가출예방 관련 교육</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li> <li>2. 예방접종의 이해</li> <li>3. 항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li> <li>4.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li> <li>5. 항정신성 의약품의 피해와 법적 처벌 규정</li> <li>6.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li> <li>7. 오용·남용의 대처 법과 예방법</li> <li>8. 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li> <li>2. 화재 시 대처법</li> <li>3. 소방기구 사용법</li> <li>4.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발생 시 행동방법</li> <li>5. 재난안내시스템 활용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li> <li>2. 이륜차와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li> <li>3. 인간 능력의 한계와 위험 예측</li> <li>4. 교통법규와 사회적 책임</li> <li>5. 교통사고와 방지 대책</li> </ol>
교직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li> <li>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li> <li>3. 시청각 교육</li> <li>4. 사례 분석</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li> <li>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li> <li>3. 시청각 교육</li> <li>4. 사례 분석</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li> <li>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li> <li>3. 시청각 교육</li> <li>4. 사례 분석</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li> <li>2. 시청각 교육</li> <li>3. 사례 분석</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li> <li>2. 시청각 교육</li> <li>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li> <li>4. 사례 분석</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li> <li>2. 시청각 교육</li> <li>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li> <li>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li> </ol>

### 〈참고2 : 아동의 4대 기본권 및 아동학대의 유형〉

#### 가. 아동의 4대 기본권

- 생존권(Survival Rights) :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Protection Rights)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분,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 발달권(Development Rights) :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 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 :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나. 아동 학대의 유형

- 신체 학대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행위로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아동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등이 포함. 특히,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로 판단
- 정서 학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로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 정서 학대의 경우, 학대가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신체 학대, 방임 등 타 학대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성 학대  
성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이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함. 성적 유희, 성인(음란)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성인(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 성매매 행위,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들이 포함
- 방임 및 유기  
방임 및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정의. 방임은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과,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의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으로 크게 구분되며,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말함

[ 아동학대 유형 및 구체적 행위 ]

학대유형	개념	구체적 행위
신체 학대	<p>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행위</p> <p>※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li> <li>• 뺨을 때리는 행위</li> <li>•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li> <li>•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li> <li>•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li> <li>•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li> </ul>
정서 학대	<p>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li> <li>• 감금 행위</li> <li>• 집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거부적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li> <li>• 아동 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li> <li>•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li> </ul>
성 학대	<p>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p> <p>※ 아동 성학대는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li> <li>• 성인이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li> <li>•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li> <li>• 성인물을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성인물을 판매하는 행위</li> <li>• 아동 성매매나 아동 매매 행위</li> </ul>
방임 및 유기	<p>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li> <li>-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li> <li>-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li> </ul> </li> <li>• 교육적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는 행위</li> <li>-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행위</li> <li>-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li> </ul> </li> <li>• 의료적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li> <li>-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li> <li>-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행위</li> </ul> </li> <li>•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li> </ul>

## 4. 시설 보호아동 지원 및 관리

### 가.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해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 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지원함
- 공동생활가정 임차급여 지급 특례
  -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3호) 및 당해연도 주거급여 사업안내(국토교통부) 참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관련 조문

**제6조(임차급여의 지급대상)** ①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에 입소한 사람.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 중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제9조제1항제2호를 따른다.

2. (생략)

**제9조(임차급여 지급 특례)** ① 제6조 및 제7조에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급여를 산정·지급한다.

1. (생략)

2. 수급자가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 및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3. (생략)

② ~ ③ (생략)

●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 일반생계비 급여 대상자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급비를 시설회계에 산입 가능(아동 권리과-2252(2019. 4. 17.)호, 4574(2019. 8. 30.)호)
- 공동생활가정 생활아동의 주소지 관리 : 사회복지시설 아동 주소지 관리에 준함
- 동일 그룹홈에 형제, 자매, 남매 등이 함께 입소하는 경우 개인별 보장 대상임

(1) 아동그룹홈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관리 방안

- 시설회계로 편입하여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가 일원화된 관리체계 적용 가능한 점, 별도의 장부 관리로 아동별 지출금액을 관리해야 하는 불편 최소화, 합리적 수급비 사용, 읍면동 시설 급여 점검 애로점 등을 고려
- 해당 아동 그룹홈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여건, 소관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시설회계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 바람직
- 시설회계로 편입 시, 세입예산과목은 입소비용수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과목은 아동의 직·간접 비용으로 사용되는 사업비(운영비, 교육비, 기타사업비) 및 공공요금, 보험료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 (당해연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 참조)
- \* 다만, 아동 개인별 직접 지원(생계·급식비, 피복비 등) 항목으로 최소 시설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이상 지출
- \* 주거급여는 공동생활가정의 기타운영비(임차료)로 지출 가능하며, 임차료로 지출 시 시설회계로 산입

(2) (시설회계 편입 시) 아동그룹홈 아동 급여 관리

- 시설회계로 편입되는 경우 시설 담당 부서에서는 시설 점검 시 생계급여를 포함하여 점검, 읍면동의 반기별 현장 점검은 해당 점검으로 대체 가능
- \* 시설 담당 부서의 점검 결과 부정 사용 의심 등 세부 점검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생계급여 담당 부서(읍면동 포함)에 재점검

구분	기존 기준	권고 기준
① 시설회계 산입 여부	시설회계 불산입	시설회계 산입
② 생계급여 수령	아동 명의 계좌	아동 명의 계좌
③ 시설 계좌로 이체	시설 명의 계좌로 이체	시설 명의 계좌로 이체
④ 사용 내역 관리	개인별 사용 내역 및 영수증 관리	희망이음으로 항목별 사용 내역 및 영수증 관리

● 외국국적 아동 생계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아동 생계비는 기초수급자의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

● 시설보호 아동의 생계급여 등 관리

- 부모 등의 생계비 사전 편취 문제시 기초생계급여 담당 부서와 협조(아동권리과·5796(2019. 11. 8.)호)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지침의 「04. 급여의 실시 → II. 급여의 지급 → 4. 계좌관리 → 나. 급여계좌예외」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설정 가능

- 미성년아동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워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그룹홈 입소 아동들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

● 양육수당 등 보호아동의 개인 금전 관리

- 「보육사업안내」 등 양육수당 관련 지침을 참조하되, 개인 명의로 국가, 지역 사회, 원가정 등으로부터 아동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은 아동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 이므로 시설에서 위임하여 관리하는 성격

● 원칙 : 개인 금전 관리(시설회계와 별도 관리)

- 영유아 개인의 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통한 개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추후 교육비 등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
- 단, 시설 입소 시 아동 개인 계좌가 없는 경우, 아동 개인 계좌 개설 시까지 시설(법인) 명의 계좌로 양육수당을 수령하고, 아동 명의 통장 개설 시 시설 명의 통장으로 기 지급된 양육수당 전액을 아동 명의 통장으로 이체

● 회계 관리 방식

- 수입 : 아동별 개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
- 지출 : 아동별 금전출납부 기록·관리(거래 영수증, 기타 지출 증빙 서류(의류 사진, 프로그램 일지 및 출석부 등) 첨부)

● 지출 용도

-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제반 지출(예, 디딤씨앗통장 적립, 학습비, 의료비, 치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사용. 단, 아동의 생활 및 서비스 제공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아래의 경비로는 사용 불가

종사자 인건비(사회보험료), 시설 기능보강비, 장비비(아동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 제외), 시설 제반 운영비(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비 등) 등

\* 적립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사용 권장, 실제 아동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 부모 등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자립정착금 시설 기부 금지(아동권리과-3792(2019. 7. 12.)호)
  - 아동에 대한 개인 금전 관리 및 합리적 소비 등을 위한 경제 교육 실시
  - 아동 명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자립정착금, CDA, 자립수당 등)에 대하여 시설에 기부 금지

**나.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침 참조

**(1)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 일시보호시설 아동의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반드시 디딤씨앗통장(CDA)에 아동수당 지급
- 중복 지원 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대상 제외
  -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 지원 가능('13. 1. 1. ~)

**(2) 지원 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 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3) 매칭 및 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 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20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확대 4만원 → 5만원)

**다. 후원자 연계 및 후원금 관리**

☞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후원금의 관리 참조

- 시설장은 지역 사회 내에서 독지가 및 후원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 인력 개발에 노력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입·퇴소현황을 월 1회 이상 통보하여 결연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미결연 아동을 적극 추천하여 결연 후원에서 누락 방지
  - 신규 입소 아동이 후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신속히 송부
    - ☞ 신규 입소 아동 자료 송부가 늦어 기존 결연 아동을 결연, 다중 결연하는 문제 발생

● 비지정 후원금 관리

\*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참고

-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 후원금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용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 초과 금지

- 운영비 :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수송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직업재활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등
- 간접비 :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해당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 전출금, 부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운영 충당 적립금, 환경 개선 준비금 등으로 사용 금지

● 지정후원금 관리

-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 금지
  -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 후원금은 제외
- 후원금 계좌 명의는 아동 개인 명의로 하되, 사용 인감은 시설 인감으로 하고 카드 발급이나 사용 인감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아동 임의로 현금을 과다 지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별히 필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의 동의를 받아 시설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계좌 관리
- 후원금이 많이 입금되는 아동은 자립정착금,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비 및 개인 적금 적립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용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 퇴소 아동의 사후 관리를 위한 후원금 사용

- 연간 사용 계획에 반영하거나 후원자가 지정후원금으로 정할 경우 사용 가능

● 행정사항

- 후원금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복지시설 대표 등이 횡령하거나 개인 용도(개인 부채 상환 등)로 사용 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 실시

- 시설의 장은 지정후원금을 관리 비용에 사용한 때에는 사용내역(서식 3호)을 분기 익월 15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보고

**라. 아동의 건강한 심신 보존 및 치료**

-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장 및 종사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 및 노력
-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적기에 예방접종, 건강검진, 심리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관리
- 특히,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 전에 모든 보호아동 대상으로 심리 검사 철저 실시

**[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 안내 ]**

- (목적) 심리·정서·인자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 아동의 문제 행동 개선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 (사업기간 및 예산) 단년도 계속사업, 예산 '23년 약 23억원)
- (대상) 전국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심리 치료 개입이 필요한 아동
- (사업주체) 아동권리보장원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아동 맞춤형 서비스	- 맞춤형 아동 상담·치료 서비스 (언어, 미술, 놀이치료 등) 지원 - 종합심리검사 지원 - 주양육자 상담 지원
아동·원가정 역량강화	- 아동·원가족 면접교섭 및 원가정 지원 프로그램
교육, 연구 등	- 실무자 간담회, 교육, 컨설팅 - 사업 효과성 평가 및 운영개선 연구

- (행정사항)
  -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는 시설 아동이 심리 치료 재활이 필요하다는 의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제안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 아동을 치료·재활 지원 사업에 신청
  - 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의 시설 아동 중 양육상황 점검 등을 통해 정서·행동상 문제가 있는 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 치료·재활 지원 사업에 참여 지도
  - 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결정 전 일시보호 시 가정 환경 조사 및 건강검진, 심리 검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심리 검사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를 아동복지시설 치료·재활 지원 사업 위탁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가능

### 마. 대학 진학 자금 등 지원

- 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을 권고

### 바. 자립 준비 프로그램 운영

☞ 자세한 사항은 이 지침 2권 '1. 보호아동 자립지원' 부분 참조

### 사.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비고
아동·청소년의 자립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발달론적 관점에서의 특성 이해</li> <li>• 아동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li> <li>- 아동의 강점을 이해하고 과제 해결 중심 접근</li> <li>• 아동의 학령에 맞는 개별적인 연차적 자립 계획 수립</li> <li>- 매년 아동의 욕구를 점검하여 수정</li> </ul>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방문 또는 전화, 문자, 편지, 카드 등 지속적인 관계 유지 노력 연 1회 이상</li> <li>• 가족참여 프로그램(ex. 가족캠프 등) 연 1회 이상 실시</li> <li>•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부모 교육 등 연 1회 이상 실시</li> </ul>	
학교와 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사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정보 공유, 학교 행사에 참여</li> <li>- 분기 1회 이상 아동 생활 상황에 대해 교류한 기록 보유</li> </ul>	
지역 내 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관공서, 민간 자원 등 자원 연계</li> <li>• 자원봉사 및 후원 기관과 관계 형성</li> </ul>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매뉴얼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아. 보호종료 예정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이 지침 2권 '1. 보호아동 자립지원' 부분 참조

### 자.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일반 생계급여(개별급여) 지급(아동권리과-6785(2022.12.29.)호)

#### (1)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 지급 개요

- 보호연장 기간 별도 거주 시 자립생활 경험이 가능하도록 '23년 1월분부터 생계급여를 아동 본인 계좌로 개별급여(일반 생계급여)로 지급
  - \* 일반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적용(시설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 \*\* 일반 생계급여 지급액은 최대 약 62만원('23년)이나, 소득·재산에 따라 지급액 상이
- (대상) 아동양육시설 보호연장아동에 한해 적용
  - \* 현재 별도 거주 중인 보호연장아동도 '23.1월분부터 일반 생계급여 전환 가능(소급적용 불가)

(2) 업무처리사항

- (보호연장 신청) 시설 보호아동이 보호연장 희망 시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를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제출('22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96-99 참조)
- (실거주지 변경 신고) 보호연장아동이 실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서식1호)를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제출(공문 등)
  - \* 실거주지 변경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설로 등록되어 있어도 무관
- (신고기한) 거주지를 변경한 달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실거주지 변경(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
  - \* (예) '23.3.10. 기숙사로 실거주지 변경 시 '23.3.7.까지 변경신고서 및 통장사본 제출
  - \*\* 단, 실거주지 변경 신고 시점에 이미 시설 밖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 실거주지 변경(예정)일은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
- (추가서류) 시설 내 거주 → 시설 밖 거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개별급여 지급을 위해 보호연장아동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필요

**〈보호연장아동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서식1호) 제출〉**

**※ 제출의무 : 아동양육시설장**

- ① 보호연장아동이 실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 \* 시설 내 → 시설 밖, 시설 밖 → 시설 내, 시설 밖 → 시설 밖 거주지 변경 모두 해당
- ② 실거주지 변경(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
- ③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와 함께 보호연장아동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 \* 시설내 → 시설 밖 거주지 변경 시에만 해당

- (시설장의 의무) 양육시설장은 보호 중인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이 개별급여로 전환 될 수 있음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안내 및 기한 내 실거주지 변경 신고 필수
- 또한,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이 개별급여 자격으로 전환될 시에도 해당 아동의 생활 상태, 자립준비정도 등 지속 점검·지도 필요

## VI-3

## 시설의 운영

## 1.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 1. 시설 설치 및 휴·폐업 등 신고

## 가. 시설의 설치 신고 : 「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아동복지 시설 설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

**나. 시설 폐업·휴업 등의 신고 : 「아동복지법」 제51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참조)**

- 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폐업·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의 휴업·폐업·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 영 제50조의 2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시설 보호 아동에 대한 조치 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0조의2(폐업·휴업 시의 조치)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해당 아동을 다른 아동복지 시설로 옮기는 조치(이하 “전원조치”라 한다)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고려한 전원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

**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식품위생법」)**

- 식중독 사고 및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인 이상인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집단급식소 설치를 반드시 신고
  - ※ 집단급식소 미신고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제101조)
  - \* 「식품위생법」 제2조, 제51조, 제52조, 제88조, 제94조, 제10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법」 제52조

**라. 급식소 설치 등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아동복지시설의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7조, 제29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 ※ 급식소 미등록 :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제29조)

**마. 변경 신고 : 「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 변경(별지 제23호서식)

-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2.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1) 시설의 입지조건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 참조**

-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
-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고,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시설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 가능
  - 단독 대지 내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수평 거리 측정
  - 공동주택 내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시설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시설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 거리 측정
  - 복합상가 내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시설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시설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 거리 측정



- 공동생활시설은 다음의 기준 추가 적용
  -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
  -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으며, 몇 개의 그룹홈이 한 건물이나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 다만, 아동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그룹홈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의 집단화 가능성이 없을 경우, 또는 같은 주거 단지 내 있음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 등으로 아동 양육상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신고 시설 운영자가 그룹홈 간 협력 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시설을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동일한 부지 또는 건물에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 중 폐업된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 나목 참조)<개정 2022.6.22>

**(2) 시설의 설비 기준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다목 및 2. 시설별 기준 참조**

- 공통기준
  - 30인 이상 시설은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수·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모두 구비
  - 7세 이상의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의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
    - ※ “거실”은 다락, 복도를 제외한 침실 및 공동 생활 공간 등으로 남·녀별 완전하게 공간을 분리

※ (예시) 침실 등 사적 공간을 포함한 거실의 완전한 분리 모형

침실 1	침실 2	침실 1	침실 2	침실 1	침실 2
침실 3	공동 공간	침실 3	공동 공간	침실 3	공동 공간
	↑ 출입문		↑ 출입문		↑ 출입문
101호(남아)		102호(여아)		103호(영유아)	

※ 거실 : 아동 1명당 6.6m<sup>2</sup> 이상,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

- 30인 미만 시설은 별표 2의 제1호 다 목에 따라 일부 시설을 겸용 또는 생략 가능

● 시설별 기준

구 분	설비기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6m<sup>2</sup> 이상의 강당 또는 오락실 설치</li> <li>• 도서실 설치</li> <li>• 16.5m<sup>2</sup> 이상의 심리검사·치료실 설치</li> </ul>
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2.5m<sup>2</sup> 이상의 주택형 숙소</li> </ul>
자립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정원은 2명 이하</li> </ul>
아동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16.5m<sup>2</sup> 이상</li> <li>• 자료실 또는 대기실 : 16.5m<sup>2</sup> (30명 이상 시설만 해당)</li> </ul>

● 공동생활가정의 추가 설치 기준

\*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측정한 면적 기준임

- 전용 면적 : 82.5m<sup>2</sup> 이상의 주택형 숙소(시행규칙 별표2 제2호다목)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다음 표의 각 기준에 의함.〔주택법 시행규칙〕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li> <li>•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 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li> <li>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li> </ul> </li> </ul>
-----------------------------------------------------------------------------------------------------------------------------------------------------------------------------------------------------------------------------------------------------------------------------------------------------------------------------------------------------------------------------------------------------------------------------------------------------------------------------------

※ 변기의 수는 시설 기준에 따라 아동 5명당 1개 이상(6명 이상의 경우 2개 이상)으로 설치하여 아동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예외적인 사유로 남녀혼합형의 경우 남녀 각각의 침실을 갖추어야 함(2. 아동배치 참조)

- 유의 사항 : 생계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그룹홈의 임차료 납부, 대출 원리금 상환 등으로 부적절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충당 계획 등 운영 주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 담보가 설정된 경우 임차인의 담보에 대한 상환 및 이자 납부 계획 확인 등 운영 주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

※ 그룹홈의 재정 운영 계획 및 자원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첨부

- 그룹홈으로 사용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대출원금)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제외
- 그룹홈 건물 소유 시 1년 이내에 구입한 경우 계약서 상 금액, 1년이 경과한 경우 공시지가 금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금융기관이나 사인에게 받은 차입 원금을 부채 비율로 산정
- 그룹홈 건물 임차 시 전세 금액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사인에게 받은 차입 원금을 부채 비율로 산정
- 그룹홈 면적, 입지 조건, 재정 능력, 보호대상아동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 여부 결정

## 나. 시설 정원 책정

### ● 아동 정원 책정 기준

-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공통시설기준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거실 규정의 거실 면적은 아동의 개인적 생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침실과 아파트형 구조의 공동 생활 공간과 같은 거실을 의미하며 아동의 개인적 공간이라고 볼 수 없는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등은 제외
- 화장실 설치기준에서 변기의 수 산정 시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야외 화장실도 포함 가능

### ● 주요 업무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과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되도록 시설 또는 건축물대장 정리

#### ※ 참고 : 사례 예시

건축물대장에 아동숙사로 되어 정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창고로 운영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정리  
 (제1안)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 정원을 감원하여 책정  
 (제2안) 창고로 운영되는 공간을 건축물대장상 용도인 아동숙사로 시정하여 현재 정원 유지

- 담당 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정리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정원 책정
  -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 각 시설에서 실제 용도와 일치될 위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군·구의 승인을 받고 신청

● 행정사항

- 시설 정원을 조정할 경우 시설 정원 변경 보고서(서식 7호)에 현장확인서와 건축물현황도면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호아동 수가 50% 미만인 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역별로 부족한 아동 시설(아동일시 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타 시설로 전환
- 아동일시보호시설 정원 외 20% 아동 입소를 한시적으로 허용(아동권리과-987, 2021. 2. 17.)
  - 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시설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 내 시설 등에서 보호 여력이 없을 경우 정원 외 20% 범위 내에서 입소 허용(별도 통보 시까지)

**다. 시설의 운영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3 참조**

**(1) 공통 사항**

● 건강 관리

- 아동의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 실시
- 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 필수·임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급식 위생 관리

- 아동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고,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아니한 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 보건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원을 받아 식단을 작성
- 시설장 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 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
- 시설장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시설장 등은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
-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
  - 전염성 질환, 고름 형성 상처 등을 가진 사람은 아동의 식사를 조리 배제
  - 아동복지시설의 먹는물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먹는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함.
- 관리 규정
    -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
  - 장부 등의 비치 : 아동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 아동복지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운영일지
    -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이력서 및 사진 포함)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의결 서류
    - 입소·퇴소아동의 명단 및 관계 서류
  -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기거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보육사, 그 밖에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보호아동과 함께 기거
    - 아동복지시설 안에서는 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는 거주 불가
  - 아동의 보호 조치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이 입소하였을 때에는 입소한 날부터 2주 동안 그 심신 상태를 관찰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특별 지도를 위하여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보호

## (2) 시설 유형별 사항

### (가)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

- 입소 아동은 학교 전학 또는 통학이 어려운 경우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시설장은 입소 아동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 연계, 위탁 교육 등 아동에 대한 학습 연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없거나 부족한 각 시·도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가정위탁, 시설입소, 입양 등의 아동 보호 조치를 하기 전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 실정과 시설 여건이 적합한 시설을 아동일시보호시설로 전환

###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권고사항(2018. 5. 18.)
  - 각 시설별 아동들과 자치 회의, 욕구 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복 및 생활용품 지급 공통 기준 마련 운영
  - 임상심리상담원 및 외부 의료기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료 및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 노력
  - 권위적인 통제 방법(벌점, 상점 등)을 지양하고 아동들과 자치 회의, 직원-아동 간 전체 회의 등을 통하여 내부 운영 기준 등을 마련(지자체 및 외부관계자 등이 참여한 시설 운영 위원회 등에서 모니터링 필요)
  - 부모와의 접견권, 전화 통화, 면회, 외출, 외박 등 제한 등 기본적인 권리 박탈 중심 징계 제도 개선 및 외부 소통 기준 마련
  - 과도한 서신 검열 지양,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과 교사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아동이 직접 편지 개봉을 하고 교사는 내용물만 확인
  - CCTV 활용 목적과 활용 방안, 관리자·담당자 접근 제한 및 모니터 기록 비치 등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화장실 내 CCTV는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창문만 모니터 하도록 위치 조정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5대 교육’외에 필수 교육으로 아동 인권교육을 포함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법정 인원\* 배치, 시간 외 근로 수당 지원, 관리 운영비 권고 기준 이상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보호 목적에 맞는 시설 운영 내실화(아동보호치료 시설의 임상심리상담원 반드시 배치)
  - \* 보육사 및 조리원 등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종사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다) 자립지원시설

- 자립지원시설 운영이 미흡한 시·도는 시설 환경 개선, 취업·상담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단순 숙식 제공에서 자립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고용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이용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 추진

**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 참조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설치 운영 등)
- 설치 대상 : 보호아동 전 시설('12. 1. 26. 개정)
- 업무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각 대표에서 2명 초과 금지)
- 위촉 방법
  - 위원장 : 위원 내에서 호선
  - 위 원 :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 대표(시설에서 보호 중인 고등학교 재학 아동 또는 그 이상인 자)
    -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의 임기 : 3년(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함)
- 운영 :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을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
- 행정사항
  - 시설장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군·구에 보고
  - 시·도는 운영위원회 설치 현황을 매년도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서식 6호)
    -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참조
- 기타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준용함

## 마. 시설 내 운영 장부 비치(「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 참조

- 아동카드, 예·결산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 관련 증빙철, 비품대장, 그룹홈 운영일지 등
- ※ 지자체는 필수 비치 장부 외 불필요한 서류 비치 간소화 노력 및 시설 지도

## 바. 시설 안전 관리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 매뉴얼」참조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1) 소방·안전 설비 등 강화

- 안전기준 준수 : 「아동복지법」, 「소방기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설 운영
- 저층 구조 시설 설계
  - 기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시 가급적 3층 이하의 저층 구조 시설 설치 권장
- 영아 배치
  - 거동이 곤란한 영아의 경우 가급적 시설의 1층 출입구 근접한 곳에 배치하고, 1층 배치가 어려운 경우 비상 탈출 등을 고려하여 용이한 곳에 배치
- 임시 대피 용품 구비
  - 영아가 주로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임시적인 방안으로 종사자 1인이 다수의 영아를 대피시키기 위한 신생아 대피용 조끼 등 구비
  - \* 신생아 대피용 조끼 사용 시 유의 사항 등 참조

### [ 아동시설의 안전기준 등 ]

####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1. 주요 시설물은 피난시설 및 화재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다치거나 병든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약품, 구호설비·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나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비상시의 대피경로를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7. 사고 발생 후에는 사고 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계획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27조 관련)	
구분	안전기준
1. 아동을 위한 제품	가. 제품의 성분·함량·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품 사용 적정 연령을 표시하여야 하며, 연령에 따른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사용 방법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아동이 이용하는 놀이 시설물	가.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아동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놀이시설물의 돌출 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높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아동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안전지대)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아동의 신체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그 맞물림의 형태 및 힘을 점검하여야 한다. 마.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주의 깊게 디자인하여 아동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놀이시설물 사이에 연결되거나 바닥과 놀이시설물에 45° 이내로 연결된 줄은 아동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사.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인은 각 놀이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우고 이를 지켜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한 모든 행위는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대피용 조끼 사용 시 행동 요령

**〈착용요령〉**

• 앞주머니에는 두 명의 아기와 뒷주머니에 한 명의 아기를 위치

앞(2명)	뒤(1명)
	

- 아기들은 따뜻한 담요나 신생아포에 싸아 조끼에 넣음
- 뒷면에 긴 띠가 부착이 되어 있어 끈을 앞쪽으로 묶어 앞에 있는 아기와 뒷자리에 있는 아기가 구조원과 밀착시켜 안전감을 줄 수 있도록 착용
- 양쪽 옆에 있는 버클을 이용해 구조원의 체격에 따라 조절을 하여 안정감 있는 비상 구조 조끼를 착용

**〈유의사항〉**

- 일반적 3개월 미만 아동을 대피시키기 위해 제작된 제품으로 사용 가능 아동을 사전 확인
- 신생아에 대한 목 보호, 빠짐 방지 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상 시 인형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훈련
- 최대 3인까지 가능하나 실제 종사자가 부담 할 수 있는 아동 수까지만 조끼에 넣어서 대피
- 긴급 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
- 착용 후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

## (2) 시설 내 안전관리 체계 구축

### ●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 시설장이 안전관리책임관이 되어 안전 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
- 안전관리책임관은 분야별(소방, 건축물, 생활안전 등) 필수 안전 업무 실무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시설 안전 점검 등 진행
- 안전 업무 실무자는 가급적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지정
- 시설장은 시설 종사자의 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사자 채용 시 소방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우대하고, 기존 종사자의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자격증 취득 등 독려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 수립, 소방훈련 계획, 소화기구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안전 관리책임관에게 보고하여 시정
  - \* 지자체에서는 시설 내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 ● 상시 화재 예방 및 피난 대책 추진

- 아동복지시설은 화재를 예방하고 불가피한 화재 시 피난을 신속하게 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아래와 같은 대책을 상시적으로 시행

1. 방화시설(방화문 등) 및 피난 대피도가 부착된 방화 구획 확보
2. 확보된 피난통로 및 소방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
3. 소화설비 및 비상경보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4.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설비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5. 보일러 등 화기 시설 공간을 확보
6. 소화기 설치 및 관리
7. 가연성 가스 사용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상태가 적정 상태 유지
8. 시설 내·외부의 전선과 배선 기구를 정기적으로 관리
9.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구비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안전관리 업무 분장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종사자 업무 분장안을 시설별로 구비하고 평소 관련 내용을 직원들이 숙지토록 조치

● 야간 근무 지침 구비

- 대비가 취약한 야간의 사고 방지를 위해 각 시설별 야간 근무 요령 등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포함할 내용 : 당직 당일의 안전 취약 요인 파악 및 대피 경로, 초기 대응 방법을 확인하고, 이를 시설장(당일 최선임자)에게 보고

야간 근무 지침 표준(안)
<p>1. (목적) 본 지침은 야간 근무자의 근무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시설 입소자(입원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2. (적용)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p> <p>1) 인적 범위 : 당직자에게 최우선 적용된다. 다만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야간(21~06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초동 대처를 책임지는 종사자는 근무의 형태와 명칭, 인원 수를 불문하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이하 당직자로 칭함).</p> <p>2) 시간 범위 : 야간(21~06시). 단, 시설 내 야간 교대 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p> <p>3. (근무 준비) 당직자는 매일 18시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 취약 요인을 확인하고 비상 시 대피 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록으로써 유지한다.</p> <p>1) 당일 입소 현황, 당일 총별 최단 대피 경로 확인 (와상 환자, 거동 불편자 등 취약 환자 위주로 파악)</p> <p>2) 초동 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 경로상 방해 요인 제거</p> <p>3) 비상 시 시설 내외 비상 연락망(소방관서, 의료기관) 확인</p> <p>4) 당직 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 : 마스터 키 등</p> <p>4. (준비 확인) 당직자의 안전 준비 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한다.</p> <p>1) 확인자 : 시설장(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順)</p> <p>2) 보고자 : 당직자</p> <p>3) 확인 방법 : 당직자는 준비 상태를 기록한 문서와 함께 구두로써 이를 보고하고, 시설장은 질의 응답의 형태로 준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크로스 체크). 이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보완토록 한다.</p> <p>4) 확인 종결 : 확인자는 준비 상태가 충분함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록지에 서명하고, 2년간 보존한다.</p> <p>5. (근무 실시) 준비 상태를 확인 종결 받은 당직자는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순찰을 최소 2시간에 1번씩 실시한다(단 시설에 3시간 이내의 빈도로 별도 순찰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순찰 시 특이 사항은 당직일지에 기록한다.</p> <p>6. (초동 대처) 순찰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 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 최단 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 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 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p> <p>7. (당직 점검) 당직 준비 확인을 한 확인자는 불시에 당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p>

(3) 시설 자체 안전 점검 강화

- 시설의 장은 자체 계획에 따라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
-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를 요구
-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문제점 보완 및 정비 보완 기록부에 기록하여 유지·관리
- 시설의 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준을 감안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 훈련 시 가능한 소방관서와 협력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
- 시설의 장은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 생략 가능
  - \* 지자체 및 소방관서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중, 소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교육을 받은 증빙 자료 및 학교 확인서 등으로 간주함)
- 교육 효과의 제고를 위해 화재 등 재난 대비 교육은 연 1회 이상은 모의 훈련 방식으로 실시하고 시설 자체적인 모의 훈련 방식 강화 위한 표준 매뉴얼(안) 마련

※ 참고 자료

< 비상 대응 훈련 지침 표준(안) 예시 >
<p>1. (목적) 본 지침은 비상 대응 훈련의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 및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훈련을 내실화 하고, 시설 입소자(입원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p> <p>2. (빈도) 훈련은 반기 1회 실시하며, 연간 1회는 야간 훈련으로 실시한다. 단, 소방법 등 타법상의 훈련을 실시한 경우 본 지침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p> <p>3. (참여자) 비상 대응 훈련시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p> <p>1) 훈련 주관 : 기관장(기관장은 안전관리책임관으로서 전체 지휘)                      훈련은 기관장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간 출장, 치료 등 부재인 경우에 최 선임이 대신한다.</p> <p>2) 훈련 참여 : 종사자 및 입소자(입원자)</p> <p>가) 종사자는 시설의 최소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요원(예: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간호사 등)을 남기고 훈련 당일 종사자 전원 참석한다.</p>

< 비상 대응 훈련 지침 표준(안) 예시 >

나) 입소자는 당사자의 동의 후에 훈련에 참여토록 하며, 직접 훈련 참가가 어려운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참관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시설장이 입소자의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훈련 참여를 제한할 경우에는, 입소자를 대체한 인형·물품 등을 활용하여 실제와 가깝게 훈련을 하여야 한다.

4. (주안점) 기관장은 훈련 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실행 시에는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보완한다.
  - 1) 다양한 상황 가정(시나리오) : 화재 장소(실내, 실외, 주방, 복도 등) 및 화재 시기(주간, 야간) 등
  - 2) 역할 분담 : 개인별 위급 시의 임무 부여 및 숙지 상태
  - 3) 최단 피난경로
  - 4) 시설 내 비상 기구의 사용 : 직접 착용, 사용 실시
  - 5) 시설 인근 소방관서 및 의료기관 등 확인
  - 6) 대피 완료 시간 체크
5. (결과) 훈련 결과는 다음과 같이 보존, 관리, 활용한다.
  - 1) 훈련 성과 : 시설 규모 대비 참여자 및 대피 완료 시간 중심 확인
  - 2) 결과 보고 : 지자체에 보고(지자체는 지도 감독 시 확인)
  - 3) 서류 보존 : 2년간 보존(T년도 훈련 결과는 T+2년 말까지 보존)

< 아동복지시설 화재 시 피난활동(행동 절차) >

구분	이용자의 유형에 따른 행동 절차	
	아동	영유아
최초 화재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성, 비상벨, 자동경보 등을 통한 근무자에게 화재 상황 전파</li> </ul> </li> <li>•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 설비를 작동하여 건물 내 경보 전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경보 건물내 신속히 전파</li> <li>- 다른 근무자의 도움 요청 (자위소방대에 의한 사전 임무 지정)</li> </ul> </li> <li>• 자동경보시스템의 확충이 중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및 유관 기관에 화재 상황 통보로 협조 요청</li> </ul>	
초기 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 투척용/수동식소화기</li> <li>• 근무자 : 대응이 가능한 청소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척용/수동식소화기, 소화설비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자 : 투척용/수동식소화기, 물 등</li> </ul>

구분		이용자의 유형에 따른 행동 절차	
		아동	영유아
대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 안전구역으로 이동(자력)</li> <li>• 근무자 : 대응이 가능한 청소년 등 - 다른 아동의 피난 유도 및 지원</li> <li>• 창살 등이 설치된 경우 피난로의 다양한 확보로 신속한 대피 방법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실내의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안전구역 또는 복도등으로 대피</li> <li>• 이용자실에 미끄럼대 등의 확충으로 신속하고 즉각적 대처 방안 확충 (고정 피난설비의 중요성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현장 확인 후 자위소방대 임무 지시/통제</li> <li>• 소방대 도착 시 현재까지 상황 전달 및 소방대장에게 지휘권 이양</li> </ul>	
화재 대응	소화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진압활동 실시(옥내소화전, 자동소화설비, 소화수 등)</li> <li>• 가연물의 제거 및 화재 확산 방지 활동(방화문, 방화셔터 등)</li> </ul>	
	대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 자력에 의한 안전구역으로 대피</li> <li>• 활용 가능한 피난기구 및 시설 - 구조대, 승강기 피난기, 미끄럼대, 완강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를 보조하여 대피 활동 실시</li> <li>• 활용 가능한 피난기구 및 시설 - 구조대 승강기 피난기, 미끄럼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난기구(구조대) 설치 후 이용자 피난 유도</li> <li>• 피난통로 및 비상구 등의 출입로 확보 후 이용자의 대피 유도</li> <li>• 피난기구의 설치 및 운용은 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활용 가능한 피난기구를 설치 후 운용</li> </ul>	
	구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에는 대피반의 임무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대피 완료 시까지 구조반의 인원은 최소로 운용하고 이용자의 대피활동 지원</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구급장비 준비 및 구호조치 장소 확보</li> <li>• 응급환자 구호조치 및 환자 분류, 의료기관 도착 시 지원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내용은 화재 대응 절차의 참조 및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추가하여 활용</li> <li>• 소방대 도착 시 자위보상대의 임무는 소방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li> <li>• 야간 등의 화재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자 중 자위소방대 임무 수행이 가능한 인원은 위험이 적은 보조 임무 위주로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li> </ul>	

구분		이용자의 유형에 따른 행동 절차	
		아동(자력 대피 가능)	영유아(자력 대피 불가능)
최초 화재 발견	경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성 비상벨, 자동경보 등을 통한 근무자 에게 화재 상황 전파</li> <li>- 119에 화재 신고</li> </ul> </li> <li>•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설비를 작동하여 건물내 경보 전파</li> <li>- 119에 화재 신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내 화재경보 전파 (육성, 비상벨, 자동경보 등)</li> <li>- 다른 근무자의 도움 요청</li> <li>- 119에 화재신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전파 가능한 이용자를 선정, 초기경보가 가능토록 교육 및 임무를 부여</li> <li>• 경보전파는 관할소방서(119)에 실시하고, 유관기관에 대한 경보전파는 소방서의 경보 전파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움 요청</li> </ul>	
	초기 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 투척용소화기 등을 이용</li> <li>• 근무자 : 투척용수동식소화기, 소화설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자 : 투척용/수동식소화기, 물 등</li> </ul>
대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 안전구역으로 이동(자력)</li> <li>• 근무자 : 이용자의 피난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자 : 화재실내의 이용자를 우선적 으로 안전구역 또는 복도 등으로 대피</li> <li>- 휠체어 직접 이동 또는 보조인의 도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난층 등 대피장소를 사전에 선정하여 이용자의 원활한 피난을 유도</li> <li>• 이용자가 자력에 의해 대피가 가능한 지 여부를 파악한 후, 근무자는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이용자부터 대피를 유도</li> </ul>	
화재 대응	소화 반 / 대피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대 도착 전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화활동 실시(옥내소화전 사용)</li> <li>• 초기 소화가 불가능한 경우 화재실의 문을 폐쇄하고,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대피</li> <li>• 소방대 도착 시 현재까지 상황 인계(화재 장소, 미대피자 현황, 환자 발생 여부 등)</li> <li>• 주된 출입문이 화재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비상구 등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여 화재로부터 이격시키고 소방대의 도움을 기다림</li> <li>•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의 통제를 받아 대피 및 구조활동 실시(소방대 도착 후에는 구급활동 위주의 임무를 수행토록 함)</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내용은 화재 대응 절차의 참조 및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추가하여 활용</li> <li>• 소방대 도착 시 자위소방대의 임무는 소방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li> </ul>	



(4)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 가입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법 제58조 제2항)
-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 가입 원칙
-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할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환급금 수령 후 시설 운영비로 세입 처리

(5) 공기청정기 관리

- 시설장은 다음 사항을 참고, 공기청정기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 관리

내용	비 고
<관리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에서 사용 중인 각 공기청정기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아동의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성을 등을 고려하여 설치</li> </ul>	☞ 공기청정기에 관리자에 표찰을 부착(1명 이상)
<공기청정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검표를 작성하여 공기청정기를 주기적으로 청소 및 관리하여 청결하게 유지 사용(최소 1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관 오염 및 청결 상태(먼지 제거 등), 필터 청소, 전기 및 화재 안전사고 위험성 등</li> </ul> </li> </ul>	☞ 점검표를 공기청정기에 부착하고, 점검일자, 점검자, 주요 점검 내용, 조치 내용 등을 표기할 것(별도 관리 대장으로 작성도 무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에 1회 이상 전문가 등을 통한 진단 후 필터 교체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터, 공기청정기 기능, 전기 감전 위험, 기타 안전성 등</li> </ul> </li> </ul>	☞ 공기청정기 구입 회사(서비스 센터) 또는 전문가 등을 통하여 필터 교체 필요 여부 확인 및 점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사용 시 전원(콘센트) 분리 및 화재 위험 등에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노력</li> </ul>	

## VI-4 종사자 관리

### 1. 종사자 자격 및 배치

#### 가. 종사자 자격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5 참조)
  -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른 종사자 자격기준은 채용 공고일 현재 대학 졸업 예정자, 자격증 취득 예정자 등의 경우에도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만, 최종 시험 예정일까지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함(아동권리과-2696(2019.5.13.)호)
- 주요 내용
  - 시설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별표 15 참조)
    - ※ 종전 규정('12. 8. 4. 이전)에 의해 사회복지사 3급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은 '18. 8. 31.까지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요건을 반드시 구비(2급 이상 자격을 미취득하거나 2급 자격 취득 후 경력 요건 3년 이상을 갖추지 못하면 '18. 9. 1.부터 시설장 자격 상실)
  -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별표 15 참조)
  -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등(별표 15 참조)
 

- 종사자 자격기준 유의 사항 안내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청하여 발급 가능(신청주의)
  - 보육사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등(별표 15 참조)
    - ※ 종전 규정('12. 8. 4. 이전)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육사는 '18. 8. 31.까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함(3급 이상 자격 미취득 시 '18. 9. 1.부터 보육사 자격 상실)

- 종전 규정('12. 8. 4. 이전)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근무 중인 종사자는 해당 직종 적용 시기 유예 기간에 한하여 타 아동복지시설 전직 근무 가능  
 (예시 1) 소망 아동양육시설 시설장 → 희망 아동양육시설 시설장('18. 8. 31.까지 가능)  
 (예시 2) 미래 아동양육시설 사무국장 → 소망 아동양육시설 사무국장('18. 8. 31.까지 가능)  
 (예시 3) 소망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 희망 아동양육시설 보육사('18. 8. 31.까지 가능)
- 개정 전·후 종사자 자격 비교표(상세 자격기준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5 참조)

직종	현행	개정	적용시기	
			기존 종사자	신규 종사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8. 9. 1.	'12. 8. 5.
보육사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18. 9. 1.	'12. 8. 5.
임상심리상담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16. 7. 1.

※ 종전 규정('12. 8. 4. 이전)의 자격기준으로 근무 중인 종사자는 경과 조치 기간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나. 종사자 배치기준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참조**

직종별	법정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4 참조)
• 시설장	• 시설당 1명
• 사무국장	• 아동 30명 이상 시설당 1명(자립지원시설은 10명 이상 1명) * 공동생활가정, 아동전용시설 해당없음
• 상담지도원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상담소는 필요 인원 • 자립지원시설은 아동 10명 미만 - 1명, 아동 10명 이상 30명 미만 - 2명, 아동 30명 이상 - 3명
• 임상심리상담원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상담소는 30명 이상 1명 • 보호치료시설은 시설당 1명
• 보육사	• 0~2세까지 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 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 아동 7명당 1명 *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해당없음

직 종 별	법 정 기 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4 참조)
• 생활복지사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은 30명 이상 1명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은 30명 초과 시 1명 추가 ex) 아동 31명부터 생활복지사 2명 배치 • 10명 이상 전용시설은 필요 인원
• 간호사(간호조무사)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상담소 30명 이상 1명
• 직업훈련교사	•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은 필요 인원
• 조리원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은 10명 이상 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 ex) 아동 31명부터 조리원 2명 배치
• 위생원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은 30명 이상 1명
• 안전관리원	• 보호치료시설은 30명 이상 2명(40명 이상 4명), 전용시설은 30명 이상 1명
• 영양사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은 30명 이상 1명
• 사무원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은 10명 이상 1명 • 자립지원시설, 상담소, 전용시설은 30명 이상 1명
• 자립지원전담요원	•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은 10명 이상 1명, 자립지원시설은 30명 이상 1명 * 양육시설은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 공동생활가정은 필요 인원

● 보육사는 아래와 같이 배치하되,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교대 인원을 고려하여 배치

연령별	보육사 배치기준
0~2세	아동 2명당 1인
3~6세	아동 5명당 1인
7세 이상	아동 7명당 1인

※ 보육사 배치 예시

3~6세 아동의 경우 5명당 1명의 보육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경우 1명으로 담당하도록 한다면 법정 기준 미충족

연령	아동 수	보육사 수	2교대 시	3교대 시	4조 3교대 시
0~2세	3명	2명	4명	6명	8명
3~6세	6명~10명	2명	4명	6명	8명
7세 이상	8~14명	2명	4명	6명	8명

- 지자체 장은 필요한 경우 ADHD, 경계선 지능 아동 등도 아동 2명당 1명의 종사자 배치 권고

- 종사자 배치 시 고려 사항
  - 아동의 연령 변동, 아동 감소 등에 따라 보육사 필요 인원이 단기간 내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시설과 협의하여 보육사 채용
  - 일시적인 아동의 증감에 대한 종사자의 배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향후 아동의 변화를 감안하여 배치 가능.
  - 특히 인력기준이 변동되는 30인 이상 시설에서 30인 미만 시설로 전환 시 보호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종사자 1인당 보호아동수가 과다하지 않도록 보육사 기준을 우선적으로 충족
  - 보호 중 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역량 향상을 위하여 자립전담요원 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종별 주요 종사자 배치표에 따라 법정 기준 종사자를 배치하되,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보육사, 조리원 등)등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의 개정된 「근로기준법」(사회서비스특별업종 폐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 지원

#### 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 아동복지시설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 다만,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 \* 또한, 기존 운영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점검·확인(같은 법 제57조제1항).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을 확인(채용이 확정되고 최종 임용되기 전 성범죄경력 조회)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
  - 다만, 취업자 등이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 성범죄경력 조회는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종사자도 포함됨에 유의하고 1년에 최소 1회 이상 실시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나 취업 예정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조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 중앙행정기관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아동복지법」 제54조의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음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음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 「사회복지사업법」

## 제35조(시설의 장)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제35조의2(종사자)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종사자 근로 환경 및 교육 등

### 가. 종사자 근로 환경 등

- 종사자 보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아동 감소에 따라 종사자가 퇴직하여야 할 경우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
  - 교대 근무자 추가배치 시설은 반드시 근무표를 작성하고 교대 근무를 하여야 하며, 근무표 작성 시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준수
- 시설 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철저 이행
  - 연·월차 유급휴가 및 여성보건휴가 실시 홍보 및 권장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 취업규칙 마련, 노사협의회 구성 여부 등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의 시행 여부를 확인·점검

### 나. 종사자 인권 보호

- 종사자의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무 수행 가능

#### ☞ 사례예시

- 본연의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사무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보육사가 보호아동이 등교 후 하교 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경우
  - 영양사가 식단을 짜거나 영양 관리 업무 외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경우
  - 간호사(간호조무사)가 간호 및 건강 관리 업무 외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경우 등

- 시·도, 시·군·구는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

\*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시설 생활자의 의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 등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 발생



- (이용자 안내 및 교육)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 등 관계인에게 서비스의 범위를 고지하고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서비스 등을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안내문 대체 가능) 또는 교육 실시
- (교육 실시, 고충 창구 마련) 종사자가 효과적으로 폭력 피해 예방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리플릿·홍보 영상 배포,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필요 시 지자체 내에 시설 종사자 고충 처리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
  - \*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예방 매뉴얼」 참조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종사자에 대한 업무방해 처벌 :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 「아동복지법」 제15조제8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
    - \* ex) 아동학대 행위자인 친권자가 아동복지시설의 근무지를 접거하거나 종사자에게 폭언, 위협하는 경우 등
- 아동의 부당한 요구, 폭언, 인격 모독 등으로 인한 종사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종사자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다. 종사자 가족 거주 제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2 참조)

- '12. 8. 5.부터 시설 안에서는 보호아동 및 종사자 외에는 거주 불가
  -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12. 8. 4. 이전) 시설 안에서 종사자와 그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가족은 '18. 8. 6.까지 시설 밖으로 이주하도록 하고 시·군·구는 관리 철저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2 적용과 관련, 아동복지정책과4863(2018. 8. 1.)호 참조)

#### 라. 종사자 교육

##### (1) 보수교육 및 인권교육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대학(전문대학을 포함) 또는 아동복지 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 시설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심리적 이해 및 아동 특성별 사례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심리 이해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 필요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가능
  - 교육훈련 여비 등을 사업 예산에 확보하여 교육·훈련에 차질 없도록 지도
-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 가능)
- 교육 내용 : 모든 종사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반드시 아동 관련 성폭력 예방, 안전, 아동학대 예방, 아동권리 교육, ADHD 약물 오남용 방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ADHD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 내용 (상세 내용은 아동권리과-1946 (2022.4.27.)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 사유) 건강검진, 심리 검사 등에 따른 의사(전문가)의 권고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교사 등으로부터의 지속적 통보, 시설 내에서 지속적인 산만·불안·불면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의 이상 행동에 대한 처벌 목적으로 진료 금지</li> </ul> </li> <li>■ (진료 시) 의사 진료 시에는 아동이 직접 의사와 상담하고 의사의 진단 결과를 설명 들을 수 있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는 아이에 대한 정보를 과장이나 허위로 진술 금지</li> </ul> </li> <li>■ (약물 복용)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복용 거부 시 체벌 등 아동학대 금지</li> <li>■ (약물 관리) 보육사 및 간호사 등 종사자가 관리하고, 약물 보관은 아동에게 노출되는 곳에 보관 금지</li> <li>■ 아동 약물 복용일지 작성할 것(진단일, 질병명, 투약 방법, 투약 횟수, 투약 기간, 일자별 투약 내용 등)</li> </ul>

- 「아동복지법」 제55조에 따른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지자체는 종사자 교육비 및 여비 지원

## (2) 회계 교육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숙지하지 못해 범하는 사소한 기재상의 오류 또는 중대한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관련 회계 교육 철저
  - 개인 운영 시설의 경우에도 「소규모시설 등 운영이 영세한 시설 재무회계지침」에 따라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시 적극 참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안내〉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

-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 정보화를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웹 기반의 사회복지시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기반 조성,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투명성 제고, 사회복지시설 관리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 사회복지정책 기초 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함

나. 운영 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 통합 회계 관리
  - 회계 관리, 예산 관리, 세무 관리
- 행정 업무 관리
  - 인사 관리, 급여 관리, 자산(비품, 소모품) 관리
-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 생활인 및 이용자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관리, 사례 관리, 일지 관리 등
- 통합 고객 관리
  - 고객(후원자, 봉사자)관리, 후원금 관리, 자원봉사 관리
- 시·도·시·군·구(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연계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입소자 보고, 종사자 보고 예·결산 보고 등의 보고 및 신청
  - 시·도·시·군·구 공지 사항, 질의 응답 등 지역 사회 내의 의사 소통 정보 연계
  - 사회복지시설 자원 정보 상시 연계

라. 사용 대상 시설

- 사회복지법인
-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舊개인운영신고시설)

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관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해 시설정보시스템의 급여·서비스 이력을 연계
- 사회복지시설의 자원 정보 및 서비스 이력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자원의 배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입소자 보고 등 각종 신청·보고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처리

바. 기대 효과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회계 투명성 확보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
- 복지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 제공 서비스의 중복 및 편중 방지
- 보건복지부·지자체·시설 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 각종 보고 절차 간소화 등 행정 비용 감소

《희망이음시스템으로 개편 (2022.9월~)》

- (개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기관행정업무, 서비스 관리업무, 정보 공유 및 협력 업무 등)를 지원하는 시스템
  -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유형·사업별로 분절된 사회서비스 분야 시스템 통합(19종)·연계(15종)
    -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등
- (사용자)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시설정보 시스템 계정 보유 기준 4만여개소, 약 14만명)
- (주요기능) 기관행정업무, 서비스 제공·관리업무, 정보공유 및 협업
  - (기관행정) 인사·급여·회계·예산 관리(ERP), 전자결재(그룹웨어), 시군구 보고\*, 후원관리 기능
    - \* 종사자 입·퇴사, 대상자 입·퇴소 변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신청 및 정산하는 기능
  - (서비스제공·관리) 사업·서비스 관리, 대상자 관리, 서비스 제공관리
  - (정보공유) 민·관 정보공유\*, 사례관리, 자원관리, 서비스의뢰
    - \* 민감시설 정보 및 민감시설 이용이력은 공유하지 않도록 구축
  - (전자바우처) 전자바우처 서비스 이용·결제, 예약금 지급·정산, 제공기관·인력관리, 단말기·카드관리 및 금융기관 연계 등
- (2차 개통기능) 기관행정 일부(시군구 보고, 후원관리), 전자결재·공문 수발신(그룹웨어), 서비스제공·관리 업무, 정보공유 기능
  - \* 인사회계시스템(ERP)은 9월 개통 전 개발업체 요청으로 개통을 연기
  - 인사회계시스템(ERP),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분야별 시스템\* 통합은 3차 개통 대상

## VI-5 인건비 및 운영비

### 1. 아동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 가. 종사자 인건비

#####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정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급 상한 연령까지만 정부(지자체) 보조금 인건비를 지원
- 지급상한
  - 시설장 :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 ※ 아동공동생활가정도 동일 적용
  - 종사자 : 60세

-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일 : 종사자의 출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 지급 상한일자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 지급 상한일자 12월 31일
- 예시 1) 설립자(2002. 1. 1. 현재 재직)인 시설장 생년월일이 1950. 5. 1.인 경우  
지급 상한일 : 2020. 6. 30.
- 예시 2)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2002. 1. 2. 이후 재직)인 시설장 생년월일이 1955. 8. 16.인 경우  
지급 상한일 : 2020. 12. 31.
- 예시 3) 보육사 생년월일이 1960. 4. 13.인 경우 지급 상한일 : 2020. 6. 30.

※ 상한 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 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업무 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 가능

※ (시설 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 사유화 의식 탈피 및 조직 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참조

## (2) 인건비 지원 기준

### (가) 봉급 및 수당 등

-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 기준을 준수하여 지원

\* 간호조무사의 생활지도원 직위 분류는 2018년 3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하며, 2018년 2월 28일 이전 채용자는 기존 직위급으로 유지 가능(과장급은 과장, 생활지도원은 생활지도원으로 유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법정 배치 인원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 ※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기준 적용 시설에는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를 위해 필수 배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정원 기준으로 종사자를 배치하고 인건비 지원(아동권리과-987, 2021. 2. 17.)

### (나) 시간외근로수당 지원 권고 기준

- 정규 근무시간(1일 8시간, 휴계시간 제외)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수당 지급
  - ※ 시설장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지원 기준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준수

### (다) 법정 수당 및 사회보험료 등 관련

- 퇴직금 및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

### (라) 퇴직급여 ※ 아동공동생활가정도 동일 적용

- 퇴직급여는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지급 가능(법제처 법령해석 14-0489, 2014. 8. 14.)
  -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과 시설의 인사권, 예산 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가 아닌 자로 간주하여 지급 불가
  - 단, 퇴직급여 제도는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주의사항

- 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지급 불가
- ② 근로자 퇴직급여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예산 집행권 등을 갖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 지급 불가함을 참작하여 운영비를 보조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

(마) 보육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배치 및 지원

- 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보육사, 조리원 등)에 대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령(사회서비스특별법종 폐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

<근로시간 단축 관련 참고 내용>

-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적용
- ※ 300인 이상 : '18. 7. 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 7. 1.부터 시행) / 50 ~ 300인 미만 : '20. 1. 1. / 5 ~ 50인 미만 : '21. 7. 1.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종사자 법정 미배치로 인하여 감사 지적 사례 및 행정처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예산 확보
  - 아동양육시설 뿐 아니라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보육사가 배치되는 곳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 종사자가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중단 가능

☞ 사례 예시

- 보육사 인건비 지원 시설에서 보육사에게 본연의 업무를 담당케 하지 않아 다른 보육사 1인이 기존 인원을 초과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등

- 종사자 직종별 지원 기준에 없는 직책 임명 시 시설 자부담으로 운영
  - 다만,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 시설장의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거동 불능, 장기 입원, 타 영리 업무 종사 등으로 상근하지 않는 경우 시설장 인건비 일부(근무일수 고려) 또는 전부 지급 중단 가능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적극 동참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위해 시설종사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관련 법령을 적극 추진하며, 대체인력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지원

- 신규 채용(2020년 4월 이후)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거나 아동학대 전력,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인건비 지원 제외 권고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의 증빙자료(소견서 포함)를 요청 및 검토
    1. 채용신체검사서(정신질환 유무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2.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 아님” 문구 포함)
      - \* 마약 중독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대한 중독자
      - \*\*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및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에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아동통합정보시스템(서식3의1호) 동의서 준용)하여 확인 및 검토

## 나. 운영비 지원

-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
- 원 칙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승인한 예산서에 의거 집행하되 단가 및 물량은 시설 규모나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 가능
  - 시설별 보호아동 수를 기준으로 직접경비, 간접경비, 공통경비를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집행의 자율성 부여
  - 예산 편성 시 직접경비, 공통경비, 간접경비의 항목이 반영되도록 지도
  - 시설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비를 운영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3세 미만 아동 다수보호시설(의료비 등), 보호치료시설(보호 선도 활동 등) 자립지원시설(취업 활동 등)은 해당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추가 지원
    - ※ 프로그램 운영비 별도 추가 지원 가능

### 〈참 고〉

- ① 직접경비 : 영아분유급식비, 육아특별간식비, 학용품비, 부교재와 교양도서비, 운동화, 이·미용비, 위생대, 생리대, 중·고생교통비, 교복비 등
- ② 공통경비 : 건물유지비,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수용비, 의약품비,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환경부담금,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비 등
- ③ 간접경비 : 치료보호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의 직업훈련 실습비와 재료비, 훈련복



● 시설 보호아동 보호 단가

- 생계급여 및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관리지침' 참조

- 외국 국적 아동 생계비 지원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아동 생계비는 보장시설 수급자의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

- 부가급여(관리운영비) 권고 기준

• 기본운영비 : 월 65만3천원/개소(지자체 필요 시 추가 별도 운영비 지원 가능)

※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가스 요금 등 정액 지원하되 실제 지출 비용 등을 반영하여 상향 지원 가능

• 아동 개인별 지원액

(단위 : 원, 인/월)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142,560	225,500	225,500	92,660

※ 일시보호시설은 보호치료시설 기준으로 지원하고,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정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정원 외 아동을 보호 중인 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정원의 보호아동을 포함하여 지원(아동 권리와-987, 2021. 2. 17.)

다. 아동급식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급식비(시설 생계비 1식당 단가) 이외의 부족분은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수준까지 추가 지원

● 시·군·구별로 지역 내 푸드뱅크, 로컬 푸드 직매장 등과 연계하여 식자재, 부식 등 우선 지원

라. 집행 및 사후 관리

● 집행 기관(시설)은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내역별 집행 내역에 대한 회계 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적용

● 시·도 및 시·군·구청장은 연1회 이상 점검(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포함)

## 2. 공동생활가정

### 가.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시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연도말,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설치수	416	460	489	480	476	434	457	476	493	505	521	518
예 산	5,469	5,775	6,913	7,357	7,407	8,623	10,708	12,308	14,108	15,632	16,861	22,068

\* 공동생활가정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제외

### (1) 신규지원 시설

- 신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아동 입소 시점부터 기간 계산) 시설을 대상으로 그룹홈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 중앙차원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로 대체가능
  - ※ '20년 7월 이후 개인시설로 설치신고 후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에 대하여 개인 시설로 실질적 운영한 기간도 산입하여 지원여부 결정 ((2) 비영리법인 전환 시설 준용)
- 단, 해당 지자체의 아동양육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동일 지역내에서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그룹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별 해당 연도 확정 예산 내에서 가용한 예산(인건비, 운영비)으로 지원 가능
-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는 보호아동이 소규모(2명 이내)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

### (2) 대표자 변경 및 비영리법인 전환 시설 등

- 불가피한 사정, 개인 또는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보조금 계속 지원여부 결정
  - 해당 시설이 현재 위치에 존속 필요성
  - 종사자의 변동 및 고용승계

- 보호아동의 학업, 가정 환경 등으로 기존 시설에서 계속 거주해야 할 필요성
- 보호아동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 가능

### (3) 지원 일시정지 및 제외 등의 시설

- 심각한 아동학대 등으로 조사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하여 일시정지 가능
  - \* 단, 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권 부여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주고, 해당 시설의 보호아동과 종사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판단과 조치 필요
- 사회복지시설 평가(그룹홈) 평가결과 최하등급(F) 시설 및 평가거부 시설은 보조금 지원 제외하며, D등급 시설은 컨설팅\*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평가(6개월)를 통해 보조금 지원 중단여부 결정(재평가 결과 D등급 이하 기관 보조금 지원 중단)

####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재평가 참여) D등급 이하 기관 중 재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사회복지시설평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재평가에 참여
  - \* 컨설팅 및 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은 보조금 지원 중단 절차 진행
- 컨설팅 시작 시점부터 6개월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시설에 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
  - \* 재평가 결과 D등급 이하 기관 보조금 지원 중단
- (평가 대상기간) 재평가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으로 하며, 행정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지원 중단 절차 진행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지원 중단 시 지원 중단 일정에 대한 예고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보조금 지급 제외 일정 통보
  - \* 의견진술은 평가결과에 대한 것이 아닌 아동의 보호조치, 개시일 등에 대하여 가능
- 재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평가에서 제외되는 등 기관은 보조금 지급 제외 예고 시 1년 후 “신규시설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운영실적을 재평가 후 보조금지원 여부를 결정”
  - \* 기간은 보조금 지원 중단일로부터 산정함
- 보조금 지급 제외에 따라 운영 중지 등의 사유로 아동의 원가정 복귀 또는 전원 등이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며,
  - 이 경우 시설장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시설은 신규시설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실적을 재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아동학대로 인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재개 후 최소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
- 개인적 사정 등으로 휴지한 시설의 경우 기존시설에 준하여 지원여부 판단
- 2020.7월 이후 개인 또는 영리주체(단체 또는 법인) 설치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제외
  - 지원가능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 대표자가 본인이 설치·신고한 시설에서 시설장 이외에 보육사 등으로 종사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해당 설치자 (대표자)의 인건비 등 제비용 지출 불가(2020.7월 이후)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지원 중단 시 지원 중단 일정에 대한 예고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보조금 지급 제외 일정 통보
- 보조금 지급 제외에 따라 운영 중지 등의 사유로 아동의 원가정 복귀 또는 전원 등이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며,
  - 이 경우 시설장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치

## 나. 지원기준

-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5~7인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입소 아동이 불가피하게 감소하거나 신규 지원하는 그룹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에서 별도 지원 기준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가능

### 〈 입소 아동별 지원 기준(인건비, 운영비) 〉

5인이상	4인	3인	2인	1인	0인
전액	전액	전액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미지원

\* 단, 지원시설중 아동 퇴소 등으로 입소아동 0명 발생시설은 이후 1개월까지만 지원 (예시 : 3월에 0명된 경우(발생일은 상관없음) 4월까지만 보조금 지원)

\* 0~2세, ADHD, 경계선지능 아동 등 중에서 지자체 장의 결정으로 2인으로 선정 가능

## 다. 인건비

(1) 지원단가 : 32,125천원(인. 연간)

### (2) 집행기준

- 시설에 교부하는 인건비 총액에서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및 종사자 퇴직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인원수에 맞게 배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1항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퇴직금 및 4대보험 등을 보육사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 신규채용(2020. 4월 이후)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거나 아동학대 전력,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은 인건비 지원 제외
    -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의 증빙자료(소견서 포함)를 요청 및 검토
      1. 채용신체검사서(정신질환 유무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2.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 아님” 문구 포함)
        - \* 마약 중독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대한 중독자
        - \*\*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및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대응과에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아동통합정보시스템(서식3의1호) 동의서 준용)하여 확인 및 검토
- 법인전입금이나 외부후원금 활용
  - 시설장·보육사의 인건비 추가 지급, 초과운영수당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인력 이외의 추가인력 고용 가능
    - \* 인건비 지급상한선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해당 직위, 해당호봉의 금액 한도 내에서 집행 가능.
- 4대보험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인건비 항목에서 집행 가능
- 연장근로수당(시설장\* 및 보육사) :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 가능하며,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준용
  - \* 시설장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시설장과 보육사의 인건비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직급·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은 종사자(시설장, 보육사)의 경우 준수사항
  - 상근근무(주 4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기준, 종사자 근무연수 등을 고려한 차등지급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라. 운영비

- 지원단가 : 470천원/개소. 월
- 집행기준
  - 정부지원 관리운영비로 아동양육을 위한 연료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 가능(부족할 경우 아동 생계비로도 사용 가능(아동권리과 4574(2019.8.30.)호 참조)
  - 보조금으로는 협의회비 납부 불가(비지정후원금은 가능,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국고로 지원하는 운영비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시설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예산 사정에 따라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장근로수당 처우개선비 등 추가 지원 가능

## 마. 행정사항

### (1) 예산 및 결산

-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결산은 따로 작성하고, 시설장은 매월 지출 내역 작성
  - 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에 반기별로 시설운영관련 보고시 함께 보고
    - ※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 지원 등을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에 통합하여 운영 가능
- 시설은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 당해연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적용
- 시·도 및 시·군·구청장은 연1회 이상 점검(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포함)

**(2) 홍보실적 등의 보고**

- 시·도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현황(서식 1호 참조) 및 홍보실적 반기별 보건복지부에 보고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자는 시·군·구에 반기별로 시설운영현황을 보고
  - 시·도는 매년 상·하반기 보고시 공동생활가정 지원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서식 별도 없음)

**(3) 예산 편성 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3월 이전 다음해 지원 필요시설 수요 제출**

※ 자자체의 평가가 완료된 신규지원 시설은 즉시 보조금 지원될 수 있도록 수요 확인

**(4) 시도내 지원시설 폐지(집행잔액제외)에 따라 불용 예산 발생이 예상될 경우 복지부에 신규 설치 시설 지원 여부 승인 요청**

## VI-6

## 기능보강 지원

### 1. 사업의 종류

- 시설 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으로 구분

### 2. 주요 업무처리 절차

#### 가. 2023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법적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 신청기한 : 매월 20일까지
  - ※ 3월에 국고보조금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2월 20일까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제출서식 : 서식 9, 10, 11, 12, 12-1, 12-2, 12-3

#### 나. 202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점검 및 2022년 사업비 정산

- 법적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2023년도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 보고(중간정산) : 2023년 7월말까지
    -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2022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 2023년 2월말까지

#### 다. 2023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 법적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 신청기한 : 3월 30일까지
  - ※ 가내시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위한 검토서류 제출(5월 20일까지 제출)



● 시설수요 산정

- 시·도(시·군·구)별로 기존 아동복지시설의 과다 또는 부족 등을 충분히 판단·검토한 후 보호인원(현원)에 필요한 적정 규모로 산정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개·보수, 개축 대상 시설(건물)을 당해연도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지 여부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아동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최근(2~3년 이내)에 개·보수한 시설(건물)은 개축 대상에서 제외
- 집단시설을 최소화 하고 가정위탁, 입양 등 아동에게 최상의 환경제공을 위해 가급적 아동 양육시설의 신·증축 기능보강지원에서 제외하고 개축 및 개·보수 형태로 지원하되, 개보수 시 15세 이상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1인실 제공 적극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역할 강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2021. 3. 30.)으로 일시보호시설 수요증가에 따라 운영이 저조한 양육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 이외의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등 적극 추진

□ 기능보강 중점지원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해당 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존 아동양육시설을 전환 지원
- 15세 이상 아동 1인 1실 제공 적극 지원
- 기존 집단생활시설 형태의 시설구조를 가정형 소수사 형태의 시설구조로 전환
- 아동안전·건강을 위해 시급한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
- 석면안전진단결과 “석면함유 건축물”로 판정받은 경우
- 소방·설비(화재안전), 방염설비 및 전기·가스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진단결과 위험도가 높은 시설
- 기타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시설

□ 지원 제외시설

- 최근 3년 이내에 개·보수한 시설(건물)\*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개축 하고자 하는 경우
  - \* 최근 3년 이내에 개보수를 실시한 동일건물에 대한 증·개축은 제외한다는 의미임
- '14년도부터 중대한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사업정지, 시설폐쇄, 시설의 장 교체)을 받은 법인(시설)
- 단, 아동 안전·건강상 기능보강 지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지원 가능
  - ex) 소방설비 미설치, 석면함유 건축물 등
-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 신청 가능, 개선명령의 사유에 따라 기능보강 대상으로 선정할 지를 결정할 것이므로, 기능보강 신청시 개선명령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것
- 아동복지시설 기준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시행규칙 개정('12.8.3) 관련 유예기간 종료('15.8.6)로 시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단, 시설안전상 문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제외)

- 국고보조율 : 50%
- 사업신청 경로 : 사업자(법인)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라. 2023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법적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 선정통보(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2022년 9월 15일까지 보조금 예산(가내시)을 통보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2022년 12월 20일까지 그 확정된 금액과 내역 통지(확정내시)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확정통보 내역과 금액을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함

### <집행률 제고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사업방식 개선>

- (사업계획 사전 조사 추진) 예산 편성 시 사전 사업계획 검토를 완료하여 예산심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 사전수요조사 시 필요성 등 세부검토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반영한 사업수요조사(3월 말까지 예산계상 신청, ~5월 20일까지 보완제출)
- (가내시 제도 적극 활용) 가내시 이후 반영되는 특이소요에 대한 예산집행은 지자체별 추경 시기에 따라 연도내 집행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 ⇒ 기존 가내시 비중을 높이고(65% 수준→80%), 당해연도 특이소요 반영 비중을 낮춰 예산집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
    - \* 가내시 결과는 국회 등 예산액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확정내시에 반영할 예정으로 시설에 사업설계 등 절차 진행토록 안내하여 사전 준비

## 3.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수행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따름
- 시·도지사는 광역시·도 단위의 시설기능보강 수요 등 보조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시·도지사는 증개축시 입소아동 감소추세 및 현원을 고려, 정원을 감축하여 설계에 반영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
- 시·도지사는 기능보강사업비를 종사자와 그 가족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사택)을 기능보강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을 수시 점검함으로써 사업변경에 의한 사업비 반납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되, 반납사유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 사업비가 시급한 시설에 사용하도록 조치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목적과 효과를 분석 검토한 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기능보강사업 착수시에 보도자료를 반드시 배포하고, 언론 게재 실적을 즉시 보고  
- 보도자료는 재원(복권기금), 사업량, 지원금액 등을 중심으로 구성
- 시·도지사는 기능보강사업 완료 후 아래 이미지를 현판으로 제작하여 기능보강 지원 공간 앞에 부착하도록 조치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 이미지 예시 ]



- 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사전에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불용되지 않고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 시설 운영이 저조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역별로 부족한 아동시설(일시보호시설 또는 보호 치료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및 지원 실시

## 4. 사업신청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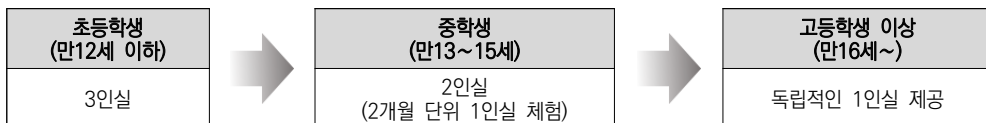
### 가. 개축

- 시설 안전진단 결과 보수 대상시설이나, 숙소가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시설 우선 신청
- 지원 단가 : 1,627천원/㎡(국비, 지방비 포함)
- 설계·용역비는 시설에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자부담 과다 발생 및 시설(법인) 형편 등 자부담이 곤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 검토가능
- 개축의 경우 부분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개축의 경우 공사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시·도 및 시·군·구는 지방비를 1분기 이내에 배정하여 연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 나. 개보수

- 지원 단가 : 700천원 이하/㎡(국비, 지방비 포함)
  - ※ 면적단가로 지원할 수 없는 창호 교체, 급배관 교체, 전기·소방공사 지원 등은 전문가의 공사 견적가 등을 참고하여 적정 지원
- 소방설비 구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시행일 '12.2.5)에 따라 건축이 완료('12.2.4 이전)된 아동복지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14.2.4까지 설치 의무화
  - 지원단가 :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67천원 이내
- 자립체험공간 조성
  - 기존의 유휴공간 또는 숙사를 ‘일상생활 체험공간’ 조성에 필요한 경비 우선지원

※ 침실, 거실, 욕실, 주방 등 원룸 형태의 체험공간으로 초·중은 체험, 고등학생 이상은 1인 제공



● 일시보호시설로 기능전환

- 기존의 양육시설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기능전환 시 필요한 경비 우선 지원

\* 양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동일 양육시설 내 유휴공간(건물)을 활용하여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보호 아동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기능보강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기자재(장비) 구입비 지원**

- 시설의 아동 양육, 자립 교육, 자립체험공간 조성(냉장고, 세탁기 등) 등에 필요한 장비
- 사업의 주공정을 80% 이상 시설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 단가 :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입

**5. 사업추진 세부내용**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 시·도지사는 관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2) 사업 계획서 필수 내용**

● 시설 개축 및 개보수

- 사업 계획서에는 시설 설치 장소(이전 시설의 경우 시설부지 확보 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부대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
- 건축에 관한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검토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 의견서(서식 13호)를 첨부(보건복지부 제출 불요)
  - ※ 국고보조금은 기본설계만으로 우선 신청하고, 보건복지부 제출은 생략

- 시설 개축 등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 검토 및 첨부

●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 사업계획서는 아동양육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사용용도 등을 포함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 서류**

● 시·도지사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서식 14호)”를 작성한 후 이상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보건복지부 제출 생략)

● 제출서류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9, 10, 11, 12, 12-1, 12-2, 12-3호)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 의견서, 신청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사항,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제출 생략

**(4)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 확보 내용을 검토(부지매입비 제외 등)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나. 설계 및 공사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은 업체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등 참고

● 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노인·장애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반드시 반영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

**(2) 장비보강사업**

●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

###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 ● 단가 책정

- 기능보강 사업의 사업 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조정·시행

#### ● 예산 집행

-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 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 수행자가 소요 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

#### ● 이월 승인

- 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당해연도에 착수하여 완공하도록 지도(단, 2개년도 사업 제외)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시·도지사는 이월을 보건복지부에 사전 승인 필요

###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다만, 시·도지사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 보고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 연장(시·군·구 승인사항)

- 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 사업량의 변경

- 낙찰차액 활용 사업

※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승인(시·도지사)을 받아 동일한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동일 시·군·구내에서의 사업지 변경

## 라. 국고보조금 수행실적 보고

-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제출기한 : 2023년 2월말까지
  - 2022년도 아동복지사업 국고보조금 수행실적보고는 2022년도 최종 내시액을 기준으로 작성
  - 2022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많은 시·도는 2023년도 중간정산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불용액 발생 시·도는 세입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납입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 반납금액은 e-나라도움을 통해 납부고지서 발급 요청하므로 정산보고서상의 반납금액과 e-나라도움상의 반납금액이 일치해야 함
- 2023년도 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중간정산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제출기한 : 2023년 분기별 보고
    - \* 1분기 정산결과(4월 말까지), 2분기 정산결과(7월 말까지), 3분기 정산결과(10월 말까지), 10월부터는 매월 보고
  - 대상예산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2024년도 기능보강사업 선정 시 2023년도 기능보강사업 집행 실적 참고 예정
    - \* 법적근거 :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5조(보조사업의 선정기준)
  - 9월말 기준 실집행 실적이 80%미만인 시도는 익년도 기능보강사업 미반영 검토

## 6.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조정·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 국·과장의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철저
- 시·도는 기능보강사업 수행자가 시설의 일부를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타시설로 전환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시·도는 기능보강사업 수행자가 기능보강사업비를 종사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 (주택)의 개축,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및 사후 확인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도지사는 시공업체 선정 지연 등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시설 기능보강 유의 및 준수 사항**

**가. 보조사업계획(설계, 공사 등)의 변경사항 처리 부적정 방지**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거 국고보조 사업계획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변경 승인 없이 임의 결정
- 중앙부처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임의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 금지(시도지사 위임사항 제외)
- 낙찰 차액 발생 시 변경 승인 없이 목적 외 공사 실시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시·군·구와 충분한 협의(승인) 및 시·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자체 집행

**나. 입찰 및 계약 방법**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

**다. 산출내역서 및 설계내역서와 다른 시공 감독 철저**

- 산출내역서와 다른 자재사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과다집행
- 설계내역서와 다른 시공(미시공 또는 공사누락)

**라. 시설공사의 경비 부담**

- 공사에 필요한 공공요금 성격의 부담금은 시공업체 부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및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으로서 준공검사를 완료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비용(경비)으로서 시공업체가 납부

**마. 기본재산 불법처분 및 부실관리**

- 기본재산 임의매각, 저당설정 등 불법처분
- 건물 신축 기능보강사업 등 국고 지원으로 형성된 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사회가 임의매각, 저당설정 등 임의처분 사례
- 금융재산인 기본재산을 가장납입하거나, 이사회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임의인출 및 유용사례 빈발
-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을 빌려서 예치시킨 후 설립 이후 인출
- 재산취득에 따른 편입누락 등 관리부실
- 법인이 매수, 후원 등 재산 취득시에는 법인재산에 편입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편입누락 등 관리부실 사례 빈발
- 법인의 재산 증감시에는 정관변경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법령을 위반하여 부실 관리하는 사례

## VI-7

## 시설관리 등(행정처분 및 과태료)

## 가. 시설의 지도·점검 등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시설(법인) 지도·점검시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통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지도·점검 내용을 보완·강화
-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 시에는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 점검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시설내 성범죄 및 학대 예방 등 입소아동 인권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 시설아동 인권강화를 위하여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아동대상 인권실태조사 실시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인권보호 현황 점검 안내> (아동권리과-3532, 2022.7.29.)

- (점검대상)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거주 아동 전체를 대상
  - \* '21년 말 기준 약 856여 개소, 약 13,700명
- (점검주기) 매년 하반기 정기점검으로 진행
  - 각 시설별 2년 주기로 점검시행(지자체별\* 1차년도 50%, 2차년도 50%)
  - \* 광역자체단체 기준으로 비율 산정
- (점검기간) : '22.8월 ~ 12월(약 5개월)
- (점검방법) 시·도 책임하에 시·군·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
  - (점검반편성) 각 시설담당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 \* 각 시설담당자 참여 하에 2인1조 점검 실시(조사표 기준 (1~8)아동보호 전담요원 또는 아동 보호전문기관 / (9~13) 시군구(시설담당))
- (주요 점검사항) 학대신고절차 준수여부, 아동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종사자 학대관련 등 총 13개 항목\*(참고 : ADHD 약물복용 실태 및 아동인권 자체점검표(안))

- 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여부 점검
- 디딤씨앗통장 매칭 등 특정 아동에게 편중 결연되지 않도록 현장지도
- 종사자 채용전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조회 실시여부 및 위법사항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의무)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행정지도·감독 실시
- 최근 전기·가스·소방 등 각종 위험물 및 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른 일상의 사고발생위험 예방 및 노후건물, 난간, 축대, 담장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정기·수시 지도점검 철저
  -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 ※ 화재,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점검은 시설 자체점검뿐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가 직접 확인 점검
  - 시설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 나. 보조금 집행관련 불법수령·횡령 감독

- 아동 등 생활인원 허위신고
  - 시설 생활인원 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시설운영 관련 보조금을 과다 수령 후 편취
- 종사자 인건비 과다 신고
  - 직원수를 부풀리거나 직원 출근기록부 허위작성 등
  - 내부직원 급여, 퇴직적립금 등을 임의 사용
- 입소자 위로금 부당집행
  - 생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등을 고의로 미지급 또는 경비로 사용
    - ※ 위로금 :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 등 년 10만원(1인) 내외
- 회계관련 서류 조작
  - 주·부식비, 기자재 구입비 등 허위영수증 첨부하여 보조금을 수령·정산
  - 후원물품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조작
  - 보조금·후원금으로 기 지출한 학원비 등을, 동일 명목으로 아동 계좌에서 인출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서류 조작

<참고 : ADHD 약물복용 실태 및 아동인권 자체점검표(2022년)>

점 검 사 항	
<b>1. 아동 훈육관련</b>	
	○ 아동이 잘못했을 경우, 체벌을 대체하는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비폭력적인 훈육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확인
	• 잔혹하고 굴욕적인 훈육 방식 지양(고통을 유발하는 음식 강요, 장시간 동안 계단에 서있거나 엎드려뺨쳐 등)
<b>2. 체벌 관련</b>	
	○ 체벌을 행하고 있거나, 체벌이 없더라도 감금, 음식 미제공 등의 반인권적인 행위가 있는지 확인한다.
<b>3. 종사자 언행 관련</b>	
	○ 종사자들이 평소 욕설, 무시, 비난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거나, 다른 아동들과 비교·차별, 협박 또는 위협을 하는 일이 있는지 확인한다.
<b>4. 종사자 또는 외부인(자원봉사자 등) 학대 관련</b>	
	○ 종사자 또는 외부인(자원봉사자 등)에 의하여 학대(신체, 정서, 성, 방임)가 행하여진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추가 확인 사항 - 점검 의견에 필수 기록] - 발생 시기, 피해 보고 후 2차 피해 발생 여부 - 시설 종사자에 의한 목인 여부 -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신고, 접근 제한 등)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상담, 치료 등)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기타	종교 강요, 용돈 등 개인금전, 사생활 침해 등 문제 있는 경우
<b>5.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ADHD 진료를 받게 된 사유가 적절한지를 확인한다.</b>	
	①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에서 ADHD 진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 ②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연락(해당 시설의 건강검진, 선생님의 통보 등) ③ 시설 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 등으로 인한 진료 의뢰 ④ 기타(별도 세부 내용 작성) * 아이의 이상 행동에 대한 처벌 목적으로 진료를 받게 했을 경우 아동학대 의심
<b>6. 아동이 ADHD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였을 때 진료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한다.</b>	
	① 아동이 직접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의사의 진단 결과 설명을 들었는지? ② 아동이 동행을 했지만 시설 종사자의 설명만으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졌는지?

<b>점 검 사 항</b>	
	③ (아동 미동행) 시설 종사자의 설명만으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졌는지? * 의료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시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아동학대 의심
<b>7. ADHD 진료를 받은 아동이 심리·행동·미술치료 등 대안치료(프로그램)를 이용하는지 실태를 확인한다.</b>	
	※ 6번 진료받는 아동 수 기준으로 작성 ① 진료받는 아동이 대안치료를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② 참여하는 아동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확인한다. *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상담, 기타(언어, 인지, 음악, 사회성치료, 행동수정, 인지행동치료 등) ③ 진료받는 아동이 대안치료를 참여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한다.
<b>8. 시설 내에서 아동의 ADHD 약물 복용 과정을 확인한다.</b>	
	① 아동이 ADHD 약물 복용을 처방에 따라 복용을 하였는지?(아동의 처방 내역 사전확인) ② 아동이 ADHD 약물 복용을 거부할 경우 체벌 등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있었는지? * 고의로 혹은 반복해서 처방 내역에 맞지 않게 복용시키는 경우 아동학대 의심
<b>9. 시설 내에서 ADHD 약물관리 실태를 확인한다.</b>	
	① ADHD 약물관리는 누가하는지?(해당 아동, 보육사, 간호사 등 기타 종사자) ② ADHD 약물은 어디에 보관하는지?(약품 보관함 또는 냉장고 옆 등 아동에게 노출된 장소) ③ 약물복용 일지 작성 여부(별도 기록관리 또는 별도 관리하지 않음)
<b>10. 아동 건강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b>	
	아동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 확인한다. 장애아동 및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적정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 질병 발생 시 즉각적으로 진료 및 치료가 제공되는지 아동의 건강 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 필수 예방 접종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b>11. 학대 신고 절차 인지 여부</b>	
	종사자가 아동학대 신고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신고 의무에 관한 법규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신고전화 112)
<b>12. 아동 및 종사자 인권 교육 관련</b>	
	아동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 교육 실시 여부 확인
<b>13.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b>	
	• 시설 종사자가 입사 후 현재까지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교육 관련 서류 확인(이수증, 계획 및 결과 보고 관련)

## 다. 행정처분

- 행정처분의 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3조 별표16 참조
- 유의사항
  - 아동에게 행하는 경미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방임 등이 모두 아동 학대 범주에 포함되므로 종사자는 아동 양육시 각별히 주의 요망
  -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받을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분 적용
  - 행정처분 시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시설의 보호아동과 종사자의 피해가 없도록 법적 판단내용을 고려하여 실행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제7호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별표 16] <개정 2022. 6. 21.>

###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의 기준이 다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라.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이거나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마.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정지 또는 시설의 장 교체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 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의 장 교체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개선명령	시설의 장 교체	시설 폐쇄
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시설폐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다.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4호			
1) 보호대상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시설폐쇄		
2) 보호대상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가)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시설폐쇄		
나) 가) 외의 경우		1개월이내 사업정지	3개월이내 사업정지	시설 폐쇄
3)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방임한 경우				
가)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시설폐쇄		
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로서 가) 외의 경우		1개월이내 사업정지	2개월이내 사업정지	3개월이내 사업정지
다)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31조에 따른 교육 등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7일이내 사업정지	15일이내 사업정지	1개월이내 사업정지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5호	6개월이내 사업정지	시설폐쇄	
바.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6호	시설폐쇄		
사.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	6개월이내 사업정지	시설 폐쇄

**라. 사업의 정지, 시설폐쇄 등 처분 시 아동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56조제2항, 시행령 제53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사업 정지, 위탁취소 또는 시설폐쇄하는 경우
  -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해당 아동을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조치(이하 “전원조치”라 한다)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여야 하며,
  -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별표17 참조**

[별표 17] <개정 2022. 6.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과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과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2	150	300
나. 법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1호	500	1,000
다.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2항	250	500
라.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2호	500	1,000
마.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2호	150	300
바.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3호	150	300
사.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4호	150	300



## VI-8

## 미신고시설 관리

## 1. 기본 방향

- 2006년도 미신고복지시설 관리방안(아동복지팀-648. '06.2.23)의 기본방향, 행정처분 절차, 일정 등에 따라 추진하되,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 아동권리과-4956(2021.9.16.) 미신고시설(아동) 관리 방안 안내
- ※ 미신고시설에 대해 최대한 자율신고를 유도하고 부득이 행정처분시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름

-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아동복지법 제7조 벌칙)
-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2항, 6.30 시행)

## 2. 시설 관리

## 가. 신고 유도

- 생활아동 7인 이하의 가정처럼 생활하는 소규모 미신고시설은 공동생활가정 시설로 분류, 신고 유도
  - ※ 생활아동 7인 이하의 시설은 가능한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분류하지 않음
- 다만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 신고하기도 곤란한 경우의 4인 이하의 시설아동에 대하여는 원가정복귀 및 타 시설로 전원 조치
  - ※ 당장 조치가 곤란 한 경우에는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계속 사후관리·감독하여 아동 원가정복귀 및 타 시설로 전원 조치

## 나. 상시 관리

- '06년까지 추진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결과 남은 미신고시설의 신고전환 또는 폐쇄 업무 및 향후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감시 및 조치

● 공공조직을 통한 후원 또는 지원 시 신고시설 여부 확인

- 시·군·구, 공동모금회 등 공공적인 조직을 통한 후원·지원시 다수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 신고 여부를 확인 ⇒ 확인 결과 미신고시설인 경우 후원, 지원 일체 금지 및 행정처분 실시

**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검색을 통한 미신고시설 조사**

\* 당해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편 조사 > 2.조사의 종류 > 가. 신청조사 > 4)조사결과의 처리

● 조사방법

- 보장기관(시·군·구)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시 중점 관리대상가구에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여 정기·수시조사에 포함하여 감독 강화

-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부서에서 관리 미신고시설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소지 검색하여,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

● 조사결과 조치사항

-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발견 시,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 (시설담당자)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현장 확인 후 미신고시설등 불법시설일 경우, 수급자에게 불법시설임을 고지하고,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 3. 아동 보호

**가. 아동 실태 파악**

● 미신고시설 생활아동 전·출입 현황 및 명단 관리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신고(제6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 불가(제7조)
- 신고 및 미신고 시설에 대해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와 아동신상카드 작성 제출 및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내용 >

- 신고의무 등(법 제6조제1항)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함(※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상카드 작성·제출(법 제6조제3항)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신상카드를 제출하여야 함(※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법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권리, 안전 및 급식 지원 상태 확인 등
  - 취학 및 학대여부 등 아동상태 확인(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담당자 지정 등 조치)

**나. 보호조치**

- 아동실태 파악자료를 활용하여 연고자를 파악→ 귀가 조치
  - 주민등록 및 기초생활보장 전산망을 이용한 부양의무자 확인 및 부양능력 파악
  - 아동 및 보호자 개별면담 실시
  - 연고자가 부양능력 등이 있는 경우 상담 등을 통해 가정으로 귀가조치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의 가정형편(이혼, 질병 등)으로 귀가조치가 곤란한 아동은 가정 위탁, 입양 등 가정보호를 우선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근 및 연고지 시설로 전원조치
  - 시설 전원조치 시, 원칙적으로 동일 시·군·구내로 전원조치하되, 동일 시·군·구내 시설 부족으로 전원이 어려울 경우, 인근 시·군·구의 인접 시설을 소개하고 생활자 및 보호자가 선택(시·도 차원에서 조정)
  - 동일 시·도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시·도내 법인시설의 정원을 일시적으로 초과 하더라도 보호

## 4. 행정사항

- 미신고시설 발생 방지
  -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과정에서 미신고시설 발생 가능성을 수시 확인하고, 지역사회 복지 시설(단체 등)과 연계·협력을 통한 정보수집 및 기초행정망(통·반장, 부녀회 등)을 적극 활용
    - ※ 지자체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 제공
  - 행정전산망을 통해 미신고발생 가능성 확인(동일주소지 수급자 여러명 등록 등)
  - 미신고시설 발생 징후 포착시 바로 현장확인 및 아동(관계자) 상담(면담)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근원을 차단
- 시설장이 자발적으로 생활자를 전원조치 하는 경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여유시설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
  - ※ 기존의 인근시설 등의 수용능력 파악
- 신고전환을 추진중이거나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설은 추진상황 및 신고일정 등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추진
- 신고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이나 전환을 거부하는 시설, 자진폐쇄기로 한 시설 등은 생활자 전원조치 및 시설폐쇄조치를 실시, 시설폐쇄를 거부하는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
  - 시설장 및 생활자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전원이 무리없이 이뤄지도록 조치
  - 인권침해시설,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 인권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지역언론, 시민 단체 등을 통해 여론을 충분히 조성한 후 시설장 고발 및 전원조치 실시
- 각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관내 미신고 아동복지시설(개인운영시설 포함)에 대해 수시로 실태를 파악·관리
  - 점검결과 아동학대, 회계부정 등이 발견 된 경우에는 가능한 생활자 전원조치 및 시설폐쇄 등을 실시
  - 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자체적으로 미신고시설 조사결과 및 관리현황(서식 4호) 및 개인운영 아동복지시설 관리카드(서식 5호)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신고시설 조사 결과 및 관리현황(서식 4호)을 매반기 다음달(1월, 7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로 보고함

# VII

## 아동복지교사 지원

<b>I. 사업 개요</b>	<b>281</b>
1. 사업목적	281
2. 사업연혁	281
3. 사업추진체계	282
4. 사업추진일정	283
<b>II. 아동복지교사 지원대상 관리</b>	<b>284</b>
1. 지원대상 신청	284
2.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	286
3. 지원대상 관리	287
4. 아동복지교사 지원계획	290
<b>III. 아동복지교사 관리</b>	<b>293</b>
1. 개요	293
2. 근무유형 및 분야	295
3. 아동복지교사 채용 * 결원발생에 따른 신규 채용	298
4. 아동복지교사 교육	304
5. 아동복지교사 관리	304
6. 예산 집행	305



## I 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 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

-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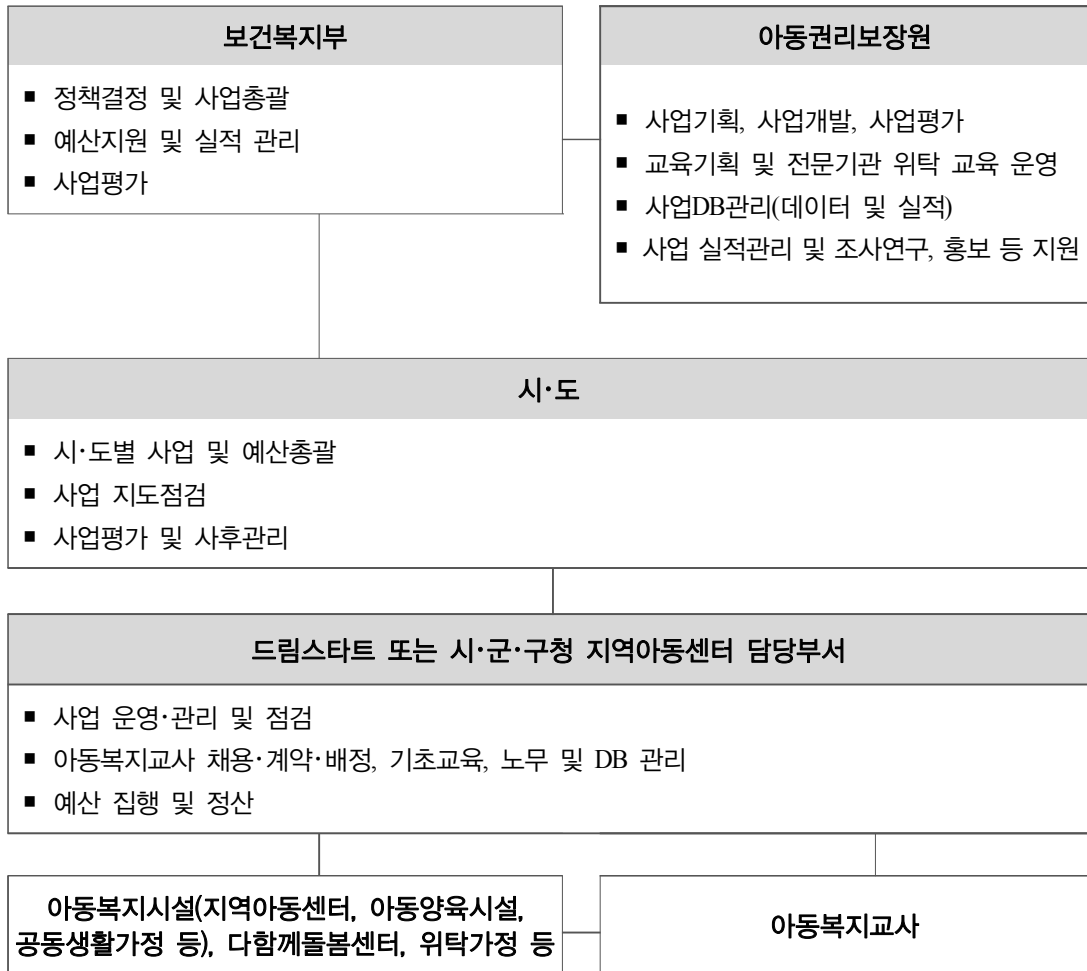
#### 나.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아동복지 서비스 인력 양성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서 지역사회 우수인력을 채용, 교육훈련을 통해 아동복지 서비스 인력 양성

### 2. 사업연혁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시작('07.6월)
  - 기초학습, 영어, 독서지도, 예체능, 보건위생 등 10개 분야 아동복지교사 2,722명 지역아동센터에 파견
-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추진체계 변경('11.12월)
  - 지원대상 기관 수요 파악,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복무관리 등 사업관리주체를 시·도에서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변경
-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아동복지교사 사업량 확대('13.7월)
  - '07년 이래 2,700명으로 유지되었던 사업량을 3,500명으로 확대
-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추진 ('17.7.20)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관계부처 합동)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제외('19~)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관리·지원업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20~)
- '21년 말 기준 3,913명의 아동복지교사 파견

### 3. 사업추진체계





## 4. 사업추진일정

추진일정	내용	주체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침 시행</li> <li>■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추진현황 등 조사</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아동복지교사 기초교육(오리엔테이션)</li> </ul>	시·군·구
3~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분야 및 특화분야 교사 교육</li> <li>* 필수 및 선택교육 과정</li> <li>* 세부 교육일정 및 내용 등 추후 통보</li> </ul>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전문기관 위탁 운영
1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침 개정의견 수렴</li> <li>■ 2024년 시도별 아동복지교사 수요조사 및 배정인원 확정</li> <li>■ 2024년 아동복지교사 지원 대상 선정</li> <li>■ 2024년 아동복지교사 배치</li> </ul>	시·군·구

※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 결원 시 수시 채용 및 배치, 입퇴사자 정보 DB 입력·관리

## II

## 아동복지교사 지원대상 관리

## 1. 지원대상 신청

## 가. 신청자격

※ 아래 신청기준은 신청 가능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며, 선정확정 기준이 아님. 제출서류를 근거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제2호에 따른 아동 일시보호시설, 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및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 1) 신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
- 2)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본운영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
- 3) 「아동복지법」 및 사업지침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 4)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신고정원이 10명 이상이고 이용아동(현원)\*이 10명 이상인 시설, 그 외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교사 교육지원 필요 아동이 5명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 다만, 농산어촌 등 지역적 특성 또는 아동특성상 특별한 지원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정기돌봄 아동 수로 산정
- 5)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

- (가정위탁)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보호하고 있으며, 아동복지교사 파견 신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위탁가정
  - \* 그 외, 지자체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기타 아동복지기관 등에 대해 지원규모 등 지자체 자체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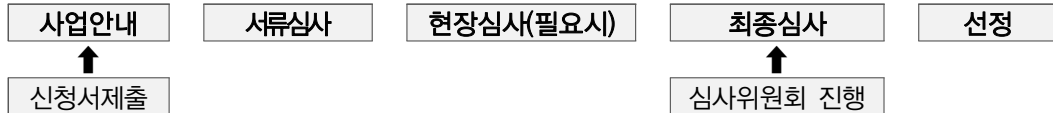
나. 신청방법

구분	세부내용	
신청기간	'22.12월 ~ '23.1월	
심사기간	'22.12월 ~ '23.1월	
결과발표	'22.12월 ~ '23.1월 (기 채용되어 있는 교사분야 및 인원에 따라 매칭 후, 최종결과 공지)	
제출서류	1.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유형별 서식1~3 신청서식 작성</li> <li>○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희망하는 3개 분야를 우선순위로 작성</li> </ul>
	2. 신청자격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돌봄시설 및 아동복지시설</li> <li>1) 시설신고증(위치, 신고시점, 법정종사자수, 아동 수 확인)</li> <li>2) 종사자명부,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법정종사자 인력 확인)</li> <li>3) 신청시점 직전 3개월간 아동 출석부 및 급식명단(아동 수 확인)</li> <li>4) 신청시점 직전 3개월간 프로그램 시간표 및 운영시간 증빙자료 등 ※ 2)~3)번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부분은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 후 제출</li> <li>○ 위탁가정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제출</li> <li>※ 시·군·구내에서 관련 시스템 및 점검자료 등으로 증빙서류를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기관 등에 증빙서류 제출 요청을 생략 가능</li> <li>※ 그 외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증빙서류 징구</li> <li>※ 증빙서류에 대해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가능</li> </ul>
	3. 기타서류	기타 심사과정에서 시·군·구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
접수방법	관할 시·군·구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까지만 유효)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일정, 세부절차 및 접수방법 등은 시·군·구 사정에 따라 달리 운영 가능</li> <li>2. 서류입증책임은 신청기관 장에게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li> <li>3.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선정 취소 가능</li> <li>4. 신청기준은 상시 요건으로, 연도 중 신청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 중단 가능                      ※ 해당 신청기준은 신청가능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며 선정확정 기준이 아님</li> </ol>	

## 2.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

### 가. 심사절차

- 시·군·구는 서류심사→(필요시)현장심사→최종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최종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권고
  -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장, 지역사회 아동복지시설 관련 전문가,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분야 전문가 등 3인 이상으로 구성
  - ※ 시·군·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시·도 통합운영 등)



- 시·군·구는 공정한 심사운영을 위해 심사 관련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보관

### 나. 세부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시·군·구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심사를 통해 기본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격]으로 결정
  - 다만, 이용아동수 또는 운영시간이 기본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대상(아동 돌봄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필요사유 등을 검토하여 최종 [적격/탈락] 여부를 결정
  - 시·군·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아동복지교사 수 범위 내에서 균등 지원하되, 지원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지원 일수를 조정하여 파견 가능
  - 세부심사 시 심사기준은 표준안(예시)을 참고하되, 시·군·구는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가능(항목의 추가, 배점의 조정 등 가능)

〈 참고자료 : 지원대상 세부심사기준 표준안(예시) 〉

항 목	세 부 내 용	심사배점	
세부심사 항목 (50점)	□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	5~10	기준 점수 내에서 자유 배점 (DB자료 활용 가능)
	□ 이용아동 수	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	5~10	
	□ 신청분야 교사 활용계획 또는 교육 지원 필요성	0~20	

● 현장심사

- 시·군·구는 적격심사 중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에 사실 확인, 시설환경 파악, 지원 필요성, 지원사업 수행의지 등을 확인하여 심사에 반영 가능

● 최종심사

- 최종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하며, 적격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정도를 최종 결정

### 3. 지원대상 관리

#### 가. 지원대상 역할 및 의무

- 지원대상은 아동복지교사의 근로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
- 지원대상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간담회 등에 충실히 참여
- 지원대상은 아동복지교사의 의무교육 참석 및 연차사용을 위해 협조
- 지원대상은 아동복지교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 공간 및 교재준비, 교구·기자재 준비 등을 자부담으로 구비
- 지원대상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사업평가, 모니터링 (지도점검) 등 시·군·구의 업무 요구에 협조
- 아동복지교사 근무 시 지원대상 종사자 또는 보호자는 상주 필요

- 지원대상은 필요시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의 개인정보 외 업무와 관련된 기본이력을 시·군·구에 요청 가능
  - ※ 지원대상은 아동복지교사에게 별도의 계약 및 이력서 제출 요구 불가
- 지원대상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교사 파견 중단

**< 아동복지교사 종사금지 활동(예시) >**

○ 조리 및 식기세척, 배식, 청소, 차량운행 및 탑승, 근무시간외 현장학습 동행, 업무일지 외 기타 일지(상담, 관찰 등) 작성, 행정업무 지원 등은 직무외 활동에 해당

### 나.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

- 지원대상이 본 사업에 대한 역할 및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사업 수행 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여 시·군·구로부터 최근 1년간 3회의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 가능

구분	시정권고사유
지원대상 운영	① 지원기간 중 시설 등이 신청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아동복지교사의 활용에 필요한 공간이나 교구 및 기자재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교구 및 기자재 준비 등을 아동복지교사에게 부담시킨 경우 등)
교사관리	① 지원대상 내 종사자 및 보호자 없이 아동복지교사를 전담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 아동복지교사를 지원대상의 다른 사업 인력으로 활용한 경우 ③ 별도의 사유 없이 아동복지교사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④ 별도의 사유 없이 아동복지교사의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관계법령에 규정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⑤ 시·군·구와 협의 없이 교사의 근무시간 및 요일을 변경하는 경우 ⑥ 교사의 분야별 고유 업무가 아닌 종사 금지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 ⑦ 기타 시·군·구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지원대상에 다음과 같이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시정권고 절차 없이 즉시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 가능
  - ①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및 거짓으로 심사에 응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예 : 운영시간, 아동수, 종사자수 등 실제 운영상황과 다른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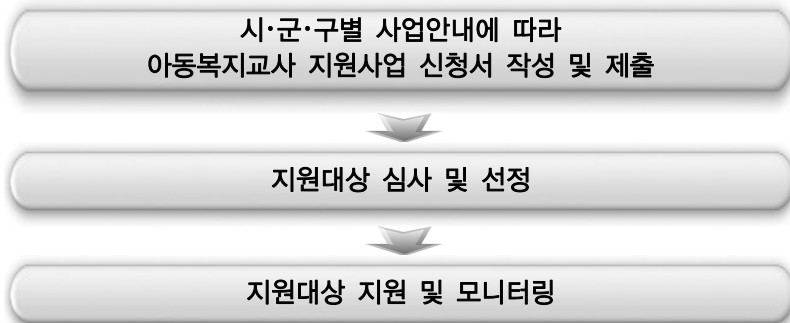
- ② 아동복지법·형법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 ③ 아동복지교사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수령한 경우
  - ④ 본 사업 지침에 대한 심각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지원대상이 업무 태만 등 타당한 사유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을 원할 경우
  - ⑥ 지역아동센터는 심화평가를 거부한 경우
-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중단된 지원대상은 지원 중단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다음 연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 가능
  - 다만,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를 거부하여 중단된 경우에는 기본운영비 보조금 지원이 재개된 연도의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 가능

## 4. 아동복지교사 지원계획

### 가.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23년 1월 ~ 12월(12개월)
- 지원내용 : 기본분야(주25시간 및 주12시간) 교사 등
- 지원방법
  -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결정에 대해 지원대상에 지원여부를 통보
    - ※ 시·군·구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일수 산정 가능
  -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 수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아동복지교사를 지원(주5일 이내)
    - ※ 다만, 파견인력 미채용 시에는 파견 유보 가능
  - 시·군·구는 1개 지원대상에 2명 이상의 아동복지교사를 지원(연계)할 경우에는 지원분야가 중복되지 않게 배치
  - 주25시간 근무 교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 1인 전담 지원은 불가하며, 지원기관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2개소 이상 연계 배치
    -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특성상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문화, 장애아동 이용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경우 또는 시·군·구청장이 당초 지원대상의 지원 중단 등 불가피하게 다른 지원 대상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소 배치 가능
  - 단시간근무 교사의 경우 농산어촌 등 지역 특성으로 인해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1개소 배치 가능

### 나. 지원절차





다. 지원내용 : 기본분야(기초학습 등 6개 분야)

구분	지원분야	활동내용	지원시간
기본 분야	기초학습	- 기초학습교육 등 (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일근무(주25시간)</li> <li>- (근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 돌봄기관,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li> <li>- (근무시간) 주 5일 이내, 1일 5시간 지원 (9:00~21:00)</li> <li>■ 단시간근무(주12시간)</li> <li>- (근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 돌봄기관,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li> <li>- (근무시간) 주 3~4일, 1일 5시간 이내</li> <li>* 월60시간 이상 근무 하게 되는 달은 근무일 및 시간 조정</li> </ul>
	외국어* 지도	- 외국어 기초지도 - 그룹외국어지도, 영어 등 활동 프로그램 지도 * 외국어 영역 :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지역별 수요가 있는 외국어 가능	
	독서지도	- 독서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 그룹 독서지도, 독서활동 프로그램 지도	
	예체능* 지도	- 예체능활동지도(음악, 미술, 체육 등) - 예체능 활동 프로그램 지도 * 음악, 미술, 바둑, 컴퓨터, 축구, 로봇과학, 연극, 서예, 손글씨, 한자, 댄스(무용), 요리 등 지역별 수요가 있는 분야 가능	
	다문화·장애아동 지도	- 다문화아동 / 장애아동 지도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다문화, 장애아동지도교사는 다문화,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에 우선 파견 배치(원칙)</div>	
	기타	- 시·군·구청장이 지역수요 등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예: 아동인권, 진로지도, 수학 등)	
분야별 공통사항	- 해당분야 수업 전·후 정리 및 학교생활교육(숙제 및 과제물 관리 등)		

## 라.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지원대상 설치자(대표자) 또는 시설장, 보호자(위탁가정)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복지교사는 해당 지원대상에 파견 불가. 다만, 지역적 특성 및 기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아동복지교사 선발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자체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가 중도 탈락할 경우에 대체할 교사를 파견. 다만, 파견할 아동복지교사 결원 시에는 대체 인력 파견 유보 가능
- 아동복지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주25시간 교사 우선 채용(80% 이상)
  - \* 지자체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대상의 수요, 아동복지교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고려하여 주12시간 교사 채용 지양

### III 아동복지교사 관리

#### 1. 개요

● 근무유형 및 분야

- 기본분야(주25시간 및 주12시간) 교사: 기초학습, 외국어지도, 독서지도, 예체능지도, 다문화·장애아동지도, 기타분야\*

\*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예: 아동인권, 진로지도, 수학 등)

- 특화분야(주40시간) 교사 : 시군구 내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만 13~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서비스 제공 기관(청소년 지원기관 등) 연계\*, 지역사회 돌봄 필요아동 발굴 및 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등) 연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에 요구되는 실무 지원

\* 세부내용은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참고

※ 아동복지교사 채용·배치·급여관리 등 노무행정, 지역아동센터 회계처리·평가·지도점검 동행 등 공무원 보조역할 수행 금지 → 적발 시 보조금 반환 및 배정인원 감축

● 근무인원 : 4,120명('23년도 예산 기준)

- 시·군·구 총예산을 기준으로 정규직 인력을 채용 가능한 범위에서 인력 채용

\* '사회서비스일자리' 특성상 총원(시도별 확정내시인원)은 유지하되, 총원 외에 시·군·구 자체적으로 기본·특화분야 교사 추가 채용 가능

● 근무장소

- 기본분야(주25시간 및 주12시간) 교사 :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기관,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파견)

- 특화분야(주40시간) 교사 : 드림스타트 또는 시·군·구청

● 계약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계약체결

-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인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관계부처 합동)

● 근무절차



● 파견원칙 : 시·군·구가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지원대상에 기본분야(주25시간 및 주12시간) 교사 파견

- 시·군·구는 지원대상 이용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개 지원대상에 동일분야 2인 이상 배치 불가
- 1인 1개소 전담 배치 불가하며, 2개소 이상 연계 배치 원칙  
※ 아동복지교사의 친족이 운영하는 센터(설치자 혹은 시설장), 위탁가정 등에 배치 불가

● 파견예외

- 시·군·구청장이 지역특성상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문화, 장애아동만을 전담하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또는 당초 지원대상의 지원 중단 등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하게 다른 지원 대상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분야(주25시간) 교사까지 1개소 배치 가능
- 단시간근무(주12시간) 교사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지역특성(농산어촌 등) 등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소 배치 가능

● 기타사항 : 아동복지교사는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 내부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에 따라 겸직 가능

\* 다만,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중복참여는 불가하며, 파견되는 기관에서의 겸직은 불가함

## 2. 근무유형 및 분야

### 가. 기본분야 전일근무(주25시간) 교사 : 기초학습 등 6개 분야

구분	지원분야	활동내용	지원시간
기본 분야	기초학습	- 기초학습교육 등 (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 전일근무(주25시간) - (근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 돌봄기관,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 (근무시간) 주 5일 이내, 1일 5시간 지원 (9:00~21:00)
	외국어* 지도	- 외국어 기초지도 - 그룹외국어지도, 영어 등 활동 프로그램 지도 * 외국어 영역 :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지역별 수요가 있는 외국어 가능	
	독서지도	- 독서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 그룹 독서지도, 독서활동 프로그램 지도	
	예체능* 지도	- 예체능활동지도(음악, 미술, 체육 등) - 예체능 활동 프로그램 지도 * 음악, 미술, 바둑, 컴퓨터, 축구, 로봇과학, 연극, 서예, 손글씨, 한자, 댄스(무용), 요리 등 지역별 수요가 있는 분야 가능	
	다문화· 장애아동 지도	- 다문화아동 / 장애아동 지도 ☞ 다문화, 장애아동지도교사는 다문화,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에 우선 파견 배치(원칙)	
기타	- 시·군·구청장이 지역수요 등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예: 아동인권, 진로지도, 수학 등)		
분야별 공통사항	- 해당분야 수업 전·후 정리 및 학교생활교육(숙제 및 과제물 관리 등)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업무시간이며, 근무시간에는 교육훈련시간(의무교육)이 포함  
되므로 실제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조리 및 식기세척, 배식, 청소, 차량운행 및 탑승, 근무시간외 현장학습 동행, 업무일지 외 기타 일지(상담,  
관찰 등) 작성, 행정업무 지원 등은 직무외 활동에 해당(종사금지)

나. 기본분야 단시간근무(주12시간) 교사 : 기초학습 등 6개 분야

구분	지원분야	활동내용	지원시간
기본 분야	기초학습	- 기초학습교육 등 (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 단시간근무(주12시간) - (근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 돌봄기관,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 (근무시간) 주 3~4일, 1일 5시간 이내 * 월60시간 이상 근무 하게 되는 달은 근무일 및 시간 조정
	외국어* 지도	- 외국어 기초지도 - 그룹외국어지도, 영어 등 활동 프로그램 지도 * 외국어 영역: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지역별 수요가 있는 외국어 가능	
	독서지도	- 독서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 그룹 독서지도, 독서활동 프로그램 지도	
	예체능* 지도	- 예체능활동지도(음악, 미술, 체육 등) - 예체능 활동 프로그램 지도 * 음악, 미술, 바둑, 컴퓨터, 축구, 로봇과학, 연극, 서예, 손글씨, 한자, 댄스(무용), 요리 등 지역별 수요가 있는 분야 가능	
	다문화· 장애아동 지도	- 다문화아동 / 장애아동 지도 ☞ 다문화, 장애아동지도교사는 다문화,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에 우선 파견 배치(원칙)	
	기타	- 시·군·구청장이 지역수요 등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예: 아동인권, 진로지도, 수학 등)	
분야별 공통사항	- 해당분야 수업 전·후 정리 및 학교생활교육(숙제 및 과제물 관리 등)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업무시간이며, 근무시간에는 교육훈련시간(의무교육)이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조리 및 식기세척, 배식, 청소, 차량운행 및 탑승, 근무시간외 현장학습 동행, 업무일지 외 기타 일지(상담,  
관찰 등) 작성, 행정업무 지원 등은 직무외 활동에 해당(종사금지)

다. 특화분야(주40시간) 교사

구분	교사분야	활동내용	근무지 및 근무시간
특화분야 (지역사회 복지사)	돌봄 필요아동 서비스 연계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내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만 13~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서비스 제공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등) 연계 * 세부내용은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참고</li> <li>- 지역사회 돌봄 필요아동 발굴 및 적합한 지역 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등)으로의 연계</li> <li>-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에 요구되는 실무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일근무(주40간)</li> <li>- (근무지)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포함)</li> <li>- (근무시간) 주5일, 1일8시간 (9:00~18:00)</li> </ul>

- ※ 아동복지교사 노무·행정 관리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 지역아동센터 회계처리·평가·지도점검 동행 등 공무원 보조역할 수행 금지  
→ 적발 시 보조금 반환 및 배정인원 감축
- ※ 특화분야(주40시간) 교사의 활동내용은 시·군·구별 지역 실정에 따라 상기 역할에 추가 업무 부여가능
- ※ '23년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주관 교육 필수 이수

### 3. 아동복지교사 채용 \* 결원발생에 따른 신규 채용

#### 가. 채용일정 및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공고방식	시·군·구별 자체 공고	
채용방법	공개모집(원칙) 다만, 시·군·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 자체기준에 따라 모집 가능	
채용기간	수시(결원발생시)	
채용분야	기본분야, 특화분야	
응시자격	(공통)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자 - 만 19세 이상인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실이 없는 자 (분야별) - 기본분야 교사(주25시간 및 주12시간): 분야별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 지도 가능한 자 - 특화분야 교사(주40시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매년 예산액 및 확정내시 인원 범위 내에서 결원 발생시 지자체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업취지, 지원대상의 수요,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고려하여 주 25시간 아동복지교사 우선 채용(80% 이상)</b> * 기본분야 교사 채용 시 1·2·3순위 지원분야에 대한 지도계획을 모두 심사하여 채용 후 3개 분야 내에서 지원대상 수요에 맞게 파견 가능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서식7) * 근무시작일 기준 실업자인 경우, 실직기간 작성 필수 ② (기본분야 교사) 프로그램 지도 계획서 (특화분야 교사) 자기소개서 ③ 최종학력증명서 ④ 자격증 사본 ⑤ 경력증명서 ⑥ 기타 시·군·구가 요구하는 서류 등 ※ ①~③는 모든 신청자가 제출, ④~⑥은 해당자만 제출



구분	세부내용	
채용 예정자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채용건강진단서) -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서 ②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③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4 서식]) ※ 채용예정자 제출 서류는 채용예정 발표 후 7일 이내 제출
접수방법	관할 시·군·구에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소인까지만 유효)	
행정사항	1. 채용일정, 세부절차 및 접수방법 등은 시·군·구 사정에 따라 달리 운영 가능 2. 서류입증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채용 취소 가능 3.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 및 근로계약 중단 가능 4. 응시자격은 상시 충족요건으로, 연도중 응시자격에 미달할 경우 근로계약 중단 가능 5. 기타 아동복지교사 채용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분야별로 우대 가능	

## 나. 채용심사

### 1) 심사절차

- 시·군·구는 공고 →서류심사→면접심사(필요시)→최종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채용  
 예정자를 선발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면접 및 최종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권고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 특성 상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와 연도중 결원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채용해야 하는 경우 시·군·구 자체기준에 따른 모집 가능
  -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장, 지역사회 아동복지시설 관련 전문가,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분야 전문가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며, 시·군·구  
 상황에 따라 시·도 통합운영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시·군·구는 공정한 심사운영을 위해 심사 관련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보관

## 2) 세부 심사방법

### ● 서류심사

- 신청자의 기본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적격/탈락]을 정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세부 심사를 진행한 후 최종 서류심사 통과자를 선정
- 서류심사기준은 시·군·구별로 지역 특성 및 사업내용을 반영한 자체 기준안을 마련하여 사용
- 심사기준은 표준안(예시)을 참고하되, 항목의 추가 및 일부 배점을 조정하여 심사 실시 가능

### [ 참고자료 : 아동복지교사 서류심사기준 표준안(예시) ]

항목		심사기준 및 방법		심사결과
적격 심사	공통	연령	· 만 19세 이상	적격기준 모두 충족할 경우 서류 심사 진행
		특화분야 교사	· 응시자격에 적격	
세부심사		학위(25점)	· 응시분야와 관련된 학위소지자인 경우 높은 점수 부여	시·군·구별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를 서류심사 통과자로 선정  (필요시 면접심사 실시)
		자격증(25점)	· 응시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경우 높은 점수 부여	
		경력(25점)	· 유사분야 경력 및 지원가능분야(3순위까지)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기관, 공동생활가정, 아동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활동 경험 - 아동복지교사 등 아동지도 경험 - 지원 분야 관련 지도 경험	

항목	심사기준 및 방법		심사결과
	프로그램 지도계획서 또는 자기소개서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지도 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전문성 등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li> <li>- 목적 및 목표 제시 여부, 달성 가능성</li> <li>- 지도기간 및 회기의 적절성</li> <li>- 지도방법 및 내용의 전문성, 구체성 정도</li> <li>- 지원대상 및 이용 아동에 대한 이해 정도</li> <li>- 지원 분야의 전문지식 보유 여부</li> <li>- 기대효과의 적절성</li> <li>- 사업 참여에 대한 태도(성실성) 등</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소개서 등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 및 적절성이 잘 나타날수록 높은 점수 부여</li> <li>- 지원대상 및 이용 아동에 대한 이해 정도</li> <li>- 지원 분야의 업무내용 및 목표 이해 정도</li> <li>- 지원 분야의 전문지식 보유 여부</li> <li>- 사업 참여에 대한 태도(성실성) 등</li> </ul>	
	실직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직상태 확인하여 해당 시 우대</li> </ul>	
	종합의견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면접 및 최종심사

- 서류심사 과정에서 면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최종심사 진행
- 면접 및 최종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권고

● 최종 선정 및 계약

- 최종심사를 통과한 채용예정자 명단은 지원대상 및 근무시간 매칭이 종결되는 시점에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 게재로 발표
-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에서 결과를 확인한 후 최종 채용자로 선정 계약

※ 채용 이전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가 어려운 경우 채용 이후에 지원대상 협조를 통해 결과 확인 후 근로계약 중단 가능

### 3) 대기자 관리

- 시·군·구는 최종 채용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연도 중 결원 발생 시 대기자를 우선 채용 가능

### 4)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의사항

- 아동복지교사 참여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작성 및 동의 여부 확인
    - 참여 신청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
    -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는 참여 신청자 모두 작성
  - 보유 목적이 사라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에 따른 보유·이용기간 종료 후 파기
    - 퇴직한 아동복지교사의 경력증명 서류 발급을 위한 자료는 퇴직 후 3년간 보관하고, 기간 종료 후 파기
- ※ 3년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받아 보관

**다. 우대사항**

- (분야별 우대사항)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우대

구분	분야	세부내용
기본분야	기초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li> <li>•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li> <li>•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li> <li>•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기관,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등 실무경력자 우대</li> </ul>
	외국어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li> <li>•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li> <li>• 외국어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li> </ul>
	독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li> </ul>
	예체능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li> <li>• 독서지도·예체능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li> </ul>
	다문화·장애 아동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li> <li>•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li> </ul>

- (실업자 우대사항) 근무시작일 기준 실업자  
\* 해당 시 참여 신청서(서식7) 최근 실직기간 작성 필수

**라. 기타사항**

- 주·야간 대학생 및 대학원생 참여 불가(다만, 졸업예정자는 참여 가능)
-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기관,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등 설치자(대표자) 참여 불가
- 아동복지교사는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 내부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에 따라 겸직 가능  
\* 다만,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중복참여는 불가하며, 파견되는 기관에서의 겸직은 불가함
- 응시자의 친족이 운영하는 센터(설치자 또는 시설장), 위탁가정 등에 근무 불가

## 4. 아동복지교사 교육

### 가. 목적

- 아동복지교사에게 필요한 소양 및 분야별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실무능력을 강화하여 아동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아동복지분야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나. 운영계획 등 : 추후 통보

## 5. 아동복지교사 관리

### 가. 아동복지교사 역할 및 의무

- 아동복지교사는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보호, 교육, 문화, 복지 등 아동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 아동복지교사는 사업 참여를 통하여 스스로 근로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 확대에 기여
- 아동복지교사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침,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분야별 업무 수행
- 아동복지교사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업무서류를 작성·보고
- 아동복지교사는 모든 교육과정에 반드시 참여·이수
- 아동복지교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사업평가, 모니터링(지도점검) 등 시·군·구의 업무요구에 협조
- 아동복지교사는 아동복지교사 DB에 정기적으로 자신의 근무현황(근무상황부, 업무일지, 교사정보 등)을 입력

**나. 복무규정**

- 아동복지교사 휴일,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 복무관련사항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관계 법령(근로기준법 등) 준수

**다. 기타 협조사항**

-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근무현황 및 입퇴사자 정보 등을 아동복지교사 DB에 상시 입력·관리

**6. 예산 집행**

**가. 아동복지교사 급여**

- 시·도는 총예산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아동복지교사 수를 적절하게 배정
  - 아동복지교사 근무유형에 따라 기본급이 다르므로 시·군·구별 아동복지교사 수를 준수 하는 범위에서 전일근무교사와 단시간근무교사 채용인원을 적절히 산출
- 아동복지교사 기본급은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포함

근무유형		근무분야	기본급	보험가입	퇴직금
전일 근무교사	기본 분야	기초학습, 외국어지도 독서지도, 예체능지도 다문화·장애아동 지도 기타분야	1,260,000원	사회보험 전체	지급 (기본급)
	특화 분야	시군구 내부 또는 타 기관으로 부터 의뢰된 만 13~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서비스 제공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등) 연계 등	2,011,000원	사회보험 전체	지급 (기본급)
단시간 근무교사	기본 분야	기초학습, 외국어지도 독서지도, 예체능지도 다문화·장애아동 지도 기타분야	658,000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지급

## 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등 편성방법

- 아동복지교사 사업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편성·운영  
(다만, 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
- 시·군·구는 해당 아동복지교사 수에 따라 매월 인건비를 책정·편성하며, 인건비는 기본급(사회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전일근무교사 퇴직금을 포함하는 총액을 기준으로 편성
  - 기본급 외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식대, 상여금,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는 지방비로 지원 가능
    - ※ 연가보상비(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관계 법령(규정) 등에 따라 지원 가능)
  - 특히,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일근무(특화분야) 교사의 출장 여비 등을 편성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 전일근무(특화분야)교사의 경우 예산범위(국비,지방비) 내에서 근로기준법 및 시·군·구별 지급 기준 등에 따라 시간외수당 지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단시간근무 교사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므로 시·군·구는 지방비 예산 일부를 단시간근무교사의 건강검진비로 편성하여 연 1회 지급(실비정산 또는 급여로 일괄 지출)
  - 다만, 단시간근무교사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와 관련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실시에 갈음되므로, 사업주가 별도의 건강진단을 실시 불필요
    - ※ 시·군·구별로 세부 단계를 파악하여 편성

## 다. 급여 지급방법

- 급여지급방법
  - 시·군·구는 월별 근무상황부 및 업무일지를 확인하여 급여 지급
  - 월 급여액은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
    - \* 연차유급휴가 등은 관계 법령(규정) 등에 따라 처리
  - 급여는 아동복지교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다만, 본인이 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인해 통장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동의서(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에 대한)를 첨부 후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



● 사회보험 관리

- 보험종류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산재보험, 고용보험
- 시·군·구는 각 보험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을 파악하여 직접 신고
- 근무유형에 따라 각종 보험 가입여부와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에 문의 후 처리

\* 관련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라.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 퇴직급여제도 운영 등 관련사항은 관계 법령(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 준수





부 록

# 보호아동 면접교섭지원 매뉴얼

- 보호아동의 원가정(가족) 만남을 위한 가이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목 차

<b>I. 면접교섭의 이해</b> .....	<b>313</b>
1. 추진배경 .....	313
2. 면접교섭의 정의 .....	313
3. 면접교섭의 법적근거 .....	314
4. 추진체계 .....	314
5. 면접교섭의 원칙 .....	315
6. 면접교섭의 절차 .....	316
<b>II. 면접교섭의 서비스 제공 방법</b> .....	<b>319</b>
1. 서비스 대상 .....	319
2. 지원 기간 .....	319
3. 서비스 제공 방향 .....	320
4. 면접교섭 방법 .....	322
5. 면접교섭 결과보고 및 공유 .....	325
<b>III. 행정사항</b> .....	<b>326</b>
<b>[관련 서식]</b>	
서식 1. 개별 보호·관리 계획 .....	327
서식 2. 서비스제공 계획서 .....	332
서식 3.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 .....	334
서식 4. 양육상황 점검표 .....	336
서식 5. 외출(외박) 신청서 .....	339



## I 면접교섭의 이해

### 1 추진배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아동복지법 제4조)
- 그러나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율 저조로 가정의 보호기간이 장기화되어 아동의 ‘원가정 보호’ 권리 침해 및 원가정(가족)이 존재함에도 정기적인 교류가 없어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원가정 복귀 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원가족 간 면접교섭 지원 강화를 통해 조속하고 안정적 원가정 복귀 및 적응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

### 2 면접교섭의 정의

- 분리보호된 아동의 조속한 원가정 복귀와 보호종료 후 아동의 지지체계 확립을 위해 원가정(가족)과 아동의 지속적·규칙적 만남을 지원하는 것
- 원가정이 없거나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의 경우에도 조부모·형제·자매 등 「민법」 제779조에 규정된 가족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면접교섭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 및 제11조의6

「아동복지법」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1. 12. 30.]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3.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21. 12. 30.]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6(면접교섭 지원방법) [시행일: 2021. 12. 30.]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 4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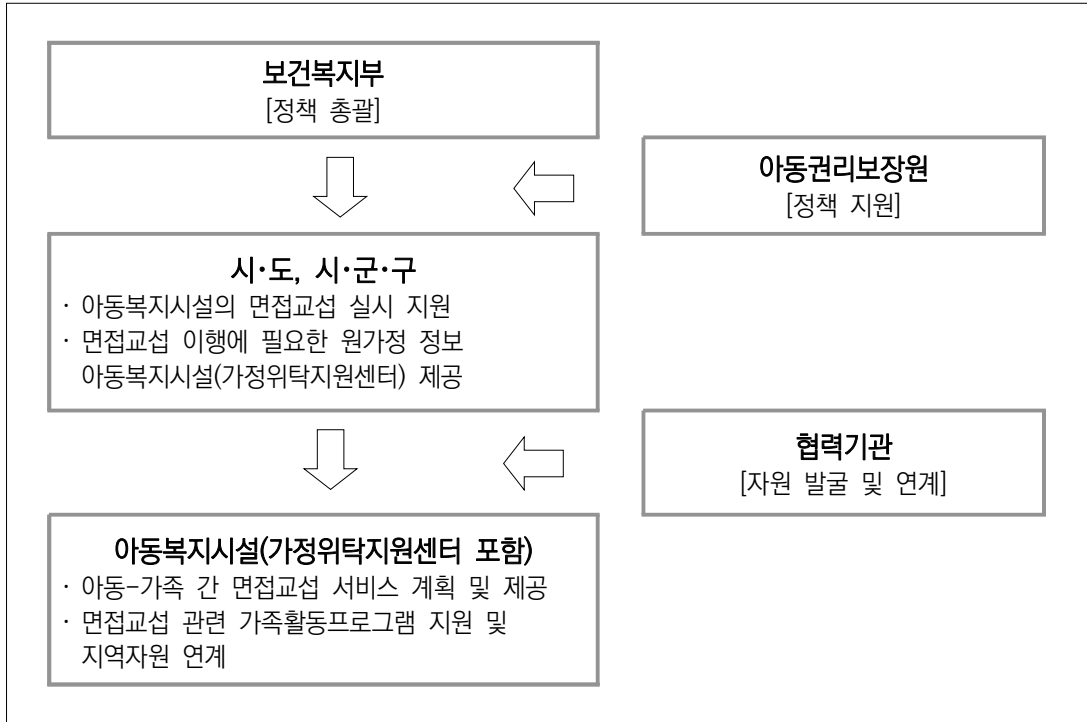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면접교섭 지원 법령 마련 등 정책 총괄
- 아동권리보장원: 면접교섭 지원 매뉴얼 마련 등 정책 지원
- 지자체(시·도, 시·군·구): 보호대상아동의 면접교섭 계획 수립,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의 면접교섭 이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서비스 지원, 면접교섭 이행결과 모니터링 등
- 아동복지시설\*: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아동 및 가족 간 면접교섭 서비스 이행, 면접교섭 결과보고

\* 이하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포함)에 적용



- 협력기관: 면접 프로그램 개발 등 면접교섭 서비스 관련 필요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그림> 추진체계



## 5 면접교섭의 원칙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 면접교섭을 계획할 때 아동의 안전과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면접교섭은 아동의 상실감 극복, 원가정 복귀 및 지지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요인임을 인식해야 함
- 아동의 권리 및 의사 존중
  - 아동은 가정외보호를 받는 동안 가족과 면접할 권리가 있으며, 「민법」 제779조에 규정된 가족 내에서 아동이 면접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면접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함
  - 아동과 원가정(가족) 간 면접교섭 진행 시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

-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면접교섭 지원
  - 원가정(가족)과의 면접교섭 주기, 횟수, 장소, 면접 참석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면접을 지원해야 함
- 면접교섭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 면접교섭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및 협력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야 하며, 아동 보호와 관련된 여러 기관을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인식해야 함

## 6 면접교섭의 절차

### 가. 면접교섭 지원계획 수립

- 1) 수행주체: 시·도 또는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
- 2) 수행시기: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 작성 시
- 3) 수행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 수립 시 보호를 의뢰할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와 논의하여 아동과 원가정(가족)간의 「면접교섭 지원계획」 작성
  - ※ '21.12.30. 이전 '개별 보호·관리 계획'이 수립된 아동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최초 시행되는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면접교섭 지원계획을 수립 후 변경된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 공유
- 4) 작성서식: 개별 보호·관리 계획[서식 1]

### 나.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 1) 수행주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 2) 수행시기: 아동 배치 후 1주일 이내
  - ※ (가정위탁) 일반위탁(친인척 외) 및 전문위탁의 경우 2주 이내, 일반위탁(친인척)의 경우 2개월 이내 수립
- 3) 수행방법: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은 지자체를 통해 공유받은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토대로 아동과 원가정(가족)의 구체적인 면접교섭 계획 수립
  - ※ '21.12.30. 이전 배치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은 개별 아동의 양육상황점검을 토대로 변경된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공유받은 직후 수행시기에 맞춰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4) 작성서식: 서비스제공 계획서[서식 2]\*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기 사용중인 자체 서식이 있는 경우 대체 활용 가능  
(※ 단, 「면접교섭 동의여부», 「지원내용», 「원가정 지원계획」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다. 면접교섭 이행

1) 수행주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2) 수행시기: 아동복지시설 배치 초기부터 원가정 복귀 또는 종결 시까지

3) 수행방법: 아동의 적응상태 및 원가정(가족) 상황 등에 따라 효과적인 면접교섭 방법으로 진행(12p. ‘아동의 적응단계별 서비스 제공 방향’ 참고)

※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 예방을 위해 제 3의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할 경우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장소 제공 등 협조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이 요청하는 경우 면접교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면접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

4) 작성서식: 외출(외박) 신청서[서식 5]\*

- 아동이 원가정(가족) 방문 또는 외출(외박)을 하는 경우 작성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기 사용중인 자체 서식이 있는 경우 대체 활용 가능

### 라. 면접교섭 결과보고

1) 수행주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2) 수행시기: 아동과 가족 간 면접교섭 종료 직후\*

\* ‘서비스제공 계획서’에 계획된 정기적 면접 외 상시 면접의 경우 작성 제외 가능

3) 수행방법: 면접 참석자, 방법, 내용, 아동소감 및 작성자 의견 등을 면접교섭 결과보고서 [서식 3]에 작성하여 지자체(아동보호전담요원)의 양육상황 점검 시(분기별) 공유

※ 단, 면접교섭 중 아동의 안전을 침해하는 상황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면접교섭 결과를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즉시 공유

4) 작성서식: 면접교섭 결과보고서[서식 3]\*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기 사용중인 자체 서식이 있는 경우 대체 활용 가능  
(※ 단, 「면접 대상자», 「면접 방법», 「면접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마. 면접교섭 이행결과 모니터링

- 1) 수행주체: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2) 수행시기: 양육상황점검 시(분기별)
- 3) 수행방법: ‘면접교섭 결과보고서’를 통해 개별 보호·관리 계획 및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른 아동과 원가정(가족)과의 면접교섭 이행결과 모니터링
  - 지자체(아동보호전담요원)는 보호아동의 원가정 사례관리 시 확인된 정보, 변화 등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공유하여 이후 면접교섭 이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 4) 작성서식: 양육상황 점검표[서식 4]

<표> 면접교섭 절차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교섭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가족) 간의 면접교섭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개별 보호·관리 계획’ 에 포함</li> </ul> </li> <li>• 면접교섭 이행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 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의 면접교섭 이행 여부 모니터링</li> </ul> </li> </ul>	<p>→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교섭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제공 계획서’에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및 실시</li> </ul> </li> <li>• 면접교섭 결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이행 후 ‘면접교섭 결과보고서’ 작성 및 양육상황 점검 시 공유</li> </ul> </li> </ul>

## II 면접교섭의 서비스 제공 방법

### 1 서비스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의해 보호조치된 아동
  - '21.12.30. 이전에 보호조치된 아동도 포함하며 원가정(가족)과의 장기적인 연락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면접교섭 이행이 불가능한 아동은 제외 가능
  - ※ 「민법」 제779조에 해당하는 가족에 의해 기 보호중인 가정위탁아동(일반위탁가정(친인척))의 경우에도 친부모 생존 시 면접교섭 지원 대상에 포함
  - ※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아동)은 면접교섭 지원 대상에서 제외

〈표〉 면접교섭지원 대상

구분	보호조치 근거 조항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52조
보호조치 결정주체	시·도 또는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사법기관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면접교섭 지원대상	해당	제외

※ 단, 「아동학대처벌법」 제46조, 제52조에 의해 아동의 분리 보호가 지속되어 「아동복지법」 15조에 의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면접교섭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개별 보호·관리 계획' 수립 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면접교섭 이행 여부 결정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보호조치 중 아동이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

### 2 지원 기간

- 면접교섭은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 수립 시점부터 계획되어야 하며 원가정 복귀 또는 종결(연령도래 종결 포함) 시까지 지속

### 3 서비스 제공 방향

#### 가. 아동 특성별 서비스 제공 방향

지자체(아동보호전담요원)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은 아동의 보호예상 기간, 보호유형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1) 단기간 내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 경우

원가정의 아동 양육의지가 강하지만 빈곤 및 양육의 어려움(비학대)으로 아동 보호를 의뢰하는 등 단기간 내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 경우 아동과 원가정 간 높은 빈도의 면접교섭 진행

##### 2)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단기간 내 원가정 복귀가 힘들며 친부모의 소재불명 등으로 면접교섭이 어려운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조부모·형제·자매 등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 유지해 주는 형태의 주기적 면접교섭 진행

##### 3) 고위험 아동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학대피해를 당한 이력이 있는 아동의 경우 반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 보호전문기관)과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면접교섭 이행 여부 결정

※ 양육상황 점검 주기에 맞추어 면접교섭 이행 여부 재평가 필요

<표> 유형별 면접교섭 제공 방향

유형	면접교섭 제공 방향
단기	- 높은 빈도의 면접교섭 진행을 통해 조속한 원가정 복귀 지원
장기	-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과 조부모·형제·자매 등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
고위험	-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반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면접교섭 이행 여부 결정

## 나. 아동의 적응단계별 서비스 제공 방향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은 보호아동에 대한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시 아동의 적응상태, 아동 및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면접대상자·주기·방법 등 세부 계획 수립

### 1) 배치 초기

배치 초기 및 적응단계에는 원가정(가족)과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담당자, 원가정(가족), 아동이 함께 만나는 형태로 추진하되 아동과 가장 가까운 연고자를 우선으로 면접교섭 실시

※ 소규모시설(아동그룹홈 등)의 경우 시설 내 면접장소 마련이 어려운 경우 제 3의 장소에서 면접 진행

### 2) 적응기

원가정(가족)과 아동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시설(센터) 담당자가 동석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평가될 경우 시설 내에서 담당자 없이 아동과 가족이 만나거나, 원가정 방문, 외출(외박)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정위탁) 위탁가정과 원가정(가족)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 위탁부모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정위탁 지원센터 담당자 없이 위탁가정과 원가족이 직접 연락하여 면접교섭 수행 가능(단, 위탁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 센터 담당자가 아동을 인도하여 면접 진행)

※ 아동의 원가정 방문은 반나절→하루→1박 2일 등 순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도록 하며 방문 일정이 길어질 경우 숙제, 위생관리 등 평소 일과를 지킬 수 있도록 안내

### 3) 원가정 복귀 준비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가정(가족)이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경험하는 방향으로 지원

※ 원가정(가족)이 아동의 학교 행사, 병원 진료, 옷 사주기 등을 직접 해보며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으로 경험하도록 함(위탁아동의 경우 위탁가정과 사전에 협조하여 진행)

**Tip** 면접교섭 이행 전 고려사항

지자체 및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는 면접교섭을 진행하기 전 원가정(가족)이 가진 문제에 대해 예측 및 대비

- ① 원가정(가족)의 정서적 문제 파악  
원가정(가족)은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죄책감 또는 시설(센터) 담당자에게 느끼는 부끄러움 등으로 인해 만남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며 시설(센터) 담당자는 원가정(가족)이 만남을 회피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
- ② 원가정(가족)의 양육기술 교육  
양육경험의 부족으로 아동을 상대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 또는 아동이 시설(센터)담당자 또는 위탁부모에게만 반응할 때 느끼는 부러운 감정 때문에 만남을 주저하는 경우 양육기술에 대해 원가정(가족)에게 미리 교육하는 것이 필요
- ③ 원가정(가족)의 돌발행동 대비  
원가정(가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동을 만나러 오거나, 약속을 하지 않고 보호시설(위탁가정)을 방문하는 등의 돌발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협조 요청 필요  
※ 술에 취한 상태로 아동을 만나러오거나, 약속된 시간 이외에 방문 또는 약속 시간보다 지나치게 늦을 시 면접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에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는 방법 활용 등  
※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면접을 제한할 수 있음(단, 아동의 보호 시설 또는 위탁가정 적응을 돕기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라 볼 수 없음)

## 4 면접교섭 방법

### 가. 비대면 면접

#### 1) 정기적으로 연락하기

- ① 목적 및 목표
  - 원가정(가족)과의 관계 유지 및 교류
  - 다양한 비대면 면접을 통해 서로의 근황 확인
- ② 내용 및 방법
  - 정기적으로 영상통화, SNS, 문자, 전화, 서신 등을 통해 아동과 원가정(가족)간의 연락 체계 유지
  - ※ 가정위탁 또는 소규모시설(그룹홈)의 경우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고려



**Tip** 원가정(가족)이 수감된 경우

연령이 낮은 아동이 원가정(가족)을 만나기 위해 교도소·정신병원에 가는 경험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편지나 전화 등을 통해 관계를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함. 아동의 연령이 어려 직접 편지나 전화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가 아동에 관한 소식을 원가정(가족)에게 전해주고, 원가정(가족)이 아동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

**나. 대면 면접****1)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내방**

## ① 목적 및 목표

- 안전한 장소에서 아동이 원가정(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함
- 보호기간 동안 아동양육에 대한 원가정(가족)과 종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아동양육 파트너십 형성

## ② 내용 및 방법

- 원가정(가족)의 내방 전 아동 특성에 따른 사전준비와 교육을 실시
  - ※ 내방 전 원가정(가족)과 보호시설 양육자가 일관된 양육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의 평소 일과 등을 공유하고 합의
- 원가정(가족)과 아동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분리된 장소 마련
  - ※ 원가정(가족)의 돌발행동 등 위험이 있는 경우 담당자가 동석하여 면접 진행
  - ※ 소규모시설(아동그룹홈 등)의 경우 시설 내 면접장소 마련이 어려운 경우 제 3의 장소에서 면접 진행
- 필요시 원가정(가족)이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장난감, 책, 게임, 간식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

**2) 원가정(가족) 방문 또는 외출(외박)**

## ① 목적 및 목표

- 아동이 원가정(가족)을 방문하거나 외출(외박)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함

## ② 내용 및 방법

- 방문 또는 외출(외박)을 하기 전에는 원가정(가족)과 논의하여 방문기간 동안 해야할 일, 함께 할 일 등에 대해 미리 계획
  - ※ 원가정(가족)이 아동의 학교 행사, 병원 진료, 옷사주기 등을 직접 해보며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으로 경험하도록 함(위탁아동의 경우 위탁가정과 사전에 협조하여 진행)
- 원가정(가족) 방문 또는 외출(외박) 시에는 ‘외출(외박) 신청서’[서식 5]를 작성 및 제출

- 아동이 시설(위탁가정)로 돌아오면, 아동의 소감을 확인하여 ‘면접교섭 결과보고서’ [서식 3] 작성 및 다음 면접 계획 수립에 활용
- 아동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이나 주말, 명절, 방학 등의 기간을 활용
  - ※ 단, 특별한 경우(예: 원가정(가족)의 입원 등)를 제외하고 원가정(가족)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 내방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주소지 노출 예방을 위해 제 3의 장소에서 면접하는 것으로 시작함
  - ※ 아동의 원가정(가족) 방문은 반나절, 하루, 1박 2일 등의 순서로 점차 시간을 늘려가도록 함
  - ※ 일정이 길어질 경우 숙제, 위생관리 등 규칙적인 일과에 대해 아동과 원가정(가족)이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시설(센터) 담당자가 계획과정을 지원하도록 함
  - ※ 원가정(가족)이 데리러 올 수 없거나, 아동의 연령이 어린 경우 등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설(센터) 담당자, 아동보호전문요원 등 성인이 아동과 동행하여 안전하게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

### 3) 제 3의 장소(외부 장소)에서의 만남

#### ① 목적 및 목표

-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시설 주소지 노출에 따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함
  - ※ 학대가해자 외 가족과 면접하는 경우에도 면접자를 통해 학대가해자에게 아동 주소지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학대피해아동은 초기 면접 시 반드시 외부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함

#### ② 내용 및 방법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장소 제공 등의 협조 요청
- 아동의 안전한 하차 및 픽업 장소를 마련하도록 함

### 4) 가족활동프로그램

#### ① 목적 및 목표

- 원가정(가족)과 아동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안전한 놀이 및 상담 환경에서 아동-부모가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감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킴
- 원가정(가족)과 아동 간의 갈등 감정을 감소시키고, 공감 기술을 향상시킴

#### ② 내용 및 방법

- 아동(심리치료 및 놀이지원 등)과 원가정(양육기술교육, 상황대처기술 등) 대상 교육 및 가족활동 등을 지원
  -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가족단위 활동(가족캠프 등)에 참여 또는 협력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자원 및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진행 가능
  - ※ 상황이 가능할 시 원가정 복귀 후 같이 살게 될 가족 전체가 참여하도록 함

## 5 면접교섭 결과보고 및 공유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는 면접교섭 이행 후 그 결과를 면접교섭 결과보고서[서식 3] 작성을 통해 평가하고 다음 면접 계획 수립에 활용
  - ※ 아동과 원가정(가족) 간 행동 및 심리상태를 면밀히 관찰 및 평가하여 이후 면접교섭 계획에 반영
  - ※ 비대면 면접의 경우 '비대면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서식 3의 1호] 작성
  - ※ 단, 위탁아동이 동일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 여러 차례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경우(예: 월 3회 이상)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여러 이행건의 결과를 한 건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음
-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상황 점검시 '면접교섭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면접교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양육상황 점검표[서식 4]에 기록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원가정의 상황 및 변화에 대해 공유하여 이후 면접교섭 서비스계획 변경 및 보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 Tip 면접교섭 이행결과 점검 시 고려할 사항

- ①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원가정(가족)이 아동을 만날 때 술에 취해 있거나, 약속을 하고 오지 않는 등 아동을 실망시키는 경우에도 담당자가 아동과 원가정(가족)과의 면접에 대한 회의감을 갖지 않도록 하며 원가정(가족)이 아동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강점관점 기반으로 찾기 위한 노력 필요
- ② 원가정(가족)  
아동이 원가정(가족)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보면 원가정(가족)이 양육을 해야 한다는 동기나 자신감이 약화될 수 있음. 이 경우, 아동은 가족과 함께 살 때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아동의 원가정(가족) 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동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원가정(가족)에게 인식시켜야 함
- ③ 아동  
원가정(가족)과의 만남 후 나타나는 아동의 행동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님. 원가정(가족)에 대한 애착 및 양가감정일 수 있으며 이는 원가정 복귀에 필요한 준비 과정임을 담당자는 인식해야 함
- ④ 위탁가정  
위탁부모는 원가정(가족)과의 만남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함. 특히, 원가정(가족)이 면접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위탁부모가 원가정(가족)을 비난하기 보다는 아동에게 위안과 지지를 통해 실망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함. 또한, 아동이 원가정(가족)과의 만남 이후 보이는 행동 변화 등을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과 공유하는 등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함

### III 행정사항

가. 면접교섭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15조의5 시행일 기준으로 보호 중인 아동도 포함하여야 한다.

나. 다만, 기보호 중인 아동의 면접교섭 지원 계획(아동보호전담요원) 및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계획(아동복지시설)은 2023년 1분기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 각 시·도에서는 매월말 기준으로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우리 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상반기까지는 월별로, 하반기부터는 분기별로 제출
- 제출시기 : 매월말 기준 작성,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 작성양식

(기준 : 매월말, 단위 : 아동수)

구분	보호유형		아동현황			면접교섭 지원계획		면접교섭서비스 제공계획		면접교섭 실시여부							
			전체 아동 수	면접대상 아동수	면접 미대상 아동 수	수립	미수립	수립	미수립	실시	비대면	대면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시도명	기보호	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소계														
		가정위탁															
		소계															
	신규보호	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소계														
		가정위탁															
		소계															
	계																

\* 면접교섭 불가능 사유 : 면접교섭대상 모두 사망, 면접교섭대상 모두 연락두절, 유기, 미아, 법적 처분 및 학대고위험군, 기타

서식 1 개별 보호·관리 계획

개별보호·관리계획서(피해아동보호계획서)

보호의뢰 사유 (※중복 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미혼부모·혼외자 <input type="checkbox"/> 미아 <input type="checkbox"/> 가출 <input type="checkbox"/> 비행·부랑 <input type="checkbox"/> 아동학대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빈곤·실직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사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질병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수감 <input type="checkbox"/> 부모이혼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진
신원 ※ 신원불명시 「실종아동법」 신상카드 작성 <input type="checkbox"/> 신원 확인 <input type="checkbox"/> 신원 불명				182신고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아동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실거주지					
보호자 (원가정)	관계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실거주지					
가구유형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구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구 <input type="checkbox"/> 부부중심가구 <input type="checkbox"/> 조손가구 <input type="checkbox"/> 미혼모부가구 <input type="checkbox"/> 공동체가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가구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가구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구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가능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가능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가능여부
육구 조사 결과	아동의 육구(우선순위)					
	<input type="checkbox"/> 안전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 유지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관계	
	<input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생활환경	<input type="checkbox"/> 법률 및 권익보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					
	보호자의 육구(우선순위)					
	<input type="checkbox"/> 안전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 유지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관계	
	<input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생활환경	<input type="checkbox"/> 법률 및 권익보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					
	관찰된 보호자의 특성:					

보호계획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			
	<input type="checkbox"/> 상담·지도(1호) <input type="checkbox"/>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2호) <input type="checkbox"/> 가정위탁(3호)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시설(4호) <input type="checkbox"/> 전문치료기관·요양소(5호) <input type="checkbox"/> 입양(6호)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보호조치 일자	년 월 일	보호의뢰 기관	기관(시설)명: 기관(시설)종류:
아동 서비스 계획	육구영역	단기목표	장기목표	서비스내용
면접교섭 자원계획	면접교섭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비대면 가능 (대면 불가) ※면접교섭 불가능 사유 <input type="checkbox"/> 면접교섭대상 모두 사망 <input type="checkbox"/> 면접교섭대상 모두 연락두절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미아 <input type="checkbox"/> 법적 처분 및 학대 고위험군 <input type="checkbox"/> 기타(    )		
		※비대면만 가능(대면불가)사유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수감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질병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아동이 영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월 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분기 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반기 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연 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		
	면접교섭 주기			
지원내용				
원가정 점검 계획	(원)가정복귀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원가정복귀 불가능 사유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사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연락두절 <input type="checkbox"/> 입양대상아동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미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가정 지원방법	※중복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상담 <input type="checkbox"/> 사례관리 연계 <input type="checkbox"/> 금품지급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원내용			
담당자 의견				
수립일	년 월 일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고유 업무)
시기	- 상담·조사·사정 과정 완료 후(접수상담, 욕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점검) - 보호유형 변경, 위탁가정 변경, 타 시·군·구 사례이관 시 보호계획 변경
작성목적	- 접수상담 및 아동·친부모상황점검 등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아동을 보호하게 될 보호기관(가정)에서 제공할 서비스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서 사례관리 계획
작성방법	- 아동 및 친부모(보호자), 주변인 상담 내용, 욕구조사 결과, 아동 및 친부모상황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 - 원가정지원(복귀)계획의 경우 보호자의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 중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작성한 피해아동 보호계획으로 같음 - 아동·친부모상황점검, 욕구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변경 -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조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부터 확인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관찰된 보호자 특성」란에 기입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함 -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른 운동기능, 미숙아 출생, 신체성장발달 지연, 신체적 질병, 장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 등 칸에 작성 예) 출생 시 몸무게 2.5 이하,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신체기능의 장애, 정신적 장애, 만성적 질병으로 빈번한 입원, 치료, 알레르기, 지속적 약복용, 아토피, 비언어적, 언어적 의사 표현 불가, 주 양육자와 의사소통 어려움 등 - 아동복지법 개정('21.12.30.)으로 이전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 보호대상아동은 차기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면접교섭지원계획을 수립 후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변경
활용방법	- 원가정의 보호기관 서비스 계획수립, 아동 양육상황점검, 원가정 복귀 계획 수립 등 아동의 보호종료(원가정 복귀)시점까지
기타	- 개별보호·관리계획(변경)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항목		작성내용
아동, 보호자, 가구유형, 가족관계, 욕구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상담, 욕구조사 내용과 동일(시스템 자동 연동)</li> <li>-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른 운동기능, 미숙아 출생, 신체 성장발달 지연, 신체적 질병, 장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찰된 (피해) 아동의 특성」 등 칸에 작성</li> <li>-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관찰된 보호자 특성」란에 기록</li> <li>- 보호자는 부모,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임(민법777조)</li> <li>- 욕구조사에서 가족사항이 조사되면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반영되며, 면접 동의여부 확인 후 별도 체크</li> </ul>
보호계획	상담·지도,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크 후 드림스타트로 사례이관</li> <li>※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대상 제외</li> </ul>
	가정위탁, 아동 복지시설, 전문 치료·요양원, 입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상황점검 및 사후관리대상</li> <li>※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대상</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쉼터, 장애인거주시설로 보호조치 시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해당 부서로 사례이관(아동보호팀에 이관하지 않으며, 시스템 에서는 심의결과까지 입력 후 종결)</li> </ul>
	보호조치일자, 보호의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입소 날짜 등, 해당 원가정의 보호기관명 및 시설종류 기재 예) 기관(시설)명: 하늘 천사원 기관(시설)종류: 양육시설</li> </ul>
아동 서비스 제공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구영역, 단기목표, 장기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li> <li>-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른 운동기능, 미숙아 출생, 신체 성장 발달 지연, 신체적 질병, 장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찰된(피해) 아동의 특성」 등 칸에 작성</li> <li>※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에 2021년 건강검진 사업 안내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계획 등</li> </ul>
면접교섭 지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교섭 가능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교섭 가능여부 체크(불가능 체크 시 반드시 사유 확인)</li> <li>※ 면접교섭이 가능한 가족범위(민법 779조): 친부모, 양부모, 계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li> <li>※ 면접교섭은 '대면'이 원칙이며, 보호의뢰 사유에서 보호자 수감, 보호자 질병 및 아동이 영아인 경우 등에 한하여 비대면만가능(대면불가)</li> <li>- 면접교섭지원계획은 가족관계에서 면접교섭가능여부 확인 후 해당 가족 구성원의 연락처 확보</li> </ul>



항목	작성내용
	<p>※ 단, 「아동학대처벌법」 제46조, 제52조에 의해 아동의 분리 보호가 지속되어 「아동복지법」 15조에 의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면접교섭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개별 보호·관리 계획' 수립 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면접교섭 이행 여부 결정</p> <p>*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보호조치 중 아동이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p>
면접주기	- 면접교섭 대상자의 면접주기 체크
지원내용	<p>- 지원내용 등 작성</p> <p>예) 격월 1회 외조모택에 가정방문(외출) 필요 월 1회(첫째주 금요일) 친모집에 외박(1박) 필요</p>
원가정 지원 (복귀) 계획	<p>원가정 복귀 가능여부 - 원가정 복귀 가능여부 체크(불가능 체크 시 반드시 사유 확인)</p> <p>상담, 사례관리 연계, 금품지급, 기타 - 욕구조사, 친부모상황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원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기재 예) 분기별 상담 및 취업정보(국비지원 미용자격증 취득과정) 제공 - 입양아동의 경우 작성 제외</p>
원가정 점검 계획	<p>원가정복귀 가능여부 - 보호자(원가정)를 원가정점검 대상으로 보며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체크함</p> <p>원가정지원방법 - 보호자의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 상담, 사례관리 연계, 금품지급, 기타 체크</p> <p>지원내용 - 욕구조사, 친부모상황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원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기재 예시: 분기별 상담 및 취업정보(국비지원 미용자격증 취득과정) 제공</p>
담당자 의견	- 아동과 보호자와 종합적인 보호계획 의견 정리
수립일	- 심의날짜가 기준이나, 사후심의 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확정된 날짜

서식 2 서비스제공 계획서

〈신설〉

서비스제공 계획서

사례(관리)번호						
아동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동의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동의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동의여부
아동 상황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아동의 욕구에 관한 사항					
아동 서비스 계획	욕구영역	서비스 제공내용		방법	제공기관(담당자)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	면접교섭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비대면 가능(대면 불가) ※비대면만 가능(대면불가)사유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수감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질병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아동이 영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월 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분기 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반기 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연 1회 이상 ※면접교섭 불가 사유 <input type="checkbox"/> 면접교섭대상 모두 사망 <input type="checkbox"/> 면접교섭대상 모두 연락두절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미아 <input type="checkbox"/> 법적 처분 및 학대 고위험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지원내용	※보호시설 주소지 노출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작성)				
원가정 지원계획	※상담, 사례관리 연계, 금품지급 등					
아동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서비스 계획 수립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시기	- 아동 배치 후 1주일 이내 ※ 일반위탁(친인척외) 및 전문위탁의 경우 2주 이내, 일반위탁(친인척)의 경우 2개월 이내 수립
작성목적	- 개별보호관리 계획에 맞게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작성방법	- 아동의 가족관계, 아동 상황, 아동 서비스 계획,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 원가정 지원 계획, 아동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활용방법	- 아동 양육상황점검 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적절성, 목적달성, 아동의 변화 등의 점검 근거로 활용
기타	- 개별 보호·관리 계획 변경 시 현행화

항목		작성내용
가족관계		- 개별 보호·관리 계획 「가족관계」를 참고하여 작성 및 면접교섭동의여부 체크
아동의 상황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아동의 욕구에 관한 사항	- 개별 보호·관리 계획 「담당자 의견」 및 아동과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예)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관한 사항) 아동은 ADHD약을 복용중이며, 약을 먹지 않으면 감정조절이 힘들고 머리를 박는 등 자해행동을 보임 / (아동의 욕구에 관한 사항) 초등 고학년 사춘기에 접어들며 자기 정체성 정립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담 연계가 필요함. 또한, 친가정에 대한 애착이 높아 친부모와 자주 연락하기를 희망함
아동 서비스 계획	육구영역, 서비스 제공내용, 방법, 제공기관(담당자)	- 개별 보호·관리 계획 「육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육구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내용, 방법, 제공기관(보호종인 시설명) 작성
면접교섭 가능여부		- 면접교섭 가능여부 체크(불가능 체크시 반드시 사유 확인)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계획	지원내용	- 아동이 면접 대상자와 진행할 면접 방법, 주기 등 작성 (※ 양육상황 점검 시기에 맞춰 필요시 변경 및 보완) · 아동복지시설: 아동 배치 후 1주일 이내 작성 · 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친인척 외) 및 전문위탁의 경우 2주 이내, 일반위탁(친인척)의 경우 2개월 이내 수립 예) 친모와 월 1회 대면 면접 시행 예정. 또한, 외조모와도 격월 대면 면접을 진행할 예정. 3개월 간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담당자가 참석하여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관계 변화정도에 따라 외출, 외박 등 면접을 지원 ※ 보호시설 주소지 노출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주소지 노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작성 예) 원가정(가족) 소재지 시군구청에 장소 협조 요청 등
아동 및 관련 전문가의 소견		- 아동과 보호자와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의견 정리 ※ 필요시 심리상담 등을 통해 전문가 소견 추가
수립일		- 작성일 기준

서식 3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

〈신설〉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

관리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아동 정보	아동명, 생년월일																
면접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친부	<input type="checkbox"/> 친모	<input type="checkbox"/> 양부	<input type="checkbox"/> 양모	<input type="checkbox"/> 계부	<input type="checkbox"/> 계모	<input type="checkbox"/> 형제	<input type="checkbox"/> 자매	<input type="checkbox"/> 친조부	<input type="checkbox"/> 친조모	<input type="checkbox"/> 외조부	<input type="checkbox"/> 외조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				
	(성명)																
면접 대상자 외 참석자	아동복지시설담당자, 위탁부모,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사 등 면접 대상자 외 타인의 참석 여부																
면접 개요	면접날짜	yy.mm.dd ~yy.mm.dd	시작시간	00:00	종료시간	00:00	장소	면접 방법									
								<input type="checkbox"/> (대면) <input type="checkbox"/> 시설(센터) 내방 <input type="checkbox"/> 외출(원가정 방문/무박) <input type="checkbox"/> 외박(원가정 방문/1박 이상) <input type="checkbox"/> 제 3의 장소 만남 <input type="checkbox"/> 가족활동프로그램 참여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비대면) <input type="checkbox"/> 영상통화 <input type="checkbox"/> 음성통화 <input type="checkbox"/> 문자(SNS 포함) <input type="checkbox"/> 서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					
면접 내용																	
면접 사유	정기 면접, 기념일, 학교행사 등																
취소 또는 중단 사유	해당 시 작성																
아동 소감	면접을 하며 좋았던 점, 의미가 있던 점, 다음 면접 시 희망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작성																
작성자 의견	면접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면접 시 분위기, 아동과 면접 대상자 간 상호작용 등)																
다음 면접 계획	면접 예상 날짜·장소·방법, 참석 예정자 등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시기	- 면접교섭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면접교섭 결과보고서 작성 ※'서비스제공 계획서'에 계획된 정기적 면접 이행 직후
작성목적	- 면접교섭 내용 평가 및 다음 면접 계획 수립
작성방법	- 면접 대상자, 면접 개요, 면접 내용, 면접 사유, 면접 취소 또는 중단 사유, 아동 소감, 작성자 의견, 다음 면접 계획 등 상세히 작성
활용방법	- 양육상황 점검 시 면접 이행 여부 모니터링의 기초 자료로 활용
기타	- 면접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

항목		작성내용
아동정보		- 아동명, 생년월일 작성
면접 대상자		- '서비스 제공 계획서'의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참석자 체크 및 성명 작성
면접 대상자 외 참석자		-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위탁부모,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사 등 면접 대상자 외 타인의 참석 여부 작성
면접 개요	면접날짜, 시작시간, 종료시간, 장소, 방법	- 면접날짜, 시작시간, 종료시간, 장소 작성 및 면접 방법 체크 ※ 비대면 면접의 경우 시작시간, 종료시간, 장소 생략 가능
면접 내용		- 아동과 원가정이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함께 한 일 등에 대해 작성 예) 아동 유치원 행사에 친모, 외조모가 참관 후 함께 저녁 식사/아동의 사진 등을 담은 서신을 친모가 수감 중인 교도소에 전달 / 입원중인 친모에게 영상통화로 아동이 생활하는 모습 등을 보여줌
면접 사유		- 정기적 만남(면접), 기념일(생일), 입학식/졸업식 등 사유 작성
면접 취소 또는 중단 사유		- 계획된 면접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여 작성(연락없이 만남을 취소, 술에 취해있어 중단, 교통문제, 불규칙한 근무로 인한 취소, 면접 대상자 병세 악화로 통화 불가 등)
아동 소감		- 면접을 하며 좋았던 점, 의미가 있던 점, 다음 면접 시 희망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영아의 경우 아동 소감 생략 가능
작성자 의견		- 면접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정서안정, 즐거운 감정 표현, 자신감 회복, 정체성 확립, 양가감정, 퇴행, 화내기, 우울감표출 등) 작성
다음 면접 계획		- 면접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면접의 예상되는 날짜, 장소, 방법, 내용, 사유, 참석자 등을 작성

서식 4 양육상황 점검표

양육상황 점검표

점검일	년 월 일 ( 차)		관리번호		년 월 일
아동정보	성명	성별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일		생년월일
	보호조치 (아동복지법15조)	□남 □여			년 월 일
	보호조치일	년 월 일	보호기관		보호기관 담당자
개별보호· 관리계획점검	육구영역	목표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육구점검 및 평가 (서비스 적절성, 목적달성, 아동의 변화)
		단기	장기	서비스 제공기관	
아동의 상황 (적응상태, 변화정도, 만족도 등)		〈아동 보호조치의 만족여부, 구성원과의 관계, 서비스 만족, 등〉			
면접교섭 이행 점검	면접교섭 이행 여부	(대면) □이행 총 ( )회 □미이행 (비대면) □이행 □미이행			※ □면접교섭 이행불가
	이행 내용	※면접교섭 미이행 사유 □연락두절 □병리적 문제 □직장문제(근로) □금전적 문제 □교섭주기 미도래 □기타 ( ) 〈정기면접, 기념일 축하 등〉			
원가정점검	원가정 점검 여부	□점검 □미점검			※ □원가정점검 불가
	점검 방법	※원가정 미점검 사유 □연락두절 □병리적 문제 □직장문제(근로) □기타 ( )			
	지원 내용	※중복체크 가능 □방문( )회 □내방( )회 □유선( )회 □외부( )회 □기타( ) 총( )회 ※중복체크 가능 □상담 □사례관리 연계 □금품지급 □기타( ) 〈원가정 지원계획 대비 작성〉			
점검 후 조치계획	[ ] 현 보호 유지( ) [ ] 보호계획 변경( ) [ ] 보호조치 변경( ) [ ] 보호종결( [ ]연령도래 [ ] 원가정 복귀 [ ] 기타( ) )				
점검결과 및 총평	〈면접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 아동소감, 원가정 점검 결과 등 담당자의 종합적 의견〉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고유 업무)
시기	- 아동 분리 보호조치 1차(1개월 이내) 이후 3개월 주기로 실시 - 보호 중 아동의 다른 욕구 발생 시(서비스 변경) - 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 -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거나 보호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목적	-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의 제공서비스 및 아동 변화 정도 점검 - 원가정 점검을 통한 가정복귀 시점, 가족 변화 정도 파악
작성방법	- 아동, 친부모(보호자), 원가정의 보호기관 담당자 상담(유선, 대면 등)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항목 기록 -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계획 수립 및 제공여부 등 ※ 필요시 아동, 친부모 상황점검표 활용 - 면접교섭 이행점검은 면접교섭결과보고서(원가정외보호기관 수행)를 바탕으로 점검 - 원가정 점검은 보호자(친권자·후견인)가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원가정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 -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작성된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의 변화상황을 반드시 작성 예) 알레르기 완치, 주 양육자와 의사소통 향상, 차수별 영유아건강검진 수검결과 등
활용방법	- 보호계획 변경, 원가정 복귀 계획 수립, 보호종결 등

항목		작성내용
점검일		- 아동을 보호조치이후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날짜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일		- 심의날짜가 기준이나, 사후심의 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확정된 날짜
아동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 접수상담, 욕구조사 내용과 동일(시스템 자동 연동)
	보호조치	-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아동의 보호(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3호~6호 해당)조치사항
	보호기관	- 아동이 보호되는 기관명 예) 00가정위탁지원센터, 00보육원
	보호조치일	- 시설입소 날짜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 아동 담당자(상담원, 생활복지사) 성명 기재
개별보호·관리 계획 점검	욕구영역 및 목표	- 욕구조사 결과(시스템 자동 연동)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에 따른 욕구점검및 평가	-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수립한 아동서비스 제공 계획에 맞게 받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 기관 기재 - 아동 및 양육자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적절성, 목적 달성, 아동의 변화(신체변화, 심리·정서 상황, 교육 상태 등) 등을 기재

항목		작성내용
아동의 상황 (적응상태, 변화정도, 만족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적응상태, 변화정도, 구성원과의 관계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 등을 기재 (아동의 실제 욕구 등 파악)</li> <li>-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작성된 「관찰된 (피해) 아동의 특성」의 변화상황을 반드시 작성 예) 알레르기 완치, 주 양육자와 의사소통 향상 등</li> </ul>
면접교섭 이행 점검	면접교섭 이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관계자가 작성한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접 이행여부, 횟수 체크 ※ 면접교섭계획이 있으나 미이행한 경우 미이행 사유 체크 ※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면접교섭 가능여부에서 불가능으로 체크한 경우 면접교섭 이행불가에 체크</li> </ul>
	이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이행 내용(대상, 방법) 작성 예) 친모가 아동 생일을 맞이하여 외박(1박, 3월5일)</li> <li>- 아동면접 결과(아동소감)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및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재</li> </ul>
원가정점검	원가정 점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원가정점검 이행여부 체크</li> <li>- 미점검 시 미점검 사유 체크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불가능한 경우 원가정점검불가에 체크</li> </ul>
	점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방문, 내방 유선, 외부 기타 등 각각의 횟수를 기록하고 최종 횟수 기록</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수립했던 원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의 달성 정도 및 부모의 양육환경 변화 정도 기재</li> </ul>
점검 후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점검 후 종합적인 양육상황 결과 기재</li> <li>① 현 보호 유지: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아동의 변화가 긍정적인 경우</li> <li>② 보호계획 변경: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계획이 수립 되지 않았거나,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원가정외 보호기관 해당 사유 확인 후 보호계획 변경 또는 서비스 계획 변경 실시(시군구 사례회의(내부회의)를 통해 결정(사례결정위원회 심의제외가능)</li> <li>③ 보호조치 변경: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계획이 수립 되지 않았거나,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아동이 부정적이거나, 아동이 현 보호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 변경 실시(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해야함)</li> <li>④ 보호조치 종결: 아동이 원가정 복귀하거나 연령도래로 종결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종결함)</li> </ul>
담당자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상황점검 결과에 따른 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 종합적 소견(객관적 사실, 구체적으로 작성, 추측성 작성 금지)</li> </ul>
소속, 직급,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의 소속, 직급, 서명 기재</li> </ul>



## 서식 5 외출(외박) 신청서

〈신설〉

## 외출(외박) 신청서

1. 본인은 아동과 외출(외박) 후 아동을 기관에 귀가조치 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2.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기관과 함께 결정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 약속사항:  
*(예시: 아동을 체벌하지 않는다. 학교에 지각시키지 않는다. 용돈은 ~원까지 허용한다. ~원 이상의 고가의 선물을 사주지 않는다 등)*
3. 본인은 약속한 외출(외박)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하겠습니다.
4. 아동과의 외출(외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로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5. 신청 정보
  - 신청자 이름:
  - 신청자 연락처:
  - 아동과의 관계:
  - 아동이 머물 곳:
  - 외출(외박) 기간: 월 일 시 부터 ~ 월 일 시 까지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며 외출(외박)을 요청합니다.

신청자: 000 (서명)

담당자: 000 (서명)

0000년 00월 00일

(기관명) 장 귀하





서식모음

## II. 가정입양 지원

1

가정입양 지원

〈서식 1호〉 입양사실확인서 .....	343
〈서식 2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실적 .....	344
〈서식 3호〉 입양비용 지급신청서 .....	345
〈서식 4호〉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 .....	348
〈서식 5호〉 산후지원 서비스 이용 신청서 .....	349
〈서식 6호〉 산후지원 서비스 결정 통지서 .....	350
〈서식 7호〉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신청서 .....	351
〈서식 8호〉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지원현황 .....	353
〈서식 9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급여계좌변경신청서 .....	354



〈서식 2호〉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시·군·구	지 원 인 원			지 원 금 액			비 고
	계	입양당시 장애아동	입양후 장애 발생아동	계	양육보조수당	의 료 비	
계							

※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서식 3호>

(앞쪽)

<b>입양비용 지급신청서</b> ( <input type="checkbox"/> 입양알선비용 <input type="checkbox"/> 입양철회비용 )				처리기간
				10일
입양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input type="checkbox"/> 시·도 허가기관 )			
입양알선비	신 청 인 원	명	신 청 금 액	원
입양철회비	신 청 인 원	명	신 청 금 액	원
입양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입양비용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 10px 0;"> <span>신청인</span> <span>서명(인)</span> </div>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구비서류 : 1. (입양알선비용 신청)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입양철회비용 신청) 입양동의서 및 입양동의 철회서 각 1부. 3. (숙려기간 아동가족보호비용 신청) 별도 통보				

(뒤쪽)

□ 입양부모 및 입양아동 명단(입양알선비용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

1	양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입양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일자	년 월 일	양육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2	양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입양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일자	년 월 일	양육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3	양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입양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일자	년 월 일	양육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4	양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입양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일자	년 월 일	양육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양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입양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일자	년 월 일	양육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양식은 신청인원 만큼 연장하여 사용가능



□ 친생부모 및 아동 명단(입양철회비용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

1	친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호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 동의일자	년 월 일	입양동의 철회일자	년 월 일
2	친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호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 동의일자	년 월 일	입양동의 철회일자	년 월 일
3	친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호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 동의일자	년 월 일	입양동의 철회일자	년 월 일
4	친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호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 동의일자	년 월 일	입양동의 철회일자	년 월 일
...	친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호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 동의일자	년 월 일	입양동의 철회일자	년 월 일

※ 양식은 신청인원 만큼 연장하여 사용가능

〈서식 4호〉

<b>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b>			
① 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 적용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③ 적용방식	<input type="checkbox"/> 사전지원방식		<input type="checkbox"/> 사후지원방식
④ 계좌번호	은행(예금주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p><b>작성요령</b></p> <p>① 입양아동이 기재될 건강보험증 상의 세대주를 기재합니다.</p> <p>② 의료급여를 적용할 아동을 기재합니다.</p> <p>③ 원하는 적용방식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지원방식 :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표시하고, 현행과 같이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 면제</li> <li>- 사후지원방식 : 건강보험증에 수급권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고 사후에 본인부담금 환급</li> </ul> <p>④ 사후지원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li> <li>- 환급받은 본인부담금의 세부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a href="http://www.nhic.or.kr">http://www.nhic.or.kr</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i> </ul>			

210mm×297mm(신문용지 54g/㎡)



〈서식 6호〉

산후지원 서비스 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출산예정일																
서비스 개시(예정)일																				
<p>1. 귀하가 신청한 서비스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원 이용 <input type="checkbox"/> 산후지원인력 가정 방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 <input type="checkbox"/>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 이용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2. 귀하의 지급예정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산후조리원 이용의 경우 해당 없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15%;">예금주</th> <th style="width: 15%;">금융기관</th> <th style="width: 20%;">계좌번호</th> <th style="width: 10%;">급여액</th> </tr> </thead> <tbody> <tr> <td><input type="checkbox"/> 본인</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미혼모자가족시설</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해당 급여액은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p> <p>3. 산후지원인력 가정 방문서비스 이용 신청의 경우, 이용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담당공무원과 사전협의), 출산(예정)일로부터 <b>30일 이내 미제출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b></p> <p>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는 <b>환수될 수 있습니다.</b></p>						구분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액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미혼모자가족시설				
구분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액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미혼모자가족시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																				
<b>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b>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미혼모(산모) 이용현황

(뒤쪽)

1	미혼모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이용현황	입소일자	년 월 일	이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2	미혼모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이용현황	입소일자	년 월 일	이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3	미혼모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이용현황	입소일자	년 월 일	이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4	미혼모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이용현황	입소일자	년 월 일	이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5	미혼모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이용현황	입소일자	년 월 일	이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6	미혼모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이용현황	입소일자	년 월 일	이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미혼모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이용현황	입소일자	년 월 일	이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서식 8호〉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지원현황

○ 시·군·구 : (      년      월)

연번	미혼모 성명	생년월일	신청일 (출산일)	신청내역	지급내역		아동조치현황*
					지급일	지급액	

\* 아동조치현황 : 직접양육, 입양의뢰,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구체적 기재

〈서식 9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급여계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아동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성명	(아동과의 관계: )			
	주 소	(전화: )			
	변경급여종류	<input type="checkbox"/> 입양아동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복지 급여 계좌	현 행	금융기관		예 금 주	(아동과의 관계: )
		계좌번호			
	변 경	금융기관		예 금 주	(아동과의 관계: )
		계좌번호			
위와 같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해당 급여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급여통장 사본 1부				





서식모음

## Ⅲ. 가정위탁 보호

1

가정위탁 보호

〈서식 1호〉 위탁부모 추천서 ..... 357

〈서식 2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358

〈서식 2의 1호〉 소재불명조사복명서 ..... 359

〈서식 3호〉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360

〈서식 3의 1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361

〈서식 4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 362

〈서식 5호〉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 통보 ..... 363

〈서식 5의1호〉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 364

〈서식 6호〉 가정위탁보호 현황 ..... 365

〈서식 7호〉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실적 ..... 366

〈서식 8호〉 보험사 선정 및 보험가입 자료 ..... 370

〈서식 9호〉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 통보 ..... 370

〈서식 10호〉 보험금 수령 및 지급 관리대장 ..... 370

〈서식 11호〉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 가입 현황 ..... 371

〈서식 12호〉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 371

〈서식 13호〉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추천서 ..... 372

〈서식 14호〉 아동 심리치료비 청구서 ..... 373

〈서식 15호〉 아동 심리검사 보고서 ..... 374

〈서식 16호〉 아동 심리치료 총괄사례보고서 ..... 375

〈서식 17호〉 심리치료 지원사업 교통비 청구서 ..... 376

〈서식 18호〉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내역 ..... 377



〈서식 2호〉

###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연락처	

1.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위탁유형 :  일반위탁가정    전문위탁가정    일시위탁가정

본인은 아동복지법에 제 15조에 의하여 아동 (    )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 기간 동안 아동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귀 센터에 위임하며, 기타 아동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시·군·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2의 1호〉

### 소재불명조사복명서

1. 조사일시			
2. 조사대상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성명)		
3.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친권자와 연락이 닿은 지 2주 이상 경과 여부</li> <li>• 주소지 방문 및 개인 전화·직장 통한 연락에 무응답 여부</li> <li>• 기타 접촉 조치사항 아래 기재</li> </ul>		
4. 조사결과			
5. 조사자	직급	성명	

본인은 아동 ( )의 친권자의 소재불명 사실 및 친권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상기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복명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3호〉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우리 가족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리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함에 있어 가족 전원이 전적으로 동의하며,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할 때까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위탁양육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1	본인			
2				
3				
4				
5				
6				

20   년    월    일

신청인:

시·군·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3의 1호〉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연 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본인				
2					
3					
4					
5					

본인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및 가족구성원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2호의 아동학대 판단 정보 확인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 4호〉

##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대상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	
	변경 주소	
대상시설 (위탁부모)	연락처	
	시설명(이름)	
	주소	
	연락처	
연장신청 정보	보호 연장기간	[ ] 만 24세까지 연장(별도 사유 불필요) [ ] 만 25세 이상 보호기간 추가 연장
	보호 연장사유	(만 25세 이상 보호기간 추가 연장 시 첨부하는 증명자료 참조)
	연장기간 거주 예정지	[ ] 시설(위탁가정) 내 거주 [ ] 시설(위탁가정) 외 거주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5호>

###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 통보

시·군·구

일련 번호	위탁보호 (변경) 사유	위탁 보호 결정일	위탁 유형	변경일	위탁아동			위탁(부모)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 번호	기초생활 수급자여부 (Y, N)	성명	주민 번호	

- \* 위탁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 \* 변경유형 : 위탁결정(신규), 위탁결정(재위탁), 위탁종결(해지)
- \* 위탁부(모) : 위탁아동을 부양할 위탁부(모) 1인
-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Y), 수급자아님(N)

〈서식 5의1호〉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아동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사후관리 담당자	성명		직위	
사후관리 방법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아동(가정)방문 <input type="checkbox"/> 시설·기관 내방 <input type="checkbox"/> e-mail(사이버)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사후관리 주기	<input type="checkbox"/> 년 1회 <input type="checkbox"/> 6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3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개인정보 공개 및 관리	<p>본 동의서는 보호종료 후 5년(1년)간 사후관리(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사후관리 진행내용은 내부 자료로 보관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정보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 연령도달로 보호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5년, 원가정 복귀로 보호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1년간 사후관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p> <p>※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퇴소 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p>			
아동과 사회복지사의 의무	<p>해당 아동은 신상의 어려움이나 변동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과정에 대한 사실과 기록을 아동과 함께 공유해야 하며, 아동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p> <p>또한 아동은 퇴소 후 자립수준평가(자립상태점검)에 응하고 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한다.</p>			
비고	<p>본 동의서는 사후관리와 계획에 대하여 본 기관과 아동이 상호 협의한 내용이다.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문제 및 어려움이 있을 때 아동과 사례관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p>			
동의확인	<p>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상기와 같이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권자 :                      (서명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획득자 :                      (서명또는 인)</p>			

〈서식 6호〉

### 가정위탁보호 현황

○ 시·도명 :

※ 각 년도 누계(하반기 : 연간실적), 엑셀파일로 작성

□ 가정위탁보호 현황('00년 신규 가정위탁 아동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위탁가정 유형					가정위탁보호 아동 유형			
	계	일반위탁가정		전문위탁 가정	일시위탁 가정	계	소년소녀 가정에서 전환	시설보호에서 전환	기타(일시 보호아동등)
		친인척	친인척 외						
세대수									
아동수									

□ 가정위탁보호 현황('00년 가정위탁중인 아동 총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위탁가정 유형					가정위탁보호 아동 유형			
	계	일반위탁가정		전문위탁 가정	일시위탁 가정	계	소년소녀 가정에서 전환	시설보호에서 전환	기타(일시 보호아동등)
		친인척	친인척 외						
세대수									
아동수									

□ 가정위탁 아동 성별·연령별 현황('00년 가정위탁중인 아동 총 현황)

(단위 : 명)

성별			연령별							
계 (A)	남	여	계 (A)	1-3세 (영아)	4-7세 (유아)	8-10세 (초등)	11-13 (초등)	14-16 (중등)	17-19 (고등)	기타

〈서식 7호〉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실적

\* 각 년도 누계(4/4분기 : 연간실적)

\* 엑셀파일로 작성

가정위탁지원센터

### 1. 가정위탁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합 계		일반위탁가정				전문위탁가정		일시위탁가정	
			친인척		친인척 외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전체위탁현황										
신규	( )/4분기									
	연누계									
종결	( )/4분기									
	연누계									
연장	( )/4분기									
	연누계									
연장 종결	( )/4분기									
	연누계									

### 2. 위탁아동 연령별 및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3세 (영아)	4-7세 (유아)	8-10세 (초등학생)	11-13세 (초등학생)	14-16세 (중학생)	17-19세 (고등학생)	20세 이상
전체 위탁 현황	계								
	남								
	여								
( )/4 분기	계								
	남								
	여								
연누계	계								
	남								
	여								

3. 가정위탁 사유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부모 모두 사망	부나 모의 사망	별거/가출	부모 질병	부모 수감	이혼	부모 실직/빈곤	부모 장애	학대 방임	미혼모(부)/혼외 출생	시설의 의뢰	기타
전체 위탁현황													
( )/4 분기													
연누계													

<b>비 고</b>	
------------	--

※ 가정위탁 사유는 아동이 위탁되는 데 가장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가지 사유만 기재

4. 가정위탁 보호연장 사유 현황

구분	계	대학 진학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중	20세 미만으로 학원에서 교육중	25세 미만으로 지능지수가 71-84인 자	25세 미만으로 장애	25세 미만으로 질병	취업준비 등으로 1년 연장	복 학	기 타
전체 위탁현황										
( )/4분기										
연누계										

<b>비 고</b>	
------------	--

※ 가정위탁 보호연장 사유는 아동이 위탁되는 데 가장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가지 사유만 기재

5. 가정위탁 종결 사유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원가정 복귀	위탁가정의 환경변화 (이사, 질병, 사망, 경제적 사정 등)	부적응	아동의 문제행동	만18세 이상으로 보호종결	입양	사례 이관	기타
( )/4 분기									
연누계									

<b>비 고</b>	
------------	--

6. 보호연장 종결사유 현황

구분	계	원가정 복귀	취업	대학교 졸업	휴학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학원교육		연장보호 가능기간 종료		결혼	전출 미채정	사례 이관	일시 중지	기타	
						종료	중도 탈락	연령 도달	중도 탈락	낮은지능 지수· 질병·장애**	취업 준비 등***						
( )/4분기																	
연누계																	

<b>비 고</b>	
------------	--

\*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써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보호기간 연장가능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보호기간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아동분야사업안내 p.49)

\*\*\*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가능(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7. 가정위탁 종결 후 배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원가정 복귀	양육시설 입소	일시보호시 설입소	그룹홈 입소	소년소녀 가정세대 채정	입양	자립	위탁 가정 변경	사례 이관	기타
( )/4 분기											
연누계											

<b>비 고</b>	
------------	--

8. 사례관리(재정)현황

구 분	양육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원가정지원금	센터지원금	정기후원금
( )/4 분기	명	명	회	회	회
			천원	천원	천원

<b>비 고</b>	명: 분기 말 현재 아동 수 회: 분기별 합계 천원: 분기별 합계
------------	--------------------------------------------

9. 가정위탁 서비스제공 현황

구 분	( )/4 분기		누 계		서 비 스 내 용
위탁아동에 대한 서비스	(회)	(명)	(회)	(명)	
일반위탁부모에 대한 서비스	(회)	(명)	(회)	(명)	
전문위탁부모에 대한 서비스	(회)	(명)	(회)	(명)	
일시위탁부모에 대한 서비스	(회)	(명)	(회)	(명)	
원가정에 대한 서비스	(회)	(명)	(회)	(명)	
기타 서비스	(회)	(명)	(회)	(명)	
합 계	(회)	(명)	(회)	(명)	

※ 멘토링, 문화체험행사, 캠프, 자원봉사 결연, 심리검사 등 센터 내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현황

10. 가정위탁 교육사업 현황

구 분	( )/4 분기		누 계		교 육 내 용
일반, 일시위탁부모	양성교육	(회) (명)	(회) (명)		
	보수교육	(회) (명)	(회) (명)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	(회) (명)	(회) (명)		
	보수교육	(회) (명)	(회) (명)		
공무원	(회) (명)	(회) (명)			
기타(자원봉사자 등)	(회) (명)	(회) (명)			
합 계	(회) (명)	(회) (명)			

11. 가정위탁 홍보사업 현황

구 분	( )/4 분기	누계	홍보내용	홍보대상	
홍보물	리플렛	(장)	(장)		
	포스터	(장)	(장)		
	전단	(장)	(장)		
	소식지	(부)	(부)		
	기타 홍보물	(개)	(개)		
언 론	방송(TV)	(회)	(회)		
	방송(라디오)	(회)	(회)		
	신문	(회)	(회)		
	잡지	(회)	(회)		
	생활정보지	(회)	(회)		
인터넷	홈페이지운영	(회)	(회)		
	웹진	(회)	(회)		
	SNS 등 온라인 홍보	(회)	(회)		
홍보행사	캠페인	(회)	(회)		
	기타홍보행사	(회)	(회)		
기 타					

※ 홈페이지는 등록된 게시물 수

〈서식 8호〉

### 보험사 선정 및 보험가입 자료

일련번호	위탁아동 성명	주민번호 (앞6자리, 뒤1자리)	부양자 1인 성명	부양자 1인 주민번호 (앞6자리, 뒤1 자리)	주 소

〈서식 9호〉

###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 통보

시·도(시·군·구)

일련 번호	변경 유형	위탁보호 결정일	변경일	위탁아동 성명	위탁 유형	위탁아동 주민번호	위탁(부)모 성명	위탁(부)모 주민번호	주소

- \* 위탁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 \* 변경유형 : 위탁결정(신규), 위탁결정(재위탁), 위탁종결(해지)
- \* 위탁부(모) : 위탁부모 후유장해의 보험금을 수령할 자 1인

〈서식 10호〉

### 보험금 수령 및 지급 관리대장

(단위 : 명, 천원)

일련 번호	위탁아동 (위탁부모) 성명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수령 (보험사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보험금 지급 (시·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 위탁부모 등)			비고
			수령일	수령액	지급일	지급액	수령자 확인	



〈서식 11호〉

###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 가입 현황

시·도

(단위 : 명, 천원)

보험 계약자	보험 수익자	보험사	보험 계약일	보험계약 인원(명)		위탁아동 1인당 보험료	보험료 지급(예정) 금액
				위탁아동	부양자 1인		

\* 보험계약서(청약서), 계약약관 사본 등 관련서류 첨부

〈서식 12호〉

###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상(하)반기 시·도(시·군·구)

\* 하반기는 연간실적 제출(엑셀파일로 작성)

(단위: 명, 천원)

담보내용	보험금 지급인원	보험금 지급액
계		
위탁아동 후유장해		
부양자 후유장해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치아 치료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위로금		
얼굴성형		
일상생활배상책임		
정신과질환 진단금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서식 13호〉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추천서

추천자			
기관명 (지역)		작성일	
담당자 (직위)		접수일	

심리치료 지원 아동				
성명		출생연월일 (연령)	년 월 일 (세)	
문제유형				
위탁(입양)사항	기간	년 개월	위탁형태	일반/전문/일시
부모협조 (치료참여가능여부)	입양부모	성명 (서명)	위탁부모	성명 (서명)
기타특이사항 <sup>9)</sup>				
담당자 추천사유 <sup>10)</sup>				
별도첨부서류				
희망치료기관				
치료 동의	위 아동의 치료를 동의합니다. 성명 : (인)			

※ [서식 13호]는 시·군·구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도로 제출하는 서류임

9) 아동의 심리치료 경험 등

10) 센터 추천 아동의 경우 작성, 아동의 문제상황 및 심리상태, 부모와의 관계, 상담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술

〈서식 14호〉

### 아동 심리치료비 청구서

센터 및 기관명	(대표자 성명: )
심리치료 담당자	
치료기간(심리검사)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치료회기(심리검사 항목)	치료 회
이 름	
총 청구 금액	
<p>다음과 같이 금액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 [서식 14호]는 아동치료기관에서 시·군·구로 제출하는 서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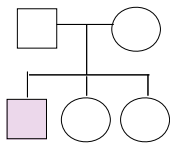
<서식 15호>

## 아동 심리검사 보고서

심리치료 Case No.		센터 및 기관명	
이 름		성 별	
생 년 월 일		검 사 일	

의뢰 사유 :

가족사항 :



부 - M/ 세/ 직업관

모 - F/ 세/

본인 - M/ 세/ 초등학생

동생 - F/ 세/

동생 - F/ 세/

실시검사 :

수 검 태 도

검 사 결 과

○ 기타사항

첨부서류 <sup>11)</sup>	
비 고 <sup>12)</sup>	

전문가 자격번호 및 이름

11) 진단서 및 영수증 관련 첨부문서 사항 기재

12) 관련 요청사항 및 특이사항 기재

〈서식 16호〉

## 아동 심리치료 총괄사례보고서

심리치료 Case No.		소속 및 기관명	
지 역		보고서 작성일	
이 름		심리치료 담당자	

### 심리치료 총괄사례보고서 샘플

#### I. 서론

#### II. 사례개요

1. 인적사항
2. 치료사유
3. 가족력
4. 양육사

#### III. 치료진행과정

1. 치료절차
2. 정보수집 및 사례형성 과정
3. 치료목표 및 중재방법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4. 치료과정 및 분석

#### IV. 고찰

1. 회기별 치료과정에서의 변화

#### V. 결론

〈서식 17호〉

## 심리치료 지원사업 교통비 청구서

아 동 명	
심리치료 기관명	
심리치료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치료회기(심리검사 항목)	치 료 회
청구 금액	<input type="checkbox"/> 시내버스(출발지: → 도착지: )= 원 <input type="checkbox"/> 시외버스(출발지: → 도착지: )= 원 <input type="checkbox"/> 지 하 철(출발지: → 도착지: )= 원 <input type="checkbox"/> 기 차(출발지: → 도착지: )= 원 <input type="checkbox"/> 택 시(출발지: → 도착지: )= 원 <p style="text-align: right;">합 계= 원</p>
위와 같이 금액을 청구합니다.	

〈영수증 첨부〉









서식모음

## IV. 소년소녀가정 지원

1

소년소녀가정 지원

〈서식 1호〉 소년소녀가정 후원자(후견인) 지정현황 ..... 381  
〈표 1〉 소년소녀가정세대 현황보고 ..... 382

〈서식 1호〉

소년소녀가정 후원자(후견인) 지정현황

후원자* 지정현황			후원자 유형							
대상 세대	지정 세대	후견인 수	계	친인척	행정기관 직원	학교 교사	복지관 직원	종교인	결연 후원자	이웃 주민

반기 및 연간 통계보고 양식 (지자체 ⇒ 복지부)

〈표 1〉

소년소녀가정세대 현황보고

<○○년 ○반기>

1. 성 및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성		연 령				
		남	여	0~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0세
계								
세대주								
세대원								

2. 재학현황

(단위 : 명)

총 계	미취학자	초등재	중재	고 재				대 재	미재학자
				소 계	실 업	인 문	기 타		

3. 주거형태 현황

(단위 : 세대)

계	자 가	전 세	월 세	친 지	정부지원주택	기 타

4. 발생유형 현황

(단위 : 세대)

계	부모사망	부모 폐질심신장애	부모 가출·행불	부모 이혼	부모 복역	기 타

5. 취업현황

(단위 : 명)

총계	재 학 자					미 재 학 자				
	계	사무직	생산직	상업	기타서비스	계	사무직	생산직	상업	기타서비스

6. 결연현황

구 분	결연세대	결연아동	후원자수	후원금(천원)
계				
자체결연				
한국복지재단 결연				

승인번호 : 제11728호, 승인일자 : '88.3.22('93.12.29, 2008.1.9 변경승인)

## 작성요령

승인번호	11728	보고종별	반기보	제목	소년소녀가정세대현황보고
보고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보고기한		반기말 익월 15일
표 두	<p>1. 성 및 연령별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상의 단계별 연령은 만 나이를 말한다. “예” 12세~14세는 만 12세부터 만 14세까지를 말한다.</li> <li>○ 만 나이계산은 반기보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년 단위로 계산한다. “예” 1989.6.5생일 경우 2007년에 보고할 경우 2007~1989 = 18 즉 18세가 된다.</li> </ul> <p>2. 재학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취학자 : 초등학교 입학전의 아동</li> <li>○ 미재학자 : 학교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 등을 하는 자</li> </ul> <p>3. 주거형태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형태를 표상에 기재된 것 중에 하나를 적용</li> </ul> <p>4. 발생유형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소녀가장 발생유형을 표상에 기재된 것 중에 하나를 적용</li> </ul> <p>5. 취업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현황을 재학중인 자의 취업(아르바이트)과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취업한 자로 크게 나누고 표상의 종류별로 적용</li> </ul> <p>6. 결연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결연실적과 시·군·구 등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결연 실적을 구분하여 반기말 현재 실적을 기재한다.</li> </ul>				
작성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번 세대주+세대원의 합계수는 2번의 총계수와 일치한다.</li> <li>○ 1번 세대주 계의 수는 3번, 4번 계의 수와 일치한다.</li> <li>○ 6번 결연현황은 당해년도 1.1~12.31까지 실적이며, 자체결연과 한국복지재단 결연 세대수 및 결연아동 수는 각각 1번 세대주 및 세대원 합계수 보다 클 수 없음</li> </ul>				

-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 통보된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참조



서식모음

## VI. 아동복지시설 운영

1

**아동복지시설 운영**

□ **아동양육시설**

〈서식 1호〉 보호연장아동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 ..... 387

□ **공동생활가정**

〈서식 1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현황 ..... 388

〈서식 2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389

〈서식 3호〉 사업계획서 ..... 390

□ **아동복지시설 공통**

〈서식 1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 391

〈서식 2호〉 아동입원(입소) 의뢰서 ..... 392

〈서식 3호〉 지정후원금 공동사용내역 ..... 393

〈서식 4호〉 0000년 상(하)반기 미신고시설 조사결과 및 관리 현황 보고서식 ..... 394

〈서식 5호〉 개인운영시설 관리현황 ..... 395

〈서식 6호〉 시설운영위원회 설치현황 ..... 396

〈서식 7호〉 시설 정원변경보고서 ..... 397

〈서식 8호〉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실적 ..... 398

〈서식 9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399

〈서식 10호〉 사업계획서 ..... 400

〈서식 11호〉 시·도지사 검토의견 ..... 401

〈서식 12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402

〈서식 12의 1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 403

〈서식 12의 2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 404

〈서식 12의 3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 405

〈서식 13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 406

〈서식 14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 407



□ 아동양육시설

〈서식 1호〉

**보호연장아동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

변경 유형 : 시설 내 → 밖 거주 [ ] 시설 밖 → 내 거주 [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변경(예정)일	연락처
	주민등록상 주소	
	실거주지 주소   대학 기숙사[ ] 직장 기숙사[ ] 공공임대주택[ ] 기타[ ]	
대상자 계좌정보	은행명/예금주명	계좌번호
시설(기관) 정보	시설(기관)명	시설(기관)장 성명
	시설(기관) 주소	
	시설(기관) 연락처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위 대상자의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아동복지시설의 장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보호연장아동 개인명의 통장사본
------	------------------------------

\* 실거주지 변경 신고 시점에 이미 시설 밖에서 거주하고 있던 경우, 실거주지 변경 (예정)일은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

□ 공동생활가정

<서식 1호>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현황

□ 시·도명 :

<총괄현황> ※ 설치·신고되어 운영중인 시설에 대해 기재

(단위: 개소명)

시도	개소수	이동수						국고지원 개소수	종사자현황						보험가입현황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기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신해 보험	화재 보험	기타보험 (보험명 기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시설별 현황>

- 운영주체 : 법인, 개인구분 기재(법인일 경우 법인명 기재)
- 신고연월일 : 신고일이전부터 운영된 경우 “( )”로 병행 기재
- 주소 : 시·군·구, 읍·면·동, 번지 등 기재

(단위: 명)

연도	시설명	시설 운영 주체 장명	이동수						기초생활 수급자 지정여부 이유	주소	전 화 번호	신 고 연 월 일 (년 월 일)	면 적 (㎡)	국 고 지 원 여 부 (O X 표기)	종사자현황						보험가입여부 (해당문에 '0'표기)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기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서식 2호>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위 : 천원)

명 칭			대표자	
소재지				
사업종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별 첨			
<p>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p> <p>보건복지부장관 귀하</p>				

〈서식 3호〉

## 사 업 계 획 서

###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필요성 및 지원사유 등 기술

### 3. 사업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등 추진경위
- 의회등의 심의통과 여부, 부지확보여부, 건축설계 및 건축 진행 상황 등

###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규모 및 예산 등 기술
- 사업추진일정
- 연차별 사업 및 투자계획 등

### 5. 사업수행주체

### 6.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계획

### 7. 사업의 효과

### 8. 예상 문제점과 대책





〈서식 3호〉

### 지정후원금 공동사용내역

(단위 : 천원)

시설명	총후원금	공 통 사 용 내 역		비 고
		공동사용액	사 용 내 역	

<서식 4호>

## 0000년 상(하)반기 미신고시설 조사결과 및 관리 현황 보고서식

시도명	시군구명	시설 종류	시설명	운영 주체	시설 장명	주소	설치일자 (연.월.일)	생활자수(명)			종사자수(명)		향후계획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명)			
								계	수급자	비수급자	계	시설장	종사자	설치신고 예정	시설 폐쇄	기타 행정처분	타시설 전원	원가정 복귀	기타

\* 매년 1월 15일, 7월 15일까지 제출

\* 해당없으면 “해당없음”으로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로 보고



<서식 5호>

### 개인운영시설 관리현황

○ 시·도명 :

시군 구명	시설 종류	시설명	운영 주체	시설 장명	주소 (전화 번호)	설치 일자 (연월일)	예산 지원 여부 (해당란에 '0'표기)			생활자수(명)			종사자수(명)					
							지원	미지원	예산 미지원시 미지원 사유	계	수급자	비수 급자	계	시설장	종사자			

- 엑셀로 작성

※ 작성요령

- 운영주체: 개인, 종교인, 종교단체, 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중 택 1

- 시설종류: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종류 택 1

〈서식 6호〉

### 시설운영위원회 설치현황

(단위 : 명)

시·도	설치 시설 현황					미 설치 시설 현황			
	시설명	현원		위원수	운영규정 작성여부	시설명	현원		미설치 사유
		아동	종사자				아동	종사자	
계									

※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서식 7호〉

### 시설 정원변경보고서

(단위 : 명)

시·도	시 설 명	보 호 아동수	정원현황		변 경 사 유
			변경전	변경후	
계					

- ※ 첨부서류  
 - 담당공무원 출장복명서  
 - 건축물대장

〈서식 8호〉

###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시·군·구	시설명	보호아동수	퇴소아동수	지원내역			비고
				지원 아동수	지원 단가	총 지원액	

※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서식 10호〉

## 사 업 계 획 서

###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필요성 및 지원사유 등 기술

### 3. 사업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등 추진경위
- 의회등의 심의통과 여부, 부지확보여부, 건축설계 및 건축 진행 상황 등

###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규모 및 예산 등 기술
- 사업추진일정
- 연차별 사업 및 투자계획 등

### 5. 사업수행주체

### 6.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계획

### 7. 사업의 효과

### 8. 예상 문제점과 대책

〈서식 11호〉

## 시·도지사 검토의견

### 1. 보조사업 수행자

기관명		기관장	
소재지			
사업명			

### 2. 의견내용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적정성
- 사업추진 가능여부
- 사업의 효과
- 기타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인





〈서식 12의 1호〉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구입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인

〈서식 12의 2호〉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개축, 개·보수)

### 1. 시설 현황

- 시설 명 : (대표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도별	건축년월일	건물구조	연면적 (㎡)	비고
계				
거실				
강당				
도서실				
사무실				
기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목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업규모 :

용도별	사업규모(㎡)	사업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1. 건축공사						
2. 전기공사						
3. 부대설비공사						
4. 설계 및 감리						
5. 부대구입비						
6. 시설 개보수비						
7. 기타(철거비 등)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란만 기재

\* 설계용역비는 시설 자체 부담임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자부담이 있는 경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담방법	비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①

〈서식 12의 3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비보강)

**1. 시설 현황**

- 시설 명 : (대표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아동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      .      .      현재)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 목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사용용도	비고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담방법	비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인

〈서식 13호〉

###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 . . .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서식 14호>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16. . .

구 분	수 행 자	구비서류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 산	시·도지사	○ 국고보조금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공 통	시·도지사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유무 ○ 보조사업기간 ○ 직인 날인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 사업검토의견서	○ 유무 ○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수행능력 ○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결의결등 ○ 직인 날인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법 인 (대표이사)	○ 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유무 ○ 직인 날인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신·증·개축, 개보수	법 인 (대표이사)	○ 시설 신·증·개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 부지가 필요한 경우	○ 유무 ○ 설치장소 ○ 부지 확보방안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 유무 ○ 건물용도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 공사비 내역서	○ 유무 ○ 건물구조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 소요비용 ○ 세부 산출근거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 재원조달방법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 부대시설 - 거실 - 사무실, 상담실 - 화장실 - 강당 또는 오락실 등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법 인 (대표이사)	○ 설계검토의견서	○ 유무 ○ 관계자 날인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지가 필요한 경우	○ 유무 ○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 근저당(부채 등)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장비보강	법 인 (대표이사)	○ 사업수행계획서	○ 유무 ○ 장비유형구분(가전제품, 가구, 기타장비 등)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 설계도면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서식모음

## VII. 아동복지교사 지원

1

아동복지교사 지원

〈서식 1〉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서식(아동돌봄시설용) ..... 411  
〈서식 2〉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서식(아동복지시설용) ..... 413  
〈서식 3〉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서식(위탁가정용) ..... 415  
〈서식 4〉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관 심사서식(아동돌봄시설용) ..... 417  
〈서식 5〉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관 심사서식(아동복지시설용) ..... 420  
〈서식 6〉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관 심사서식(위탁가정용) ..... 423  
〈서식 7〉 아동복지교사 참여신청서식 ..... 426



<서식 1>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서식(아동돌봄시설용)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서식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용)

<b>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서(아동돌봄시설용)</b> ※ 지원대상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신청 양식 작성 가능				접수 번호		
<b>◆ 시설 개요</b>						
시 설 명	※ 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해당여부 표기( )					
주 소	우편번호( - )					
전 화 번 호	(비상연락처(HP):					
기관 E-mail			신 고 일			
신 고 아 동 ( 정 원 ) 수	명	1일 상시 이용 아동수(평균)		명		
법정종사자수	명	1일 운영시간 (학기중)	총 시간 (○○시○○분~○○시○○분)			
'22년 아동복지교사 파견여부	<input type="checkbox"/> 파견 <input type="checkbox"/> 미파견					
<b>◆ 신청분야</b>						
<b>총 3개 신청분야에 ☑체크 후 우선순위(1,2,3) 표기</b>						
교사분야	기초학습 교사	외국어지도 교사	독서지도 교사	예체능지도 교사	다문화·장애아동 지도교사	기타 * 희망분야명 표기
신청분야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음악 ( ) <input type="checkbox"/> 미술 ( ) <input type="checkbox"/> 체육 ( )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 )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 ( )	<input type="checkbox"/> ( ) 분야 :
★ 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개소에 동일분야 아동복지교사 2명 이상 지원 불가 ★ 선정과정 중 지원 요일 조정 가능 ★ 신고일은 시설신고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작성 ※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의 입증 책임은 신청 시설장에게 있음.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년    월    일                  시 설 장                                  (직인)

○○시·군·구 지자체장 귀하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 신청서				
★ 신청서에 작성한 신청분야 3개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작성 바람				
1순위 프로그램 신청	신청분야명			
	희망지원요일 (연계시설과 협의조정 후 2~3일 범위에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금 주( )일		
	프로그램 신청 아동수	총( )명	초1-3학년( )명	중학생( )명
			초4-6학년( )명	고등학생( )명
	신청분야 활용계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독립 공간 확보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지도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확보여부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어려움			
2순위 프로그램 신청	신청분야명			
	희망지원요일 (연계시설과 협의조정 후 2~3일 범위에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금 주( )일		
	프로그램 신청 아동수	총( )명	초1-3학년( )명	중학생( )명
			초4-6학년( )명	고등학생( )명
	신청분야 활용계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독립 공간 확보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지도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확보여부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어려움			
3순위 프로그램 신청	신청분야명			
	희망지원요일 (연계시설과 협의조정 후 2~3일 범위에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금 주( )일		
	프로그램 신청 아동수	총( )명	초1-3학년( )명	중학생( )명
			초4-6학년( )명	고등학생( )명
	신청분야 활용계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독립 공간 확보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지도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확보여부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어려움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 신청서				
★ 신청서에 작성한 신청분야 3개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작성 바람				
1순위 프로그램 신청	신청분야명			
	희망지원요일 (연계시설과 협의조정 후 2~3일 범위에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금 주( )일		
	프로그램 신청 아동수	총( )명	초1-3학년( )명	중학생( )명
			초4-6학년( )명	고등학생( )명
	신청분야 활용계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지도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확보여부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어려움			
2순위 프로그램 신청	신청분야명			
	희망지원요일 (연계시설과 협의조정 후 2~3일 범위에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금 주( )일		
	프로그램 신청 아동수	총( )명	초1-3학년( )명	중학생( )명
			초4-6학년( )명	고등학생( )명
	신청분야 활용계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지도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확보여부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어려움			
3순위 프로그램 신청	신청분야명			
	희망지원요일 (연계시설과 협의조정 후 2~3일 범위에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금 주( )일		
	프로그램 신청 아동수	총( )명	초1-3학년( )명	중학생( )명
			초4-6학년( )명	고등학생( )명
	신청분야 활용계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지도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확보여부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어려움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 신청서				
★ 신청서에 작성한 신청분야 3개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작성 바람				
1순위 프로그램 신청	신청분야명			
	희망지원요일 (연계시설과 협의조정 후 2~3일 범위에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 월 □ 화 □ 수 □ 목 □ 금 주( )일		
	프로그램 신청 아동수	총( )명	초1-3학년( )명	중학생( )명
			초4-6학년( )명	고등학생( )명
	교육 지원 필요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여부	□ 유		□ 무
지도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확보여부	□ 확보		□ 어려움	
2순위 프로그램 신청	신청분야명			
	희망지원요일 (연계시설과 협의조정 후 2~3일 범위에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 월 □ 화 □ 수 □ 목 □ 금 주( )일		
	프로그램 신청 아동수	총( )명	초1-3학년( )명	중학생( )명
			초4-6학년( )명	고등학생( )명
	교육 지원 필요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여부	□ 유		□ 무
지도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확보여부	□ 확보		□ 어려움	
3순위 프로그램 신청	신청분야명			
	희망지원요일 (연계시설과 협의조정 후 2~3일 범위에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 월 □ 화 □ 수 □ 목 □ 금 주( )일		
	프로그램 신청 아동수	총( )명	초1-3학년( )명	중학생( )명
			초4-6학년( )명	고등학생( )명
	교육 지원 필요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여부	□ 유		□ 무
지도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확보여부	□ 확보		□ 어려움	

〈서식 4〉 신청기관 심사서식(아동돌봄시설용)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관 심사서식**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용)**

**서류심사기준표(표준안)**

구분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기준
적격심사	신청지역위치	기본적격 확인	신청지역에 위치
	기본운영비 지원여부		'22년 12월 31일 기준 기본운영비 보조금 지원대상
	종사자 배치기준		「아동복지법」 및 사업지침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
	이용아동수 (10명 이상)	적격여부 및 필요사유 확인	신고정원 10명 이상 및 이용아동(현원)* 10명 이상 (다만, 농산어촌 등 지역적 특성 또는 아동특성상 특별한 지원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정기돌봄 아동 수로 산정
운영시간	1일 8시간 이상 운영		
세부심사	운영일수 / 운영시간	5~10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
	교육 대상 아동수	5~10	지도대상 아동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	5~10	독립 교육 공간이 있고, 학습 교재·교구가 준비 되어 있을수록 높은 점수
	신청분야 교사 활용계획	0~20	지원 욕구와 필요성, 교사 활용에 대한 정확한 운영내용(시간, 요일, 활용기자재, 프로그램운영 방법 등)이 서술되어 있을수록 높은 점수

※ 심사표는 표준안을 사용하되, 시·군·구는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가능(항목의 추가, 배점의 조정 등 가능)

- 시설 기본사항 및 현장실사 사유 기재
- 실사 항목 중 확인한 사항을 '확인사항'란에 기재
- 현장실사 내용을 종합하여 종합 의견란에 기재하며, 최종심사 시 반영하여 지원여부 확정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 심사표(아동돌봄시설용 표준안)						
시 설 명		시·군·구		신청분야 (번호기재)		
주소				전화번호		
대표 자	이름	담당 자	이름	신고일 (시설신고증)		
	(HP)		(HP)	서류완비여부		<input type="checkbox"/> 완비 <input type="checkbox"/> 미비
현장심사여부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실사일		방문자	
현장실사사유						

구분	항목	적격여부		비고
		적격	부적격	
적격 여부	신청지역 위치 여부			
	기본운영비 지원 여부			
	종사자 배치기준			
	이용인동수(10명 이상)			※ 부적격시 지원 필요성 명기
	8시간 이상 운영			※ 부적격시 지원 필요성 명기
	최종결과	적격 / 탈락		※ 최종 심사의견 명기
	※ 서식 활용하여 심사 진행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확인사항
신청 분야 교사 항목	① 기초학습 ( )순위	<input type="checkbox"/> 운영일수/운영시간(5~10)		
		<input type="checkbox"/> 교육 대상 아동 수(5~10)		
		<input type="checkbox"/>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input type="checkbox"/> 신청분야 교사 활용계획(0~20)		
	총 점		점	
	② 외국어지도, ( )순위	<input type="checkbox"/> 운영일수/운영시간(5~10)		
		<input type="checkbox"/> 교육 대상 아동 수(5~10)		
		<input type="checkbox"/>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input type="checkbox"/> 신청분야 교사 활용계획(0~20)		
	총 점		점	
	③ 독서지도, ( )순위	<input type="checkbox"/> 운영일수/운영시간(5~10)		
		<input type="checkbox"/> 교육 대상 아동 수(5~10)		
<input type="checkbox"/>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input type="checkbox"/> 신청분야 교사 활용계획(0~20)				
총 점		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확인사항
	④ 예체능지도, ( )순위	<input type="checkbox"/> 운영일수/운영시간(5~10)		
		<input type="checkbox"/> 교육 대상 아동 수(5~10)		
		<input type="checkbox"/>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input type="checkbox"/> 신청분야 교사 활용계획(0~20)		
	총 점		점	
	⑤ 다문화, 장애아동지도 ( )순위	<input type="checkbox"/> 운영일수/운영시간(5~10)		
		<input type="checkbox"/> 교육 대상 아동 수(5~10)		
		<input type="checkbox"/>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input type="checkbox"/> 신청분야 교사 활용계획(0~20)		
	총 점		점	
	⑥ 기타, ( )순위	<input type="checkbox"/> 운영일수/운영시간(5~10)		
		<input type="checkbox"/> 교육 대상 아동 수(5~10)		
<input type="checkbox"/>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input type="checkbox"/> 신청분야 교사 활용계획(0~20)				
총 점		점		
신청 순위	지원여부	신청분야	총점	
1순위	지원 / 미지원			
2순위	지원/ 미지원			
3순위	지원 / 미지원			
<input type="checkbox"/> 종합 의견 :				

심사위원

(인)

〇〇시·군·구

〈서식 5〉 신청기관 심사서식(아동복지시설용)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관 심사서식**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치료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용)

**서류심사기준표(표준안)**

구분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기준
적격심사	신청지역 위치	기본적격 확인	신청지역에 위치
	기본운영비 지원여부		'22년 12월 31일 기준 기본운영비 보조금 지원대상
	종사자 배치기준		「아동복지법」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
	지원필요아동수 (5명 이상)	적격여부 및 필요사유 확인	지원 필요 아동이 5명 이상 (다만, 농산어촌 등 지역적 특성 또는 아동특성상 특별한 지원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세부심사	운영일수 / 운영시간	5~10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
	교육 대상 아동수	5~10	지도대상 아동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	5~10	교육 공간이 있고, 학습 교재·교구가 준비되어 있을수록 높은 점수
	신청분야 교사 활용계획	0~20	지원 욕구와 필요성, 교사 활용에 대한 정확한 운영내용(시간, 요일, 활용기자재,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이 서술되어 있을수록 높은 점수

※ 심사표는 표준안을 사용하되, 시·군·구는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가능(항목의 추가, 배점의 조정 등 가능)

- 시설 기본사항 및 현장실사 사유 기재
- 실사 항목 중 확인한 사항을 '확인사항'란에 기재
- 현장실사 내용을 종합하여 종합 의견란에 기재하며, 최종심사 시 반영하여 지원여부 확정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 심사표(아동복지시설용 표준안)							
시 설 명			시·군·구				
주소			신청분야 (번호기재)				
			전화번호				
대표 자	이름			담당 자	이름		
	(HP)				(HP)		
					신고일 (시설신고증)		
					서류완비 여부	□완비 □미비	
현장심사여부	□필요 □불필요		실사일				방문자
현장실사사유							

구분	항목	적격여부		비고
		적격	부적격	
적격 여부	신청지역 위치 여부			
	기본운영비 지원 여부			
	종사자 배치기준			
	지원 필요 이동 수			※ 부적격시 지원 필요성 명기
	최종결과	적격 / 탈락		※ 최종 심사의견 명기
	※ 서식 활용하여 심사 진행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확인사항	
신청 분야 교사 항목	① 기초학습 ( )순위	□ 운영일수/운영시간(5~10)			
		□ 교육 대상 아동 수(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 신청분야 교사 활용계획(0~20)			
		총 점		점	
	② 외국어지도, ( )순위	□ 운영일수/운영시간(5~10)			
		□ 교육 대상 아동 수(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 신청분야 교사 활용계획(0~20)			
		총 점		점	
	③ 독서지도, ( )순위	□ 운영일수/운영시간(5~10)			
		□ 교육 대상 아동 수(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 신청분야 교사 활용계획(0~20)					
총 점			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확인사항
	④ 예체능지도, ( )순위	☐ 운영일수/운영시간(5~10)		
		☐ 교육 대상 아동 수(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 신청분야 교사 활용계획(0~20)		
	총 점		점	
	⑤ 다문화, 장애아동지도 ( )순위	☐ 운영일수/운영시간(5~10)		
		☐ 교육 대상 아동 수(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 신청분야 교사 활용계획(0~20)		
	총 점		점	
	⑥ 기타, ( )순위	☐ 운영일수/운영시간(5~10)		
		☐ 교육 대상 아동 수(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 신청분야 교사 활용계획(0~20)				
총 점		점		
신청 순위	지원여부	신청분야	총점	
1순위	지원 / 미지원			
2순위	지원/ 미지원			
3순위	지원 / 미지원			
☐ 종합 의견 :				

심사위원

(인)

〇〇시·군·구

〈서식 6〉 신청기관 심사서식(위탁가정용)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관 심사서식 (위탁가정용)

서류심사기준표(표준안)			
구분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기준
적격심사	신청지역 위치	기본적격 확인	신청지역에 위치
	위탁가정 여부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또는 행복e음을 통해 확인
세부심사	지원 필요 아동수	5~10	위탁아동을 포함해 지원 대상 아동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	5~10	교육 공간이 있고, 학습 교재·교구가 준비되어 있을수록 높은 점수
	교육 지원 필요성	0~30	교사 지원 욕구 및 필요성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

※ 심사표는 표준안을 사용하되, 시·군·구는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가능(항목의 추가, 배점의 조정 등 가능)

- 가정 기본사항 및 가정방문 사유 기재
- 가정방문 항목 중 확인한 사항을 '확인사항'란에 기재
- 가정방문 내용을 종합하여 종합 의견란에 기재하며, 최종심사 시 반영하여 지원여부 확정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 심사표(위탁가정용 표준안)						
신청자명 (보호자명)		시·군·구		신청분야 (번호기재)		
주소						
연락처 (HP)			가정위탁 유형 (아동과의 관계)			
			서류완비여부	□완비 □미비		
가정방문여부	□필요 □불필요	가정방문일		방문자		
가정방문사유						
구분	항목	적격여부		비고		
		적격	부적격			
적격 여부	신청지역 위치 여부					
	위탁가정 여부					
	최종결과	적격 / 탈락		※ 최종 심사의견 명기		
	※ 서식 활용하여 심사 진행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확인사항	
신청 분야 교사 항목	① 기초학습 ( )순위	□ 지원 필요 아동수(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 교육 지원 필요성(0~30)				
	총 점			점		
	② 외국어지도, ( )순위	□ 지원 필요 아동수(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 교육 지원 필요성(0~30)				
	총 점			점		
	③ 독서지도, ( )순위	□ 지원 필요 아동수(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 교육 지원 필요성(0~30)						
총 점			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확인사항
	④ 예체능지도 ( )순위	<input type="checkbox"/> 지원 필요 아동수(5~10)		
		<input type="checkbox"/>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input type="checkbox"/> 교육 지원 필요성(0~30)		
	총 점		점	
	⑤ 다문화, 장애아동지도 ( )순위	<input type="checkbox"/> 지원 필요 아동수(5~10)		
		<input type="checkbox"/>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input type="checkbox"/> 교육 지원 필요성(0~30)		
	총 점		점	
	⑥ 기타, ( )순위	<input type="checkbox"/> 지원 필요 아동수(5~10)		
		<input type="checkbox"/>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input type="checkbox"/> 교육 지원 필요성(0~30)		
	총 점		점	
신청 순위	지원여부	신청분야	총점	
1순위	지원 / 미지원			
2순위	지원/ 미지원			
3순위	지원 / 미지원			
<input type="checkbox"/> 종합 의견 :				

심사위원

(인)

〇〇시·군·구

〈서식 7〉

### 아동복지교사 참여 신청 서식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3×4)	
주소					
핸드폰번호	수신동의	동의( )	미동의( )		
e-mail	수신동의	동의( )	미동의( )		
아동복지교사 참여경력(해당자)	<input type="checkbox"/> 2007년 <input type="checkbox"/> 2008년 <input type="checkbox"/> 2009년 <input type="checkbox"/> 2010년 <input type="checkbox"/> 2011년 <input type="checkbox"/> 2012년 <input type="checkbox"/> 2013년 <input type="checkbox"/> 2014년 <input type="checkbox"/> 2015년 <input type="checkbox"/> 2016년 <input type="checkbox"/> 2017년 <input type="checkbox"/> 2018년 <input type="checkbox"/> 2019년 <input type="checkbox"/> 2020년 <input type="checkbox"/> 2021년 <input type="checkbox"/> 2022년		최근 실직기간 (2023신규교사 중 해당 시 작성)	년    개월	
◆ 지원분야: 지원 가능한 교사 분야 3개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를 하고, 희망 우선순위를(1·2·3순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의 근무 가능 시간대를 모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3순위까지 작성하여 제출)					
교사분야		우선 순위	근무유형		
			전일근무		
			(주25시간근무)	(주40시간근무)	단시간근무 (주12시간근무)
기본분야	기초학습	초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중·고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외국어지도	초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중·고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독서지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체능지도	( )분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장애 아동지도	( )분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 )분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특화분야				<input type="checkbox"/>	
◆ 학력사항(최종학력만 기재)					
기간	학교명	전공	졸업여부		
◆ 자격 및 면허					
자격증	취득연월일	발행기관	비고		
◆ 관련 경력사항					
기관명	기간	업무내용	비고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① 본 신청서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참여자의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OO시·군·구 자치체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안)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심사, 계약 체결 및 대기자 관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조사·연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 경력, 자격, 건강보험증번호, 아동복지교사 참여경력, 최근 실직기간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 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신청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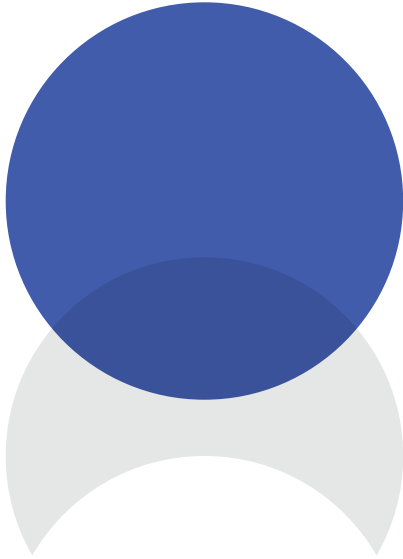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동의 여부	서명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년 월 일

○O시·군·구 지자체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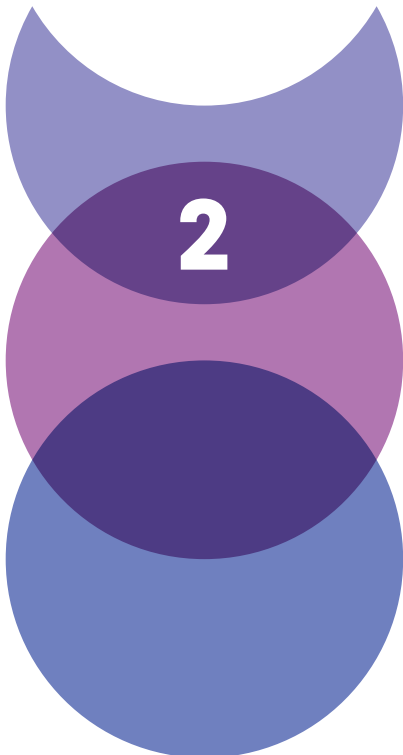






#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보호아동 자립지원
- 디딤씨앗통장(CDA)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자립수당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2권**

- 주요 변경사항 ..... i
- Ⅰ. 보호아동 자립지원 ..... 1
- Ⅱ. 디딤씨앗통장(CDA) ..... 45
- Ⅲ.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87
- Ⅳ. 자립수당 ..... 103
- 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 131
- Ⅵ.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151
- Ⅶ.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 225
- 서식 모음 ..... 243

**1권**

- 주요 변경사항 ..... i
-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 1
- Ⅱ. 가정입양 지원 ..... 25
- Ⅲ. 가정위탁 보호 ..... 65
- 〈부록〉 보호대상아동의 맞춤형 가정보호서비스를 위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 지침 ... 133
- Ⅳ. 소년소녀가정 지원 ..... 175
- Ⅴ. 결연사업 운영 ..... 183
- Ⅵ. 아동복지시설 운영 ..... 189
- Ⅶ. 아동복지교사 지원 ..... 279
- 〈부록〉 보호아동 면접교섭지원 매뉴얼 ..... 309
- 서식 모음 ..... 341







## 주요 변경사항



##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 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 사항은 본문 확인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1. 보호아동 자립지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기간 연장가능 사유</li> <li>- 아동복지법 제16조의4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특정 경우에 한해 보호기간 연장 가능</li> </ul>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 보호기간의 연장</li> <li>-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함</li> </ul>	보호기간 연장 관련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개정 반영('22.6.2 2.시행)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법 제38조), 이를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li> <li>- '21년 8개 시도(서울, 부산, 경기, 충남, 강원, 전남, 경북, 제주)에서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중이며 미설치 시·도에서는 '22년 내 순차 개소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법 제38조), 이를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li> <li>- '22년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완료</li> </ul>	자립지원 전담기관 전국 개소 완료
	9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는 시·군·구 아동보호팀 취합 등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사후관리 대상자 및 보호종료예정 대상자 명단을 분기별(3, 6, 9, 12월) 자립지원전담 기관에 제공</li> </ul>	
	11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종료 후 정기적 사후관리(자립수준 평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수행하나,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시설 종사자는 아동과의 상시 연락·관계 유지를 통해 정서적 지원 계속 및 위기상황 시 자립 지원전담기관 연계 역할 수행</li> </ul>	
	14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사항</li> <li>-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지급 원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방법 : 보호종료 30일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이후 지급)</li> <li>● 지급절차</li> <li>-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li> </ul>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I. 보호아동 자립지원		<p>〈신설〉</p> <p>-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8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 권고 ('22년)</p> <p>※ '23년은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p> <p>〈신설〉</p>	<p>지급 원칙</p> <p>※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p> <p>-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b>최소 1,000만원 이상</b> 되도록 지급 권고 ('23년)</p> <p>- 자립정착금 지급 시 금융교육 이수 여부 등 고려해 분할 지급(권고)</p> <p>※ 단,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일시에 기준금액 전체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p> <p>※ (사례, 경기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급 중('22-),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자립정착금 지급대상자에게 자체 자립 교육 및 자립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중</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자립정착금 지급절차 개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만 제출하면 일시금 형태로 지급, 별도 관리없음</li> <li>● (개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교육·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재무상담과 연계하여 분할지급</li> </ul> <p>* 전국 20개 지사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연계하여 '종합재무실계 전문상담·교육 후 확인서 발급 가능(주소자와 관계없이 전국지사에서 상담 가능, 세부 연락처는 참고자료 1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지급(500만원)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li> <li>- 2차지급(500만원) : 1차 정착금 사용내역 및 2차 정착금 사용계획 컨설팅 이수 조건</li> </ul> </div>	'23년 자립정착금 지급 권고기준 반영 및 분할지급 권고기준 신설
	15	<p>-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 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착금 지급 후 사후관리를 하도록 안내</p> <p>- 보호유형별/지역별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20년) 및 지급 계획('21년) 보고</p>	<p>● 사후관리</p> <p>- (보호종료 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자립 정착금을 아동과 함께 신청하면서 자립에 꼭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와 금액, 기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사전교육 실시</p> <p>- (보호종료 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자립정착금 적정</p>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1. 보호아동 자립지원			<p>사용 여부 등 자립생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자립정착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u>자립정착금 신청 안내</u></p> <p>※ 시설 등 관할 지자체(자립정착금 담당자)는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명단을 확보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립정착금 지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 안내 등 적극 조치</p> <p>- 보호유형별/지역별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 및 향후 지급 계획 보고</p>																																																																																																																																																							
	15	<p>[ 2022년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 ] (단위: 만원, 지자체 조사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사·도</th> <th colspan="3">자립정착금 1인당 지급 기준</th> </tr> <tr> <th>아동양육시설</th> <th>공동생활가정</th> <th>가정위탁</th> </tr> </thead> <tbody> <tr><td>서울특별시*</td><td>1,000</td><td>1,000</td><td>1,000</td></tr> <tr><td>부산광역시*</td><td>700</td><td>700</td><td>700</td></tr> <tr><td>대구광역시</td><td>800</td><td>800</td><td>800</td></tr> <tr><td>인천광역시</td><td>800</td><td>800</td><td>800</td></tr> <tr><td>광주광역시</td><td>1,000</td><td>1,000</td><td>1,000</td></tr> <tr><td>대전광역시</td><td>800</td><td>800</td><td>800</td></tr> <tr><td>울산광역시</td><td>500</td><td>500</td><td>500</td></tr> <tr><td>세종특별자치시</td><td>500</td><td>500</td><td>500</td></tr> <tr><td>경기도*</td><td>1,500</td><td>1,500</td><td>1,500</td></tr> <tr><td>강원도</td><td>500</td><td>500</td><td>500</td></tr> <tr><td>충청북도*</td><td>500</td><td>500</td><td>500</td></tr> <tr><td>충청남도</td><td>500</td><td>500</td><td>500</td></tr> <tr><td>전라북도</td><td>500</td><td>500</td><td>500</td></tr> <tr><td>전라남도</td><td>1,000</td><td>1,000</td><td>1,000</td></tr> <tr><td>경상북도</td><td>500</td><td>500</td><td>500</td></tr> <tr><td>경상남도</td><td>500</td><td>500</td><td>500</td></tr> <tr><td>제주특별자치도</td><td>500</td><td>500</td><td>500</td></tr> </tbody> </table> <p>* 서울: 22년부터 2년에 걸쳐 500백만원씩 분할 지급 * 부산: (일반) 700만원, (장애) 800만원 * 경기: 22년부터 2년에 걸쳐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씩 분할 지급 * 충북: 청주, 과산 800만원</p>	사·도	자립정착금 1인당 지급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특별시*	1,000	1,000	1,000	부산광역시*	700	700	700	대구광역시	800	800	800	인천광역시	800	800	800	광주광역시	1,000	1,000	1,000	대전광역시	800	800	800	울산광역시	500	500	500	세종특별자치시	500	500	500	경기도*	1,500	1,500	1,500	강원도	500	500	500	충청북도*	500	500	500	충청남도	500	500	500	전라북도	500	500	500	전라남도	1,000	1,000	1,000	경상북도	500	500	500	경상남도	500	500	500	제주특별자치도	500	500	500	<p>[ 2023년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 ] (단위: 만원, '22. 12월 지자체 조사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사·도</th> <th colspan="3">자립정착금 1인당 지급 기준</th> </tr> <tr> <th>아동복지시설</th> <th>공동생활가정</th> <th>가정위탁</th> </tr> </thead> <tbody> <tr><td>서울특별시</td><td>1,500</td><td>1,500</td><td>1,500</td></tr> <tr><td>부산광역시</td><td>1,000</td><td>1,000</td><td>1,000</td></tr> <tr><td>대구광역시</td><td>1,000</td><td>1,000</td><td>1,000</td></tr> <tr><td>인천광역시</td><td>1,000</td><td>1,000</td><td>1,000</td></tr> <tr><td>광주광역시</td><td>1,000</td><td>1,000</td><td>1,000</td></tr> <tr><td>대전광역시</td><td>1,500</td><td>1,500</td><td>1,500</td></tr> <tr><td>울산광역시</td><td>1,000</td><td>1,000</td><td>1,000</td></tr> <tr><td>세종특별자치시</td><td>800</td><td>800</td><td>800</td></tr> <tr><td>경기도</td><td>1,500</td><td>1,500</td><td>1,500</td></tr> <tr><td>강원도</td><td>1,000</td><td>1,000</td><td>1,000</td></tr> <tr><td>충청북도</td><td>1,000</td><td>1,000</td><td>1,000</td></tr> <tr><td>충청남도</td><td>1,000</td><td>1,000</td><td>1,000</td></tr> <tr><td>전라북도</td><td>1,000</td><td>1,000</td><td>1,000</td></tr> <tr><td>전라남도</td><td>1,000</td><td>1,000</td><td>1,000</td></tr> <tr><td>경상북도</td><td>1,000</td><td>1,000</td><td>1,000</td></tr> <tr><td>경상남도</td><td>1,000</td><td>1,000</td><td>1,000</td></tr> <tr><td>제주특별자치도</td><td>1,500</td><td>1,500</td><td>1,500</td></tr> </tbody> </table>	사·도	자립정착금 1인당 지급 기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특별시	1,500	1,500	1,500	부산광역시	1,000	1,000	1,000	대구광역시	1,000	1,000	1,000	인천광역시	1,000	1,000	1,000	광주광역시	1,000	1,000	1,000	대전광역시	1,500	1,500	1,500	울산광역시	1,000	1,000	1,000	세종특별자치시	800	800	800	경기도	1,500	1,500	1,500	강원도	1,000	1,000	1,000	충청북도	1,000	1,000	1,000	충청남도	1,000	1,000	1,000	전라북도	1,000	1,000	1,000	전라남도	1,000	1,000	1,000	경상북도	1,000	1,000	1,000	경상남도	1,000	1,000	1,000	제주특별자치도	1,500	1,500	1,500	'23년 자립정착금 지급기준 변경사항 반영
사·도	자립정착금 1인당 지급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특별시*	1,000	1,000	1,000																																																																																																																																																							
부산광역시*	700	700	700																																																																																																																																																							
대구광역시	800	800	800																																																																																																																																																							
인천광역시	800	800	800																																																																																																																																																							
광주광역시	1,000	1,000	1,000																																																																																																																																																							
대전광역시	800	800	800																																																																																																																																																							
울산광역시	500	500	500																																																																																																																																																							
세종특별자치시	500	500	500																																																																																																																																																							
경기도*	1,500	1,500	1,500																																																																																																																																																							
강원도	500	500	500																																																																																																																																																							
충청북도*	500	500	500																																																																																																																																																							
충청남도	500	500	500																																																																																																																																																							
전라북도	500	500	500																																																																																																																																																							
전라남도	1,000	1,000	1,000																																																																																																																																																							
경상북도	500	500	500																																																																																																																																																							
경상남도	500	500	500																																																																																																																																																							
제주특별자치도	500	500	500																																																																																																																																																							
사·도	자립정착금 1인당 지급 기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특별시	1,500	1,500	1,500																																																																																																																																																							
부산광역시	1,000	1,000	1,000																																																																																																																																																							
대구광역시	1,000	1,000	1,000																																																																																																																																																							
인천광역시	1,000	1,000	1,000																																																																																																																																																							
광주광역시	1,000	1,000	1,000																																																																																																																																																							
대전광역시	1,500	1,500	1,500																																																																																																																																																							
울산광역시	1,000	1,000	1,000																																																																																																																																																							
세종특별자치시	800	800	800																																																																																																																																																							
경기도	1,500	1,500	1,500																																																																																																																																																							
강원도	1,000	1,000	1,000																																																																																																																																																							
충청북도	1,000	1,000	1,000																																																																																																																																																							
충청남도	1,000	1,000	1,000																																																																																																																																																							
전라북도	1,000	1,000	1,000																																																																																																																																																							
전라남도	1,000	1,000	1,000																																																																																																																																																							
경상북도	1,000	1,000	1,000																																																																																																																																																							
경상남도	1,000	1,000	1,000																																																																																																																																																							
제주특별자치도	1,500	1,500	1,500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1. 보호아동 자립지원	17	라. 대학등록금, 전세자금 지원 등 확대 협조 [ 2022년 대학등록금 등 지급 기준 ]  (단위: 만원, 지자체 조사 기준)	라. 대학등록금, 전세자금 지원 등 확대 협조 [ 2023년 대학등록금 등 지급 기준 ]  (단위: 만원, 지자체 조사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도</th> <th colspan="3">대학등록금 1인당 지급 기준</th> </tr> <tr> <th>이동양육시설</th> <th>공동생활가정</th> <th>가정위탁</th> </tr> </thead> <tbody> <tr> <td>서울특별시</td> <td>300</td> <td>300</td> <td>300</td> </tr> <tr> <td>부산광역시</td> <td>350</td> <td>350</td> <td>350</td> </tr> <tr> <td>대구광역시</td> <td>200</td> <td>200</td> <td>200</td> </tr> <tr> <td>인천광역시</td> <td>대학생활 안정지원금 200</td> <td>대학생활 안정지원금 200</td> <td>대학생활 안정지원금 200</td> </tr> <tr> <td>광주광역시</td> <td>-</td> <td>-</td> <td>-</td> </tr> <tr> <td>대전광역시</td> <td>200</td> <td>200</td> <td>-</td> </tr> <tr> <td>울산광역시</td> <td>실비 (최대 500)</td> <td>실비 (최대 500)</td> <td>실비 (최대 500)</td> </tr> <tr> <td>세종특별자치시</td> <td>실비 (최대 500)</td> <td>실비 (최대 500)</td> <td>실비 (최대 500)</td> </tr> <tr> <td>경기도</td> <td>대학준비금 250</td> <td>대학준비금 250</td> <td>대학준비금 250</td> </tr> <tr> <td>강원도</td> <td>대학생활 안정금 200</td> <td>대학생활 안정금 200</td> <td>대학생활 안정금 200</td> </tr> <tr> <td>충청북도*</td> <td>500</td> <td>500</td> <td>500</td> </tr> <tr> <td>충청남도</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라북도</td> <td>200</td> <td>200</td> <td>200</td> </tr> <tr> <td>전라남도</td> <td>대학입학 준비금 150</td> <td>대학입학 준비금 150</td> <td>대학입학 준비금 150</td> </tr> <tr> <td>경상북도</td> <td>대학입학금 200</td> <td>대학입학금 200</td> <td>대학입학금 200</td> </tr> <tr> <td>경상남도</td> <td>대학생활 안정자금 200</td> <td>대학생활 안정자금 200</td> <td>대학생활 안정자금 200</td> </tr> <tr> <td>제주특별자치도</td> <td>300</td> <td>300</td> <td>300</td> </tr> </tbody> </table>	시·도	대학등록금 1인당 지급 기준			이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특별시	300	300	300	부산광역시	350	350	350	대구광역시	200	200	200	인천광역시	대학생활 안정지원금 200	대학생활 안정지원금 200	대학생활 안정지원금 200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200	200	-	울산광역시	실비 (최대 500)	실비 (최대 500)	실비 (최대 500)	세종특별자치시	실비 (최대 500)	실비 (최대 500)	실비 (최대 500)	경기도	대학준비금 250	대학준비금 250	대학준비금 250	강원도	대학생활 안정금 200	대학생활 안정금 200	대학생활 안정금 200	충청북도*	500	500	500	충청남도	-	-	-	전라북도	200	200	200	전라남도	대학입학 준비금 150	대학입학 준비금 150	대학입학 준비금 150	경상북도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경상남도	대학생활 안정자금 200	대학생활 안정자금 200	대학생활 안정자금 200	제주특별자치도	300	300	300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도</th> <th colspan="3">대학등록금 1인당 지급 기준</th> </tr> <tr> <th>이동복지시설</th> <th>공동생활가정</th> <th>가정위탁</th> </tr> </thead> <tbody> <tr> <td>서울특별시</td> <td>대학입학금 300</td> <td>대학입학금 300</td> <td>대학입학금 300</td> </tr> <tr> <td>부산광역시</td> <td>대학등록금 실비 (최대 350) 대학입학 준비금 50</td> <td>대학등록금 실비 (최대 350) 대학입학 준비금 50</td> <td>대학등록금 실비 (최대 350) 대학입학 준비금 50</td> </tr> <tr> <td>대구광역시</td> <td>대학입학금 200</td> <td>대학입학금 200</td> <td>대학입학금 200</td> </tr> <tr> <td>인천광역시</td> <td>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200</td> <td>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200</td> <td>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200</td> </tr> <tr> <td>광주광역시</td> <td>-</td> <td>-</td> <td>-</td> </tr> <tr> <td>대전광역시</td> <td>200</td> <td>200</td> <td>-</td> </tr> <tr> <td>울산광역시</td> <td>실비 (최대 500)</td> <td>실비 (최대 500)</td> <td>실비 (최대 500)</td> </tr> <tr> <td>세종특별자치시</td> <td>실비 (최대 500)</td> <td>실비 (최대 500)</td> <td>실비 (최대 500)</td> </tr> <tr> <td>경기도</td> <td>대학준비금 250</td> <td>대학준비금 250</td> <td>대학준비금 250</td> </tr> <tr> <td>강원도</td> <td>대학생활 안정금 250</td> <td>대학생활 안정금 250</td> <td>대학생활 안정금 250</td> </tr> <tr> <td>충청북도</td> <td>실비 (200~1,000)</td> <td>실비 (200~1,000)</td> <td>실비 (200~1,000)</td> </tr> <tr> <td>충청남도</td> <td>대학생활 안정자금 200</td> <td>대학생활 안정자금 200</td> <td>대학생활 안정자금 200</td> </tr> <tr> <td>전라북도</td> <td>200</td> <td>200</td> <td>200</td> </tr> <tr> <td>전라남도</td> <td>대학입학 준비금 150</td> <td>대학입학 준비금 150</td> <td>대학입학 준비금 150</td> </tr> <tr> <td>경상북도</td> <td>대학입학금 200</td> <td>대학입학금 200</td> <td>대학입학금 200</td> </tr> <tr> <td>경상남도</td> <td>대학생활 안정자금 200</td> <td>대학생활 안정자금 200</td> <td>대학생활 안정자금 200</td> </tr> <tr> <td>제주특별자치도</td> <td>300</td> <td>300</td> <td>300</td> </tr> </tbody> </table>	시·도	대학등록금 1인당 지급 기준			이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특별시	대학입학금 300	대학입학금 300	대학입학금 300	부산광역시	대학등록금 실비 (최대 350) 대학입학 준비금 50	대학등록금 실비 (최대 350) 대학입학 준비금 50	대학등록금 실비 (최대 350) 대학입학 준비금 50	대구광역시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인천광역시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200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200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200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200	200	-	울산광역시	실비 (최대 500)	실비 (최대 500)	실비 (최대 500)	세종특별자치시	실비 (최대 500)	실비 (최대 500)	실비 (최대 500)	경기도	대학준비금 250	대학준비금 250	대학준비금 250	강원도	대학생활 안정금 250	대학생활 안정금 250	대학생활 안정금 250	충청북도	실비 (200~1,000)	실비 (200~1,000)	실비 (200~1,000)	충청남도	대학생활 안정자금 200	대학생활 안정자금 200	대학생활 안정자금 200	전라북도	200	200	200	전라남도	대학입학 준비금 150	대학입학 준비금 150	대학입학 준비금 150	경상북도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경상남도	대학생활 안정자금 200	대학생활 안정자금 200	대학생활 안정자금 200	제주특별자치도	300	300
시·도	대학등록금 1인당 지급 기준																																																																																																																																																							
	이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특별시	300	300	300																																																																																																																																																					
부산광역시	350	350	350																																																																																																																																																					
대구광역시	200	200	200																																																																																																																																																					
인천광역시	대학생활 안정지원금 200	대학생활 안정지원금 200	대학생활 안정지원금 200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200	200	-																																																																																																																																																					
울산광역시	실비 (최대 500)	실비 (최대 500)	실비 (최대 500)																																																																																																																																																					
세종특별자치시	실비 (최대 500)	실비 (최대 500)	실비 (최대 500)																																																																																																																																																					
경기도	대학준비금 250	대학준비금 250	대학준비금 250																																																																																																																																																					
강원도	대학생활 안정금 200	대학생활 안정금 200	대학생활 안정금 200																																																																																																																																																					
충청북도*	500	500	500																																																																																																																																																					
충청남도	-	-	-																																																																																																																																																					
전라북도	200	200	200																																																																																																																																																					
전라남도	대학입학 준비금 150	대학입학 준비금 150	대학입학 준비금 150																																																																																																																																																					
경상북도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경상남도	대학생활 안정자금 200	대학생활 안정자금 200	대학생활 안정자금 200																																																																																																																																																					
제주특별자치도	300	300	300																																																																																																																																																					
시·도	대학등록금 1인당 지급 기준																																																																																																																																																							
	이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특별시	대학입학금 300	대학입학금 300	대학입학금 300																																																																																																																																																					
부산광역시	대학등록금 실비 (최대 350) 대학입학 준비금 50	대학등록금 실비 (최대 350) 대학입학 준비금 50	대학등록금 실비 (최대 350) 대학입학 준비금 50																																																																																																																																																					
대구광역시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인천광역시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200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200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200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200	200	-																																																																																																																																																					
울산광역시	실비 (최대 500)	실비 (최대 500)	실비 (최대 500)																																																																																																																																																					
세종특별자치시	실비 (최대 500)	실비 (최대 500)	실비 (최대 500)																																																																																																																																																					
경기도	대학준비금 250	대학준비금 250	대학준비금 250																																																																																																																																																					
강원도	대학생활 안정금 250	대학생활 안정금 250	대학생활 안정금 250																																																																																																																																																					
충청북도	실비 (200~1,000)	실비 (200~1,000)	실비 (200~1,000)																																																																																																																																																					
충청남도	대학생활 안정자금 200	대학생활 안정자금 200	대학생활 안정자금 200																																																																																																																																																					
전라북도	200	200	200																																																																																																																																																					
전라남도	대학입학 준비금 150	대학입학 준비금 150	대학입학 준비금 150																																																																																																																																																					
경상북도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경상남도	대학생활 안정자금 200	대학생활 안정자금 200	대학생활 안정자금 200																																																																																																																																																					
제주특별자치도	300	300	300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I. 보호아동 자립지원	44	<b>참고</b> I 자립지원 자원연계 주요정보 (신설)	<b>참고</b> I 자립지원 자원연계 주요정보 (7)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서비스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및 정신건강복지 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 (서비스내용) 3개월간(10회기)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II. 디딤씨앗 통장(CDA)	47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47	<b>3. 주요 연혁</b> (추가)	2022년 : 정부 매칭비율 확대(1:1→1:2) 및 정부 지원 금액 확대(5만원→10만원)	
	48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 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 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 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 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48	※ 2022년 신규선정 대상 : 만 12세(2010.1.1. ~2010.12.31.출생), 만 13세(2009.1.1.~ 2009.12.31.출생), 만 14세(2008.1.1. ~2008.12.31.출생), 만 15세(2007.1.1.~ 2007.12.31.출생), 만 16세(2006.1.1. ~2006.12.31.출생), 만 17세(2005.1.1. ~2005.12.31.출생)	※ 2023년 신규선정 대상 : 만 12세~17세 (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49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이를 위해 만 18세 경과 시 협력은행 계좌 개설 안내 필요(업무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구 분	사 용 항 목	사 용 조 건	
II. 디딤씨앗 통장(CDA)	50	①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 학위 인정기관*</li> <li>• 2,(3)년제 대학</li> <li>• 4년제 대학</li> <li>• 대학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li> <li>•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li> <li>•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li> </ul>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자격증</li> <li>• 국제자격증</li> <li>• 국가고시</li> <li>• 학원등록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 관련 자격증은 가능</li> <l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참조 (<a href="http://www.pqi.or.kr">http://www.pqi.or.kr</a> 접속 후 공인민간자격 검색)</li> <li>•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li> <li>※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li> </ul> </li> </ul>	
		⑦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li> <li>※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li> <li>• 예외적으로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본인 신청 시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위탁부모 등 보호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의견 청취 후 인정 가능</li> </ul>		
	55	● 가입아동에게 연 2회 적립 내역(적립금 현황 및 만기 여부) 통지	● 가입아동에게 연 2회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을 통해 “ <u>신한SOL</u> ”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계좌 조회 방법·만기 여부 통지		
	55	※ 대상아동 대비 가입 현황 파악 등 통계 관리(보호대상아동/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05~'10년생 구분)	※ 대상아동 대비 가입 현황 파악 등 통계 관리(보호대상아동/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만 17세 구분)		
57	* 아동 명단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기초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2005년생, 2006년생, 2007년생, 2008년생, 2009년생, 2010년생 아동을 추출	* 아동 명단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기초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만 12세~만17세 아동을 추출			
62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만 18세 이상, 대학 생활지원비 지원,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u>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u>			
64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에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 지원금의 지급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에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 지원금의 지급 가능 - 연내 만 24세 도달 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인출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이에 따라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II. 디딤씨앗 통장(CDA)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용도 중 대학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와 금액 중 일부만 적립금 사용용도에 충족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용도 중 대학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와 금액 중 일부만 적립금 사용용도에 충족하는 경우</li> </ul>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해외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해외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해외입양 포함)</li> </ul> </li> </ul>																																																																																																										
	68	<table border="1"> <tr> <td>만기지급 이율 (2023.1.1.현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 이율 결정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적립예금의 계약기간별 만기지급 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월 이상 : 연 3.45%</li> <li>- 12개월 이상 : 연 3.80%</li> <li>- 24개월 이상 : 연 3.85%</li> <li>- 36개월 이상 : 연 4.00%</li> <li>- 48개월 이상 : 연 4.05%</li> </ul> </li> <li>※ 일반정기적금 고시금리 변경 시 자동으로 연동하여 변경</li> </ul> </td> </tr> <tr> <td>만기후 적립기간 및 이율 (2023.1.1.현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20세미만 :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 0.9% 적용</li> <li>만 20~22세미만 :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 0.7% 적용</li> <li>만 22~24세미만 :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 0.5% 적용</li> <li>만 24세 이상 : 아동이 만2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신규 해당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li> <li>※ 이율 변경시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li> <li>※ '23.1.1. 이후 해지계좌 적용</li> </ul> </td> </tr> </table>	만기지급 이율 (2023.1.1.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 이율 결정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적립예금의 계약기간별 만기지급 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월 이상 : 연 3.45%</li> <li>- 12개월 이상 : 연 3.80%</li> <li>- 24개월 이상 : 연 3.85%</li> <li>- 36개월 이상 : 연 4.00%</li> <li>- 48개월 이상 : 연 4.05%</li> </ul> </li> <li>※ 일반정기적금 고시금리 변경 시 자동으로 연동하여 변경</li> </ul>	만기후 적립기간 및 이율 (2023.1.1.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20세미만 :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 0.9% 적용</li> <li>만 20~22세미만 :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 0.7% 적용</li> <li>만 22~24세미만 :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 0.5% 적용</li> <li>만 24세 이상 : 아동이 만2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신규 해당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li> <li>※ 이율 변경시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li> <li>※ '23.1.1. 이후 해지계좌 적용</li> </ul>																																																																																																							
만기지급 이율 (2023.1.1.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 이율 결정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적립예금의 계약기간별 만기지급 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월 이상 : 연 3.45%</li> <li>- 12개월 이상 : 연 3.80%</li> <li>- 24개월 이상 : 연 3.85%</li> <li>- 36개월 이상 : 연 4.00%</li> <li>- 48개월 이상 : 연 4.05%</li> </ul> </li> <li>※ 일반정기적금 고시금리 변경 시 자동으로 연동하여 변경</li> </ul>																																																																																																												
만기후 적립기간 및 이율 (2023.1.1.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20세미만 :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 0.9% 적용</li> <li>만 20~22세미만 :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 0.7% 적용</li> <li>만 22~24세미만 :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 0.5% 적용</li> <li>만 24세 이상 : 아동이 만2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신규 해당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li> <li>※ 이율 변경시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li> <li>※ '23.1.1. 이후 해지계좌 적용</li> </ul>																																																																																																												
	73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th> <th>구 분</th> <th>운용</th> <th>1년</th> <th>5년</th> <th>10년</th> <th>15년</th> <th>18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월 3만원 적립 시</td> <td rowspan="2">아동 적립금</td> <td>기본 적립금</td> <td>적립예금</td> <td>36</td> <td>180</td> <td>360</td> <td>540</td> <td>648</td> </tr> <tr> <td>추가 적립금</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부(지자체) 지원금</td> <td>투자신탁</td> <td>72</td> <td>360</td> <td>720</td> <td>1,080</td> <td>1,296</td> </tr> <tr> <td colspan="3"></td> <td>총액(이자 제외)</td> <td>108</td> <td>540</td> <td>1,080</td> <td>1,620</td> <td>1,944</td> </tr> <tr> <td rowspan="3">월 5만원 적립 시</td> <td rowspan="2">아동 적립금</td> <td>기본 적립금</td> <td>적립예금</td> <td>60</td> <td>300</td> <td>600</td> <td>900</td> <td>1,080</td> </tr> <tr> <td>추가 적립금</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부(지자체) 지원금</td> <td>투자신탁</td> <td>120</td> <td>600</td> <td>1,200</td> <td>1,800</td> <td>2,160</td> </tr> <tr> <td colspan="3"></td> <td>총액(이자 제외)</td> <td>180</td> <td>900</td> <td>1,800</td> <td>2,700</td> <td>3,240</td> </tr> <tr> <td rowspan="3">월 10만원 적립 시</td> <td rowspan="2">아동 적립금</td> <td>기본 적립금</td> <td>적립예금</td> <td>60</td> <td>300</td> <td>600</td> <td>900</td> <td>1,080</td> </tr> <tr> <td>추가 적립금</td> <td></td> <td>60</td> <td>300</td> <td>600</td> <td>900</td> <td>1,080</td> </tr> <tr> <td>정부(지자체) 지원금</td> <td>투자신탁</td> <td>120</td> <td>600</td> <td>1,200</td> <td>1,800</td> <td>2,160</td> </tr> <tr> <td colspan="3"></td> <td>총액(이자 제외)</td> <td>240</td> <td>1,200</td> <td>2,400</td> <td>3,600</td> <td>4,320</td> </tr> </tbody> </table>			구 분	운용	1년	5년	10년	15년	18년	월 3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36	180	360	540	648	추가 적립금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72	360	720	1,080	1,296				총액(이자 제외)	108	540	1,080	1,620	1,944	월 5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	300	600	900	1,080	추가 적립금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	600	1,200	1,800	2,160				총액(이자 제외)	180	900	1,800	2,700	3,240	월 10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	300	600	900	1,080	추가 적립금		60	300	600	900	1,080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	600	1,200	1,800	2,160				총액(이자 제외)	240	1,200	2,400	3,600	4,320		
		구 분	운용	1년	5년	10년	15년	18년																																																																																																					
월 3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36	180	360	540	648																																																																																																					
		추가 적립금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72	360	720	1,080	1,296																																																																																																						
			총액(이자 제외)	108	540	1,080	1,620	1,944																																																																																																					
월 5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	300	600	900	1,080																																																																																																					
		추가 적립금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	600	1,200	1,800	2,160																																																																																																						
			총액(이자 제외)	180	900	1,800	2,700	3,240																																																																																																					
월 10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	300	600	900	1,080																																																																																																					
		추가 적립금		60	300	600	900	1,080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	600	1,200	1,800	2,160																																																																																																						
			총액(이자 제외)	240	1,200	2,400	3,600	4,320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II. 디딤씨앗 통장(CDA)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행 계좌를 통한 디딤씨앗계좌로의 입금의 경우 수수료 발생</li> <li>- 매월 자동이체 등록을 통하여 수수료 지급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행 계좌를 통한 디딤씨앗계좌로의 입금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매월 자동이체 등록을 통하여 수수료 지급 최소화 <u>권고</u></li> </ul>																	
	75	- 보호자 및 후원자가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후원할 경우 수수료 없이 후원 가능	- 후원자가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후원할 경우 수수료 없이 후원 가능																	
	80	<신설>	<b>20. 무연고아동 사망시 처리절차는?</b> (본문 참고)																	
	85	만 17세(2005.1.1.~12.31 출생), 만 16세(2006.1.1.~ 12.31 출생), 만 15세(2007.1.1. ~12.31 출생), 만 14세(2008.1.1.~12.31 출생), 만 13세(2009.1.1.~ 12.31 출생) 및 만 12세(2010.1.1.~12.31 출생)	만 12세~만 17세																	
III. 경계선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93	(3) 사례관리비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는 시·군·구에 최종 사업 대상자 통보 및 사례관리비를 교부</li> </ul>	(3) 사례관리비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는 시·군·구에 최종 사업 대상자 통보 및 사례관리비를 교부(대상자 선정 후 1개월 이내)</li> </ul>																	
	94	(1)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시간</li> <li>- 자격증 취득과정 : 총 40시간(집합 교육 24시간, 실습교육 12시간, 사이버 교육 4시간)</li> </ul>	(1)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시간</li> <li>- 자격증 취득과정 : 총 40시간(집합 교육 24시간, 실습교육 10시간, 사이버 교육 6시간)</li> </ul>																	
	94	(2)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심화·보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시간 : 심화교육 3시간, 보수교육 6시간 이수</li> </ul>	(2)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심화·보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시간 : 심화교육 3시간, 보수교육 6시간 이수(자격증 취득 후 3년 이내)</li> </ul>																	
	95	* 전국에 8개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되어 있음(서울, 부산, 경기, 충남, 강원, 전남, 경북,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시기 및 절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양성 과정</th> <th>심화·보수 과정</th> <th>그 외 종사자 교육</th> </tr> </thead> <tbody> <tr> <td>운영 시기</td> <td>4월, 6월, 8월</td> <td>5월, 7월, 9월</td> <td>11월</td> </tr> </tbody> </table>	구분	양성 과정	심화·보수 과정	그 외 종사자 교육	운영 시기	4월, 6월, 8월	5월, 7월, 9월	11월	* 전국 <u>17개 시도</u> 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시기 및 절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양성 과정</th> <th>심화·보수 과정</th> <th>그 외 종사자 교육</th> </tr> </thead> <tbody> <tr> <td>운영 시기</td> <td>4월, 6월, 8월</td> <td>5월, 7월, 9월</td> <td>연중</td> </tr> </tbody> </table>	구분	양성 과정	심화·보수 과정	그 외 종사자 교육	운영 시기	4월, 6월, 8월	5월, 7월, 9월	연중	현행화
	구분	양성 과정	심화·보수 과정	그 외 종사자 교육																
운영 시기	4월, 6월, 8월	5월, 7월, 9월	11월																	
구분	양성 과정	심화·보수 과정	그 외 종사자 교육																	
운영 시기	4월, 6월, 8월	5월, 7월, 9월	연중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제공 회기 : 최대 50회기</li> <li>※ 원칙적으로 주 1회이상 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제공 회기 : 최대 50회기</li> <li>- 시설 내 자체서비스 외 전문기관 등 외부서비스 연계 가능</li> </ul>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Ⅲ. 경계선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97	- 식비 및 다과비(1식 15,000원)	- 식비 및 다과비(1식 20,000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 시설의 장 : 서비스 종료공문 미발송 시 서비스 지원 자동 연장</li> <li>- 아동권리보장원 : 사업대상 시설 신청을 토대로 연장여부 결정</li> <li>- 사업대상 시설의 장 : 서비스 지원 연장이 결정된 아동에 대해서는 기존 서비스 계획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서비스 계획 재수립하여 실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 시설의 장 : 연도가 변경되어도 서비스는 자동 연장하여 연속적으로 실시. 다만, 연장요청 공문을 12월말까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송부</li> <li>- 아동권리보장원 : 사업대상 시설 신청을 토대로 시·도로 연장아동 명단 송부</li> <li>- 사업대상 시설의 장 : 서비스 지원 연장이 결정된 아동에 대해서는 기존 서비스 계획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서비스 계획 재수립하여 실시</li> </ul> </li> <li>※ 시·도는 연장아동의 연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 우선 배정</li> </ul>																																
Ⅳ. 자립수당	106	<b>라. 지급금액 및 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원칙</li> </ul>	<b>라. 지급금액 및 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원칙</li> </ul>	인상금액 반영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시설 :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li> </ul> </li> </ul>																																
	109	<신설>  [ 신청방법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보호종료 예정자</th> <th rowspan="2">보호종료자</th> </tr> <tr> <th>아동복지시설</th> <th>가정위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방문 신청</td> <td>신청권자</td> <td>본인 또는 시설 종사자</td> <td>본인 또는 대리인</td> </tr> <tr> <td>신청</td> <td>시설관할</td> <td>본인 주민</td> </tr> <tr> <td>신청</td> <td>시설관할</td> <td>본인 주민</td> </tr> </tbody> </table>	구분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 신청	신청권자	본인 또는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시설관할	본인 주민	신청	시설관할	본인 주민	(3) 온라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li> </ul> [ 신청방법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보호종료 예정자</th> <th rowspan="2">보호종료자</th> </tr> <tr> <th>아동복지시설</th> <th>가정위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방문 신청</td> <td>신청권자</td> <td>본인 또는 시설 종사자</td> <td>본인 또는 대리인</td> </tr> <tr> <td>신청접수</td> <td>시설 관할 읍·면·동</td> <td>본인 주민 등록 상 주소지</td> </tr> <tr> <td>신청접수</td> <td>시설 관할 읍·면·동</td> <td>본인 주민 등록 상 주소지</td> </tr> </tbody> </table>	구분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 신청	신청권자	본인 또는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접수	시설 관할 읍·면·동	본인 주민 등록 상 주소지	신청접수	시설 관할 읍·면·동	본인 주민 등록 상 주소지
구분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 신청	신청권자	본인 또는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시설관할	본인 주민																																
	신청	시설관할	본인 주민																																
구분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 신청	신청권자	본인 또는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접수	시설 관할 읍·면·동	본인 주민 등록 상 주소지																																
	신청접수	시설 관할 읍·면·동	본인 주민 등록 상 주소지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IV. 자립수당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보호종료 예정자</th> <th rowspan="2">보호 종료자</th> </tr> <tr> <th>아동복지 시설</th> <th>가정 위탁</th> </tr> </thead> <tbody> <tr> <td>접수</td> <td>읍·면·동 행정복지 센터</td> <td>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td> <td>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td> </tr> <tr> <td>신청 기간</td> <td colspan="2">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td> <td>상시 신청가능</td> </tr> <tr> <td>우편·팩스 신청</td> <td colspan="3">해의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td> </tr> </tbody> </table> <p>● 사이버강의 이수증 1부</p> <p>※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a href="http://edu.kinfa.or.kr">http://edu.kinfa.or.kr</a>)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p>	구분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 종료자	아동복지 시설	가정 위탁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간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가능	우편·팩스 신청	해의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보호종료 예정자</th> <th rowspan="2">보호 종료자</th> </tr> <tr> <th>아동복지 시설</th> <th>가정 위탁</th> </tr> </thead> <tbody> <tr> <td>신청 기간</td> <td>행정복지 센터</td> <td>읍·면·동 행정복지센터</td> <td>읍·면·동 행정복지센터</td> </tr> <tr> <td>신청 기간</td> <td colspan="2">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td> <td>상시 신청가능</td> </tr> <tr> <td>신청 권자</td> <td colspan="2">본인</td> <td>본인</td> </tr> <tr> <td>온라인 신청</td> <td>접수처</td> <td>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td> <td>본인 주민 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td> </tr> <tr> <td>신청 기간</td> <td colspan="2">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td> <td>상시신청 가능</td> </tr> <tr> <td>우편·팩스 신청</td> <td colspan="3">해의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td> </tr> </tbody> </table> <p>●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p> <p>*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a href="http://edu.kinfa.or.kr">http://edu.kinfa.or.kr</a>)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p> <p>**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연계 하여 종합재무설계 전문상담·교육 후 확인서 발급 가능(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자체에서 상담 가능. 세부 연락처는 참고자료 1 참조)</p>	구분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 종료자	아동복지 시설	가정 위탁	신청 기간	행정복지 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간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가능	신청 권자	본인		본인	온라인 신청	접수처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주민 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간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신청 가능	우편·팩스 신청	해의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구분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 종료자																																																
		아동복지 시설	가정 위탁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간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가능																																																	
우편·팩스 신청	해의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구분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 종료자																																																	
	아동복지 시설	가정 위탁																																																		
신청 기간	행정복지 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간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가능																																																	
신청 권자	본인		본인																																																	
온라인 신청	접수처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주민 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간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신청 가능																																																	
우편·팩스 신청	해의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111	③ 신고의무 : 수급자격과 관련된 정보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외국 국적 취득, ▲군입대, ▲수용시설 입소 등)가 변동 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적정하게 수급한 급여는 환수 처리	③ 신고의무 : 수급자격과 관련된 정보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외국 국적 취득, ▲수용시설 입소 등)가 변동 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적정하게 수급한 급여는 환수 처리	③ 신고의무 : 수급자격과 관련된 정보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외국 국적 취득, ▲수용시설 입소 등)가 변동 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적정하게 수급한 급여는 환수 처리	신고의무 사유에서 군입대 제외																																																
114	● 자립수당 지급은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자립수당 지급은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지급기간 명확화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IV. 자립수당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 지급정지 :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까지 지급 정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 지급정지 :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b>출소일이 속하는 달까지</b> 지급 정지</li> </ul>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방불명, 실종·가출 등 - 지급정지 : 경찰관서 등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찰관서 등 신고 해제일 또는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까지 지급 정지</li> <li>●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지급정지 : 국외체류기간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지급 정지</li> <li>●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 적용시점 : 주민등록 상 거주주소 등록 또는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방불명, 실종·가출 등 - 지급정지 : 경찰관서 등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찰관서 등 신고 해제일 또는 <b>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달까지</b> 지급 정지</li> <li>●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지급정지 : 국외체류기간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b>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b> 지급 정지</li> <li>●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 적용시점 : 주민등록 상 거주주소 등록 <b>으로</b>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li> </ul>	
	127	<p>7 청소년 쉼터 등 타 법 시설에서 보호 받았던 경우 보호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p> <p>● 자립수당 대상자 선정 시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한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종합시설 포함) 및 가정위탁으로 한정합니다.</p>	<p>7 청소년 쉼터 등 타 법 시설에서 보호 받았던 경우 보호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p> <p>● 자립수당 대상자 선정 시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한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포함),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종합시설 포함) 및 가정위탁으로 한정합니다.</p>	공동생활 가정범위 명확화
V. 시·도 자립 지원전담 기관 설치 및 운영	140	<p><b>3.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b></p> <p><b>참고</b>   보호종료 예정 대상자에 대한 보호 종료 절차 및 사후관리 연계 방안</p> <p>● <b>수행 절차</b> 사후관리 계획 회의(사후관리 계획서 작성) → 사후관리 동의서 확보 → 보호 종결 및 사후관리 개시</p>	<p><b>3.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b></p> <p><b>참고</b>   보호종료 예정 대상자에 대한 보호 종료 절차 및 사후관리 연계 방안</p> <p>● <b>수행 절차</b>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종료 예정 아동 명단 전담기관에 공유 및 사후관리 회의 일정조율 및 참석요청 →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전담기관) 사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사후관리 동의서 확보 →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에 보호종결 심의 요청 및 사후관리 계획서·동의서 제출 → (시군구) 보호종료 대상자의 전담기관 지원 연계 여부 확인 후 사례 결정위원회 보호종결 결정 → (전담기관)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개시</p>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V. 시·도 자립 지원전담 기관 설치 및 운영	141	<b>4. 자립지원통합서비스</b> <b>가. 지원대상</b>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초기상담을 거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시·도별 배분 기준에 따른 최대 지원 인원 내에서 수시 선정	<b>4. 자립지원통합서비스</b> <b>가. 지원대상</b>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초기상담을 거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수시 선정) ※ 시·도별 배분 인원에서 추가 선정 가능 (사업비 예산 내) ※ 시·도별 배분 인원 10% 내에서 보호연장 아동 선정·지원 가능																																				
	149	<b>&lt;신설&gt;</b>	<b>참고</b>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시·도</th> <th>수행기관</th> </tr> </thead> <tbody> <tr><td>서울특별시</td><td>서울아동복지협회</td></tr> <tr><td>부산광역시</td><td>부산아동복지협회</td></tr> <tr><td>대구광역시</td><td>대구YWCA</td></tr> <tr><td>인천광역시</td><td>한국아동복지협회</td></tr> <tr><td>광주광역시</td><td>광주아동복지협회</td></tr> <tr><td>대전광역시</td><td>대전아동복지협회</td></tr> <tr><td>울산광역시</td><td>사회복지법인 봉석재단</td></tr> <tr><td>세종특별자치시</td><td>사회복지법인 영명보육원</td></tr> <tr><td>경기도</td><td>사회복지법인 에벤에셀</td></tr> <tr><td>강원도</td><td>강원도사회서비스원</td></tr> <tr><td>충청북도</td><td>한국아동복지협회</td></tr> <tr><td>충청남도</td><td>충남아동복지협회</td></tr> <tr><td>전라북도</td><td>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td></tr> <tr><td>전라남도</td><td>전남아동복지협회</td></tr> <tr><td>경상북도</td><td>경북아동복지협회</td></tr> <tr><td>경상남도</td><td>굿네이버스 경남중부지부</td></tr> <tr><td>제주도</td><td>사회복지법인 삼인원</td></tr> </tbody> </table>	시·도	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동복지협회	부산광역시	부산아동복지협회	대구광역시	대구YWCA	인천광역시	한국아동복지협회	광주광역시	광주아동복지협회	대전광역시	대전아동복지협회	울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 봉석재단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법인 영명보육원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에벤에셀	강원도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충청북도	한국아동복지협회	충청남도	충남아동복지협회	전라북도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전라남도	전남아동복지협회	경상북도	경북아동복지협회	경상남도	굿네이버스 경남중부지부	제주도	사회복지법인 삼인원
시·도	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동복지협회																																						
부산광역시	부산아동복지협회																																						
대구광역시	대구YWCA																																						
인천광역시	한국아동복지협회																																						
광주광역시	광주아동복지협회																																						
대전광역시	대전아동복지협회																																						
울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 봉석재단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법인 영명보육원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에벤에셀																																						
강원도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충청북도	한국아동복지협회																																						
충청남도	충남아동복지협회																																						
전라북도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전라남도	전남아동복지협회																																						
경상북도	경북아동복지협회																																						
경상남도	굿네이버스 경남중부지부																																						
제주도	사회복지법인 삼인원																																						
VI.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77	<b>&lt;신설&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 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 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022.6.22.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li> <li>• &lt;표&gt; 해당 내용 추가 표기</li> </ul>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VI.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80	● (전력조회 점검·확인)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교육장이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함	● (전력조회 점검·확인)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교육장이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함	관련 법령규정을 명확히 표기
	180	- (직접조회) 아동관련기관에 대해 방문 등을 통해 전력조회 이행여부 점검·확인 - (관계기관 조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교육장이 전력조회 대상자에 대해 직접 경찰서에 전력조회를 요청하여 운영 및 취업여부 점검·확인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교육장이 경찰서에 전력조회를 요청하여 점검·확인 시에는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전력조회를 위한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 가능(제출사유, 제출일시, 제출내용 등 명시 필요)	-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교육장이 아동관련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동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으로부터 전력조회 대상자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경찰서에 전력조회를 요청하여 운영 및 취업여부 점검·확인  * 전력조회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전력조회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제출사유, 제출일시, 제출내용 등 명시 필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관련 법령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정정
	182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3.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3.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VI.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에 따라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행출동이 필요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관하여 상호 동행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동행출동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에 따라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동행출동이 필요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관하여 상호 동행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동행출동 실시</li> </ul>									
	1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별로 정확한 수급 추계 하에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차원에서 보호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현황 웹' 운영</li> <li>시·도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할 일시보호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구 요청 시 시·도 내 보호시설 섭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운영</li> <li>※ 즉각분리·응급조치 발생현황, 시설별 정·현원, 시·도간 조정현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별로 정확한 수급 추계 하에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차원에서 보호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현황 웹' 운영</li> <li>시·도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할 일시보호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구 요청 시 시·도 내 보호시설 섭외를 지원</li> <li>※ 즉각분리·응급조치 발생현황, 시설별 정·현원, 시·도간 조정현황 등</li> </ul>									
	185	2) (회의를 통한 논의 및 판단) 자체사례 회의, 통합사례회의*,	2) (회의를 통한 논의 및 판단) 자체사례 회의, 통합사례회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188~189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설치일 기준) / (2021.12월 현재)</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총 77개소</td> </tr> </table>	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설치일 기준) / (2021.12월 현재)	총 77개소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설치일 기준) / (2022.12월 현재)</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총 85개소</td> </tr> </table>	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설치일 기준) / (2022.12월 현재)	총 85개소		
	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설치일 기준) / (2021.12월 현재)										
	총 77개소											
	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설치일 기준) / (2022.12월 현재)										
	총 85개소											
190	규모 : '21. 12월 기준 77개소 <표>	규모 : '22. 12월 기준 85개소 <표>										
191	다) 위탁계약기관 : 최대 5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다) 위탁계약기관 : 5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2016.8.3. 개정									
206	규모 : '21. 12월 기준 98개소 <표>	규모 : '22. 12월 기준 125개소 <표>										
220	<b>1. 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아동복지법)</li> </ul>	<b>1. 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아동복지법)</li> </ul>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VI.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p>제28조의2)</p> <p><b>2. 정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란 아동학대 신고 접수, 기초정보조사, 현장조사, 사례 판단, 사례관리, 사후관리, 교육·홍보·협력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처리를 위해 운영 되는 전산프로그램과 그 주변기기를 말함</li> </ul> <p><b>3. 법적 근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법 제28조의2</li> <li>-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그 운영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li> <li>※ 2020년 이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li> </ul> <p><b>4. 정보시스템 접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외의 사용 자의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는 SSL VPN 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정보시스템 접근 가능</li> </ul>	<p>제15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함 (아동복지법 제28조의2)</li> </ul> <p><b>2. 정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신고접수, 기초 정보조사, 아동학대조사, 사례판단, 조치 결과, 피해아동보호계획 등 사건관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초기면접 및 사정, 사례관리계획, 서비스제공, 사례점검, 종결 후 개입, 심리치료 등의 사례관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e음, 구)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칭함</li> </ul> <p><b>3. 법적 근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법 제15조의2,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6조의3</li> <li>-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 입력·관리, 운영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li> <li>※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제3항에 따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아동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 보장정보원에 위탁</li> </ul> <p><b>4. 정보시스템 접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관련 업무담당자만 해당 메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별권한(복지부·시도·시군구)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전담 팀장에게 해당</li> </ul>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VI.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p><b>5. 주요 기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 등록 중인 사례의 신고접수, 아동학대조사, 사례 판단, 조치관리, 안전평가, 서비스계획, 서비스제공, 심리치료, 사례점검, 사후 관리 각 단계별로 입력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li> <li>● 업무관리를 위해 게시판, 기관문서 수발신, 통계 및 조회 등 사용자관리 메뉴를 사용할 수 있음</li> </ul>	<p>권한을 부여받아 사용 가능</p> <p><b>5. 주요 기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관할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 등록 중인 사례의 신고접수, 아동학대조사, 사례판단, 조치관리, 안전평가, 사례관리계획, 서비스제공, 심리치료, 사례점검, 사후관리 각 단계별로 입력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u></li> <li>● <u>업무관리를 위해 커뮤니티, 질의응답, 통계 및 조회 등 메뉴를 사용할 수 있음</u></li> </ul>	
VII.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	228	<p><b>1. 실종아동·장애인의보호 및 지원사업개요</b> <b>다. 신상카드 작성·제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시설 등에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무연고)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li> <li>- (작성)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li> </ul> <p>*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p> <li>- (진행절차)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등의 신상카드를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부</li> <li>※ 보호중인 무연고 아동 등의 전원 및 퇴소시 그 변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li>	<p><b>1. 실종아동·장애인의보호 및 지원사업개요</b> <b>다. 신상카드 작성·제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시설 등에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li> <li>- (작성)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li> </ul> <p>*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p> <li>- (진행절차)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등의 신상카드*를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부</li> <li>*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li> <li>· 보호중인 무연고 아동 등의 전원 및 퇴소시 그 변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li> <li>※ 제출방법은 5. 신상카드 제출방법(p241) 참고</li>	법령내용 명확화
	236	<p><b>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b> <b>가. 의무사항</b></p> <p>1) 무연고 아동 등 일시보호센터 우선 보호조치(일시보호센터 현황-첨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아동등 발생지 지정된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li> </ul>	<p><b>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b> <b>가. 의무사항</b></p> <p>1)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 “아동등” 일시 보호센터 우선 보호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아동등 발생지 지정된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li> </ul>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Ⅶ.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자체의 장은 무연고 아동·장애인 발견 시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매년 일시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1월 말까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현황 보고(이후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보고)</li> <li>- 다만 발생장소와 일시보호센터간 거리가 멀거나, 발견시간이 늦어 일시 보호센터로 이동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보호시설로 보호조치 가능(1일 보호기준)</li> <li>- 이 경우 인근보호시설은 일시보호센터에 우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자체의 장은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 “아동등”을 발견 시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매년 일시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1월 말까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현황 보고(아후—실종아동전문기관은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보고)</li> <li>- 다만 발생장소와 일시보호센터간 거리가 멀거나, 발견시간이 늦어 일시 보호센터로 이동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보호시설로 보호조치 가능(1일 보호기준)</li> <li>- 이 경우 인근보호시설은 일시보호센터에 우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u>* 보호연장 필요시 장기보호시설로 전원 조치</u></li> </ul>	
	236	<p><b>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b></p> <p>2) 신고의무 및 신상카드 제출(실종아동법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경우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를 작성, 경찰신고체계로 제출(실종아동법 제6조 제2항)</li> </ul> <p>*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접수서 및 신고접수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하되, 실종아동 등의 복귀절차가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접수서 및 그 사본을 지체없이 폐기(법시행규칙 제3조)</p>	<p><b>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b></p> <p>2) 신고의무 및 신상카드 제출(실종아동법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경우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를 작성, 경찰신고체계로 제출(실종아동법 제6조제2항)</li> </ul> <p>*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접수서 및 신고접수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하되, 실종아동 등의 복귀절차가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접수서 및 그 사본을 지체없이 폐기하고 폐기 책임자 및 폐기에 관한 최종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실종아동법시행규칙 제3조)</p>	법령내용 명확화
	238~239	<p><b>나. 행정사항</b></p> <p>1) 신상카드 제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 아동·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는 보호시설(일시보호센터 포함) 및 정신의료기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들에 대한 신상카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li> </ul>	<p><b>나. 행정사항</b></p> <p>1) 신상카드 제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법 제2조 제1호 “아동 등”이 입소할 수 있는 보호시설(일시보호센터 포함) 및 정신의료기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들에 대한 신상카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li> </ul>	내용 명확화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VII.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은 &lt;서식 1호&gt;에 따라 실종아동·장애인 일시보호 실적을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시·도지사는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보고(이후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li> </ul>	<p>감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아동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시설 및 동법제6조제3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상카드 제출의무 안내(연2회 이상)</li> <li>-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 “아동 등” 일시보호현황(보호아동 전원·퇴소이력 등) 점검</li> <li>- 실종아동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시설 및 동법제6조제3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제출된 신상카드 정보 점검 등</li> </ul> <p>* 특히, 이름, 성별, 생년월일, 신장, 체중, 발견장소, 입소동기, 보호장소, DNA 채취 여부, 사진 첨부여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 “아동 등”의 일시보호 실적을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시·도지사는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보고(이후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li> </ul> <p>* 보고양식 별도 통보</p>				
	241	<p><b>5. 신상카드 제출방법</b></p> <p>가. 실종아동전문기관 제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0%;">홈페이지</td> <td>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www.missingchild.or.kr) 접속</td> </tr> <tr> <td>직접 입력</td> <td>② 홈페이지 상단의 ‘실종아동/장애인 찾기’ ‘신상카드’에서 ‘신상카드제출’</td> </tr> </table>	홈페이지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www.missingchild.or.kr) 접속	직접 입력	② 홈페이지 상단의 ‘실종아동/장애인 찾기’ ‘신상카드’에서 ‘신상카드제출’	<p><b>5. 신상카드 제출방법</b></p> <p>가.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p> <p>나.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방법)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카드 입력</li> </ul> <p>* www.missingchild.or.kr</p> <p>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p>
홈페이지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www.missingchild.or.kr) 접속						
직접 입력	② 홈페이지 상단의 ‘실종아동/장애인 찾기’ ‘신상카드’에서 ‘신상카드제출’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VII.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		<p>클릭</p> <p>③ 로그인 화면에 기관회원 선택 후 신상카드 담당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실종아동전문기관 문의 후 발급)</p> <p>④ 신상카드(시행규칙 별지 제2호) 클릭</p> <p>⑤ 신상카드 입력 화면에서 신상카드 앞쪽, 뒤쪽 입력 후 저장</p> <p>⑥ 작성된 신상카드를 출력하여 보관</p>	<p>child.or.kr) 접속</p> <p>② 로그인(회원미 가입 경우, 회원가입(기관 회원-신상 카드 담당자))</p> <p>③ '홈페이지&gt;신상카드&gt;제출하기'에서 신상카드 입력</p> <p>- 보호중인 무연고 아동·장애인의 보호현황(전원, 퇴소)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입력)한 신상카드 정보 변경</p> <p>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접속</p> <p>② '홈페이지&gt;로그인&gt;신상카드&gt;제출하기'에서 기존 입력했던 신상카드 목록 확인</p> <p>③ 해당 실종아동등 클릭하여 '보호아동등 조치사항'에 변동사항 추가 입력(전원, 퇴소 등) 후 저장</p>	
		<p>이메일 송부</p> <p>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접속</p> <p>② 홈페이지 상단의 정보마당-자료실-기타자료-신상카드 서식 다운로드 사용</p> <p>③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이메일 송부</p>		
		<p>우편 송부</p> <p>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접속</p> <p>② 홈페이지 상단의 정보마당-자료실-기타자료-신상카드 서식 다운로드 사용</p> <p>③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우편 송부 / 우 03150 서울 종로구 삼봉로71 종로G타워 6층 실종아동전문기관</p>		
		<p><b>나.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 입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접속</li> <li>● 좌측 로그인 화면에 시설코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li> <li>● 업무시작 버튼 클릭 후 상단의 "이력 정보-아동관리-아동정보관리" 클릭</li> <li>● 신규버튼 클릭 후 연고 유무를 "무연고"로 선택하고 하단의 실종아동 관련 항목을 클릭하여 입력 후 저장</li> </ul>	<p><b>다.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방법)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li> <li>- 보호중인 무연고 아동·장애인의 보호현황(전원, 퇴소) 변동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동사항을 공문으로 제출</li> <li>*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선시까지 한시 적용(아동학대대응과-3591('22.5.2)호 참조)</li> </ul>	
서식 모음 - II. 디딤씨앗통장(CDA)	254	<p>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lt;신설&gt;</p> <p>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lt;신설&gt;</p>	<p>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소지 관할 지자체</li> </ul> <p>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딤씨앗통장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li> </ul>	
VII.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	349	<서식1>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	삭제	불필요
	360~	<참고자료3>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현황 [2019년 11월말 현재 총 58개소]	삭제	불필요





# 보호아동 자립지원

1. 목 적	3
2. 근 거	3
3. 주요 연혁	3
4. 개 요	4
5. 자립지원 단계	7
6. 기관별 역할	8
7. 지자체 협조사항	13
참고 1.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19
참고 2.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주요사업 안내	21
참고 3. 자립지원 자원연계 주요정보	24





## 1. 목 적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 2. 근 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 3. 주요 연혁

- 1993년 : 자립지원센터 위탁사업 7개소 운영
- 1998년 : 전국 16개 센터 확대 운영
- 2006년 : 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정(국토해양부)
- 2007년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 2008년 : 종료청소년 자립지원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 2011년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전면시행(보건복지부)
- 2012년 :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자립지원의 법적근거 규정)
- 2013년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통계 조회권 부여
- 2014년 : 가정위탁지원센터와 D.B 연동 - 자립관련 자료 입력 및 통계 산출 가능
- 2015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아동자립지원단 위탁 운영(계속)
- 2016년 :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훈령개정-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등 전세주택 지원 대상 확대
- 2017년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이관
- 2019년 : 자립수당, 경제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실시, 아동 자립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19.8월~)
- 2020년 : 자립수당 지원 대상 확대(보호종료 2년 이내 → 3년 이내),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 2021년 : 자립수당 지원 대상 확대(보호종료 3년 이내 →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 2022년 : 아동복지법 개정(만 24세 보호연장 규정 등), 자립수당 인상(월 30만 → 35만), 전국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4. 개 요

### ● 자립지원 의미(「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자산형성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 ● 자립지원 대상 (시행령 제38조)

-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자립지원계획 수립(「아동복지법」 제39조) <서식 1호>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 실시

###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아동복지법」 제39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

### ●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시행규칙 제18조)

-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아동복지법」 제4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 **보호대상아동의 종료조치**(「아동복지법」 제16조)

-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종료시켜야 함
-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신청 가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종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음

● <신설> **보호기간의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시행일: 2022. 6. 22.)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함.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설> 보호기간의 연장(「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시행일: 2022. 6. 22.)

-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3.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 5. 자립지원 단계

### ● 보호아동 자립지원 단계

단계별		서비스 내용
1단계	입소(위탁) 상담	• 원가정이 있는 경우, 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2단계	입소(위탁) 결정 후	• 건강, 지능, 사회성, 심리, 학습 관련 통합사정 실시 • 통합사정결과를 토대로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배치
3단계	시설(위탁가정)적응 기간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아동복지시설장은 경계선 지능 의심 아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계선 자립지원사업에 참여지도
4단계	적응기간 경과 후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센터)내 사례관리회의 - 자립·건강·심리·학습 등 관계자 참석
5단계	사례관리 회의 후	• 아동별 자립지원서비스 계획 수립 - 1·4단계의 내용을 반영 - 원가정 유대강화 서비스 포함 - 경계선지능 등 자립취약아동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개입 계획 수립 • 5단계의 아동별 자립지원서비스 계획수립에 기반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6단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아동복지법 제39조)	• 만15세부터 보호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매년 개인별 자립기술평가 실시 및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진로, 학습, 취업 계획 등 포함 • 아동 자립지원서비스 계획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7단계	자립체험프로그램 운영	• 보호아동에 별도(1인실) 공간 제공을 통해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8단계	보호종료 전 점검	• 보호종료가 예정된 아동에 대한 자립준비 점검 - 대학진학, 취업(예정)유무, 등록금조달, 주거 마련, 원가정 관계,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자립수당 신청 여부 등 • 경계선지능 등 자립취약아동의 자립준비기간이 필요할 시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및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연장 보호 검토
9단계	보호종료	• 종결심사서 작성 및 사후관리 동의서 확보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10단계	사후관리 및 상담	•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평가 실시 <서식 2호> *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 지원**

-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서 사후관리, 상담, 자립에 필요한 자원 발굴 연계 등 지원
- 취업, 직업훈련, 주거, 진학, 경제, 생활, 의료 등 관련하여 자립수준평가, 맞춤형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실시

## 6. 기관별 역할

### 가.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

#### (1) 운영

- 아동자립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 (2) 자립지원 업무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강화 교육 및 자원연계 등을 통한 자립지원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원 및 운영 평가
- 자립지원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바람개비서포터즈(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멘토단) 양성 교육 및 전국 워크숍 운영
- 자립지원 사업·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 민간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 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디딤씨앗지원사업(CDA) 업무 운영

### 나. 시·도 (또는 시·군·구)

#### (1) 보고사항

- 시·도는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자립지원 현황을 관련 양식에 의거, 취합하여 반기별 익월 15일까지 복지부 보고
- ※ <서식 3호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현황> 자료 제출

(2) 자립지원 업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법 제38조), 이를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 '22년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완료
- 매년 만 15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법 제39조)하여야 하므로 지자체는 대상아동에 대한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계획수립,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준평가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필요(매년 12월 말까지 입력 완료)
  - \* 보호아동 자립기술평가, 자립지원계획수립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종료 후 자립수준평가의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실시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행정업무지원시스템(<http://adm.w4c.go.kr>)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입력·점검\* 및 각종 통계산출
    - \* 입력 대상 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 \* 아동복지시설 폐쇄 시, 아동권리보장원에 시설 폐쇄 및 아동 전원 조치 현황 등을 공문으로 공유
- 자립정착금 지급 전 아동이 제출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서식4호>를 확인하여 지급하고, 아동계좌로 입금 시 아동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립업무 담당자에게 입금일자 공지
- 시·도 및 시·군·구는 경계선지능 등 자립취약아동의 보호종료 시 주거 확보, 대학 및 직업훈련비 지원, 취업 및 창업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원을 강화
- 아동이 보호종료 시 시·군·구는 반드시 자립수당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이 보호종료되기 전에 자립수당을 신청하도록 조치 후 보호종료
- 시·도는 시·군·구 아동보호팀 취합 등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사후관리 대상자 및 보호종료예정 대상자 명단을 분기별료(3, 6, 9, 12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제공
  - \* 사후관리 대상자: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급 대상자 아님)

[ 사후관리 명단 제공 시기 ]

3월20일	6월20일	9월20일	12월20일
3월 시점 사후관리대상자 5~7월 보호종료 예정자	6월 시점 사후관리대상자 8~10월 보호종료 예정자	9월 시점 사후관리대상자 11~1월 보호종료 예정자	12월 시점 사후관리대상자 2~4월 보호종료 예정자

## 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1) 보고사항

- 매년 사업계획(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계획 및 소요예산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검토 후 필요 시 보완 요구
- 분기별(3, 6, 9, 12월) 익월 10일 이내 예산집행 관련 사항을 시·도에 제출
  - 사례관리비 지출 증빙 시, 지출 내역이 포함된 정산내역서 제출
- 분기별(3, 6, 9, 12월) 익월 10일 이내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실적을 시·도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 분기별(3, 6, 9, 12월) 익월 10일 이내 시·도를 통해 제공받은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에 대상자별 사후관리 실시 현황(사후관리 또는 연락두절 여부)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아동이 자립정착금 수령 후 계획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사후관리 실시
  - ※ 사후관리는 6개월 이내 실시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수행 현황을 누락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준평가(매년 1회 이상, 12월말까지 입력)
    - \* 자립지원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식 5호>를 참고하여 정보주체 동의 필요
    - \*\*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전까지는 수기작성 후 추후 업로드 필요

### (2) 자립지원 업무

-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 시·도별 바람개비서포터즈(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멘토단) 모집 및 운영
-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기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라. 아동복지시설

### (1) 보고사항

- 자립지원 대상아동을 보호·사례관리 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지원센터)에서는 자립지원 관련 현황을 아래와 같이 누락 없이 자립지원통합관리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자립지원 대상아동의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수립(매년 12월 말까지 입력)
  -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의 운영결과(수시)
  - 연장아동 현황(수시)

### (2) 자립지원 업무

- 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및 지원
- 아동복지시설의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 보호대상아동의 연령별·영역별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운영
- 만1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매년 1~3월)
- 대상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현황을 시스템 입력 및 지자체 보고
-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 철저
  - 개별 자립수준점검을 통해 자립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보호가 종료되지 않도록 지원
    - ※ 예시 : 보호종료 직전 역량 교육 강화(외부 자립체험관 활용/자립교육 의무화/보호종료점검 사례회의)
- 보호종료 후 정기적 사후관리(자립수준평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수행하나,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시설 종사자는 아동과의 상시 연락·관계 유지를 통해 정서적 지원 계속 및 위기상황 시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의 연계 역할 수행
  - ※ 특히 보호종료 후 1년간은 집중적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하여 사후관리 등 지원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위기상황 발생 시 지자체,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아동에 대한 안정적 지원 필요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담당기관의 역할 및 기능 ]

구분		역할 및 기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자립지원 관련 제도 총괄</li> <li>• 아동자립지원 사업 운영 지침 마련</li> <li>•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 관리·감독</li> </ul>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강화 교육 및 자원연계 등을 통한 자립지원</li> <li>• 자립지원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li> <li>• 자립지원 사업·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 민간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li> <li>•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li> <li>• 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li> <li>• 디딤씨앗지원사업(CDA) 업무 운영</li> </ul>
시·도(시·군·구)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예산·인력 등 운영지원</li> <li>•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 확보</li> <li>•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확인 및 지급일자 공지</li> <li>• 아동자립지원 관련 통계 관리·보고</li> <li>•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실시하는 자립계획 수립 업무협조</li> </ul>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실시</li> <li>•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li> <li>•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li> <li>•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li> <li>•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li> <li>• 기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li> </ul>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및 지원</li> <li>• 만 15세 이상 아동 연령별·영역별 자립기술평가,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프로그램 진행</li> <li>•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지원 및 자립수당 신청 지원</li> <li>• 자립지원 관련 현황 시스템 입력 및 지자체 보고</li> <li>• 아동권리보장원 등에서 실시하는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참석</li> <li>• 보호종료 후 상시 연락, 관계 유지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 계속</li> <li>•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실시 업무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보호종료 후 1년간은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 및 연계 집중</li> </ul> </li> </ul>

## 7. 지자체 협조사항

### 가.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기준 충족 필요(「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1], [별표14])

- 아동양육시설 등 : 30인 이상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에 1인 이상 배치(100명 이상일 경우 1명 추가)
- 공동생활가정 : 필요인원을 배치하며, 시·도별 아동 100명당 1명씩 배치 권고
- 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역센터 별로 자립지원전담요원 반드시 1명씩 배치. '18.3.23월부터는 「아동복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 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 2021년 자립전담요원 배치 현황 ]

(단위: 명)

시·도	계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계	294	247	4	43
서울특별시	40	37	-	3
부산광역시	24	20	-	4
대구광역시	21	20	-	1
인천광역시	10	9	-	1
광주광역시	11	10	-	1
대전광역시	12	11	-	1
울산광역시	3	2	-	1
세종특별자치시	2	1	-	1
경기도	35	24	-	11
강원도	14	10	-	4
충청북도	12	10	-	2
충청남도	13	12	-	1
전라북도	17	14	-	3
전라남도	23	21	-	2
경상북도	18	15	-	3
경상남도	27	25	-	2
제주특별자치도	12	6	4	2

## 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령 제38조제2항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이후 지급)
    - ※ 보호종료 후 아동 본인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사 또는 가정위탁부모가 자립준비 청년(보호아동종료)의 동의를 받아 조기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호종료일 30일 전부터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지급절차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 원칙
      -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 ※ 단,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행복e음을 통한 정착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예: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군·구에서 행복e음 상 아동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행복e음을 통하지 않고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
    -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 권고('23년)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자립정착금 지급 시 금융교육 이수 여부 등 고려해 분할 지급(권고)
      - ※ 단,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일시에 기준금액 전체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 ※ (사례, 경기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급 중('22~),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대상자에게 자체 자립 교육 및 자립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중
- < 자립정착금 지급절차 개선(안) >**

  - (기존)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만 제출하면 일시금 형태로 지급, 별도 관리없음
  - (개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교육·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재무상담과 연계하여 분할지급
    - \*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연계하여 '종합재무설계' 전문상담·교육 후 확인서 발급 가능(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지사에서 상담 가능, 세부 연락처는 참고자료 1 참조)
    - 1차지급(500만원)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 2차지급(500만원) : 1차 정착금 사용내역 및 2차 정착금 사용계획 컨설팅 이수 조건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이내 지급

● 사후관리

- (보호종료 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자립정착금을 아동과 함께 신청하면서 자립에 꼭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와 금액, 기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사전교육 실시
- (보호종료 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자립정착금 적정 사용 여부 등 자립생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자립정착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 신청 안내
- ※ 시설 등 관할 지자체(자립정착금 담당자)는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명단을 확보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립정착금 지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안내 등 적극 조치
- 보호유형별/지역별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 및 향후 지급 계획 보고

[ 2023년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 ]

(단위: 만원, '22. 12월 지자체 조사 기준)

시·도	자립정착금 1인당 지급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특별시	1,500	1,500	1,500
부산광역시	1,000	1,000	1,000
대구광역시	1,000	1,000	1,000
인천광역시	1,000	1,000	1,000
광주광역시	1,000	1,000	1,000
대전광역시	1,500	1,500	1,500
울산광역시	1,000	1,000	1,000
세종특별자치시	800	800	800
경기도	1,500	1,500	1,500
강원도	1,000	1,000	1,000
충청북도	1,000	1,000	1,000
충청남도	1,000	1,000	1,000
전라북도	1,000	1,000	1,000
전라남도	1,000	1,000	1,000
경상북도	1,000	1,000	1,000
경상남도	1,000	1,000	1,000
제주특별자치도	1,500	1,500	1,500

**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아동복지법」 제39조의2)**

**(1)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 설치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운영방식 :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직접 수행), 수행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계약 체결(위탁 운영)
- 위탁근거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업무 위탁)
- 위탁방식 : 시·도는 원칙적으로 공모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되, 조직·인력 규모 및 안정성, 사업수행 능력, 예산운영 능력,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로 결정된 공공기관 또는 법인과 계약 체결
- 시·도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예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2)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며, 사후관리 등 자립지원 업무를 전담
- 자립지원 전담인력 2인 이상 배치 시 가급적 성별을 고려하여 배치

**[2023년 지역별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기준]**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4	16	8	10	10	7	2	2	3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10	7	8	9	11	9	12	3	180

라. 대학등록금, 전세자금 지원 등 확대 협조

- 현황 : 일부 시·도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대학등록금, 장학금, 전세자금 등 지원
  - ※ (참고) 부산대학교 : 아동복지시설 종료아동은 최소 성적 유지 시 전액 장학금 지원
  - ※ 대학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지급 불가하나, 대학등록금 명목이 아닌 대학입학금, 대학 입학축하금 또는 대학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지급 가능
- 권고사항 : 모든 지자체에서 대학등록금, 장학금, 전세자금 등 자체 지원

[ 2023년 대학등록금 등 지급 기준 ]

(단위: 만원, 지자체 조사 기준)

시·도	대학등록금 1인당 지급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특별시	대학입학금 300	대학입학금 300	대학입학금 300
부산광역시	대학등록금 실비(최대 350) 대학입학준비금 50	대학등록금 실비(최대 350) 대학입학준비금 50	대학등록금 실비(최대 350) 대학입학준비금 50
대구광역시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인천광역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200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200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200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200	200	-
울산광역시	실비(최대 500)	실비(최대 500)	실비(최대 500)
세종특별자치시	실비(최대 500)	실비(최대 500)	실비(최대 500)
경기도	대학준비금 250	대학준비금 250	대학준비금 250
강원도	대학생활안정금 250	대학생활안정금 250	대학생활안정금 250
충청북도	실비(200~1,000)	실비(200~1,000)	실비(200~1,000)
충청남도	대학생활안정자금 200	대학생활안정자금 200	대학생활안정자금 200
전라북도	200	200	200
전라남도	대학입학준비금 150	대학입학준비금 150	대학입학준비금 150
경상북도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경상남도	대학생활안정자금 200	대학생활안정자금 200	대학생활안정자금 200
제주특별자치도	300	300	300

\* 충북 : 보은군·영동군·진천군·음성군·단양군 최대 200만원, 옥천군 최대 500만원, 괴산군 최대 1,000만원, 증평군 대학축하금 200만원

#### 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관할 시설 지도 감독 철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자립기술평가,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등 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차세대 시스템 개통 후 실시
  - 시·도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지역 내 관할시설에 대한 조회 권한 부여
  - 아동권리보장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하여 보호종료 직전 아동 자립역량 강화
  - 시설폐쇄 전, 아동종료현황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각 시설 안내, 시설 폐쇄 및 아동 전원조치 현황 등을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으로 보고

#### 바. 보호종료 확인서 발급 협조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제도 개선으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 발급 중(시군구청장 명의)
  - ※ 단, '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지자체 발급 가능
  - ※ 보호종료된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 책정 필요
  - ※ 복지포 및 정부24를 활용한 온라인 발급 예정('23년 내 추진)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도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가능
  - ※ '20년 10월 1일 이전 보호종료된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참고 1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 가.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Ready? Action!)

- Ready? Action! : 미취학~보호종료전까지 아동의 단계·학년·수준별로 적정한 교육을 실행하여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 Ready? : 미취학~보호종료 전까지, 보호종료 후 대비 자립준비 프로그램
  - ※ Action! :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사례관리·필요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 Ready? 프로그램은 기본 4단계(미취학~초등2년, 초등3~6년, 중학생, 고1~보호종료 전)로 구분하여 연령·수준별로 적정 프로그램 운영
  - \* Ready? Action! 프로그램은 '07~'10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연령별·시설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 [ [참고] Ready? 프로그램 ]

단계별 구분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대상자	미취학~초2	초 3~6년	중 1~3	고1~보호종료 전
해당 영역 <sup>1)</sup>	1,2,3,5	1,2,4,5,6	1,2,3,4,5,6	8개 전영역
중점 프로그램	기초학습·독서지도, 원가족유대강화 집단프로그램	심리·정서지지체계, 학습지도, 경제교육	진로적성검사, 자립예비사정 및 계획, 체크리스트	자립사정, 취업 및 진학 상담, 체크리스트

1) 보호아동 자립준비 프로그램 매뉴얼의 8대 자립기술 영역을 말함

## [ [참고] Action! 프로그램 ]

대상자	보호종료 후 ~ 자립생활 정착까지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형과 진학형으로 구분·사회초기적응 및 자립기반구축</li> <li>• 상담 및 사후관리</li> <li>• 긴급생활자금 지원 및 의료지원</li> <li>• 진로지도 및 인턴십 프로그램</li> <li>• 심리정서지원</li> </ul>

### 나.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운영 인력별 역할

인력 구분	주요 내용
자립지원위원회 (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장, 자립지원전담요원, 관련 학과 교수, 유관기관 관계자, 후원자, 공무원 등으로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활용 가능</li> </ul> </li> <li>• 매년 자립지원계획을 검토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며 시설 내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li> <li>• 자립지원 업무체계 구축</li> <li>•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논의</li> </ul>
자립지원 전담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내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작성(Ready? Action!)</li> <li>• 자립지원대상자 상담</li> <li>•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관리</li> <li>• 자립지원 프로그램 목표 달성 여부 점검</li> <li>• 자립지원 현황 및 성과관리</li> <li>• 자립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 및 아동자립지원시스템 입력(매월)</li> <li>• 생활지도원에 대한 자립 관련 교육</li> <li>• 지역 네트워크 강화 및 후원체계 마련</li> <li>• 자립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슈퍼비전</li> </ul>
생활지도사·보육사 ·위탁부모· 주거사례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내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li> <li>• 자립지원 프로그램 매뉴얼을 활용한 프로그램 계획 수립·실행·보고</li> <li>• 아동상담 및 욕구, 필요 자원 파악</li> <li>• 자립지원대상자 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li> <li>• 자립지원대상자 일일 사례관리</li> <li>• 자립지원 프로그램 아동, 양육자 평가서 작성(매월)</li> <li>• 원가족 연락 및 유대강화 활동</li> </ul>

※ 지자체는 프로그램 시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반드시 아동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자립지원과 관계없는 잡무는 금지)

#### [ [참고] 자립기술의 8대 영역 ]

1. 일상생활기술	일상생활에 필요한 세탁, 청소, 예의범절, 요리하기 등 기술습득
2. 자기보호기술	개인위생관리, 응급처치방법, 성교육, 스트레스 다스리기 등
3. 지역사회 자원활용 기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서비스, 사회자원 방문조사 및 활용
4. 돈 관리 기술	교육을 통한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 효율적인 용돈 관리기술습득
5. 사회적 기술	긍정적인 대인관계 기술습득,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등
6.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적성검사를 통한 상급학교 진학 및 직업탐색
7. 직장생활기술	이력서 작성법, 면접방법, 대처방법 등 직장생활기술 습득
8. 다시 집 떠나기	집구하기, 계약, 이사 등의 거주지 마련방법습득

## 참고 2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주요사업 안내

### 가. 보호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종사자의 인권보호 기반 확보
-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건강한 보호, 신속한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도록 시설 서비스와 운영 개선 방안 마련
- 아동복지시설 아동이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고 자립 역량을 확보하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원

#### (1)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종사자 인권보호

- (아동 인권보호)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개선·보급, 현장점검 등 지원, 아동복지시설 인권 증진 활동 등 모니터링
  - ※ 복지부, 시·도, 인권위원회, 아동복지협회 등 협조체계 구축
- (종사자 심리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마음건강검진 지원(약 3,000명, 격년 지원)
  - ※ 종사자 스트레스, 감정노동 등 측정 → 고위험군 상담·치료안내

#### (2) 아동복지시설 운영 개선 및 종사자 역량강화

- (시설 관리체계 확보) 아동복지시설 지침, 운영현황·사례 및 통계 등 관리체계 확보
  - 정현원, 종사자 수, 서비스·사례관리 실적, 방역관리, 학대신고 등
  - ※ 지자체, 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활용
- (종사자 역량강화) 자립전담요원 등 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 긍정양육, 예방적 차원의 가족지원 등 역량강화 지원
- (정책연구) 시설 실태조사('21년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원가정복귀 지원사업,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

### (3)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 (아동치료재활지원) 시설보호아동 종합심리검사 및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 비용 지원,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추진  
※ 사업안내 → 대상확정 → 검사·치료비 지원 → 서비스 제공·실적관리 → 평가
-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경계선지능아동 선별검사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자격과정 및 양성·심화보수교육 지원

### 나.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 맞춤형 사후관리 진행을 위한 자립전담기관 및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역량 강화
- 자립준비청년에게 특화된 주거, 진로·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제공 및 사회적 지지관계 형성
- 민관의 다양한 자원연계 및 자립지원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 (1) 전국 자립지원 전달체계 기반 마련 및 전문성 강화

-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원) 자립지원사업 관련 지원 및 모니터링, 평가
- (전담인력 교육) 자립지원 정책의 이해, 사례관리 실무 등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교육
- (매뉴얼 제작)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제작 지원·배포
- (주거 임대지원 확대) LH 우선추천제도 확대(건설임대), 자립지원전담기관과 LH와의 연계를 통한 주거상담 지원 강화
- (자립 체험프로그램 운영) 장·단기 자립생활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 기술 등 자립 역량 강화
- (맞춤형 자립교육) 자립준비청년 대상 찾아가는 자립교육\* 및 온라인 교육\*\* 운영, 시스템 구축  
\* 주거, 진학, 취업, 금융, 법률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자립수당 신청 전 필수교육으로 유관기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립정보 제공(상시)
- (자립지원 연구)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및 자립지원사업 관련 연구 실시

**(2) 심리·상담서비스 확대 및 사회적 지지관계 형성**

- (자립준비청년 심리상담 지원)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사업 연계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지원) 바람개비서포터즈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멘토링 연계) 자립준비청년 희망 시 멘토를 연계하여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 자립지원전담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별 전문가 멘토링 추진

**(3) 자립지원 정보제공 강화**

- (자립정보 플랫폼 운영) 민관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생활지원·진학·취업정보 등)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구축
  - \* 자립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원 관리체계 개선(연 2회)
- (카카오톡 채널 ‘자립지원’ 관리·운영) 자립정보 제공, 신규정보 알림 등 채널 유지보수 관리·운영

**다. 아동자산형성 지원**

-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확대를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마련, 지자체 중심의 후원개발 추진 등 사업관리 체계화

- (후원금 지급관리) 매월 후원금 인출·지급, 시도를 통해 후원연계 아동 추천을 받아 후원자와 1:2 매칭 지원,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및 발급, 비지정후원금 배분, 후원금 지급 오류분 반환 및 보전
  - (후원자관리센터 운영) 후원자 관리 및 안내, 상담을 위한 인·아웃바운드 업무 처리
  - (후원개발 역량강화) 지자체,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후원개발 및 연계하도록 안내 및 역할 부여
- (아동발달지원계좌 점검·관리) 차세대시스템('23. 상반기 구축)을 통해 아동, 금융, 후원정보에 대한 사업 점검·관리 강화
- (지자체 협력 강화) 아동, 금융, 후원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대상아동, 가입률 점검 역할 강화, 지자체별 아동 저축률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확인·독려 등 협력체계 강화
  - (역량강화 교육) 공무원, 종사자 등 직군별 교육·안내 실시\*(반기별)

**참고 3** 자립지원 자원연계 주요정보

**가. 복지급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 급여항목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생계·의료·주거·교육)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보장, 필요시 개인단위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관련 문의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 '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고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06~107, 220)

- ('19년) 30세 미만의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 ('19년) 24세 미만의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근로·사업소득공제 확대: 40만원+추가 30% → 50만원+추가 30%
- ('22년) 근로·사업소득공제(50만원+추가 30%) 적용기간 확대: 24세 미만 → 보호종료 5년 이내
- ('23년) 근로·사업소득공제(60만원+추가 30%), 금융재산 공제 대상에 자립정착금 포함

(2) 긴급지원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b>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li> <li>※ 소득·재산 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시 판단, 적합 여부는 적정성 심사 시 결정)</li> <li>-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559천원, 4인 기준 4,051천원) 이하</li> <li>-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li> <li>-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li> </ul>					
<b>지원 내역</b>	<b>구분</b>	<b>지원내용</b>	<b>지원금액</b>		<b>최대횟수</b>	
	생계	○ 식료품비·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원/월)		6회	
			구성원 수	지원 금액		
			1인	623,300		
			2인	1,036,800		
			3인	1,330,400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원/월)	
		1~2인			3~4인	
	대도시	398,900			662,5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농어촌	189,000	250,500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원/월)		6회		
		입소자 수	지원 금액			
		1인	552,000			
		2인	941,700			
		3인	1,218,400			
4인	1,494,100					
<b>요청 문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li> </ul>					

※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

※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청소년복지 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지원할 것을 권장

## 나. 주거 지원

### (1) LH건설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b>지원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종료 예정자 및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li> <li>- 기관추천 대상자의 경우 미성년자여도 신청·계약 가능</li> <li>- 개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일반모집 기준에 따라 당첨자 선정</li> <li>※ 건설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추천은 입주 기준 1회 지원</li> </ul>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시기 : 종료 6개월 전부터 수시 추천 가능</li> <li>• 입주시기 : 공가가 있는 경우 즉시 입주 가능, 입주대기자가 있는 경우 기존 입주대기자 보다 우선 입주</li> <li>• 임대조건 : 보증금 100만원 적용(계약금 5만원), 기본 보증금과의 보증금 차액은 임대료로 전환</li> <li>* 예) 1,000만원 보증금 감소시 월 임대료 25,000원 증액</li> <li>• 자격검증 : 국민·영구·행복주택의 입주자격 및 주택·소득·자산기준 동일하게 적용하 되,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검증</li> </ul>
<b>지원기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조건 충족 시 2년 단위 재계약 가능</li> </ul>
<b>지원절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및 대상자 본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연락하여 추천 및 신청 진행, 아동권리보장원은 LH에 추천대상자 전달, LH에서 대상자의 희망수요(지역, 임대유형)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물색 및 배정</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임대주택 신청  <small>(대상자, 기관) → 아동권리보장원</small>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추천대상자 전달  <small>아동권리보장원 → 한국토지주택공사</small>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small>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 대상자</small>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임대차 계약체결  <small>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 대상자</small>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임대차 계약체결              현황 통보  <small>한국토지주택공사 → 아동권리보장원</small>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입주              입주         </div> </div>



(2) 청년 전세임대주택

<p><b>지원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종료 예정이거나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또는 만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li> </ul>
<p><b>지원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20세 이하 : 임대보증금 100만원, 전세지원금 무이자 지원</li> <li>• 만 21세 이상 : 임대보증금 100만원, 전세지원금에 대한 이자(연 1~2%)를 부담하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입주자는 대출이자 50% 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li> </ul>
<p><b>지원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단위 계약,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가능)</li> <li>* 단,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 7회 추가 재계약 가능</li> </ul>
<p><b>지원한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가능 주택 (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li> <li>• 1인 가구 기준 :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li> </ul>
<p><b>지원절차</b></p>	<pre> graph LR     1[1. 입주신청 : LH 청약센터(www.apply.lh.or.kr)에서 개인용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보호종료확인서, 기관등록증(1순위 자격증명) 등 스캔하여 첨부] --&gt; 2[2. 입주대상자 선정 (개별 안내)]     2 --&gt; 3[3. 전세주택 물색 (임주대상자)]     3 --&gt; 4[4. 임대차 계약 체결]     4 --&gt; 5[5. 입주]     </pre>

(3)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b>지원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종료 예정이거나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ul>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20세 이하 : 무이자 지원</li> <li>만 21세 이상 : 이자(연 1~2%)를 부담하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대상자는 대출 이자 50% 감면</li> </ul>											
<b>지원기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20세를 초과한 경우 2년 단위 최대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li> <li>지원기간 만료 시 기존주택유형으로 전환하여 소득 105%를 초과하지 않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계속 거주 가능</li> </ul>											
<b>지원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1인 단독세대는 60㎡)</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보호(종료)아동</th> <th style="width: 25%;">수도권</th> <th style="width: 25%;">광역시</th> <th style="width: 25%;">기타 도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금액</td> <td>1억2,000만원</td> <td>8,000만원</td> <td>6,000만원</td> </tr> </tbody> </table>				보호(종료)아동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 지역	금액	1억2,0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
보호(종료)아동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 지역									
금액	1억2,0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									
<b>지원절차</b>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45%;"> <p style="background-color: #cccccc; margin: 0;">1</p> <p>전세주택 신청 및 자격확인 (자립준비청년의 주소지 내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p>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45%;"> <p style="background-color: #cccccc; margin: 0;">2</p> <p>지원대상자 확정(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접수→ 지원대상자 확정통보</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margin-top: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25%;"> <p style="background-color: #cccccc; margin: 0;">3</p> <p>전세주택 물색 및 계약요청 (입주대상자)</p>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25%;"> <p style="background-color: #cccccc; margin: 0;">4</p> <p>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통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인)</p>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25%;"> <p style="background-color: #cccccc; margin: 0;">5</p> <p>입주</p> </div> </div> </div>											

(4) 청년 매입임대주택

<p><b>지원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취업 준비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li> <li>※ 공급물량의 5%범위에서 우선입주자로 선정: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종료 예정이거나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ul>															
<p><b>지원내용</b></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32 572 442 620">임대조건</th> <th colspan="2" data-bbox="442 572 1285 620">자격요건</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2 620 442 854" rowspan="3">시중 시세 40%</td> <td data-bbox="442 620 552 701">1순위</td> <td data-bbox="552 620 1285 701">수급자 가구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td> </tr> <tr> <td data-bbox="442 701 552 782"></td> <td data-bbox="552 701 1285 782">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인 자</td> </tr> <tr> <td data-bbox="442 782 552 854"></td> <td data-bbox="552 782 1285 854">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본인 또는 부모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자</td> </tr> <tr> <td data-bbox="332 854 442 1008" rowspan="2">시중 시세 50%</td> <td data-bbox="442 854 552 935">2순위</td> <td data-bbox="552 854 1285 935">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td> </tr> <tr> <td data-bbox="442 935 552 1008">3순위</td> <td data-bbox="552 935 1285 1008">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형태 (단독거주 또는 공동거주) 선택하여 계약 체결</li> <li>• 빌트인 가구 등 비치(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li> <li>•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li> </ul>	임대조건	자격요건		시중 시세 40%	1순위	수급자 가구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인 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본인 또는 부모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자	시중 시세 50%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대조건	자격요건															
시중 시세 40%	1순위	수급자 가구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인 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본인 또는 부모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자														
시중 시세 50%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p><b>지원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6년 거주가능)</li> <li>* 입주 후 혼인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최장 20년)</li> </ul>															
<p><b>지원절차</b></p>	<pre> graph LR     1[1. 청약신청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 --&gt; 2[2.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대상자 서류 접수]     2 --&gt; 3[3.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4[4.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gt; 5[5.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5 --&gt; 6[6. 입주 및 자산검증(2~3순위)]     </pre>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락처 ]

지 역	전화번호	비고
LH 유스타트 상담센터	1670-2288	자립준비청년 전용상담센터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대표 콜센터

(5) 희망디딤돌센터

- 이용대상 :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운영목적 : 1인실 원룸 형태의 개별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개인별 역량에 맞춘 1:1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
- 구비서류 :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보호종료 확인서(퇴소증명서), 자립생활기술평가표, 주민등록등본 등
  - 입주추천서(가능한 자에 한함)
  - (해당자)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지역별 현황

시·도	담당 기관	주소	연락처
부산광역시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제로 27번길 34	051-441-7006
대구광역시	YWCA자립통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55, 619호	053-243-0070
광주광역시	광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62-2	062-672-1932
경기도	희망디딤돌경기센터(화성)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길 4-16	031-298-5242
	희망디딤돌경기센터(고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05	
강원도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125	033-743-8179
충청남도	희망디딤돌충남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17	041-541-6551
전라북도	희망디딤돌전북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6, 115호	063-715-1625
전라남도	희망디딤돌전남센터(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길21	061-742-4908
	희망디딤돌전남센터(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6-1	
경상북도	희망디딤돌경북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7, 306호	054-441-9942
경상남도	희망디딤돌경남센터(창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45	055-265-7942
	희망디딤돌경남센터(진주)	경남 진주시 진주역로 116	

- 삼성전자의 기부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서 운영 지원
- 희망디딤돌 홈페이지 : [jarip-hope.or.kr](http://jarip-hope.or.kr)

(6)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 이용대상 : 만 18세 ~ 24세 이하
- 운영목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자립준비청년에게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지원(상담지원, 자립지원, 정서지원, 생활지원 등)
- 입소대상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취업중인 사람(우선)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취업준비 중인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해당사유 이용자 확대 독려)
  - 자립준비청년으로 24세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구비서류 : 자립준비청년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입소신청서 1부
  - 아동복지시설의 장 추천으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입소신청
- 지역별 자립지원시설 현황

시도	시설명	연락처	정원	성별
서울특별시	돈보스코자립생활관	02-845-0985	40	남
	상록여자자립생활관	02-588-7097	30	여
	청운자립생활관	02-823-1381	30	여
	씨드센터(자립생활관)	02-2671-0691	10	여
부산광역시	미네르바의 집	051-343-3866	29	남·여
대구광역시	삼덕SOS자립생활관	053-427-9659	30	남·여
	검사SOS자립생활관	053-982-9936	30	남·여
광주광역시	무등자립생활관	062-224-3762	30	남·여
대전광역시	인애자립생활관	042-861-2334	34	남·여
울산광역시	울산자립생활관	052-254-5636	30	남·여
강원도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	033-743-8179	2	남·여
충청북도	현양자립생활관	043-266-7113	24	남·여
충청남도	항림자립생활관	041-753-5319	30	남·여
전라북도	삼성자립생활관	063-221-7002	30	남·여
전라남도	목포자립생활관	061-272-2555	30	남·여
제주도	시온빌	064-747-3355	32	남·여

(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구분	내용								
대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li> <li>•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 포함)</li> <li>•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인 자</li> </ul>								
대출 대상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li> <li>*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li> </ul>								
대출 한도 및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li> <li>• (금리)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연소득</th> <th>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2천만원 이하</td> <td>연 1.5%</td> </tr> <tr> <td>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td> <td>연 1.8%</td> </tr> <tr> <td>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td> <td>연 2.1%</td> </tr> </tbody> </table> </li> </ul>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연 1.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1.8%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연 2.1%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연 1.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1.8%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연 2.1%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li> <li>•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li> <li>• 기한연장조건: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li> </ul>								
대출 신청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li> </ul>								

(8)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구분	내용
대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9세 ~ 만 34세 이하(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li> <li>•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li> <li>•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li> </ul>
대상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li> <li>•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li> </ul>
대출 한도 및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억원 한도, 연 1.2%(고정금리)</li> <li>※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 혹은 2회 연장부터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적용</li> </ul>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회 가능)</li> <li>•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li> </ul>
대출 신청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li> </ul>

다. 취 업

(1)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제도로 통합

구분	내용					
지원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신청</li> </ul>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 유형                             <table border="1" data-bbox="390 727 1271 1034"> <thead> <tr> <th data-bbox="390 727 832 778">요건심사형 *법정 의무지출</th> <th data-bbox="832 727 1271 778">선발형 *예산 범위 내 자격 인정</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90 778 832 10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69세 구직자</li> <li>- 소득·재산요건 부합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li> <li>- 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li> </ul> </td> <td data-bbox="832 778 1271 10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li> </ul> </td> </tr> </tbody> </table> </li> <li>• II 유형                             <table border="1" data-bbox="390 1124 1271 1524"> <tbody> <tr> <td data-bbox="390 1124 1271 1524"> <p>I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p> <p>①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중이거나 보호종료된 사람 중 15세 이상 ~ 34세 이하 포함</p> <p>② 청년층(18~34세) ③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p> </td> </tr> </tbody> </table> </li> </ul>	요건심사형 *법정 의무지출	선발형 *예산 범위 내 자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69세 구직자</li> <li>- 소득·재산요건 부합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li> <li>- 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li> </ul>	<p>I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p> <p>①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중이거나 보호종료된 사람 중 15세 이상 ~ 34세 이하 포함</p> <p>② 청년층(18~34세) ③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p>
요건심사형 *법정 의무지출	선발형 *예산 범위 내 자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69세 구직자</li> <li>- 소득·재산요건 부합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li> <li>- 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li> </ul>					
<p>I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p> <p>①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중이거나 보호종료된 사람 중 15세 이상 ~ 34세 이하 포함</p> <p>② 청년층(18~34세) ③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p>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지원서비스(공통)                             <table border="1" data-bbox="390 1649 1271 1770"> <tbody> <tr> <td data-bbox="390 1649 1271 17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센터 상담자의 심층 상담을 통한 취업활동계획 수립</li> <li>-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li> </ul> </td> </tr> </tbody> </table>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센터 상담자의 심층 상담을 통한 취업활동계획 수립</li> <li>-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센터 상담자의 심층 상담을 통한 취업활동계획 수립</li> <li>-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지원                             <table border="1" data-bbox="390 407 1262 620"> <thead> <tr> <th data-bbox="390 407 828 459">I 유형 - 구직촉진 수당</th> <th data-bbox="828 407 1262 459">II 유형 - 취업활동 비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90 459 828 620">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이행을 전제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지원 (월50만원×6개월)                 </td> <td data-bbox="828 459 1262 620">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 지원                 </td> </tr> </tbody> </table> </li> </ul>		I 유형 - 구직촉진 수당	II 유형 - 취업활동 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이행을 전제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지원 (월50만원×6개월)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 지원				
I 유형 - 구직촉진 수당	II 유형 - 취업활동 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이행을 전제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지원 (월50만원×6개월)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 지원									
진행절차	<table border="1" data-bbox="390 677 1262 1612"> <tbody> <tr> <td data-bbox="390 677 828 939">                     ①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td> <td data-bbox="828 677 1262 939">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제출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특정계층 확인 서류 등)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결과 통지                 </td> </tr> <tr> <td data-bbox="390 939 828 1153">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td> <td data-bbox="828 939 1262 1153">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td> </tr> <tr> <td data-bbox="390 1153 828 1370">                     ⑤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td> <td data-bbox="828 1153 1262 1370">                     ⑥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390 1370 1262 1612">                     ⑦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최대 150만원)                 </td> </tr> </tbody> </table>		①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제출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특정계층 확인 서류 등)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결과 통지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⑥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⑦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최대 150만원)	
①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제출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특정계층 확인 서류 등)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결과 통지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⑥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⑦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최대 150만원)										
지원기간	-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일로부터 1년 간, 참여자 희망 시 6개월 범위 내 연장									



## (2) 창업성공패키지

- 창업사관학교 내 창업준비 공간에서 창업계획 수립부터 최종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

구분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9세 이하인 자로 (예비)창업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li> <li>• 제조융복합 분야 우선선발</li> </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공간,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사업비지원, 정책사업 연계 등 종합 연계지원 방식으로 청년 기술창업 One-Stop 패키지 지원시스템 운영</li> <li>- 사업비 지원: 창업활동비,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지원</li> <li>- 창업공간: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준비 공간 제공</li> <li>- 창업교육: 창업 단계별 집중교육</li> <li>- 창업코칭: 전담교수 1:1 집중코칭</li> <li>- 기술지원: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li> <li>- 연계지원: 정책자금, 판로지원, 입지 등 연계지원</li> <li>- 글로벌 지원: 해외 판로, 마케팅 지원</li> </ul>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및 강원 권역: 안산, 구리, 서울, 인천, 경기북부, 강원</li> <li>• 호남권 및 제주 권역: 광주, 전북, 전남, 제주</li> <li>• 충청권역: 충남, 충북, 대전, 세종</li> <li>• 영남권역: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li> </ul>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startup(창업넷)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li> </ul>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4414)</li> <li>•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055-751-9327)</li> </ul>

### (3) 국민내일배움카드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에 참여토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 지원 및 훈련이력 종합 관리하는 제도
- \*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 카드로 통합('20.1.1.)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li> </ul>
지원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 과정</li> <li>-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li> <li>-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및 II유형 참여자는 별도 지원한도 적용</li> <li>-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용전액지원</li> <li>• 훈련대상자는 훈련비의 일부 자부담</li> <li>-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li> <li>* 3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자부담 없음(단, 취업률 40% 미만 과정은 20% 자부담)</li> <li>• 훈련장려금 지급</li> <li>-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000원) 지원</li> <li>*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li> <li>• 유효기간 :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li> </ul>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카드신청</li> <li>*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퇴소사실증명서 제출 필요</li> <li>• 훈련과정 수강신청</li> <li>-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li> <li>-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li> </ul>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li> <li>• 전국 고용센터(www.hrd.go.kr)</li> </ul>

(4)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와 산업현장의 체험기회 제공 및 우수 장소·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노동시장의 조기입직 유도

구분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고교생, 대학재학생, 청년장병 등.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li> </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 참가비 무료</li> <li>• 운영기관 : 2일 이하 과정 1일 1인당 10만원</li> <li>• 2박3일 이상 과정 : 1일 1인당 17만원</li> </ul>
참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5시간 이상 ~ 5일 이내 (과정당 30~50명 내외), * 1일, 무박2일, 2박3일, 3박4일 등</li> </ul>
탐방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고용노동부 선정)</li> <li>• 인증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선정)</li> <li>• 우수 벤처기업(벤처기업협회 선정)</li> <li>• 우수 중소기업(중기청·이노비즈협회 선정)</li> <li>•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 신기술·신성장 유망기업 등 (고용센터와 사전협의)</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료자에 대해 관할 지방(지)청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li> </ul>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li> <li>•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a href="https://www.work.go.kr/experi/index.do">https://www.work.go.kr/experi/index.do</a>)</li> </ul>

(5) 대학일자리센터

- 대학생 등 청년에게 진로·취업 관련 전문 상담과 다양한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학년부터 졸업 후까지 보다 체계적인 진로지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구분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이라면 누구나 ※ 재학생, 졸업생 모두 이용 가능</li> <li>• 본인 학교가 아니더라도 61개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li> </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컨설턴트의 진로·취업·창업 상담</li> <li>•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취업박람회, 취업컨설팅 등 참여</li> <li>• 정부와 지자체에 제공하는 진로·취·창업 지원 서비스 안내 등</li> </ul>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기관 별로 상이</li> </ul>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 (<a href="http://www.youthcenter.go.kr">www.youthcenter.go.kr</a>)</li> </ul>

(6) 기타

-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www.workplus.go.kr) 적극 활용

**< 주요 직업 정보 사이트 >**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 진로정보망커리어넷(http://www.career.go.kr)
- 영삼성(www.youngsamsung.com)
- 직업훈련포털(http://www.hrd.go.kr)
- 잡코리아(www.jobkorea.co.kr)

대상	서비스 내역
학생	<b>1.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심리검사 : 직업에 맞는 직업선택 지원</li> <li>• 삼성길라JOB이 : 분야별 전문가의 성공 강의</li> <li>• 사이버진로교육센터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진로교육 제공</li> <li>•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기능 및 전문기술 훈련</li> <li>• Hi프로그램(고졸청년 취업지원) : 미래 설계와 직장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li> </ul>
	<b>2.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을 통해 구직기술·진로결정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P+(Career Assistance Program Plus) : 진로와 자기탐색, 의사결정과 기업탐색, 입사지원서류 준비, 면접 준비 및 실전모의 면접체험 프로그램 - 대상 : 만15세~29세 청년층(고등학생, 대학생, 청년구직자 등)</li> </ul>
	<b>3. 청년강소기업탐방으로 현장체험 기회제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15~34세 미취업청년, 중학생,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 대학생 등</li> </ul>
취업 준비생	<b>1. 1:1 맞춤형알선으로 일자리 확보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날, 맞춤형 서비스(심층상담, 동행면접)</li> </ul>
	<b>2. 훈련상담을 통해 자격증 취득과 직업능력개발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상담 : 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해 자격증 취득, 직업능력개발 지원</li> <li>• 내일배움카드제 : 구직자에게 200만원 한도로 계좌 발급 직업훈련 참여 지원 (30~50% 자비 부담)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급권자는 자비부담 면제</li> </ul>
	<b>3.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기술 향상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희망프로그램 : 자신감 회복, 대인관계기술 향상, 의사소통방법 등</li> <li>• 성취프로그램 : 구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향상 지원</li> </ul>

라. 학 업

(1) 국가장학금(Ⅰ 유형, Ⅱ 유형)

-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I 유형과 국가가 대학으로 지급한 지원금을 학교의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II 유형으로 구분
- 국가장학금 개요

구분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대학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 된 학생(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II 유형은 대학자체기준으로 선발)</li> <li>※ 국내 모든 대학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시 확인</li> </ul>		
성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li> <li>•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li> <li>※ C학점 경고제: 1~3분위는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 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li> </ul>		
재단 정보 심사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중복 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불가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 지원 해소 시 재심사 가능
	수혜 횟수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 (타 대학 및 동일한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 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 지원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분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li> <li>• I 유형: 소득 분위에 따라 학기별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li> <li>• II 유형: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 원칙</li> </ul>		
지원 절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신청</span> <span>↻</span> <span>소득정보확인</span> <span>↻</span> <span>심사</span> <span>↻</span> <span>선발</span> <span>↻</span> <span>장학금지급</span> </div>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장학재단(<a href="http://www.kosaf.go.kr">http://www.kosaf.go.kr</a>, ☎1599-2000)</li> </ul>		

※ 이중(중복)지원 제한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음. 예를 들어, 등록금이 400만원인 A라는 학생이 국가장학금 230만원을 받았다면 17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만큼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

※ 생활비 대출 또는 근로장학금, 등록금과 무관한 장학금 등은 이중지원 예외사항이므로 중복 가능

(2) 국가근로장학금

- 재학 중 교내 또는 교외에서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구분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대학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성적 70점 (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li> </ul>	
지원 유형 및 금액	교내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교내근로</li> <li>• 봉사유형(장애대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대상 봉사)</li> </ul>
	교외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교외근로</li> <li>• 취업연계유형</li> </ul>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 학생에게 학업 등 멘토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급 : 교내 9,160원('22.10월 기준) 교외 11,150원('22.10월 기준) ※ 변동될 수 있음</li> <li>•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li> </ul>	
신청 방법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공인인증서 발급</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완료</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증빙서류 제출</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신청결과 확인</div> </div>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장학재단(<a href="http://www.kosaf.go.kr">http://www.kosaf.go.kr</a>, ☎1599-2000)</li> </ul>	

### (3)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의 종류와 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일반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li> <li>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대학원생: 만 40세 이하)</li> </ul>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생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li> <li>대학원생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li> </ul>
	성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입생군, 장애인 : 제한없음</li> <li>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li> <li>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 제한없음</li> </ul>
대출 금리		• 2023년 1학기 1.70%(변동금리)
대출 한도	생활비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li> <li>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무이자 지원</li> </ul>
	등록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학기 소요액 전액(입학료, 수업료 등)</li> <li>*대학원생은 한도있음(석사 6천만원, 박사 9천만원)</li> <li>대학의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li> </ul>
상환 방법	•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대출 기간	• 취업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 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일반 상환 학자금

구분		일반 상환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으로 대한민국 국민</li> <li>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li> </ul>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생 :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li> <li>대학원생 : 제한없음</li> </ul>																						
	성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입생군, 장애인 : 제한없음</li> <li>재학생 : 직전학기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li> <li>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 직전학기 70/100점(C학점) 이상</li> </ul>																						
대출 금리		• 2023년 1학기 1.70%(고정금리)																						
대출 한도	생활비 대출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학기 소요액 전액(입학료, 수업료 등) (단위: 만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대학</th> <th>5,6년제 대학</th> <th>의,치의,한의계열 대학</th> <th>전문기술석사</th> <th>일반.특수 석사</th> <th>박사</th> <th>의,치의,한의계열 석사</th> <th>박사</th> </tr> </thead> <tbody> <tr> <td>4천</td> <td>6천</td> <td>9천</td> <td>6천</td> <td>6천</td> <td>9천</td> <td>9천</td> <td>1억2천</td> </tr> </tbody> </table>								대학	5,6년제 대학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전문기술석사	일반.특수 석사	박사	의,치의,한의계열 석사	박사	4천	6천	9천	6천	6천	9천	9천
대학	5,6년제 대학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전문기술석사	일반.특수 석사	박사	의,치의,한의계열 석사	박사																	
4천	6천	9천	6천	6천	9천	9천	1억2천																	
상환 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대출 기간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문의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1599-2000)

#### (4) 장학금 지급 확대

- 시설장/자립지원전담요원 차원에서 지역사회 후원자, 기업체, 장학재단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장학금 지원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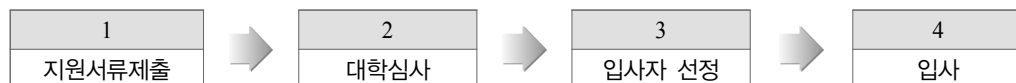
#### [ 주요 장학 재단 현황 ]

장학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DB김준기문화재단	02-3011-5543	<a href="http://www.dbfoundation.or.kr">http://www.dbfoundation.or.kr</a>
KT&G장학재단	02-3404-4559	<a href="http://scholarship.ktngetogether.com">http://scholarship.ktngetogether.com</a>
STX장학재단	02-2271-9351	<a href="http://www.stxfoundation.or.kr">http://www.stxfoundation.or.kr</a>
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a href="http://www.hsf.or.kr">http://www.hsf.or.kr</a>
교보교육재단	02-925-8925	<a href="http://www.kbedu.or.kr">http://www.kbedu.or.kr</a>
미래에셋박현주재단	02-3774-7465	<a href="http://foundation.miraeasset.com">http://foundation.miraeasset.com</a>
삼성꿈장학재단	02-727-5400	<a href="http://www.sdream.or.kr">http://www.sdream.or.kr</a>
삼성장학회	02-2014-6790	<a href="http://www.ssscholarship.com">http://www.ssscholarship.com</a>
서울장학재단	02-725-2257	<a href="http://www.hissf.or.kr">http://www.hissf.or.kr</a>
신한장학재단	02-6360-3137	<a href="http://www.shsf.or.kr">http://www.shsf.or.kr</a>
아름다운재단	02-766-1004	<a href="http://www.beautifulfund.org">http://www.beautifulfund.org</a>
우양재단	02-324-0455	<a href="http://www.wooyang.org">http://www.wooyang.org</a>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02-595-6810	<a href="http://www.kosffl.or.kr">http://www.kosffl.or.kr</a>

#### (5) 대학진학 시설아동 기숙사 우선배정

※ 각 대학별 홈페이지 참조

- 지원서류 : 입사지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가산점부여관련 증빙서류 1부
- 입사절차





(6) 폴리텍대학

- 안정적 취업을 위해 폴리텍대학의 적극 활용 필요
- 폴리텍대학의 장점
  - 국가가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우수한 시설 및 교수진 보유
  - 저렴한 학비 : 1년제 과정 무료. 2년제 과정은 대부분 장학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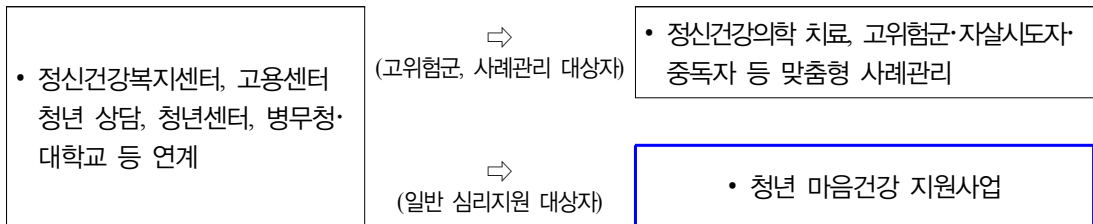
No	지역	캠퍼스 이름	주소	연락처
1	수도권	서울정수캠퍼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73 [04392]	02-2001-4000
2		서울강서캠퍼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10길 112 [07684]	02-2186-5800
3		성남캠퍼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98 [13122]	031-739-4000
4		분당융합기술교육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9번길 5 [13590]	031-696-8800
5		인천캠퍼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8번길 56 [21417]	032-510-2114
6		남인천캠퍼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333번길 23 [22121]	032-450-0300
7		화성캠퍼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제암교주로 108 [18534]	031-350-3200
8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4 [14222]	02-2139-4800
9		반도체융합캠퍼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41-12 [17550]	031-650-7300
10	강원도	춘천캠퍼스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1290-31 [24409]	033-260-7600
11		원주캠퍼스	강원도 원주시 복원로2425번길 73 [26406]	033-741-7000
12		강릉캠퍼스	강원도 강릉시 남산초교길 121 [25605]	033-610-6110
13	충청도	대전캠퍼스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352-21 [34503]	042-670-0600
14		청주캠퍼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54 [28590]	043-279-7400
15		아산캠퍼스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45 [31533]	041-539-9300
16		홍성캠퍼스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0 [32244]	041-630-3523
17		충주캠퍼스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548 [27324]	043-850-4200
18		바이오패스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동안로112번길 48 [32943]	041-746-7300
19		다솜고등학교(기술대안고교)	충청북도 제천시 원강저로 94 [27205]	043-649-2800
20	전라도	광주캠퍼스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85 [61099]	062-519-7114
21		전북캠퍼스	전라북도 김제시 백학제길 154 [54352]	063-540-7620
22		전남캠퍼스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854-16 [58542]	061-450-7370
23		익산캠퍼스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579 [54567]	063-830-3000
24		순천캠퍼스	전라남도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41 [57975]	061-721-0300
25		신기술교육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20 [54853]	063-210-9114
26		인재원	전라북도 남원시 내척길 31 [55728]	063-620-9000
27	경상도	대구캠퍼스	대구광역시 서구 국제보상로43길 15 [41765]	053-567-0101
28		구미캠퍼스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3길 84 [39257]	054-461-5241
29		남대구캠퍼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26 [42985]	053-610-6600
30		포항캠퍼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로 162 [37859]	054-288-2200
31		영주캠퍼스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2 [36142]	054-633-9500
32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2 [41027]	053-980-1100
33		로봇캠퍼스	경상북도 영천시 로봇캠퍼스로1(화동동) [38839]	054-706-1000
34		창원캠퍼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1-88 [51518]	055-279-1700
35		부산캠퍼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99 [46550]	051-330-7800
36		울산캠퍼스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155 [44482]	052-290-1500
37		동부산캠퍼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4로 2-69 [46027]	051-609-6000
38		진주캠퍼스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299 [52766]	055-752-9901
39		석유화학 공정기술교육원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81번길 4	052-290-9600
40		항공캠퍼스	경상남도 사천시 대학길 46 [52549]	055-830-3500
41	제주도	제주캠퍼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3길 2 [63243]	064-754-7100

(7)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서비스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 (서비스내용) 3개월간(10회기)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제공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총 8회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 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역할 연계]



- (서비스가격) 월 24만원(A) 또는 28만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없음
- (제공인력)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II


## 디딤씨앗통장(CDA)

1. 목 적	47
2. 근 거	47
3. 주요 연혁	47
4. 사업 개요	48
5. 사업 추진 체계	51
6. 기관별 역할	52
7. 지자체 협조사항	55
8.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56
참고. 디딤씨앗통장 금융통장 구성	68



## 1. 목 적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 '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새 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 됨을 의미</li> <li>*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의 대국민 브랜드</li> </ul>
-----------------------------------------------------------------------------------	-----------------------------------------------------------------------------------------------------------------------------------------------------

## 2. 근거

-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 3. 주요 연혁

- 2007년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 시작
- 2009년 : “디딤씨앗통장”을 대국민브랜드로 선정
- 2011년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에 대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 2012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1,000억원 달성
- 2015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2,000억원 달성
- 2016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13세까지 확대
- 2017년 : 정부 지원 금액 확대(3만원 → 4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3,000억원 달성
- 2018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17세까지 확대
- 2019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4,000억원 달성
- 2020년 : 정부 지원 금액 확대(4만원 → 5만원), 디딤씨앗지원사업단 아동권리보장원 이관
- 2022년 : 정부 매칭비율 확대(1:1→1:2) 및 정부 지원 금액 확대(5만원→10만원)

## 4. 사업 개요

### 가.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보호 아동은 반드시 디딤씨앗통장(CDA)으로 아동수당 지급(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희망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 가능)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2023년 신규선정 대상 : 만 12세~17세(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 제외

####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대상 확대 >

- '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12세 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확대
- '16년부터 만 12세, 만 13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 '18년부터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 입양아동의 경우 >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 가능(\*13.1.1~)

## 나.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 < 지원기간 예시 >

- 정부의 매칭지원 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 (예시) 아동 생년월일이 '04.3.15.이고, 적립계좌 만기일이 '22.3.10.이면 '22.3.10.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22.4월 지급분) 지원

## 다. 매칭 및 적립

### (1) 기본 매칭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2) 추가 적립액

-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 라.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이를 위해 만 18세 경과 시 협력은행 계좌 개설 안내 필요(업무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

[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

구 분	사 용 항 목	사 용 조 건
①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li> <li>• 2,(3)년제 대학</li> <li>• 4년제 대학</li> <li>• 대학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li> <li>•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li> <li>•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li> </ul>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자격증</li> <li>• 국제자격증</li> <li>• 국가고시</li> <li>• 학원등록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 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li> <l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참조 (<a href="http://www.pqi.or.kr">http://www.pqi.or.kr</a> 접속 후 공인민간자격 검색)</li> <li>•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li> </ul> </li> <li>※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li> </ul>
③ 창업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보증금</li> <li>• 장비구입비</li> <li>• 시설 설치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li> <li>※ 증빙서류(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li> </ul> </li> </ul>
④ 주거마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아파트 보증금</li> <li>• 전세금, 주택구입자금</li> <li>• 월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li> <li>•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li> </ul>
⑤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비, 입원비</li> <li>• 재활치료비</li> <li>• 기타 의료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li> </ul>
⑥ 결혼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li> <li>※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사후 지원 가능)</li> </ul>
⑦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li> <li>※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li> <li>• 예외적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본인 신청 시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위탁부모 등 보호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의견 청취 후 인정 가능</li> </ul>	

\*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 5. 사업 추진 체계

### 가.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마련 안내 등 관리, 예산 등 행정지원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신청자 접수, 대상자 선정, 정부 매칭지원금 지급, 사업결과 보고 등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운영관리, 후원 개발, 홍보, 대상자 경제교육 등
금융기관	계좌 관리, 금융상품 운용, 계좌별 정부 매칭지원금 입금 등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아동시설 등 - 아동 적립금 후원 개발, 아동저축 사례관리 등

### 나. 추진절차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아동 등

## 6. 기관별 역할

### 가. 보건복지부

-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사업지침 마련·안내 등
- 국고보조예산 등 행정지원
- 후원 등 관리운영기관, 금융계좌 운영기관 지정·운영 등 사업 총괄

### 나. 지방자치단체

구 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계좌관리	• 지원대상아동관리 총괄	• 지원대상아동선정 • 정부지원금 매칭 • 적립금 만기지급 • 조기인출 처리 등 • 금융기관에 대상자 변동 사항 통보	• 지원대상자 신청서 취합 • 시·군·구에 제출
예산관리	• 지자체 매칭예산 확보		
후원개발	• 후원기관(개인, 기업, 단체)의 후원참여 유도 • 홈페이지 이용한 사업홍보 등 사업 활성화 노력 • 자체 발굴한 후원자 정보를 후원관리기관(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여 전문적인 후원 관리, 후원자 서비스(기부금 세금공제 혜택, 감사서신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사례관리	• 지원대상아동(보호자)에게 사업의 취지와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목적에 맞게 적립·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 아동의 후원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적립이 어려운 아동에게 관련 기관과의 협조 통해 지원되도록 노력		
행정사항	• 보건복지부에 반기별 보고 ※ <서식 11호> 시도별 아동 저축 및 매칭현황 보고 • 시·군·구 등을 통해 반기별 실적 점검 및 지도·관리	• 시·도에 사업 실적 및 결과 반기별 보고 •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 현황 및 변동사항 관리 • 가입 아동에게 연 2회 적립 내역 통지 • 제도 변동 사항 발생 시 사업대상아동에게 통지	• 시·군·구에 대상자현황 및 변동사항 즉시 보고

### 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아동시설 등

- 아동복지시설\* 등은 관할 시·군·구 및 디딤씨앗통장 후원관리기관(아동권리보장원)에 대상아동의 입·퇴소 및 기타 변동사항 등 대상아동 관리에 필요한 아동정보 제공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시설(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장애인생활시설 포함) 등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관할 시·군·구와 협력하여 위탁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개설 필수 안내
- 디딤씨앗통장 저축을 위한 경제습관 길러주기 등 경제교육 및 아동의 올바른 후원금 사용 지도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신규후원자 발굴 및 기존후원자의 지속적인 후원 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협력
- 자체 개발된 후원자에 대한 후원자 정보를 디딤씨앗통장 후원 관리기관(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여 후원안내와 전문적인 후원자관리 및 후원자서비스(기부금 세금공제 혜택, 감사 서신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라. 아동권리보장원

- '20년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후원관리 및 홍보 등을 지원 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
-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운영 관리
  - 사업 성과분석 및 지속적인 발전방안 연구, 디딤씨앗통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아동복지전문가, 자산운용전문가, 후원개발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 홈페이지 구축·운영 관리, 후원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후원자 및 지원아동 관리
- 아동적립금 마련 위한 후원개발 업무 수행
  - 후원기업(단체) 연계 및 확대를 위한 대상 기업(단체) 발굴 및 확보, 사회공헌 기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제안 및 설명회 개최
  - 후원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 및 후원아동 지정, 후원금 배분기준\*에 따른 배분, 후원자 모임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후원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
    - \* 지정후원금은 지정된 아동, 비지정후원금은 보호대상아동 우선, 자립시기 등을 고려 배분

- 디딤씨앗지원사업 참여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대국민 온·오프라인 및 방송 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보급
  - 대국민 캠페인 활성화를 통하여 인식개선 및 후원 기부문화 조성
- 경제교육 매뉴얼 개발(대상아동별) 등 자립을 위한 경제교육 지원
  - 자문위원 구성·운영을 통해 경제교육에 대한 운영지침 마련
  - 사업소개 및 지원내용, 사용방법을 포함하는 교육을 통해 저축 동기유발 및 자립기능 강화

**〈 광역 및 기초사업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디딤씨앗통장의 후원개발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별도의 지역 디딤씨앗지원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마. 금융기관**

-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의 금융자산관리업무는 신한은행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
- 디딤씨앗통장 계좌관리 업무
  - 계좌(통장) 개설, 정부 매칭지원금 입금, 전출입아동에 대한 계좌 처리, 만기해지 및 조기 인출 등에 대한 계좌 처리
  - 아동저축액이 적립되는 정기적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이 적립되는 국공채투자신탁 상품에 대한 운용 및 관리
- 디딤씨앗통장 인터넷뱅킹 시스템의 관리 및 개발
  - 지자체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터넷뱅킹 시스템 유지 및 지자체 업무 개선을 위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 등

## 7. 지자체 협조사항

### 가. 가입 대상 아동에 대한 관리 및 사업 안내 필요

- 보호대상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등 가입대상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여 누락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분기별 가입대상 아동을 파악, 대상자 주소지로 가입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업 취지와 절차를 안내하고, 상시적 대상자 발굴 필요
- 가입아동에게 연 2회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을 통해 “신한SOL”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계좌 조회 방법·만기 여부 통지

#### 〈 디딤씨앗통장 정기 안내 〉

안녕하세요. ○○시(군·구)입니다. 귀하께서 가입하신 디딤씨앗통장의 고객 번호는 ~~~이며, 본인 적립 및 매칭 현황은 [https://nsol.shinhan.com/link.html?pr\\_id=SP1501H0011F01](https://nsol.shinhan.com/link.html?pr_id=SP1501H0011F01) 로 접속하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00-000-0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 매칭지원금 및 가입대상 확대 등 제도 변경사항을 사업 대상 아동에게 통지

### 나. 실적 점검 및 지도·관리

- 가입 아동의 현황 및 적립금, 정부 매칭지원금 등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추진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시스템(행복e음, 신한은행)에 대상 아동 정보의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 ※ 대상아동 대비 가입 현황 파악 등 통계 관리(보호대상아동/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 12~만 17세 구분))
  - ※ 지자체 평가·포상 계획 등에 반영 예정

### 다. 후원 및 홍보 확대 등 내실화 노력

- 주기적으로 아동의 적립 실적 등을 점검하여 적립이 어려운 아동에게 지역적으로 후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저축 및 경제교육 등 강화

## 8.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 가. 시·군·구 디딤씨앗통장 담당자 등록 절차

#### (1) 인터넷 뱅킹 접속

- 시·군·구는 디딤씨앗통장 인터넷뱅킹(신한은행, <http://bizbank.shinhan.com>)에 접속
- 공인인증서의 인증서 암호를 입력, 확인 후 시스템에 로그인
- 해당 인터넷 화면 상단의 메뉴 중 ‘고객별 지원’ 및 ‘디딤씨앗통장’을 선택
- 매칭등록 및 아동 적립금 지급 요청 등록 시 암호추가  
(OTP 카드 암호 및 이용자 패스워드 등록 - 분실 시 해당 은행 지점문의)  
※ OTP 카드암호 : OTP 카드 비밀번호 입력시 생성되는 6자리  
※ 이용자 패스워드 : 인증서 갱신 시 등록한 이용자 패스워드(6 OR 8자리)

#### (2) 디딤씨앗통장 인터넷뱅킹 담당자 등록

- ‘담당자 변경’을 선택하여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자 등록  
※ 담당자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 전화, e-mail 입력
- 각 업무별 ‘디딤씨앗통장’ 화면의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업무 처리

### 나. 아동 선정 및 통장 개설

#### (1) 대상 아동 선정 절차

##### 보호대상아동

##### ☐ 시설보호아동

- 시·군·구는 매월 아동복지시설 등에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보호조치아동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여 지원 대상 아동의 누락이 없도록 관리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생활시설(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장애인생활시설 포함) 등

- **아동복지시설** 등은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현황을 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로부터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자 지정을 받음
  - 시·군·구(읍·면·동) 및 아동복지시설 등은 아동 모두가 디딤씨앗통장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정된 대상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서식 1호>** 제출
- 각 시·군·구는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자를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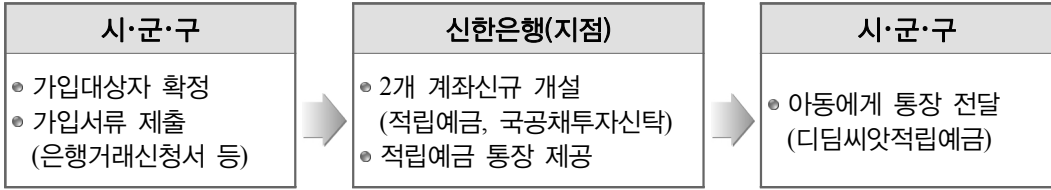
#### ☐ 가정위탁보호아동

-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아동 책정 통보 시 위탁아동(위탁부모)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디딤씨앗통장 개설에 대해 안내하여 통장개설을 독려하고, **지원 대상 아동의 누락이 없도록** 관리
- 위탁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서식 1호>를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은 신규신청자 서류를 취합하여 매월 시·군·구로 송부하고, 시·군·구는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자를 확정**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시·군·구 담당자는 가입 대상 아동을 파악하여, 대상자 주소지로 「가입 신청 안내문」을 분기별(1,4,7,9월)로 발송하여 가입 안내
  - \* 아동 명단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기초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만 12~만 17세 아동을 추출
- 가입희망 아동 또는 보호자(후견인)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서식 1호>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서식 12호>**를 작성·제출
- 읍·면·동은 신규신청자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로 송부
- 시·군·구는 대상자 선정 기준표(예시)<서식 13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고, 시·군·구별 예산 배정 범위 내에서 가입대상자를 확정
  - 확정명단을 즉시 시·도, 읍·면·동, 아동의 부모에게 통보
  - 읍·면·동은 지원대상 부모에게 통보하여, 통장가입 독려
  - 통장가입 시 보호자에게 사업의 취지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가입 후 지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2)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의 신규통장 개설 절차



- 시·군·구는 아동별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가입서류를 준비하여 신한은행(지점)에 디딤씨앗통장 계좌 신규를 일괄 요청<서식 2호>
  - 제출서류 : ①은행거래신청서, ②집합투자상품 신규 가입신청서에 사업협약서상 거래용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 관련 서류는 신한은행에서 교부받아 작성
  -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개설 요청등록
  -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신규지정 및 계좌 일괄 개설 요청서 작성하여 제출
  - 디딤씨앗통장 기업뱅킹시스템 - 통장개설

디딤씨앗 적립예금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작성자	제출처
①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서식 1호>		지원자	시·군·구
② 디딤씨앗통장 대상아동 신규지정 및 계좌 일괄 개설 요청서 1부 <서식 2호>		시·군·구 담당자	은행
③ 은행거래신청서 1부			
④ 집합투자상품 신규 가입신청서			
⑤ 사업자 등록증 원본			
⑥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담당 공무원증) 2부			

- 신한은행(지점)은 아동명이 부기된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을 신규 개설하고 아동별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을 발행하여 시·군·구에 전달
  - \*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는 별도로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신한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
- 시·군·구는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전달하여 상시 입금하도록 안내

(3) 통장 재발급 절차

- 통장 재발급 신청서는 신한은행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신청·제출



**다. 아동 적립예금 통장에 적립하는 방법**

**(1) 아동 저축 및 직접 후원에 의한 적립방법**

- **직접 저축** : 시·군·구에서 지급받은 본인의 통장에 자율적으로 저축
- **후원자 입금** : 아동의 후원자가 후원금 등으로 적립금을 직접 입금
  - \* 월 1,000원 이상~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정부매칭은 월 5만원까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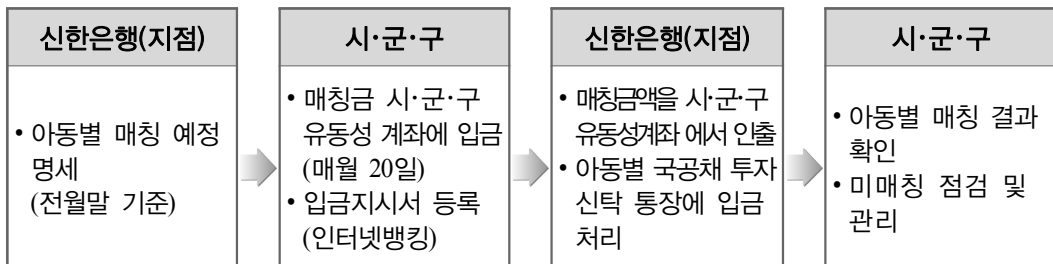
**(2) 모집된 후원금을 여러 아동계좌에 배분하여 주는 경우**

- 아동권리보장원은 직접 후원금을 모집하여 후원금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하여 배분 대상을 선정하여 아동 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
  - \* 아동권리보장원 후원금 배분 기준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후원금 입금
- 각 지자체별 후원관리기관(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서도 지원 대상 아동을 선정하여 직접 모집한 후원금을 배분하여 입금할 수 있음
  - 자체 발굴한 후원자에 대한 후원자 정보를 디딤씨앗통장 후원관리기관(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여 후원절차 안내, 후원자서비스(기부금 세금공제 혜택, 감사서신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적립액 확인 방법〉**

- 디딤씨앗 적립예금 : 통장으로 잔액 확인
-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 신한은행에서 매월 첫째주에 전월 말일 정부지원금 현황을 적립예금통장에 기재
  - (예시) 디딤씨앗 정부지원금 합계 : 〇〇〇 원 [전월말일] 기준

**라. 디딤씨앗통장 매칭 입금 업무**



- 신한은행(지점)은 매월 초 전월 말일 기준으로 아동 적립금 현황을 파악하여 아동별 매칭 명세를 담당 시·군·구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
  - ※ 디딤씨앗통장 ( )월 매칭 예정 명세 1부(서식 3호)

- 시·군·구는 제시된 매칭 예정 명세를 근거로 **매월 20일까지** 아동별 매칭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유동성 계좌에 입금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매칭 금액 입금지시서<서식 4호, 인터넷 등록으로 같음>를 등록(발송)
  - ※ 관련서류 : 인터넷등록으로 서류 제출에 같음
  - ※ 매월 매칭관련 예산신청 및 집행은 디딤씨앗통장( )월 매칭예정명세(서식 3호)를 근거로 처리
- 신한은행(지점)은 매월 20~25일에 아동별 매칭 금액을 시·군·구의 유동성 계좌에서 비밀번호 없이 무통장, 무인감으로 인출하여 아동별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통장에 입금 처리
- 신한은행(지점)은 매월 초 전월 말일기준의 매칭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당 시·군·구에 제공하며, 시·군·구는 정확한 매칭 여부를 점검
  - \* 확인자료 : 디딤씨앗통장 ( )월 적립 및 매칭 결과 1부(서식 5호)
- 신한은행은 아동의 디딤씨앗 적립예금통장 내에 정부의 매칭지원금액을 기재(매월 말일자 기준)하여 해당 아동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 신한은행은 매칭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미매칭 내역이 있을시 매월 미매칭 현황을 인터넷뱅킹을 활용하여 해당 시·군·구로 안내
  - \* 관련자료 : 디딤씨앗통장 미매칭 명세 1부(서식 6호)
- 매년 12월 미매칭 현황은 다음연도 1월내 모두 매칭되도록 업무 처리
- 시·군·구는 후원관리기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금오류로 인한 후원금 사후 지급 후 정부 매칭지원금 입금처리 요청 시 협조

## 마. 디딤씨앗통장 아동 전출입시 업무처리

### (1) 아동 전출시 업무처리

- 처리사유 : 가입 아동의 주소지 변화에 따라 아동의 담당 시·군·구가 변경된 경우
- 전출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21일~말일까지 전·출입 등 아동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출 신청 등록
  - 전출 신청서 공문 또는 ‘디딤씨앗통장 아동 전·출입, 자격전환 처리 신청서’ <서식 7호>를 이용하여 전입 시·군·구 앞으로 통지
- 전출시 유의사항 : 전출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에 대한 아동의 입금분까지 정부매칭 지원금을 입금 완료한(입금지시서 등록) 후 전출등록 신청

- 전출신청일 당일까지 미완료된 정부매칭지원금 입금 건을 모두 완료한 후 전출신청 (미매칭 존재하면 전출불가)
- 전출등록일<sup>1)</sup>까지의 아동적립액에 대한 매칭은 전출(기존)지자체에서 실시함이 맞으나 적립 후 매칭전(정부매칭지원금 산정 전) 전출로 인한 해당 계좌에 대한 전출입 양수도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전입 시·군·구에서 매칭을 실시
- 매월 첫째주 및 말일은 전출입 불가(정부 매칭 지원금 산정기간)
- \* 인터넷뱅킹을 통해 '디딤씨앗통장 ( )월 매칭 예정 명세'에 자동으로 반영

## (2) 아동 전입 시 업무처리

- 전입 시·군·구는 전출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전입사실을 통보 받으면, 해당월 말일 이전 아동의 전입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 인터넷뱅킹 보고서메뉴 중 '아동정보조회'에서 확인
- 전입 아동에 대한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재발행 요청이 있는 경우, 신한은행에 요청 하여 아동에게 교부
- 전입아동의 매칭자금 청구 확인 : 익월 5~20일
  - 아동에 대한 매칭은 전출 등록일이 속한 월의 아동 적립액에 대한 매칭 분부터 익월에 매칭입금을 실시
  - 신한은행은 전입아동을 '매칭 예정 명세'에 반영하여 제공하고, 전입 지자체는 전입 아동이 '매칭 예정 명세'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예) 10월 20일 아동이 중구에서 서대문구로 주소지 이전되었고, 전출지자체 담당자는 익월 11월 25일 해당아동의 전출사실을 인지**

**(아동은 10월 29일, 11월 2일 각 1만원씩 입금하였음)**

- 중구청 - 11월 25일 전출통지(서대문구) 및 전출신청 등록 완료
- 서대문구청 - 별도 처리 없음(필요시 통장재발행 및 아동 교부)
- 신한은행 지점 - 10월말까지의 입금액은 중구청에서 매칭토록 보고서 제공  
- 11월부터의 입금액은 서대문구청에서 매칭토록 보고서 제공

※ 즉, 아동에 대한 매칭지원금 지급 지자체 결정 시, 아동의 실제 주소이전일이 아닌 전출 지자체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출신청 등록을 완료한 날'이 기준일이 됨.

1) 아동의 실제 주소 이전일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담당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출신청 등록을 마친 날'을 의미, 아동의 주소 이전일로 소급하지 않음. '전출등록일' 기준으로 매칭입금을 할 시·군·구가 결정되므로 전출 시·군·구 담당자는 아동의 전출사실을 인지 시, 해당 월 등록기간 내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등록을 마쳐야 함

[ 참고 ] 시·군·구 및 신한은행간 월간 처리 업무 ]

구 분	시·군·구	신 한 은 행	비 고
3~5일		① 전월 지급 명세 반영<서식 10호> ② 전월 아동별 적립 및 매칭결과 명세반영<서식 5호> ③ 전월 아동별 매칭예정 명세 반영<서식 3호> ④ 전월 미매칭 명세 보고 <서식 6호> ⑤ 전입 아동의 통장 재발행, 전달	- 인터넷뱅킹을 통해 제공  - 전출입 아동에 대한 내용 반영
5~20일	① 매칭예정명세를 통해 대상아동, 매칭대금 확인 및 예산 배정 ② 배정된 매칭대금 신한은행 유동성 계좌로 입금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매칭자금 입금요청<서식 4호>		
20~25일		① 실제 입금액과 아동별 입금을 비교 확인 ② 각 아동별 매칭계좌에 입금	
21~말일	① 대상아동의 전출입 파악 ② 인터넷뱅킹을 통해 아동 전출 등록		

※ 아동의 해지 신청시 “디딤씨앗 적립금 사용 신청서”<서식 8호> - 아동 작성, 지자체 수령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서식 9호> - 지자체 작성, 은행 수령

바. 만기해지 및 조기 인출 업무

● 해지의 종류 및 개요 :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 시 조기인출 가능

구 분	요 건	지급구분		비 고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 지급	만기해지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	○	* 만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중도 해지 (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령 후 인정 가능

(1) 만기해지

-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적립금 사용 용도 :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지원 등

● 만기해지 처리 절차

- ① 신청자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서식 8호>와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여 승인
  - 인터넷뱅킹에 적립금 지급 등록 후 출력하여 협약서상 거래용 사용인감을 날인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서식 9호>를 신청인에게 발급
  - 신한은행에 지급 승인 내역을 통보하여 지급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
  - \* 적립금의 목적 외 사용, 타 용도 담보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 ③ 신청인(아동) 본인이 지급 요청서와 통장 및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학생증 등)를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지급을 신청

〈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 신청인(아동)이 주소지 시·군·구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의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거주지 시·군·구에서 해지 및 거주지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대금지급 신청이 가능(2019년 3월부터 적용)
  - 이 경우, 거주지 시·군·구에서 주소지 시·군·구로 신청서 이관 후, 주소지 시·군·구에서 거주지 시·군·구로 적립금 지급 요청서 등 공문 송부 필요
  - 주소지 시·군·구에서 아동이 적립금 지급요청서 상 신청한 거주지 시·군·구를 시스템 상 등록 필요

- ④ 신한은행(지점)은 지급요청서에 따라 해당 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지급요청서 상의 입금계좌로 해지금액 지급
  - 지급요청서 상의 입금계좌는 채권자<sup>2)</sup> 계좌 또는 아동의 계좌를 기입하며 해당 계좌로 만기해지금액을 지급
  - \* 채권자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자립사용용도의 특성상 아동에게 직접 자립 자금 입금 가능
  - 단,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은 은행영업일 수로 3일째 되는 날 입금  
(예) 1월 7일(금) 해지 신청 시 1월 11일(화)에 지급
- ⑤ 신한은행(지점)은 익월 초 자금 지급에 대한 내역을 취합하여 시·군·구에 통지

2) 채권자 : 아동이 학자금 사용 용도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을 수납하는 대학 등을 말하며,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사용 용도의 경우 학원 등 아동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체를 의미함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에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연내 만 24세 도달 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인출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이에 따라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포함여부 >**

- 18세 이후 만기 해지 수령금은 만 2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 시 금융재산 공제 대상
- 24세 도달 시 해지 수령금액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됨

**(2) 만기 후 적립예금 인출**

-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용도 중 일부만 적립금 사용용도에 충족하는 경우로 아동 저축에 해당되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인출(일부 인출)만 허용(조기인출 포함 최대 5회까지 가능, 2019년 3월부터 적용)
  - ※ 대학 입학 후 학업에 정진하여 성적향상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규정 완화
- 신청인(아동) 본인이 지급 요청서와 통장 및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학생증 등)를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지급을 신청
- 대학 생활지원비는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근거로 지급
- 이 경우, 만기 해지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정부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은 미해지
  -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서(서식 9호) 출금 구분 중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에 체크

**(3) 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에 한하여, 2회까지 조기 인출 가능
  - 조기 인출금 사용용도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①학자금, ②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③의료비지원(질병/부상 시) 비용에 한하며, **아동적립금(디딤씨앗 적립예금)만 인출 가능**
    - ※ 의료비 용도 인출은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급여, 긴급 복지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 아동적립금만 지급 가능하고, 정부 매칭지원금은 조기 인출 불가하며,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
- 이 경우, 만기 해지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정부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은 미해지
  -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서(서식 9호) 출금 구분 중 '조기인출'에 체크
- 조기 인출 이후에도 계좌는 계속 유지되며, 추가 적립 및 매칭지원 가능

**(4) 중도 해지(환수)**

- **해당사유** :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
  - ※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 가능
  - 이 경우, 아동적립금(디딤씨앗적립예금)은 지급하지만, 정부 매칭지원금은 환수처리

● **아동의 행방불명 시 처리**

-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인해 아동의 주거지(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아동보호구분을 지원중지로 변경(단, 복귀 시 계속지원)

● **아동의 사망 시 처리절차**

- ① 아동의 사망 시에는 관련법상의 상속인이 직접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신청
  - ※ 민법상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상속인 신분증 필수 확인
  - 상속인에게 지급결정 시 지자체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서식 9호>의 입금 정보란에 상속인의 성명 및 예금계좌번호를 기재
  - 상속인 지급순위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
    - ※ 공동상속의 경우 양방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 일부가 행방불명 등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아래 <참고> 상속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
- ② 신한은행(지점)은 해당 아동적립금(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국공채투자신탁)을 해지 처리
- ③ 아동적립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정부 매칭지원금은 환수 처리
- ④ 아동 주소지와 상속인 주소지가 다를 경우 상속인의 거주지에서도 해지처리 가능

## ※ 「민법」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는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부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참고〉 상속 처리

- 상속인 지급순위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 부모를 예로 들면, 1인이 다른 1인의 동의(위임장 등)를 받았는지, 다른 1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공동상속인이 없는지 등 확인하고 지급해야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절차를 이행해야 함.
-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다수가 **행방불명 등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부재자’에 해당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
  - ① 이해관계자(공동상속인 등)가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
  - ② 이해관계자(지자체 담당자 등)가 재산관리인으로 허가 받은 후, 법원에 초과행위(「민법」 제118조 보존행위를 넘어선 행위, 처분행위 등)에 대한 허가를 요청
  - ③ 법원으로부터 초과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상속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처리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실종선고가 가능하며, 실종선고를 받는 경우 사망으로 간주되므로, 공동상속이 아니라 단독상속 가능

※ **무연고 아동의 경우**

- 무연고 아동의 경우 「민법」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제1053조~제1058조)을 준용하여 처리
-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인 부존재**의 상태가 되고, **특별연고자**는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부여 청구 가능**(「민법」 제1057조의2)
- 특별연고자의 부여청구가 없거나 부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민법」 제1058조)



● 아동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시 처리

- 아동의 해외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해외입양 포함)
- 시·군·구는 아동 및 보호자가 제시한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해지사유 적합성을 판단하여 해지여부를 결정
- 아동적립금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정부 매칭지원금 모두 환수 처리
-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서(서식 9호) 출금 구분 중 '중도해지'에 체크

● 디딤씨앗통장 아동의 오류 신규에 따른 처리

- 디딤씨앗통장 개설대상 아동이 아니나, 착오로 계좌 개설이 된 경우 등 오류에 의한 개설 계좌는 당해 사유를 기재한 공문 및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서(서식 9호)에 따라 중도해지 처리
- 적립된 자금이 있는 경우 아동의 디딤씨앗 적립예금(아동적립금)은 아동에게 반환하고, 정부매칭지원금은 환수하여 차기 매칭대금으로 활용 가능

## 참고 디딤씨앗통장 금융통장 구성

### 가. 디딤씨앗통장 자금운용 현황 개요

- 아동적립금은 신한은행의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디딤씨앗적립예금”이라는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정부 매칭지원금은 “디딤씨앗국공채투자신탁”이라는 상품으로 운용

구 분	상품명	상품특징
아동적립금	디딤씨앗 적립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정기적금(자유적립식) 기본 금리에 연 1.0%를 우대</li> <li>• '23년 1월 현재 최고금리 4.05% 적용</li> </ul>
정부 매칭지원금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채, 통안채, 공사채 등 국공채 투자</li> <li>• 목표수익률 : 매 적립시점의 국고채권 1년 금리+0.6%</li> <li>• 최근 1년 1.63%</li> </ul>

### 나. 디딤씨앗통장 금융상품 세부설명

#### (1) 디딤씨앗 적립예금(아동적립금)

구 분	상 품 내 용
상 품 명	•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명의	• 시·군·구(보호아동명 부기)
계약기간	• 통장개설 후 만 18세 미만까지(단 만기일 이후 만 24세까지 적립가능)
저축금액	• 월1,000원 이상 ~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정부매칭은 5만원까지 가능)
이율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 이율결정일마다 고시된 기간별 만기지급이율로 변경</li> <li>* 이율결정일 - 가입일과 가입일로부터 매 회전기간(5년) 해당일</li> </ul>
이자지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전기간(5년) 단위로 계산하여 만기 일시 지급</li> <li>* 단, 잔여기간이 회전기간보다 짧은 경우 잔여기간으로 회전</li> </ul>
만기지급 이율 (2023.1.1.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 이율 결정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적립예금의 계약기간별 만기지급 이율</li> <li>- 1개월 이상 : 연 3.45%    - 12개월 이상 : 연 3.80%</li> <li>- 24개월 이상 : 연 3.85%    - 36개월 이상 : 연 4.00%</li> <li>- 48개월 이상 : 연 4.05%</li> <li>※ 일반정기적금 고시금리 변경 시 자동으로 연동하여 변경</li> </ul>
조 기 인 출	• 2회까지 가능 : 가입 3년이 경과하고 만15세 이상일 경우
만기후 적립기간 및 이율 (2023.1.1.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20세미만 :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 0.9% 적용</li> <li>• 만 20~22세미만 :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 0.7% 적용</li> <li>• 만 22~24세미만 :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 0.5% 적용</li> <li>• 만 24세 이상 : 아동이 만2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신규 해당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li> <li>※ 이율 변경시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li> <li>※ '23.1.1. 이후 해지계좌 적용</li> </ul>

(2)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정부·지자체 매칭 지원금)

구 분	상 품 내 용
상 품 명	•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명의	• 시·군·구(아동별 관리)
투자기간	• 1년 이상
목표 수익율	• 매 적립시점의 국고채권 1년 금리+0.6% 수준
운용대상	• 국공채 70% 이상, 어음 등 30% 이하
적립금액	• 월1,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아동 적립금 범위 내 1:2 매칭 적립
환매(해지) 방법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지급 (예) 1월 7일(금) 해지 환매청구시 1월 11일(화)에 지급
신탁보수	• 총 0.3%(판매사 0.18%, 운용사 0.10%, 자산보관회사 0.02%)
기타사항	• 통장 발행 없음

(3) 시·군·구의 매칭펀드 입금용 유동성 예금

구 분	상 품 내 용
상 품 명	• 보통 예금
계좌명의	• 235개 시·군·구
개설용도	• 아동 기본 적립금에 대한 정부(지자체) 매칭 지원금 입금 및 해지 환출 처리용 임시 계좌

[참고] 적립금 액수에 따른 적립기간별 적립액 예시

(단위 : 만원, 세후 수령액 기준)

		구 분	운용	1년	5년	10년	15년	18년
월 3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36	180	360	540	648
		추가 적립금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72	360	720	1,080	1,296
	총액(이자 제외)			108	540	1,080	1,620	1,944
월 5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	300	600	900	1,080
		추가 적립금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	600	1,200	1,800	2,160
	총액(이자 제외)			180	900	1,800	2,700	3,240
월 10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	300	600	900	1,080
		추가 적립금		60	300	600	900	1,080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	600	1,200	1,800	2,160
	총액(이자 제외)			240	1,200	2,400	3,600	4,320

## 디딤씨앗통장(CDA) 사업 Q&A

### I. 디딤씨앗통장(CDA) 사업 Q & A

1. 디딤씨앗통장은 왜 2개의 계좌로 구성되어 있나요? ..... 72
2. 2개의 계좌의 상품특성과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 72
3. 저축액과 저축기간이 변하면 만기에 받는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73
4. 시설을 나와서 다시 부모님과 사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 73
5. 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나요? ..... 73
6. 아동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74
7.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에 왜 지자체명이 써 있나요? ..... 74
8. 아동, 보호자 및 후원인이 디딤씨앗 매칭펀드 계좌에 입금할 수는 없나요? ..... 75
9. 근처에 신한은행이 없는 경우 어떻게 입금하나요? ..... 75
10. 지자체는 왜 유동성 예금 통장을 보유해야 하나요? ..... 75
11. 아동별 저축액에 대한 매칭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76
12. 전·출입 시 매칭자금 입금의 처리 기준은? ..... 76
13. 연말 결산시점의 매칭펀드 등 계좌의 처리 방법은? ..... 77
14. 아동이 만 18세 이전에 디딤씨앗통장을 중도 해지 또는 일부 인출이 가능하나요? ..... 77
15. 지자체의 승인서 발급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77
16. 아동이 도장 없이 통장만 지참하고 은행에 왔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나요? ..... 78
17. 디딤씨앗통장 조기지급 용도로 과외비 지급이 가능하나요? ..... 78
18. 디딤씨앗통장 분실시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 79
19. 가입아동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처리 절차는? ..... 79
20. 무연고아동 사망 시 처리 절차는? ..... 80

II.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 매뉴얼 관련 Q & A

1. 디딤씨앗통장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기업뱅킹에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 81
2. 지자체 디딤씨앗통장 담당자 변경시 시스템 사용을 위한 조치 사항은? ..... 81
3. 아동이 가정복귀 등의 이유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아동은 반드시 계좌를 해지해야 하나요? ..... 82
4. 입금지시서 등록(매칭)시 특정조회기준월의 정부지원금 매칭누락 아동만 조회 후  
매칭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82
5. 아동적립예금에 대해 일부 인출이 가능한가요? ..... 83
6. 디딤씨앗통장 지급요청서 등록시 미매칭금 보유아동일 경우 업무처리 방법은? ..... 83
7.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서 등록 완료 후 등록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처리 방법은? ..... 83
8. 특정기준월 및 조회시점 현재월의 디딤씨앗 적립예금 입금 현황을 파악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84
9. 지자체의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매칭여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조회 방법은? ..... 84

I

디딤씨앗통장(CDA) 사업 Q & A

1 디딤씨앗통장은 왜 2개의 계좌로 구성되어 있나요?

- 아동이 보호자 및 후원자의 지원을 통하여 적립하는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정부(지자체)에서 적립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의 2개의 계좌로 구성되어 있음

2 2개의 계좌의 상품특성과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 디딤씨앗 적립예금(아동적립금)

구 분	아동적립금	정부지원금
상품명	디딤씨앗 적립예금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저축대상	아동(후원자)	정부매칭금
통장명의	시·군·구명(보호아동명 부기)	시·군·구(통장 미발행)
적립금액	월 1,000원 이상 50만원 이하	1,000원 이상 5만원 이하 (아동적립금에 1:1 매칭)
거래제한	1아동 1계좌	
이자지급	만기일까지(만18세) 잔여기간에 따라 • 1개월 이상 : 연 3.45% • 12개월 이상 : 연 3.80% • 24개월 이상 : 연 3.85% • 36개월 이상 : 연 4.00% • 48개월 이상 : 연 4.05%(’23.1월) ※ 5년 초과 시 5년 이상 금리로 매 5년 마다 변경 적용	• 목표수익률 : 매 적립시점의 국고채 1년 금리 + 0.6% * 최근 1년 평균 수익률 1.63%  • 신탁보수 : 총 0.3% (판매사 0.18%, 운용사 0.10%, 기타 0.02%)

**3 저축액과 저축기간이 변하면 만기에 받는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단위 : 만원, 세후 수령액 기준)

		구 분		운용	1년	5년	10년	15년	18년
월 3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36	180	360	540	648
		추가 적립금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72	360	720	1,080	1,296
	총액(이자 제외)					108	540	1,080	1,620
월 5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	300	600	900	1,080
		추가 적립금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	600	1,200	1,800	2,160
	총액(이자 제외)					180	900	1800	2700
월 10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	300	600	900	1,080
		추가 적립금			60	300	600	900	1,080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	600	1,200	1,800	2,160
	총액(이자 제외)					240	1,200	2,400	3,600

※ 이자를 제외한 금액

**4 시설을 나와서 다시 부모님과 사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 재입소 예방 및 가정복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정복귀 후에도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계속함.[아동의 보호구분 변경 → 가정복귀]
- 종전에는 복귀가정이 저축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디딤씨앗통장 중도해지(아동적립금만 수령)가 가능하였으나, '11년부터 가정복귀 시에도 중도해지는 할 수 없고('11.1.1~), 만 18세 이후 자립 용도로만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 수령 가능

**5 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나요?**

-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의 전출·전입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매월 이를 집계하여 필요시 시·도에 보고하며, 전출 지자체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매월 21일 ~ 말일까지 해당 아동에 대해 전출 신청 등록

- 신한은행(지점)은 매칭자금 통지시 전·출입 사항 등 변경내역 일체를 ‘디딤씨앗통장( )월 매칭 예정 명세’<서식 3호>에 반영하여 시·군·구에 제공
- 시·군·구는 매칭 예정 명세를 기준으로 예산신청(집행) 및 매칭을 실시한다. 아동에 대한 매칭은 전출등록일이 속한 월의 아동적립액부터는 전입지자체가, 그 이전 적립액은 전출 지자체가 매칭(매칭 예정 명세에 자동 반영됨)

## 6 아동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아동 사망 시 중도해지(환수) 처리 :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
- 상속인이 직접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신청을 하고, 신한은행(지점)의 본인 적립금 (적립계좌예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이 해지 처리되는 시점에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
-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순위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으로 함(정부 매칭지원금은 환수처리)
  - ※ 공동상속의 경우 양방의 동의를 모두 필요한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 일부가 행방불명 등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
- 상속인에게 지급 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서식 9호>의 입금 정보란에 상속인의 성명 및 예금계좌번호를 기재
  - ※ 민법상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상속인 신분증 필수 확인
- 무연고 아동의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 7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에 왜 지자체명이 써 있나요?

- 정부(지자체)에서 적립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에 매월 적립되는 매칭자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매월 입금되는 금융정보가 필요함
  - 금융실명제하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따라 아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경우, 매월 필요한 관련 금융정보를 얻을 수 없음(매월 아동 동의서 및 정보제공사실 통지 필요)
- “디딤씨앗 적립예금”을 각 시·군·구 명의로 개설하나, 모든 법률적 지위는 개별 아동명의 개설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아동의 입출금(만기, 중도해지 등)에는 지장이 없도록 운영함



**8 아동, 보호자 및 후원인이 디딤씨앗 매칭펀드 계좌에 입금할 수는 없나요?**

- 아동, 보호자 및 후원인은 “디딤씨앗통장 적립예금”에 월 50만원 한도로 입금이 가능하나, 디딤씨앗 매칭자금이 입금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로는 입금할 수 없음
- 매월 아동, 보호자 및 후원인이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정부(지자체)는 신한은행 해당 지점을 통하여 동일한 금액을 디딤씨앗 매칭펀드(“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로 입금함

**9 근처에 신한은행이 없는 경우 어떻게 입금하나요?**

- 신한은행을 통한 디딤씨앗계좌 입금은 추가 수수료 없이 입금 가능  
(인터넷뱅킹 또는 신한은행 창구 이용)
- 타행 계좌를 통한 디딤씨앗계좌로의 입금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매월 자동이체 등록을 통하여 수수료 지급 최소화 권고  
(기 거래중인 은행을 방문하여 신한은행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로 납부자동이체 신청시 적은 수수료로 입금 가능)
- 디딤씨앗통장 후원관리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후원
  - 후원자가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후원할 경우 수수료 없이 후원 가능

**10 지자체는 왜 유동성 예금 통장을 보유해야 하나요?**

- 디딤씨앗 매칭펀드(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는 유동성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및 해지가 이루어지므로 각 지자체별로 유동성 계좌를 보유해야함
  - 지자체는 디딤씨앗 매칭펀드 계좌로 직접 입금할 수 없고 정부(지자체)명의로 유동성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지시 완료일 포함 3영업일에 해당계좌로 입금됨

## 11 아동별 저축액에 대한 매칭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디딤씨앗 매칭펀드로의 입금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의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에 전월 1일~말일 사이에 입금된 금액으로 하며, 신한은행(지점)에서 매월 통지함

### ① 매월 5일경(은행)

- 신한은행 해당 지점은 아동별 계좌의 입금 금액을 확인
- 각 지자체가 입금해야 할 정부 매칭지원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제공  
※ 디딤씨앗통장 ( )월 매칭 예정 명세<서식 3호> 송부

### ② 매월 5~20일(지자체)

- 지자체는 신한은행이 송부한 명세서를 확인한 후, 아동별 전·출입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명세서에 따라 입금 지시  
※ 지자체는 청구금액을 해당 지자체의 금고은행에서 신한은행의 디딤씨앗통장용 유동성계좌(보통예금)로 입금 후 신한은행으로 인터넷뱅킹 통한“( )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매칭지원금 입금지시서<서식 4호>” 등록

### ③ 매월 20~25일(은행)

- 신한은행은 실제 입금된 금액과 아동별 입금금액을 확인
- 금액이 일치할 경우 입금지시서에 따라 아동별 금액을 매칭펀드에 입금
- 인터넷뱅킹을 통해 익월 ‘디딤씨앗통장 ( )월 적립 및 매칭 결과’<서식 5호> 확인

## 12 전·출입 시 매칭자금 입금의 처리 기준은?

● 아동이 전·출입을 한 경우 아동에 대한 정부매칭지원금 지급 지자체 결정은 아동의 실제 주소이전일이 아닌 전출지자체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출신청 등록을 완료한 날’이 기준일이 됨.

- 전출등록 해당 월의 전월에 대한 아동의 입금분까지 전출지자체에서 매칭 입금을 함 (전출등록일 해당 월에 매칭 입금 처리)
- ‘디딤씨앗통장 ( )월 매칭 예정 명세’에 전출입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반영하므로, 해당 보고서에 아동이 나타나는 지자체에서 해당 월분을 매칭함

**13 연말 결산시점의 매칭펀드 등 계좌의 처리 방법은?**

- 디딤씨앗 적립예금, 매칭펀드(국공채 투자신탁)
  - 필요시 신한은행의 잔액증명 등을 통해 결산시 회계에 반영
- 지자체 명의의 보통예금
  - 매칭자금 등의 입출금 과정 발생 이자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좌에 잔액 발생 가능
  - 매년말 이전 매칭예산 신청 및 집행시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매칭용 요구불계좌로 송금

**14 아동이 만 18세 이전에 디딤씨앗통장을 중도 해지 또는 일부 인출이 가능하나요?**

- 만기해지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조기인출, 중도해지 인정함

구 분		요 건	지급구분		비 고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 지급	만기 해지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	○	* 만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중도 해지 (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중도해지 세부사항은 59페이지 참고

**15 지자체의 승인서 발급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매칭펀드의 출금시에는 반드시 지자체의 승인 필요
  - ① 해지 또는 중도 인출 사유 발생 시 아동은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 방문하여 사용신청서 제출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신청서(서식 8호)

- ② 담당 공무원은 해지 또는 중도인출의 적정성을 확인
- ③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유와 기재된 채권자와의 사실 관계 및 진정성 확인
- ④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 내용에 따라 승인서 발급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서식 9호> 발행
  - ※ 반드시 기업인터넷뱅킹 통한 등록 후 출력한 양식(사용인감날인) 발급
- 디딤씨앗통장 계좌 적립금 사용 신청 관련 서류는 증빙서류와 함께 아동별 보관
  - 중복 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별로 관련 서류 관리, 보관 철저

## 16 아동이 도장 없이 통장만 지참하고 은행에 왔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나요?

- 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매칭펀드는 해지 또는 일부 인출시 기존 금융상품과 달리 도장이 필요 없으나, 지자체에서 발급한 승인서가 반드시 필요함

### < 필요 서류 >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서식 9호>
  - ※ 반드시 기업 인터넷뱅킹 통한 등록 후 입력한 양식(사용인감날인)
-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 ※ 통장 분실 시 예금주 지자체의 “분실신고 및 해지요청” 공문으로 대체 가능(재발급 불필요)
- 아동 본인 방문시 주민등록증(또는 학생증)
- 법정대리인 방문 시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 주민등록증 및 아동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가족관계기본증명서 및 신분증, 기타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 및 신분증)

## 17 디딤씨앗통장 조기지급 용도로 과외비 지급이 가능하나요?

- 조기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은 고등학교 수업료, 대입학원비 등으로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개인과외의 경우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적립금의 목적외사용, 부정수급 등 적립금 사용용도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적립금 사용 용도로 포함하기는 어려움

**18 디딤씨앗통장 분실시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 아동이 해당 시·군·구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통장 재발급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공문,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증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 지역 신한은행에 재발급 신청

**19 가입아동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처리 절차는?****< 아동 개명 시 >**

- 적립예금 통장의 아동 부기명도 변경되므로 통장 재발급이 필수임
  - 아동명 변경 및 통장 재발급 요청 공문, 아동 주민등록등본(개명 전후 표시),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지참하여 매칭 지점에 방문 → 지점에서 아동 명의 변경 후 통장 재발급하여 교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

- 아동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 공문,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변경 전과 변경 후 기본증명서 모두 필요, 또는 현재 기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 표시),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매칭지점에 팩스로 제출(방문 불요)
  - 매칭지점에서 해당 서류를 본점에 제출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지자체에 통지

**< 공통 >**

- 지자체 담당자는 위 절차를 수행한 후, 신한은행(지점)에 아동 정보가 은행 원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은행 원장에 아동 자체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아동(또는 대리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해당 정보를 변경하도록 안내

## 20 무연고아동 사망시 처리 절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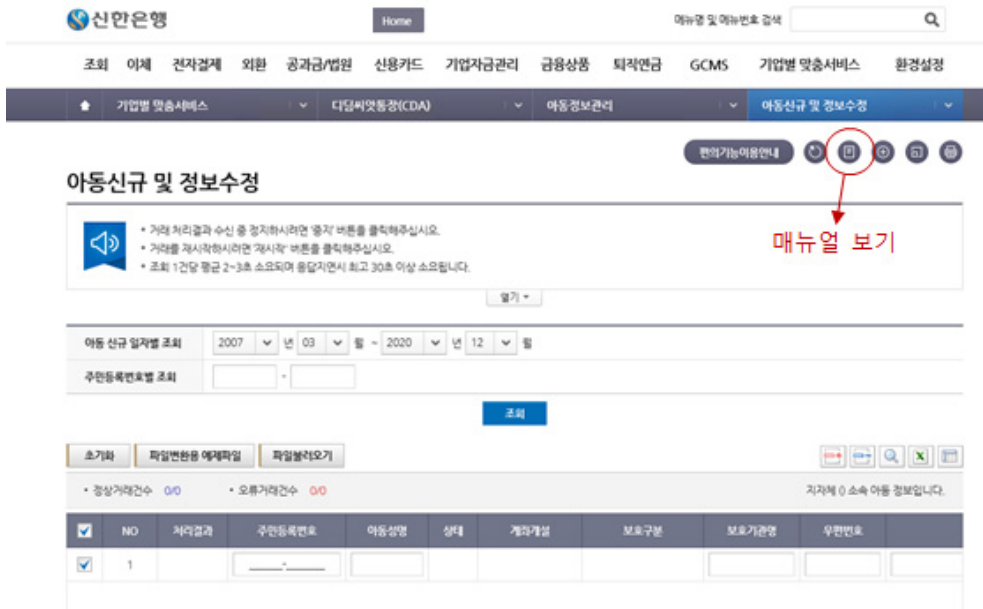
- ❶ 이해관계자(시설장, 위탁부모 등)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법원이 허가 후 관리인 선임을 공고
  - \* 이해관계자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지자체 담당자를 지정하여 법원에 청구
- ❷ 공고 후 3개월 내에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지자체 담당자)은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민법 제1056조)
- ❸ ❷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상속인수색의 공고를 청구, 법원이 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 시행
- ❹ 상기 기한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특별연고자 등은 법원에 분여 청구 후 상속(분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은 국가 귀속)

특별연고자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민법 제1057조의2)

II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 매뉴얼 관련 Q & A

1 디딤씨앗통장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기업뱅킹에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 우측 상단 “매뉴얼 보기” 클릭 후 PDF 파일을 열어서 매뉴얼 확인

2 지자체 디딤씨앗통장 담당자 변경시 시스템 사용을 위한 조치 사항은?

- ① 디딤씨앗통장 관리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OTP카드, 이용자 패스워드, 인증서 암호 인수  
→ ② 인증서 재발급 또는 인증서 이동 → ③ 디딤씨앗통장시스템상 담당자 변경
- ★ ① 항목 분실시 지자체담당 관리지점 연락 후 조치
  - ※ 인증서 재발급: 신규 담당자의 PC에서 신규 인증서 발급(신규 인증서암호 설정)
  - ※ 인증서 이동: USB등을 이용하여 기존 담당자의 PC에서 기업뱅킹인증서를 새로운 담당자의 PC로 이동 → 기존 인증서 암호 사용가능
  - ☞ 인증서재발급 유의사항 :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 ☞ 기업뱅킹 인증서 발급 전후 입력사항 정의
    - ※ 이용자 ID, 지자체별 고유 ID(CB + 숫자 6자리) : 인터넷 조회 및 관리점 문의 가능
    - ※ 계좌번호: 디딤씨앗통장 월별 예산 입금 유동성 계좌(100-\*\*\*-\*\*\*\*\*)

- ※ 계좌비밀번호: 위 계좌의 비밀번호(숫자 4자리)
  - ※ OTP 비밀번호(6자리): OTP카드 비밀번호 4자리 입력시 액정 화면에 display 되는 6자리 번호
  - ※ 이용자 패스워드: 인증서 발급 후 매칭 및 지급등록 위한 암호(6자리 또는 8자리)
  - ◆ OTP(6자리), 이용자 패스워드는 매칭 및 적립금 지급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
- ☞ 디딤씨앗통장시스템상 담당자 등록  
공지사항 및 지자체 문의사항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

### 3 아동이 가정복귀 등의 이유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아동은 반드시 계좌를 해지해야 하나요?

- 가정복귀에도 중도해지는 불가능하고, 만기시까지 계속 지원함
- ※ 가정복귀아동은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등록 후 관리 [디딤씨앗통장 업무 매뉴얼 9 page 참고]

### 4 입금지시서 등록(매칭)시 특정조회기준일의 정부지원금 매칭누락 아동만 조회 후 매칭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 디딤씨앗통장 입금지시서 화면에서 해당아동입금 기준일,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미매칭으로 조회 → 해당아동 및 매칭금액 확인 → 등록

The screenshot shows the '지원금입금' (Support Fund Deposit) page on the Shinhan Bank website. The page has a header with the bank's name and a search bar. Below the header is a navigation menu with options like 'Home', '메뉴경 및 메뉴번호 검색', and various service categorie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지원금입금' and contains a form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A search bar with a '일기' (Date) dropdown menu.
- Field 1: '지원금 조회 기준일' (Support Fund Search Date) with a date selector set to 2020-11-11.
- Field 2: '주민등록번호 조회'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earch) with a text input field.
- Field 4: A blue '조회' (Search) button.
- Field 3: A tabbed interface with '미매칭' (Not Matched) selected.

Below the form, there is a table with columns for 'NO', '처리결과' (Processing Result), '매칭여부' (Matching Status), '매칭년월' (Matching Year/Month),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아동성명' (Child Name), and '아동적립금' (Child Savings). The table currently shows one row with 'NO' in the '처리결과' column.



### 5 아동적립예금에 대해 일부 인출이 가능한가요?

- 사례) A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적립예금 만기는 2022.10.01, 디딤씨앗통장 적립예금 잔액 100만원, 매칭펀드잔액 54만원, 기술교육비로 80만원이 필요하여 지급 요청한 경우?
- 적립금 지급요청서 송부 → 주민번호 입력 → 조회 → 출금구분 조기지급(적립계좌인출) → 필요금액으로 적립예금 출금 금액 수정 →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 → 예금주 조회 → 등록 → 지급요청서 출력 및 아동 교부
  - ☞ 만기경과 아동의 경우도 만기해지(적립 및 펀드계좌 일괄해지)가 아닌 아동 적립계좌 잔액 범위 일부인출 원하는 경우 같은 프로세스 적용 가능
  - ☞ 지급요청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 거래내역 및 잔액조회는 계좌번호(230-\*\*\*-\*\*\*\*\*) 클릭

### 6 디딤씨앗통장 지급요청서 등록시 미매칭금 보유아동일 경우 업무처리 방법은?

- 사례) A아동이 2020.09.20일 만기, 매월초 5만원 적립계좌 입금지속, 만기해지요청에 따라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서 [미매칭금 1건, 미매칭 금액 50,000원]문구 확인
- 디딤씨앗통장 업무 → 보고서조회 → 미매칭 명세조회 → 아동의 매칭 누락월 및 금액 확인 → 매칭유무 결정 → 적립금 지급 요청서 의견란의 매칭예정 OR 매칭불요 체크 → 그 외 일반 지급 요청서 등록과 동일
  - ☞ 위 아동의 9월 적립예금에 대하여 10월 매칭이 완료되지 않은 이유로 위와 같은 메시지 생성, 특이사항 없는 경우 매칭예정표시 및 매칭등록 완료 후 지점방문해지 요청안내

### 7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서 등록 완료 후 등록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처리 방법은?

- 사례) A 아동의 적립금 지급요청에 의거 출금구분을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로 등록하였으나 만기 해지로 출금구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관리지점에 등록 취소 요청 후 재등록 가능
  -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은 아동의 적립계좌 및 국공채 매칭 펀드 계좌가 해지되지 않고 아동의 적립계좌 잔액 범위 내 원리금 인출

## 8 특정기준월 및 조회시점 현재월의 디딤씨앗 적립예금 입금 현황을 파악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디딤씨앗통장 업무 메뉴 중 보고서 조회 활용
  - ☞ 특정월 또는 조회월 현재 아동 입금현황을 파악하여 미저축 아동을 추출하고자 할 경우
- ① 특정월 아동 입금 현황 관리
 

디딤씨앗통장 업무 → 보고서 조회 → 조회구분: 디딤씨앗통장 월별 매칭 예정 명세 → 아동입금 조회 기준월 입력 → 조회 → 파일수신(EXCEL 파일) → 기본적립금 기준으로 정렬 → 기본적립금 0원 아동 추출 → 아동관리
- ② 조회 월 현재 당월 디딤씨앗통장 적립예금 현황 관리
 

디딤씨앗통장 업무 → 보고서 조회 → 조회구분: 당월 디딤씨앗통장 적금 및 매칭입금 현황 → 조회 → 파일수신(EXCEL 파일) → 금월 기본적립금 기준으로 정렬 → 금월 기본적립금 0원 아동 추출 → 입금 안내

## 9 지자체의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매칭여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조회 방법은?

- ① 일정기간에 대한 아동 적립금에 대한 미매칭 발생 내역 조회 방법
    - ☞ 디딤씨앗통장 보고서 - 디딤씨앗통장 미매칭 명세 조회
      - 정기조회를 통한 매칭 누락 체크
      - 지급요청등록시 미매칭 발생 메시지 확인시 조회
  - ② 당월에 전월 아동입금에 대한 매칭을 지자체가 등록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 ☞ 디딤씨앗통장 업무 → 입금지시서 송부 → 조회기준월(전월) → 조회 → 매칭 상태 확인
      - ▶ 매입요청 중 : 매칭등록 후 진행 중
      - ▶ 매칭완료 : 정상적으로 매칭등록 완료됨
      - ▶ 미매칭 상태 : 매칭 미등록 상태
  - ③ 특정 아동입금월에 대한 매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 디딤씨앗통장 업무 → 보고서 조회 → 월별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매칭결과 조회
- ※ 일반적 매칭 프로세스  
 매월 초 전월 매칭 예정명세서를 기준으로 매칭자금을 당행 관리계좌로 입금 → 입금지시서 등록 → 매칭여부 '미매칭' → '매입요청 중'으로 변환 → 3영업 후 '매칭 완료' 전환으로 금월 매칭 완료됨

붙임

##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지원 안내

### 1. 가입 및 지원대상

- (가입대상) 만 12세~만 17세의 생계, 의료 급여 수급가구 아동
  - \* 대상 아동 명단은 시·군·구 사업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추출 가능
  - \*\* '희망키움통장'과 중복지원 가능('13.1.1.~), 서울시 꿈나래통장, 희망플러스 등과 중복지원 금지
- (지원대상) 2022년 이전 통장 가입 기존 아동, 2023년 신규 통장 가입 아동

### 2. 사업절차

#### 가. 가입 신청 안내

- 시·군·구 담당자는 분기별(1월, 4월, 7월, 9월)로 가입 대상 아동을 파악하여, 대상자 주소지로 「가입 신청 안내문」을 발송
  - 아동 명단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해당 조건의 아동을 추출

#### 나. 가입 희망자 신청·접수

- 가입희망 아동 또는 보호자(후견인)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서식 1호>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 계획서 <서식 12호>를 작성·제출
- 읍·면·동은 신규신청자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로 송부

#### 다. 신청자 심사 및 가입자 확정

- 시·군·구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고, 시·군·구별 예산 배정 범위 내에서 가입대상자를 확정
  - \* <서식 13호> 예시 참조하여 시·군·구 실정에 맞게 작성
  - 시·군·구는 가입대상 확정명단을 즉시 시·도, 읍·면·동,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아동의 부모에게 통보
  - 시·도는 시·군·구 통보를 근거로 지역내 최종 지원대상자 내역을 확정하며, 시·도의 판단으로 시·군·구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 가능

- 시·군·구 통보를 받은 읍·면·동은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부모에게 통보하여, 최대한 통장가입을 완료하도록 독려
- 통장가입시 보호자에게 사업의 취지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가입 후 지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 라. 신규 계좌개설 및 통장 배부

- 보호대상아동 지원절차와 동일하나, 인터넷뱅킹 신규계좌 등록에서 아동 ‘보호구분’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선택
- 발급된 ‘디딤씨앗통장’은 읍·면·동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 안내

#### 마. 기 타

- (전출입 처리) 보호대상아동 대상 업무절차와 동일하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행복e음에서 전출입자 명단 추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
- (소득 확인조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소득조사는 통장가입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만 실시되고, 통장가입 이후는 실시하지 않음

# Ⅲ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1. 사업 개요	89
2. 사업 대상 선정	92
3. 돌봄 종사자 교육	94
4.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96



## 1. 사업 개요

### 가. 목적

-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
-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나.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다. 사업 대상자

- 경계선지능아동
  -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이하 “사업대상 시설”) 및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종사자 또는 위탁부모(이하 “돌봄 종사자”)

### 라. 사업내용

- 선정아동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보수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마. 사업대상 선정·지원 절차**

- 1차 선별검사 2차 선별검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 아동·시설 선정·실행
- ※ 1차 선별검사는 생략 가능

**바.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주체		주요 역할	
보건 복지부	아동권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관련 제도개선 총괄</li> <li>-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지침 마련</li> <li>- 시·도 예산 지원</li> <li>- 아동권리보장원 관리·감독 등</li> </ul>	
	아동권리 보장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시설 및 대상아동 심사 및 선발</li> <li>- 사업대상시설 컨설팅(사례회의) 지원</li> <li>- 경계선지능아동 돌봄 종사자 대상 전문가 양성 및 보수·심화 교육, 돌봄 종사자 교육</li> <li>-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보급</li> <li>- 사업 홍보 및 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li> <li>-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등</li> </ul>
		보고	- 보건복지부에 사업실적 관리 및 평가 등 보고(시·도 공유)
시·도	사업담당 부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확보 및 교부</li> <li>- 사업실적 관리 등</li> </ul>
		보고	- 보건복지부에 사업 결과보고(집행내역 등)
	시·군·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별검사비용, 사업비 교부</li> <li>- 사업집행 관리 등</li> </ul>
		보고	- 시·도에 사업 결과보고(집행내역 등) 보고
사업대상 시설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아동 대상 1차 선별검사 실시 후,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 대상으로 2차 선별검사 진행</li> <li>- 돌봄 종사자의 전문 인력 양성교육 필수 이수</li> <li>-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운영</li> <li>- 아동권리보장원 컨설팅 및 사례회의 필수 참여</li> <li>- 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현황 DB입력 등</li> </ul>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권리보장원에 사례관리서비스 실적 제출</li> <li>- 시·군·구에 사업 결과보고(집행내역 등) 보고</li> </ul>	

※ 지역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컨설팅 및 사례회의, 사업 실적관리 등 추진 가능



사. 업무 흐름도

구 분	주요내용
①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신청	- 시기 : 연 4회(분기별 1회) - (아동복지시설) 초기상담, 1차 선별검사를 통해 사업대상 신규 아동 발굴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사업 신청
② 종합심리검사 대상 아동 선정 및 실시	- 시기 : 연 4회(분기별 1회) - (아동권리보장원) 2차 선별검사 대상아동 선정 및 사도로 송부 - (시·도) 시·군·구에 2차 선별검사 비용 교부 - (시·군·구) 아동복지시설에 2차 선별검사 비용 교부 - (아동복지시설) 2차 선별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는 다음 분기 사업대상 아동 모집 시 활용, 비용 증빙 자료는 사군구에 제출
③ 사업대상 시설·아동 최종 선정	- 시기 : 연 4회(분기별 1회)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대상 신규아동·시설 최종 선정, 사도에 결과 제출 - (시·도) 사군구에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사군구) 해당 시설에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④ 돌봄 종사자 양성·보수 교육	- 시기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연 3회(4월, 6월, 8월) (보수심화 교육) 연 3회(5월, 7월, 9월) - (아동권리보장원) 돌봄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보수과정 운영 - (사업대상 시설) 교육과정 필수 참여
⑤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시기 : 연중 상시 - (사업대상 시설) 아동 욕구 고려한 서비스 계획 수립,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자문 결과 서비스 계획 반영 등
⑥ 컨설팅 및 사례회의	- 시기 : 3월 ~ 11월 - (사업대상 시설) 컨설팅 및 사례회의 필수 참여 - (아동권리보장원) 서비스 계획 및 아동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제공을 위해 컨설팅 및 사례회의 운영
⑦ 실적보고 및 평가	- 시기 : (분기별) 실적보고, (하반기) 사업평가 - (사업대상 시설) • 사전·중간·사후검사 결과 등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분기별 실적보고(아동권리보장원) • 예산 집행내역 분기별 보고(시·군·구) • 사업 점검 시 아동권리보장원에 협조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대상 시설에 대한 서비스 내용 점검, 모니터링 실시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 2. 사업 대상 선정

### 가. 사업 대상아동 선정 및 비용 교부

#### (1) 1차 선별검사 및 2차 선별검사(종합심리검사) 지원 신청

- 1차 선별검사
  - 아동복지시설은 경계선지능 의심아동을 보호 중인 경우, 돌봄 종사자가 경계선지능 의심아동에 대한 1차 선별검사서를 작성 <서식4호>
- 2차 선별검사 비용 지원 신청
  - 아동복지시설은 초기 상담 및 1차 선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 2차 선별검사비용 지원 신청
- 신청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3호>
  - 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식4호>

#### (2) 심사·선정

- 아동권리보장원은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2차 선별검사를 진행할 아동을 심사·선정하여 시·도 및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통보
  - 아동의 상태, 연령, 돌봄 종사자의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 2차 선별검사 비용 교부

- 시·도는 선정 결과를 토대로 2차 선별검사 비용(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을 시·군·구에 교부
- 시·군·구는 선정 결과를 토대로 2차 선별검사 비용을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교부
  - 비용(보조금) 교부·신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
- 2차 선별검사 비용 교부는 선정된 때로부터 2주 이내 선정기관에 교부

#### (4) 2차 선별검사 실시

- 아동복지시설은 2차 선별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 대해 검사를 실시
  - 2차 선별검사 비용에 대한 정산 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보고

### 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 시설·아동 선정

#### (1)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 시설·아동 신청

- 서비스 지원 신청
  - 경계선지능아동 진단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돌봄 종사자가 서비스 지원 신청
-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서식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3호>
  - 종합심리검사결과서

#### (2)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 시설·아동 최종 선정

- 아동권리보장원은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진행할 아동을 심사·선정하여 시·도 및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통보
  - 아동의 상태, 연령, 돌봄 종사자의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 사례관리비 교부

- 시·도는 시·군·구에 최종 사업 대상자 통보 및 사례관리비를 교부(대상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 시·군·구는 통보받은 최종 사업 대상자를 고려하여 사례관리비(사례관리 1회당 3.5만원, 최대 50회기)를 신청·교부
  - 비용(보조금) 교부·신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
  - ※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단을 회신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정 조치

### 3. 돌봄 종사자 교육

#### 가.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 (1)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과정

- 교육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담당자 중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을 받지 않은 자
  - 기존 외부 기관의 관련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교육시간
  - 사업담당자 교육과정 : 집합교육 24시간 \* 필수 이수
  - 자격증 취득과정 : 총 40시간(집합교육 24시간, 실습교육 10시간, 사이버교육 6시간)
- 교육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 교육내용
  -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의 이해, 경계선지능아동 선별 및 평가, 경계선지능아동 상담 및 사례관리의 실제, 사례 슈퍼비전 경계선지능아동 프로그램 개발

##### (2)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심화·보수과정

- 교육대상
  - 심화교육 : 사업담당자 교육과정 이수자
  - 보수교육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민간자격 취득자
- 교육시간 : 심화교육 3시간, 보수교육 6시간 이수(자격증 취득 후 3년 이내)
- 교육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 교육내용
  -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의 이해, 경계선지능아동 선별 및 평가, 경계선지능아동 상담 및 사례관리의 실제, 사례 슈퍼비전 경계선지능아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취업·진로 등 관련 서비스 이해 및 활용 방안

### 나. 그 외 종사자 교육

- 교육대상 : 사업 대상인 돌봄 종사자를 제외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 센터 종사자(위탁가정 부모 포함)
- 교육시간 : 연중, 일 4시간
- 운영방법 :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를 통한 양육자 교육 지원, 경계선지능아동 양육자 가이드북 배포, 영상자료 배포 등  
\*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되어 있음
- 교육내용
  - 경계선지능아동의 특성, 원인 등을 통해 이해력을 제고하고, 적절한 지도방법을 익히는 직무능력 기초 수준

### 다. 행정사항

- 아동권리보장원 : 사업대상 시설 및 사업담당자 교육과정 이수자 명단을 교육 수료 후 2주 이내 해당 시·도에 제출
- 교육시기 및 절차

구 분	양성과정	심화·보수과정	그 외 종사자 교육
운영시기	4월, 6월, 8월	5월, 7월, 9월	연중
교육대상자 최종명단 확인	- (아동권리보장원) 선정된 사업담당자 대상 교육운영 및 교육수료자 명단 시·도 공유 - (시·도/시·군·구) 교육수료자 명단 관리 - (사업대상 시설) 사업신청 시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주담당자 및 보조담당자 지정 후 명단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교육 안내 공문 발송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대상 시설에 교육 참여 안내 공문 발송		
비고	- 자격증 취득과정 40시간 이수자 대상 민간자격 검정시험 응시자격 부여	- (심화과정) 기존 사업담당자 필수 이수 - (보수과정) 자격증 취득 이후 3년 이내 필수 이수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 4.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가. 개요

- 기간 : 1년 ※ 연속지원 가능
-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
- 서비스 제공 주체 : 돌봄 종사자\*(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자)
  - \*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상담원,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간호사, 자립지원 전담요원 등
- 서비스 제공 회기 : 최대 50회기
  - 시설 내 자체서비스 외 전문기관 등 외부서비스 연계 가능
- 주요 서비스 내용
  - 종합심리검사보고서 및 상담 등을 통해 아동의 욕구를 고려하여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주요 프로그램 영역
    - (공통 프로그램) 인지학습·사회성·정서·자립·사회인지 영역
      - ※ (자립 프로그램) 성교육, 경제교육, 자립여행 등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
      - ※ 경계선지능아동의 개별 수준을 고려하여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활용 가능
    - (특화 프로그램) 학업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 주체별 역할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대상 시설에 양성·심화교육, 컨설팅 및 사례 슈퍼비전 등을 실시
  - (시설) 사례관리서비스 운영
    - (사무국장) 예산편성 및 내부 슈퍼비전 제공, 아동권리보장원 연계 협력 구축
    - (돌봄종사자(주담당사자)) 교육 및 사례 슈퍼비전 참석,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행/관리 등
      -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활동일지 작성은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업무포털 (<https://jarip.ncrc.or.kr>) 이용
    - (양육자 등) 사업 보조 등
    - (사무원) 사업 및 회계관련 행정처리 등

● 추진내용

구 분	주요내용
① 사례관리비 지급	- (시·도/시·군·구) 사업대상 시설에게 회기별 아동 1인당 3.5만원 사례관리비 지급 - (사업대상 시설) 사례관리비 사용범위 내에서 계획 및 집행
② 서비스 계획 수립	- (사업대상 시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및 자문을 토대로 서비스 종합 계획 수립
③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운영	- 운영 횟수 : 최대 50회기 - (사업대상 시설) 서비스 계획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 (아동권리보장원) 컨설팅 및 사례회의 개최 등 추진
④ 서비스 점검 및 결과보고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실적 수합 및 평가단 구성을 통한 아동의 역량, 변화 정도, 시설별 참여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등 프로그램 운영 점검 - (사업대상 시설) 분기별 실적보고 및 학습, 행동, 사회성, 자립기술 등 사전·중간·사후평가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제출

나. 사례관리비 신청 및 지급

● 신청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선정된 아동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회기에 해당하는 사례관리비를 시·군·구에 신청

● 지급방법

- 지급산식 : 아동 1인×1회기×35,000원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판단 하에 회기 조정 가능. 회당 금액은 지자체에서 교부한 사례관리비 범위 내 유동적 사용 가능

- 사례관리비는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교부신청 대상 정보를 등록
- 사업대상 시설은 보조금 교부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시·군·구는 보조금 신청 내역을 확인 후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용범위 :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 지출(현금 지출 시 별도 지출 증빙 필요)

- 공동 및 특화 프로그램 관련 교구구입비 및 활동비
- 외부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체험비용
- 강사수당
- 식비 및 다과비(1식 20,000원)

- 아동청소년문제행동평가척도(K-CBCL), 기초학습기능수행평가체계(BASA), 사회적기술  
평정체계(K-SSRS) 또는 자립기술평가, 자아존중감(SES) 등 사전·사후평가 비용
-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 ※ 사례관리비는 아동에게만 사용되어야 하며, 여행 등 프로그램 진행 시 교통비, 체험비, 식비 및 다과비  
의 경우 돌봄 종사자(주담당자, 보조담당자)와 공동 사용 가능

## 다. 비용증빙 및 반납

### ● 비용증빙

- 사업대상 기관은 신청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 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보고  
하고, 현금 사용의 경우 영수증 증빙 필요

### ● 반납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서비스 제공 중 경계선지능아동의 중간 종료 또는 사업비 잔여분  
발생 시 시·도(시·군·구)에 반납
- ※ 시·도(시·군·구)는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와 관련 없는 항목으로 사업비가 부당 집행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환수 또는 사업 철회 가능

## 라.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행

### (1)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계획을 수립(아동권리보장원 협조)
- 수립시기 : 사업 선정 후 2주 이내
- 서비스에 대한 아동·법정대리인 동의서 징구
  - 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 또는 연락두절 시 아동복지시설장으로 갈음하여 진행함
  -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계획을 설명하여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부적응 최소화
  - ※ 설명내용 및 일시 등 서비스 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
- 돌봄 종사자(주담당자, 보조담당자)는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서비스를 실행하여야 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사례회의 등)에 필수 참여



(2) 서비스 내용

- 공통 프로그램
- (운영기간) '23. 1. 1. ~ 12. 31. (12개월) ※ 계속 사업
- (서비스회기) 아동 1인당 최대 50회기
- (서비스제공) 사업담당자 교육과정 이수자인 돌봄종사자
- (주요내용) 아동의 종합심리검사보고서 및 상담 결과 기반 인지학습, 정서, 사회성, 자립 등의 영역을 토대로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행

영역	주요내용	
인지학습	종합심리검사 소검사 영역 중 부족한 영역에 대한 인지학습 매뉴얼 활용, 보드게임 등 놀이와 병합 가능 ※ (활용 매뉴얼) 아동용 워크북, 보드게임 활용 매뉴얼	
사회성	아동의 일상 및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기술 향상을 위한 개별 또는 모둠 활동으로 운영 ※ (활용 매뉴얼)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매뉴얼	
정서	경계선지능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우울, 불안, 분노, ADHD에 대한 개입을 위한 개별 또는 모둠 활동으로 운영 ※ (활용 매뉴얼) 지도사용 매뉴얼(지침), 아동용 워크북, 활용도구 매뉴얼	
자립	진로탐색	진로탐색 및 기술습득에 오랜 시간이 소모되는 점을 고려한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내·외부 활동 ※ (참고 매뉴얼) 진로탐색을 위한 준비 ※ 키자니아, 잡월드 등 연령을 고려한 진로 탐색 및 체험 활동
	성교육	성(性)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반복적인 개입을 위해 맞춤형 성교육 제공, 필요 시 지역사회 내 성문화센터 및 성교육 전문가 활용 ※ (참고 매뉴얼) 사춘기의 성과 사랑
	돈 관리	경제관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특성을 고려하여 실생활 적용이 필요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 필요 시 지역사회 경제전문가 및 외부 교육 프로그램 활용가능 ※ (참고 매뉴얼) 돈 관리 매뉴얼
	자립여행	자립여행은 경계선지능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성취감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여행 계획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경계선 지능아동지도사가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함 ※ (참고 매뉴얼)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매뉴얼
	사회인지	경계선지능아동 중 보호종료 예정자(만 15세~18세)의 전반적인 사회성을 향상 시키고, 자립 이후 일상, 학교, 직장 등에서 경험할 사회적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 ※ (활용 매뉴얼) 지도사용 매뉴얼(지침), 아동용 워크북
	기타	그 밖에 기관에서 회기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음

● 특화 프로그램

- (서비스명) 학업 및 취업 지원프로그램
- (운영기간) '23. 1. 1. ~ 12. 31. (12개월) ※ 계속 사업
- (서비스제공) 자원연계 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아동의 희망진로 및 욕구를 토대로 진로탐색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학업 및 취업 준비 장기 프로젝트

영역	주요내용
학업지원	학업에 열의를 가지고 있거나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학원비 및 교재비, 학습 멘토링, 진로 컨설팅 및 상담(교육), 대학탐방, 진학준비 등을 제공
취업지원	반복된 기술습득이 용이한 경계선지능아동의 취업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관련 원서대, 학원비, 관련 교구 및 교재 구입, 전문가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취업훈련과정(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등 지원

(3) 서비스 연장 및 종료

● 서비스 연장

- 사업대상 시설의 장 : 연도가 변경되어도 서비스는 자동 연장하여 연속적으로 실시. 다만, 연장요청 공문을 12월말까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송부
- 아동권리보장원 : 사업대상 시설 신청을 토대로 시·도로 연장아동 명단 송부
- 사업대상 시설의 장 : 서비스 지원 연장이 결정된 아동에 대해서는 기존 서비스 계획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서비스 계획 재수립하여 실시  
※ 시·도는 연장아동의 연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 우선 배정

● 서비스 종료

- 사업대상 시설의 장 : 서비스 지원의 정지 또는 종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에 공문발송
  - 아동의 입원 등으로 서비스를 정지해야 하거나, 가출·퇴소·사망 등으로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 아동 상황, 종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문으로 제출
- 아동권리보장원 : 서비스 종료여부 결정

#### 마. 실적보고 및 평가

- 사업대상 시설의 장
  - 서비스 제공결과 : 분기별 다음달 10일 이내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에 제출
  - 사업 결과보고(집행내역 등) : 분기별 다음달 10일 이내 시·군·구로 제출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실적 DB입력
- 시·군·구 : 분기별 다음달 20일 이내 시·도로 사업보고(집행내역 등 제출)
- 시·도 : 반기별 다음달 말일 이내 보건복지부로 사업보고(집행내역 등 제출)
- 아동권리보장원 : 서비스 제공 결과 점검 및 평가사항을 반기별 다음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 지역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컨설팅 및 사례회의, 사업 실적관리 등 추진 가능



# IV

## 자립수당

1. 사업 개요	105
2. 자립수당 신청	107
3. 지급 결정, 통지 및 지급	113
4. 사후관리	116
5. 자립 교육	120
6. 사례관리	121
7. 수급자 현황 관리 및 보고	122



## 1. 사업 개요

### 가. 목적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1.12.21. 공포, 6.22. 시행)

### 다.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참고 | 지급기간(보호종료 5년 이내) 적용 예시

- 1) '21.7월까지 자립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보호종료아동('18.8월 보호종료된 아동)은 '21.8월에 이어서 지급
- 2) '21.6월까지 자립수당을 지급받은 보호종료아동('18.7월 이전 보호종료된 아동)은 '21.7월 이후 이미 지급이 종료되었으므로 소급적용하지 않음

#### 참고 | 동일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 가능

- 예시) A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 7개월을 지내다 만기 종료한 경우  
 → A아동양육시설(6개월) + B공동생활가정(1년 7개월) = 2년 1개월 인정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 예시)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①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 대학교 조기 입학 등으로 인해 만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 라. 지급금액 및 방식

-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원칙

## 마. 재원

- 국비 및 지방비 매칭으로 국비의 경우 서울 50% / 지방 80%

## 바. 업무흐름도

단계	업무처리 내용
제1단계 신청서 작성·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기관 : 아동복지시설 관할 읍·면·동 및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li> <li>-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시설 : 보호종료 30일 이내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li> <li>• 가정위탁 : 보호종료 30일 이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li> </ul> </li> <li>-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li> </ul> </li> </ul>
제2단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기관 : 아동복지시설 관할 읍·면·동 및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li> <li>-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행복e음에 신청 입력 후 ‘통합상담관리’에 구비서류 및 특이사항 위주 작성</li> <li>- 행복e음에 신청 입력 후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로 이송 처리</li> </ul>
제3단계 접수· 보장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기관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li> <li>- 보장 결정(적합/부적합) : 지원대상 자격 검증 후 결정</li> </ul>
제4단계 통보·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기관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li> <li>-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최장 60일) 이내에 「행복e음」을 통해 신청자에게 사회 보장급여 결정 통지</li> </ul>
제5단계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기관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li> <li>- 신고기관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li> <li>- 사후관리 : 수급자 자격 변동 관리, 사례관리 시행</li> <li>- 자격변동 확인 :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확인 또는 본인신고</li> <li>- 변경내역통지 :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최장 60일) 이내에 통지</li> </ul>



## 2. 자립수당 신청

### 가. 지급대상

#### (1)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2) 신청 자격 요건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참고 | 지급기간(보호종료 5년 이내) 적용 예시

- 1) '21.7월까지 자립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보호종료아동('18.8월 보호종료된 아동)은 '21.8월에 이어서 지급
- 2) '21.6월까지 자립수당을 지급받은 보호종료아동('18.7월 이전 보호종료된 아동)은 '21.7월 이후 이미 지급이 종료되었으므로 소급적용하지 않음

#### 참고 | 동일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 가능

예시) A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 7개월을 지내다 만기 종료한 경우  
 → A아동양육시설(6개월) + B공동생활가정(1년 7개월) = 2년 1개월 인정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 예시)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①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 만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참고 | 신청(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 사망·실종 신고
- 국적상실 : 시민권 취득 등으로 국적이 상실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
  - 단, 국적회복·취득하여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된 아동은 자립수당 신청가능
-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 결정 철회

**나. 신청권자**

- 본인 : 보호종료 예정자 또는 보호종료자
-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3) 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구분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 신청	신청권자	본인 또는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접수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신청권자	본인		본인
	신청접수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신청 가능
우편·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라. 신청구비 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서식1호>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전국 20개 지사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연계하여 종합재무설계 전문상담·교육 후 확인서 발급 가능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사에서 상담 가능, 세부 연락처는 참고자료 1 참조)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금융교육 자립교육 이수증(또는 확인서)만 첨부

(2)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서식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서식7호>
  - ※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급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시 통장사본 추가 첨부 필요

**참고 | 대리신청 시 확인 사항**

- ① 보호종료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재직 증빙 서류, 가정위탁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 ※ 행복e음 등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청
- ② 보호종료자 해외체류 여부 확인 (출입국 자료 등 확인)

**유의 |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신청서, 사이버강의 이수증을 행복e음 시스템에 스캔 후 등록
- 신청서 작성 시 이사 등 주소지 변동 여부 확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안내
- 시설명 작성시 최종 보호종료된 아동복지시설 이름을 작성하도록 안내
- 수급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적금, 청약통장 등 제외)

**마. 신청서 작성·상담**

**(1) 신청 상담 및 등록 주체**

- 아동복지시설 관할 읍·면·동 및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서식1호>를 출력·제공하고, 신청인이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 후 사이버강의 이수증과 함께 제출
- 신청 서류 등록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3) 신청 상담**

## ● 신청자격 등 확인

- 지급요건 안내 및 신청인 인적사항 등 확인

## ● 신청 시 안내사항

- ① 처리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② 통지방법 : 서면 통지(우편)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SMS),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③ 신고의무 : 수급자격과 관련된 정보(▲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 거주지 변경, ▲ 지급계좌 변경, ▲ 외국 국적 취득, ▲ 수용시설 입소 등)가 변동 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적정하게 수급한 급여는 환수 처리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20조)
- ④ 정보제공 : 자립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 등 자립담당자에게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게 되며, 메시지(SMS),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해 자립지원 제도 안내 등 정보 제공 실시

**참고 | 신고 방법**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종
  - 관련 증빙서류
  - 대리 신고할 경우 위임장<서식6호> 및 대리인 신분증
    - ※ 사망에 따른 수급권 상실 신고 시 위임장은 불필요하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한 경우 수급권 상실 신고한 것으로 같음

**참고 | 다음의 경우, 보호자의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함**

- 본인 사망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에 의한 사망신고를 한 경우
- 국적 상실 : 「국적법」 제16조에 의한 국적 상실자의 처리
- 90일 이상 국외체류 : 출입국 시 국내 여권을 사용한 경우
  - ※ 복수 국적자가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국외체류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안내

- ⑤ 수당 환수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사망 시 지급 등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
- ⑥ 수급계좌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가능
  - ※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의 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은 차단되는 통장임
  - 압류방지전용통장은 해당 복지 급여 이외에는 수급자 본인도 입금할 수 없고, 카드 결제 후 취소 시 환급금 등의 입금도 제한될 수 있어, 카드 결제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안내

**참고 | 신청과 동시에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을 신청일로 인정하여 자격책정 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행복e음 상 출력 가능)를 발급하여 압류방지 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

- ⑦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수집된 정보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 ※ 지급 결정 후 수급권 상실 뿐 아니라 지급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정보 보유
- ⑧ 「자립정보ON」 설치, 아동자립 카카오톡 채널 가입 안내 및 확인

**바. 신청서 저장 및 이송처리**

- 신청서류를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 후 ‘신청’ 클릭 시 자동으로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사업 담당자)로 이송처리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사업 담당자)는 이송받은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및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된 관련서류 검증 후 보장 결정 진행

**유의 | 신청서류 이송 처리 관련 확인 사항**

- 신청서류를 접수받는 시·군·구와 보장 결정하는 시·군·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격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필히 확인하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
- ※ 행복e음에서 확인이 안되는 보호종료자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확인서<서식7>으로 자격 확인

### 3. 지급 결정, 통지 및 지급

#### 가. 지급 결정

##### (1) 결정주체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 (2) 지급결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최종 보장 여부를 결정(「행복e음」시스템에서 보장결정 처리)

#### 참고 | 자격 확인 절차

- 확인주체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 확인사항 : 행복e음 시스템으로 ① 시설입소 기간·자격, ② 본인 명의 계좌 여부, ③ 연락처 등
- 조치방법 :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서류를 신청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해당 신청인(보호종료자)에게 필요 서류 안내 및 징구 역할 수행

-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시·군·구와 보장 결정하는 시·군·구가 다른 경우, 접수 및 보장 결정 시 자격 검증 철저

#### 참고 | 신청과 접수·보장결정·급여지급 담당

- 신청
  - 사전신청(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정위탁)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일반신청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보장결정·급여지급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 나. 지급 통지

### (1) 통지방법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는 보장 결정 내용을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서식3호>로 신청인(보호종료자)에게 통지
  - ※ 신청인이 통지서 발송 전 신청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발송 불필요
  - 서면 통지(우편)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SMS),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통지 내용 : 결정 내용, 보장 구분, 급여·서비스 내용, 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안내 등

### (2) 통지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다. 지급

### (1) 지급 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 예시 : '23년 1월 1일 보호종료자가 '23년 3월 2일까지(보호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1월분 자립수당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나, '23년 3월 3일에 신청 시는 3월분 자립수당부터 지급 가능
-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 '18.8월 이후('18.8.1.~) 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18.8월 이전(~'18.7.31) 보호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음

### (2) 지급 방법

- 결정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에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개별입금



### (3) 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참고** | 자립수당 수급자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지급 기준

- 변경이 15일 이전인 경우 : 변경된 시·군·구에서 지급
- 변경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 전 시·군·구에서 지급
- 예시 : 자립수당 수급자의 주소지가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수영구로 변경 되었을 때, 변경일이 14일인 경우는 부산시 수영구에서 수당 지급

## 라. 환수

### (1) 환수 주체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2) 환수 대상

- 수급권이 상실된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 지급정지 기간 중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 (3) 환수 절차

- 환수 절차 :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 환수고지(공문으로 본인에게 우편 발송) → 국고 환수
  - 환수 대상 확인 시 조치사항
    - 환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 변동 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행복e음 시스템 상 수급권 상실·정지 처리 후 자립수당 환수 결정 처리
  - 환수 여부 결정 기한
    - 본인 신고 또는 시스템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신고 및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 지급
- ※ 사망으로 지급계좌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못한 급여가 있는 경우 국고 환수 조치

## 4. 사후관리

### 가. 사후관리 개요

#### (1) 관리책임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2) 관리대상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거주지,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등

#### (3) 관리방법

- 수급자의 신고, 확인조사, 공적자료 연계 등을 통하여 수급자격 변동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 공적자료를 우선 확인하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에게 소명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 실시
-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행복e음」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관련서류는 별도 보관

### 나. 신고 사항

#### (1) 지급 정지 사유

-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 적용시점 : 교정 시설 입소일
  - 지급정지 :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확인 및 조치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배우자 등)에게 증빙서류 징구(수용증명서)한 후 지급정지 처리 및 보호종료자에게 통지
    - ※ 필요시 담당자가 공문서로 입소 교정시설에 수용확인 요청 또는 관할 검찰청·법원에서 발행하는 '법원 판결문'을 발급 받아 '선고일 및 형의종류' 확인

● 행방불명, 실종·가출 등

- 적용시점 : 경찰관서 등에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 지급정지 : 경찰관서 등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찰관서 등 신고 해제일 또는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단,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생사여부 확인 시 지급정지 제외
- 확인 및 조치 : 법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반기별로 행방불명, 실종·가출 등을 확인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접수한 후 지급정지 처리 및 보호종료자 주소지로 통지  
\* 법원 : 실종·부재 청구 접수증, 실종·부재 선고 취소 신고증  
경찰서 : 신고 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지원센터 등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적용시점 : 행복e음 시스템 통보일
- 지급정지 : 국외체류기간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확인 및 조치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배우자 등)에게 증빙서류(여권, 비행기 티켓 등)를 제출 요청(필요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열람·발급 후 확인)한 후 지급정지 처리 및 보호종료자 주소지로 통지  
※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대체복무 중인 경우**(단,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만 인정)

●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 적용시점 : 주민등록 상 거주주소 등록으로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
- 지급정지 :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가 수당을 받던 중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된 달까지 지급 정지
- 확인 및 조치 : 행복e음 시스템의 변동 알림에서 미거주(거주불명등록) 알림 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정지 처리 및 보호종료자 주소지로 통지

## (2) 수급권 상실 사유

- 국적 상실, 국외 이주
  - 적용시점 : 행복e음 시스템 통보일 또는 직접 신고일
  - 지급기준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 지급
  - 확인 및 조치 : 행복e음 시스템의 변동알림의 가구원 변동의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를 확인한 후 수급권 상실결정 처리 및 보호종료자 주소지로 통지
- 난민 인정 취소, 난민 인정 결정 철회
  - 적용시점 : 난민 인정 취소일, 난민 인정 결정 철회일
  - 지급기준 : 난민 인정 취소·난민 인정 결정이 철회된 달까지 수당 지급
  - 확인 및 조치 : 법무부 ‘난민인정불처분’의 취소일 또는 철회일을 확인한 후 수급권 상실 결정 처리 및 보호종료자 주소지로 통지
- 사망
  - 적용시점 : 행복e음 시스템 통보일 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에 의한 사망신고일
  - 지급기준 :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 지급
  - 확인 및 조치 : 행복e음 시스템의 변동알림으로 ‘사망의심자’인 경우 실제 사망여부 확인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시스템 사망신고 여부 등 공적자료 확인)한 후 수급권 상실결정 처리 및 보호종료자 주소지로 통지

### **참고** | 사망으로 인한 상실 사유 발생한 경우

- 국적상실·국외이주, 난민 인정 취소·결정 철회와 달리, 사망으로 지급계좌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못한 급여가 있는 경우 국고 환수 조치

## (3) 기타

- 거주지 변경 : 행복e음 시스템의 변동알림으로 거주지 변동 인지
- 주민등록번호 정정 : 행복e음 시스템 변동알림의 기타변동(성명, 주민번호) 알림을 확인 후 만18세 이하인 경우 수급권 상실 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 지급계좌 변경 :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계좌 변경 신청 시 즉시 복지급여계좌 변경 조치 (본인 명의 이외 통장은 변경 불가)

## 다. 통지방법

- 통지방법 : 수급권 상실·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복e음으로 수급권 상실·정지 내용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통지서<서식3호>를 출력 후 우편발송(원칙)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통지내용 : 결정 내용, 보장 구분, 급여·서비스 내용, 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안내 등
  - 실종신고 취소, 국적 회복 등 수급권 상실 사유, 교정시설 종료 등 수급권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 참고 | 이의신청 안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

## 5. 자립 교육

### 가.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업무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 교육 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 교육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센터 자립업무 담당자
- 교육 시기 / 방법 : 연 1회 / 집합교육
- 교육 내용 : 자립정보북(아동권리보장원 등 배포) 등을 기반으로 경제·주거·진로 분야 자립교육 및 자립수당 활용 방안 등 사전 교육  
※ 해당 교육을 바탕으로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이 본인 소속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수당 지급 대상 아동에게 자체교육 실시

### 나. 보호종료 예정자 대상 ‘찾아가는 자립교육’

- 교육 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 교육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자
- 교육 시기 / 방법 : 연 1회 / 방문교육
- 교육 내용 : 찾아가는 자립교육(경제, 인성, 주거, 진로 등) 지원  
※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요청 시 수요조사를 통해 시·도 거점 시설 활용하여 ‘찾아가는 자립교육’ 지원

### 다. 보호종료자 대상 ‘사이버교육’

- 교육 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 교육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자
- 교육 시기 / 방법 : 수시 / 온라인 교육
- 교육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활용도 제고를 위해 경제·주거·진로 분야 등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통한 정보제공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edu.kinfa.or.kr>),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 6. 사례관리

### 가. 정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사후관리를 의미

### 나. 관리 주체

- 사례관리 업무수행 :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업무 담당자('22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이전)
  - \* 향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평가 실시
- 지도·감독 : 최종 보호종료 관할 시·군·구 자립 담당 공무원

### 다. 관리 시기

- 연 1회 이상

### 라. 사례관리 방법

- 가정방문 또는 유선 상담 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자립지원)에 상담내용, 조치사항 등을 입력

#### 참고 | 상담 주요 항목

- ① 취업: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국비지원 자격증 취득 과정 등)
- ② 주거: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정부지원 주택 등)
- ③ 경제: 경제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연계(자립정착금, 등록금, 후원금 등) 관리
- ④ 기타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애로사항 상담

-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사례관리를 한 것으로 같음
  - 자립지원전담요원,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 등 자립업무 담당자가 자립수준평가를 실시한 경우(연1회 필수)
- 최종 보호종료 관할 시·군·구 자립 담당 공무원은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 반기별 복지부 보고

## 7. 수급자 현황 관리 및 보고

### 가. 정의

- 수급자의 인적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행복e음」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 관리·보고

### 나. 수급자 현황 관리 및 보고

- 관리·보고 주체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보고 내용
  - 반기보고 : 예산집행 정산보고
  - 분기보고 : 자립수당 미지급 현황, 예산 조정 계획 등
  - 매월보고 : 신청대상자 대비 신청률, 급여지급 실적 등
    - ※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보고 같음
- 관리방법
  - 수급자 등의 현황 변동을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하며, 확인 불가능한 자료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 후 통합상담 관리에 증빙서류 명칭, 등록사유를 입력
- 보고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문 보고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 Q&A

1.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 124
2.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던 아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124
3.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 125
4. 자립수당 신청 후, 군 입대 중에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125
5.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125
6. 사이버강의 이수증은 어떻게 출력하나요? ..... 125
7. 청소년쉼터 등 타 시설에서 보호 받았던 경우 보호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127
8. 원가정 복귀 후 재입소한 경우 보호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127
9.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보호종료 후 현재 자립지원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에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128
10. 보호종료확인서 이외에 종료사실 증명서도 가능한가요? ..... 128
11.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자립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128
12. 만 18세 넘어 아동복지시설을 전원하는 경우에 자립수당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 128
13. 자립수당 신규 신청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지급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 129

## 1 |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기능을 가진 아동종합시설도 포함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던 아동
  
- 만 18세가 되는 연도에 보호종료된 경우,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인정합니다.
  - ※ 예시 : '20년 5월에 만 18세가 되는 아동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20년 2월에 보호종료된 경우(만 18세 생일 전 보호종료),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인정
  
- **고등학교, 대학교 학력 여부와 상관없이 나이 기준으로 판단**
  - ※ 예시 : 유급 등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자립수당 지급

## 2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던 아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과거 2년 이상’ 계산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월’ 기준으로 판단하여**, 만18세 이후 A년 B월에 보호종료된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A-2)년 (B+1)월 이전에 보호가 시작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과거 2년 기준	
A년 B월	(A-2)년 (B+1)월
2020년 12월	2019년 1월
2020년 11월	2018년 12월
⋮	⋮
2017년 6월	2015년 7월
2017년 5월	2015년 6월

### 3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4 자립수당 신청 후, 군 입대 중에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자립수당은 군 입대와 상관없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 5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지만,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대체복무 중인 경우에는 자립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공적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6 사이버강의 이수증은 어떻게 출력하나요?

- 사이버강의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edu.kinfa.or.kr>)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제도, 경제교육(돈의 흐름과 지출관리), 주거지원 및 부동산 거래, 국민취업제도 등 7차시(120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7차시 필수강의를 모두 수강 후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류로 이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 1. 강의 수강

- 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edu.kinfa.or.kr>) 회원가입
- ② 온라인교육 - 기관별 맞춤형 교육 아동자립교육 - (필수)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수강



2. 이수증 출력

① 내강의실 - 수강현황 - 수료증



7 청소년 쉼터 등 타 시설에서 보호 받았던 경우 보호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자립수당 대상자 선정 시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한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포함),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종합시설 포함) 및 가정위탁으로 한정합니다.

8 원가정 복귀 후 재입소한 경우 보호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정식으로 보호종료 처리를 하여 행복e음 시스템 등에서 보호종료 처리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호종료 처리 후 원가정에 복귀했다가 다시 시설에 재입소한 경우에는 재입소한 달 기준으로 2년 이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 단, 시설 전원 등으로 보호종료 처리 후 30일 이내 재입소(재보호) 시 연속 보호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9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보호종료 후 현재 자립지원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에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등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보호종료확인서 이외에 종료사실 증명서도 가능한가요?**

-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해주는 종료사실증명서도 가능합니다.  
※ '22년 상반기 중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기능개발 중으로 상세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아동보호서비스 데이터 활용, '20년 10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대상)

**11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자립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자립수당은 그 목적이 상이하므로,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에 양육 보조금을 받았어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만 18세 넘어 아동복지시설을 전원하는 경우에 자립수당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 자립수당은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이 대상이므로, 만 18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연장상태에서 시설을 전원하는 것이라면, 보호종료로 볼 수 없고 자립수당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가 실제로 종료되는 때에 자립수당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시설 전원 등으로 보호종료 처리 후 30일 이내 재입소(재보호) 시 연속 보호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13 자립수당 신규 신청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지급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 자립수당 수급자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지급 기준과 달리, 자립수당 신규 신청 후 지급 결정 전에 전출입이 일어난 경우에는 결정 당시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주소지에서 자립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립준비청년이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12월 13일에 신청을 하고, 12월 16일에 수영구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이후 해운대구에서 12월 17일에 결정을 하여도, 결정 시 자립준비청년의 주소지인 수영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소지 변경일	자립수당 지급 시·군·구	
	기존 수급자의 경우	신규 신청 후 결정 전 주소지 변경된 경우
15일 이전	변경 후 시·군·구	변경 후 시·군·구
16일 이후	변경 전 시·군·구	변경 후 시·군·구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1. 개요	133
2.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135
3.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139
4.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141
5.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144
6. 행정사항	146
[참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	149



## 1. 개요

### 가. 목적

-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보호체계 간 편차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및 자립지원 업무 체계화
-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 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 다. 설치지역

- 전국 17개 시·도

### 라. 주요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마.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

-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실시(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4호)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 시·도별 바람개비서포터즈 자조모임 모집 및 운영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업무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 기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바. 추진체계 및 역할

주체		주요 역할	
보건 복지부	아동권리과 (기획·지원 총괄)	- 자립지원 사업 총괄·기획 및 예산 지원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침 마련 - 사업운영 평가 등 성과관리 총괄	
	아동권리 보장원 (기획·지원)	업무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원 - 자립지원 전담인력 교육 및 기관 컨설팅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립지원 연구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자립지원 사업 통계 생성·관리 - 자립지원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원 연계 등
		보고	- 자립지원 사업 집행 내역 및 자립지원 전담인력 교육 실적 -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실적 - 총 사업 결과 보고 등
시·도	담당부서 (운영 총괄)	업무	- 자립지원 사업 운영 총괄, 지방비 확보·보조금 교부 등 예산 지원 - 자립지원전담기관 수행기관 선정·운영 지원 - 사업운영 평가 지원 등
		보고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관련 사항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계약 및 수행기관 관련 사항 -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실적 -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현황 반기별 익월 15일까지 보고(복지부) - 총 사업 결과 보고(집행사항 포함) 등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업무	-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관리 -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자립지원 사업 홍보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업무 지원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DB구축 및 통계 관리 등
		보고	- 사업 계획서,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및 증빙 내역(시·도) -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실적 보고(시·도, 아동권리보장원) - 긴급상황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상시 보고(사도, 아동권리보장원)

## 2.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 가.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 시·도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직접 수행),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계약 체결(위탁 운영)
- 위탁 근거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 비용보조
  - 보건복지부 및 시·도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예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나. 수행기관 선정

#### (1) 수행기관 정의

- 시·도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공모 혹은 지정하여 대상자 모집·선정, 자립지원 전담인력 선발·관리,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등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2) 선정 주체 및 대상

- 선정 주체 : 17개 시·도
- 선정 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3년 이상 아동복지 관련 분야에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아동복지 관련 분야 활동 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가 가능한 법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 (3) 선정 절차

- 시·도는 원칙적으로 공모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되, 조직·인력 규모 및 안정성, 사업수행 경험·능력, 예산운영 능력,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자립지원전담기관,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자립지원 업무 수행기관으로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예외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는 반드시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로 결정된 공공기관 또는 법인과 계약 체결

## 다.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교육

### (1)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배치

- 채용기준
  - 아동·청년에 대한 기본 이해를 기반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전문가 채용
  - 아래의 자격요건에 준하여 선발

#### **참고** |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격요건(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의3 별표7의4)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단, 아래의 조건을 갖춘 자를 우대할 수 있음

- ①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전담요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② 자립관련 업무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 ③ 정신건강전문요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④ 자립관련 자격증(직업상담사 등) 소지자로서 관련기관(청년센터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채용주체 및 절차

- 채용주체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채용절차 : 채용공고 → 1차심사 (서류심사) → 2차심사 (상담심사) → 최종합격
-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실무적용능력(사례관리, 상담 및 교육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전문인력을 우선 채용

●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 확인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에 따라 결격사유를 확인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각각 조회 및 점검·확인
  - ※ 채용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건강진단서를 제출받고, 조회결과 및 확인을 통해 최종 합격여부 결정

● 배치

-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전담기관에 배치되며, 사후관리 등 자립지원 업무를 전담
- 자립지원 전담인력 2인 이상 배치 시 가급적 성별을 고려하여 배치
- 자립지원 전담인력 내 수퍼바이저(팀장)를 배치하여 조직 구성 가능

(2) 자립지원 전담인력 주요 역할

-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수준평가 등 사후관리, 사후관리 데이터 입력·관리 등
-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중 초기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사례관리 제공, 민간자원 발굴·연계 등
- 자립지원전담요원 지원 업무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 사후관리계획(보호종료 직전) 수립 지원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기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업무 : 지역 내 자립지원 자원 발굴·연계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비품 및 회계관리 등 자립지원 관련 행정업무

### (3) 자립지원 전담인력 교육

- 교육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및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교육구성 : 필수교육(아동권리보장원), 선택교육(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교육대상 :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
- 교육과정 : 자립지원 사업의 이해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목으로 구성
  - (과목 예시) 자립지원 사업의 이해, 사후관리 현장 실무 공유, 통합사례관리의 이해, 아동 인권, 성인지 감수성, 진로 및 취업지도 관련 교육, 소진예방 교육 등
- 교육일정
  - (필수교육)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 채용 일정에 따라 연 4회 이상 운영
    - ※ 필수교육 일정별 참여 인원 별도 수요조사 실시 예정(아동권리보장원)
  - (선택 교육)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전담인력의 욕구에 따라 자체 교육 실시
  - (이수 조건) 연간 필수교육 1회 수강 후 수료여부 제출
- 행정사항
  - (보건복지부) 교육사업 계획 수립 (공문 발송)
  - (시·도) 전담인력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 조치
  - (아동권리보장원) 교육 운영 및 결과 보고, 자립지원전담기관별 교육 실적 취합 및 관리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교육 이수 지원, 자체 교육 운영 및 교육 실적 결과 보고



### 3.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 (1)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모든 자립준비청년

#### (2)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보호종료 후 자립수준평가를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연 1~2회 실시 (서식1)
  - ※ 자립수준평가 : 취업·진학 여부, 월평균 소득, 기초생활수급 여부, 건강상태, 주거현황, 부모연락 여부 등 자립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립수준평가를 통해 맞춤형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초기상담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례회의를 거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 (3) 수행주체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
  - 대상자 관할 지역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도가 원칙이나, 대상자의 실거주지역을 고려하여 타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관할 변경(이관) 가능
  - 대상자 거주지 이전 시 신규 주소지의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관할 변경(이관) 가능

#### (4) 수행시기

- 보호종료 1년차 사후관리는 보호종료 후 3개월 이내 최초 실시 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되, 이후 연 1~2회 정기 사후관리 실시
  - ※ (보호종료 전) 사후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2) → (보호종료 후) 연 1~2회 자립수준평가 실시 → (보호종료 5년 경과) 사후관리 종료보고서 (서식3)

#### (5) 수행방식

- 사후관리 방식은 방문상담(대상자 주거지를 방문), 내방상담(대상자가 전담기관 방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비대면 상담(유선상담, 전자기기를 활용한 영상상담) 등의 방법 활용 가능

**참고 | 보호종료 예정 대상자에 대한 보호종료 절차 및 사후관리 연계 방안**

● **수행 절차**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종료 예정 아동 명단 전담기관에 공유 및 사후관리 회의 일정조율 및 참석요청 →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전담기관) 사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사후관리 동의서 확보 →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에 보호종결 심의 요청 및 사후관리 계획서·동의서 제출 → (시군구) 보호종료 대상자의 전담기관 지원 연계 여부 확인 후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종결 결정 → (전담기관)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개시

● **사후관리 계획 회의**

- (주체)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 전담인력,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호종료 1개월 전까지 사후관리 계획 회의를 해당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의뢰 및 회의일정 조율  
 ※ 특히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보호종료 예정자 명단 확보 및 전담기관 연계 철저 필요

- (시기) **보호종료 1개월 전**

- (내용) 대상자별 사후관리 계획 회의 실시 및 사후관리 계획서 작성  
 ※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주거지 확보 상태, 전반적인 자립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중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관리 주기를 단축하거나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작성
- (방법) 보호종료 전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자립지원 전담요원, 대상자 참여 면담 및 사후관리 계획 회의 실시

● **(사후관리 동의서)**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사후관리 동의서(서식4) 확보 시 대상자별 사후관리 담당자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안내

● **(보호종료)**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사후관리 계획서에 따라 대상자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 전담요원은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동안 전담기관과 지속적 협력체계 유지 (특히 보호종료 후 1년간 집중 협력)

**(6) 기타사항**

- 사후관리 담당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연락두절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대상자의 보호를 담당했던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협조 요청 가능
- 사후관리 제공 기간 인적사항(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변경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해당 사항 지속적 안내
- 보호종료 후 5년 도래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 종료 시 사후관리 종료보고서 작성

## 4.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가.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초기상담을 거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수시 선정)
  - ※ 시·도별 배분 인원에서 추가 선정 가능(사업비 예산 내)
  - ※ 시·도별 배분 인원 10% 내에서 보호연장아동 선정·지원 가능

### 나. 지원절차

- 사후관리·의뢰·발굴 등을 통해 맞춤형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기상담 실시
- 초기상담을 통한 지원 대상자 선정
  - 사후관리·의뢰·발굴 → 초기상담 실시 → 초기상담 및 내부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시·도 보고(분기별 1회 대상자 명단 시·도 보고)
- 정기적 자립상담을 통한 대상자별 욕구 사정,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목표 달성 점검
-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 종결 및 사후관리

### 다. 수행주체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
  - 대상자 관할 지역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도가 원칙이나, 대상자의 실거주지역을 고려하여 타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관할 변경(이관) 가능
  - 대상자 거주지 이전 시 신규 주소지의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관할 변경(이관) 가능

### 라. 지원기간

- 기본 1년(연장 가능), 사례관리 목표달성 시 중간 종결 가능
  - ※ 중간 종결 시 취업, 주거지 확보, 자립역량 향상 등 대상자별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결정
- 1인당 보호종료 5년 이내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

## 마. 대상자 선정 기준

- 사후관리·의뢰·발굴 등을 통한 초기상담 및 내부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자립지원
- 경제적 상황, 주거 현황,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취업·진학 여부, 자립 여건,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주거지가 불안정하거나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우선 선정
- 초기상담 과정에서 복합적, 만성적 문제 등 위기사례 발견 시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읍·면·동(맞춤형 복지)등으로 의뢰 및 연계

### 참고 | 기존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지원 관련

- (지원여부) '21년 말 기존 대상자 개별 주거·사례관리 지원 계획에 따라 대상자별 지원 기간 종료 시까지 계속 지원
- (지원기준) 기존 대상자 지원기준은 '21년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 단, '21.10.8.~'21.12.31. 신규 선발자는 '22년부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침의 적용을 받음

## 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주요 지원내용

구분	내용
자립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대상자 선정 후 1주일 이내 자립상담 개시</li> <li>- 대상자별 최소 월 1회 상담 진행하되, 대상자 의사 고려해 상담주기 조정</li> <li>- 대상자 욕구, 자립역량, 환경 등 파악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점검</li> <li>- 방문상담, 내방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 의사·여건 등을 고려해 비대면 상담 대체 가능</li> <li>- 대상자 선정 시 연락체계 유지 등을 위해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 작성</li> </ul>
통합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상담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의 자립에 도움이 될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복지 급여·서비스 연계 실시</li> <li>-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심리정서 등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매 지원                      ※ 사례관리비는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지원</li> </ul>
긴급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관리비로 비용 충당이 어려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긴급 의료비 지원 및 공적자원 등 연계 추진</li> <li>- 질병·부상의 심각성, 의료비 지출 정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긴급 의료비 지원</li> </ul>

구분	내용
자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제도 연계)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제도, 청년 주택·일자리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복지 및 저소득층 생활용자금 등</li> <li>- (민간 자원연계) 외부 장학금·후원금, 민간 모금기관·학교·기업 실시 사업 및 후원, 자원봉사 연계 등</li> <li>- (의료자원 연계)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본인부담액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보건소 보건사업 등</li> </ul> <p>※ 공공, 민간 자립지원 서비스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 공유 체계 구축</p>

### 사. 서비스 종결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해지 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을 종료할 수 있으며, 지원 종료가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전 안내

종결 사유		
1	장기목표달성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된 경우
2	단기목표달성	
3	계약기간 만료	지원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보호종료 후 5년이 도래한 경우
4	상황 호전	위기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례관리 전후 위기도 점수가 낮아졌거나, 취업 성공 등 자립 상황이 호전되어 더이상 사례관리 서비스가 불필요한 경우
5	거절이나 포기	서비스에 대한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또는 대상자 본인 의사로 서비스 제공에 대해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6	연락두절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사례관리자를 회피하여 3개월 이상 연락을 끊는 경우
7	이사	대상자가 이사하여 타 지역 전담기관으로 사례관리를 이관해야 하는 경우
8	사망	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해 더이상 사례관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9	자체 종결	사례관리사에 대한 위협 또는 폭력행위를 한 경우
10	부정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은 것이 발견된 경우</li> <li>- 대상자가 의도 및 목적과 다르게 사례관리비를 집행한 경우</li> <li>- 주거급여 등 국가지원수당과의 중복지원으로 인한 환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등</li> </ul>

## 5.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 수행주체

-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기본방향

- 전국 단위 모집·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바람개비서포터즈 확대 운영
- (자립멘토단 역할) 보호아동 대상 방문교육, 멘토링 활동의 전국 운영을 통한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역량 향상 도모
- (자조집단 역할) 권역별 사업 운영(자조모임)을 통한 자립준비청년 간 정서적 지지체계 기능 강화

● 주요역할

주체	주요 역할(안)
보건복지부	- 사업 총괄·기획 및 예산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바람개비서포터즈 위촉
아동권리보장원	- 사업 운영 지침 수립·안내 및 예산 배부 - 바람개비서포터즈 양성교육 운영(방문교육, 멘토링 등) - 정책지원 활동 및 자치활동 지원
시·도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원 - 시·도 바람개비서포터즈 모집 홍보 등
자립지원전담기관	- 시·도 바람개비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필수) 방문교육, 멘토링, 자조모임 (선택) 봉사활동, 역량강화교육

● 선발 및 위촉

- (선발) 자립준비청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신규 서포터즈 모집 인원 배정 및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기관별 참여자 모집
- (신청자격) 만 29세 이하 연장보호 중인 청년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제출서류) 신청서(서식5), 보호종료(연장보호)확인서(서식6), 개인정보동의서(서식7)

● 권역별 운영

-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권역별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자조모임)
- 6개 권역: 수도권, 경북권, 경남권, 충청권, 호남권, 제주
  - ※ 권역별 운영기관은 시도별 대상자 규모, 접근성, 전문성(경험·역량 등) 등 고려하여 결정

● 활동내용

- 자조모임 :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간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심리·정서 지지체계 형성
  - ※ 17개 시·도 전담기관별 전담기관별 자조모임 운영(상시) 및 권역별 자조모임 통합 운영
- 방문교육 : 자립선배의 사례(자립경험)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자립관련 정보 제공
  -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대상 방문교육 신청접수 및 기관당 교육 인원 배치
- 멘토링 : 소규모 멘토링 활동을 통한 유대감 형성 및 심리·정서적 지원, 자립관련 정보제공 등
  -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대상 멘토링 신청접수 및 기관당 멘토링 인원 배치
- 봉사활동 : 자립준비청년 주도 봉사활동 내용 기획 및 추진
- 역량강화교육 : 자립준비청년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 ※ 교육내용 예시: 스피치 컨설팅, 긍정 커뮤니케이션 방법, 재테크 등

## 6. 행정사항

### 가. 예산 지원

-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인건비)
  - 인건비는 기본급,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법정부담금 등으로 편성
  - 시간외 근무수당 등 제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 법령 준수
    - ※ 시·도별 전담인력 지원 인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시·도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자체 부담 가능
- 자립지원 사업비
  - (사례관리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지원
    - ※ 단, 사례관리비 10%에 한하여 대면상담비 용도로 집행 가능  
(기본사후관리,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담당자 1인 2만원)
    - ※ 통합사례관리비 지원 및 긴급 의료비 지원 용도로 집행 가능
  - (사업운영비) PC·책상 포함 사무용품 구비, 출장비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 및 자립지원 업무 수행 관련 비용
    - ※ 출장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함

### 나. 예산 집행

- 예산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 다. 자산 관리

-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PC·책상 등의 집기 구비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관리

### 라. 실적 보고

#### (1) 자립지원전담기관

- 매년 사업계획(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계획 및 소요예산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검토 후 필요 시 보완 요구
- 분기별(3, 6, 9, 12월) **익월 10일 이내** 예산집행 관련 사항을 시·도에 제출
  - 사례관리비 지출 증빙 시, 지출 내역이 포함된 정산내역서(서식9) 제출



- 분기별(3, 6, 9, 12월) **익월 10일 이내**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실적을 시·도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 시·도 및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수시 자료 요구·점검 등 가능

## (2) 시·도

- 분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예산집행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금 사용 내역 관리 철저

## (3) 아동권리보장원

- 분기별(연 4회)로 익월 말일까지 사업 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해당 시·도에 공유
  - 대상자별 사후관리, 초기상담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실적, 민간자원 발굴·연계 실적, 시·도 간 협조 내용, 사업성과 우수사례 등 보고

## 마. 사업 평가

### (1) 목적

- 사업평가를 통한 전담기관 서비스 질 강화 및 사업 효과성 검증, 대상자 만족도 제고
-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실적보고 내용 등을 토대로 3년마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 ※ '22년은 시범평가 형태로 진행(하반기) → 모범사례 발굴·확산, 컨설팅 위주 평가 실시
-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2) 평가시기

-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단 구성 후 3년마다 평가 실시
  - ※ 자립지원전담기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중으로, 평가지표 및 평가계획 추후 안내

### (3) 평가방법

- 평가절차 : (전담기관) 사업실적 등 평가서류 준비 → (아동권리보장원) 현장평가 후 보건복지부 보고 및 시·도 공유 → (시·도) 개선 권고 및 전담기관 선정 시 활용

- 평가위원 : 학계·현장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지표에 의한 종합평가(현장·서류) 진행
- 평가지표 : 재정 및 조직운영, 성과관리, 지역사회 연계, 통합사례관리 과정 및 성과 분석 등

#### (4) 평가관리

- 평가결과 관리 : 점수 산출 및 결과분석 → 최종 평가결과 통보 → 사업관리
  - (보장원·평가단) 평가지표 점수 산출 및 결과분석
  - (복지부) 최종 평가결과 통보 시·도로 통보
  - (시·도) 평가결과 전담기관으로 통보 및 사업관리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우수 기관·직원에 대해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미흡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 컨설팅 및 재교육 실시
-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는 시·도에 통보, 향후 사업 전담기관 재선정 또는 자립지원 전담 인력 채용·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조치

## 참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

##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23.1월 기준)

시·도	수행기관	주소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울아동복지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수서동)	02-2226-1524
부산광역시	부산아동복지협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제로 27번길 34	051-441-7006
대구광역시	대구YWCA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1길 22, 3층	053-243-0090
인천광역시	한국아동복지협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601호	032-204-4279
광주광역시	광주아동복지협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62-2, 1층	062-672-1930
대전광역시	대전아동복지협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2호	042-242-5727
울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 봉석재단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41, 208호	052-265-5636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법인 영명보육원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성로 239	044-867-205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에벤에셀	(남부사무소*) 경기도 의왕시 왕곡로 22, 광원빌딩 5층 * ('23.2월 이전예정)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21 태보빌딩 4층 (북부사무소)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42번길 31-13, 4층	1566-2714
강원도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25	033-261-2340
충청북도	한국아동복지협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407호	043-238-5393
충청남도	충남아동복지협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17호	041-541-6553
전라북도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53, 202호	063-714-3329
전라남도	전남아동복지협회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길 21, 5층	061-742-4908
경상북도	경북아동복지협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7, 상가동 306호	054-456-9942
경상남도	굿네이버스 경남중부지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45, 현대썬앤빌 C동 209호	055-265-7942
제주도	사회복지법인 삼인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5	064-759-0846



# VI

##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I. 사업현황 및 방향	153
II. 아동학대 예방	160
III.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182
IV.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및 위원회 설치·운영	187
V.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206
VI.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사용	220
VII. 보조금 집행 및 보고 등 공통사항	222



## I 사업현황 및 방향

### 1. 사업목표

-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 2. 아동학대 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 연혁

- 아동학대사업 관련 법적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제3조, 제22조, 제45조 및 제46조)
  - 아동학대 개념의 명확화 :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6151호, '00.1.12 전부개정) 제2조제4호에 아동학대의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 신설 →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11002호, '11.8.4 전부개정)에 따라 제3조제7호로 이동
    -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 긴급전화 설치근거 마련 :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6151호, '00.1.12 전부개정) 제23조에 긴급전화 설치를 의무화 하는 근거규정 마련 →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11002호, '11.8.4 전부개정)에 따라 제22조로 이동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마련 :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6151호, '00.1.12 전부개정) 제2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의무를 가지는 근거규정 마련 →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11002호, '11.8.4 전부개정)에 따라 제45조로 이동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구분 및 업무범위 정립('08.6.13 규정되었으나 '19.1.15. 일부개정을 통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규정 삭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아동복지법 제26조·제75조,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63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 규정 :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6151호, '00.1.12 전부개정) 제26조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 신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에 따라 제10조에 규정

-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00년 9개 직군에서 '16년 24개 직군으로 확대(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 신고의무자 신고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및 부과금액 상향(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고지할 수 있고,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2015, 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2015, 아동복지법 제75조)
-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근거 마련(2016,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 제10조의3)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전 직군(24개 직군)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2017,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제75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근거 마련
  - 신고의무자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신고의무 관련 교육내용 포함 의무화(2005)
  - 신고의무자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에 신고의무 관련 교육내용 포함 의무화(2011)
  - 소속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5개 직군) 및 과태료 규정(300만원 이하) 신설(2015)
  - 소속 신고의무자 교육 직군 확대(25개 직군)(2020,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그 종사자 관련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28조, 제46조, 제52조, 제53조의2 제71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및 자격 기준 명확화(2008)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권한 및 업무수행 방해 금지에 대한 근거 마련(2014,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20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변경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동행 규정)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에 각종 신분조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2015, 아동복지법 제22조의3)
  -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의 신분조회 등 조치 범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발급 포함(2015, 아동복지법 제22조의3)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거부, 방해 금지규정 마련(2016, 아동복지법 제28조)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기능 추가(2016, 아동복지법 제46조)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2016,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2016, 아동복지법 제52조)
- 보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2020, 아동복지법 제22조의5)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제18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및 제75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제7조)
  -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근거 마련(201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법원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형량 선고 시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 선고하도록 변경(201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아동학대행위자 친권제한·정지 근거 마련(2014, 아동복지법 제18조)
  - 아동학대행위자 중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신고의무자가 학대 시 가중처벌 근거 마련(2014,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제7조)
  -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2016,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2017,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2021,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 아동학대 인식개선 관련 근거 마련
  -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근거 마련(2012, 아동복지법 제24조)
  - 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학대 예방주간 지정 근거 마련(2012, 아동복지법 제23조)
  - 민법상 징계권 폐지(2021, 민법 제915조)
- 학대피해아동 보호 관련 규정 마련(아동복지법 제5조,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
  -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 금지(2015, 아동복지법 제5조)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및 전담의료기관 운영 근거 마련(2017, 아동복지법 제29조의6, 제29조의7)

- 즉각분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2020, 아동복지법 제15조)
  - 정서적 학대의 일종으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경우 포함(2021, 아동복지법 제17조)
  - 아동학대 신고전화 운영(아동복지법 제22조)
    - 아동학대신고전화(국번없이 1391) 운영(2000)
    - 기존 아동학대신고전화(1391)를 보건복지콜센터 긴급지원전화(129)로 통합(2006)
    - 긴급지원전화(129)에서 아동학대신고전화를 재분리(1577-1391)해 운영(2006)
    - 아동학대신고전화를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2014.9.29)
- ※ 아동학대 신고접수의 정확성·신속성 제고

##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주요내용

### 3.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주요내용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지속('20.10월~, 계속)
  - 2020년 122개 시·군·구 292명 배치, 2021년 전국 229개 시·군·구 747명 배치, 2022년 전국 229개 시·군·구 852명 배치(「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
- ‘즉각 분리제도’ 도입(「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21.03.30일 시행)
  -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 기계적 분리 방지 및 현장에서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즉각분리 지침 마련(21.03.30)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업무수행지침 개정(21.04.02)
  - 신고접수, 현장출동, 현장조사 및 조치, 통합사례회의, 정보공유, 즉각분리 등 아동학대전 단계에서 인력 간 세부역할 구분 및 업무부담 구체적 명시
  - \* 보건복지부, 경찰청 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예방경찰관, 아보전 등 현장인력을 포함한 공동협의체 운영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전국 10개 시군구 시범적용 후 현장 시행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지속 실시(「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
  - 교육대상자는 각 교육에 대해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은 교육실시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존에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통해 아동학대조사와 사례관리 업무수행 하였으나,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에 따라 지자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e음)을 활용하여 사례관리 업무 수행하여야 함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활용 발굴조사 실시('18.3월~계속)
  -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발견하고 학대 신고 및 복지 서비스 연계·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분기별 1회 추진

- 위기 아동 발굴 강화를 위해 **학대 위기 아동**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및 연계 변수 지속 발굴**(△예방접종 미실시 △건보료 연체 등 44종)
- 위기아동 **예측 변수 정비 및 발굴 모형 개선**을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
-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추진**
  -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제외한 국내 **만3세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을 통해 **아동 보호 강화** 추진
  - 읍면동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 조사**하고, 현장조사 시 아동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 II

## 아동학대 예방

## 1.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 가. 추진경과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아동학대 조사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예측·지원하는 상시발굴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16.3.29.)에서 「아동학대방지대책」의 주요 과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 구축 확정·발표
- 새 정부 국정과제(48-5)로 ‘빅데이터 활용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발표
- 수도권 거주 아동 대상 1·2차 시범사업 추진('17.9월~'18.2월)
-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3.8.)에서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의 주요 과제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확정·발표
- 시스템 구축('17.5월~) → 1·2차 시범사업('17.9월~'18.2월) → '18년 본 사업 1~3차수 실시('18.3~12월) → '19년 1~3차수 실시('19.1~10월) → '20년 3차수 실시\*('20. 7~9월) → '21년 5차수 실시\*\*('21.1~12월)
- \* '20. 1~2차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조사 중지
- \*\* '21. 4차수는 기존 미처리 건에 대한 보완조사 실시
- 위기아동 예측 변수 정비 및 발굴 모형 개선을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개선을 위한 위기아동 발굴방안 연구용역 실시
- 지자체 담당자 대상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합동 워크숍을 통해 e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 노하우 공유 및 시스템 활용방법 교육 실시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사용자 시·도별 온라인 영상교육 실시

## 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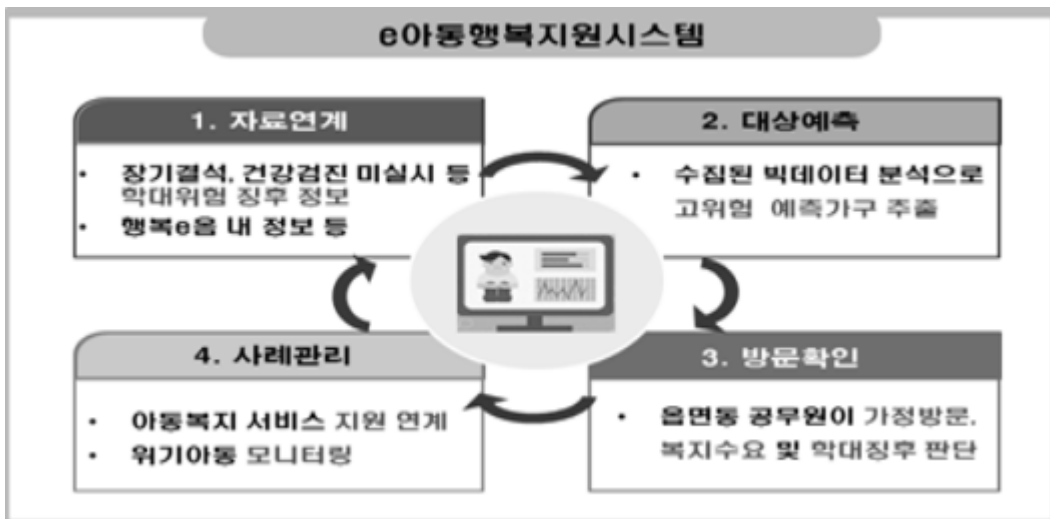
다. 시스템 내용

- (정보수집)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 실시 등 다양한 위기아동 징후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
- (대상예측)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분기별 1회 약 2만명의 보호필요 아동을 예측하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연 3회)

**참고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예측 주요정보**

①장기결석 등 학교 출결 ②어린이집·유치원 출결 ③영유아 건강검진 미 실시 ④치료중단 등 병원기록 ⑤예방접종 미 실시 ⑥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⑦아동복지시설 퇴소 ⑧학교 밖 청소년 ⑨단전·단수·단가스 등 복지사각지대 정보 등

- (방문확인) 읍·면·동 아동복지담당(사례관리담당 협업)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점검·복지수요 파악
  -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확인 과정에서 학대징후 발견 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로 연계해 아동학대 여부 판단, 필요시 신속한 조치
  -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조사업무 활용 시 위기아동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권한 부여
- (사례관리) 학대정황은 없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상담·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복지 지원 강화



## 2.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 가. 추진경과

- 전수조사 기본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검토('19.6~7월)
- 지자체 아동담당 공무원 대상 의견수렴 및 전수조사 프로세스, 적용지침 등 세부 실행방안 마련('19.7~8월)
- 보건복지부-경찰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를 통해 소재불명·학대의심 사례 수사 절차 관련 논의('19.8~9월)
- 읍면동 담당자 대상 전수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안내 업무지침 마련·배포 및 지자체 아동담당 공무원 대상 사업설명회 실시('19.9월)
- 보도자료 배포(주요 일간지 정책홍보 기사 게재) 및 온·오프라인 홍보(포스터 등 홍보자료 및 카드뉴스 배포) 등 적극적 정책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19.10월)
-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지자체 대상 안내 및 신속한 조사 추진 독려('19.10월~)

### 나.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의2 (사회보장급여 발굴대상자 조사)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8조 및 별표2(관련정보 활용)
- 아동복지법 제66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의 주소·거소 등 방문조사)

### 다. 주요내용

- 조사대상
  - 사회감시망(유치원/어린이집 재원) 밖에 있는 만 3세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을 통해 아동보호 강화
  - 2021년에는 '17년 출생아동 총 36만 3,519명(주민등록전산자료 기준) 중 거주지 방문을 통해 소재·안전 확인이 필요한 아동 2만 6,251명 대상 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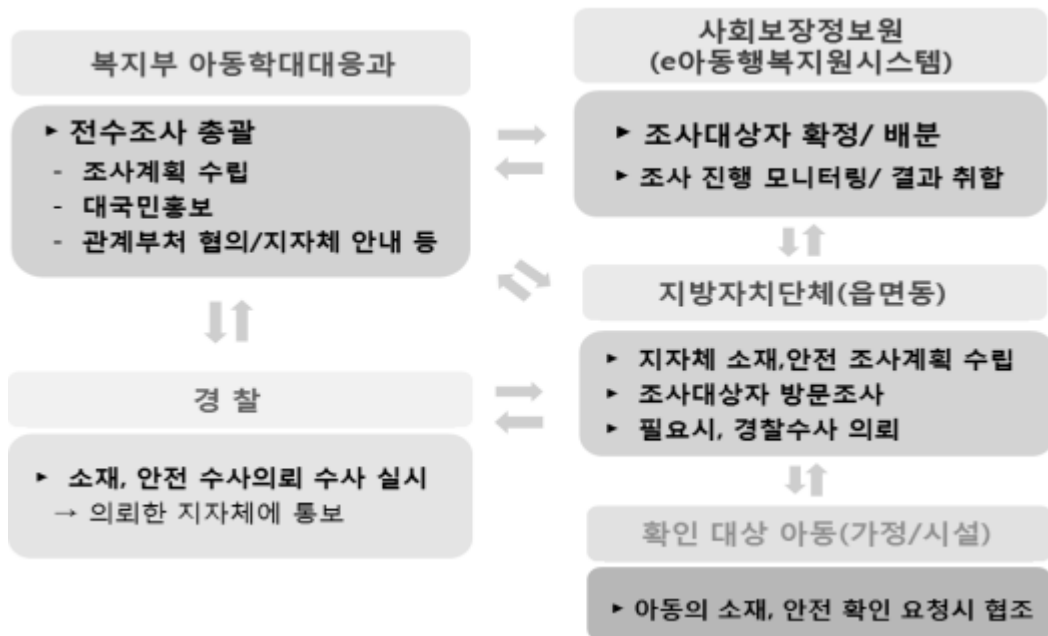


- 조사기간
  - 매년 10~12월(총3개월)
- 조사담당자
  - 읍면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담당자(주) 및 맞춤형 복지 담당자(부)가 협업

**라. 조사내용 및 프로세스**

- (방문조사) 읍면동 아동복지/맞춤형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정/거주시설 등을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
- (소재·안전 확인)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하여 △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아동의 실제 생존 여부 △아동이 안전을 위협받을 상황에 처해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서비스 필요 여부 확인·지원
-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관할 112 또는 지자체 긴급전화로 즉시 신고
- (경찰수사 의뢰) 읍면동 차원에서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방문 거부 시 관할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소재 수사 진행

**[ 전수조사 수행 체계 ]**



###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운영에 대한 문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담당 부서인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39)로 문의 바랍니다.

#### 가. 목적

-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발견을 제고 및 신속 대응 추진

#### 나. 추진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제10조의3

#### 다. 신고의무자의 범위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주요 내용〉

- (부과주체) 신고의무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부과대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대상기간) 최초 아동학대 인지 가능시점부터 아동학대 신고접수일까지의 기간에서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판단
- (부과절차) 의견청취,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 과태료 부과 주체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아동(학대예방) 담당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조직구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대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 신고의무자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었으나 신고의무를 불이행
  -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형의 선고(유예포함) 또는 보호처분(감호 위탁,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확정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보다 철저히 시행
  - 고의·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신고의무 위반이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sup>3)</sup>
-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
  - 아동학대 최초 인지가능시점부터 신고일까지의 범위에서 이행여부를 판단하되, 최초 인지가능시점은 현장조사 결과(피해아동 및 주변인 상담 등)에 따라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출한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학대 발생 관할 시·군·구가 결정
  - 단, 최초 인지가능 시점이 아동복지법상 과태료 신설('12.8.5) 이전인 경우 '12.8.5.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불이행 여부 판단<sup>4)</sup>

-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③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태료 산정기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 기준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단, 불이행 행위가 '14.9.29.~'21.5.17.에 발생한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단, 불이행 행위가 '12.8.4.~'13.1.23.에 발생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단, 불이행 행위가 '12.8.3. 이전에 발생한 경우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전처분통지서를 발부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 감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1/2범위에서 감액 가능<sup>5)</sup>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6)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 증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1/2범위에서 증액 가능, 단 상한액(1,000만원) 초과 불가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 2)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과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금액

- 과태료 납부시기에 따라 산정금액(기준금액에 감액 또는 증액을 반영한 금액)의 80% 또는 100% 부과<sup>6)</sup>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 처분서를 받고 납부하는 경우	산정금액×100%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산정금액×80%

● 과태료 부과절차

① 조사결과 통보

- 경찰서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발생 관할 시·군·구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때, 조사대상 신고의무자의 조사 내용(아동학대 사건인지 여부 등), 사법처리 진행 상황 (경찰조사, 검찰송치, 법원재판 진행 등)을 포함하여 제출

② 행정처분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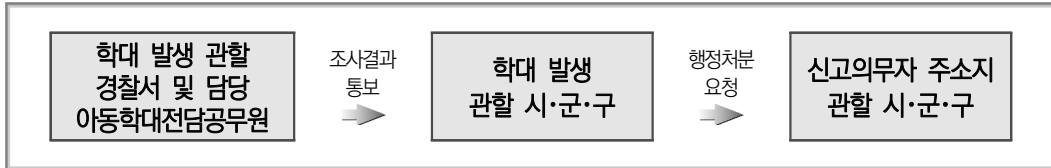
- 학대 발생 관할 시·군·구는 경찰서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통보서를 참고 하여(필요할 경우 자체조사 또는 경찰협조를 얻어 보강조사 실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신고의무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서식 3호에 따라 행정처분 요청

- 특히 형의 선고(유예포함) 또는 보호 처분(감호위탁,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확정된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다 철저히 관리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과태료 부과 시점에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그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확정판결문 등)도 함께 알려줄 것
- ※ (확정판결문 요청) 학대 발생 관할 시·군·구는 사건 관할 검찰청 또는 법원에 아동학대 사건의 확정판결 결과를 과태료 부과 목적임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요청<sup>7)</sup>
- ※ 판결문 요청 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의 사건번호를 기재 요망



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서식 4호 및 서식 5호)
- ※ 반드시 문서로서 통지
- ※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처분 취소 또는 처분내용 변경
-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심사례와 관련해 현장출동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한해 통보할 수 있음

4]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이후 과태료 부과 처분(서식 6호)
- ※ 반드시 서면통지

5]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통보 하되,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하거나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

6] 기타

- 이의제기에 따른 재판절차 등 아동복지법과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행정 서식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에 따름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 불이행 외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동 과태료 부과지침을 준용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마.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 근거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 신고자 보호 :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sup>8)</sup>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작성 시 신고자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신고자 인적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
  - 재판에 필요한 경우 신원관리 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범죄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안 됨
  -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 신고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장시키거나 공개법적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주거지 또는 현재지에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음
- 신고자 보호 불이행 시 처벌 (「아동학대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62조의2)
  -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가해졌을 시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sup>9)</sup>

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 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 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 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 11조(증인 소환 및 신문 특례 등), 제 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제 13조(신변안전조치)

9)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2조의 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2.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5.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가.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 이수 필요

### 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 교육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3가지 내용 포함 필요
  -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 교육방법 :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외부 사이트에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 ※ ('21년도 기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집합교육) 복지부에서 정한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 ※ 복지부 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및 기타 자세한 교육방법 및 실적제출 안내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 관리시스템(iedu.ncrc.or.kr)의 알림마당 등 참고 바람

## 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주요 내용〉

- (부과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
- (부과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대상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교육 실시여부를 판단
- (부과절차) 의견청취,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 과태료 부과 주체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
  -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아동(학대예방) 담당부서 또는 각 시설의 과태료 처분 관할 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조직구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대상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고의·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sup>10)</sup>
-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
  - 연 1회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교육 실시여부 판단 필요
  - 단, 제도가 확대 도입\*된 첫 해인 '18년은 제도가 도입된 날로부터 1년까지인 '18.4.25.부터 '19.12.31.까지로 운영
  - \* (기존) 5개 직군(종합병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확대) 24개 모든 직군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은 매년 조정될 수 있음(공문 안내 등 참고)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③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태료 산정기준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 기준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300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

● 감액대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8조 별표17)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1/2범위에서 감액 가능<sup>11)</sup>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6)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제3급 장애인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

● 증액대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8조 별표17)

-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2의 범위에서 증액하되, 상한액(300만원) 초과 불가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 부과금액

- 과태료 납부시기에 따라 산정금액(기준금액에 감액 또는 증액을 반영한 금액)의 80% 또는 100% 부과<sup>12)</sup>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 처분서를 받고 납부하는 경우	산정금액×100%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산정금액×80%

● 과태료 부과절차

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서식 4호 및 서식 5호)
- ※ 반드시 문서로서 통지
- ※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처분 취소 또는 처분내용 변경

②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이후 과태료 부과 처분(서식 6호)

③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통보 하되,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하거나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

④ 기타

- 이의제기에 따른 재판절차 등 아동복지법과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행정 서식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에 따름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5.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로 결과제출 필요
  -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교육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3가지 내용 포함 필요
  - ①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③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 교육방법 :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외부 사이트에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 ※ (\*'21년도 기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집합교육) 복지부에서 정한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 ※ 복지부 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및 기타 자세한 교육방법 및 실적제출 안내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 관리시스템(iedu.ncrc.or.kr)의 알림마당 등 참고 바람

## 6.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 가. 제도개요

- 목적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을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29조의5

● 취업제한대상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된 날로부터 일정기간동안(법원이 선고한 취업제한명령기간, 10년 이내) 다음의 시설 또는 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가 제한됨
  - 아동권리보장원, 지방자치단체(아동복지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으로 한정하며, 21.6.30.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자에게 적용),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인 포함 모든 종사자 해당
  -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
  -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 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2016.9.23.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 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 기관은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해당함에 유의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17.12.20.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
  -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019.6.12.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21.6.30.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자에게 적용)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022.6.22.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취업제한 대상은 상근직 직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있는 모두를 포함함. 즉 특강 강사, 운전기사, 청소노동자, 사회복지무원 등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려 하거나 하고 있는 모두가 포함됨(다만 무보수 자원봉사자는 제외)
- ex) 일일 강사와 유상 계약을 맺고 일일 강사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대상자에 해당함

구분	기관·시설 현황	비고
아동복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 기관(드림스타트)</li> <li>● 입양기관(개정조항 '21.6.30. 시행),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li> </ul>	1호 24호 25호 26호

구분	기관·시설 현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아동복지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으로 한정, 개정조항 '21.6.30. 시행)</li> <li>● 육아종합지원센터</li> <li>●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li> <li>●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li> <li>●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li> </ul>	
가정폭력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단기 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li> </ul>	2호
가족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li> <li>●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li> </ul>	3호 4호 20호
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li> <li>●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li> </ul>	5호 6호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li> </ul>	7호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li> <li>●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li> <li>● 학원, 교습소(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 학교교과교습학원 전체,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대상어학·통역·번역·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으로 하되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제외, 교습소 전체</li> </ul>	8호 18호 19호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한함</li> </ul>	9호
장애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li> </ul>	10호
정신보건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병원,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li> </ul>	11호
주택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 *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li> </ul>	12호



구분	기관·시설 현황	비고
청소년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li> </ul>	1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li> <li>● 청소년이용시설*(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li> <li>-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 공연장(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관(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li> <li>- 과학관(「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li> <li>-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에 한함</li> <li>- 자연휴양림(산림욕장 포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20조)</li> <li>-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li> <li>- 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li> <li>-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li> </ul>	1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li> </ul>	1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보호·재활센터</li> </ul>	16호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스키장, 썰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축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핸드볼장 등(「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에 한함</li> </ul>	17호
법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운영 법인 * 법인 산하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아니라 법인사무를 하는 사람에 한함</li> </ul>	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li> </ul>	2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li> </ul>	23호

## 나. 범죄전력 조회방법

- 지자체장, 교육감, 교육장 :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 지자체장, 교육감, 교육장은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서식 7-1호 또는 7-3호),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서식 8호 또는 9호)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청함
- 아동관련기관의 장 :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 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범죄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
  -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서식 7-1호 또는 7-3호),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서식 8호 또는 9호),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청함
  - 취업자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신청서(서식 7-2호)와 취업자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경찰서에 신청함
- 경찰서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서식 10호 또는 11호 또는 11-1호)’에 취업제한대상자 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함
  -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으로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 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및 보고

- (전력조회 점검·확인)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교육장이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함
  -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교육장이 아동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동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으로부터 전력조회 대상자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경찰서에 전력조회를 요청하여 운영 및 취업여부 점검·확인
    - \* 전력조회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전력조회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제출사유, 제출일시, 제출내용 등 명시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법 제29조의5제1항)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2항)
  -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이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29조의5제3항)

## 라.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 공개기관 : 보건복지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관계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 공개사항 : 점검·확인 기간, 아동관련 기관 수 및 인원 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한 내용
- 공개절차
  -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점검 완료일로부터 50일 이내 작성 또는 취합) ⇨ 보건복지부 공개(취합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 시·도 및 교육청 : 시·도 및 교육청(점검 완료일로부터 40일 이내 작성 또는 취합) ⇨ 관계 중앙행정기관(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취합) ⇨ 보건복지부 공개(취합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 시·군·구 및 교육청 : 시·군·구 및 교육청(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또는 취합) ⇨ 시·도 및 교육청(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취합) ⇨ 관계 중앙행정기관(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취합) ⇨ 보건복지부 공개(취합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 공개기간 :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12개월 동안 공개함
- 공개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를 통해 인터넷 공개

## Ⅲ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 가. 목적

-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

## 나. 주요역할(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

-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아동학대 행위자 등 상담·조사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 피해아동 사례관리 지도·감독 등 업무 수행

##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3.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다. 연혁

- '20.4월 아동복지법 개정, 10월 시행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의무화
- '20년 118개 시·군·구(선도지역) 총 290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목표, 122개 시·군·구 총 292명 배치 완료
- '21년 전국 229개 시·군·구 총 664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목표, 229개 시·군·구 총 747명 배치 완료
- '22년 전국 229개 시·군·구 총 765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목표(기준인건비 반영), 228개 시·군·구 총 852명 배치 완료

## 라. 단계별 업무 수행

※ 상세 내용은 아동학대대응업무매뉴얼, 아동학대 유관기관공동업무수행지침 참고

## 신고 접수

- 시·군·구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신고 되거나, 상담 중 학대 의심 사실이 확인되어 출동이 필요한 경우 즉시 112 통보 및 현장출동 실시
  - \* '아이지킴콜' 어플을 통해서도 아동학대 의심 징후 체크리스트 확인 및 아동학대 신고(전화 및 메시지 연동) 가능(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로 다운로드)
  - ※ 다만, 야간·휴일, 원거리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동이 어려운 경우, 112 통보하여 경찰 우선출동을 요청하고, 현장경찰의 동행요청이 있을 시 신속 대응
  -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학대예방경찰관(APO)에게 유선 통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
- 신고 접수 시 피해(의심)아동의 현재 상황, 인적 사항, 아동학대행위(의심)자 관련 사항, 신고자 관련 사항, 아동학대 의심 상황 등 정보 파악

## 현장 출동

-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에 따라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동행출동이 필요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관하여 상호 동행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동행출동 실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조사 현장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함께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조사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 참고 | '동행출동'에 관한 일선 경찰서-시·군·구 협업 체계(야간, 휴일)

- 112 신고에 따라 경찰에서 현장 확인 후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동행 요청
  - ※ 신고접수 시 긴급한 상황임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에서 동행 요청
  - 즉각분리, 보호시설 인계 등 아동의 (분리)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행 요청
    - ※ 아동보호에 대한 응급성이 낮은 경우는 야간·휴일에 동행요청하기 보다 평일 주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피해(의심)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의심)자 등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아동학대 조사 및 질문권한이 있음을 고지하고 아동학대범죄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2항, '21.1.26. 개정)  
※ 신고인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금지

### 즉각분리/응급조치

-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나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 현저한 경우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 자매인 아동,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음(응급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한 경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기간이 연장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72시간 (주말·공휴일 포함 시 48시간까지 연장 가능) 한도
-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음(즉각분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시·도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할 일시보호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구 요청 시 시·도 내 보호시설 섭외를 지원  
※ 즉각분리·응급조치 발생현황, 시설별 정·현원, 시·도간 조정현황 등

### 아동학대 조사

-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 된 건에 대하여 현장 출동 수칙에 따라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기관 간 각 고유역할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의심)아동 보호’에, 경찰은 ‘아동학대행위(의심)자 수사’에 집중하여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함
- 조사 시 필수 대면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피해(의심)아동, 아동학대행위(의심)자, 의료인이 신고한 경우 관련 의료인(아동 담당 주치의, 신고자 등), 피해(의심)아동 보호자, 피해(의심)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 기관 종사자, 피해(의심)아동의 형제·자매, 동거하는 아동, 이웃 등

※ 필수 대면 조사 대상자 외 주변인(신고자,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이웃주민, 이용 중인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등)에 대해서도 신고 된 학대정황 등에 대해 조사

- 조사 협조에 대한 설득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속 거부하여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은 경찰동행 요청, 즉각분리, 과태료, 업무수행방해 행위 처벌을 실시함

### 사례 판단

- 아동학대 판단척도 및 시·군·구 내 자체사례회의를 필수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 사례회의, 사례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외부 전문 의견 청취하여 사례판단 가능함

- 사례판단 시 활용 가능한 척도 및 회의

1) (현장판단) 아동학대 의심신고에 따라 출동한 현장에서, 명확한 학대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각적으로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함

- 아동학대 판단척도 필수 활용, 척도점수 참고하여 현장판단 실시
- 현장판단 이후에도 필요시 추가 아동학대 조사 가능

2) (회의를 통한 논의 및 판단) 자체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 결정위원회)

\* 정확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위해 신속히 전문가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자문회의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 아동학대조사내용 및 사례판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조치 여부, 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및 절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전반적인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함. 아동학대사례관리 중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보호계획을 변경 수립해야 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례판단 후 즉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팀 내 아동보호전담요원 공유(중·장기보호 조치 결정된 경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 지원센터(가정위탁 진행된 경우)에 피해아동보호계획을 통보해야 함

### 피해아동 조치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담 요원에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하고,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종류를 결정하거나 가정복귀를 결정함

### 가정복귀

#### <아동복지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즉각분리(일시보호) 후 보호종결>

- 아동학대 사례판단 되지 않아 가정복귀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개별 상담 등 실시 후 가정으로 복귀시킴
-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었으나, 피해아동보호계획에 따라 중장기적 분리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아동학대 사례고 판단되고 중장기적 분리보호가 필요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였으나 가정복귀가 결정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치 결정 내용(심의 결과)을 공유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 양육환경 점검, 양육 계획 확인, 가정복귀 프로그램 실시(축약) 등을 통해 가정 복귀 여부 결정

#### <아동복지법 제6조에 근거하여 ‘가정복귀(친권자 또는 후견인)’ 신청에 따른 보호종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분리보호 되어 있는 아동 중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가정복귀를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결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 2023.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p. 168~171 참고



## IV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및 위원회 설치·운영

### 1.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본부

#### 가. 목적

-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아동복지법 제10조의2)

#### 나. 주요사업내용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 사례개입 지원 등
-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경찰청, 전문가집단, NGO 등 유관기관 협력 및 연계사업 수행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국제교류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아동학대 사례판단 척도, 가족치료프로그램 등 개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 법률교육, 업무수행 지침교육, 신규배치상담원 교육 등
  -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대피해아동 및 부모대상 교육,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수행 등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운영(보건복지부 위탁)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통계 제공

## 2.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가. 목적

-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

###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주요연혁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설치일 기준) / (2021.12월 현재)
2000 (17개소)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2001 (1개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폐소* 2019.12.31.) * 아동권리보장원 통합(2020.1.1.)
2003 (2개소)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04 (18개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05 (1개소)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4개소)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설치일 기준) / (2021.12월 현재)
2007 (1개소)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2009 (1개소)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2개소)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4개소)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1개소)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5개소)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 (폐소)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4개소)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1개소)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개소)	서울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5개소)	경기광명아동보호전문기관,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20 (2개소)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21 (8개소)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광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의왕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2022 (8개소)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성북구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b>총 85개소</b>	

※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 2000년 국가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동학대예방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피해아동 낙인, 행위자 저항 심화 및 피해의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6년부터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

## 다. 설치주체 및 위탁

- 설치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아동복지법 제45조)
  -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45조제3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6.9.23부터 아동복지시설에 해당(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9호)
    - ※ 사회복지시설 포함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규모 : '22. 12월 기준 85개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운영	85	10	4	3	4	2	2	2	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	22	5	4	4	6	4	4	6	2

- 명칭은 “○○시·도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원칙으로 함. 단,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명칭을 사용하거나(ex.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와 논의하여 새로운 명칭 사용 가능(ex.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 설치 및 위탁 절차

### 가)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부칙(법률 제11002호) 제3조, 시행령 제44조
  - ※ '08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정방식이 위탁방식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이전에 지정된 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경과 규정이 마련

### 나) 위탁운영 기관 자격 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 「아동복지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다) 위탁계약기간 : 최대 5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법인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위탁 가능함

마) 선정절차

- ① 공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② 신청서 접수(법인) ⇨ ③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④ 수탁기관 결정 ⇨ ⑤ 위탁계약 체결(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⑥ 위탁계약 체결 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⑦ 위탁지정서 발급(시·도 또는 시·군·구 → 수탁기관)

- ※ 위탁신청서는 서식 12호 참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7호]

- ※ 위·수탁계약서는 서식 13호 참조

- ※ 위탁지정서는 서식 14호 참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8호]

바) 선정위원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함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사) 위탁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수탁기관과 위탁운영계약 체결 시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아) 위탁기간 갱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시설기준

가) 입지조건

-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

나) 일반기준

- 구조 및 설비 : 그 시설의 주이용자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 방지 등을 고려해야 함
- 기관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8)

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li> <li>※ 인력 1인당 전용공간(1인당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li> </ul>
상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1개 이상 갖추어야 함</li> <li>•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li> </ul>
심리검사 및 치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함</li> <li>• 놀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 치료를 위한 필요설비를 1개 이상 갖추어야 함</li> <li>•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함</li> </ul>
그 밖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5제곱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함</li> <li>• 그 밖에 필요에 따른 추가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li> </ul>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외부에 CCTV 카메라<sup>13)</sup> 등의 보안장비를 설치</li> <li>• 기관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li> <li>• 사례파일(심리치료파일)을 시건장치에 있는 곳에 보관</li> <li>• 직원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필요한 보안장치를 갖추어야 함</li> </ul>

※ 기부채납 건물의 경우 아동학대예방 사업 외에 다른 사업 목적으로 사용 불가

13)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 ● 종사자 기준

## 가) 인력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8)

## - 직원의 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음)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이상
- 상담원 6명 이상
- 사무원 1명 이상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지역 면적, 아동 수, 전년도 아동학대의심사례 수 등을 감안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별 인원 배치 기준을 결정

※ 직원채용 관련하여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 하고, 그 외에 운영법인 또는 기관 별도의 내부규정(인력기준)에 따름

-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배치하고,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 이력서 및 범죄 경력, 성범죄자 전력,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사항 등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함

## 나) 상담원 등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10)

## - 관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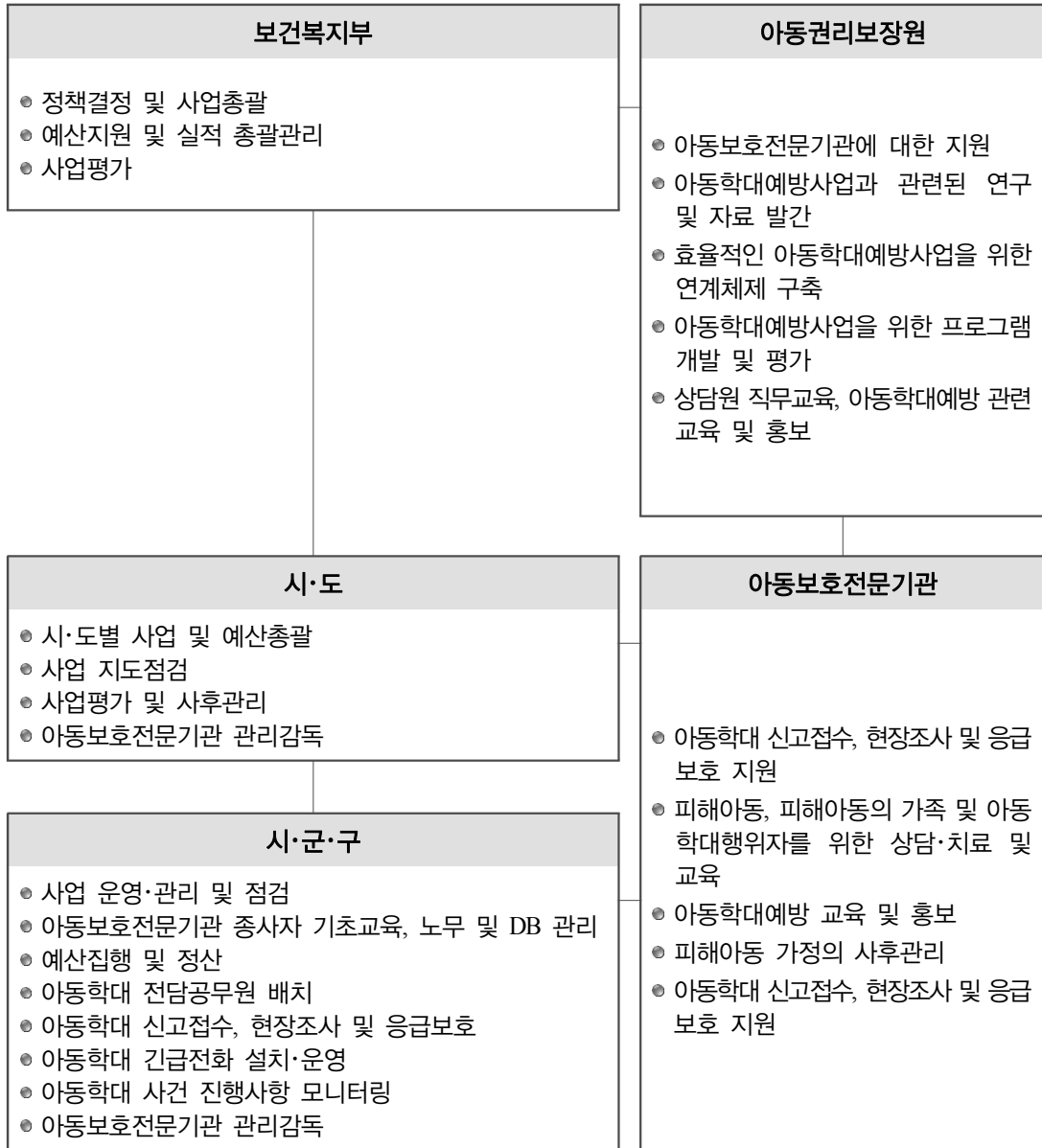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경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8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 포함)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채용 가능. 다만, 자격기준을 갖추기 전까지는 현장출동 및 동행조사 등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사례담당자로는 지정 불가
    -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8)이 개설되기 전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상담원을 사전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대학 졸업예정자 등 상담원 자격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 다)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 무휴
- 단,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 오후 6시)을 제외한 당직 근무는 전화당직으로 실시



라. 추진체계



## 마. 주요사업내용 (아동복지법 제46조제2항)

### 1)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3.9.30.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함

- 지방자치단체는 수사기관에서 현장출동 및 조사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협조하는 등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야 함
  - 특히,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 이용·생활하는 모든 시설) 내 학대 신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동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아동·보육 담당 부서에서 반드시 동행(감사원 지적사항)하고, 조사시 관련 내용 및 제반사항 등 공유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 필요시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적극 활용
  -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 유의사항
    - ① 행정처분 전 내용·이유 등 처분요지 및 이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당사자 의견반영 절차 마련
    - ② 판단결과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행정처분 판단주체는 관할 지자체장임이 분명하므로 시설 내 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결정시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조사 및 직접 참여 필요
-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 조회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복지법」 제22조의3에 따라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
    -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③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 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 후견인 선임 청구 및 임무수행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9조에 따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함
  - 특히 아동의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해야 함
  - 후견인 선임 및 변경 청구 시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음
  -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또한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사람을 선임해야 하나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가해 부모로부터 신체적 위협, 폭언, 고질적 민원 제기 등 위협을 당할 우려가 크므로 법원에서 후견인 결정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이 아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정하도록 권고
  - 분리초치 된 학대피해아동의 통장개설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9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및 외국국적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
  -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관할 지역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아동이라도 필요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필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호위탁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입소시설 결정 가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으로부터 가정 복귀 신청을 받거나 보호유형을 변경하는 경우(시설 간 전원,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간 이동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아동보호전문기관장 포함)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제3항)

● 아동학대 조사원증 교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조사 진행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아동학대조사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별지4호 서식에 따른 아동학대조사원증을 발급 및 교부해야 함(서식 15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인사발령 등에 따른 아동학대조사원증 신규발급 및 재발급 교부 신청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급 및 교부해야 함
- 아동학대조사원증 발급 및 교부에 따라 아동학대조사원증 발급대장을 작성 및 관리함(서식 16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 학대행위자의 알코올 문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의 신변이 위협받는 경우, 시·군·구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행위자가 신속히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지원
- 학대행위자의 알코올 문제, 정신질환 등의 효과적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 타 기관(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행위자가 신속히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지원해야 함
- 의료비·의료서비스 지원
  - 학대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에게 의료적 처치 및 이에 따른 비용 지원, 연계 서비스 지원
  - 치료비 지원, 의약품·의약외품 및 보장구 지원,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검진, 진단 및 치료, 재활치료, 정신건강 교육, 정서발달, 치유지원, 정신질환자 치료, 사회복귀 지원 등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학대피해로 인한 심리·정서적인 개입이 필요한 피해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 학대후유증 감소를 위한 피해아동 분노조절 프로그램, 아동의 외상과 학대에 대한 인지 행동치료 단계적 접근법 프로그램, 5~10세 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아동학대 가정 회복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등

● 법률지원

- 아동학대 사건처리 및 아동학대 피해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사 제도, 범죄피해자의견 진술 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가명조서,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제도,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배상명령제도, 형사조정제도, 수사기관 및 법정동행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분기 1회 이상 지역신문, 유선방송 및 시정홍보 전광판, 리플렛, 홍보물품 배포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적극 실시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요청시, 읍·면·동 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참여하여 빈곤·실직 등으로 통합적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연계·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종결하여 읍·면·동(아동복지 담당)에 통보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읍·면·동에서는 필요한 경우 드림스타트(또는 희망복지지원단)로 이관하여 통합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읍·면·동(아동복지 담당)으로 다시 통보하여 다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접수하거나 종결
- 아동학대사례는 종결과정에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보호자(부모)의 아동학대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사정할 필요가 있음

## 바. 예산

### 1) 사업 개요

- 목적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및 신규설치비 지원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 등을 위하여 지방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2) 예산지원 세부기준

- 국고 보조대상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
- 국고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 각 지자체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이외에 별도로 지자체 자체사업 편성 가능
- 비목별 예산 활용 기준
  - 공통
    - ① 원칙적 전용불가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전용 불가
    - ② 예외적 전용기준 : 설치주체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 운영비 일부를 사업비로, 사업비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
      - 이 경우, 사전 승인의 주체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전용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전용 승인을 위해서는 전용의 목적, 규모 및 전용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인건비를 운영비, 사업비로 전용하거나 운영비,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모두 불가함
- 인건비 : 매년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기준을 준용하여 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권고
- 운영비·사업비 : 운영비는 임차료 및 교육비로 사용 가능하며 충실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위한 여비, 피해아동 검사비, 심리치료비 등의 운영비·사업비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 검사비는 분리보호 조치 된 아동 뿐 아니라 원가정보호 조치 된 아동 등 모든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피해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사용 가능
-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에 따른 치료비, 검사비 비용으로도 사용 가능
- 정산결과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함

3)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 운용 권고안

유형	비목	세부항목
경상보조	인건비	<p>&lt;직원 보수&gt;</p> <p>※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사회) 인건비 기준 적용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급</li> <li>• 명절휴가비</li> <li>• 시간외근무수당</li> <li>• 가족수당</li> <li>• 기타 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li> <li>• 특수근무수당(위험업무수당)</li> </ul> <p>&lt;고용주 부담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li> <li>• 사회보험부담금</li> </ul>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조사, 사례관리, 사후관리, 직무교육 이수 등</li> </ul> </li> <li>• 당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휴일 재택당직</li> </ul> </li> <li>• 상해보험료, 책임보험료</li> <li>•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전문위원회, 자문회의 등</li> </ul> </li> <li>• 업무추진비</li> <li>• 수용비 및 수수료</li> <li>•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li> <li>• 차량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 정비, 소모품, 차량임차료 등</li> </ul> </li> <li>• 시설장비유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총원에 따른 각종 비품 구입 포함</li> </ul> </li> <li>•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공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li> </ul> </li> <li>• 교육비</li> <li>• 기타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근매식비(야근식대)</li> </ul> </li> </ul>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아동 긴급생계비 등 부대비용</li> <li>• 피해아동 의료비·심리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비, 정신과치료비, 응급치료비, 입원치료 제경비(간병인비 포함), 심리치료비(외부 심리상담소 활용 시)</li> </ul> </li> <li>• 학대행위자 상담·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강사비, 외부 심리상담소 활용 시</li> </ul> </li> <li>• 피해아동의 가족 심리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심리상담소 활용 시</li> </ul> </li> <li>•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비</li> </ul>
자본보조	사무공간 매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매입비</li> <li>• 중개료, 등기료 등</li> </ul>
	기자재·차량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재 설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용 가구, 업무용 비품, 사무공간 칸막이 공사, 심리치료실 설치, 심리치료 자재 등</li> </ul> </li> <li>• 업무용 차량 구입</li> </ul>



### 3.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운영

#### 가. 목적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나.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22조의5(’20.10.1 시행)

#### 다. 주요 기능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호계획 수립과 관련, 의학적·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
  - 사망 및 중상해 등 중대 사건에 대한 사례관리 등 방향성 모색
  - 기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

#### 라.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
  1.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담당하는 보장원 소속 직원으로서 보장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분야의 전문의로서 아동건강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라. 사법경찰관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
-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해촉 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척·회피기준
  - 제척 기준 :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례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회피 기준 :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위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하여야 함

#### 마.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운영

- 사례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다음의 경우 대면 심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
  1. 정기회의(매월 1회 개최)
  2.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됨

- 위원회 서면 심의는 다음의 경우 추진
  1. 사망 및 중상해 등 중대 사건에 대한 자문이 시급할 경우
  2. 대면 심의 회의일 이전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 자문이 시급할 경우
- 위원회는 피해아동 대리인, 학대행위자, 주변인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다만,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공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의 명단, 사례 관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 위원의 명단
  3. 위원회 회의록

V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1. 목적

-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아동복지법 제53조의2, 제52조제1항제4호)

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가. 설치주체 및 기능

- 설치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 또는 신규 설치·운영
- 지정운영기관 자격기준 :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공동생활가정
  - 다만, '17.12.31 이전에 개인이 설치한 공동생활가정을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속 지정운영 가능
  -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을 명시
- 규모 : '22. 12월 기준 125개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운영	125	7	4	3	6	4	6	4	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	31	5	10	11	6	9	7	6	4

● 주요 기능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사업대상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 등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나. 설치장소**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으며, 몇 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아동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의 집산화 가능성이 없을 경우 또는 같은 주거단지내 있음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 등으로 아동양육상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신고시설 운영자가 쉼터 간 협력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다. 설치기준**

- 남녀 혼성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남아전용 또는 여아전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보호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전용면적 : 100㎡ 이상의 주택형 숙소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기준에 의함(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변기의 수는 아동 5명당 1개 이상(6명 이상의 경우 2개 이상)으로 설치하여 아동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방 4개 이상으로 방 하나를 심리치료실로 활용
- 2015. 1. 1.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예외적으로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향후 주택 이전 시에는 동 설치기준을 적용함
-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설치하려는 시·군·구 내에 전용면적 100㎡ 이상의 아파트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85㎡ 이상, 100㎡ 미만인 아파트를 학대피해아동쉼터용 주택으로 인정함. 이 경우에도 방 4개 이상으로 방 하나를 심리치료실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할 시·도가 사전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와 협의하여야 함
- 입지조건 : 신규설치 및 이전 쉼터는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호제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 다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청소년실을 갖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노래연습장업)가 있는 부지에 설치 가능
- 내부구조 : 아동용 방 2개, 직원용 방 1개, 심리치료용 방 1개 이상으로 심리치료용 방도 잠을 잘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 쉼터 내에 사무실을 설치해서는 안 됨.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쉼터를 대규모 시설화하는 것으로서 평범한 가정 형태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 지자체 장은 주택을 물색할 때 학대피해아동쉼터용 주택으로 적합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최종 결정하기 전에 1) 주택 외경 및 내부사진 2) 매도인·임대인 명의의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용 주택으로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b>장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한다.</li> <li>-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li> <li>- 몇 개의 공동생활가정을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아야 한다.</li> <li>- 쉼터에서 50m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li> </ul>
<b>구성 및 면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숙소로 설치해야 한다.</li> <li>- 4개 이상의 방이 있으며, 그 중 피해아동의 심리검사 및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실이 있어야 한다.</li> <li>- 화장실 및 목욕실은 2곳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li> </ul>
<b>안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쉼터 내 안전관리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li> <li>- 창문, 방충망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li> <li>- 쉼터 외부에 CCTV 카메라 등의 보안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li> <li>- 쉼터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li> </ul>

### 3.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 가. 종사자 기준

##### 1) 인력 배치기준

###### ● 직원의 배치

- 시설장 1명
- 보육사 4명

######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 직원채용 관련하여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적용 하고, 그 외에 운영법인 또는 기관 별도의 내부규정(인력기준)에 따름

※ 원장 및 보육사 등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 간 인사이동의 경우 예외

##### 2) 종사자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5)

###### ● 시설장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종류와 세부자격 기준표 별지 1호 참조

### 3) 결격사유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상의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폐쇄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 원장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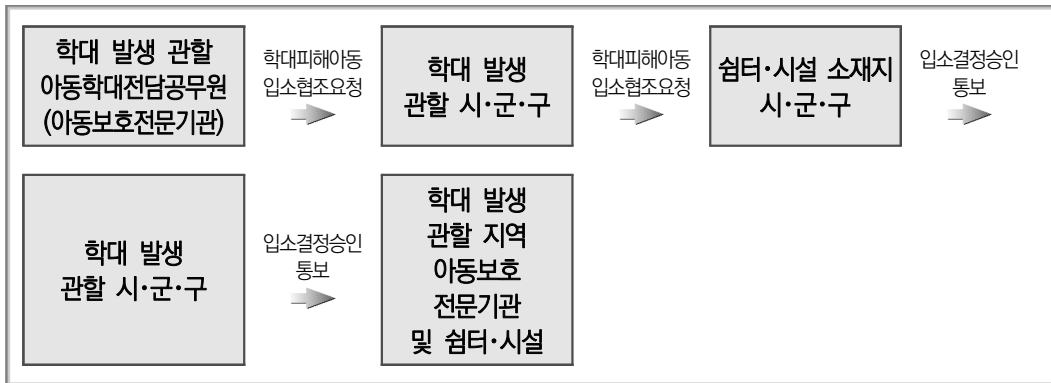
- 보육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위 요건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그 외 사항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대상 범죄경력, 성범죄 전력,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함
  - 원장은 쉼터에 상근해야 함

## 나. 입퇴소절차

### 1) 입소 처리 요령

- 쉼터 소재지 시·군·구 아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 아동도 입소 가능함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의 거주지, 특성, 연령 등을 이유로 피해아동 입소 처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의 적극적 지도감독 필요
- 피해아동이 지구대 등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 모든 시·군·구가 피해아동 입장에서 신속하고 긴밀하게 상호협력 필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되어 보호시설로 인도되는 경우, 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서류 없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제출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통보서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갈음하여 보호조치 실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호결정을 받아 보호조치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및 이에 따른 법원 결정문으로 갈음하여 보호조치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생계지원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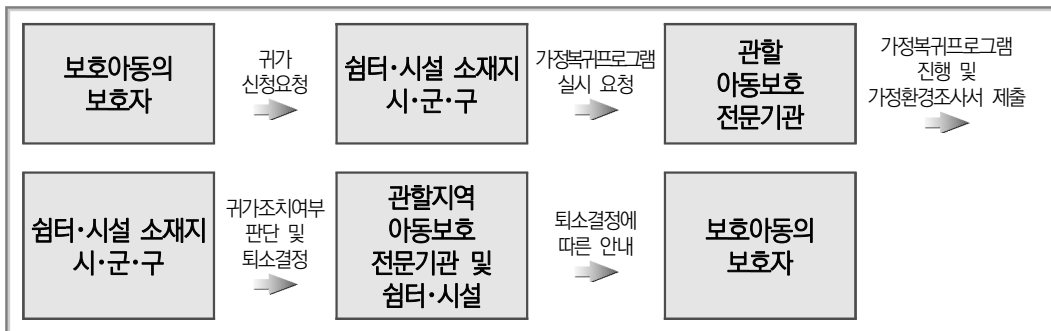
- 보호대상아동의 입소의뢰 또는 입원의뢰는 지자체 소관 업무이므로 해당 업무가 아동 보호전문기관 등에 전가되지 않도록 주의
- 담당 공무원은 피해아동의 특성 등(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을 감안하여 관할지역 내 피해아동이 입소 가능한 아동복지시설을 파악하고 연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조치를 적극 진행
- 학대로 인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 또는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사안에 따라 적의 적용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 필요(우선적용원칙 없음)
- 아동학대 업무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관할 지역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아동이라도 필요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및 외국국적, 불법 체류, 출생신고 미등록, 무연고 상태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의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2) 퇴소 처리 요령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시설 관할 시·도, 시·군·구에서는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함(아동복지법 제16조)
- 학대피해아동은 쉼터에서 3~9개월간 집중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고 원가정복귀·가정 위탁·일반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전원조치 필요
- 다만,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거나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계속 입소 가능

- **쉼터 퇴소 시기와 퇴소 유형(원가정복귀, 가정위탁, 일반공동생활가정 등 전원)은 해당 사례를 관리중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간 협의 통해 실시**
  - 특히 퇴소 유형이 원가정복귀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자 및 아동에 대해 가정복귀 절차(양육환경점검, 가정복귀프로그램 등)를 진행 하고, 관할 시·군·구에 가정환경조사서를 제출, 제출한 가정환경조사서 등 관련 서류 검토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가정복귀 여부 판단
  - 시설 간 전원 보호조치 유형변경에 따른 퇴소 시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통해 실시
  -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보호조치된 피해아동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의 종료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가정으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소견서를 제출받지 않고 법원의 결정문으로 같음 하여 퇴소처리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 실시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과 함께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근거로 입소되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퇴소절차 준용
- **지자체장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임시조치의 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이 분리조치된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피해아동에 대한 추가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 실시**
-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아동학대를 사유로 입소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정복귀 신청을 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을 관리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가정환경조사서와 당해 시설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장으로부터 소견서를 제출받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통해 귀가 조치 여부를 판단.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음**



### 3) 국민기초생활급여 신청·선정

- 부모로부터 분리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의 관할 시·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학대피해아동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제거주지인 쉼터 등의 소재지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접수
- 학대행위자인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되어 있더라도 학대피해아동은 별도가구로 판단하고 그 부모는 부양의무자로 처리 → 학대피해아동이 부양의무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거주하는 아동은 일반 수급자로서 아동의 수급비(생계비 등)는 시설 회계에 산입하지 않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 참조)

### 4) 출생신고 미등록된 아동에 대한 행정조치

- 출생신고 미등록된 아동이거나 무연고 아동의 경우, 피해아동의 성분 창설이 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울 시 사회복지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의료·생계급여, 양육수당,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쉼터 관할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출생신고가 등록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후견인 지정 등 절차를 진행

### 5) 유의사항

-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소재지 시·군·구에서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내용이 학대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보호조치 된 피해아동의 학대행위자가 친권자 등 가족일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 등 지원, 협조(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은 가정폭력피해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정 내에서 친권자 등 가족으로부터 학대가 발생한 피해아동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령 적용 가능)

## 다. 설치·지정 및 휴업·폐업 등

### 1) 설치 및 지정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민간(비영리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만 입소하도록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동생활가정의 하나임
- 따라서, 제반 행정절차는 공동생활가정 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 절차만 추가됨
- 기존 일반공동생활가정을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수리 사항 중 신고조건을 변경하여 신고수리함. 즉, 기존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신고조건 :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함’으로 변경하여 교부
- 신규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설하는 경우 : 시·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법인 공개모집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운영법인이 설치하는 공동생활가정을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 및 ‘신고조건 :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함’으로 하여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교부

### 2) 휴업·폐업 등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폐업·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 결의한 이사회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예산

### 1) 사업 개요

- 목적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종사자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및 신규설치비 지원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 등을 위하여 지방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2) 예산지원 세부 기준

- 국고 보조대상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중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시설
- 국고보조율 : 40%(국비 40%, 지방비 60%)
  - ※ 각 지자체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이외에 별도로 지자체 자체사업을 추가 편성 가능

## 3) 비목별 예산 활용 기준

- 공통
  - ① 원칙적 전용불가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전용 불가
  - ② 예외적 전용기준 : 설치주체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 운영비 일부를 사업비로, 사업비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
    - 이 경우, 사전 승인의 주체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전용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전용 승인을 위해서는 전용의 목적, 규모 및 전용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인건비를 운영비, 사업비로 전용, 운영비,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모두 불가함
  - ③ 재원 아동 유무와 관계 없는 예산 적용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시보호 성격의 시설이므로 재원 아동이 없는 경우라도 개소하여 운영 중인 경우 개소일(사회복지시설 신고서 상 설치일)을 기준으로 예산(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가능
  - ④ 일반 공동생활가정 예산과의 관계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반 공동생활가정 중 학대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시설로, 운영비, 사업비를 별도 기준에 의해 편성

- 인건비 : 매년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권고
- 정산결과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함

4) 예산 운용 권고안

유형	비목	세부항목
경상보조	인건비	<p>&lt;직원 보수&gt;</p> <p>※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건비 기준 적용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급</li> <li>• 명절휴가비</li> <li>• 시간외근무수당</li> <li>• 가족수당</li> <li>• 기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li> </ul> <p>&lt;고용주 부담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li> <li>• 사회보험부담금</li> </ul>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하교, 외래 진료, 업무협의, 직무교육 이수 등</li> </ul> </li> <li>• 상해보험료</li> <li>• 수용비 및 수수료</li> <li>•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li> <li>• 차량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 정비, 소모품, 차량임차료 등</li> </ul> </li> <li>• 시설장비유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총원에 따른 각종 비품 구입 포함</li> </ul> </li> <li>•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공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li> </ul> </li> <li>• 회의비</li> <li>•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비</li> <li>• 기타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근매식비(야근식대)</li> </ul> </li> <li>• 기타</li> </ul>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비 등 부대비용</li> <li>• 피해아동 의료비·심리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비, 정신평가치료비, 응급치료비, 입원치료 제 경비(간병인비 포함), 심리치료비(외부 심리상담소 활용 시)</li> </ul> </li> <li>• 교육·정서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험 등</li> </ul> </li> </ul>

유형	비목	세부항목
자본보조	주택 매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매입비</li> <li>• 중개료, 등기료 등</li> </ul>
	기자재· 차량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재 설치비</li> <li>* 가구, 비품, 심리치료실 설치, 심리치료 자재 등</li> <li>• 업무용 차량 구입</li> </ul>

### 마. 기타 행정사항

- 장부 등의 비치 : 학대피해아동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 법인의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원장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비공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거주자 대표(아동),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부모), 지역주민 대표 등은 선정하지 않도록 유의
-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 또는 클린카드 기능 추가 통한 관리
- 투명한 후원금 관리를 위한 전용 통장 개설 및 관리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4.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함
- 주요 점검사항
  -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정도(수립된 성과목표 일치성)
  -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 서비스 양의 충분성, 서비스의 품질과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서비스 제공방법의 적절성 등
  - 아동의 욕구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욕구 재조사 또는 보호계획 수정 필요 여부 등(아동복지업무 수행기관)
  - 보호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내용의 일치성
- 보호계획 이행 점검 시기
  - (단기) 보호계획에 따른 보호조치 후 1개월 내 집중 점검\*
    -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가정에서의 적응 여부 등
  - (상시) 보호계획에 따른 보호조치 후 분기별 점검 실시
  - 특히 아동보호조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동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 점검방법
  - (상담) 전화·방문상담·설문지 등을 통해 대상아동의 생활실태 등 파악
  -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락) 보호대상아동의 욕구와 상황의 변화를 파악
- 점검에 따른 조치

점검결과	조치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등 문제발생</li> </ul> </li> <li>•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신규 욕구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가정위탁 보호를 희망 할 경우,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희망 할 경우</li> </ul> </li> </ul>	욕구 재조사 보호조치 변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의 양 또는 횟수에 대해 대상자가 변경요청 시</li> <li>•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이 판단한 결과, 보호대상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 또는 횟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li> <li>• 욕구 재조사 결과, 서비스의 종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li> <li>• 서비스 제공자의 여건 변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li> </ul>	보호계획 재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등 보호자의 상황이 호전되어 원가정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경우</li> <li>• 대상가구의 이사, 연락 두절 등으로 사례관리 진행이 어려운 경우</li> </ul>	종결을 위한 평가

## VI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사용

### 1. 목적

-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아동복지법 제15조의2)
  -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함(아동복지법 제28조의2)
-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학대 유관기관의 업무처리 사항을 시스템에 일괄 입력케 함으로써 신속한 대상자 정보 확보,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자료의 생산 등의 편의 기능 제공

### 2. 정의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신고접수, 기초정보조사, 아동학대조사, 사례판단, 조치결과, 피해 아동보호계획 등 사건관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초기면접 및 사정, 사례관리계획, 서비스제공, 사례점검, 종결 후 개입, 심리치료 등의 사례관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e음, 구)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칭함

### 3.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의2,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6조의3
  -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 입력·관리함
  - ※ 동복지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아동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 4. 정보시스템 접근

- 아동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관련 업무담당자만 해당 메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별 권한(복지부·시도·시군구)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전담 팀장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받아 사용 가능

### 5. 주요 기능

- 관할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 등록 중인 사례의 신고접수, 아동학대조사, 사례판단, 조치관리, 안전평가, 사례관리계획, 서비스제공, 심리치료, 사례점검, 사후관리 각 단계별로 입력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업무관리를 위해 커뮤니티, 질의응답, 통계 및 조회 등 메뉴를 사용할 수 있음

## VII 보조금 집행 및 보고 등 공통사항

### 1. 예산지원 세부기준

#### 1) 국고 보조대상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 2) 보수 지원기준

-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의 보수월액은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용을 권고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 종사자에 대한 보수는 지자체 추가지원 및 자부담(후원금 포함) 등을 포함하여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함
-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급은 보수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시간급은 보수월액의 209분의 1로 계산함. 다만, 근무일수에 계속되는 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
-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계산
-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강임, 감봉, 휴직, 복직, 직위 해제, 면직, 해임, 파면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 3) 호봉의 확정 및 승급

- 호봉확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기관 종사자의 재직 관련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의 호봉확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준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행 (2016.9.23.) 전에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100% 경력으로 환산함(유사경력 80%로 적용하지 않음)

- 상기 규정 이외의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

#### 4) 수당

- 수당의 종류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월액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 지급가능
  - 보수월액의 120%(보수월액의 60%씩 연 2회)
-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정액으로 지급 가능
  - (배우자) 40,000원, (직계 존·비속) 20,000원
- 시간외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준용
- 상기 수당 이외에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보조금으로 특수근무수당(위험업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음

#### 5) 퇴직금

-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함
  - 다만,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관은 「퇴직연금법」에 따름

#### 6)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기준

- 운영비 및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운용 권고안을 참고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지출하여야 함

## 2.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서식 21호 및 22호의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
  - 매 회계연도 종료(12월)후 1월 이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검토결과와 함께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2월말까지 제출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 접수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매년 12월까지)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매 회계연도 종료(12월) 후 1월 이내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역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VII

##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1. 실종아동·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사업 개요	227
2. 실종아동·장애인의 보호업무 처리절차	234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	236
4.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장애인 관련 지침('09.9.29)	240
5. 신상카드 제출 방법	241





- **(실종 아동·장애인 발견신고 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 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장애인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관서(전화 : 국번없이 182번)에 신고
- **(신상카드 작성·제출의무)** 보호시설의 장(정신의료기관의 장 포함)은 아동·장애인을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 등에 보호조치하거나 보호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각각 지자체와 실종 아동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함
  - ※ 특히,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등 관련 지침(’09.9.29)”을 숙지하여 보호시설등에서는 신상카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지자체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

## 1. 실종아동·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사업 개요

### 가. 실종아동등의 정의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 나.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

- (실종 및 발견) 신고처 - 경찰관서(신고전화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 \* 실종아동등 관련 경찰청 홈페이지 : 안전드림(safe182.go.kr)
- (발견 후 신고) 신고의무자 : 직무수행 중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된 때는 지체없이 신고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보호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시설 등

- (신고접수서 작성·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때에는 신고접수서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 제출

**다. 신상카드 작성·제출 (실종아동법제6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
  -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 (진행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상카드(사본)를 경찰청장에게 송부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 여부 확인하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으로 확인한 경우 신상카드(사본)를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
- 보호시설 등에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
  - (작성)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
    -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진행절차)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등의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 서식)를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부
    - ※ 보호중인 무연고 아동 등의 전원 및 퇴소시 그 변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제출방법은 5. 신상카드 제출방법(p241)참고

### 라.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 (실종아동법 제7조)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실종아동법제17조)

### 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8호, 2017.7.17.)
  - (목적)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등 발생시 관리주체\*에게 신고토록 하여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 \* 아동복지법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
  - (주요내용)
    - 누구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을 사전 지정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의 관련 정보 파악 및 신고접수서(시행규칙별지1호서식) 기록·관리
    - \* 약취, 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 관리주체는 안내방송으로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 경보발령 등 조치(전광판 표출 등 대체수단 활용 가능)
    -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시설 출입구에 종사자 배치, 출입자 감시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및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 이용자의 접근제한 장소 및 시설 수색 실시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 등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 기타 사항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보건복지부고시제2017-128호) 참조
-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시행령 제4조의6)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대규모점포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중 대지면적 1만㎡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인 유원시설

-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 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중 연면적 1만㎡ 이상 역사 또는 환승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이 5천㎡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이 5천㎡ 이상인 여객 터미널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이 5천㎡ 이상인 여객이용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이 1만㎡ 이상인 역시설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이거나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시설 또는 장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1만㎡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중 대지면적 1만㎡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인 장소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
- 관리주체는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 바. 수색 또는 수사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사. 벌칙 및 과태료

위반 사항(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벌칙·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li> <li>•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li> </ul>	<p>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행사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li> <li>• 제7조의4를 위반하여 지문 등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자</li> <li>•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li> <li>•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li> <li>•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li> <li>•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li> </ul>	<p>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제1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li> <li>•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li> </ul>	<p>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9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li> <li>•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li> <li>•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li> </ul>	<p>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9조제2항)</p>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징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4.7.28>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 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 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호	200	300	400
라.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2항제3호	100	150	200
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150	200	300
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200	300	400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150	20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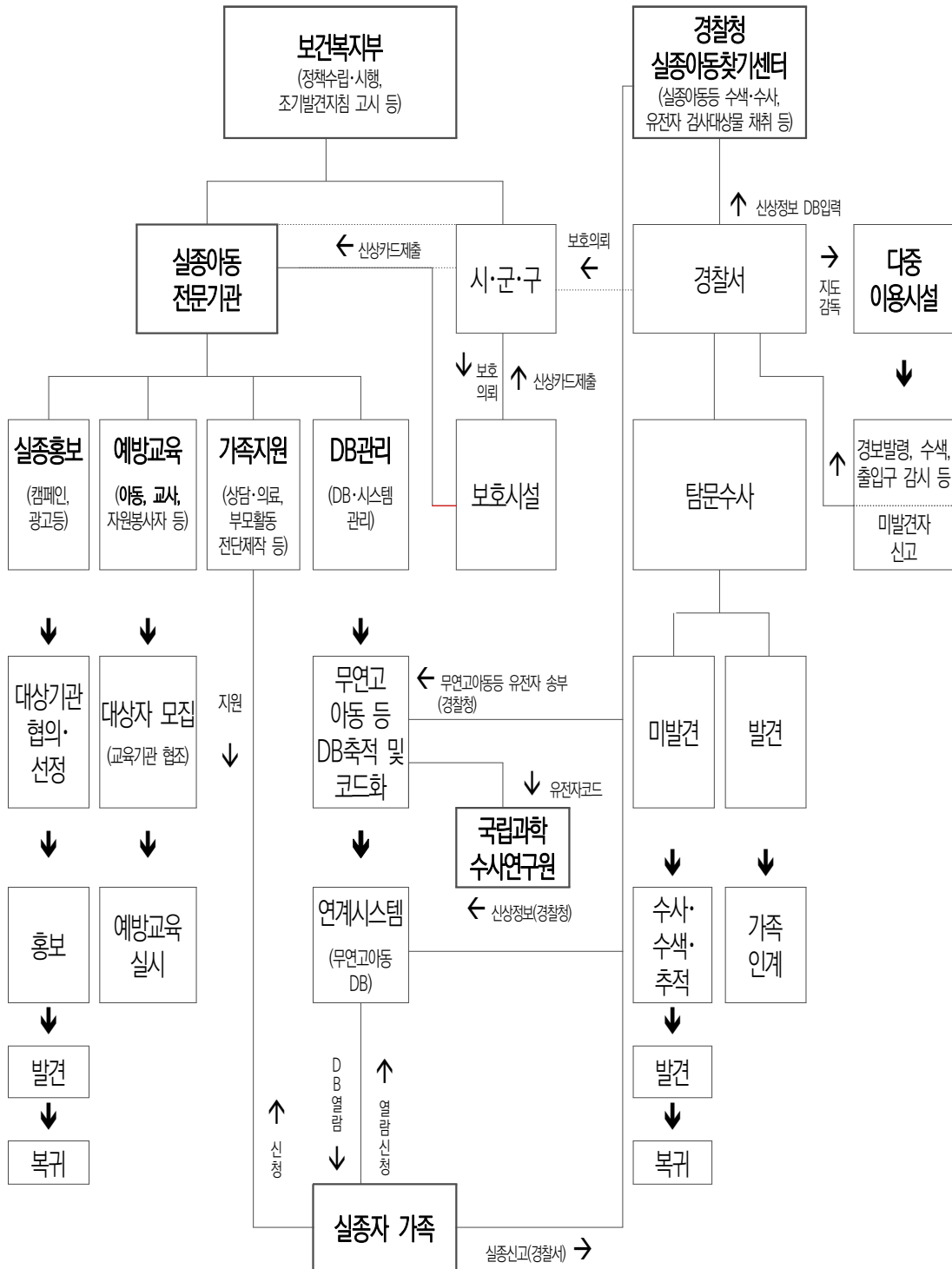
## 2. 실종아동·장애인의 보호업무 처리절차

### 가. 협력체계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수립 및 시행</li> <li>• 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및 유전자 신상정보 DB 구축</li> <li>• 실태조사 및 연구</li> <li>• 실종예방·교육 및 홍보</li> <li>•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li> <li>• 기타 필요 사항</li> <li>•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고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신고 접수</li> <li>• 수색 및 수사</li> <li>• 유전자검사 대상물 채취</li> <li>• 관계장소 출입·조사</li> <li>•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li> <li>•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관서에 실종아동 등 발견 신고</li> <li>※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국번없이 182)</li> <li>• 신상카드 작성·제출여부 지도·감독</li> <li>• 관계장소 출입·조사</li> <li>•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관서에 실종아동등 발견 신고</li> <li>※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국번없이 182)</li> <li>• 신상카드 작성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li> <li>•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 연 1회 실시</li> <li>• 경찰관서에 교육실적 보고</li> </ul>



나. 업무 진행도



###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

#### 가. 의무사항

##### 1) 실종아동법제2조제1호 “아동등” 일시보호센터 우선 보호조치

- 실종아동등 발생시 지정된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 자자체의 장은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 “아동등” 발견 시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매년 일시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1월 말까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 전문기관으로 현황 보고
  - 다만 발생장소와 일시보호센터간 거리가 멀거나, 발견시간이 늦어 일시 보호센터로 이동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보호시설로 보호조치 가능(1일 보호기준)
  - 이 경우 인근보호시설은 일시보호센터에 우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 \* 보호연장 필요시 장기보호시설로 전원조치

#### ※ 일시보호센터 개요

- 추진배경
  - 실종아동등 발생시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분산·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소재추적이 어려워 장기실종으로 연계될 가능성 증대
  - 특히 장애인의 경우 지리 변별력, 의사 전달력, 상황 판단력이 일반인보다 낮아 보호자로 부터 이탈될 경우 장기실종으로 연계되어 수색·수사등 사회적·경제적 비용 유발
- 일시보호센터 역할
  - 실종아동등 발생시 일시보호센터에서 우선 보호조치
  - 신상카드 작성(시행규칙 별지 제2호)

##### 2) 신고의무 및 신상카드 제출 (실종아동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경우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를 작성, 경찰신고체계로 제출(실종아동법 제6조제2항)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접수서 및 신고접수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하되,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가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접수서 및 그 사본을 지체없이 폐기하고 폐기 책임자 및 폐기에 관한 최종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관(실종아동법시행규칙 제3조)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아동등의 신상카드를 제출 받음(실종아동법 제6조제3항)
- 출생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 경찰청장에게 사본 송부(실종아동법 제6조제4항)
  -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
- 경찰청장이 해당 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확인한 경우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 사본을 송부(실종아동법 제6조제4항)

### 3) 실종아동등 복귀절차 등 (실종아동법시행규칙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등의 인수확인을 받아야 함

### 4) 지도·감독 (실종아동법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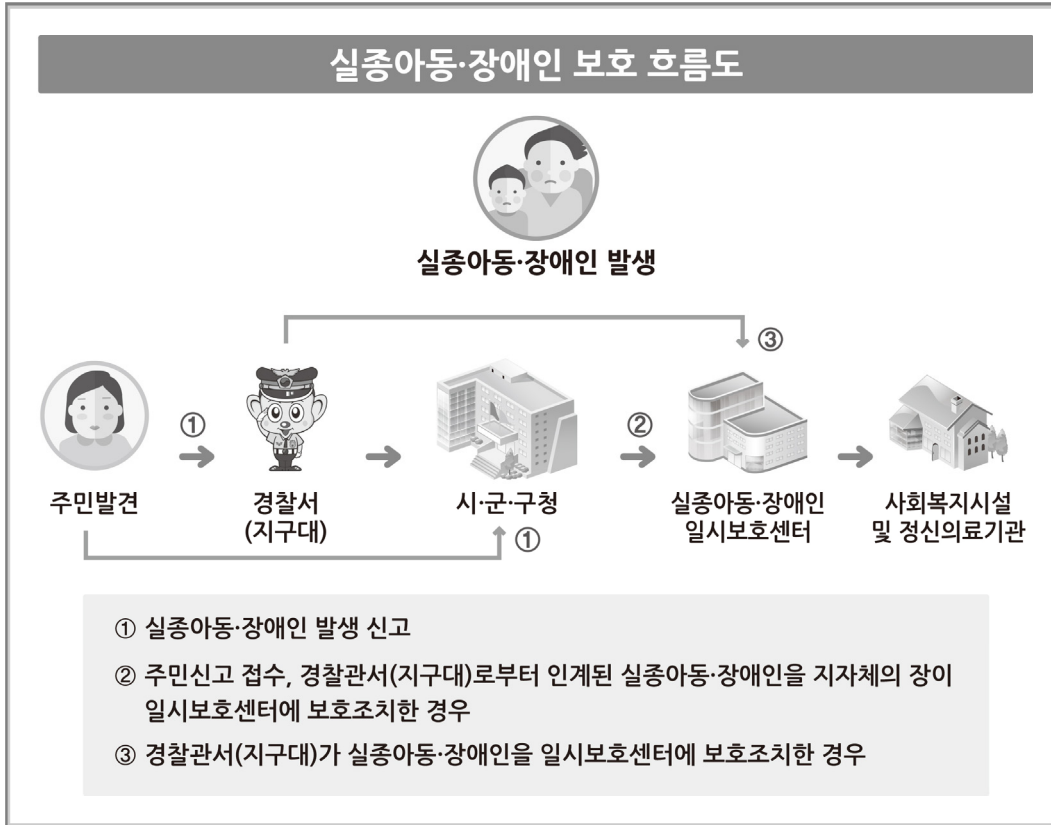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의무와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 5) 관계장소 출입·조사 (실종아동법 제10조)

-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질문할 수 있음
-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할 수 있음
-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내보여야 함

### 6) 신상정보의 목적외 이용금지 (실종아동법 제15조)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 나. 행정사항

### 1) 신상카드 제출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 “아동등”이 입소할 수 있는 보호시설(일시 보호센터 포함) 및 정신 의료기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들에 대한 신상카드가 누락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 실종아동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시설 및 동법제6조제3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상카드 제출의무 안내(연 2회 이상)
    - 실종아동법제2조제1호 “아동등” 일시보호현황(보호아동 전원·퇴소이력 등) 점검
    - 실종아동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시설 및 동법제6조제3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제출된 신상카드 정보 점검 등
- \* 특히, 이름, 성별, 생년월일, 신장, 체중, 발견장소, 입소동기, 보호장소, DNA 채취여부, 사진 첨부여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 필요

-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 “아동등”의 일시보호 실적을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시·도지사는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보고(이후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 보고양식은 추후 통보
- 보호시설(일시보호센터 포함) 및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종아동등을 보호할 경우 신상카드(시행규칙 별지 제2호)를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운영중인 “실종아동찾기 연계 시스템”(www.missingchild.or.kr)을 활용하여 제출

## 2)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무연고자 점검 철저

- 지자체의 장은 실종아동·장애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청의 보호 시설(일시보호센터 포함) 및 정신의료기관 등 일제 점검시 적극 협조하며, 보호시설(일시보호센터 포함) 및 정신의료기관 등의 입소·전원·퇴소·신상카드 제출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

## 3) 지자체 담당공무원 업무인수인계 및 교육

-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공무원 변동시 반드시 실종아동·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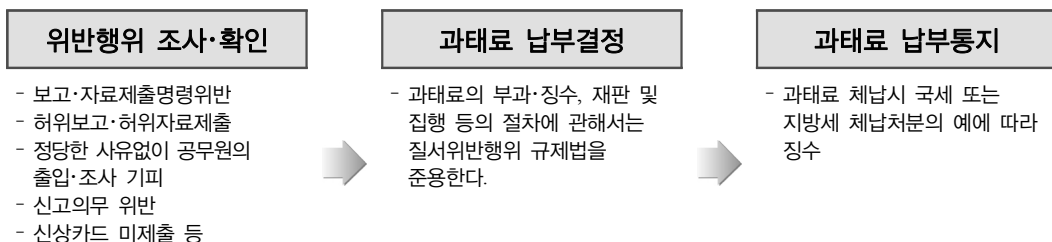
## 4)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업무 관련 관계기관 간 적극 협조

- 경찰관서의 보호시설 무연고자에 대한 DNA채취, 출입·조사 등
-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신상카드 DB구축, 발생예방 사업, 홍보·교육 업무, 가족지원 등

## 다. 과태료 부과·징수

1)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 2) 과태료 징수절차



## 4.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장애인 관련 지침('09.9.29)

### 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장애인이란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장애인의 구체적 범위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들은 실종아동법상 신상카드 제출 및 유전자 채취의 대상이 됨.

### 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시설구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아동·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아동복지 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li> <li>•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새로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으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li> <li>- 시설장 등을 보호자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li> <li>- 다만, 후견인 및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양된 아동 중 친권포기각서가 있는 경우는 연고자로 인정</li> </ul> </li> <li>•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은 있지만 시설입소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번의 방문도 없는 아동 및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보호자 : 부모, (외)조부모, (외)삼촌, 이모, 고모</li> </ul> </li> </ul> </li> <li>• 일시아동보호시설 등 타 시설에서 전원시 구체적인 보호자 정보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li> </ul>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및 노숙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려환자로서 관리번호 부여받은 실종아동등</li> <li>• (정신보건시설)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호자인 실종아동등</li> <li>•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 후 새롭게 성과 본을 창설(가족관계등록(호적취득))한 실종아동등</li> <li>•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 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번의 방문도 없는 실종아동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보호자 : 부모, (외)조부모, (외)삼촌, 이모, 고모</li> </ul> </li> </ul> </li> </ul>

## 5. 신상카드 제출 방법

가.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

### 나.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카드 입력

\* www.missingchild.or.kr

-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접속
- ② 로그인(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기관회원 -신상 카드 담당자)
- ③ ‘홈페이지>신상카드>제출하기’에서 신상카드 입력

- 보호중인 무연고 아동·장애인의 보호현황(전원, 퇴소)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입력)한 신상카드 정보 변경

-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접속
- ② ‘홈페이지>로그인>신상카드>제출하기’에서 기존 입력했던 신상카드 목록 확인
- ③ 해당 실종아동등 클릭하여 ‘보호아동등 조치사항’에 변동사항 추가 입력(전원, 퇴소 등) 후 저장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보호중인 무연고 아동·장애인의 보호현황(전원, 퇴소) 변동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동사항을 공문으로 제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선시까지 한시적용  
(아동학대대응과-3591('22.5.2)호 참조)







서식모음

# I. 보호아동 자립지원

1

보호아동 자립지원

〈서식 1호〉 자립지원계획서 ..... 245  
〈서식 2호〉 자립수준평가 ..... 246  
〈서식 3호〉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현황 ..... 247  
〈서식 4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249  
〈서식 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50

(서식 1호)

자립지원계획서		작성일	계획연도	작성자
성명	(성별 : )	생년월일	년 월 일	
학교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 년	<input type="checkbox"/> 1학년 <input type="checkbox"/> 2학년 <input type="checkbox"/> 3학년 <input type="checkbox"/> 4학년	
고등학교 유형	<input type="checkbox"/> 인문계 <input type="checkbox"/> 과학계 <input type="checkbox"/> 외국어계 <input type="checkbox"/> 실업계 <input type="checkbox"/> 예술계 <input type="checkbox"/> 체육계 <input type="checkbox"/> 농업계 <input type="checkbox"/> 직업전문학교 <input type="checkbox"/> 대안학교 <input type="checkbox"/> 검정고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자립 계획(대학진학, 취업 중 선택) ※ 미정 : 희망주거 및 현재 상황만 작성				
□ 진 학	학교구분	<input type="checkbox"/> 2년제 <input type="checkbox"/> 3년제 <input type="checkbox"/> 4년제	희망대학 및 학과	
	등록금조달 방안	<input type="checkbox"/>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국가장학금 <input type="checkbox"/> 대학장학금(각급대학) <input type="checkbox"/> 각급지자체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학자금대출 <input type="checkbox"/> 장학재단 등 <input type="checkbox"/> 친인척부담금(위탁가정외) <input type="checkbox"/> 자립정착금 <input type="checkbox"/> 디딤씨앗통장(CDA) <input type="checkbox"/> 자부담(아르바이트 등) <input type="checkbox"/> 위탁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취 업	희망직종	<input type="checkbox"/> 관리직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사무직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직 <input type="checkbox"/> 판매직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input type="checkbox"/> 기계조작/조립 <input type="checkbox"/> 단순노무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		
	희망직업			
희망 주거 (필수)	정부지원	<input type="checkbox"/> 내지원(전세주택, 영구임대 등) <input type="checkbox"/> 자립지원시설 <input type="checkbox"/> 공동생활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정부지원 외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자기소유의 집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기숙사 <input type="checkbox"/> 고시원 <input type="checkbox"/> 친구집 <input type="checkbox"/> 귀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 )		
현재 상황				
자격증	자격분야	<input type="checkbox"/> 전문직관련 <input type="checkbox"/> 사무직관련 <input type="checkbox"/> 서비스관련 <input type="checkbox"/> 기계/장치관련 <input type="checkbox"/> 기능직관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격증명	발급처	발급날짜	
학원 지원	학원명	과정명	교육기간	
	학원비 부담주체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지방정부 <input type="checkbox"/> 후원자 <input type="checkbox"/> 시설/위탁가정 <input type="checkbox"/> 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input type="checkbox"/> 본인/부모/친인척(위탁가정 외)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업 훈련	기관	과정명	기간	
	분야	<input type="checkbox"/> 관리직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사무직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직 <input type="checkbox"/> 판매직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input type="checkbox"/> 기계조작/조립 <input type="checkbox"/> 단순노무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훈련비 부담주체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지방정부 <input type="checkbox"/> 후원자 <input type="checkbox"/> 시설/위탁가정 <input type="checkbox"/> 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input type="checkbox"/> 본인/부모/친인척(위탁가정 외)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턴십	회사명	기간		
	분야	<input type="checkbox"/> 관리직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사무직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직 <input type="checkbox"/> 판매직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input type="checkbox"/> 기계조작/조립 <input type="checkbox"/> 단순노무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멘 토	구분	<input type="checkbox"/> 보호종료 선배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자 <input type="checkbox"/> 기업임원 <input type="checkbox"/> 휴먼네트워크 <input type="checkbox"/> 위탁부모 <input type="checkbox"/> 위탁가정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친인척(형제자매포함)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연령	전공	<input type="checkbox"/> 학습 <input type="checkbox"/> 취업 <input type="checkbox"/> 예체능 <input type="checkbox"/> 문화 <input type="checkbox"/> 인성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자립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 만15세 ~ 보호종료 전 (매년 1회 수립, 아동복지법 제39조 의거)

(서식 2호)

자립수준평가		평가일	평가연도	작성자
성명	(성별 : )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E-mail		
<b>대상상태 : 진학, 취업 중 선택 ※기타(군입대 등) : 현재 상황만 작성</b>				
<input type="checkbox"/> 진학 ※휴학자 포함	대학구분	<input type="checkbox"/> 2년제 <input type="checkbox"/> 3년제 <input type="checkbox"/> 4년제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대학 및 학과			
	학년	<input type="checkbox"/> 1학년 <input type="checkbox"/> 2학년 <input type="checkbox"/> 3학년 <input type="checkbox"/> 4학년 <input type="checkbox"/> 휴학		
	등록금 조달 (1년기준)	<input type="checkbox"/> 후원금 (        원) <input type="checkbox"/> 국가장학금 (        원) <input type="checkbox"/> 대학장학금(각급대학) (        원) <input type="checkbox"/> 각급지자체 지원금 (        원) <input type="checkbox"/> 학자금 대출 (        원) <input type="checkbox"/> 장학재단 등 (        원)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부담금(위탁가정 외) (        원) <input type="checkbox"/> 자립정착금 (        원) <input type="checkbox"/> 디딤씨앗통장(CDA) (        원) <input type="checkbox"/> 자부담(아르바이트 등) (        원) <input type="checkbox"/> 위탁가정 (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input type="checkbox"/> 진학준비	간략히 작성			
<input type="checkbox"/> 취업	취업 구분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근무기간	년 월	이직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직업군 구분	<input type="checkbox"/> 관리직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사무직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직 <input type="checkbox"/> 판매직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input type="checkbox"/> 기계조작/조립 <input type="checkbox"/> 단순노무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월평균소득	<input type="checkbox"/> 55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5~80만원 <input type="checkbox"/> 81~100만원 <input type="checkbox"/> 101~130만원 <input type="checkbox"/> 131~150만원 <input type="checkbox"/> 151~170만원 <input type="checkbox"/> 171~200만원 <input type="checkbox"/> 201~250만원 <input type="checkbox"/> 250만원 이상		
	저축금액			
<input type="checkbox"/> 취업준비	간략히 작성			
<input type="checkbox"/> 기 타	간략히 작성			
<b>현재 상황</b>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input type="checkbox"/> 수급 <input type="checkbox"/> 미수급	부모생존여부	<input type="checkbox"/> 생존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모름	
자립정착금 수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수급 (0000년) <input type="checkbox"/> 미수급	자립수당 수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수급 (0000.00. ~ 0000.00) <input type="checkbox"/> 미수급	
부모연락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거중 <input type="checkbox"/> 매달 <input type="checkbox"/> 2~3개월에 한번 <input type="checkbox"/> 1년에 한두번 <input type="checkbox"/> 2~3년에 한번 <input type="checkbox"/> 연락없음			
주거현황	정부지원	<input type="checkbox"/> LH지원(전세주택, 영구임대 등) <input type="checkbox"/> 자립지원시설 <input type="checkbox"/> 공동생활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정부지원 외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자기소유의 집 <input type="checkbox"/> 친인척(위탁가정외) <input type="checkbox"/> 기숙사 <input type="checkbox"/> 고시원 <input type="checkbox"/> 친구집 <input type="checkbox"/> 귀가 <input type="checkbox"/> 위탁가정연장거주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자립수준평가 입력 대상자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매년 1회 필요사항 작성

※ 대상상태 : 진학, 취업, 기타 등 (기타 : 진학이나 취업상태가 아닌 아동, 현재 상황만 기입)

<서식 3호>

###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현황

1. 만15세 이상 자립지원계획 수립 대상 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계	만15세	만16세	만17세	계	만15세	만16세	만17세	계	만15세	만16세	만17세
지역별												

2. 만18세 이후 보호종료(연장보호종료 포함) 현황

○ 전체 현황

(단위 : 명)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계	만8세 보호종료	연장 보호종료	계	만8세 보호종료	연장 보호종료	계	만8세 보호종료	연장 보호종료
지역별									

○ 가정위탁 세부 현황

(단위 : 명)

구분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계	만8세 보호종료	연장종료	계	만8세 보호종료	연장종료	계	만8세 보호종료	연장종료
지역별									

3. 보호종료아동 자립 현황

(단위 : 명)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진학	취업	기타	진학	취업	기타	진학	취업	기타
지역별									

4.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주거 현황

○ 아동양육시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단위 : 명)

구분	정부지원				개인부담									
	내주거 지원	자립지원 시설	공동생활 가정	기타	전세	월세	자가	친인척	가숙사	고시원	친구집	귀가	기타	
지역별														

○ 공동생활가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단위 : 명)

구분	정부지원				개인부담								
	내주거 지원	자립지원 시설	공동생활 가정	기타	전세	월세	자가	친인척	가숙사	고시원	친구집	귀가	기타
지역별													

○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단위 : 명)

구분	정부지원				개인부담								
	내주거 지원	자립지원 시설	공동생활 가정	기타	전세	월세	자가	친인척	가숙사	고시원	친구집	귀가	기타
지역별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소득지원 현황

○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지급아동수	총 지원금액	지급아동수	총 지원금액	지급아동수	총 지원금액
지역별						

○ 대학등록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지급아동수	총 지원금액	지급아동수	총 지원금액	지급아동수	총 지원금액
지역별						









서식모음

## II. 디딤씨앗통장(CDA)

1

디딤씨앗통장(CDA)

〈서식 1호〉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253

〈서식 2호〉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신규 지정 및 계좌 일괄 개설 요청서 ..... 255

〈서식 3호〉 디딤씨앗통장 ( )월 매칭 예정 명세 ..... 256

〈서식 4호〉 ( )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매칭지원금 입금 요청서 ..... 257

〈서식 5호〉 디딤씨앗통장 ( )월 적립 및 매칭 결과 ..... 258

〈서식 6호〉 디딤씨앗통장 ( )월 미매칭 명세 ..... 259

〈서식 7호〉 디딤씨앗통장 아동 전·출입, 자격전환 처리 신청서 ..... 260

〈서식 8호〉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 ..... 261

〈서식 9호〉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 262

〈서식 10호〉 디딤씨앗통장 ( )월 지급 명세 ..... 263

〈서식 11호〉 시·도별 아동 가입 및 저축현황 보고 ..... 264

〈서식 12호〉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 265

〈서식 13호〉 대상자 선정 기준표 (예시) ..... 266





〈서식 2호〉

###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신규 지정 및 계좌 일괄 개설 요청서

수신 : (주) 신한은행                      지점

연 번	아동주민 등록번호	아동명	가입 유형	보호 시설명	우편 번호	주 소		전화번호				e- mail	비 고	
						동이상	동이하	휴대전화	일반					

※ 위와 같이 디딤씨앗통장 신규 지정 아동을 일괄 통지하오니 디딤씨앗 적립 예금과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 신탁 계좌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유형 :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보호치료시설, 3. 아동직업훈련시설, 4. 기타 아동시설, 5. 가정위탁, 6. 소년소녀 가정, 7. 공동생활가정, 8. 장애인생활시설, 9.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담당공무원 :	(전화 :	FAX :	)
---------	-------	-------	---

<서식 3호>

## 디딤씨앗통장 ( )월 매칭 예정 명세

(작성 기준일 : 20 년 월 일)

수신 : (시·군·구) 귀중

발신 : (주) 신한은행 지점

시·군·구 명	보호유형	보 호 시설명	아동명	주 민 등록번호	적금계좌	아동적립금		매칭계좌	매칭 예정금액
						기 본 적립금	추 가 적립금		
합 계									

※ 위와 같이 디딤씨앗 대상 아동에 대한 매칭 예정액을 통지하오니 귀 시·군·구의 매칭 지원금 처리용 유동성 계좌에 매월 15일까지 합계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칭 금액의 처리 : 비밀번호 없이 무통장, 무인감으로 해당 계좌에서 인출, 각 아동별 CDA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에 자동 입금 처리

20 년 월 일

(주) 신한은행 지점 (인)

문의 안내 : (전화 : FAX : )

<서식 4호>

( )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매칭지원금 입금 요청서

수신 : (주) 신한은행                      지점

연번	아 동 주민등록번호	아동명	계좌번호	아 동 적립금	정부(지자체) 매칭액	비 고 (제외 사유 등)

※ 위와 같이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에 대한 매칭 지원액을 통지하오니 우리 시·군·구 예금 계좌( - - )  
에서 비밀번호 없이 무통장, 무인감으로 인출하여 각 아동별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문의 안내 :	(전화 :	FAX :	)
---------	-------	-------	---

〈서식 5호〉

## 디딤씨앗통장 ( )월 적립 및 매칭 결과

(작성 기준일 : 20 년 월 일)

수신 : (시·군·구) 귀중

시·군·구명	보호 유형	보호 시설명	아동명	주민 등록 번호	적금 계좌	( )월		매칭 계좌	(조회월 익월)월			누 계			월평균 적립액				
						아동적립			전월기 준금액 매칭액	아동적립		적립금	매칭금	합계					
						기본 적립	추가 적립			기본 적립	추가 적립					합계			
합 계																			

문의 안내 : (전화 : FAX : )



〈서식 6호〉

### 디딤씨앗통장 ( )월 미매칭 명세

(작성 기준일 : 하단 설명 참조)

수신 : (시·군·구) 귀중

발신 : (주) 신한은행

지점

시·군·구명	보호 유형	보호 시설명	아동명	주 민 등록번호	매칭 누락연월	해당연월 아동적립액	매칭 계좌번호	매칭대상금액
합 계								

- ※ 본 보고서는 조회기간에 해당하는, 아동적립액에 대해 누락된 현황을 표시함
- ※ 위 명세에 대한 매칭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해 '입금지시서 송부' 메뉴를 선택하고, 해당 매칭 누락 월을 선택하여 매칭처리 하시기 바람
- ※ 보호구분 기타의 경우 입양기관에서 보호 중인 입양대상아동,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선택

문의 안내 : (전화 : FAX : )

<서식 7호>

## 디딤씨앗통장 아동 전·출입, 자격전환 처리 신청서

수신 : (주) 신한은행          지점

연번	발생일	아 동 주민등록번호	아동명	전,출입, 자격전환 구분	보호 시설명	상대 지자체	
						시·군·구	아동보호 시 설

- ※ 위와 같이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 아동에 대한 전·출입 및 자격전환 사항을 통지합니다.
- ※ 전출 지자체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출신청' 등록 완료 후 은행의 승인과 동시에, 디딤씨앗통장 아동의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의 지자체간 양수·도 처리가 완료됨.
- ※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의 신분 변동에도 불구하고 디딤씨앗통장 수혜를 위한 자격 유지 가능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담당공무원 :	(전화 :	FAX :	)
---------	-------	-------	---

<서식 8호>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					
지원신청 아동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		휴대전화	E-mail	
	주소	( )			
	거주지*	( )			
보호구분 (해당란에 한개만 ✓ 표시)	<input type="checkbox"/> 아동양육시설 <input type="checkbox"/> 아동보호치료시설 <input type="checkbox"/> 아동직업훈련시설 <input type="checkbox"/> 가정위탁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 <input type="checkbox"/> 공동생활가정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생활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가구				
후견인 보호자 등	후견인 (법정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	전화	휴대전화	
		주소 ( )			
	보호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	전화	휴대전화	
		주소 ( )			
지급구분	<input type="checkbox"/> 만기해지 <input type="checkbox"/>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input type="checkbox"/> 조기인출 <input type="checkbox"/> 중도해지(환수)				
사 용 용 도 (해당 란에 ✓ 표시하고, 세부내용을 작성할 것)	<input type="checkbox"/> 학자금 <input type="checkbox"/> 자격취득 및 취업훈련 <input type="checkbox"/> 창업자금 <input type="checkbox"/> 주거마련 <input type="checkbox"/> 의료비지원 <input type="checkbox"/> 결혼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용용도 세부내용 요약> ※ 붙임 : 사업계획서, 청구서(사용처에 계좌입금) 등 관련서류				
입금정보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받은 전문상담 서비스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 _____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서명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거주지는 아동이 거주지 담당 신한은행 지점에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작성
- 보호구분 기타의 경우 입양기관에서 보호 중인 입양대상아동,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선택
  - 구비서류 : 관련 사업계획서, 청구서(사용처에 계좌입금) 등
    - ※ 신청 후 담당 시·군·구가 (주)신한은행에 지급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해당 일에 입금 계좌에 입금되며,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의 경우 입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식 9호〉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수신 : (주) 신한은행 지점

신청인 (아동명)	(인)	주민등록번호	
총 출금 금액	원	출금 구분 (해당란에 표기) ※ (주) 참조	<input type="checkbox"/> 만기해지 <input type="checkbox"/>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input type="checkbox"/> 조기인출 <input type="checkbox"/> 중도해지(환수)
출금 계좌 번호 (디딤씨앗 적립예금)		출금 금액	원
출금 계좌 번호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출금 금액	원
입금 정보	예금주명	입금 은행명	
		입금 계좌번호	

- (주) 1. 만기해지 - 만기후 지급요건 충족시  
 2.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만기후 대학생활지원비 요청시  
 3. 조기인출 - 15세 이상 아동이 3년 이상 가입후 지급요건 충족시  
 4. 중도해지(환수) - 사망, 이민, 오류입력 등으로 중도해지 필요한 경우

상기 아동의 요청에 따라 위 디딤씨앗 적립 예금 및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의 지급을 요청하오니, 출금하여 위 입금 계좌 번호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본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에 해당 시·군·구가 디딤씨앗통장 사업용으로 기 제출한 사용 인감을 날인한 경우, 위 출금 및 경유 계좌에서 비밀번호 없이 무통장, 무인감으로 해지 및 지급 처리가 된 경우 유효한 해지 및 지급 거래로 한다.

담당공무원 :	(전화 :	FAX :	)
---------	-------	-------	---

※ 반드시 기업인터넷 뱅킹상 지급요청 등록 후 인쇄된 양식사용



〈서식 11호〉

### 시·도별 아동 가입 및 저축현황 보고

구 분	보호대상아동								기초 수급	만기 해지	지원 중지
	아동 양육 시설	가정 위탁	소년 소녀 가정	공동 생활 가정	장애 인 시설	일시 보호 시설	가정 복귀	입양 대상			
1. 가입대상아동수(명)											
2. 지원아동수(명) * 만 18세 미만의 계좌 가입 아동											
3. 저축아동수(명)											
4. 아동적립금 총 금액(원)											
5. 아동 1인당 월평균 적립금(원) * 아동적립금총액 / 월평균 저축아동수											
6. 매칭지원금 총 금액(원)											
7. 아동 1인당 월평균 매칭지원금(원) * 매칭지원금총액 / 월평균 저축아동수											



(서식 13호)

### 대상자 선정 기준표 (예시)

□ 심사자 : (소속 및 직위) (성명)

□ 심사결과 :

※ 총점순으로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입 대상자를 확정

구 분	심사항목	배점		심사결과
가구특성 (필수공통)	① 법정지원가구 (가.~다.)	해당있음	5점	점
		해당없음	0점	
	② 다자녀 가구	1자녀	1점	점
		2자녀	2점	
		3자녀 이상	3점	
	③ 주 소득자(또는 세대주)의 나이	30세 미만	0점	점
		30세 이상 40세 미만	1점	
		40세 이상 50세 미만	2점	
		50세 이상	3점	
	저축 경험 (필수공통)	④ 자동이체여부 (향후 저축 유무)	있음	2점
없음			0점	
⑤ 보호자 저축 경험		있음	3점	점
		없음	0점	
기타 (선택)	시·군·구 판단 하에 추가 (예시: 자원봉사 경험, 학업성취도 등)			점
<b>총 점</b>				<b>점</b>

※ 법정지원가구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이 세대주인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세대주인 가족





서식모음

## Ⅲ.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1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서식 1호〉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서 .....	269
〈서식 2호〉 사업수행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270
〈서식 3호〉 참여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271
〈서식 4호〉 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 .....	272

〈서식 1호〉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서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서

연번	지역		신청 기관					주담당자 신청				보조담당자 신청				아동 신청									
	시도	시군구	기관 유형	기관명	대표자 성명	대표 전화	대표 메일	우편 번호	기관 주소	성명	성별	직급/직위	연락처 이메일	양성 교육 이수 여부	성명	직급/직위	담당 업무	사이버 교육 이수 여부	아동 성명	성별	재학 현황	주담당자 성명	경계선 지능 여부	종합 심리 검사 실시 일자	전체 지능 지수





〈서식 4호〉 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

### 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

■ 다음에 아동의 행동 특징이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지난 1~3개월 동안 이러한 행동특성을 보였는지 확인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점수가 커질수록 '매우 그렇다'에 가깝습니다. 평균 1.18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경계선지능 의심아동으로 판단합니다.

실시일자	작성자명				
아동명	생년월일				
번호	구분	표시			
	0: 전혀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0	1	2	3
1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면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3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낸다.				
4	집중시간이 짧다.				
5	이해하기 쉬운 내용에서는 집중한다.				
6	내용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항상 집중하지 못한다.				
7	필요 이상으로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				
8	학교(또는 유치원 등)에서 친하게 지내는 또래가 거의 없다.				
9	큰 다툼이나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동적 행동을 한다.				
10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한다.				
11	다른 사람을 때리는 폭력적 행동을 한 적이 있다.				
12	다른 사람을 때리는 폭력적 행동 때문에 상담이나 약물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				
13	물건이나 기물을 부수는 폭력적 행동을 한 적이 있다.				
14	물건이나 기물을 부수는 폭력적 행동 때문에 상담이나 약물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				
15	상대를 가리지 않고 욕설을 할 때가 있다.				
16	상황이나 장소에 맞지 않게 큰소리로 말해서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다.				
17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거나 학습을 시킬 때, 금방 알려주었는데도 다시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18	한 가지를 알려주면 하나는 알지만 조금만 응용이 되면 전혀 적용을 못한다. 따라서 매번 모든 경우를 다 알려주어야 한다.				
19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한다.				
20	같은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더 과격하게 반응한다.				
21	누군가 쳐다보거나 이름을 부르는 등의 사소한 일에도 과잉반응하는 편이다				

번호	구분 0: 전혀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표시			
		0	1	2	3
22	놀잇감이나 옷장 정리, 심부름 등을 시킬 때, 또래에 비해 평균 이상으로 지시를 자세히 해야 한다.				
23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말수가 매우 적다.				
24	계획에 변동이 생기면 크게 화를 낸다				
25	대화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듣지 않거나 질문하지 않는다.				
26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27	지시나 설명을 반복해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28	상대방의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지 않거나 엉뚱한 답을 한다.				
29	말하고 싶은 단어를 생각해내지 못해서 “어~”, “그거 있잖아요.”등을 반복한다.				
30	일상적인 일, 음식, 장소 등이 바뀌는 것을 싫어한다.				
31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 때와 끼어들지 않아야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불쑥 끼어들 때가 있다.				
32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해야 할 때 가만히 있어서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 때가 있다.				
33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말하지 못한다.				
34	일상적인 대화 이외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잘 말하지 않는다.				
35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적절한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				
36	도움을 청하거나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기 어려워한다.				
37	말할 차례가 됐을 때, 말하려고 했던 것을 잊어버려서 못할 때가 있다.				
38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예전 일에 대해 물어보면 기억해서 이야기하지 못한다.				
39	자신이 이미 해놓은 일인데도, 물어보면 자신이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40	자신이 마쳐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41	단순한 암산 문제처럼 잠깐동안 정보들을 기억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에 대답하지 못한다.				
42	간단한 규칙이나 지문에 대한 내용을 듣거나 읽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43	호기심이 적어서 사물이나 개념에 대해 “이게 뭐예요?”, “왜요?” 등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				
44	게임과 같은 것을 제외하고, 재미없는 무엇인가를 할 때에 쉽게 산만해진다.				
45	질문했을 때 대답을 들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				
46	친구사귀기가 어렵다.				
47	특정 기술이나 과제에서 실패했을 때,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48	자주 운다.				
49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 착석이 어렵다.				
50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일 수 있는데 잘 모른다.				

번호	구분	표시			
		0	1	2	3
	<b>0: 전혀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매우 그렇다</b>				
51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다.				
52	새로운 상황(학년이 바뀌거나 시설에서 방이 바뀔 때)에 적응할 때 어려워한다.				
53	내내 우울하다가 갑자기 지나치게 흥분하는 등 기분변화가 심하다.				
54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만큼 매우 의존적이다.				
55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동이나 실천을 하지 못한다.				
56	방 안이나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57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58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59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60	근심스럽거나 답답해하며 활기가 없어 우울해 보인다.				
61	자주 다른 사람을 닮았거나 비난한다.				
62	자신의 나이보다 더 어린 아이처럼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자주 있다.				
63	갈등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예: 체격이 큰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에서 작은 아이가 때려도 맞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이다).				
64	사소한 자극에도 반응하느라 집중하지 못한다.				
65	다른 사람들로 부터 연령에 비해 순진하고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66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데 흐름과 무관한 엉뚱한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다				
67	행동이 느리다.				
68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69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다.				
70	같이 지내는 우리들 사이에서 혼자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71	책상 위나 서랍, 옷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72	자기 물건을 놓아둔 위치를 자주 잊어버려서, 찾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				
73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74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이다.				
75	자신의 행동이 남을 성가시게 함을 잘 깨닫지 못한다.				
76	평상시에 순하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분노폭발처럼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77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는다.				
78	놀이 할 때 규칙이해를 어려워한다.				
79	약속이나 규칙 지키기를 자주 잊는다.				



번호	구분	표시			
		0	1	2	3
	0: 전혀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80	배경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상식적인 질문에도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동물원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아무 것도 떠올리지 못하는 아동				
81	학습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82	초등학교 입학유예 또는 학교 재학 중에 학년유급을 고려한 적이 있다.				
아래의 항목들은 학습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83	한글 읽기가 능숙하지 않다.				
84	책을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물어보면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한다.				
85	지시사항이나 지문을 보고 적합한 행동이나 답을 하지 못한다.				
86	글을 쓰거나 문자를 보낼 때 맞춤법을 틀린다.				
87	흘려 쓰거나 잘 못 써서 글씨를 제대로 알아보기가 힘들다.				
88	사칙연산(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못하는 연산이 있다.				
89	돈 계산을 잘하지 못한다.				
90	시계 보기를 잘못한다. 약속된 시간에 맞추려면 집에서 몇 시쯤 나서야 할지 알지 못한다.				
91	어떤 일을 끝마치는데 필요한 시간을 예측하지 못한다.				
92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다.				
93	암산으로 한 자리수의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하지 못한다.				
94	과제나 시험 등을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기를 어려워 한다.				
95	현재의 학년에 적합한 수준의 학습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학업진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96	학습 도움받이나 특수학급에 들어갈 것을 권유받은 적이 있다.				





서식모음

## IV. 자립수당

1

자립수당

〈서식 1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279  
〈서식 2호〉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 ..... 281  
〈서식 3호〉 사회보장급여통지서 ..... 282  
〈서식 4호〉 이의 신청서 ..... 285  
〈서식 5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286  
〈서식 6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 287  
〈서식 7호〉 보호종료 확인서 ..... 288  
[참고자료 1]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전국 지사 현황 ..... 289

(서식 1호)

(앞쪽)

<b>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b>						처리기간 별도안내
<b>1. 신청인</b>						
대상 아동	성명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압류방지통장 여부 [ ] 네 [ ] 아니오				
대리인	성명	대상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 메시지 [ ] 기타( )				
<b>2. 보호기관</b>						
보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명 (위탁부모)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보호기관(위탁가정) 주소						
E-mail				보호구분	<input type="checkbox"/> 아동양육시설 <input type="checkbox"/> 공동생활가정 <input type="checkbox"/> 아동일시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아동보호치료시설 <input type="checkbox"/> 가정위탁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호구분 기타사유						
* 보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는 최종 보호 종료된 아동복지법 상 시설 기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만 작성)						
<b>3.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연락처, 주민등록정보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b>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별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뒷면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 위와 같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b>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b>						

(뒤쪽)

안내사항			
처리기한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관계 법률	아동복지법
첨부서류 (해당자)	1. 사이버강의 이수증 4. 압류방지 통장 사본	2. 신분증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5. 자격확인 증빙서류(보호종료 확인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확 인 (√ 체크)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b>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b>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 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b>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 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b>			[ ]
2. 자립수당을 받으면서 <b>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주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b> 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b>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b> (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받은 자 또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받게 한 자로부터 <b>환수할 수 있습니다.</b>			[ ]
4. 자립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b>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b>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추후 사례관리 등 자립수당 수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자립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5. <b>자립수당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b>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6.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b>자립수당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b>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7.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신청·접수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확인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사·군·구)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보장 결정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사·군·구)                 </div>
	← 신청결과 통지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서식 3호〉 사회보장급여통지서

[1 면]

사회보장급여 [ ] 결정(적합) [ ] 결정(대상제외)  
[ ]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신청인/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 귀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지급 예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 아동은 수급권 상실·정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상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난민 인정 취소 등
  - 정지 :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등
    - ※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 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단,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변경 :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등
-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됩니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2 번]

[ ] 대상 제외	
신청 내용	보장구분
대상 제외 사유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 수급자격심의회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경우 여성청소년이 만11세 이상 만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변경·정지·중지·상실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 ] 변경	사 유		[ ]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변경 [ ]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 ] 가구의원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 가구의원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 조제분유 추가지원 [ ] 기타( )
[ ] 정지	사 유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기타( )
[ ] 중지	사 유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 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 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3개월 연속 이용하지 않은 경우 [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 [ ] 기타( )
[ ] 상실	사 유		[ ] 사망 [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연금 수급권 발생 [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수급연령 초과(생후 71개월이 되는날) [ ] 국적상실 [ ] 국외이주 [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 장애정도의 변경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미해당 [ ]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 기타(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비 고 |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5) **아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6)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 7)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http://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서식 7호〉 보호종료 확인서

## 보호종료 확인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관련사항	보호종료 기관명		보호종료 기관 유형
	기관주소		기관 연락처
	입소일(위탁보호일)		종료일(위탁종료일)
담당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위 사람은 보호종료아동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참고자료 1]

##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전국 지사 현황 [총 20개소]

순 번	지 역	지사명	연락처
1	서울북부	서울북부지역본부	02-2176-9940
2	경기북부	남양주지사	031-523-6373
3	서울남부	서울남부지역본부	02-3416-6112
4	서울남부	송파지사	02-3433-5874
5	강 원	춘천지사	033-259-7772
6	경기남부	경인지역본부	031-229-4120
7	인천·부천·시흥·광명	남동연수지사	032-451-0706
8	세 종	대전세종지역본부	044-715-1864
9	충 남	천안지사	041-550-8995
10	대 전	서대전지사	042-480-4852
11	충 북	동청주지사	043-251-5135
12	광 주	광주지역본부	062-958-2023
13	전 남	목포지사	061-240-3373
14	전 북	전주완주지사	063-270-5365
15	제 주	제주지사	064-720-4145
16	대 구	대구지역본부	053-589-4548
17	구 미	구미지사	054-450-8573
18	울 산	남울산지사	052-226-2188
19	부 산	부산지역본부	051-797-7016
20	창원·마산	창원지사	055-278-9094







서식모음

## V.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1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서식 1호〉 자립수준평가 .....	293
〈서식 2호〉 사후관리 계획서 .....	294
〈서식 3호〉 사후관리 종료(해지)보고서 .....	295
〈서식 4호〉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	296
〈서식 4-1호〉 사후관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297
〈서식 5호〉 바람개비서포터즈 신청서 .....	298
〈서식 6호〉 보호종료 확인서 .....	299
〈서식 7호〉 바람개비 서포터즈 개인정보 동의서 .....	300
〈서식 8호〉 바람개비 서포터즈 위촉장 .....	301
〈서식 9호〉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정산내역서 .....	302

〈서식 1호〉 자립수준평가

자립수준평가		평가일	평가연도	작성자
성명	(성별 : )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E-mail		
<b>대상상태 : 진학, 취업 중 선택 ※기타(군입대 등) : 현재 상황만 작성</b>				
<input type="checkbox"/> 진학 ※휴학자 포함	대학구분	<input type="checkbox"/> 2년제 <input type="checkbox"/> 3년제 <input type="checkbox"/> 4년제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대학 및 학과			
	학년	<input type="checkbox"/> 1학년 <input type="checkbox"/> 2학년 <input type="checkbox"/> 3학년 <input type="checkbox"/> 4학년 <input type="checkbox"/> 휴학		
	등록금 조달 (1년기준)	<input type="checkbox"/> 후원금 (        원) <input type="checkbox"/> 국가장학금 (        원) <input type="checkbox"/> 대학장학금(각급대학) (        원) <input type="checkbox"/> 각급지자체 지원금 (        원) <input type="checkbox"/> 학자금 대출 (        원) <input type="checkbox"/> 장학재단 등 (        원)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부담금(위탁가정 외) (        원) <input type="checkbox"/> 자립정착금 (        원) <input type="checkbox"/> 디딤씨앗통장(CDA) (        원) <input type="checkbox"/> 자부담(아르바이트 등) (        원) <input type="checkbox"/> 위탁가정 (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input type="checkbox"/> 진학준비	간략히 작성			
<input type="checkbox"/> 취업	취업 구분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근무기간	년 월	이직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직업군 구분	<input type="checkbox"/> 관리직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사무직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직 <input type="checkbox"/> 판매직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input type="checkbox"/> 기계조작/조립 <input type="checkbox"/> 단순노무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월평균소득	<input type="checkbox"/> 55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5~80만원 <input type="checkbox"/> 81~100만원 <input type="checkbox"/> 101~130만원 <input type="checkbox"/> 131~150만원 <input type="checkbox"/> 151~170만원 <input type="checkbox"/> 171~200만원 <input type="checkbox"/> 201~250만원 <input type="checkbox"/> 250만원 이상		
	저축금액			
<input type="checkbox"/> 취업준비	간략히 작성			
<input type="checkbox"/> 기 타	간략히 작성			
<b>현재 상황</b>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input type="checkbox"/> 수급 <input type="checkbox"/> 미수급	부모생존여부	<input type="checkbox"/> 생존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모름	
자립정착금 수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수급 (0000년) <input type="checkbox"/> 미수급	자립수당 수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수급 (0000.00. ~ 0000.00) <input type="checkbox"/> 미수급	
부모연락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거중 <input type="checkbox"/> 매달 <input type="checkbox"/> 2~3개월에 한번 <input type="checkbox"/> 1년에 한두번 <input type="checkbox"/> 2~3년에 한번 <input type="checkbox"/> 연락없음			
주거현황	정부지원	<input type="checkbox"/> LH지원(전세주택, 영구임대 등) <input type="checkbox"/> 자립지원시설 <input type="checkbox"/> 공동생활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정부지원 외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자기소유의 집 <input type="checkbox"/> 친인척(위탁가정외) <input type="checkbox"/> 기숙사 <input type="checkbox"/> 고시원 <input type="checkbox"/> 친구집 <input type="checkbox"/> 귀가 <input type="checkbox"/> 위탁가정연장거주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자립수준평가 입력 대상자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매년 1회 필요사항 작성

※ 대상상태 : 진학, 취업, 기타 등 (기타 : 진학이나 취업상태가 아닌 아동, 현재 상황만 기입)

〈서식 2호〉 사후관리 계획서

## 사후관리 계획서

작성자성명:

작성일:

아동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사후관리 담당자	담당자명		직위	
사후관리 구분	<input type="checkbox"/> 기본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사후관리 방법	<input type="checkbox"/> 대상자(가정)방문 <input type="checkbox"/> 시설·기관 내방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사후관리 주기	<input type="checkbox"/> 년1회 <input type="checkbox"/> 6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3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주요 사후관리 내용				
비고 (담당자 의견 등)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계획 시 목표, 제공될 서비스, 서비스 제공방법, 모니터링 방법, 평가방법 등 포함

〈서식 3호〉 사후관리 종료(해지)보고서

### 사후관리 종료(해지)보고서

작성자성명:

작성일:

아동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사후관리 담당자	담당자명		직위	
	사후관리기간	0000.00.00 ~ 0000.00.00		
종료 유형	<input type="checkbox"/> 기간만료(5년도래)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거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지립실행 사후관리 평가				
비고 (담당자 의견 등)				
사후관리 대상자 확인란 ※ 대상자 사후관리 거부 시 사용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후관리 서비스 종료(해지)에 동의합니다.			대상자 이름 : (인)

〈서식 4호〉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사후관리 담당자	성명		직위	
사후관리 방법	<input type="checkbox"/> 대상자(가정)방문 <input type="checkbox"/> 시설·기관 내방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사후관리 주기	<input type="checkbox"/> 연 1회 <input type="checkbox"/> 6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3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단, 사후관리 중 협의에 따라 주기를 변경 할 수 있음			
개인정보 공개 및 관리	<p>본 동의서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사후관리 진행내용은 내부자료로 보관된다. 사후관리 담당자는 개인의 정보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퇴소 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p> <p>※ 제3자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사후관리 목적에 한하여 대상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 및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사후관리 동의 획득을 본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p>			
대상자와 사례관리자의 의무	<p>해당 대상자는 신상의 어려움이나 변동이 있을 경우 사후관리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사후관리 담당자는 모든 과정에 대한 사실과 기록을 대상자와 함께 공유해야 하며, 대상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p> <p>또한 대상자는 퇴소 후 자립수준평가(자립상태점검)에 응하고 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한다.</p>			
비고	<p>본 동의서는 사후관리와 계획에 대하여 본 기관과 대상자가 상호 협의한 내용이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문제 및 어려움이 있을 때 아동과 사후관리 담당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p>			
동의확인	<p>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상기와 같이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권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획득자(자립지원전담요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획득자(자립지원전담인력) :                      (서명 또는 인)</p>			











〈서식 8호〉 바람개비 서포터즈 위촉장

## 위 촉 장

〇 〇 〇

귀하를 보호아동의 멘토로서 후배들이 스스로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제 기 「바람개비  
서포터즈」로 위촉합니다.

202x년 xx월 xx일

보건복지부장관 〇〇〇

〈서식 9호〉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정산내역서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정산내역서

□ 전담기관

- 전담기관명 :
- 담 당 자 :
- 대상아동수 :

□ 정산기간 :

□ 사업내용

- 
-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항	세항 (지출항목)	비목	소요예산	지출액	산출내역	잔액
계			0,000,000	0,000,000	-	0,000,000
사업비	상담비	자립지원비	000,000	000,000	0,000원×00권	000,000
		식비 및 다과비	000,000	000,000	0,000원×00명	000,000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0,000원×00명	
운영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0,000원×00개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 항은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중 작성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번호	지출일자	지출항목	비목	지출액	적요	결의서 번호
합계				0,000,000	-	
1	2019-01-01	상담비	다과비	000	이자립 가정방문상담 다과비	191201
2	2019-01-02	인건비	인건비	000,000	...	...
3	...	인건비	4대보험료	00,000		
4						
5						





서식모음

## VI.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자보호**

〈서식 1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	307
〈서식 2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의무기관 교육결과 .....	308
〈서식 3호〉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자 행정처분 요청서 .....	309
〈서식 4호〉 처분사전통지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서식 제8호) .....	310
〈서식 5호〉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서식 제11호) .....	311
〈서식 6호〉 과태료 부과 고지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312
〈서식 7-1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	313
〈서식 7-2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	314
〈서식 7-3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	315
〈서식 8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316
〈서식 9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317
〈서식 10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318
〈서식 11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 .....	319
〈서식 11-1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320
〈서식 12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 .....	321
〈서식 13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수탁 계약서 .....	323
〈서식 14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 .....	327
〈서식 15호〉 아동학대조사원증 .....	328
〈서식 16호〉 아동학대조사원증 발급대장 .....	329
〈서식 17호〉 승 낙 서 .....	330
〈서식 18호〉 서 약 서 .....	331
〈서식 19호〉 위 촉 장 .....	332
〈서식 20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서면의견서 .....	333
〈서식 21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334
〈서식 22호〉 ○○사업 정산보고서 .....	338
〈서식 23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	342
〈별지 1호〉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종류와 세부자격 기준표 .....	343



<서식 1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시설 또는 기관장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인원			
<증빙자료>			



〈서식 3호〉

###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자 행정처분 요청서

수신	○○ 시·군·구의 장 (신고의무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			
○ 사례개요				
- (발생일시 및 장소)				
- (학대행위자)				
- (피해아동)				
- (피해내용)				
- (사법처리결과)				
- (관할법원)				
○ 신고의무 불이행자 명단				
연번	성명	직군	불이행 내용 및 사유	비고 (거주지 등)
1	000	보육교사		
0000년 00월 00일				
00시·군·구의 장(학대 발생 관할 시·군·구의 장) (인)				

<서식 4호>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서식 제8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3.6.30>

(앞쪽)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모사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기관의 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5호〉

**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서식 제11호)**

[별지 제11호서식]

<b>의견제출서</b>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padding: 5px;">성명(명칭)</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주소</td> <td style="padding: 5px;"></td> </tr> </table>	성명(명칭)		주소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의견제출인 주소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전화 :                      )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성명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귀하                 </p>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li> </ol>				

15012-14111민  
97.10.20 승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서식 6호〉

**과태료 부과 고지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관련)**

**과태료 부과 고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귀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과태료 금액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7. 납부기한	
8. 납부방법	
9. 수납기관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장)



〈서식 7-1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6. 12.)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취업기 관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 용도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동관련기관의 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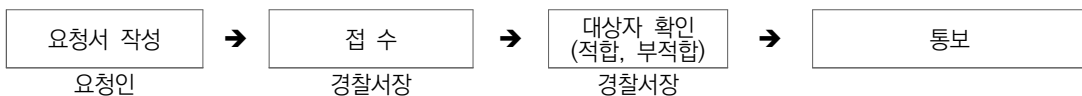
아동관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 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서식 7-2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9. 6. 12.〉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취업 기관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본인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취업자 등: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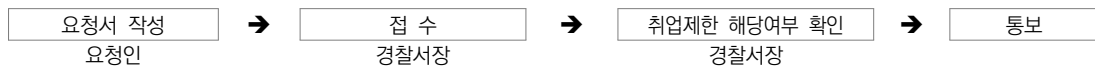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7-3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19. 6. 12.>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취업 기관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 용도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8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9. 6. 12.〉

(앞쪽)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 상 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서식 9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 상 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0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개정 2019. 6. 12.〉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요청인	성명	
	기관명	
대상자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취업제한 해당여부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경찰서장 직인

####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11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신설 2019. 6. 12.〉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

요청인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운영· 취업 기관 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주소  (전화번호: )	
취업제한 해당여부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경찰서장 직인

####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11-1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요청인	성명	
	기관명	
대상자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제한 해당여부 (성범죄)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제한 해당여부 (아동학대관련범죄)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2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7. 16.〉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신청 기관	법인의 명칭	기관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 연월일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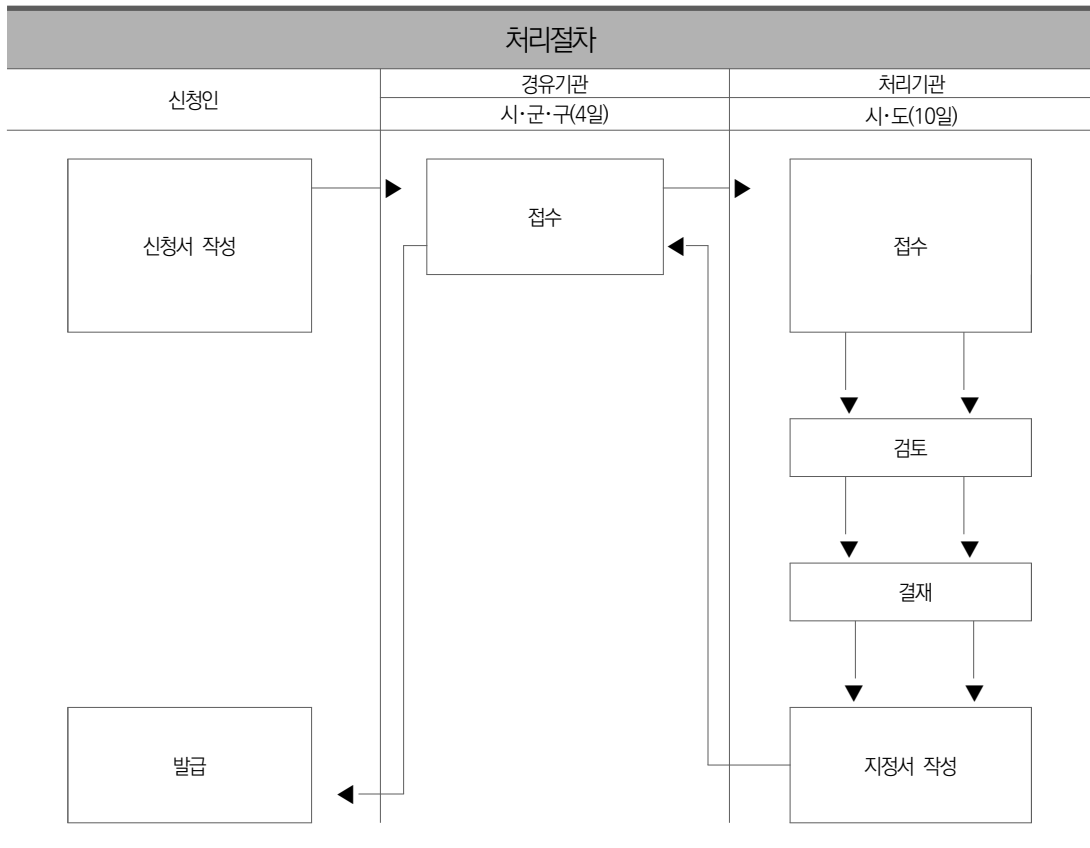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관 1부</li> <li>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li> <li>아동학대예방사업 수행실적 1부</li> <li>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li> <li>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li> </ol>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3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수탁 표준계약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제정 2014. 3.10.

개정 2014. 6.18.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수탁 계약서**

○○○시·도(또는 ○○시·군·구) (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사회복지법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위탁자가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시·도 ○○시, ○○군, ○○구 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대상사업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4. 9.28.까지는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으로 한다)
5. 아동정보시스템 입력 및 보존
6. 지역사회 보건사회서비스 연계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7.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아동의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의뢰
8.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행사 상실 청구 요청(아동복지법 제18조)
9. 후견인이 아동학대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 신청(아동복지법 제19조)
10.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청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다만 특례법이 시행되는 2014. 9.29부터 적용)
11.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00.00.00까지로 한다.

\*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가능

②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의 조정, 변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위탁받은 사업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권리 양도 또는 재 위탁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 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비 보조 등)** ① 위탁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재무 회계규칙,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안내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작성 및 평가)**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연간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러하다.

② 수탁자는 연간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및 실적을 분기별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중요한 업무로 판단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해당 업무 별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업수행평가에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연간 업무수행평가 지표를 공지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인력)** ① 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위탁자에게 임면사항을 즉시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전문기관의 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문서로 사전협의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전문기관의 소관 업무 및 운영 등(이하 “업무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 또는 전문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관리)** ① 수탁자는 운영비의 적정한 관리와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한 각종 장부를 비치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각종 장부와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등)**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에 대하여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횡령, 성범죄,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제8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5.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 또는 담합하여 부당하게 선정된 경우
6.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7. 수탁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해당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정상적인 계약을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위탁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수탁자와의 계약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위탁 기간 중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 시설 포함)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이 계약서의 효력은 제3조에 따른 위·수탁 시작일로부터 발생하며,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해당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계약서의 보관 등)** 위·수탁 기관은 계약 체결 증명 및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월      일

운영 위탁자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부산광역시장    이순신 (인)

※ 새로운 도로명 주소 사용

운영 수탁자 사회복지법인 ○○○(부산광역시    구    동    )  
이 사 장    홍길동 (인)

〈서식 14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

1. 수탁기관의 명칭:
2. 소재지:
3. 사업자등록번호:
4.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
5. 주소:
6. 지정 조건: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서식 15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앞면 〉

<p>제 호</p> <p><b>아동학대조사원증</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height: 100px; margin: 10px auto;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p>사 진</p> <p>3cm×4cm</p> <p>(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p> </div> <p><b>(성명)</b></p> <p><b>발급 기관 명</b></p>
-------------------------------------------------------------------------------------------------------------------------------------------------------------------------------------------------------------------------------------------------------------------------------------------------------------------------------------------

〈 뒷면 〉

<p><b>아동학대조사원증</b></p> <p>소 속:</p> <p>직 급:</p> <p>성 명:</p> <p>생년월일:</p> <p>위 사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질문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b>발급 기관 명</b>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p>
<p>1. 아동학대조사원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할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p> <p>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p> <p>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000) 0000-0000</p>

55mm×85mm[백상지(1종) 120g/m<sup>2</sup>](색상: 연하늘색)



〈서식 17호〉

## 승낙서

성명 :  
생년월일 :  
소속기관명 :  
직책 :  
연락처 :

본인은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OO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으로 위촉받았기에 이를 승낙(承諾)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OO도지사(또는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 120g/㎡]



〈서식 18호〉

## 서 약 서

본인은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00도지사(또는 00시장·군수·구청장)가 설치한 00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업무 상 지득한 각종 정보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할 것이며,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00도지사(또는 00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19호〉

제 201○-○○호

## 위 촉 장

성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귀하를 아동복지법 제46조의2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 120g/㎡]

〈서식 20호〉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서면의견서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회 차	의 수	2000년도 제○차	회의 일자 (의뢰일자)	
신 접	고 수 일	년    월    일	아동성명	
위원 의견				

년    월    일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〇〇〇    (서명)

〇〇 아동보호전문기관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 120g/㎡]

〈서식 21호〉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업명 기재

(기관명) 직인

I. 사업개요(요약)

기 관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8. . . ~ . . .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 . .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 . . %)
		자 부 담	백만원 ( . . . %)
		기 타	백만원 ( . .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일		○월○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서식 22호〉

## ○○사업 정산보고서

### 〈 사업개요 〉

◎ 사업명 :

◎ 사업기간/장소 :

◎ 사업비 :           백만원 (보조금(국비           , 시·도비           ,           ,  
                          시·군·구비           ), 자부담           , 기타           )

제출일자 :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 ○○○사업 정산보고서

### I.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집행잔액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자부담
	소계	국비	시·도비			국비	시·도비	국비			

※ 국고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 II.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 호	지출일자
		비목	내역		
계					
<작성예시> 2016. 4. 1	950,000		강사수당(10000×5명) 원고료(15,000×30매)	① ②	2016. 3. 16 2016. 3. 20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자를 기재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
계				

3. 기타 자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
계				

4.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

○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고
계			

○ 수익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IV.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소관 중앙관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시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실적보고서 1부, ③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서식 23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연번	체크항목	체크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취해를 당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5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 의심 상황 : )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p>1개 문항 이상 “예”로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별지 1호〉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종류와 세부자격 기준표

종류	자격명	시행기관	구분
심리평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1급, 2급
	임상심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1급, 2급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	없음
놀이치료	놀이치료사	한국놀이치료학회	1급, 2급, 3급
미술치료	임상미술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한국미술치료학회	수련감독, 미술치료전문가, 미술치료사
	임상미술심리전문가	한국심리치료학회	-
음악치료	음악치료사	한국음악치료학회	1급, 2급, 준2급
모래놀이치료	음악중재전문가	전국음악치료사협회	-
언어치료	모래놀이치료사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전문가, 1급, 2급
인지학습치료	언어재활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급, 2급
	인지행동지도전문가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1급, 2급
심리상담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2급
	청소년상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1급, 2급, 3급
	전문상담사	한국상담학회	1급, 2급
	부부가족상담전문가	한국가족치료학회	슈퍼바이저, 1급, 2급



서식모음

## Ⅶ.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1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참고자료 1]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 346  
〈서식 1호〉 다중이용시설명 ..... 348  
[참고자료 2]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자체 지침 마련 표준매뉴얼(안) ... 349

[참고자료 1]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시행 2017.7.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28호, 2017.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신고자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 보호자, 실종아동등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6. “복합시설”이라 함은 1개의 건물 또는 장소에 2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체 지침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따르되,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소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시설·장소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적용하는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4조(실종아동등 발생 신고)** ① 누구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 등으로부터 실종아동등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종아동등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발생사실이 신고되는 경우 즉시 안



내방승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안내방승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출입자 감시 및 수색실시)**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된 경우 신속하게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종아동등 미발견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등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수색을 계속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보의 해제)**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여 보호자 등에게 인계하였을 때에는 발령된 경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경보발령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제9조(복합시설의 실종아동등 발생 및 조치)** 복합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각 시설의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 해당 시설의 조치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실시 및 보고)**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장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신고접수 요령, 상황 전파 및 경보 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7-128호, 2017.7.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호)

## 다중이용시설명

수신자 관할 경찰관서의 장  
(경유)

### 제 목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자체 교육훈련 결과 보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자체 실시한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교육훈련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교육훈련 결과

교육훈련 주관자 (부서 및 성명)	일시	장소	참여인원	교육훈련 내용	비고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소유자 성명) 등	2017. . . . ( : ~ : )			※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실종아동등 발생 대비 관계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역할 사전 지정,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신고접수 요령, 상황 전파 및 경보 발령 근무자 또는 시설관계자 배치,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끝.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자료 2]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자체 지침 마련 표준매뉴얼(안)**

**I. 공통 적용사항**

**1. 최초 접수(발견)시 요령**

- **(상황 및 정보파악)** 모든 직원\*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면서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실종아동등의 신체특징 등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 해당 시설의 근무자를 포함한 자체 임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파견 근무된 인력을 포함한다(경비원, 안전요원 등).

\*\* 실종아동등 : 실종당시 18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최초 접수자는 보호자, 실종신고자 또는 목격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와 면담을 통해 실종아동등의 성명·연령·신체특징을 파악하고, **유괴·납치 등 범죄관련 여부를 확인**한다.

\*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신고(☎ 112) 후 담당부서에 사후 보고

- **(담당부서 통보)** 최초 접수자는 취득정보를 신속히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최초 신고·접수 후에 발생한 추가 정보는 접수 즉시 담당부서로 통보한다.

\* 해당 시설의 자체 지침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담당(책임)부서 사전 지정(예시, 총무부서 등)

- 최초 접수자는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담당부서에 통보하기 전이라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신고(☎ 112) 후 보고한다.

- 최초 접수자는 신고자와 함께 신고장소에서 담당부서 근무자를 기다리거나 필요시 신고자 등과 함께 담당부서로 신속하게 이동한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거나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상시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주변지역을 수색할 수 있다.

- (실종아동등 세부정보 습득) 최초 신고자를 인계받은 담당부서 근무자는 면담 등을 통해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를 기록·관리하되, 실종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보존한다.  
\* 해당 시설에 경찰이 출동하여 개입할 경우, 신고접수 정보를 경찰에 인계

## 2. 「실종아동등 발생경보」 발령

- (경보발령) 관리주체는 **소직원과 시설 이용자**들에게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공지하는 ‘실종아동등 발생경보’를 발령한다.
  -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무전기·문자메시지·SNS 등 유·무선 연락체계**를 활용하여 신고·접수내용 및 사진 등의 사항을 전파하거나 안내방송 또는 전광판 송출을 요청한다.
  - 시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인접 시설의 담당부서로 실종아동등 경보발령 사실을 통보한다.
  - 실종아동등의 발생이 납치·유괴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안내방송 등 공지)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발생 경보발령을 포함하여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시설이용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시설 내에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안내방송은 시설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 실시한다.  
예) 아동의 인상착의 및 신체특징에 관한 정보를 5분에 1회씩 실시
  - 안내방송이 시설 내 소음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광판 송출 등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광판 송출은 실종아동등 수색시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해제여부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의견에 따른다.
  - 방송내용은 신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실종아동등에 대한 정보로 하되, 신장·연령·성별·신발종류·옷 색상 등 실종당시 특징을 포함한다.  
\* 다만,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성명이나 신발의 종류와 색깔 등 일부 정보는 제외하고 전달

### 3. 조기발견을 위한 수색

- **(출입자 감시)**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사전에 **근무자별 배치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실종경보 발령시 **출입구마다 지정된 직원을 배치**하여 시설의 출입자를 감시한다.

- 출입구에 배치된 직원은 실종아동등의 신체특징 등 전파된 정보를 활용하여, 그와 유사한 아동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경우에 대비하여 **실종아동등의 출입 여부를 면밀히 감시**한다.
- 해당 시설내 모든 공간에 대한 원활한 수색을 위해 시설이용자에게 ‘실종발생 경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 관리주체는 긴급한 경우 출입구를 일시 폐쇄하고 시설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담당부서 근무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출입구의 크기와 숫자, 출입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출입구별로 1명 이상의 예비인력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 출입구별 인원 배치와 함께 관제실을 통하여 출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병행 실시

- **(수색 및 보고)**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실종 신고 접수부터 경보 해제 발령 시까지 집중수색을 실시하고 실종아동등의 발견유무를 담당부서로 수시로 보고한다.

- 일정한 시간 내에 해당 시설의 모든 공간에 대해 수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 수색 시에는, CCTV 사각지대, 수유실, 화장실, 창고, 비상구, 승강기, 연결 주차장 및 주변 통로나 시설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색한다.

\* 예시) 사전에 구역을 나누고 그 구역을 담당하는 수색담당자 또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

### 4. 실종아동등 미발견시 조치사항

- **(관할 경찰관서와 협조)**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발생신고 접수 후 지침에 따른 자체 조치사항을 취하였음에도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 시간 경과로 납치·유괴와 같은 범죄와의 관련성과 안전사고의 가능성의 높아지는 관계로 신속히 경찰에 도움 요청 필요

- 경보발령, 안내방송, 자체 인력을 활용한 출입구 감시 등의 **자체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다.

\* **(조치 곤란)** 자체 조치를 위한 필요 인력이 없어 출입구 감시 또는 시설 내 공간에 대한 수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조치 불충분)** 다중이용시설의 면적에 비하여 근무인력이 부족하여 출입구 감시 및 시설 수색이 다소 미흡할 경우 등

- 관리주체는 CCTV자료, 수색 진행사항 등 해당 시설의 조치사항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경찰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 **(경보해제)**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경보 해제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의견을 따른다.

- 경보 해제 결정시, 발령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직원 및 시설 이용자에게 유·무선 연락체계 또는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해제 사항을 신속히 전파한다.

## 5. 실종아동등 발견시 조치 사항

● **(상태확인 및 조치)**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이 있을시 병원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범죄와 관련 있다고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 한다.

- 실종아동등이 보호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발견된 경우, 그 사람에게 자리에 대기할 것을 요청하고, 인상착의 등 정보를 수집하여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 담당부서는 발견된 아동 등을 신속하게 신고자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 후송 및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 조치한다.

- 실종아동등이 보호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조치한다.

● **(조치사항 기록 및 제출)**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신고부터 경보발령 해제까지 전체 과정의 절차와 조치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 장이 요청시에는 이를 제출한다.

## 6. 기타사항

● **(지침적용시설 안내 표지)**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이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을 적용하는 시설임을 긴급연락처를 포함하여 안내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Ⅱ. 시설별 특성 적용

### 1. 대규모점포

- 시설이 대규모이고 층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층내 책임자를 지정한다.
- 각 층 책임자는 직원들과 원활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상황파악 및 책임자에게 통보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예시) 매장 내 안내방송, 각 출입구에 근무자 배치, 순찰조 가동, CCTV 확인 및 추적

### 2. 유원시설 및 지역축제장

-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진, 기타 실종아동등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전파한다.
- 실종아동등 발생시 출입구 감시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 예시) 실종아동등 발생 사실 접수 후 20분 경과 후 미발견시,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한 개입 매우 중요)

### 3. 교통시설(역·터미널)

- 안내방송이 시설내 소음 등의 사정으로 인해 부적절한 경우에는 전광판 송출 등 다른 수단으로 안내할 수 있다.
- 승강장과 주요출입구를 대상으로 실종아동등 발생시 배치할 직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역할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 실종아동등 발생시 출입구 감시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 4. 전문체육시설

-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진, 기타 실종아동등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전파한다.
-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이용자에게 방송으로 알리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광판 송출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5. 문화시설(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

-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진, 기타 실종아동등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전파한다.
-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이용자에게 방송으로 알리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광판 송출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6. 경마장·경륜장·경정장

-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이용자에게 방송으로 알리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광판 송출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참고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표준매뉴얼 적용 (예시)**

절 차	조치 및 고려사항
① 실종아동 발생 (보호자 등 신고)	○ 코드 아담 경보 적극적 홍보(신속한 신고 유도)
② 최초 접수(발견)자	○ 실종아동 인상착의뿐만 아니라 신고자(보호자)의 성명 및 연락처도 간략히 확보 → 보호자의 감정 진정 ○ 최초 접수자는 보호자와 함께 정위치, 필요시 공동수색 가능 (보안실과 유무선 연락체계 유지) ○ 납치 등 범죄가능성 파악
③ 일원화된 접촉창구 (예시, 보안실 등)로의 상황전파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관리자는 보안실 정위치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경보 발령 지시(방송실 등) ○ 신고된 장소 주변 및 출입구 CCTV 집중감시 ○ 인접 다중이용시설에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경보발령 통보 ○ 납치 등 범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경찰신고
④ 상황전파(경보 발령)	○ 전 직원 및 시설이용자(고객)에게 신속히 전파 ○ 시설이용자에게 고객안내방송 등(안내방송 불가 시, 전광판, 애플리케이션 사용 등)을 통한 제한된 정보 전파(유괴 대비) → 5-30분 간격(한계 시간 내 최소 2-3회)
⑤ 인원 배치, 출입구 감시 및 수색	○ 출입구에 안전관리요원 등 배치(필요시 일부 출입구는 폐쇄가능) 및 시설 내·외 CCTV 수색 병행 ○ 정해진 한계시간 내 담당구역 모두 수색 → 한계시간이 20분이면 20분내, 30분이면 30분내, 특히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수색 필요 ○ 시설이용객에게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 요청
⑥ 발령 후 한계시간 경과 (미 발견시 경찰신고)	○ 한계시간 경과 후 지침 관리부서(보안실 등)는 시설관리주체 또는 담당부서의 지시 하에 신속히 경찰신고
⑦ 경찰 도착 후 경보발령 해제여부 검토	○ 경찰의 요청사항에 대해 시설 관리주체는 최대한 협조 ○ 경보 발령 해제는 경찰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제
⑧ 경보발령 해제	○ 전 직원 및 시설 이용자에게 경보발령 해제사실을 신속하게 전파 ○ 실종아동등 발생 시부터 경보 발령 해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및 필요시 경찰 등 관련기관과 정보공유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자체 보고 및 정리

**참고** 다중이용시설 담당부서/근무자별 조치사항 (예시)

구 분	임 무
<p>관리주체 (보안부서 등 담당부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 책임(교육훈련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과 연습, 반기마다 최소 1회 실시</li> <li>- 실종아동등 발생부터 경보 해제까지 상황 종료 후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자체 보고 및 정리 실시</li> </ul> </li> <li>○ 상황 접수 후 총괄 지휘(경보 발령 및 해제, 수색, 경찰신고 지시 등)</li> </ul>
<p>실종아동 발생 최초 접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아동에 관한 인상착의 정보 확보(신고접수서에 기록 유지·관리) 및 담당부서(예시, 보안실 등)에 연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 등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li> </ul> </li> <li>○ 신고한 보호자등과 같이 정위치 (보호자 요구 시, 연락체계 확보 후 주변부터 수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요원이 가까이 있는 경우 인계하고, 인계받은 안전관리요원이 같이 실종발생 장소 주변부터 수색 가능</li> </ul> </li> <li>○ 납치·유괴 등 범죄관련 실종 가능성을 판단</li> </ul>
<p>보안 담당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아동등의 신체적 특징 또는 인상착의 확인 및 기록 → 범죄가능성 명백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li> <li>○ 시설종사자 등 자체 직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경보를 발령하여 당초 지정된 업무를 역할 분담하여 수행토록 함</li> <li>○ 방송실에 경보 발령사실을 통보하여 시설이용자 등 고객 안내방송 실시 등 지시(전광판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 가동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실종아동등의 이름, 신발의 종류나 복장스타일은 제외한 정보를 시설 이용자에게 전달(유괴사건 대비)</li> </ul> </li> <li>○ “시설 관리주체 또는 해당 부서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을 것</li> <li>○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종아동등 찾기 실시</li> <li>○ 필요시 인접 다중이용시설 보안담당부서로 실종아동등 발생에 따른 경보 발령 사실 통보</li> <li>○ 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경찰 신고 및 출동시 경찰과의 업무협조 채널 역할</li> <li>○ 실종아동등 발생부터 경보 해제까지 전 과정과 대응조치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 향후 데이터베이스 구축</li> </ul>
<p>방송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담당부서 근무자로부터 접수된 실종아동 발생사항을 시설이용자에게 안내방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이용객 대상이며, 매 5분-30분 단위 실시(한계시간 내 최소 2-3회)</li> <li>- 보안담당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름 및 신발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 (납치·유괴 등 범죄관련 실종 고려)</li> </ul> </li> <li>○ 실종아동 발견 등 경보 해제 시, 경보발령 해제내용을 시설이용자 등 고객에게 안내방송 등 실시</li> </ul>

구 분	임 무
수색팀 또는 시설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내 해당 구역을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 수색 (보안담당부서와 상시 무선 연락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시설 내 CCTV 사각지대 및 수유실, 화장실, 직원휴게실, 창고, 비상구, 승강기 등 누락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li> </ul> </li> <li>○ 연결된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변 통로까지 완전 수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신속한 수색을 위하여 차량 등 이동기구 이용</li> </ul> </li> <li>○ 시설 출입구의 출차 차량에 대한 확인</li> <li>○ 실종아동 발견 시, 보안담당부서 보고 후 보호자에게 인계</li> <li>○ 보호자 이외의 사람과 있는 경우 신원확인 및 보안담당부서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심스러운 대화기법을 통한 신원확인</li> <li>- 최종 신원은 경찰이 확인토록 유도</li> <li>- 적극적인 제지 → 신원확인 불가능시 인상착의, 차량번호, 이동경로 등 파악</li> </ul> </li> <li>○ 시설이용자의 불편이나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충분한 설명 및 협조 요청</li> </ul>